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제1절 규제개혁 의의 및 추진방향

1. 규제개혁의 의의 및 필요성

규제개혁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당위적인 사회현상이나, 규제개혁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립된 이해관계질서를 재편성하는 속성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득권자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하므로 왜도난마와 같은 해결보다는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의 과감한 개혁은 필수이다.

(2)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이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불합리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보건,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품질 높은 규제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4) 부정부패 추방

모호한 규제, 과도한 재량을 인정해주는 불확실한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부정 부패와 비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5) 규제제도의 국제화

선진국들의 새로운 규제기법들과 규제개혁기법들을 벤치마킹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주도형의 경제성장 전략을 선택하여 주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시장은 경쟁의 원리조차 습득하지 못한 불완전한 형태를 띠었으므로, 단기간에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민간의 성장 잠재력이 커감에 따라, 민간의 정부에 대한 각종 개혁요구가 시작되었다. 그중 정부의 합법적 권한인 각종 법령 등에 의한 권한의 재검토 요구, 즉 규제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대폭 신장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렵고, 경제주체들의 경쟁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최선의 자원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개혁은 시장경제주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제시하고 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시장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고, 정부에 의한 부정부패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작업으로는,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6,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997년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해서도 약 100여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규제개혁작업은 구비서류 감축 등

단순하고 지엽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8년 이러한 규제개혁의 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존규제의 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전략

참여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 확보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이를 통한 세계일류의 국가경쟁력 달성을 목표로 하여 규제개혁 추진전략을 아래와 같이 전환하였다.

우선 규제개혁 정비방향을 규제건수 감축에서 규제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양위주의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의 내용과 절차를 개선하여 규제준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규제개혁 정비대상은 기존의 단편적 규제정비에서 복합덩어리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여 여러 부처 및 법령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규제정비 방식은 기존규제 틀 내에서의 부분적 개선이 아닌 규제제도 자체를 새로 설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실질적인 규제준수 시간과 비용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규제정비 주체 또한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규제개혁으로 전환하여 수요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수요자 참여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04.8월)·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규제 개선방안 확정 및 집행상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결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04.4월)하였으며, 서비스, 토지 등 전문분야의 규제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보강하였다.

4. 2007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

(1) 기존규제 정비

기업, 연구원 등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를 주축으로 설립된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정비하였다. 과제 발굴 단계부터 대책마련 단계까지 규제개혁의 전과정에 걸쳐 관계자 의견 청취,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반영코자 하였으며, 2007년중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등 총 17개 전략과제(295개 세부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각 부처에서도 소관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경제·사회적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739건의 규제를 정비대상으로 발굴, 정비를 추진하였다.

(2)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주기적으로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2007년중에는 총 170건의 과제를 접수·검토하였다. 특히 전경련에서는 1,664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하였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검토결과 개선이 가능하다고 관련부처와 협의된 건의과제 75건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확정하였다.(07.12.5)

「규제신고센터」에서 규제민원 접수 및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별기업의 애로규제를 적극 발굴·해소하였으며, 건축, 보건, 국민생활 등 주요 분야 규제개혁 추진상황 등에 대해 전문가·수요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 개선과제 선정 및 규제개혁 평가시 적극 활용하였다.

(3)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기업행정부담 감축정책 도입 등 규제의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규제맵 작성·게시, 규제개혁백서 발간 등 정책 수요자가 알기 쉬운 규제정보 제공에 노력하였다.

한편 OECD 규제관리시스템 지수(Regulatory Indicators)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규제시스템상 최우수 그룹으로 분류되는 등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개혁기획단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1. 추진체계 개요

(1)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기구 구축

1998년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2) 추진기구

(가)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규제개혁기획단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다수부처 관련 핵심 덩어리규제의 개선을 위해 2004년 8월부터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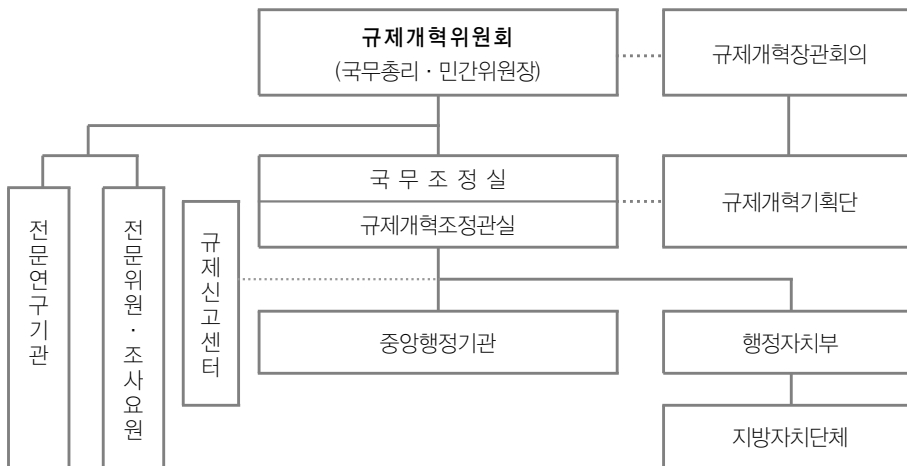
(다) 중앙행정기관별 규제개혁추진단

기획관리실장, 실·국장,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단은 규제의 신설·강화 시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규제개혁추진체계도 >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구성 및 기능

(가)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다) 구성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6인 등 총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명단 >

(2007년 3월 현재)

구 분	성 명	현 직
위 원 장	한 덕 수 정 해 주	국무총리 (주)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정부위원 (6)	권 오 규 박 명 재 김 영 주 임 상 규 권 오 승 김 선 욱	재정경제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민간위원 (17)	정 진 승 최 운 열 오 연 천 이 영 남 황 덕 남 최 성 래 박 재 목 박 주 현 김 상 열 박 승 오	KDI 국제정책 대학원 원장 서강대 대외부총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지디지텔(주) 대표이사 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사 동부한농화학(주) 사장 충남대학교 교수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KAIST 항공우주공학전공 교수

구 분	성 명	현 직
민간위원 (17)	유 경 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 병 호	자치정보화조합 이사장
	송 보 경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김 유 환	이화여대 교수
	남 영 숙	한국교원대 교수 (환경교육과)
	정 기 화	덕성여대 약학부 교수
	김 광 원	한국언론재단 사업이사

(2) 회의운영

(가)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매주 개최한다.

(나)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회의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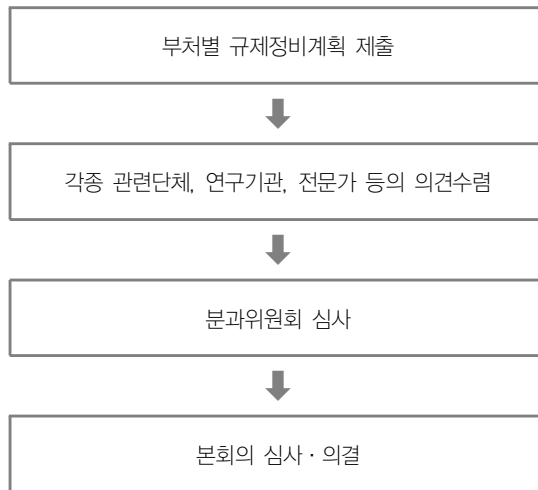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조정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심사절차

(가)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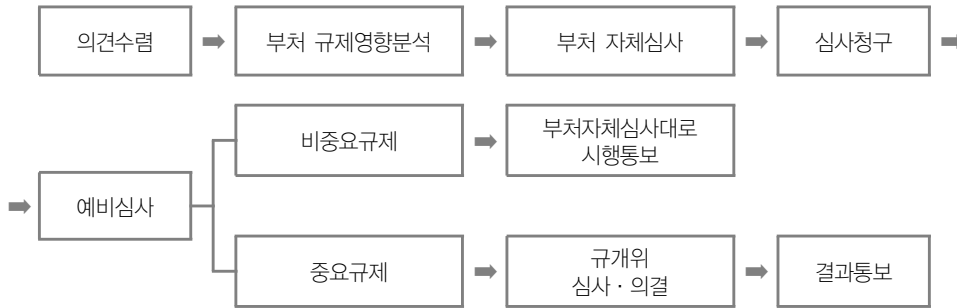


(나) 신설·강화규제 심사

① 일반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요규제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사절차를 종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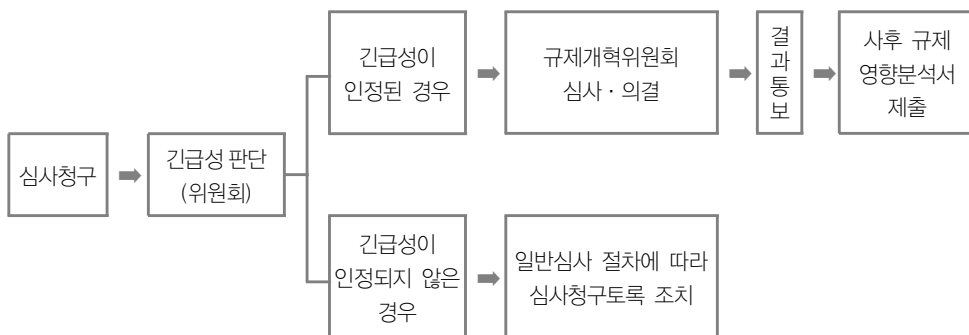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② 긴급한 규제의 경우

긴급한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경우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기능

(가)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98.4.18, 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

(나)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경제1분과, 경제2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5~6인, 정부위원 3~4인 등 9~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분과위원회 구성 >

(2007년 3월 현재)

구 분	분 과 위 원		소 관 부 처
경제1	민간위원	정 진 승(위원장) 오 연 천 이 영 남 최 운 열 황 덕 남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13개기관)
	정부위원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구분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2	민간위원	최성래(위원장) 박재묵 박주현 김상열 박승오 유경희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10개기관)
	정부위원	산업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정사회	민간위원	김병호(위원장) 송보경 김유환 남영숙 김광원 정기화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방송위원회, 국정원, 대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27개기관)
	정부위원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2) 회의 운영

(가) 회의 소집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나)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 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회의 출석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중요규제 여부 및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4. 규제개혁기획단 구성·운영

(1) 1기 규제개혁기획단(2004년8월~2006년8월)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다수부처 관련 핵심 덩어리규제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일괄 개혁하기 위해 2년 한시조직으로 기업, 연구원, 경제단체 직원 등 피규제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출범시켰다.(2004년 8월)

규제개혁기획단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을 각 50%정도로 구성하고, 경제계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한 현실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대안 마련, 개별규제 보다는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개혁, 기업·연구원 등 민간이 개선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지난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2년간('04.8~'06.8) 국민제안 현상공모와 기업건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덩어리 규제 정비대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공장설립, 골프장 인·허가, 물류시설투자, 관광·레저 활성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총 48개의 전략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2) 2기 규제개혁기획단(2006년8월~)

규제개혁기획단은 '06.8월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규제개혁기획단이 추진해온 규제정비 성과가 크고, 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직접 규제개혁 추진에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이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으며, 기업환경 개선,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요청 등으로 활동시한을 참여정부 임기말까지 연장기로 결정하였다.

'06.8.24일 새로이 출범한 2기 규제개혁기획단은 그간 마련된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이행되어 기업 및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관리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경제활력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환경 및 행정절차 개선, 국민생활 편의증진 개선 등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한편, 이미 개선방안이 마련된 과제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하였다.

5.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정부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과제의 선정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인터넷·전화신고·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관련 제안사항을 접수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기업애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규제개혁을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해도 소극적인 법 적용이나 행정편의 위주의 집행으로 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기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고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처에 이첩하지 않고 센터에서 직접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현장확인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업애로해소센터의 처리방식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자 2005년 3월에는 그간 각각 운영되어왔던 규제신고센터와 기업애로해소센터를 규제신고센터로 통합하여 일반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모두 처리토록 하되 조직과 민원처리방식은 기업애로해소센터의 것을 유지토록 하였다.

규제신고센터(센터장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규제개혁1심의관)는 현장 애로 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되었다. (07기준 2팀 8명중 지자체 공무원 6명)

규제관련 민원을 적극 발굴하고, 파악된 개별 애로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윈스톱 처리함과 동시에,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규제개혁 성과를 측정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 행정규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방법 >

- 우 편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18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전 화 : 02-2100-2238
- F A X : 02-2100-2289, 인터넷 : <http://www.rrc.go.kr>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추진기구

(가) 규제심사위원회

① 기능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행정기능의 민간위탁 및 이양촉진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구성

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인~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고 있다.

(나) 규제개혁 총괄부서

① 기능

규제개혁 총괄부서에서는 규제개혁업무 총괄조정, 규제개혁추진상황 점검·평가, 정부내 규제개혁관련 부처간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② 구성

정책홍보관리 실장을 중심으로 혁신(법무)담당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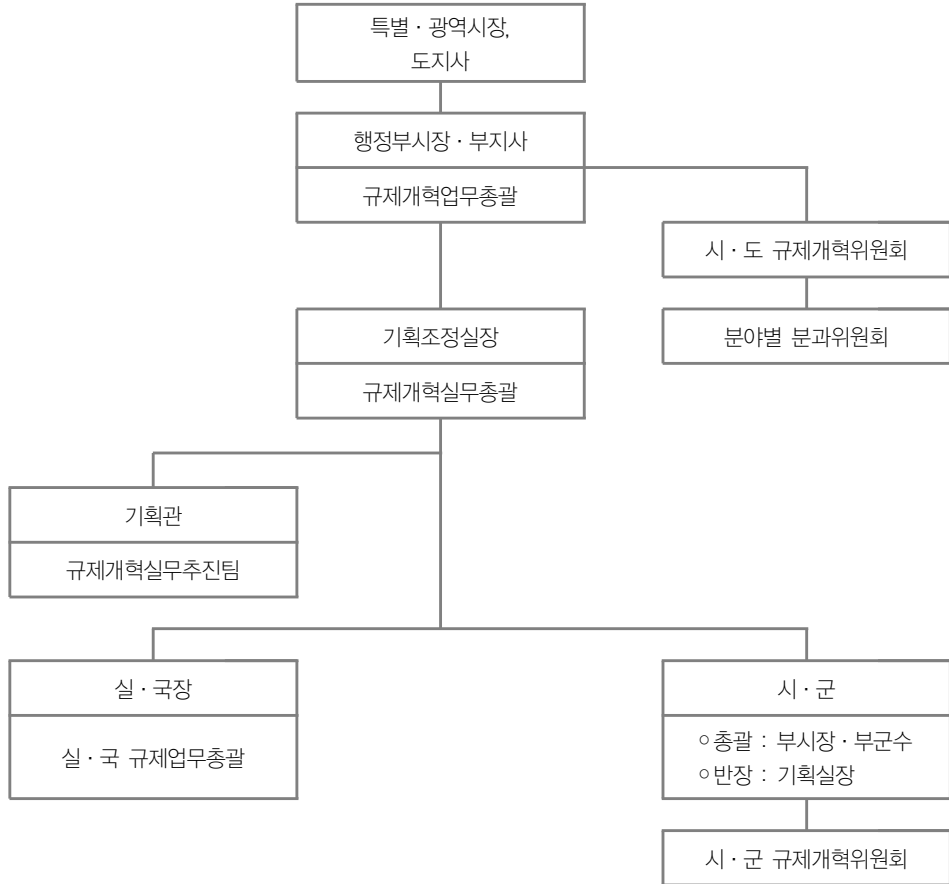
(가) 기능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개혁추진기구에서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기초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나) 구성

시·도,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체계 >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집필자: 오정우 사무관(T. 2100-2423, hope002@opc.go.kr)

1. 추진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사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사무의 등록·공표에 더하여 등록되는 규제를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웹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등록 및 전산화계획을 수립(98.3.23) 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99. 2.22 이후 인터넷(<http://www.rrc.go.kr>)에 규제등록 사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규제등록 웹서비스는 정부의 규제사무를 부처별·유형별·법령별로 분류된 통계와 함께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규제신고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검색 후 즉시 규제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c.go.kr>)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 등록대상 규제사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동 법령에 근거하는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말한다.

규제의 등록단위는 규제사무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나 규정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규제사무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이나 절차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근거규정이 다른 경우는 유사·동일 규제라도 별개의 등록단위로 하고, 동일법령상의 규제조항을 복수의 부처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기관 허가, 1개기관 협의 등)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규제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규제등록기준을 개편을 통해, 행위단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던 규제등록단위를 사업단위로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규제의 내용·형식(근거법률)·주체·객체가 같은 일련의 규제는 하나의 단위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의 목적이 동일하고 연관된 일련의 규제는 하나의 단위로 등록하여 주된 규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부수적 규제 등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규제는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여 등록하도록 하였다.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이와 같은 규제사무 등록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토록 하였는데, 등록된 규제수는 규제등록 초년도인 '98.8월 기준으로 총 10,717건이었다. 이후 기존 규제사무의 폐지와 새로운 규제사무의 신설 등 증감변화를 거쳐 2006.12 현재 최초 등록 대비 2,634건이 감소한 8,084건의 규제사무가 등록되어 있으며,

새로 개편된 규제등록기준에 따른 규제사무 등록이 2007년 2월에 완료되어, 개별행위 단위의 규제가 사업단위로 통합되면서 3,073건이 감소하여 등록규제수는 총5,011건이 되었고, 이후 규제신설·폐지 등으로 2007년 12월 말에는 총5,116건의 규제사무가 등록되어 있다.

<표 1>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수 변동 내역

(단위 : 건, 2007.12.31 기준)

소관 부처	최초 등록 규제수	규제수 변경					증감 소계	현재 등록 규제수
		증 가			감 소			
		신 설	누락등록	기 타	폐 지	기 타		
합 계	10,717건	2,662건	1,141건	1,149건	5,371건	5,184건	-5,603건	5,116건
건설교통부	900건	257건	201건	26건	443건	254건	-213건	687건
경찰청	382건	14건	6건	30건	143건	192건	-285건	97건
공정거래위원회	75건	102건	3건	9건	21건	57건	36건	111건
과학기술부	426건	75건	21건	8건	228건	211건	-335건	91건
관세청	220건	2건	37건	0건	144건	64건	-169건	51건
교육인적자원부	269건	81건	88건	1건	136건	139건	-105건	164건
국가보훈처	85건	18건	3건	4건	45건	46건	-66건	19건
국가청렴위원회	0건	3건	0건	0건	0건	1건	2건	2건
국가청소년위원회	0건	4건	4건	15건	1건	29건	-7건	16건
국무조정실	0건	7건	0건	7건	0건	9건	5건	5건
국방부	37건	1건	1건	0건	16건	16건	-30건	7건
국세청	27건	0건	0건	0건	12건	6건	-18건	9건
금융감독위원회	548건	266건	140건	82건	310건	254건	-76건	472건
기상청	28건	1건	2건	0건	18건	5건	-20건	8건
노동부	335건	168건	104건	18건	192건	234건	-136건	199건
농림부	682건	157건	40건	46건	340건	313건	-410건	272건
농촌진흥청	14건	1건	0건	1건	9건	1건	-8건	6건
문화관광부	401건	94건	67건	22건	186건	268건	-271건	130건
문화재청	133건	8건	6건	0건	65건	53건	-104건	29건
방송위원회	0건	32건	2건	0건	0건	7건	27건	27건
법무부	88건	57건	1건	0건	6건	74건	-22건	66건
병무청	29건	3건	3건	0건	3건	26건	-23건	6건
보건복지부	1,625건	174건	24건	180건	807건	616건	-1,045건	580건
산림청	254건	25건	10건	80건	124건	178건	-187건	67건
산업자원부	667건	146건	45건	69건	382건	283건	-405건	262건
소방방재청	0건	0건	28건	207건	12건	134건	89건	89건

소관 부처	최초 등록 규제수	규제수 변경					증감 소계	현재 등록 규제수
		증 가			감 소			
		신 설	누락등록	기 타	폐 지	기 타		
식품의약품안전청	256건	38건	0건	2건	163건	35건	-158건	98건
여성가족부	0건	13건	8건	48건	15건	28건	26건	26건
외교통상부	40건	8건	0건	0건	7건	23건	-22건	18건
재정경제부	500건	183건	108건	117건	264건	232건	-88건	412건
정보통신부	370건	94건	18건	52건	201건	185건	-222건	149건
조달청	27건	4건	2건	0건	28건	5건	-27건	0건
중소기업청	84건	22건	20건	0건	60건	29건	-47건	37건
중앙인사위원회	0건	0건	0건	5건	0건	0건	5건	5건
철도청	53건	0건	2건	0건	54건	1건	-53건	0건
청소년위원회	23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통계청	10건	0건	10건	0건	7건	10건	-7건	3건
통일부	57건	8건	4건	0건	18건	33건	-39건	18건
특허청	60건	4건	7건	0건	29건	26건	-44건	16건
해양경찰청	122건	29건	1건	1건	57건	58건	-84건	38건
해양수산부	763건	225건	55건	48건	392건	367건	-431건	332건
행정자치부	484건	66건	8건	9건	187건	240건	-344건	140건
환경부	643건	272건	62건	62건	246건	442건	-292건	352건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절 복합 덩어리규제(전략과제) 정비

제2절 부처별 개별 규제 정비

제3절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제4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개선

제1절 복합 덩어리규제(전략과제) 정비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aja2940@opc.go.kr)

1. 추진 배경

덩어리 규제 정비는 단일한 사항에 대한 개별 규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의 사업, 허가 등에 대해 적용되는 관련 규제들을 일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적,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 국민이나 기업이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데 관련된 규제의 집합체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수요자 지향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규제를 등록된 단위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규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요자가 느끼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이전에도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과거의 규제 개혁은 주로 개별 규제 단위로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여부, 정비방향 등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다른 규제가 같이 정비되지 않는 한, 한 단위의 절차 간소화, 조건완화 등 단순한 규제개선 만으로는 규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기 어려웠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나 과정에서 각각 다른 기관 또는 같은 기관 내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동일한 사항을 중복적으로 검토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개별단위로 검토됨에 따라 개선되지 않는 경우 등 획기적 규제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규제개혁 실적에 비해 기업,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효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 규제개혁이 미비하다는 비판과 개혁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민의 생활이 편리해 질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키 위해 채택한 것이 바로 덩어리 규제의 정비이다.

덩어리 규제의 정비는 법령이나 부처 구분 등 행정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창업 절차, 교통 분야, 초중등교육 분야 등과 같이 국민과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영역과 과정을 중심에 놓고 거기에 관련된 기준, 조건, 절차, 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국민이 불편해하고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오랜 기간을 소요하게 하는 절차나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제를 수요자의 활동, 생활영역 등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개별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때보다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덩어리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기업,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04.8월부터 '08.2월까지 대대적인 규제정비 작업을 추진하였다.

2. 덩어리 규제정비 추진 절차 및 방법

덩어리 규제의 정비는 정비대상 과제의 선정, 개선방안 마련·확정, 후속조치 이행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규제개혁을 위해서 정부나 공무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보다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비 대상 과제 선정에서부터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우선 기업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 받아 1,200여개의 건의과제를 접수받았고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규제개혁 국민제안을 실시하여 1,500여건의 국민제안을 접수받았다. 이러한 건의과제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가 되고 있는 과제 등을 기초로 수요를 분석하여 정비대상 전략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 과제를 추진의 시급성, 장기검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투자환경 개선효과가 단기에 확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창업절차, 물류, 유통, 전자상거래, 관광레저 등의 과제를 '04년 하반기에서 '05년 상반기에 주로 추진하는 한편, 환경, 고용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키로 하여 환경인허가, 폐기물, 산업안전 등의 과제를 '06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등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3~5개 전략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전략과제에 대해 추진팀 구성, 현장조사, 법령 분석, 정책상황 분석, 기존 연구결과 분석, 대안 마련, 전문가 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부처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민관합동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기업과 국민의 의사가 과제추진 과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직접 과제추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분야별로 3개팀을 두고, 프로젝트 팀제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5~7명 규모로 과제별 T/F를 구성하되 민간직원과 공무원이 각자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민간기업으로부터의 파견 직원은 기업현장 경험, 피규제자와의 의사소통상 장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의견수렴, 현장조사 등을 주로 담당하였고, 연구원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전문가 입장에서 대안 마련, 관련 연구 검토 등을 수행하였으며, 공무원은 과제추진 기획, 관계법령 검토, 관계부처 협의, 공익적 입장에서의 의견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추진팀이 구성되면 기존 연구자료, 관계 법령, 정책 상황 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제와 관련된 기업,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여 규제 운영실태 파악, 관계자 의견 청취, 관계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과제와 관련된 현장의 규제 상황, 정책 상황, 이해관계 등을 파악하고 현장관계자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개선대상 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검토규제와 관련된 규제 적용 사례, 불합리한 사례 등에 대한 분석도 현장조사에 근거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개선대상 과제를 중심으로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 및 관계법령의 취지, 내용, 이력 등에 대한 검토, 관련 규제를 둘러싼 시장상황, 사회적·경제적 환경 등 정책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선대안을 마련하였고 마련된 대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최적 대안을 가지고 관련 기업, 시민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개선 방안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개선방안 확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관계부처 협의는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관 등 실무급 협의부터 시작해서 과장급, 국장급 등 단계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최종 조정하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부처에 통보하고 소관부처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추진일정, 구체적 이행방법 등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하였는데 시행령 이하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개선 완료, 법률은 3개월 내에 국무회의 상정 완료할 것을 목표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획단 내의 이행점검 전담반을 통해 그 시기별 추진현황, 완료 시기 등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현황을 상시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상황은 국민에게도 동시에 공개되고 있다. 한편으로 확정된 개선방안은 관련 규제에 수요자 집단인 관련 협회, 전문가 집단 등에도 송부되었고,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공개되고 있다.

3. 덩어리 규제 정비 추진실적

규제개혁기획단은 '04.8월부터 '08.2월까지 '04년에 공장설립 개선방안 등 8개 전략과제, '05년에 24개, '06년 19개, '07년 17개 등 총 68개 전략과제를 추진하였다. 제2장에서 전략과제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3.1 창업 및 경영환경

3.1.1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이창원 사무관(Tel 2100-8805)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의 경쟁상대국가들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특구를 도입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특히, 중동 두바이, 중국 푸둥, 싱가포르 등은 조세감면(법인세 인하), 외환거래 자유화 등 규제완화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3개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다.

< 경제자유구역 현황 >

구분	인 천 (’03.8.6 지정)	부산·진해 (’03.10.27 지정)	광양만권 (’03.10.27 지정)
위치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지구	부산·진해시 일원 5개 지구 (명지, 지사, 두동, 응동, 신항만)	여수·순천·광양시 및 하동 5개 지구 (광양, 울촌, 신덕, 화양, 화동)
면적	209km ² (6,333만평)	104.8km ² (3,171만평)	88.98km ² (2,733만평)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는 개발단계 투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밖의 투자는 일부 외국인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06.9월 기준) >

구역청	유치실적		주요 계약내용
	계 약	MOU/LOI	
인 천	10건 148.7억\$	17건 118.4억\$	·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Gale: 미) · 인천대교 건설(AMEC: 영)
부산·진해	16건 31.3억\$	10건 11.8억\$	· 부산항 신항 운영참여 (Dubai Port World: UAE & PSA: 싱) · 자동차 엔진공장 증설르노삼상: 프)
광양만권	6건 25.1억\$	11건 6.6억\$	· 화양 레저단지 개발(일상: 흥) · 광양항 운영참여 (한국국제터미널: 흥)
합 계	32건 205.1억\$	38건 136.8억\$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동아시아 허브 경쟁에서 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특구제도 도입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경제 자유 구역과 관련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법인「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개발사업 시행, 외국기업 지원, 규제예외사항, 생활여건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에서는 교육기관의 설립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으나

상기 법률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규제완화 및 지원을 위해 특별하게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일반지역과 큰 차이가 없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환경보전대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도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이 엄격하여 개별사업추진에 장애가 있으며 외국인 의료기관,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국내의 일반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어 영업활동 및 시설입지 등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열악하고 관련 규제가 많아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에 애로가 있으며 아직도 성장거점화에 필요한 다른 개발지역 보다 유리한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쉽고, 개발은 어렵게 되어있어 사업추진 지연 및 개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개발계획 확정시 사전 입지규제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추진 과정상 부처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고 있으나 창구단일화에 그치고 있어 처리기간 단축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업부담 경감방안

- 기본방향**
- ◆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부담 완화
 - ◆ 외국인 생활에 불편이 없는 의료 및 교육·주거 환경 조성
 - ◆ 조세 및 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기임대방식의 산업용지 확대

(1)-1.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부담 완화

■ 경제자유구역내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규모를 명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규모】

-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 25만㎡이상
- 대지조성,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학교 : 30만㎡이상
- 산업단지 등 공업용지 조성 : 15만㎡이상
- 도 로 : 신설의 경우 4km(도시계획구역은 폭 25m, 개발제한구역 3만㎡이상 포함), 확장인 경우 10km(2차선 이상)
- 매 립 : 30만㎡이상(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3만㎡이상)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규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 이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반사업보다 과도하게 규제

⇒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제자유구역 대상사업의 규모를 명시(환경부)

- *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여 면제범위 규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평가항목 중복 개선

-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은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도로건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며 사업별로 지형·지질, 수질, 대기질 등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 전에 승인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 * 영향평가법령에 17개 사업유형에 총 73개 대상사업 명시

-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조성된 매립지 위에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하는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별 주요 평가항목

- 공유수면 매립 및 간척·개간사업 : 지형·지질, 동·식물, 토지이용, 수질, 폐기물
- 택지개발 및 주택단지조성 사업 : 지형·지질, 동·식물, 토지이용,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등

- 신규 조성된 매립지 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항목 최소화가 바람직
- ⇒ 경제자유구역 내 매립지 위에 개별사업 추진시에는 스코핑(scoping)제도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환경부)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감안

-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는 전문기관과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의견을 통보

- 환경부는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을 중시하고 있어 환경전문가의 과도한 요구를 실제 조정하는 데는 한계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검토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 발생

- ⇒ 환경영향평가결과를 승인기관에 통보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 마련(환경부)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장설립시 중복적 건축심의 폐지

-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은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확정

- 지구단위계획에는 산업용지내의 설립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외관, 색채, 건축선 등이 규정

-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지구단위계획 확정이후 공장설립과정에서 건축주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정된 동일한 건축사항에 대해 별도로 시·도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중복적으로 거쳐야 함

- 특히, 건축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건축심의사항을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여 과도하게 규제함에 따라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배

-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장설립시 건축주의 개별 건축심의를 폐지(인천광역시)

■ 특별건축구역 시범적용 추진

- 건축가의 창의력 극대화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랜드마크 건축물 조성(지역 명소화)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을 추진 중

- 특정지역에 대해 높이·사선·건폐율 제한 등을 해제하고 용적율·용도지역 등 최소기준만 준수, 건축심의로 조정

*특별건축구역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에 시범 적용할 예정

- 경제자유구역내 국제업무지구, 관광·레저지구, 상업지구 등에 창의적인 랜드마크 건축물 건설 유도를 위해 시범지구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 일부지역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지구로 지정(경제자유구역청)

(1)-2. 외국인 생활에 불편 없는 교육 및 의료환경 조성

■ 외국교육기관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이 분교나 제2의 캠퍼스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을 불허

- 다만, 원인거래가 있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예 : 기자재 또는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시)에는 해외송금 허용

-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을 불허함으로써 외국 명문사학의 국내진입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경제자유구역내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해외송금을 허용(교육인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취득부동산 비과세

- 학교나 평생교육단체의 비영리사업자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비과세

*학교 및 평생교육단체의 지방세 비과세 대상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인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국내학교법인과는 형평성문제 발생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를 비과세(행정자치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①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 설립시 강의실·실험실습실·도서관 등 교사(校舍)에 대한 임차확보를 허용

- 그러나, 교사이외에 교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 기준상 교사를 건물의 일부에 임차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하고 단일건물의 전체 임대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 국내 전문(경영 등)대학원에서 교사를 건물의 일부에 임차확보하는 것은 허용하나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대학원은 불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경제자유구역내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

- 해양수산부와 광양청에서 건물의 일부에 임차로 추진 중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분교(STC-Korea)의 경우 설립 곤란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 일부를 교사로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교육인적자원부)

② 교사 최소면적기준을 학생정원 200명(대학원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 대학원의 경우에도 과도한 교사면적 확보가 요구되어 경쟁력 있는 소규모 대학원 유치에 장애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분교(STC-Korea)는 광양항 마린센터 내 2개층을 임대하여 석사과정 주간 40명, 야간 20명 정원의 학교개설 추진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미국 UC계열의 대학원 및 예술대학과 소규모 (정원 100~200명 내외) 투자유치 협상 중

【교사(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 기준면적 산출식】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인문사회(12m²), 자연과학(17m²), 공학·의학(20m²))×계열별 학생정원

⇒ 경제자유구역에 소규모 외국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교사의 최소면적기준을 완화(교육인적자원부)

■ 외국의료기관의 외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용 허용

○ 국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이 본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신약의 경우 허가기간은 약 10~12개월 소요)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함

-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면서 외국기준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외국의료기관의 의료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
⇒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및 광고관련 규제 개선

- 의료법에서는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가능
 - 특정의료기관 또는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약효 등에 대한 대중광고, 사진, 방송 등을 금지
-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활동이나 경제자유구역내의 광고 허용시 수익기반 마련 가능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환자유치활동이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약국에 대한 영업제한 철폐

-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
-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내국인이 인근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기 곤란
⇒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약국 이용 허용(보건복지부)

(1)-3. 외국인 주거여건 개선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주택 임대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외국교육기관·외국인전용의료기관(약국 포함)의 종사자에게 민영주택공급물량의 10%내에서 특별공급이 가능

- 개발사업자가 일반분양이 아닌 특별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

○ 외국인의 경우 단기근무 특성과 비용부담면에서 주택소유보다 임대거주를 선호함에도 수익창출이 용이한 분양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에 한계
- 고급 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사적시장에서 공급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 외국인 거주여건 조성을 위해 저렴한 고급 임대주택공급이 필요

*인천 송도지구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NSC)가 특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법적 장치 마련 필요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마련(재정경제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종사자 특별분양 관련 규정 명확화

○ 경제자유구역내 특별공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인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별 공급시 운영상의 혼란 초래

*외국인(이중국적자 해당여부, 입주전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등), 무주택자(국내에서만 무주택자인지), 종사자(임시 계약직 포함 여부, 청약신청이후 입주전 퇴직하는 경우 등)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외국인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세부 자격 기준(무주택자, 외국인, 종사자 등) 마련(재정경제부)

(1)-4. 조세 및 부담금 부담 경감

■ 조세감면 제도 개선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5년간(3년 100%, 2년간 50%)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

-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7년간(5년 100%, 2년 50%)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

*제조업(3천만불 이상), 관광업(2천만불 이상), 물류업·SOC(1천만불 이상) 등

○ 그러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절차에 장기간 소요(통상 6~12개월 소요)

- 우선 시·도지사가 지정(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지정요건과 감면절차를 합리화·단순화하는 방안 마련(재정경제부)

■ 부담금 감면 확대

-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50%를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부과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부과
- 경제자유구역은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지와 산지전용 억제 목적의 부담금 부과는 면제해 줄 필요
 - 일반지역의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장 등은 부담금이 면제되나,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등은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만 감면되어 역차별 발생
 - *부담금의 실제 부과금액이 매우 커 각종 용지의 조성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 경제자유구역내의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대상시설 중 일반 지역에서 100% 감면되는 부과대상시설은 100% 감면되도록 조치(산림청)

(1)-5. 장기임대방식의 산업용지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IT, BT 단지 포함)는 대부분 분양방식 위주로, 저가 장기 임대 방식의 산업용지 공급은 극히 일부
 - 일반지역의 산업단지는 임대전용의 「New Biz Park 제도」가 '06년부터 도입되어 최장 50년간 저가의 공장용지를 공급중이나 경제자유구역에는 아직까지 미 도입

【임대전용산업단지(New Biz Park) 제도】

- 비수도권지역내 미분양, 미개발, 신규지정 산업단지를 사업시행자가 자체자금으로 조성하고 국가 등이 조성비 일부 부담(50년간 분할상환)
- * 조성비 원리금을 임대료수입(14%), 국가(30%), 사업시행자(56%), 지자체(사업시행자와 협의 범위내) 분담
-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 적용(평당 연간 5,000원내외)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임대단지를 통해 저가(조성원가의 1%) 장기임대(50년) 공장용지를 제공하나, 경제자유구역내 임대단지의 비중은 미미
- *경제자유구역내 임대단지 면적 : 전체면적 12,237만평중 107.7만평(0.8%)

○ 현재 분양위주의 산업용지 공급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비용을 상승시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걸림돌

- 중국, 대만 등 투자유치경쟁국보다 임대료 등이 비싸 초기 투자비용측면에서 경쟁력 상실

*중국(북경 3,857원, 상해금교 4,466원), 대만(신주 4,628원), 베트남(탕롱 4,628원)등

○ 투자파급효과가 큰 세계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을 선별하여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장기 임대단지 공급이 필수적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공급을 현재 '분양방식'위주에서 저가의 장기임대방식 확대로 전환·운영하는 방안 마련(재정경제부)

(1)-6.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등록세 증과부담 해소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제외)안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3배 증과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 청라지구, 송도지구(7-11공구) 등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

○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취득세·등록세가 3배 증과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초기 활성화,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에 저해 우려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자의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일정기간(최대 15년까지) 감면되고 있으나, 감면기간 경과후에는 과밀 억제권역 안은 3배를 증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는 전액, 다음 2년 이내는 50% 감면하고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최대 15년간 100% 감면가능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증과부담 해소 (인천광역시)

(2) 행정절차 개선을 통한 사업추진 원활화

- 기본방향**
- ◆ 입지·기본계획 등 필수규제의 사전 검토로 신속한 개발 추진
 -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처리 확대 및 처리절차 간소화

(2)-1.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개선

-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시 필수규제 사전검토 강화
 -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구역 지정시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일부 개별법에 의한 지구(구역·단지) 지정시 사업(개발)계획 수립이 있는 것으로 간주
 - 구역 지정 후 개별사업자가 개별사업 추진 과정(실시계획 승인시)에서 관계부처 이견으로 인허가가 보류되어 사업추진 지연 및 포기사례가 발생
 - 개발계획 수립 및 확정시 향후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준 충족 가능성에 대한 관계 부처와 사전검토·협의절차가 없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 발생
 - ⇒ ① 구역 지정(개발계획 확정)시 입지·기본계획 등 필수규제 사전검토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협의절차 신설(재정경제부)
 - ②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등 필수규제 사항은 구역 지정효과에 추가(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 개발계획 변경시 처리기한 단축
 - 개발계획 변경절차는 사업시행자가 변경요청을 하면 해당 시·도에서 개발계획 변경(안)을 작성, 재정경제부에 변경을 신청
 - 경미한 개발계획을 제외한 모든 개발계획 변경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와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상 7개월 내외 소요

- 이는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법정 처리기한이 없고,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연간 2~3회 개최되는 것도 그 원인
- ⇒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한(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이내)을 법령에 명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수시개최 방안 강구(재정경제부)

■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의 범위정비 및 권한위임

- 현행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변경 승인

- 그러나, 경미한 개발계획의 범위가 좁고 승인대상에 단순 사실관계 변동까지 포함하여 사업지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계규정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 우려
 - 각종 영향평가심의 등 개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고,
 -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도 개발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되며, 면적변경 기준을 구역 전체면적이 아닌 지구별 면적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개발사업 세부계획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자의적 운용 소지

- ⇒ ①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권한을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최종 경제자유구역청장)로 위임(재정경제부)
- ②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재정경제부)
- ③ 자의적인 운용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명확화(재정경제부)
- ④ 현행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사항 중,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동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같음(재정경제부)

(2)-2.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처리제도

■ 의제처리 관련 협의제도 개선

- ① 실시계획 승인전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30일 내에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30일을 훨씬 초과
- *광양 화양지구의 경우 17개 인허가 협의에 평균 86일 소요

- 현행 의제처리제도상 통상 ‘인허가업무 창구단일화의 의미로 해석되어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는 한계 발생

- 협의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관계부처가 개별법령에 의한 각종 절차(위원회 개최, 의견수렴 등)를 모두 거치고 있기 때문
- ⇒ 법정협의기간 준수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에서 협의기간(30일)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재정경제부)

② 재정경제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36개 법률에 의한 65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처리)

○ 인허가 의제처리 시 관계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어,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도 사업추진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

○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위한 인허가 의제처리 시 관계부처 합동심의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는 절차 마련 필요

- 합동심의에서도 이견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경제정책조정회의 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여 문제 해결

⇒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심의회」 도입(재정경제부)

■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확대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행 36개 법률에 의한 65개 인허가를 의제처리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내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존재

⇒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확대(재정경제부)

■ 인허가 의제처리사항 권한위임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얻은 경우에는 36개 법률에 의한 65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처리)

- 그러나, 의제처리는 관련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당시 관련 개별법상 「인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재량(기속재량)행위의 경우 관계부처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회양지구 골프장과 관련, 산지전용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경관, 산림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축소를 요구

- 관계부처 판단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사항은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필요

⇒ ① 의제처리 대상 중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등의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시·도지사(최종 경제자유구역청장)로 위임(재정경제부)

② 시·도지사의 보전산지전용허가 위임범위 확대(산림청)
(현행 1만²m²~20만²m² → 3만²m²~50만²m²)

(2)-3. 실시계획 처리절차 간소화

■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

-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변경)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당초 수립한 개발계획의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실시계획도 개발계획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시간 소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7개월 내외 소요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등 타 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 위임(개발계획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 ① 실시계획 승인시 처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재정경제부)

②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단계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재정경제부)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 개발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도면 포함)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 인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부처협의 시 관계부처는 개별법령에 의해 세부 실시 설계도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

-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작성시 구체적 매뉴얼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을 파악하고 자료를 작성·제출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 * 개별법상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구비서류(통상 100~200개, 수천쪽 분량)를 준비
⇒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작성·보급(재정경제부)

(3)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 기본방향**
- ◆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추진력 강화
 - ◆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 활동지원 체계 강화

(3)-1.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추진력

-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강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제도운영은 중앙정부(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지구신청과 개발계획 작성은 지방정부(시·도지사), 개발 및 관리운영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각각 담당
 -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자체의 하부조직(출장소, 조합)으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역할 수행이 사실상 곤란
 - * 지자체 산하 출장소(인천광역시), 광역지자체간의 조합(부산·진해 구역청 :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광양만권 구역청 : 전라남도-경상남도) 형태로 존재
 - 조직·인력·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푸동,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과의 경쟁이 어렵고, 국가차원의 성장거점 특구로 발전하는 데에도 제약
 - 구역청 인력의 약 80% 이상이 2년 미만의 단기파견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조직의 안정성 확보 곤란, 전문성 부족, 자율적 인력운영상 한계
 - ⇒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확대방안 마련(재정경제부)
- 국가적 차원의 조정기능 강화
 -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각종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정책적 이견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 각 부처의 소관 법령상으로 개발이 곤란하거나 개별법령상 각종 위원회의 반대, 인·허가의 소극적 처리 등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사례 발생

- 관련부처의 이견사항 발생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 가중, 구역 전체의 개발계획 지연
- ⇒ 사업추진상 정책적 이견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재정경제부)

(3)-2. 개발사업 활동지원체제 강화

■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특별회계 도입

- 경제자유구역의 사업비는 국고, 지자체, 민간의 투자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은 통상 일반회계로 편성·집행
 - 다만, 부지매각 수입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일부 운영
-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된 회계를 갖고 있지 않아 탄력적 투자가 곤란하며, 구역 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타지역의 사업에 전용될 우려 발생
 -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이익이 구역내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도입을 제도화할 필요
 - ⇒ 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도입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부산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 사업부지 매각방식 변경

- 대규모 매립지를 일괄적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실제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개발사업자에게 귀속
 - *송도 국제업무지구 167만평을 Gale사에 매각(평당 약 200만원)했으며, 192만평을 포트만사에 매각추진중이나, 향후 큰 가격상승 예상
 - 매립지 매각시 단순히 조성원가와 물가상승률을 감안, 산정한 금액으로 매각함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저가로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
 - *인천 송도의 국제업무지구 부지 매각계약 체결('02.3.20, 121만평),
 - ① 컨벤션센터 부지 이전('03.10.30, 9만8천평) 평당 60만원,
 - ② 2단지 부지 이전 ('05.12.27, 46만 8천평) 평당 45만원,
 - ③ 3단지('06.11월 예정, 27만8천평)
 - ④ 4단지('07예정 37만 3천평)

- 대규모 개발이익이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됨에도 수익계약 형태(외국인투자촉진법 근거)로 매각되어 국부유출 및 특혜시비 우려
 - 매립지의 일괄매각방식과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 후 소규모 단지의 분양매각·임대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
- ⇒ 대규모 사업부지의 매각방식 전환방안 강구 및 대규모 매립지 매각시 계약체결 이전에 재정경제부와 사전 협의 의무화(재정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체 재원조달 확대방안 강구

-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안에서 가능
 -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재정규모와 채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별로 부여하고, 한도액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 적으로 발행 가능
 - * '07년까지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 6조 4,003억원('06년 대비 5,354억원, 9.1% 증가)
 - 다만,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 가능
-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자체 소속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한도의 제약을 받아 채권발행에 한계가 발생
 - 경제자유구역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분을 조달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현재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상 한계, 채권발행상 제약 등으로 직접개발 또는 공영 개발 보다는 일괄분양방식으로 추진
- ⇒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채권 발행 허용 (행정자치부)

3.1.2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손관설 전문위원(Tel. 2100-8795, mymusic@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최대 다수의 생산자 집단으로서 내수경기 및 서민경제 등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분이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분배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들어 산업별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을 보면, 2003년 기준으로 1차산업은 1차산업 0.1%, 2차산업 13.4%, 3차산업 86.5% 이다.

< 소상공인 사업장 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	전체(A)	중소기업(B)	비율	소상공인(C)	비율	
			B/A		C/A	C/B
사업체수	3,006,053	3,001,893	99.9	2,654,389	88.3	88.4
종사자수	12,222,161	10,771,623	88.1	5,121,769	41.9	47.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가공(2005년도 기준)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소기업청 조사 소상공인 경기체감 지수가 2002년 4월 115.4 포인트에서 2006년 12월 78.2 포인트로 하락하는 등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악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책자금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자금 조달에 필요한 보증 또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소상공인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민생경제 안정화와 3차 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소상공인 정책지원 체계 정비와 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소상공인이 생업을 시작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별 부처별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시설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조리사, 이·미용사 등의 자격·면허제도가 소관부처간 협의조정이 되지 않아 별도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생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상가 임차료율, 소방안전 등과 관련된 다수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규제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미약하나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규제 체감도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범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재보증 방법서” 등에서 지원조건 등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정책자금의 상환조건, 신용보증의 보증자격, 보증업종 등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소상공인 관련 규제 합리화

(1)-1. 상가건물 임차료 인상 상한율 조정

-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료 인상 상한율과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운영중
 - 더구나 상가건물의 임차료 인상 상한율은 시장 및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이 필요한 규제임에도 '02년 시행령 제정 이후 12%로 고정
 - *임차료 인상 상한율 : 임대인이 임차료를 증액하고자 할 때 청구 상한을 연 12%로 제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
 -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초기 계약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07년중 시장환경, 이해관계자 여론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08년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임차인·임대인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추진(법무부)

(1)-2.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시설기준 완화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시설기준 중 객석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의무적으로 객석을 설치하고 있음(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음(법 제21조)
 - 시설기준에 위반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법 제77조)
- ⇒ ① 향후 신규 혹은 개보수시 객석을 갖추지 않더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보건복지부)
- ② 또한 음식점중앙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하여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경우 객석이 없더라도 영업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홍보

(1)-3. 소상공인 자격·면허제도 통합 운영

- 조리사, 이·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실제 영업행위를 하려면 면허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
 - 조리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자격증을 시·군·구에 확인시키면 발급(식품위생법 제36조)
 - 이·미용사 면허의 경우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증을 시·군·구에 확인시키면 발급(공중위생법 제6조)
- ⇒ ① '08년 상반기까지 보건복지부는 국가기술자격증 주관부처인 노동부와 협의하여 통합운영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통합방안 마련 후 추진(보건복지부)
- ② 조리사 및 이·미용사 자격·면허증 통합방안 마련시 국민 보건·위생·안전 및 소상공인의 불편 최소화를 종합적으로 검토

(1)-4. 다중이용업소 등의 소방기준 위반시 처분 개선

- 2004. 5.29. 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은 방화문, 간이스프링쿨러, 방염물품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2006. 12. 7. 개정을 통해 노유자 시설은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투척용 등) 설치가 의무화됨.

* '다중이용업소' 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PC방, 찜질방 등을 말함

* '노유자 시설' 이란 노인정,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말함

-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는 2007. 5.30까지 3년간 유예, 노유자 시설의 소화기 설치는 2007. 6. 7까지 6개월간 유예

⇒ 6월 이후 지속적인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미이행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이행권고하고 그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소방방재청)

(1)-5. 각종 자격증·면허증 재발급 기관 확대

○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면허 발급 필요 (식품위생법 제36조)

-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최초 발급 시·군·구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발급 필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최초 발급 시·도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필요(시행규칙 제3조)

⇒ ① 조리사 및 이용사·미용사 면허증은 재발급 받기 쉬운 전국의 시·군·구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보건복지부)

- 단기적으로는 모든 시·군·구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하여 홍보 추진, 장기적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개선과 연계하여 전국 시·군·구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

⇒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발급은 재발급 받기 쉬운 전국의 시·도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건설교통부)

- 자격증 재발급 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시·도 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검토한 후, 중장기적으로 전국 시·도에서 자격증 재발급이 가능토록 추진

(1)-6. 소상공인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 예비군 전시작전 능력 향상 및 항방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예비군 훈련을 실시
 - 예비군들을 집합시킨 상태에서 안보교육을 2시간씩 실시
- 한편, 휴일훈련제, 훈련일 자율선택제 등 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일부 부대에서는 상기 제도들을 적용하지 않는 등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음
 - ⇒ 단기적으로는 훈련일정 자율선택제, 휴일 예비군훈련제 등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해 사이버훈련제 도입(2010년)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 및 추진(국방부)

(2) 소상공인 관련 금융 및 조세 등의 지원제도 개선

(2)-1.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 개선

- 소상공인은 신용도가 낮아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받기 곤란
 - 따라서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자금조달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료율은 보증액의 0.5~2.0%, 부분보증(지역신보 보증 85%, 은행 책임 15%)으로 운영, 사고발생시 변제해야 할 잠재적 지불액인 보증잔액은 3.4조원 수준
-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손실 최소화를 위해 보증자격을 너무 강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실정 (보증서 발급률 : 약 50% 수준)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 연체경력이 있는 기업, 사업성이 낮은 기업, 기존 대손발생 기업, 신용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은 보증을 제한
 - 담배 및 주류 중개업, 자판기사업, 보석 등의 도소매업 등은 보증제한 업종으로 규정
- ⇒ ① 골동품 소매업, 식당업 등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제한 업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중소기업청)

- ⇒ ②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업종 전환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이라면 당초 원리금 상환약정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2)-2.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잔액 증액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신용보증 재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과 재단연합회의 재보증재원에서 각각 50%씩 부담
 - * '03년까지는 신보 및 기보에서 재보증업무를 수행하였으나 '04년부터 재단연합회로 일원화
- 최근 전반적인 경기회복 추세 및 부동산담보대출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보증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재보증잔액의 증가가 보증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수요의 증가를 감안 하여 '08년도 재보증잔액 증액 추진(중소기업청)

(2)-3. 소상공인 단순경비율 조정체계 현실화

- 기장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세 납부시 국세청(기준경비율 심의위원회)이 정한 단순경비율에 따라 세부담 수준 결정
 - * 예컨대 제조업 및 숙박·음식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액이 4,800만원 이하의 경우 단순경비율(매출액 대비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간주)을 적용
- 단순경비율은 매년 “기준경비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나, 소상공인의 의견 반영이 미흡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소상공인의 업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단순경비율 조정에 잘 반영되지 않아 그 만큼 소상공인의 부담 가중
 - ⇒ ① 소상공인의 업황 및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07.10월 위촉위원 조정시 소상공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원(예 : 소상공인진흥원 등) 추가 (국세청)
 - ⇒ ② “기준경비율 심의회” 안전에 사전검토 기능강화를 위해 심의위원의 자료요청 시 국세청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

3.1.3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김동만 사무관(Tel. 2100-8824, brotherkdm@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최근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하여 창업 업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05년도에 법인설립 건수는 53천 건으로 '01년도 62천건과 대비하여 15%가 감소하였으며, 창업사업계획 승인 건수는 5백건으로 '01년도 16백건과 대비하여 69%가 감소하였다.

World Bank 는 'Doing Business 2007'을 통해 우리나라 창업분야환경을 175개 조사 대상국 중 116위로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각종 토지이용 규제강화 및 환경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개별입지 내 공장 설립이 감소하였다.

공장총량제로 인해 수도권 인근 지역 공장의 신축 및 증설이 제한('04~'06년 수도권 공장 허용량 856만㎡)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광역상수원의 경우 20km)에는 공장 입주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가 실시된 2003년부터 1만㎡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 용도지역에서의 공장신설 추이 >

(단위 : 건수)

	계획입지	개별입지							합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소계	
			1만㎡미만	1만㎡이상	계				
2001	1,997	1,043	3,518	156	3,674	139	6	4,862	6,859
2002	3,140	1,293	4,842	174	5,016	274	2	6,588	9,728
2003	4,267	1,192	2,615	258	2,873	181	1	4,247	8,514

	계획입지	개별입지							합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소계	
			1만㎡미만	1만㎡이상	계				
2004	5,717	947	1,997	277	2,274	204	8	3,433	9,450
2005	6,661	951	1,992	308	2,230	129	10	3,320	9,981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법인설립 규제로는 상법을 근간으로 공증인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서 법인설립 절차 및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즉 최저자본금(주식회사 5천만원, 유한회사 1천만원) 확보와 정관 및 의사록 공증, 주금 납입보관증명서 발급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공장입지 규제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근간으로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즉 공장은 공장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농지 및 산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환경입지 규제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등에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장의 특정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즉 상수원보호 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광역상수원 20km, 지방상수원 10km 등) 이내에 공장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점을 본다면 법인 창업 분야에서 법인설립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 상업 등기 등 12단계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World Bank, Doing Business 2007)

법인 설립시 행정절차는 상호검색, 인감제작(발기인, 회사), 공증(정관, 회의록),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발급, 법인등록세납부서 취득, 법인등록세 납부, 상업등기, 건강보험 가입, 국민연금 가입, 고용·산재보험 가입, 노동사무소 신고 등이다.

주식회사 최저자본금(5천만원)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나, 상대적으로 소규모 회사인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1천만원)은 유지하고 있다.

공장설립 분야에서 관리지역 1만㎡ 미만 지역도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전제로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05. 9월)하였으나, 사전환경성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이 과다하여 공장설립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난개발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연접개발 규제가 오히려 일부 지역 공장들의 소규모 분산 개발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및 수질오염총량제 등 신설 규제로 인해 공장 설립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임업진흥권역 내 산업(농공)단지 입지 제한으로 산간 지역이 많은 시·도의 경우 산업(농공) 단지 조성 부지 확보가 곤란하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창업 절차분야 규제개선

- 기본방향**
- ◆ 법인 설립시 주금납입보관증명 간소화
 - ◆ 소규모 법인 설립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
 - ◆ 유한회사 최저 자본금 폐지

(1)-1. 법인 설립시 주금납입보관증명 간소화

- 법인 설립등기시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비송사건절차법제203조)

*상법 제305조제1항은 회사설립시 주금납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금납입보관증명은 납입금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회사 자본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 가장 납입이 관행화되어 주금납입 확인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5,000만원)을 법인설립 등기에 소요되는 2~3일간 높은 이자(차입금의 0.5%수준)를 지불하고 차입하여 은행에 예치

*창업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90.2%가 가장 납입하고 있음을 응답(KIET, '05.5월)

- 최저자본금(5천만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회사의 자본금을 확인할 필요성이 희박해지고,
 - 특히, 소규모 주식회사는 개인기업과 유사하며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절차 간소화 필요
 - *일본은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발기설립의 경우에 한함)
 - ⇒ ① 자본금 규모 10억 미만 법인 설립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대표이사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개정 추진('07. 9. 법제처 심사 의뢰, 법무부)

(1)-2. 소규모 법인 설립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

- 법인설립 등기시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함 (도시철도법 제13조, 주택법 제68조)
 - *2006년 법인 설립에 따른 도시철도 채권 매입 규모 : 21억원(11천건)
- 신규 법인 설립시 채권매입을 강제하는 것은 창업 기업의 비용부담* 및 제출 서류의 복잡화를 초래
 - *대부분의 창업 기업들은 5만원권 채권 매입과 동시에 30%의 할인 수수료(15천원)를 부담하고 채권을 매각
- 향후 최저자본금이 폐지될 경우, 채권판매 규모가 줄어들어 실익이 없고, 오히려 행정 부담만 가중될 우려
 - ⇒ ① 자본금 1억원 미만 법인 설립시 채권구입 의무 면제
 - ☞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제8호 개정 완료('07.10.15.) 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12 부표제23호 개정 추진(~'08.6.30. 건설교통부)

(1)-3. 유한회사 최저 자본금 폐지

- 유한회사 최저자본금은 1천만원으로 규정(상법 제546조제1항)
- 상법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회사를 상정하는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5천만원)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 상대적으로 소규모 회사로 분류되는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1천만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상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신회사법)은 유한회사제도를 폐지하고 주식회사로 일체화
- ⇒ ① 유한회사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 ☞ 「상법」 제546조 개정 추진('07.9. 국회 제출, 법무부)

(2) 공장설립 입지분야 규제개선

- 기본방향**
- ◆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시 연접개발 규제 합리화
 - ◆ 산업(농공)단지 입지기준 완화
 - ◆ 강변여과수 시설 주변 공장입지 제한 합리화

(2)-1.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시 연접개발 규제 합리화

- 관리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은 3만 m^2 이내 규모만을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4항)
 -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국토계획법 제55조)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4항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 전체 개발부지(기존 개발부지+신규 개발부지)가 3만 m^2 를 초과할 경우 전체 부지에 대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함
- *농림지역은 3만 m^2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m^2 이상 개발 시에 수립

- 공장 증설 등으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요구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 공장안에 불필요한 도로를 개설하거나 제한면적(3만㎡) 이하의 소규모 분산 개발* 등으로 난개발 문제 초래
 - *개발구역간 20m 폭의 도로를 개설할 경우 연접제한 규제가 배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되어 분산개발 발생
 - ※ 제2종 지구단위계획(6개월 이상 소요) 수립시 기반시설 부지 및 시설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계획수립 용역비는 약 5천만원 소요
- 연접개발에 대한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발된 시기, 종류, 현지역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목만 변경된 경우에도 모두 연접개발의 합계로 인정

【사례】

기존공장(부지면적 1.1만㎡)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물량증가로 부지증설(1만㎡)을 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인근지역에 약 20년 전에 설립한 축사가 있어 그 축사 부지와 공장의 합계 면적이 3만㎡를 초과하여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공장설립이 불가

⇒ ① 연접개발 합리화 방안 마련 추진(~'09.5.31. 시안 마련 중, 건설교통부)

(2)-2. 산업(농공)단지 입지기준 완화

- 입업진흥권역*은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제8조제4항 및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9조제1항에 의해 산업(농공)단지 지정이 제한됨
 - *「입업및산촌진흥촉진법」 제19조(입업진흥권역의 지정)
 - 산림청장은 입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 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권역별로 입업진흥권역을 지정
- 경상북도, 강원도 등 입업진흥권역이 많은 지역*에도 최근 지방이전 기업의 증가에 따라 공장등록 인허가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업진흥권역 지정현황 (전국 127만 ha 지정)

	경북	강원	전남	전북	충북	기타	총계
진흥지역(ha)	28.7만	20.2만	20.7만	15.0만	17.9만	24.5만	127
총 면적(ha)	190만	166만	121만	81만	74만	364만	996
비율	15.1%	12.1%	17.1%	18.5%	24.2%	6.7%	13%

- 임업진흥권역은 산업(농공)단지 지정이 불가하여 공장설립 입지를 확보하기가 곤란

*강원도 기업유치 실적 및 신규 공장등록 현황

(단위 :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기업유치 실적	18	104	137	151	152	156	118
신규 공장등록	191	133	108	99	136	78	

*개별기업이 부지 이전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데 대부분은 부지확보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① 임업진흥권역에 산업(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 개정 (07.12.28. 건교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 제1항 개정 (07.12.18. 산자부)

(2)-3 강변여과수 시설 주변 공장입지 제한 합리화

○ 먹는물 수질개선을 위하여 유럽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취수(강변여과수*) 시설을 국내에 도입(2000년)

*하천 표류수가 장기간에 걸쳐 강변의 하천 바닥 또는 옆으로 뚫고 들어가 토양의 자정 능력에 의해 오염물질이 여과되거나 제거된 물로서 돌발적인 수질사고시 안정적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상수원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규제)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음

○ 강변여과수는 표류수와 달리 침하과정에서 BOD, 탁도, 세균 및 유해 물질이 자연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 강변여과수 취수시설을 표류수를 직접 취수하는 취수장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취수장으로부터 일정 유효거리 이내의 공장입지를 제한

(산업입지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7호)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7호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허거리 15km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허거리 1km이내인 지역에 공장 설립을 허가할 수 없음

⇒ ① 강변여과수 시설 주변 공장 입지제한의 적정성을 연구·조사하여, 표류수 취수장 시설 주변의 공장 입지제한 거리와 차등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개정 추진(~08.12.31. 시안 마련 중, 환경부, 건설교통부 협조)

(3) 공장설립 절차 및 기타 규제개선

- 기본방향**
- ◆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완화
 - ◆ 소규모 공장설립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면제
 - ◆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의 탄력적 운영
 - ◆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개발 계획기준 완화
 - ◆ 기반시설 유발계수 합리적 조정

(3)-1.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완화

○'05.9월 관리지역내 1만㎡미만 공장설립을 허용하면서 대상 업종을 제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요구하는 규제 신설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개발사업의 허가 이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
- 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협의기관(지방환경관서)에 협의 요청
-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30일(공장설립 시는 20일), 10일내 연장가능

-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1만㎡)설립까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중소기업체의 창업비용 부담 가중
 -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개발규모가 보전관리지역 5천㎡ 이상, 생산관리지역 : 7.5천㎡이상, 계획관리지역 : 10천㎡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공장
-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규제 강화로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한 규제완화 조치('05.9월)의 실효성 확보근거
 - ※ 공장부지 1만㎡ 개발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시 창업일수가 20~30여일 증가하고, 1천~1.8천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됨
 - ⇒ ① 계획관리지역내 부지 면적 5천㎡ 미만 공장 설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추진(~'08.3.31. 환경부)

(3)-2. 소규모 공장설립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면제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규모가 30만㎡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자연재해대책법」은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와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 대상 (건축면적 500㎡이상 공장)은 재해영향 검토 협의를 받도록 규정
 - ※ 자연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개발행위 허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공장의 승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개요】

- 검토 주요내용은 ①사업계획서 ②배수처리계획도, 사면경사 현황도 ③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사항 등
-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30일, 10일내 연장가능

- 개발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개발사업 및 공장설립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의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편익보다 비용이 과다
 - ※ 1만㎡공장 규모 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작성 비용은 8백~15백만원

- 부지면적 1만㎡ 미만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를 기본 매뉴얼화하여 한국 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대행
- ⇒ ① 계획관리지역내 부지 면적 5천㎡ 미만 공장 설립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면제
 -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별표1 개정 추진 (관계부처 협의 완료, 소방방재청)

(3)-3.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의 탄력적 운영

- 시장·군수는 지역 수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질오염총량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 내용, 오염부하총량 등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변경 시에도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 함
 - ※ 관련법령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6항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승인된 오염총량관리계획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제도임에도
 - 동일 권역내 총부하량 범위내에서 개발사업별 부하량을 조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까지도 환경부 승인을 요함
- 공장설립 등 개발행위가 적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업무처리가 필수적이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개발행위 추진이 지연됨

【사례】

경기도 K시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은 난개발 확산방지 및 첨단산업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승인 및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절차 이행에 상당기간(7개월)이 소요되어 공장입지가 지연되고 있음

- ※ 3대강(영산·섬진강, 낙동강, 금강) 수계법에서는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 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승인 절차 생략
- ⇒ ① 동일한 권역 내에서 할당된 총부하량의 변동 없이 각 개발 사업별로 부하량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에는

- 매 조정시마다 환경부 변경승인은 받지 않도록 하되, 연도별로 사업간 배출부하량 조정내역에 대하여 일괄 변경승인을 받도록 절차 개선
- 다만, 개발사업의 할당량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
 -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시행지역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등 업무처리지침」 제정 (환경부)

(3)-4.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개발 계획기준 완화

- 관리지역내 공장부지 3만^m 이상 개발시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국토계획법 제56조)
 -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기준규모(기준이상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 자연녹지지역 1만^m미만, 공업지역 3만^m미만, 관리지역 3만^m미만
- 관리지역내 3만^m이상 규모의 단일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 계획부지 중 부지면적의 10%~20%를 도로로 확보해야 함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2-1)
- 단일공장의 경우 공장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의 규모에 비해 의무 확보 도로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음
 - ⇒ ① 단일공장 설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로 확보 의무비율을 현행보다 완화
 - ☞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5-2-1) 개정 추진(시안마련 중, 건설교통부)

(3)-5. 기반시설 유발계수 합리적 조정

- 건축 연면적 200^m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토지 고밀도 이용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도입('06.7월)

【부담금 산정방식】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용지비용②)×건축연면적×부담률(20%)③-공제액④

①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58,000원/㎡('06년도,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

② 용지비용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평균/㎡)

③ 부담률 : 법령상 20%이며, 지자체장이 15~25%로 변경 가능

④ 공제액

· 공공시설분담금, 도로·상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 납부의무자가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 일부 공장시설과 판매 및 운수시설 등은 주택보다 높은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책정되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

※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주택 1.0, 판매시설 2.0, 운수시설 2.1, 공장 중 목재 및 나무제품 3.2, 펄프 및 종이제품 3.8, 비금속광물제품 1.9, 코크스 석유정제 3.2, 가죽신발 1.4

○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건축계획 수립시 세금이나 건축비, 건축규제보다 부담금을 더 큰 제약요인으로 지목

※ 건축계획 수립시 부담요인(대한상공회의소, '06.7월)

- 부지비용(36%), 부담금(21.9%), 세금(19.8%), 건축규제(14.5%), 건축비(7.8%)

⇒ ① 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공장시설 등의 기반시설유발계수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개정 추진(~08.3.31. 건설교통부)

3.1.4 소방·안전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김대현 사무관(Tel. 2100-8823, doma212@opc.go.kr)

가. 추진배경

각종 인증·검사, 안전기준 등 소방·안전 규제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규제」이다.

최근 국민소득 증대·가치의 다원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소방·안전 등 사회적 규제에 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소방·안전 규제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어 경제적 가치를 초월하는 정책적 중요성을 가짐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만을 근거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소방·안전규제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안전에 관한 기준을 설정(standard setting)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시 처벌(monitoring and sanction)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전기·가스·에너지·유해화학물질 등 각 분야별로 18개 개별 법률에서 소방·안전에 관한 규제를 규율하고 있다.

분야	법률	담당기관
소방·위험물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노동부
토목·건축시설물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교통부
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	산업자원부
전기	· 전기사업법	산업자원부
에너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집단에너지사용법	산업자원부
광산	· 광산보안법	산업자원부
승강기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자원부
유해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특히, 안전 및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공인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인증제도는 국가표준 기본법, 산업표준화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제품별로 개별법령에서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정 강제인증 39개 등 총 160개의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730여개의 인증·시험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규제대상(사업장, 업종, 건축물 용도 등)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강요하거나 규제수준을 지나치게 높이 책정하여 사실상 준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화재위험도가 낮으며 자체 화재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을 획일적으로 매년 실시

둘째, 매우 복잡한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규제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내부지침의 형태로 규정된 세부 기술적인 사항이 많아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규제 집행 소지가 크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건물내부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기설치된 옥내 소화전 외에 추가적으로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기설치된 옥내소화전의 규격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소방관서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실정

셋째, 보다 완화된 규제수단을 통해서도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이라는 규제목적의 달성이 가능함에도 강화된 규제수준을 지속하거나 규제의 형식적인 준수 여부를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주유소의 경우 저장탱크 및 배관 등에 대한 누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

다. 주요 개선내용

(1) 획일적·중복적 규제의 개선

(1)-1 자체 소방점검 실시대상 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특정소방대상물: 법령이 정하는 근린생활·문화집회·판매·숙박·교육시설, 공장 등

**소방시설등: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의 소화시설과 비상구 등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

- 이 경우 소방점검은 소방시설의 종류, 연면적 등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함

※ 소방점검의 방식(소방시설의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점검구분	점검내용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작동기능 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방화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연 1회 이상
종합정밀 점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이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스프링롤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는 연면적 5천㎡ 이상이고 16층 이상일 것	-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 기술사	연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경우 2년간 면제 가능

○ 그러나 신축건축물의 경우, 해당 소방시설이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음에도 다시 자체 소방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어 건축주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

○ 아울러, 현행 법령상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2년간 종합 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

- 소방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방화관리능력, 화재위험도 등에 따라 소방점검의무를 차등화(일정기간 면제 등)할 필요

- ⇒ ○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신축건축물인 경우에는 1년간 소방시설 점검을 유예하도록 개선
 -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도, 방화관리능력 등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의무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마련·시행
- ※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면제요건·절차 등을 구체화
- ☞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등 (소방방재청)

(1)-2.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 주기의 차등화

-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시 또는 보험계약갱신(매년)시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화재 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16조)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 및 건물내 타인의 사망 혹은 부상에 대해 소유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배상할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특수건물(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은행·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아파트는 16층이상)
 -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물 등
 - 공연장·병원·관광숙박업·농수산물도매시장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이상인 건물
 - 학교건물·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이상인 건물 등

- 그러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과 같이 안전시설의 연도별 변화가 적거나 자체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매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건물 관계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불합리함

※ 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을 토대로 화재위험도지수를 산출하여 보험요율 산정 등 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나, 자율적으로 화재안전관리를 잘하는 건축물의 경우 매년 점검을 받아도 추가적인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화재안전관리가 미흡한 건물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건물의 안전도에 따라 안전점검주기를 차등화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결과 안전등급이 우수한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16조 개정(재정경제부)

(1)-3 합성수지류 저장기준의 완화

-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합성수지류는 화재발생시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 가연물로서 저장·취급시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소방기본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합성수지류(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 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
- 합성수지(PE/PP), PTA(고순도테레프탈산) 등 합성수지류는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
- * PP(polypropylene : 폴리프로필렌), PE(polyethylene : 폴리에틸렌), PTA(polyethyleneterephthalate : 고순도 테레프탈산)

【특수가연물(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품명별 지정수량 이상의 가연물
- 나무껍질 및 대팻밥(400kg이상), 냇마 및 종이부스러기(1000kg이상), 가연성 고체류(3,000kg이상), 석탄·목탄류(10,000kg이상), 가연성 액체류(2㎡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10㎡이상), 합성수지류(3,000kg이상, 단, 발포시킨 것은 20㎡이상)

- 이에 따라 특수가연물인 합성수지류는 50㎡이하의 바닥면적에 높이 10m 이하가 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각 적재부분은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저장하여야 함

※ 합성수지류 저장창고 평면도(소방기준법상 저장기준 준수시)



- 그러나 합성수지류의 미끄러지는 성질로 인해 5m이상 적재할 수 없어 현행 기준 중 높이기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는 반면
- 적재면적 제한(50m²이하) 및 간격 유지(1m이상)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적재 공간의 비효율적인 활용 초래

【합성수지류 제조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물류관리의 중요성】

- 석유화학산업인 합성수지류 제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제조설비의 가동(Start up) 및 정지(Shut down)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365일 24시간 항시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 시장수요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물류관리(적재창고 운영)가 중요

- 아울러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polyethyleneterephthalate) 등 합성수지류 중 고분자 화합물은 인화점이 매우 높아 화재위험이 낮으므로
- ※ 고분자 합성수지류의 인화점 PE/PP: 316 °C, PTA: 260 °C
 - 업체의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위해 현행 저장기준을 완화할 필요
 - ⇒ 합성수지류에 대해서는 현행 특수가연물 저장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개선
 - ※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적재면적)을 200m²로 확대, 필요시 대형수동식소화기 혹은 살수설비 설치의무화
 -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개정(소방방재청)

(1)-4. 특수건강진단체도의 합리적 개선

-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법령이 정하는 유해인자(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 화학인자 : 가솔린, 에틸벤젠, 크실렌, 톨루엔 등 유기화합물 108종, 수은 등 금속류 19종, 황산 등 산 및 알카리류 8종,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 물질류 14종, 석면 등 허가대상물질 13종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에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그러나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등의 실시 비용뿐만 아니라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등의 추가적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특수건강진단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
 -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가 미흡해 지는 문제 발생
-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 ⇒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09년 상반기 중 추진
 - ※ 필요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조항 신설(노동부)

(1)-5. 안전관리우수업체 압력용기의 검사주기 연장

○ 압력용기*의 검사주기는 용기의 특성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3개 법령에서 2~4년, 4~10년으로 각각 상이하게 규정

*압력용기 : 제조소등에서 일정압력 이상의 물질을 취급하는 용기

※ 법령별 정기/안전검사 주기

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고압가스 취급 용기	연료 및 열사용 용기	기타 용기
검사주기	4 - 10년 (재검사 주기 산정결과에 따라 최대 10년)	2 - 4년 (위험등급 최저등급 1년, PSM/SMS사업장 최대 4년)	2 - 4년 (PSM사업장 4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06년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선진기술 도입 및 적용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압력용기의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정비

- 기업은 현실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년 검사 주기에 맞춰 검사 준비와 생산계획을 수립하며,
- 검사를 위해 공정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 막대한 생산 손실 초래
 - ⇒ 부식물산정기법, 위험성판단기법 등을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업의 경우 엄밀한 평가에 따라 압력용기의 검사주기를 연장(예 : 최대 8년)하는 방안 마련
 -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별표9 및 압력용기안전검사유효기간에관한업무처리규정 개정(산업자원부)

(1)-6. 업체별 안전관리수준에 따른 보일러 검사주기 차등화

- 석유화학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매 2년마다 가동 중지하지 않고 운전중 검사가 가능한 반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1년마다 공정을 중단하고 정기검사(개방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다만, 15년이내의 보일러로서 정해진 수질기준에 따라 운전시 최대 3년까지 검사 유효기간을 인정

【에너지관리공단의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설치후 15년 이내의 보일러 : 최대 3년까지 개방검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음
 - 15년 초과된 보일러는 매년 가동을 중단하고 개방검사를 해야 함
- ▶ 국내 석유업체의 보일러 103기중 46%가 15년을 초과하여 운전중

○ '05. 8월 이전에는 기업별 안전성향상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개정으로 1년으로 강화한 것임

○ 기업별 안전관리실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검사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에 따라,

- 안전관리 우수사업장도 매년 보일러의 가동을 중지해야 하므로, 제조공정상의 경제적 손실 발생

⇒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실태(위험성판단기법 등)에 따라 보일러의 검사주기를 차등화(예 : 최대 4년)하는 방안 마련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별표9 및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24.3.3 검사주기 개정(산업자원부)

(1)-7. 지역 난방설비 통합검사 시행

○ 지역난방사업자의 난방설비 등 열공급시설은 매년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계속 사용 검사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각각 받아야 함

※ 검사대상 및 관련법규

구 분		시 설	검사주기	관련법규
열공급시설 정기검사		열원시설*, 열배관시설	1년	집단에너지사업법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	성능검사	열원시설 (가동중 검사)	1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안전검사	열원시설 (가동정지후 검사)		

*열원시설 : 보일러, 열교환기 등 물, 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냉각하는 기기

○ 수검부담 완화를 위하여 계속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일선에서는 아직도 1~2개월 안에 중복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시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 할 필요

- ⇒ ① 계속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통합시행지침 마련
 ②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사 예고시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실시
 ③ 정기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신청서 서식에 통합실시 안내문 명시
 ☞ 통합시행관련 지침마련 (산업자원부)

(1)-8. 소방관련 검사의 통합 시행근거 마련

- 소방서장 등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각 출입·검사와 소방검사를 실시
 - 출입·검사는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소를, 소방검사는 출입·검사 대상이외의 일반건축물, 차량, 선박 등에 대해 실시

※ 소방관련 검사 비교

구 분	소 방 검 사	출 입·검 사
관련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검사권자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검사대상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공작물 등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지정수량이상)
검사주기	연 1회 이상	필요시(수시)

*숙박업소 등의 경우 지하층의 보일러실과 유류탱크는 출입·검사 대상이며 이를 제외한 건축물은 소방검사 대상

- 소방방재청장은 수검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대상시설에 두가지 검사 대상인 경우 동시에 시행토록 일선 소방서에 대해 지도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미흡한 실정
- 소방검사와 출입·검사 시행의 동시시행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검 편의 제고 필요
 ⇒ 연간 소방계획 수립시 소방검사와 출입검사가 동일한 시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및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에 관련규정 신설(소방방재청)

(1)-9. 기인증제품의 안전기준 변경시 유예기간 연장

-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기 인증제품은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부칙)후에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
 - 안전인증 대상품목이 전선에서 비디오까지 247개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6개월의 짧은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일부 제품의 경우 새로운 기준에 맞는 제품생산에 애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원용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등

* 11개분류, 247품목

- 미국 UL*이나 유럽의 강제규격(CE) 등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유예기간(1~3년)을 설정·부여함에 따라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UL(Underwriters Laboratory) 미국의 민간인증기관으로 제품별 규격 및 시험 기준을 만들어 규격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UL마크 사용자격 부여

【UL의 품목별 유예기간 부여 현황】

LCD TV(1년6개월), 세탁기(Washing Machines, 2년), 제습기(Dehumidifiers, 2년 6개월), 조리기구(Food-Preparing Machines, 3년)

- ⇒ 안전기준 변경시 업계의 제품설계, 생산 등을 고려 품목별로 충분한 유예기간 (6개월→1년~3년)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
- ☞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유예기간 부여방안 마련(산업자원부)

(1)-10. 액화석유가스 공인검사기관에 대한 중복 지도감독 간소화

- 공인검사기관은 LPG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등 LPG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동 검사업무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업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도·확인을 받고 있음
- 액화석유가스법에서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지도·확인을, 고압가스법에서는 기술 표준원의 KOLAS인정 사후관리를 받도록 규정

【기술표준원의 KOLAS 인정 사후관리 내용】

-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2007-108호)
 - 사후관리 시기: 최초 인정후 12개월-18개월-18개월 (유효기간: 4년)
 -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 기준 (KS A17020: 2000) 확인
 - 검사분야별 추가 인정기준, 측정결과의 소급성유지를 위한 지침 등

【가스안전공사의 지도·확인(년1회 이상) 내용 - 검사기관 지도·확인 업무처리지침】

- 검사의 적정시행여부 확인, 검사장비 유지관리 실태 확인, 기술인력 확인, 검사결과 처리 적정성 확인, 각인관리의 적정성 확인

- 그러나 지도·확인 및 사후관리 시기가 서로 상이하고, 평가 항목이 중복되어 이를 간소화할 필요
 - ⇒ 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지도·확인을 KOLAS인정 사후관리 주기와 연계하여 통합 시행(연 1회이상 → KOLAS주기(첫해 12개월, 이후 18개월), 별개 실시→동일한 시기)
 - ⇒ 지도·확인 항목과 KOLAS인정 사후관리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가스안전공사의 지도·확인 간소화(KOLAS 검사항목과 중복되지 않은 내용만 점검)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1호에 의한 검사기관 지도 확인 업무처리지침(가스안전공사) 개정 (산업자원부)

(2) 복잡한 규제 내용 및 절차 개선**(2)-1.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업무의 합리적 조정**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중사하도록 하는 사업주는 업무로 인한 신체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이하,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다만, 근골격계 질환자의 발생, 새로운 작업·설비의 도입, 업무량·작업공정 등의 변경시에는 지체없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이하, 수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아래의 작업 등 11가지가 이에 해당됨 (단,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내지 제144조)】

○ 유해요인조사의 구분

- 정기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상황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조건(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에 대해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 부터 1년 이내 실시)
- 수시조사 : ①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②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③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유해요인조사의 방법

-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되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그러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상당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수시조사의 사유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

【일부 업체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비용】

- A업체 : '07년 정기조사시 약 780여명의 조사인원을 투입하여 20여일간 약 8,000여개 공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 약 12억원 소요
- B업체 : '04년 정기조사시 약 6,000여개 공정에 대한 조사 실시, 약 7.5억원 소요

- 특히, 노후기계의 교체, 제조공법의 변경, 지속적인 제품 개선(모델 변경), 시장 수요에 대응한 업무량 변화, 노사협약으로 인한 작업인원 조정 등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이나
- 현행 법령에 의하면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의무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 조사의무 불이행시 벌칙(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일본·미국 등의 경우 지침(guidance) 형식으로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권고

○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간의 기능 배분 및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수시조사의 사유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09년말까지 노사합의를 거쳐 수시조사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 산업보건에관한규칙 제143조 제2항 개정(노동부)

(2)-2. 옥내·옥외소화전의 건물내부 중복설치 의무 완화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천㎡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물내부에, 옥내 소화전 뿐만 아니라 옥외소화전*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 (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옥외소화전을 건물내부에도 추가설치하게 함에 따라 옥외·옥내소화전은 설치부분 (건물외부/내부)이 아닌 방수구 규격차이(65mm이상 / 40mm이상)로 구분 따라서, 현행 규정상 소화전은 ①옥내소화전, ②건물외부의 옥외소화전, ③건물내부의 옥외소화전으로 구성

※ 옥내·옥외소화전 설치기준(화재안전기준 102 제7조, 화재안전기준 109 제6조)

옥내소화전	건물내부에 수평거리 25m이하의 간격으로 방수구 구경 40mm이상의 옥내소화전 설치
옥외소화전	건물외부에 수평거리 40m이하의 간격으로 방수구 구경 65mm 이상의 옥외소화전을 설치(다만, 건물외부의 옥외소화전으로부터 40m이상 떨어진 건물내부에는 방수구 구경 65mm 이상의 옥외소화전을 40m이하의 간격으로 추가 설치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물내부에 옥외소화전을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건물내부에 기 설치된 옥내소화전과 중복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 *건축물 증축으로 건물외부의 옥외소화전으로 부터의 거리가 40m이상 떨어진 건물내부 공간이 발생함에 따라 건물내부에 옥외소화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특히, 제조공장은 각종 구조물과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옥외소화전의 추가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 규정준수를 위해 무리하게 설치할 경우 생산 공정에 간섭현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 건축물의 증축 등으로 건물내부에 옥외소화전을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의 규격 확대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 ☞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옥외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개정 소방방재청)

(2)-3. 방화관리자 선임의무 안내제도 도입

- 방화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방화관리대상물)의 신·증축, 용도변경시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양수·경매 등으로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선임사실을 신고 하여야 함(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1·2급 방화관리대상물)】

- 1급 방화관리대상물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등을 방화관리자로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① 연면적 1만5천㎡ 이상, ② 층수가 11층이상,
 - ③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방화관리대상물 : 건축사·건축기사·산업안전기사 등을 방화관리자로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1급 방화관리대상물 제외)
 - ex.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
 - *특정소방대상물 : 법령이 정하는 근린생활·문화집회·위락·숙박·교육시설, 공장 등

○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소방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방화관리자 선임 및 신고의무에 대해 관할 소방관서로부터 안내 받을 수 있으나

- *소방동의 절차 :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 포함)의 경우 시·군·구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양수·경매 등에 의한 취득시에는 양수자 등 권리취득자가 방화관리인 선임의무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규제의 준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

【선임 및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칙】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및 제53조)

- 방화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무신고), 200만원(허위신고)

⇒ 방화관리대상물의 양수자·경매낙찰자 등에 대한 방화관리인 선임의무 사전 안내 방안 마련

☞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개정(소방방재청)

(2)-4. 이동식 물류설비에 포함된 위험물 취급소의 구조기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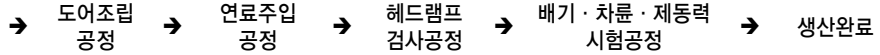
○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정이 다른 작업 공정과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 규정하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4)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요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II. 2.)】

- ① 내화구조로 할 것 ②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감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 그러나 제품의 특성상 이동식 물류설비(컨베이어) 등에 의해 연속적인 제조공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공정에 대해서 별도의 방화벽을 설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이동식 물류설비에 의한 자동차 제조공정 사례】



- *연료주입공정 : 시동을 건 상태로 이루어지는 배기시험 등의 실시를 위해 제조중인 차량에 연료를 주입하는 공정으로 방화벽을 설치해야하는 위험물 취급시설
- *배기시험 : 시동을 건 상태에서 차량의 머플러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검사 하는 공정
- *차륜·제동력 시험 : 제자리 주행을 통해 차량타이어의 흔들림, 솔림현상 및 타이어의 바닥 접지상태(각도), 브레이크 제동력을 검사 하는 공정

- 현행 건축법령도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같이 건축물의 안전 및 방화를 위해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의 설치 등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 물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의 건축물 구조에 대한 규제도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음

【건축법상 방화구획 설치의무 완화적용례(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연면적 1천㎡ 초과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각종방화문으로 구획(방화구획)하도록 규정(단, 공장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천㎡이상)
- 그러나 ①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②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 적용

- ⇒ 이동식 물류설비(컨베이어)로 인하여 방화구획이 불가능한 위험물취급소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필요시 소방설비의 추가설치방안 검토
 - ☞ 이동식 물류설비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소 구조기준에 대한 지침 시행 (소방방재청)

(2)-5. 분무도장 작업장의 설비기준 개선

- 분무도장작업을 위한 위험물 일반취급소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설치하여야 함(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4 및 별표 16)

*망입유리(wired glass) : 철망을 삽입하여 방염성과 내충격성을 향상시킨 유리

○ 그러나 기계화된 분무도장공정은 공정관리자가 내부 작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 따라 망입유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작업 수행이 곤란

- 또한 외국의 경우 망입유리 뿐만 아니라 강화유리*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보조 소방 설비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강화유리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

*강화유리(tempered glass) : 특수열처리 과정을 거쳐 표면을 압축하고 내부를 인장(引張)하여 강화한 안전유리로 주로 항공기·자동차 등에 사용

⇒ 분무도장작업장 내부의 작업상황을 관찰·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분무도장작업장 설비에 관한 지침 시행(소방방재청)

(2)-6. 위험물시설과 보호시설간 안전거리 일원화 방안 마련

○ 위험물시설*과 보호시설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규정

【위험물 종류 및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 종류 : 인화성액체(석유류, 알코올류 등), 산화성고체(염소산염류 등), 가연성고체(유황 등)
- 시설 :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그러나 동일한 위험물시설과 보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령간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이 상충되어 혼란을 야기

- 위험물안전기본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10~30m 이상을, 학교보건법 등 보호시설 관련 개별 법률에서는 학교, 보육시설, 공동주택의 안전을 고려 통상 50m 이상을 두도록 규정

【위험물시설 관련 법상 안전거리】

관계 법령	이격거리(m)	위험물 시설	보호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30	위험물제조소등	학교, 병원, 유치원 등
	20	위험물제조소등	동종 위험물제조시설
	10	위험물제조소등	주거용 주택

【보호시설 관련 법상 안전거리】

관계 법령	이격거리(m)	위험물 시설	보호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50 25 25-30	위험물제조소 등 주유소 천연가스충전소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등(보육시설제외) 공동주택 등
영유아보육법	50	위험시설	보육시설
학교보건법	50	위험시설	학교

○ 특히, 주유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거리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보호 시설 관련 개별 법령에서는 50m이상 두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

⇒ '08년중으로 소방방재청이 주관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 협조하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안전거리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통일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및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관련 법령 정비 (소방방재청 주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협조)

(2)-7. 안전인증 표시 절차 간소화

○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인증기관**에서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247개품목,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교류전원이 50볼트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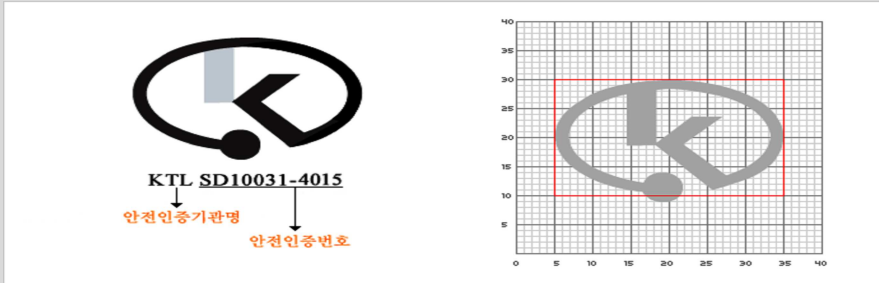
**안전인증기관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파연구원

- 용기와 포장의 표면에 안전인증 표시(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번호)를 하여 출고 (통관) 하여야 함

○ 안전인증표시 기호 구성체계는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되어 있으나

【안전인증번호 기호구성 체계】

전기용품제조업자 지역구분, 전기용품 종류, 제조공장일련번호, 승인연도 등



- 안전인증기관에서 부여받아 표기를 하여야 함에 따라 인증 신청부터 승인까지 장기 소요(통상 45일 이내)되어 적기 생산·출고가 곤란하여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애로

【안전인증처리 절차】

- ①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 → ② 공장확인, 제품시험 등 안전인증심사 →
- ③ 안전인증서 발급 → ④ 안전인증서 표시

*처리기간은 45일 이내, 단 시험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험기간 만큼 연장 가능

⇒ 제품 적기 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例 : 안전인증번호 사전부여, 제조자 지정 모델명 안전인증표시 등)

☞ 안전인증기관에 관련 지침 시달(산업자원부)

(3) 과도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의 완화

(3)-1. 과도한 승강기 안전점검 의무의 완화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산업자원부장관(검사대행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7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

승객용 엘리베이터(승객용, 침대용, 승객·화물용, 비상용 등), 화물용 엘리베이터(화물용, 덤퍼이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등

-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는 자체점검을 승강기 보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매월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의 정기검사를 매년 받아야 함에 따라 업체 부담 가중
 - 특히, 소형 화물용 승강기(덤웨이터)까지 공공건물의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동일한 점검·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 필요

【소형 크레인 안전검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 와이어로프에 중량물을 매달아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소형 크레인의 경우 사용이 빈번하고 작업자가 직접 조작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주기로 자체검사와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노동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자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유효기간 2년)

- 승강기의 용도(화물용/승객용)·사용빈도·설치장소(사업장내/공공건물)·유지보수 능력(전문업체 위탁여부)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에 대한 점검·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 ○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의 경우에는 자체점검 및 정기검사 주기를 확대(자체점검: 매월→3개월, 정기검사: 매년→2년)
- 정기검사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은 승강기 자체점검을 면제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개정(산업자원부)

(3)-2. 소방관련 점검결과 보관의무의 개선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 법령이 정하는 근린생활·문화집회·위락·숙박·교육시설, 공장 등
-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일반음식점·제과점·의원·학원 등,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등, 위락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등, 숙박시설 중 호텔 등, 공동주택 등이 이에 해당

* 소방시설 등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의 소화시설과 비상구 등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

* 자체점검결과 보관의무 위반시 과태료 : 100만원

-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매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

* 보관의무 위반시 과태료 : 50만원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 면적 100㎡이상,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 그밖에 영화상영관, 학원, 목욕장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등
- * 안전시설 등 :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

- 점검결과 보관의무는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시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 규제의 목적이거나
- 보관의무로는 점검결과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소방관서에 제공되지 못하므로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합함
- 또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은 최근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점검결과 보관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국민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이므로 개선 필요
- ⇒ 관련 민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이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점검결과 보관의무는 폐지

- ※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09년까지 시행하되 시스템 구축전까지는 현행 유지
- ☞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개정(소방방재청)

(3)-3.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의 합리화

- 근로감독관은 최근 1년간 조사대상 중대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전반적인 법령위반사항 점검, 시정명령, 위반자 수사를 위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근로관 직무규정 제9조)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조사대상 중대재해 :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것을 제외한 중대재해

-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 업종, 근로자의 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최근 1년간 중대재해 2회 이상'이라는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자 보호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수가 많아 근로감독대상 사업장으로 빈번하게 선정되고 있는 실정

⇒ 사업자의 부담완화 및 효율적인 근로감독을 위해 사업장의 규모·업종·재해율·근로자 안전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감독대상 선정기준을 마련·시행

(예시) 근로감독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중 중대재해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한정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9조 개정(노동부)

(3)-4. 위험물운송자 관련 자격중 후대의무 개선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안전교육 수료증을 휴대할 의무를 부담(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제3항 및 제39조 제1항 9호)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별표 9 과태료부과기준)

○ 그러나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 유무는 소방안전협회를 통해 자격증 보유여부 및 교육 수료 사실 등을 확인 가능하므로 불필요하게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후대의무의 폐지 필요

⇒ 관련 자격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 유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등에 대한 후대의무 폐지

※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09년까지 시행하되 시스템 구축전까지는 현행 유지
 ☞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제3항, 제39조 제1항 9호 개정 (소방방재청)

(3)-5.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완화

○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주유소에 대하여 기존의 토양오염도검사(시설부지) 외에 '06. 7월부터는 10년이 경과한 경우 누출검사(저장시설, 배관 등)도 병행 실시

※ 토양오염도검사 대상시설 : 석유류,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
 ※ 토양오염 검사 종류(토지환경보전법)

구 분	대 상	검 사 주 기	검사방법
토양오염도검사	석유류, 유독물의 제조·저장시설 등의 부지	5년까지 : 2회 5~15년 : 2년마다 1회 15년이후 : 매년	채공시료채취
누출검사	석유류, 유독물 제조·저장탱크, 배관 등	10년 경과시 : 6월이내 - 직접방법 : 6년마다 - 간접방법 : 4년주기	직접(개방)방법, 간접방법

○ 기존에 15년이 경과한 주유소의 경우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누출검사 실시, 토양오염도검사의 실효성 제고 등으로 매년 실시하는 검사를 완화할 필요
 - 10년이 경과한 주유소의 경우 누출검사로 탱크 및 배관의 누출여부 확인 가능
 - 토양오염도 검사과정에서 배관누공사고 보상처리를 위해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검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07.11시행)

*시료채취비 공당 52,620원→91,900원 '07. 11.18부터 시행

- 주유소 설치시 사전오염방지설비(배수구,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로 주유과정에서의 넘침, 흘림 등에 의한 오염 사전예방 가능

○ 미국, 일본 등의 경우 두가지 검사를 동시 시행하지 않으며 누출검사 등으로 이상 확인시 정밀검사차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

▶ 미국: 부식방지, 누유감지시설 등 설치, 10년미만(5년마다), 10년경과(누출모니터링 구축 매년 월1회 모니터링 실시)로 구분 실시

▶ 일본: 지하탱크 및 배관은 15년 미만(5년후 1회, 그 이후 3년마다 1회), 15년 이상(매년 검사, 이중탱크 등은 3년마다) 구분 누출검사 실시

⇒ 15년이 경과한 주유소의 경우에도 누출검사 실시 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를 완화(현행 매년1회 → 우려기준의 50% 미만시 익년도 검사 면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환경부)

(3)-6. 공인검사기관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 허용

○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 등은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등을 수행

- '02.7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가스안전 공사의 기술검토 등 일정요건 충족시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 시행령 개정이후 이러한 요건 외에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KOLAS인정을 지정 요건에 추가 포함

【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에 설치된 인정기구로 국제기준에 의거 교정기관,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

▶ 철저한 시험 및 평가에 의해 인정되며, 4년마다의 갱신평가, 12~18개월 마다의 사후관리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안전성 등을 유지관리

○ 이에 따라 공인검사기관은 KOLAS 인정을 위해 추가적인 인력확보 및 인정 수수료 등으로 재정부담이 증가

【공인검사기관 지정요건으로 KOLAS 인정 추가로 인한 부담 증가】

- ▶ 인력 : 기관당 2인 채용 → 5인 채용(3명 추가인력 소요)
- ▶ 비용 : 인정획득 및 4년마다의 갱신평가에 약 800~1,500만원 소요 그 외 12~18개월마다의 사후관리평가에도 150만원 내외 소요

-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술표준원으로부터의 국제기준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으로의 인정 등 철저한 요건하에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나,
 - 각종 안전검사 등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독점 위탁 실시중이며

【가스안전공사 위탁 업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2조제1항)】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 액화가스공사의 공정별 안전성 확인, 완성 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등 11개 업무

- 가스용품검사, LPG 사용시설 정기검사 등 일부 업무에 한해 가스안전공사와 공인 검사기관에 병행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검사기관 병행업무】

가스용품검사(수입가스용품검사 제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등 3개 업무

※ 검사기관 현황 : 전문검사기관 44개, 공인검사기관 15개(냉동설비검사기관 제외)

- 특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중 특정사용시설의 경우 액화가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정기검사를 가스안전공사나 공인검사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가스안전공사에만 검사신청을 하도록 한정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 유치원 등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석유를 사용하는 경우
- ▶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등

-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업무를 독점 위탁하고 있어 공인검사기관 등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

※ 공인검사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의한 KOLAS 인정을 받고 있어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충분히 수행 가능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등 검사업무를 가스안전공사 이외의 공인검사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개정(산업자원부)

(3)-7. 액화석유가스 용기밸브 재사용 확대

○ 125ℓ 미만의 LPG용기에 부착된 밸브는 당해 용기의 최초 검사시 폐기토록 의무화
 - 20년이상 경과된 LPG용기에 부착된 밸브의 경우, 1년마다 밸브를 새로이 교체

○ 이에 따라 밸브의 수명이 밸브의 내구성이 아닌 부착된 용기의 검사주기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 초래

- 전문연구(한국가스학회) 결과 당해용기의 재검사를 위해 밸브를 탈착시에도 밸브의 재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탈착여부에 관계없이 5년동안 사용 가능

- 그러나 O-Ring, 밸브패킹의 내구연한에 대한 품질인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

○ 최근 황동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나 밸브의 작동 상태나 안전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200여억원)가 발생

【밸브가격】

▶ '05. 6월 2,900원 → '06.6.1. 현재 6,600원

▶ '05. 5월대비 '06.6월 현재 밸브 교체비용 150여억원 증가

○ 이에 반해 미국·일본은 부착된 용기의 검사주기와 관계없이 밸브 사용연한을 5년으로 설정

⇒ 용기 밸브의 품질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3~5년)후 밸브패킹 등의 품질 제고와 함께 LPG용기밸브의 사용기간을 연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제1호 비고5 개정(산업자원부)

(3)-8. 액화석유가스 사이폰 용기 재활용 확대

- 집단급식소, 대형식당 등 액화석유가스 수요가 많은 시설(대형 수요가)에서는 안전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반용이 아닌 사이폰용기(50kg)를 사용하고 있음

【액화가스용기 종류】

- ▶ 사이폰(Siphon) 용기 : 용기내 액화석유가스가 액체상태로 방출되어 기화장치를 거쳐 열기구에 공급되는 형태
- ▶ 일반용기 : 일반용기는 액체상태로부터 자연 기화되는 용기, 가정용

- 최근 대형식당 등이 사이폰 용기가 필요없는 자가용 소형탱크(500ℓ 이상)를 많이 설치함에 따라,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중고 사이폰 용기가 늘어나는 추세임
- 사이폰용기를 안전하게 개조하여 일반용으로 사용하여 자원효율성 제고 필요
⇒ 사이폰용기를 안전조치(액화석유가스가 액체상태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일반 용기로의 재활용을 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가목 개정 (산업자원부)

3.2 물류·유통

3.2.1 항공운송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김주경 전문위원(Tel 2100-8798, jookkim@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개방된 경쟁시장인 항공운송산업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 및 고객신뢰도 제고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며 국내 항공사의 경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와 자체 안전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제항공안전기구인 IOSA로부터 2년 연속 무결점 인증을 득하는 등 안전운항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며 1990년대 말에 발생한 항공사고를 계기로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해 규제 또한 강화되었으나 타 운송산업 분야에 비해 엄격하여 항공업계에 경영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 항공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해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며 GLOBAL STANDARD를 감안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정부규제에서 탈피하고 항공운송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항공운송 관련 기본법으로는 항공운송사업면허, 항공기등록 및 운항을 규정한 「항공법」(건설교통부)이 있으며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건설교통부), 「출입국관리법」(법무부), 「관세법」(재정경제부) 등 21개 법률에 근거하여 총 145개의 규제가 있다.

공항의 운영·관리, 항공정비·운항 분야에 과도한 규제가 존속하고 있는데 예로 자가용항공기의 이착륙 허용시간대가 일반여객기의 시간대보다 짧아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단계와 실시계획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설계도서를 요구하고 있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적 기준보다 엄격한 제도 운영으로 항공정비사와 항공조종사 형식한정자격 시험제도 등이 경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항공사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비행경력 있는 신입조종사의 대형기 직접 배치가 제한되어 대형기 조종사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운임신고제 노선의 경우에도 신고수리 절차를 거치도록하여 인가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수리용 항공부품에 대한 관세 담보제공 의무, 일시회항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엄격한 출입국관리 등 획일적 운영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공항운영·관리규제 합리화

- 기본방향
- ◆ 공항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 공항시설 운영·관리규제 개선

(1)-1. 자가용 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착륙 이용시간 확대

○ 자가용 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착륙(운항) 허용 시간대가 일반여객기의 이착륙 허용 시간대보다 짧아 불편 발생

*김포공항 일반여객기 운항허용시간 : 06:00~23:00

자가용 항공기 운항허용시간 : 07:00~22:00

⇒ 자가용 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착륙 허용 시간대를 일반여객기의 이착륙 허용 시간대와 동일하게 확대 (건설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1)-2. 공항개발사업의 승인서류 간소화

○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 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고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공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서류

1.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 1부.
2. 총사업비 및 산출내역서 1부.
3. 사업자금 조달계획서 1부.
4. 1/5,000이상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류

1.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공사설명서
3.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4. 공사예정표
5.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자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6. 환경영향평가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사업초기 단계인 시행허가 신청시에 세부적인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 허가내용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 등 절차복잡 및 공사 추진에 애로

- *설계도서의 종류(건축법) : 지방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구조계산서
- 실시계획 승인시에도 설계도를 요구하여 중복제출문제 발생
- ⇒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시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실시계획 신청시에는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조치
- ☞ 항공법시행규칙 제265조 개정 (건설교통부)

(1)-3.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대상사업기준 완화

-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와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범위】

1.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2. 냉난방·운송·승강·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
3. 영 제10조제1호의 각목 중 항행안전시설, 통신시설 및 전력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
4. 토목시설의 유지·보수사업. 다만, 활주로·유도로·계류장의 포장개량공사가 수반되는 것을 제외

-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한국공항공사가 신속하게 유지보수를 해야 할 사업의 지연 우려
 - 항행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Land-side지역의 캐노피 설치,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주계단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까지 승인 받도록 과도하게 규제
 - ⇒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
 - ※ 예 : 항공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land-side지역에서의 캐노피의 설치와 건축물의 대수선 등
 - ☞ 항공법시행규칙 제265조의2 개정 (건설교통부)

(1)-4. 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기준 일원화

- 공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의 항공기 소음대책기준(환경부 소관)이 항공법상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기준과 불일치하고 공항별로 차이가 심하여 혼선 발생

*항공기소음대책 사업기준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 방음대책 필요 : 75~95 WECPNL(웍클) 지역
- 이주대책 필요 : 95 WECPNL 이상 지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단위 : WECPNL)

구 분	인천공항 (’92.5.22)	양양공항 (’96.3.29)	무안공항 (’99.11.27)	김제공항 (’02.2.21)	항공법시행규칙 (93.4)
방음대책	70~75	70~80	70~95	70이상	75~95
이주대책	75이상	80이상	95이상	95이상	95이상

- 인천공항의 경우 2010년경 운항편수 증가시 75 웍클 이상 초과가 예상되어 과도한 부담발생 우려가 있으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외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

*일본의 이주대책 기준 : 90 웍클 이상 지역

- ⇒ 향후 환경영향평가기 적용하는 소음대책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공법상 소음대책기준을 적용하도록 환경영향평가관련기관에 시달 (환경부, 건설교통부 협조)

(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 기본방향**
- ◆ 국제적 기준을 감안한 규제의 합리화
 - ◆ 과도하거나 행정편의적 규제의 개선

(2)-1. 항공정비사 형식한정 자격시험제도 개선

- 건설교통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항공사를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보유 기종별 형식한정 변경교육을 실시토록 해당 항공사에 위임
 - 해당 항공사는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3~6회의 자체교육평가 후 합격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교부
- 그러나, 학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학과시험에 별도로 응시토록 규제
 - 자체 학과시험과 교통안전공단 시험간에 평가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적고,

교통안전공단 시험의 대기시간이 과다(분기 1회 실시)하여 정비인력의 적기 확보에 지장

*항공정비사 한정자격제도는 ICAO 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님. 따라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기종별 한정자격을 구분하지 않거나, 항공사의 자체 기종별 자격제도만을 운영

⇒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중 형식한정 자격시험은 폐지하고, 항공정비사 자격평가는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정비훈련프로그램으로 운영

☞ 항공법 제28조 개정 (건설교통부)

(2)-2. 항공조종사 형식한정 자격시험제도 개선

○ 운항승무원이 비행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자격증명에 추가하여 해당 형식 항공기에 대한 형식한정자격을 취득해야 함

○ 조종사 양성훈련과정은 「지상훈련 → 모의비행훈련(비행훈련) → 형식한정자격 취득 → 운항경험」의 순서로 진행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시험은 년 4회에 불과하고, 임시시험은 경비과다 등을 이유로 매년 시험횟수가 감소함으로써 항공사의 조종사 인력운영에 애로 발생

*형식한정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정기시험 년 4회, 임시시험 년 4회 실시 예정

- 형식한정자격 취득까지 약 50여일이 소요되고 자격 취득이후 다시 운항경험과정을 진행함에 따라 과다한 시간 소요 등으로 조종사의 기량 유지·관리에 지장 초래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조종사 한정자격심사의 실시기간 단축방안 마련(예 : 응시신청 후 일정기간(1개월) 이내 시험실시 의무화, 발급기간 단축 등)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요령(항공안전본부 고시) 개정 (건설교통부)

(2)-3. 항공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제도 운영개선

○ 항공기 운항조종사는 그 기량과 조종경력 등에 따라 기장과 부기장으로 구분되며, 일정자격시험을 거쳐 운항자격 부여

- 부기장 승격 및 기장 정기검사 등 일부만 항공사 소속 위촉심사관에게 위임하고
- 기장 승격시험, 기종전환 기장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항공사 위촉심사관에 대한 위촉, 부정기심사 등은 정부소속 운항자격심사관이 실시

○ 정부 심사관(총 11명)의 심사 인력 부족 등에 의한 심사기간 지연(통상 10일 이상 지연) 등으로 항공사의 부담 초래

*미국(FAA), 일본(JCAB)등 선진국에서는 민간항공사 소속 조종사 중 일정자격자를 선발하여 위촉심사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항공사가 스스로 자격심사 제도를 운영

*정부 심사관은 기장 승격시험 등 항공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관여하는 것 보다 신규노선 심사, 사고비행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소속 운항자격심사관이 실시하는 항공조종사 운항자격 심사를 항공사 위촉심사관이 실시토록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

☞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항공안전본부 훈령) 개정 (건설교통부)

(2)-4. 비행경력 있는 신입조종사의 대형기 직접 배치 제한을 완화

○ 건설교통부에서는 항공기 승무원 양성시 소형기에서 대형기 순서로 양성하도록 운영 (97.7.6 항공안전강화대책)

- 따라서 비행경력이 있는 신입조종사(통상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는 대형기 (B747, B777 기종)에 직접 배치하지 못하고 소형기종 또는 중형기종에 우선 배치한 후 일정 비행경력과 교육훈련과정을 거친 후 대형기에 배치해야 함

○ 최근 국제선 대형기 도입이 증가하고 있어 대형기 부조종사 수요가 많고, 고속철도와 저가 항공사 출현으로 중소형기 부조종사 수요는 적어 대형기 부조종사 수급에 애로 발생

- '97년 이전에 중소형기를 거치지 않고 대형기에 직접 배치된 신입경력 비행사 (70명)의 경우에도 운영상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음

⇒ 조종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대형기 직접 배치 제한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 (건설교통부)

*예 : 별도의 훈련과정 운영시에는 조종사의 중·소형기 조종시간의 단축(현재 1년)을 인정하거나 기종별 조종경력요건을 다르게 하는 등 승인기준 완화

(3) 영업활동 규제개선 및 지원

기본방향 ◆ 과도한 영업활동규제 완화
 ◆ 국내항공운수 · 정비산업의 대외경쟁력강화 지원

(3)-1. 항공운임 신고절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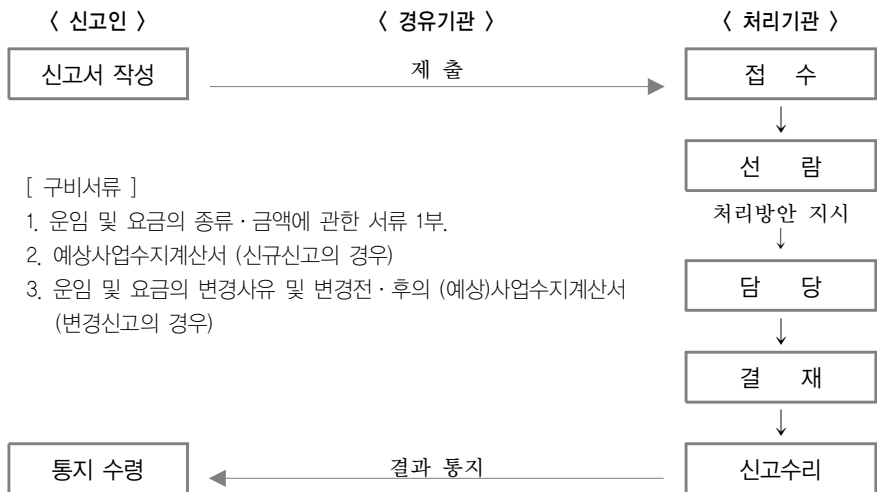
○ 국제항공노선의 운송요금(여객·화물)은 국가간의 항공협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운영

* 주요노선별 운임 인허가 제도 ('06.10월 현재)
 · 운임신고제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3개국
 · 운임인가제 :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네델란드 등

- 운임신고제 운영국가의 경우 대부분 항공운임은 항공사들이 자율 결정하고 문제 발생시에만 정부가 사후 통제

○ 우리나라는 신고제 운영노선의 경우에도 “운임신고 수리” 절차를 거치게 하여 실제 사전인가제와 동일하게 처리

*항공운임·요금 신고절차 (처리기간 : 접수후 7 근무일 이내)



- *미국 등 운임자율운영국가에서는 신고 후 익일부터 즉시 유효한 운임으로 인정
 - 실제 신고운임과 인가운임을 동시에 제출·처리되고 있어 신고운임 처리가 실제 인가운임과 동일하게 처리

⇒ 신고운임 처리와 인가운임 처리를 분리 처리하고, 신고제의 취지에 맞도록 신고 운임 제도를 개선

☞ 항공법시행규칙 제284조 별지서식 개정 (건설교통부)

(3)-2. 일시회항 국제선 항공기의 입국절차 개선

○ 기상악화 등으로 국내의 다른 공항으로 일시 회항한 국제선 항공기가 체류시간 장기화(1박) 등으로 인해 탑승객 입국조치와 승무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생

○ 목적지 공항이 아닌 국내의 다른 공항에 입국 조치된 승객과 교체승무원이 출국조치 없이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발생

- 항공기의 운항자격요건 변경(국제선 → 국내선)과 화물의 보세운송처리, 목적지 공항으로 이동시 출입국 처리절차, 검역처리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처리방향이 달라 혼선 발생

⇒ 일시 회항 국제선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자격요건 변경없이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화물의 보세운송처리, 출입국 처리절차, 검역처리 등에 대하여는 처리규정을 명확하게 마련

☞ 일시회항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부처별 처리지침 시달
 (건설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3)-3. 항공기용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항공기 제조·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항공기용 부분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항공기용 원재료(알루미늄 판, 페인트 등)에 대해서는 관세는 면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

○ 그러나, 항공기용 원재료는 항공기의 기능 유지 및 수리를 위해 수입하여 직접 사용하며, 항공업체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업체로서 사후 전액 환급

- 부가가치세 납부 후 사후 전액 환급을 받으므로 행정력 낭비 및 업체 불편 초래
- ⇒ 항공기용 원재료 중 타용도로 전용이 사실상 곤란한 원재료는 항공기 부분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
-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품목별로 검토하여 결정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제8호 개정 (재정경제부)

(3)-4. 일시 수입되는 수리용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담보제공의무 폐지

- 항공기의 수리를 위해 일시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이 재수출조건으로 국내 일시 반입될 경우 관세는 면제되나,
 - 이 경우 일시 수입기간동안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 ①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때는 관세 납부 및 담보제공의무를 면제(농특세20%부과) 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때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
 - *항공기 엔진의 경우 1기당 담보요구액이 13억원 이상
 - 항공기 부분품은 전용가능성이 없어 사후관리대상도 아닌 실정을 감안할 경우 일시 수입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에 대한 담보제공 의무화는 과도
 - ⇒ 항공기 수리를 위해 재수출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에 대하여 담보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 ☞ 관세법시행령 제131조 개정 (재정경제부, 관세청)
- ② 공휴일에 항공기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곤란 하여 담보 제공에 애로 발생
 - ⇒ 항공기 수리를 위해 일시 수입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공휴일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예 : 익 영업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
 - ☞ 해당 관세법령 개정 (재정경제부)
- ③ 현재 신용도가 높고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기업에 대해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신용담보제도를 운영중
 - 현재 신용담보 한도액을 전년도 납부액의 45/364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성실

- 기업의 담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담보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
 ⇒ 신용담보 한도액 확대(예 ; 전년도 납부액의 70/365 이상)
 ☞ 신용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관세청)

(3)-5. 인천국제공항의 토지사용료 산정방식 개선

- 인천국제공항의 토지사용료는 당해 토지의 부동산가(당해년도 공시지가)의 10/100 이상을 부과하도록 운영
-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와 사용요율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업계의 부담 증가

< 인천공항 개별공시지가 인상을 추이 >

(단위 : 원/㎡당)

구 분		2002년	2005년	비 고
민자시설유치 (임대) 지역	화물청사	18만원	39만원	+ 116%
	격 납 고	16만원	31만원	+ 94%
	국제업무단지	30만원	56.1만원	+ 87%

*A항공사는 인천공항 항공화물터미널의 토지사용료가 인천공항이 개장한 2002년 대비 약 3배 증가

< A항공사 인천공항 토지사용료 납부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화물청사	9.3	16.2	24.0	27.6
기 내 식	5.9	9.2	16.3	18.3
격 납 고	7.8	17.6	21.3	24.0
계	23.0	43.0	61.6	69.9

- ⇒ 인천국제공항 민자유치시설에 대한 토지사용료 산정방식 개선
- 토지사용료(임대료)가 매년 10% 이상 인상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제한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건설교통부)

(3)-6. 과징금 부과제도의 개선

-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 과징금 부과대상이 “유사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적용)우려 발생

【사례】 항공법 시행규칙 제297조 “별표32: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1. 나. (24)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2. 나. (17)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3. 나. (8)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 과징금 부과대상의 포괄적 규정은 삭제하되, 필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나열
 ☞ 항공법시행규칙 제297조 별표32 개정 (건설교통부)

(3)-7. 인천공항의 비상복구장비 확보방안 마련

- ICAO에서는 공항활주로내 기동불능항공기 발생에 대비해 비상복구장비(공기부양식 이동장비, 구매비용 약 4.5억원)를 확보·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 그러나, 비상복구장비는 자체 보유 뿐 아니라 인근 국가로부터 비상시 임차사용 가능토록 허용됨으로써 개별 항공사(인천공항의 경우 약 60개 항공사 취항)는 자체 구매를 기피

- 그 동안 (주)대한항공이 87년 구매한 장비가 국내에 있었으나, 동 장비가 내구연한(12년)이 경과하여 현재는 사용불가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항공이 지역별 장비공급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입시 3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규정상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와 관련해 당해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구책임이 원칙적으로 개별 항공사에 있음을 이유로 구매 기피

-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간의 부담 회피로 사고발생시 공항운영의 정상화 지연 우려

- 공기분양식 이동장비는 항공사에게는 활주로내 사고 발생시 기체의 손상없이 항공기를 수평 복구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장비이며, 공항운영자에게도 단시일내 공항 활주로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

*다른 국가의 비상복구장비 확보 현황

- 공항당국 확보국가 : 24개국 35개 공항
 - 항공사 확보국가 : 18개국 25개 공항 (11개 지역공급자)
- ⇒ 인천공항 비상복구장비 확보방안 마련 (건설교통부)

3.2.2. 물류·유통 규제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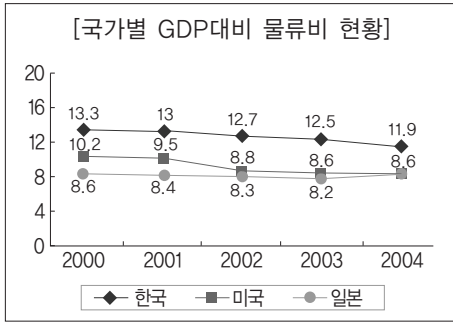
집필자 : 서경숙사무관(Tel 2100-8807, ipromise@opc.go.kr)

가. 추진배경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동북아 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국내외의 물동량이 증가됨에 따라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물류·유통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00~'04년 동안 세계물동량은 연 10.8% 늘어났으며, '04년 기준으로 세계물동량 중 34.1%가 동북아 지역에서 처리 되고 있어 동북아 각국의 물류 허브화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등 그동안의 노력으로 점차 발전 되고 있으나 국가 물류비는 '04년 기준으로 92조원, GDP의 11.9%로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이며 유통산업도 43조원('05년 기준)으로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 국제적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유통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고용 비중>

(단위 : %, 조원,천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GDP비중(B/A)	7.2	6.6	6.2	6.1	
GDP	전체(A)	647.3	668.5	702.1	721.4
	유통업(B)	46.3	44.4	43.5	43.9

※ 통계청자료

또한 글로벌 물류기업이 대형화 되어가고 있으나 물류업체당 매출액이 4.2억원('05년)에 불과 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취약한 실정이며 유통구조도 생계형에서 기업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규모가 영세하며 중소유통업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FTA 확대 등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물류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물류 유통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물류에 관한 기본법인 「물류정책기본법」(07.7제정)에서는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국가물류 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에 관한 기본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일반물류터미널, 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물류수단별로 「항공법」, 「해운법」·「항만법」, 「도로법」 등에서 공항 등 물류 시설의 설치와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유통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이 있다.

이러한 기본법 이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이 유통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되며, 「화장품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의 개별법이 유통 품목별로 유통질서 유지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쟁 제한적이거나,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 과도한 운영기준 등이 잔존하여 기업의 부담과 물류·유통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정품목은 사실상 독점수입 허용, 진입제한, 생산자간 협약 등을 통해 물류·유통활동의 자율성과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운송품목·수단의 변화와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운용으로 물류의 효율성 저하사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검사, 신고제도 운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이상의 서류 제출 요구 등은 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물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1)-1. 대량화물화주의 해상운송사업 등록절차 개선

- 대량화물의 화주가 자신의 화물을 위탁이 아닌 직접 운송하기 위해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갖추어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책자문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사전인가) 등록 여부를 결정('99. 4. 15 시행)
 - 해운업의 대외개방정책에 따라 국내전문해운선사에게 대량화물 물량을 확보하게 하여 국내선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도입
- 사전인가를 위해 정책자문위원회가 해운업등록 자문시 해운업과 대량화물 화주의 발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화주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없어 해운업과 대량화물화주의 균형적인 발전이 곤란

【해운정책자문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 ▶ 구성(18명) : 해운선사(1명), 선주협회(1명), 해운조합(1명), 선박금융(1명), 상호보험조합(1명), 물류회사(1명), 학계(7명), 전문가(5명)
- ▶ 임기 : 1년, 연임가능
- ▶ 최근 운영실적 : '05. 5(한국가스공사의 합작 해운화물운송회사 설립건)

⇒ 정책자문위원회에 화주측(예 무역협회 화주협의회 등)이 일정비율 참여하여 균형적으로 구성되도록 개선

☞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변경(해양수산부)

(1)-2. 체인본부 소재지 변경시 제출서류 감축

- 체인사업은 동일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된 점포에 대하여 경영지도·상품·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 중소기업청은 체인사업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하여 지정된 우수체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세소매업 육성을 위해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
 - 경영개선실적 평가는 체인사업자가 체인점포에 대해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중점평가

【체인사업 지정요건 : 자본금, 매장면적, 점포수 확보 필요】

- ▶ 직영점형(납입자본금 5억원이상, 점포면적 300㎡이상인 직영점포 5개이상)
- ▶ 임의가맹점형(납입자본금 3억원이상, 점포면적 50㎡이상 가맹점포 20개이상) 등

【체인사업 경영개선실적 평가 결과 : 11개분야 15개항목중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 ▶ 상품활동(가맹점의 본부공급비율 30%이상 확보 여부)
- ▶ 지도활동(가맹점의 순회지도여부 등)
- ▶ 보관시설(가맹점, 본부, 제조업체간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집배송시설 확보여부)
- ▶ 배송차량(적정차량확보 여부) 등

- 우수체인사업자의 소재지 변경시 우수체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변경시와 같이 최근 6개월 이내의 경영개선실적 평가서를 새로이 첨부하여 신고토록 의무화

- 그러나, 대표자가 같고 소재지만 변경시에는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장기간이 소요(통상 2개월이내)되며 많은 서류 제출로 사업자에 불편 초래
- ⇒ 평가항목 중 소재지 변경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예 : 보관시설)에 대해서만 평가토록 평가항목 간소화
- ☞ 우수제인사업자에 관한 요령 제8조제3항 개정(중소기업청)

(1)-3. 일반대형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허용방안 강구

- 화물자동차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07년말까지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 및 증차를 정책적으로 동결
- 기존 차량에 대하여도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 지침”에 의거 차량의 종류별·유형별로 대·폐차를 엄격히 제한하여 화물자동차 공급 증가 요인 억제

【자동차의 종류 및 유형별 구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 ▶ 자동차 종류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 ▶ 유 형 : 화물자동차(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용)
특수자동차(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 수출입컨테이너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04년 1,452만TEU → '06년 1,596만TEU), 화물운송형태의 컨테이너화, 일반화물의 다품종·소량배송 형태로의 변화 등으로
 - 일반대형화물차의 수요는 감소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트랙터)의 수요는 증가 추세이나
 - 화물자동차와 트랙터간 대·폐차 불허로 일반화물자동차는 단순 폐차(감차)하고 트랙터는 신규 증차를 할 수 없어 컨테이너 수송에 차질 발생
- ⇒ '08년 공급기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07.4~'07.10) 결과를 토대로 일반대형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 자동차와의 대·폐차 허용여부 검토
- ☞ '08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고시 반영을 위한 허용여부 방안검토(건설교통부)

(2)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기준 완화

(2)-1. 수출입컨테이너화물자동차의 높이 운행허가 간소화

- 도로구조의 보전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의 높이를 4.0m 이내로 제한(도로법, 도로교통법)
 - 다만, 교량높이 등을 감안하여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4.2m, 관리청이 운행건별로 허가 하는 경우에는 4.3m도 운행이 가능
- 국제표준규격의 하이큐빅 컨테이너를 적재한 화물차의 경우 취급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 *'00년 19,011Teu → '06년 63,896Teu(336% 증가)
 - 특히 평판샤시에 하이큐빅 운송시 높이가 4.3m를 초과하여 허가를 받은 후 한정된 구간에 한해 운행이 가능

【컨테이너 적재시 화물차 높이】

(주)한국특장차 자료

트레일러 높이(A)		컨테이너 높이(B)	총높이(C=A+B)
구즈넥 샤시	1,275m	2,897m(하이큐빅)	4,172m
컨테이너샤시	1,380m		4,277m
평판 샤시	1,410m		4,307m

- 그러나 기준높이 초과로 운행허가시 피견인차 뿐만이 아니라 견인차도 특정하여 허가 받아야 함으로 화물차의 탄력적 운영이 곤란
 - ⇒ 견인차량만 높이제한 운행허가를 받도록 하여 화물차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
 - ☞ 도로법 제54조에 근거한 운행제한 단속요령 개정(건설교통부)

(2)-2. 피견인자동차의 정기점검 간소화

- 피견인자동차('06년 40,571대 등록)도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신규 등록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차령 5년 경과 후부터는 매년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

【자동차의 정의(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 ▶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비교】

구분	정기 검사	정기 점검
대상	모든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개인택시자동차 제외)
주기	신규등록후 2년 마다	차령 5년 경과후 매년
방법	외관 검사 위주	일부 분해 검사
검사 항목	24개항목 동일성 확인, 제원측정,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전기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등	8종의 안전관리 장치를 분해하여 점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주행장치, 전기장치, 기타(8개항목) ※ 피견인자동차는 4종

- 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점검 항목을 8개항목에서 3개항목(제동/주행/원동기 장치)으로 축소하고,
 - 점검유효 기간도 만료일 전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점검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 피견인자동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만료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에 4종의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
- ⇒ 피견인자동차도 대형화물자동차와 같이 정기점검 간소화(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90일 이내 점검, 피견인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2개항목(주행, 제동장치)에 대해서만 점검)
 - ☞ 지자체에 운용지침 전시달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개정 (건설교통부)

(2)-3. 컨테이너 취급 항만시설장비의 등록제도 개선

- 리치스택커와 프론트로더는 항만부두내에서 컨테이너 상하역작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항만법상의 항만시설장비임

○ 그러나 지게차의 형태로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음

【건설기계 및 지게차의 정의(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 ▶ 건설기계 :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 ▶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 이에 따라 타항만시설장비와 달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3개월)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특히 건설기계등록절차 중 배출가스인증시험에 대부분의 시간(3개월중 2개월)이 소요

- 되며 동일 엔진이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인증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합리
- 동일 엔진이 장착된 항만시설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사마다 인증을 받아 추가 시간 및 비용 소요로 민원 증가

【항만시설장비와 건설기계의 신고 및 등록 절차(A항만회사)】

구분	항만시설장비 신고	건설기계 등록
절차	설치검사(KRE) 설치신고(해양수산청)	배출가스인증시험(국립환경연구원) 형식신고(건설교통부) 신규등록검사(건설기계검사소) 신규등록(차량등록사업소)
기간	약 1주일 소요	약 3개월 소요(인증에만 2개월)
비용	약 50만원	약 1천만원(인증에만 8백만원)

- 외국(유럽, 미국, 일본)의 경우 엔진제작사가 엔진에 대하여 배출가스인증을 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엔진이 장착된 건설기계 수입 또는 제작시에는 별도의 인증시험이 불필요

⇒ '08년 중 리치스틱커 등 항만시설장비용 건설기계에 대하여 기인증된 동일 엔진이 장착된 경우 배출가스인증이 생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48조 개정 (환경부)

(3)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3)-1. 화장품 병행수입 제한 개선

- 현재 수입화장품의 경우 독점수입판권자이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진정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병행수입제) 사실상 불가능
 - 화장품법령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독점 사업자 외에는 발급을 하지 않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수입권자에게 비치토록 함에 따라 병행수입제가 사실상 불허되고 있음

- ※ 병행수입제 :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다수 수입자의 수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
 - '98.1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공정거래위원장) 에서 화장품 병행 수입 허용 결정, '99.1월 도입, '01.6월 병행수입제 폐지(제조증명 완화조치 폐지)
- ※ 제조증명서 :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 제품명, 원료배합량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것

- 사후관리시스템하에서 화장품안정성과 모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여 병행 수입제를 불허하고 있으나,
 - 독점적공급권에 따라 화장품 소비자가격상승, 취급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거래관계 형성, 가격폭리 등의 문제가 발생

- ※ 조사에 의하면 동일한 수입화장품이 국내백화점에서는 홍콩소재 백화점보다 평균 40% 비싸게 판매되고 있음(국내의 수입관세/부가세 등을 감안)

- 이에 반해, 미국·일본·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제조증명서를 “모든성분 표시제” 등으로 완화하여 화장품 병행수입을 전면 허용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있음
 - ⇒ 제조증명서 비치의무를 폐지하여 화장품 병행수입을 허용하되 모조화장품 수입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예 모든 성분표시제, 수입업 신고제, 제3의 공공기관에서의 시험검사제 등)
 - ☞ 화장품법 개정(관련조문 신설)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1 개정 (보건복지부, 협조 공정거래위원회)

(3)-2. 원료의약품 통관신고시 제출서류 요건 완화

- 원료의약품 수입은 GMP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한국약품협회장에게 통관보고 후 가능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제도 : 우수약품의 제조하기 위하여 생산국 (등록국정부, 공공기관 포함)에서 전 공정이 WHO guideline 등에 준하는 GMP 조건하에 제조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발급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년마다 1회씩 해당정부에서 생산공정에 대한 실사 후 GMP증명서를 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등 일부국가에서는 3년마다 실시 - 반면, 우리나라는 수입시 발행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증명서를 제출토록 명문화 하고 있어 이탈리아로 등으로부터 원료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합한 서류 제출이 곤란

*현재는 GMP증명서 유효기간이 2년 이라는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관행에 의해 이탈리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2년이 지난 증명서도 인정 하여 수입 허용

⇒ GMP 발행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WTO 권고와 달리 자체적으로 발행주기를 정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인 경우에는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

☞ 수출입관련 통합공고 제31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 개정 (산업자원부, 협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3)-3. 농수산물 유통협약 체결요건 명확화

○ 생산과 출하 조절로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협약(민간자율)과 ‘유통 조절명령(정부주도)을 실시(’01. 6)

- 정부주도의 유통조절명령은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엄격한 절차와 요건하에 시행

【유통조절명령 실시요건 및 명령내용】

- ▶ 실시요건 : 부패,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에 한해 명령
- ▶ 명령내용 : 이유, 대상품목, 기간, 지역, 대상자, 위반제재조치 등

○ 반면, 민간자율인 유통협약은 유통조절명령에 비해 실시요건, 실시절차 등 세부 규정이 미비

※ 유통협약 요건 : 주요 농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등이 당해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해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 체결 가능

- 이에 따라 생산과 출하조절만을 통한 간접적인 가격조절수단 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가격조절 유통 협약을 통해 직접적인 가격통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가격조절 유통협약 체결사례 : A화훼, 출하기준품에 대한 하한가 설정
- 하한가 : (1,200원/본), 협약기간 : '06. 3. 13~11.30

-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
⇒ 유통협약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 지침 및 행정지도나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 유통협약 공정경쟁 운영지침 등 강화 방안 마련(농림부, 협조 공정거래위원회)

3.3. 건축·건설

3.3.1. 공동주택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김종환 전문위원(Tel. 2100-8757, outland1@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2003년 이후 국토이용체계 개편(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등)과 도심내 건축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택지 공급이 위축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국토이용체계 개편(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등)과 도심내 건축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택지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 공급위축에 대처하여 공공택지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도권 주택

공급실적은 '02년 37.6만호 이후 지속 감소하여 '05년 19.8만호, '06년 1~9월중 9.5만호가 공급되었다.

※ '수도권 주택 공급 실적

(10년까지 수도권에 년 30만호가 신규로 필요하나 년 3만호의 공급부족 발생)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0~'05평균
수도권	240,985	304,396	376,248	297,289	205,719	197,901	270,423
(서울)	(96,936)	(116,590)	(159,767)	(115,755)	(58,122)	(51,797)	(99,828)

< 지역별 주택보급률(2005년) >

전국	수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05.9	96.8	89.7	101.4	92.5	107.6	103.2	102.0	99.7	100.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6.8	119.5	129.1	125.5	135.4	126.0	115.8	111.1

자료 : 건설교통부

11.15 부동산 안정화방안 등으로 공공부문 택지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나, 부동산가격 안정기조 내에서 공동주택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택지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며, 주택가격 안정 및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 주택건설실적 중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율 >

(단위 : 천호,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주택건설실적	529,8(100)	666,5(100)	585,4(100)	463,8(100)	463(100)
-공 공	127,9(24.1)	123,7(18.6)	120,5(20.6)	124,0(26.7)	141(30.5)
-민 간	401,9(75.9)	542,8(81.4)	464,9(79.4)	339,8(73.3)	322(69.5)

그러나, 아직도 주택건설 관련기준 등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주택공급기간

장기화, 분양가 인상요인 등이 잔존하고,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주택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 및 기준 등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주택공급 및 건설에 관한 기본법은 주택법과 건축법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17개부처 82개 법령으로 되어있고, 공동주택사업의 절차는 토지확보 → 사업계획수립 → 사전협의·건축심의 → 사업승인 → 착공·분양승인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사업기간은 토지확보를 제외하고 약 65주가 소요(450여일)된다.

주택관련 규제는 단계별로 토지이용(택지개발) → 사업승인·분양 → 시공·건축 → 세제·관리 분야 등에서 약 500여건이 있다.

토지이용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라 4개 용도·21개 지역·28개 지구로 세분화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건축·환경 및 교통영향·문화재 등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공·건축 부문에서는 층수 제한, 도로폭 제한 및 각종 건설 및 설치기준 등이 존재하고, 세제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취·등록세, 각종 부담금 및 승강기 정기검사 등의 규제가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련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토지이용·주택 건설 기준 등의 분야에서 주택공급 위축요인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

주택수요가 많은 기존 시가지의 주택용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이며, 준농림지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토지이용규제 강화로 수도권외의 신규 택지확보가 곤란하여, 정부는 기존 도심의 광역적 재정비, 공공택지 개발 확대 및 개발밀도 상향조정 등을 통해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나, 실질적인 주택공급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도심내 개발밀도 및 재건축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민간택지 공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주택건설과 관련한 각종 심의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주택공급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동안 중복절차 및 과도한 규제를 중심으로 3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개선('05.3, 규제개혁 장관회의)하여 왔으나, 일부 절차(경관 및 도시계획 심의 등)의 심의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기간 및 주택공급기간의 장기화 초래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 현행의 규제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사업추진 애로 및 분양가 인상 요인 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변경된 여건에 맞게 관련규정이 적기에 정비되지 않아 사업자 및 입주자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주택용지 공급 활성화

- 기본방향**
- ◆ 학교 용지 확보 방법 개선
 -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합리화

(1)-1.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 확보방법 개선

- 300세대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함
 - 지역이 협소한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접한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함
 -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사업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지연, 고가의 토지매입 등의 부작용 발생

- 또한, 학생수 감소 등 여건변화에 따라 학교설립이 지연될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
⇒ 개발사업자가 택지 인근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 용지는 시·도 등 관련 행정기관이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

(1)-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제도 합리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공무원과 토지이용·주택·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특정 민원 또는 일부 견해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

【사례】

- Y시의 경우 :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획일적인 용적률(200% 이하)을 강요하거나, 기반시설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
- H시의 경우 :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제정·고시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는 용적율을 280%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상급기관에서 용적율을 230%로 하향조정을 요구하자, 이를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사실상 사업추진 포기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회의록 공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시행중이나, 사업자 부담은 여전
-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자가 제안 설명 등을 임의로 하는 사례 있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와 사업내용 변경·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지방도시계획조례 준칙” 제정·시행

(2) 주택건설사업 규제 합리화

- 기본방향**
- ◆ 자연경관 심의제도 개선
 - ◆ 아파트단지 내 도로의 도로폭 개선
 - ◆ 아파트 단지 내 문고 설치기준 개선

(2)-1. 자연경관영향심의제도 개선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경관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자연경관영향심의」 제도 도입·시행중
 - 당해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개정('04.12.31) 및 시행('06.1.1)

○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의 주요내용

구 분	자연경관영향 협의	
	환경부 심의	지자체 검토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지역(자연공원,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주변 - 0.3~2km 이내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일반지역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중 3만㎡ 이상인 개발사업 등 - 44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지역 주변 - 0.3~2km 이내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 <의무검토대상> ○ 일반지역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권장사항>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절차와 같이 진행하되, 별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절차와 같이 진행
협의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환경성검토 요청시 ○ 환경영향평가협의시(본 평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의 인·허가시
심의검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환경보전전문위원회(환경부) ○ 자연경관심의위원회(지방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자연환경담당부서(인·허가 부서 또는 도시계획부서)

- 자연경관영향심의에 따른 사업비용·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 활성화

⇒ 중대한 보완사항이 아닌 경우 평가서의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심의완료 조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심의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

(2)-2.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도로폭 개선

- 주택 단지내 도로의 폭은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결정토록 규제하고 있음
 -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입구를 아파트단지의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 지상에는 조경시설 및 보도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실과 맞지 않아 불합리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서 단지내 도로폭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규정 제정시와 달리 지하주차장 설치가 확대되어 도로확보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세대수 : 도로폭

- 100세대 미만 : 4m이상, - 100~300세대 : 6m이상
- 300~500세대 : 8m이상, - 500~1,000세대 : 12m이상
- 1,000세대 이상 : 15m이상

⇒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행 아파트단지 내 도로 기준이 과도하므로 주택 단지의 실정에 맞춰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단, 단지내 소방, 비상용 차량, 이삿짐 차량 등의 비상시에 대비한 순환도로 등은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

(2)-3. 아파트 단지내 문고시설 설치기준 개선

- 현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5항

○ 문고 설치기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

- 시설 : 건물 33m²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 자료 : 1,000권 이상

- 문고설치시 도서 종류(소설류, 잡지류, 만화류, 전집류 등)에 따른 가격차가 커서 사업자와 입주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음

⇒ 자료수와 함께 가격기준을 제시하여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자료의 내용은 사업자와

- 입주자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 제고
- 가격기준 : 도서평균가 등
- 자료내용 : 어린이용, 주부용 등
- ☞ 문화관광부 장관이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5항 개정

(3) 불합리한 제도·절차 개선

- 기본방향**
-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도 개선
 - ◆ 철거건물양도시 부가가치세 부과 개선
 -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제도 개선

(3)-1.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개선

○ 현재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주택성능 등급 인정 (에너지분야)”과 산업자원부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도가 있음

○ 근거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 건설교통부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산업자원부)을 득할 경우 주택성능등급 중 에너지분야 인정을 득한 것으로 간주
- 반면, 산업자원부는 주택성능등급 중 에너지분야 인정(건설교통부)을 득하더라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상기 두개의 인증제도가 인증목적 및 평가방법 등이 상이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많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개선 필요

⇒ 건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방안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협의 하여 통합고시 제정

(3)-2.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부과 개선

- 공익사업을 위한 건물수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불분명
 - * 현재 법령해석에 의해 철거건물 수용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양도)한 후 시행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과세
 - 공익사업시행자와 건물소유주간에 마찰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공사업 지연 초래

○ 판례(서울행정법원 2004구 합 9906, 2004.8.12)
 - “수용에 의한 건물철거시 이를 과세대상인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건물수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공공사업관련 마찰 해소
 - ⇒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철거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을 관련법령에 명확히 규정

(3)-3.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시 공람 제도 개선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시 주민공람공고일이 이주대책기준일이 되고(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제21조) 있으나, 주민공람기간 14일이 지난 경우 일반인이 공람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민원발생
 -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주민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민공람 공고일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사전예방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기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는 관련법령에 반영하고, '08년까지 관련프로그램을 개발·시행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시 반영

3.3.2.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송재은 사무관(Tel. 2100-8809, sjaeun@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건설산업은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05년 건설투자는 151조원으로 GDP의 18.7%수준이며, 건설산업은 투자비용 대비 고용 유발 효과가 뛰어나며, 시장 참여자수는 18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2% 수준임

'97년 건설업 면허개방 이후 건설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5만 여개 업체('97년 2.7만개)가 치열한 경쟁중이며, 최근 건설경기는 '03년을 정점으로 하향 추세이고, '06년 건설 수주액은 107.3조원으로 '03년 대비 93%수준에 불과하다

	1997년도	2005년도	증가율
일반건설업(개)	3,896	13,202	239%
전문건설업(개)	23,925	35,560	49%

또한 건설관련 단체들은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WTO 등 각종 국제협상에서는 건축설계사 자격기준으로 UIA(세계건축사협회) 권고기준(*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 교육 + 2년이상 건축설계 수련)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설계사의 해외 진출이 제한되고 있는 예를 보듯이, 한·미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건설관련 규제는 총454건으로 건설단계별로 기획·설계→발주·입찰→시공→감리·안전 등에 대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설계약 관련 규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회계예규 등을 기초로 조달청 및 각 발주기관별로 세부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예산회계법, 민간투자법 등 다수 법령이 건설계약 관계를 규제하고 있다.

합 계	기획·업역	발주·입찰	시 공	감리·안전
454(100%)	106(23%)	41(9%)	149(33%)	158(35%)

또한 건설산업은 설계업 - 시공업 - 감리업 등 건설 단계별로 업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

공공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발주자의 재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건축물 등에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곤란하며, 수주 중심의 국내 건설 산업 환경은 산업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는 수주방식은 자금력 있는 업체의 공사 수주를 용이하게 하고, 중소기업 수주물량은 감소하게 하며, 공사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내 대형업체의 체격(매출규모)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경쟁력)은 오히려 저하되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 2005년도 국내 상위 10위권 대형건설사의 매출규모는 미국 건설업체 매출규모 10위권 이내의 수준이나,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불과 1.3%로 미국(18.4%)의 1/4정도 이고, 네덜란드와 터키에도 추월당함

한편 우리 건설시장 규모는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평가되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70% 수준으로 취약하고, 선진국 대비 우리 고층건축물 기술수준은 66%(주택 69%) 수준으로, 향후 국제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건설산업 평가 및 계약제도 합리화

기본방향 건설산업 평가 및 계약제도 분야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경쟁 기반조성

(1)-1. 1억 미만 소규모 공사 설계내역서 변경 허용

- 추정가격 1억 미만 공사는 발주자가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 없이 설계서만 교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4조제1항, 제2항)
-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불가*
*설계변경 시에는 설계상의 물량 및 단가를 조정해야 하는데 총액 계약의 경우 물량 내역서(사전 자료)가 없어 설계변경 자체가 불가능함
- 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데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이행하고, 그에 합당한 비용이 공사원가에 계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1억 미만 소규모 공事も 산출내역서를 계약서류에 포함시켜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개선

(1)-2. 턴키·대안공사 설계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턴키·대안공사*(100억 이상) 입찰은 「기본설계 심사→적격심사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실시설계 심의→낙찰자 결정」 순으로 진행
- *턴키입찰 :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설계서 및 시공에 필요한 도면 등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대안입찰 :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설계를 대체하여 입찰서 제출
- 설계심의 위원회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 설계도서를 평가하여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 턴키·대안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서 최저가 낙찰제와는 달리 가격

대비 설계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일괄(대안)입찰 적격심사 평가기준

	설계평가	입찰가격평가	당해공사 수행능력
500억 미만	50점	50점	Pass/Fail
500억 이상	45점	35점	20점

- 설계심의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하여 배심제 형태로 운영하고,
 - 평가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기 추진되었으나, 아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
- 건설공사 입찰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건설시장의 불필요한 비용(로비 등)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턴키·대안입찰 심사평가시 투명성 확보방안 강구 필요
 - ⇒ 턴키·대안공사 설계도서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1)-3.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 합리화

- 건설공사 입찰에 사용되는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공종별 평균단가에 근거한 실적공사비* 사용
 - *실적공사비제도 : 이미 수행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를 감안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 공공 공사의 투입원가는 공사의 규모, 입찰방식, 공사의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 자료인 실적단가는 공종별 평균단가만을 제시하고 있어 공사의 규모·성격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데 한계
- 실적공사비가 예정가격 산출의 기초 자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 실적공사비 적용시 공종별 시공규모·현장여건·작업조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방안 마련

- ※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공사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공규모, 물가보정 등 보정치를 마련하여 실적단가 적용에 참고
- (일본) 철근가공·조립의 경우 지하구조물 10% ↑, 교량상판 10% ↓

(1)-4. 턴키·대안 대상공사 금액기준 상향조정

- 최근 대형업체 수주물량이 급증하면서 건설산업내 대·중소업체간 수주 양극화 심화
 - 이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턴키·대안공사) 비중이 확대되고 대형업체의 대형공사 수주실적이 상승한 데서 기인
 - ※ 2005년에 발주된 100억이상 공공공사는 전체업체수의 0.4%에 불과한 50개 업체가 전체 공공발주 건설물량의 40%를 수주

- 공공공사 규모별 발주현황('05년도)

	100억미만	100억~300억	300억~500억	500억~1,000억	1,000억 이상
발주 건수(건)	38,275	461	68	30	6
공사 규모(조원)	21.8	7.5	2.6	2.0	0.8
공사 규모 비율(%)	62.7	21.6	7.4	5.9	2.4

- 턴키·대안공사는 설계비용 등 초기비용이 중·소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중견·중소업체들의 입찰참가가 곤란
 - ※ 설계비용은 총 공사금액의 3~5% 수준(100억 공사의 경우, 3~5억원)
- 실질적으로 자금력 있는 업체들만 참여 가능한 대형공사 입찰에 중견·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턴키·대안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대형공사 규모를 조정할 필요
 - ⇒ 턴키·대안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대형공사 기준을 현행 100억 이상 공사에서 300억 이상 공사로 조정

(1)-5. 건설업체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합리화

- 사업수행 능력평가(Pre-Qualification*심사)시 상호협력 여부를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건설업체(1등급 업체) 상호협력 평가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평가 실시

$$\text{※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평가실적(\%)} = \frac{\text{협력자가포함된공동도급기성실적(원)}}{\text{총공동도급기성실적(원)}}$$

○ 그러나, 동 평가기준은 평가대상 업체의 공동도급 실적평가에 치우친 나머지, 협력사의 공동도급 지분이 낮은 경우에 오히려 높은 평가점수가 나오는 불합리한 평가결과 발생가능

【예시】 공동도급 100억원 공사(A,B,C,D) 2건 참여, 110억 공사를 수주한 경우

▶ “갑 업체” Case (A공사 90억, B공사 20억 수주한 경우)

- A 공사 : “갑”사 90억, 협력사 10억

- B 공사 : “갑”사 20억, 비협력사 80억

→ 공동계약 실적평가 = 81.8% (90억/110억) ⇒ 평가점수 만점(10점)

※ 평가점수 : 75%이상(10점), 65%이상(8점), 55%이상(6점), 45%이상(4점)

▶ “을 업체” Case (C공사 50억, D공사 60억 수주한 경우)

- C 공사 : “을”사 50억, 협력사 50억

- D 공사 : “을”사 60억, 비협력사 40억

→ 공동계약 실적평가 = 45% (50억/110억) ⇒ 평가점수 0점

⇒ “갑”은 협력사 참여지분이 10억원이고, “을”은 5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협력사와의 공동계약 실적평가 점수는 “갑”이 더 높게 나타남

○ 협력업체와의 공동 도급실적에 대한 평가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개선 필요

⇒ 공동도급 실적평가 기준이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 별표1 개정(건설교통부)

(2)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기본방향 진입규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건설관련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건설시장 활성화 모색

(2)-1. 하도급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 건설업 원도급자는 하도급 통보 의무와 별도로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도급 계약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함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 제4항 및 제29조제5항
- 하도급 통보와 건설 공사대장 통보는 각각 하도급 체결계약 사전적 통제기능과 사후적 통제기능을 갖고 있으나,
 - 피 규제자 입장에서는 유사내용을 중복 보고함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
- 하도급 통보의무가 이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규제 이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도급 관련 보고 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
 - ⇒ 건설 하도급 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 체계를 일원화
 - ※ 시스템 개선시 하도급자에게도 건설관리 대장 통보의무를 부여하여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상호 체크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2)-2. 철근 콘크리트 벽식 공동주택 층높이 기준척도 개선

- 공동주택 층높이는 2.4m 이상으로 하고, 증분치는 10cm 단위를 기준척도로 함(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공동주택 설계시 층높이는 2.4~2.6m 이상으로 하고, 10cm 증분치 적용(주택설계도서작성기준 제16조)
 - ※ 라멘조 및 철골조 공동주택 층높이는 2.7m 이상으로 하고 10cm 증분치를 적용하나, 5cm 보조모듈 증분치 적용 가능(주택설계도서작성기준제21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방음장치 등으로 표준바닥구조의 슬라브 두께가 증가할 경우
 - 층높이를 10cm 보조모듈 단위로 증가시켜 설계해야하므로, 층고(위·아래층간 바닥 높이)증가에 따른 세대수 감소 초래 가능

층높이를 2.8m 정도로 설계하고 있지만, 층간소음 관련 규정의 개정('05.6월)에 따라 바닥두께가 현재 18cm→21cm로 증가하게 되어, 보조 모듈 단위가 10cm이기 때문에 층높이를 2.9m로 설계하여야 함

- 보조모듈 단위를 경직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건설업체의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전가시 소비자 비용)을 경감해줄 필요
 - ⇒ 철근콘크리트 벽식 공동주택의 층높이 설계시에도 5cm 보조모듈의 증분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2)-3.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요건완화

- 건설업에 등록한 자는 관련법에 상관없이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사업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결격사유)
 - 금고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자로서 그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개정, '02.1.26)

건설사업 참가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주 개인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등록이 취소되는 상황발생 가능

- 건설업 참여 결격사유는 건설업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요건을 불비한 자에 한하여 건설업 참여를 제한토록 개선할 필요
 - ※ 일반적으로 사업 참가자의 결격사유는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한정하고 있으며, 고도의 윤리적 소양을 요구하는 개인사업자(변호사법 등)에 한하여 결격사유를 여타 법 위반자로 확대하고 있음
- ⇒ 건설사업 참가자 결격요건을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제한
 - ※ 주택법제11조(결격사유)
 -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현실화

-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관련법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일부에 대해 지급보증 해야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의2)
 - 원도급자가 발주청에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 제출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를 적시하면, 이는 공사비용으로 인정됨
 - ※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6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요 율
~ 34.6억원 미만		0.018%
34.6억원 ~ 100억원 미만		0.027%
100억원 ~ 300억원 미만		0.026%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 축	0.023%
	토목(산업설비 포함)	0.018%
턴키(대안)공사		0.028%

- 비용으로 계상되는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가 사전적으로 산출·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상이하며, 보증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에 미치지 못하여 건설업체 부담 발생
- 하도급 보증수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계약 금액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할 필요
 - ⇒ 공사비용으로 계상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보증기관이 부과하는 실제 수수료에 상응할 수 있도록 개선
 - ※ 공사비용으로 계상되는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 검토

(2)-5. 소규모 공사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면제

- 30억 미만 공사를 도급한 업체는 도급금액 30%이상을 직접시공 해야 하며, 도급 계약일 30일 이내에 직접시공 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2)

- 직접시공 계획 통보시 직접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등을 첨부

○ 통보기일(30일) 이전에 끝나는 소규모 공사까지도 직접시공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규제목적(일괄하도급 금지)에 비해 행정 순응비용 과다

※ '05년도 전문건설업체의 직접공사(1억원 미만) 공사기간 : 평균 38일
- 30일이상 : 84,756건(33.5%), 30일 미만 : 168,419건(66.5%)

○ 공사소요 기간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면제 필요

⇒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토록 개선

(2)-6.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수용·사용권 부여여부 일괄검토

○ 주택법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고 있으나,

*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시설, 수도·전기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 도시계획사업 시행 토지 등에 대한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제처리 하지 않음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수용·사용권을 당연 부여하고 있지만, 주택법제17조제1항이 이를 의제처리하고 있지 않은 결과임

○ 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에 대한 수용·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

- 이때 사업계획 승인시 수행한 용역과 유사한 추가 용역 수행 및 공사 개시기간 지연 등으로 금전적·시간적 비용 부담 발생

※ 추가용역 수행 및 공사 개시기간 연장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려할 때, 1,000억 공사 기준 추가비용 약 6.8억원 발생

- 또한, 공공주택 공사 부지내 토지 수용·사용권 확보 지연은 공공 주택사업 수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공공주택 단지내에서 주거지 부분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진입도로 지역 협의매수 지연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할 수 없어, 주택단지 준공검사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시 당해 도시 계획시설 사업지에 대한 수용·사용권 부여 여부까지도 일괄하여 처리 하도록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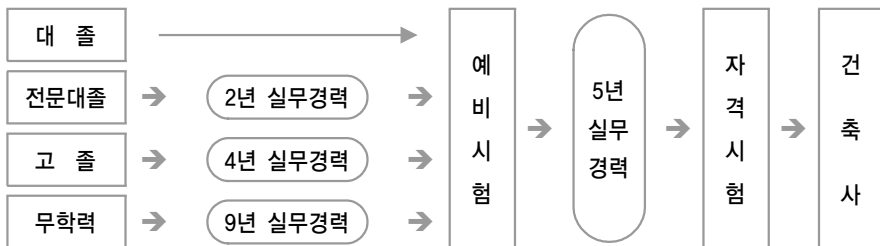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수용·사용권 부여 여부까지 일괄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3)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기본방향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건설사업 관리제도 및 건축사 선발제도 개선 등을 추진

(3)-1. 건축 설계사 선발·운영제도 개선

○ 국내 건축설계사는 일정 학력요건과 예비시험 및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5년간 건축분야 실무경력을 요함



※ 무학력자는 예비시험 응시제한 : 2010 시행

○ 건축 설계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을 선발·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내 건축설계사 선발·운영제도는 '실무능력'보다는 '자격시험' 위주로 운영 중

- 국제시장에서는 UIA*권고기준**을 요구(실무수련 경력자)하고 있어 국내 설계사의 해외 진출이 제한되는 상황
 - * UIA(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 : 세계건축가협회
 - ** UIA권고기준 =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 교육 + 2년이상 건축설계 수련
 - 국내 81개 대학(3개 대학 인증획득)이 5년 건축학제 도입되었고, 인증 추진 중
- 현행 건축사 자격제도는 자격시험 합격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단기 학습을 통해 기술적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고
-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별도의 계속교육이나 자격갱신 없이 평생 유자격자로 인정 되어 자기계발 동기부여 부족

< 건축분야 기술수준(기술선진국 대비) >

(단위 : %)

분 야	종합기술	설계	시공
고층건축물	66	65	70
주택(아파트)	69	68	71

- 설계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축사 선발제도를 자격시험 위주에서 벗어나 교육·실무 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선발체계로의 전환 필요(UIA권고기준 충족 필요)
- ⇒ ① 건축사 선발방식을 단순 시험위주에서 설계 실무능력을 측정·배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
- ② 건축사 역량을 지속·강화하기 위한 계속교육제도 마련

(3)-2.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업무범위 확대

- 최근 건설산업은 단순 시공 중심에서 창의적인 기획·계획 및 효율적 관리가 중요시 되는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음
- ※ 지역 Land Mark 개발, 혁신도시·기업도시와 같은 도심종합 개발, 대규모 국책·민간투자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등
 - 특히, 대규모 해외시장에서는 건설업체에게 프로젝트의 기획 및 자금조달 문제해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

- 국내 건설시장에도 건설 프로젝트를 기획·관리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 CM업무 기능에는 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단계만을 규정하여, 기획·조사 등의 업무는 사실상 수행하기 곤란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자의 기획·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 CM업무 기능에 기획단계 및 조사단계 등을 추가하는 등 건설사업관리(CM) 업무 범위 확대

(3)-3. 민간건설 주택공사 전력기술 감리대가 산정기준 개선

-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시설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원 배치기준과 감리비 지급기준을 산정·고시('97년 이후)
 -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 전력기술 감리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05.4월) 하고, 전기감리업자는 시·도지사가 선정('06.7월)
 -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실질 감리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건설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과 상이
- 전기감리업자를 시·도지사가 선정한 이후, 전력기술 감리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사례 발생
 - 공동주택 발주 73건을 분석한 결과, 전력기술 감리대가는 전기공사비 대비 평균 4.8% (건설공사 감리비 2.67~3.2%)
 - 특히, 300~800세대는 감리원수가 1인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세대수가 적어질수록 감리대가 급등
 - ※ 300~399세대 소규모 공동주택 평균 감리비는 공사액 대비 13.2%
- 전력기술 감리대가가 제공된 서비스 규모와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정비 필요
 - ⇒ 전력기술 감리대가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구체적 실태조사(용역 수행 등)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 감리원 배치기준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문제점 등을 검토

(3)-4.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

- 추정가격 100억이상의 공사는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내역서를 확인하고 물량에 대한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제14조제6항)
- 발주처가 제시한 물량내역서를 바탕으로 입찰을 하다보니 건설업체가 축적한 공사 경험,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
 - 입찰자는 공사 수주를 위해 단순 가격경쟁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등 현행 입찰방식은 건설기술력 제고 유인 부재
- 또한, 공사 집행계획 등이 발주처에 의해 수립된 결과 시공시 많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공사비 증액을 통한 예산 증액요인으로 작용
- 입찰방식이 공사 특성에 따라 건설업체가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원가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 발주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소요 공종과 물량 및 금액을 산출하여 내역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는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
 - ※ 국내 기업의 내역서 작성 역량을 고려하여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3)-5.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 전문건설업자는 원칙적으로 일반건설업자만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으나,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③)
 - 특히,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81호)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정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활성화
 - ※ 국회 건교위에서도 '04.12월 건산법 개정 심사시 저가하도급 심화를 우려하여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지적
- 하지만, 계약규정인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주계약자형 공동

도급 계약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

※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는 공동도급계약 방식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음

○ 계약관련 일반규정의 불비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지방계약법 훈령 「공동도급운영요령」에서는 일반건설업자도 겸업이 가능한 전문 건설업종(철강재 설치공사업 등 7개업종)에 한하여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허용
⇒ 파트너링 방식(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마련 후 관련 규정 신설

3.3.3. 소규모 건축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김대현 사무관(Tel. 2100-8823, doma212@opc.go.kr)

가. 추진배경

전체 건축물의 약 89.5%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500㎡미만)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재산 형성,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체계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 절차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건축물 현황('05년 기준, 건설교통부 통계연보)】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은 5,699,904동으로 전체 건축물 6,369,784동의 약 89.5%

(층 수) 4층이하 건축물은 6,143,398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약 96.4%

그러나 현재 건축 관련법령은 120여개에 달하고 너무 자주 개정되어 일반국민이 느끼는 건축행정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정적이다.

* '00년 이후 건축법령 개정횟수 : 건축법 15회, 시행령 25회, 시행규칙 10회

아울러 건축 인·허가 절차는 각종 심의·협의 등으로 인해 복잡다기하여 건축행정의 예측가능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관련 심의종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심의, 환경영향심의, 건축심의(미관·경관 등), 학교환경 정화심의, 문화재심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 등

따라서,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건축규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건축규제는 「건축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법)」 등 15개 부처 125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단계	관련법령
기획/입지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농지법,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설계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주택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기타 건축용도에 따른 개별법상 시설기준 등
시공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완공	건축·통신·소방·정화조·상하수도·전기 등 사용승인(준공검사) 관련 법령 등
사용	건축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축물의 용도기준 관련 법령, 전기·가스·소방·정화조 등 설비점검 관련 법령 등

그동안 복잡하고 불명확한 규제의 개선, 건축민원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방안(05.3)」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

【건축규제 주요 개선실적】

- (국무조정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건축민원 일괄협의회 도입, 각종 건축규제의 코드화, 통합건축정보망 구축 등 *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방안(규제개혁기획단, '05.3)
- (건설교통부) 건축사 설계의무 건축물 범위의 축소,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 완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층수규제 완화, 건축심의회 제출서류 간소화 등
- (국가청렴위원회) 건축위원회의 공무원 비율 제한, 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건축사의 무작위 추첨에 의한 선정 등
- (환경부) 건축행위로 인한 일조·조망 관련 분쟁이 소음·진동 등 환경분쟁과 복합된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 가능하도록 개선
- (문화재청) 소규모 건설공사시 문화재 발굴조사비 지원범위 확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업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도위임 등

그러나, 그간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120여개의 개별법령에 건축 관련 규제가 산재하고 있고 약 10여 가지에 달하는 건축관련 심의는 심의내용에 따라 제출서류, 심의기준 등이 상이하어 건축 규제의 복잡성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피규제자인 건축주는 고객으로서의 편리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를 받는 정책 수요자이기도 하나 그간의 규제개선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건축분야 비전문가인 일반국민 입장에서 건축규제의 내용은 여전히 복잡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는 불편하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규제에 대한 건축주 인식도('05.1)】

매우 불편 26.8%, 불편 24.2%, 보통 32.6%, 편리 9.3%, 매우 편리 6.9%

다. 주요 개선내용

(1)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1)-1.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 미관지구 안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이하, 미관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관지구(국토계획법 제37조 및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도시계획조례)】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지구로 중심지·역사·일반 미관지구로 구분

·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높이·규모·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등을 제한

- 그러나 미관심의를 제출서류,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축주의 경제적·절차적 부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소규모 건축행위시에는 심의준비 비용,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서 미관심의를 차등 적용할 필요

【소규모 건축물의 미관심의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추정)】

소규모 건축물(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미관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약 150만원의 추가적인 비용과 약 30일 정도의 허가(신고)처리기간의 지연 발생

*심의비용 : 심의위원(20명 이내)에 배포되는 조감도 등 설계도면 추가 작성비용 약 150만원

*소요기간 : 심의신청서 검토, 자료준비 및 심의계획수립, 심의위원소집, 사전도서배부 등 준비절차에만 약 2주 이상 소요되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월 1회 개최

- ⇒ 미관심의기준 및 결과통보기한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한 심의시에는 제출서류 및 심의방법을 간소화*하도록 개선(건설교통부)
- ※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한 미관심의 간소화 방안(예시)
15일 이내 심의결과통보, 조감도 등 고가도서 제출생략, 제출부수 감축, 서면·수시 심의 등
 - ※ 미관지구의 종류(중심지·역사·일반 미관지구)별로 일반적인 미관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 미관지구의 특성에 맞게 조정·활용하는 방안 검토

(1)-2. 소규모 건축행위의 군부대 사전협의절차 생략

-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민원인이 지형변경 및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군부대 사전협의대상 처분의 범위(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제1항)】

군사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허가, 기타 처분

- 그러나 군부대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같이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사항까지 불필요하게 협의를 요구하기도 하는 실정임
- 또한 사후에 건축허가(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재협의절차를 반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관련사례】

- 경기 북부 ○○시 관내 부대의 경우 용도변경허가(신고)시 협의필요여부에 대해 부대마다 서로 다르게 판단하여 집행하고 있어 사전협의절차에 혼선 발생
-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최초 협의시보다 건축연면적이 감소한 경우 협의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협의를 요구하기도 하여 절차 지연

-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협의대상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명확히 하고 협의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 군사시설보호 협의 소요시간 : 통상 15~30일 이상 소요되며 해당 군부대 훈련 시에는 보다 장기간 소요
-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협의 완료된 건축물의 면적·위치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개선(국방부)
- ※ (예시) 재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참조)
 - 동수·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혹은 연면적의 합계가 50㎡이하인 경우
 -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m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1)-3. 소규모 증축이나 용도변경시 소방동의 절차 간소화

-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 포함)의 경우 시·군·구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제출서류에 대한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소규모 증축·용도변경시에도 필요이상으로 많은 설계도면을 제출하게 되어 민원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제출설계도서: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계통도, 창호도 등 5종

【관련사례】

연면적 3,306.0㎡인 건축물의 약4.5%에 불과한 150.0㎡의 용도변경시에도 소방등의 요구를 위해 전체 건축물에 대해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비용만 약 1천만원 소요 (용도변경 부분에 한해 작성할 경우 약2백만원)

- ⇒ 소방시설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증축·용도변경의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해 설계도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도서의 종류도 간소화(소방방재청)
- ※ 5종-2종: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층별 계통도

(1)-4.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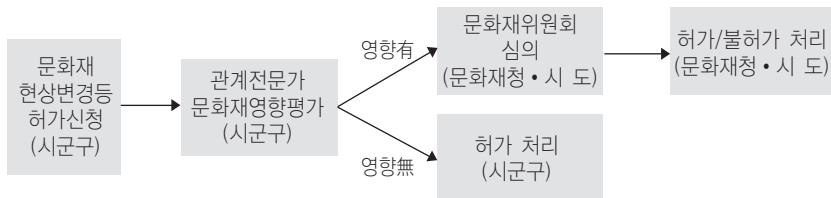
○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물을 설치·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현상변경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재청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

- 허가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관계전문가의 문화재 영향평가결과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허가처리 가능하나
-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 시·도(시·도지정 문화재) 혹은 문화재청(국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개선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절차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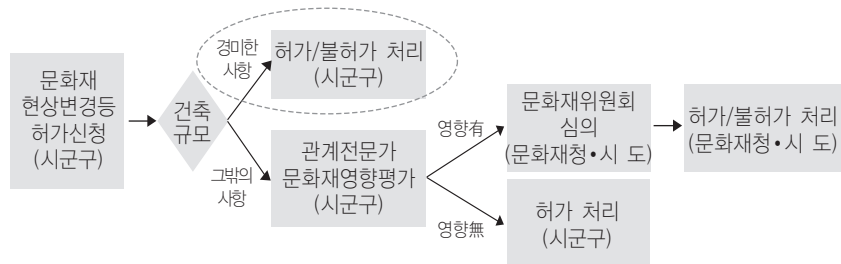
- 그러나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관계전문가 영향평가 등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과도한 절차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아울러, 문화재청 혹은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건축 추진시기가 지연되기도 하는 실정임

【관련사례】

- 문화재청 혹은 시도로 송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처리기간 30일 보다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빈번
-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건축허가처리시 검토서류 및 위치도와 같은 불필요한 서류까지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건축주에 과도한 부담 발생

-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이 적은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허가처리 절차의 간소화)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문화재청)
 - ※ 시군구에서 문화재영향평가 없이도 자체 처리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발굴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 간소화 지침”을 마련·시행('08년중)

【개선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절차



- ⇒ (제출서류의 축소 및 명확화)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 등은 제출을 생략하고 설계도서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입면도만 제출하도록 개선(문화재청)

(2) 건축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2)-1. 건축신고 업무대행제도 도입

- 연면적 합계가 100㎡이내의 건축물 등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설계자 및 감리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 신고시 제출하도록 규정된 설계도서도 배치도·평면도 등 기본적인 설계도서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보다 간소화 되어 있음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건축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비도시지역의 연면적 200㎡ 미만 또는 3층 미만 건축물(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등
- 그러나, 제출설계도서가 간소화되어 있더라도 비전문가인 건축주가 직접 설계도서를 작성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건축사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설계도서에 작성자 서명 등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없고 건축허가에 비해 용역비용이 낮아 설계도서의 완성도가 낮은 사례가 빈번함
 - 이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 등 불필요한 절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오히려 건축주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음

【관련사례】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신고만이 접수되므로 비공식적인 사전서류보완기간을 감안할 경우 건축신고의 처리기간은 건축허가보다 오히려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

- 아울러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절차와 거의 유사하므로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편의를 제고할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건축허가절차와 신고절차 비교】

▶ 건축허가절차

- ①현장조사(건축사) ②설계도서 작성 ③건축허가 신청 ④관계부서협의 ⑤건축허가
⑥착공신고 ⑦시공·감리 ⑧사용승인신청 ⑨현장조사(제3의 건축사) ⑩사용승인

▶ 건축신고절차

- ①설계도서 작성 ②건축신고 ③현장조사(공무원) ④관계부서협의 ⑤건축신고수리
⑥착공신고 ⑦시공 ⑧사용승인신청 ⑨현장조사(공무원) ⑩사용승인

⇒ 건축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건축사·퇴직공무원 등이 건축주의 신고 관련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건설교통부)

※ 신고제도 개선절차(예시)

- ① 건축주는 건축위치와 면적 등 기초사항만을 작성한 건축신고서 제출(설계도서 생략)
- ② 담당 공무원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건축가능여부(대지소유권, 건폐율, 용적률, 의제처리 사항 등)를 판단하고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현장 확인조치
- ③ 업무대행자는 현장확인 결과 건축신고가 적합하면 설계도서작성 및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과정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

※ 건축신고 업무대행자(예시)

- 건축사, 퇴직공무원, 건축사사무소 근무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지정
- 대행비용은 신고대상 건축물의 규모, 첨부설계도서 등을 감안하여 건축허가시 소요되는 비용의 30~50%수준으로 책정하여 매년 고시

(2)-2. 「알기 쉬운 건축 가이드」 작성·제공

○ 건축법령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으로 앞으로는 건축관련 각종 규제정보를 국민이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건축법령정보시스템 : 정부부처별로 산재된 건축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관리

- 개별대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등 건축법령정보를 제공하여 건축가능여부의 사전확인 가능
-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과 연계하여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선('07년 시범운영 후 '08년 확대시행 예정)

○ 다만, 일반국민은 법령정보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 유의사항, 분쟁사례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필요

- 또한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각 건축 과정별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조문형식이 아닌 설명 형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건축과정】

기획(건축가능성 사전검토) → 설계(건축사 계약, 건축물에 대한 개괄적·세부적 사항 결정)
 → 허가·신고(건축관련 각종 사전행정절차 진행) → 착공(관계인간 계약, 착공신고 등) →
 시공·감리 → 사용승인 → 사용·유지관리

⇒ 건축기획, 건축관계인간 계약 등 제반 건축과정별로 유의사항·관련법령·분쟁 사례·서식 등을 일반국민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건축 가이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건설교통부)

※ 장기적으로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에 반영

(2)-3. 소규모 건축물의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시점 개선

○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부과·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허가일로부터 2월이내 부과, 부과일로부터 2월이내 납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
- 200㎡ 초과 건축물의 신·증축시 건축연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에 비례하여 부과

○ 그러나,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건축허가 후 시공과정에서 연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환급·추가징수 등의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유발하게 됨

- 또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인해 자금 부담이 가중되어 원활한 건축추진이 곤란한바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사기간이 단기간 소요되는 소규모 건축물(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기반 시설부담금 납부기일을 사용승인신청일로 개선(건설교통부)

(2)-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절차의 개선

○ 가설건축물의 경우 허가 혹은 신고에 의해 설치하여 제한된 기간동안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구분(건축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구분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개념	도시계획시설부지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예정지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치되는 가설건축물	재해복구·공사·농어업 등 특정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년 이내	2년 이내

- 그러나, 연장가능성만 규정하고 있고 연장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업무상 혼란 및 관련 민원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건축주가 존치기간 만료시기를 알지 못하여 연장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존치기간 만료예정통보·연장신고절차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기한을 명시하고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연장신청 기한을 건축주에게 사전예고토록 개선(건설교통부)

(3) 규제수요자 보호체계 구축 등

(3)-1. 소규모 건축용 상세표준계약서 개발·보급

- 현재 모든 건축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건축분야 비전문가인 일반국민이 활용하여 시공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에는 부적합함
- 건축자재 품질, 상수도·가스·전기 등 각종 인입비용 등 분쟁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check-list를 통해 손쉽게 명확화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개선 필요

【관련사례】

건축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은 토지구입·설계·인허가절차 등 건축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시공업자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정식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분쟁발생시 건축주인 일반국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

⇒ 공사계약의 주요사항을 check-list로 명확히 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공사용 상세 표준계약서의 개발·보급(건설교통부)

(3)-2.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체계 확립

○ 건축분쟁시 법원에 의한 해결보다 시간·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련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

※ '05년 규제개혁 전략과제 「소규모 건축규제개선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기능 강화, 위원의 제척·기피제도 도입, 다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 재정(裁定)권한 부여 등 추진

○ 그러나 여전히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민원인의 인지도가 매우 낮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관련사례】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이후 조정신청·처리실적이 전혀 없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06년 한해동안 8건의 조정신청을 접수·처리하는데 그쳐 민원인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

○ 위원회의 원활할 운영을 위해 내부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민원인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홍보 및 건축분쟁사례 등 정보제공 강화(건설교통부)

※ (예시) 건축허가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정식계약의 중요성·위장 직영시공의 위험성 등에 대한 주의문구 삽입, 불법·부실시공 관련 분쟁사례 및 소규모 공사계약시 주요 확인사항(check-point),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리플렛(leaflet) 등을 통해 제공

(3)-3. 건축주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규제체계 개선

○ 현행 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은 도시미관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위해 각종 수직적·수평적인 규제를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건축관련 수직·수평적 규제체계

수직적 규제	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용적률, 층수제한, 건축물 높이제한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정북방향, 채광창방향, 정남방향),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또는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수평적 규제	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건폐율
	건축법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 그러나 각 규제의 개별적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체계는 오히려 법정 용적율의 최대 확보, 불법건축행위의 암묵적 동조 등 피규제자의 행위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함
- 특히, 도시지역에 기형적·획일적인 형태의 소규모 건축물을 양산하게 하여 오히려 건축·국토계획 규제의 기본적인 목적 달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관련사례】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용적률·높이 제한 외에도 별도로 건축법상 높이제한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소규모 주택의 경우 1개층의 높이가 낮아지고 계단형태의 건축물이 양산되어 오히려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 건축선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있어서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선이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의해 건축선으로부터의 일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선에 건축을 할 수 없게 되는 모순 발생

⇒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이용규제와 건축법령상 건축규제 등 각종 수직·수평적 규제의 간소화 방안 검토(건설교통부)

3.4. 금융

3.4.1.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

집필자 : 손관설 전문위원(Tel. 2100-8795, mymusic@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지속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입·영업관련 규제가 많고 산업 경쟁력도 답보 상태에 있다. 특히, 진입·업역에 대한 칸막이식 제한, 상품·가격 등에 대한 세부 규제로 소비자의 수요 미충족, 금융사 영업방식 낙후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따라 IMD 금융부문 국가경쟁력도 2002년 49개국 중 29에서 2006년 61개국 중 37위에 위치하는 실정이다.

또한 은행위주의 산발적, 선택적 규제완화 및 시장여건 변화로 금융산업내 업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총통화 중 은행권 비중이 33%(98년)에서 53%(05년)로 크게 늘어난 반면 비은행권은 동일기간 67%에서 46%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융산업 균형발전과 공정경쟁을 유인하고 금융의 개방화·겸업화 추세에 대응하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06년 3월 50개 규제개혁 과제 선정 및 추진하였다.

< 주요 개선분야 및 과제수(총 50건) >

개선 분야	세부과제 수
금융업 진입 및 영업범위	12
금융사 상품·영업방식·자산운용 규제 완화	19
금융사 영업여건(제도 인프라) 개선	10
불합리한 금융규제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	9

* '불합리한 금융규제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9개 과제)'은 관련부처가 금융규제 전반에 대해 개선사항을 자체 발굴하여 규개단에 통보하고 자체 개선키로 결정 (재정경제부 27건, 금융감독위원회 21건)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2006년 3월 규제개혁 과제 50건의 과제 중 25건은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나, 25건은 추가적으로 검토·협의·발굴하여 확정토록 결정하였다.

< 추가 검토·협의·발굴토록 된 과제 (25건) >

순번	세부과제	관련부처
1	보험사 연기금위탁운용 원활화 방안 검토	재정경제부
2	상호저축은행 등의 판매상품 범위확대 검토	재정경제부
3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방카슈랑스) 규제완화 검토	재정경제부
4	보험사 상품개발 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재정경제부
5	보험사의 타 보험사 상품판매 규제완화방안 검토	재정경제부
6	방산업체의 화재보험 등 가입방식 개선방안 검토	재정경제부
7	순수 지분투자시 금산법상 승인절차 개선 검토	재정경제부
8	보험사의 외화대출 확대방안 마련, 협의	재정경제부
9	주소확인을 위한 행정전산망 활용방안 마련, 협의	재정경제부
10	순수 지분투자시 공정거래법상 신고절차 개선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11	중소기업의무대출제도 개선방안 마련, 협의	금융감독위원회
12	자동차보험 예정이익률 설정규제 폐지방안 검토	금융감독위원회
13	무단운행차량 문제 해결방안 마련, 협의	건설교통부
14	자동차보험 가불금지규정 개선방안 마련, 제출	건설교통부
15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가산을 합리화 방안 검토	건설교통부
16	카드사와 의료기관 제휴마케팅 허용방안 검토	보건복지부
17 ~20	각종 금융업의 진입장벽 개선, 본질·경영·부수 업무 규정방식 개선, 자산운용 관련 규제개선 및 각 업종별 판매채널 규제에 대한 전반적 개선 검토	재정경제부
21 ~25	각종 금융업의 진입장벽 개선, 본질·경영·부수 업무 규정방식 개선, 자산운용 관련 규제개선, 판매채널 감독규정 개선 및 금융법령에 준하지 않는 감독규정 개선 검토	금융감독위원회

다. 주요 개선내용

(1) 검토·협의과제

(1)-1. 자동차보험관련 예정이익률 설정규제 폐지

○ 공공재 성격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예정마진을 2%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업 정상화를 위해 규제 자유화 필요

*자동차보험 수지(억원) : -431('02) → -5,785('03) → -3,467('04)

⇒ ① 예정이익률 설정제한 폐지 추진(금융감독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현 보험시장의 가격 출혈경쟁 고려 시 규제 폐지시에도 보험료 상승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

⇒ ② 차량모델별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시행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부터 ±10% 범위내 시행

(1)-2. 보험사 외화대출 한도규제 완화

○ 보험사는 외화대출 제한으로 국내외 중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관련시장 참여가 곤란

- 보험사는 이미 채권, 주식 등 외화자산을 대규모로 운용하고 적절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제반인프라를 보유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화보험료수입 범위내에서의 외화대출만 허용, 보험업감독 규정상 외화거래 범위에 외화대출 미포함

⇒ ① 보험사 외화대출한도 규제 폐지(재정경제부)

⇒ ②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 업무에 포함하는 조치(금융감독위원회)

(1)-3.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 개선

○ 금융사의 노력과 무관하게 계절적·일시적 요인으로 의무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규제수준을 현실화시킬 필요

*현 한도 :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보험사 35%, 중금사 25% 등

⇒ ① 보험사는 점검주기를 매월 점검에서 연말 1회 점검으로, 중금사는 분기에서

연말 1회로 개선 추진(금융감독위원회)

⇒ ② 은행은 현재 분기 평잔기준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미준수시 제재가 없고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돼 있어 중장기적 검토·추진(한은)

(1)-4. 주소 확인을 위한 행정전산망 활용 허용

○ 금융사는 고객과의 계약이행 등을 위해 중요사안을 통지해야 할 의무 및 필요가 크나, 정확한 주소 유지 곤란

*특히, 중요사안이 적시에 통지되지 못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고, 발송자도 통지와 관련된 직간접적 비용부담이 막대

⇒ ‘예금·보험 만기’, ‘휴면금 반환’, ‘보험 실효·해지 처리’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 회사가 주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용정보법에 반영 (행정자치부)

(1)-5.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규정 개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가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그러나 추후 보험사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명되면 가불금을 회수해야하나, 회수가 쉽지 않고 미반환 가불금 발생시 70%만 보전받을 수 있어 보험사의 손실로 귀착

⇒ 미반환 가불금을 100% 지급하도록 개선(건설교통부)

(1)-6. 순수 지분투자시 금산법상 승인절차 개선

○ 보험사 등의 투자과정에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금산법상 승인 절차 및 공정거래법상 불필요한 신고절차 요구

*부동산투자회사, 간투법상 투자회사 등은 단순 페이지컴퍼니로 금산법 및 공정거래법 상의 지분투자자로 판단하기 곤란

⇒ 사후승인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산법 24조 개정안(현재 법사위 계류) 통과 후 법률 재개정을 통해 개선요구사항 반영(재정경제부)

(1)-7. 방산업체의 화재보험 등 가입관련 방식 개선

○ 방산업체는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통해서만 화재보험 등7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손보사와의 직접 계약은 금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간의 손해보험공동인수특별협정에 의해 개별 보험사와의 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며, 당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 시설 전체를 보험가입 대상으로 규정

⇒ 방산업체 및 국가시설에 대해 모두 화보가입시 화보협회 경우절차를 폐지토록 하되, 화보협회 존립(경비조달 애로), 중소형 손보사 일시 경영악화 등을 고려 단계적 추진(재정경제부)

* '07. 1/4분기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07. 2/4분기 : 로드맵 확정
→ '07. 3~4/4분기 : 공동인수협정서 개정 등 제도정비 → '08이후 이행

(1)-8. 순수 지분투자시 기업결합 신고절차 개선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시 공정거래법상 신고절차를 요구하여 금융사의 투자 촉진을 제한

*공정거래법상 다른 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상장·협회등록법인은 15%) 이상 소유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 필요

⇒ 부동산투자회사 지분 취득 시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완전 면제 추진(공정거래위원회)

(1)-9. 카드사의 의료기관과의 제휴마케팅 허용

○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받는 서비스의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

*시장현실 :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현재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비급여대상)'시 카드결제대금 할인혜택 부여, 의료비 카드결제시 무이자 할부 또는 포인트 적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의료법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소비자 후생증진과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

*의료법 제25조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금지

⇒ 의료비 카드결제시 무이자할부 또는 포인트적립,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비용할인 및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는 방안 추진(보건복지부)

(1)-10. 보험사의 연기금 수탁업무 원할화 방안

- 국민연금법시행령상 국민연금의 연기금 예탁(운용) 금융기관의 범주에 보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장기자금 안정운용에 적합한 보험사를 연기금 수탁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현 대상 : 은행, 증권사, 투자자문사,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 *보험사는 업무 특성상 장기자금 운용 노하우가 풍부하고 안정적 운용을 추구하는 기관투자가이므로 연기금 운용시 배제될 이유가 없음
-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탁운용 업무 수행 허용(보건복지부)

(1)-11.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가산율 합리화

- 자동차보험의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 가산율을 적용받고 있음
 - 이에 따라 환자·진료기관에 의한 허위·과잉 입원/진료 등 부당 진료행위 및 과다 보험료 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
 - *자동차보험의 의료수가 적용가산율(고시가 외에 병원시설 등 차이 반영)이 건강보험보다 평균 7%P, 최고 15%P(종합병원의 경우) 높음
- ⇒ 자동차보험업계 및 의료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험수가 단일화 추진(건설교통부)
- 단일화 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06.12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07.6월까지 단일화 방안 수립(시행시기 포함, 국무조정실과 협의)

(1)-12. 소재불명 리스차량 등 무단운행차량 관리방법 개선

- 자동차 리스료가 장기 연체되는 경우, 대부분 리스이용자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리스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무단 양도되어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
 - 그러나 해당 리스차량이 사고 및 범규위반 등을 일으킬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보험금, 범칙금, 세금 등은 리스회사 부담
 - 리스회사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등록말소하려 해도 현행 자동차 등록 말소관련 규정상 말소처리 곤란
- ⇒ ① 도난·횡령으로 고소된 차량 등 불법운행차량이 경찰 단속시스템을 통하여 조기 단속될 수 있도록 사건조사 및 수배체계를 개선(경찰청)

⇒ ② 소재불명 리스차량의 등록말소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여 리스회사의 소재불명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법률관계 해소(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등 관련법령에 '횡령'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포함되도록 개정 추진(횡령 고소 등 절차요건 포함)

(2) 자체 발굴·제출과제

○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검토(9개 과제로 대분류)

○ 자체적으로 48개 세부과제를 발굴·제출

< 자체 발굴·제출 및 개선기로 한 과제(9건) >

분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진입규제 개선 (3건)	보험대리점(법인) 등록요건 완화(1건)	보험업 허가시 주요 출자자요건 완화 등 (2건)
업무영역 규제개선 (14건)	증권회사에 대한 국채선물업 허용 등(6건)	증권회사의 Repo 거래대상 유가증권 범위확대 등(8건)
자산운용 규제개선 (20건)	해외 유가증권 예탁증서의 유가증권 인정 등(14건)	보험사 동일인 발행채권투자 한도 규제시 주택저당증권 제외 등(6건)
판매규제 등 기타 개선 (9건)	기관투자자인 사모펀드의 수탁회사 감시 대상 제외 등(6건)	일반 손해보험의 상품 공시 합리화 등 (3건)
규제체계 개선 (2건)	-	일반 투자가의 투자가능 외화증권 제한 규제 폐지 등(2건)
총 48 건	27건	21건

재정경제부

1. 진입규제 개선관련

(1) 보험대리점(법인)의 등록요건(유자격자 4인이상 등) 완화

○ (현행)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유자격자*를 4인 이상 두도록 함

* 유자격자(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을 가진 자)

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②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 (개선) 보험대리점(법인)의 경우 모집행위자*를 4인 이상 두도록 하되 그 중

“유자격자”는 2인 이상 두도록 완화(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현재 보험대리점의 모집행위자는 “유자격자”와 “사용인(보험설계사 등록요건 보유자)”으로 구성

2. 업무영역규제 개선관련

(1) 증권회사에 대해 국채 선물업 허용

○ (현행) 증권회사는 주식관련 선물업만 겸영할 수 있고 국채 선물업의 영위는 허용되지 않음

○ (개선)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시 모든 금융투자업을 하나의 금융투자회사가 겸영할 수 있도록 함

* 하반기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추진

(2) 유가증권 일임매매제한 규제의 완화

○ (현행) 고객이 유가증권의 종류·종목·매매구분·방법을 직접 결정하고, 증권사는 가격·수량·매매시기에 한하여 10종목까지 위임받아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임매매제도는 위법자를 양산하고 고객과의 분쟁을 빈발시킴

○ (개선) 현행과 같은 제한된 내용의 증권회사 일임매매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투자일임업으로 흡수하여 투자일임업을 등록할 경우 가격·수량·매매시기·종목수

등의 제한이 없이 일임매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하반기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추진

(3)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개념정의를 포괄주의 도입

○(현행)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의 개념을 열거하고 있어 열거되지 않은 신상품의 적극적인 개발 및 판매가 곤란

○(개선)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 하반기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추진

(4)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허용

○(현행)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지분율 15% 초과소유) 업종에 PEF가 제외되어 있어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제한

○(개선) 보험회사가 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 업종에 PEF를 포함(보험업법 개정 추진)

* 다만, 보험사가 PEF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자회사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5) 보험회사의 부동산 운용업무 완화

○(현행)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에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는 부동산 임대업 미포함

* 보험회사는 업무용 부동산과 투자사업용 부동산(주택사업, 부동산 임대업, 사회복지사업, 공공사업 등)을 취득할 수 있으나, 경영·부수업무에 부동산 운용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제한

○(개선) 보험회사가 업무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업을 영위할 있도록 허용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6)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 금지 완화

○(현행) 국내자산운용회사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외자산운용회사에게

- 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부위탁이 가능한 해외자산운용회사에 비해 유연성을 현저히 저하시켜 국내자산운용회사의 경쟁력을 저해
- (개선) 현재 원칙금지하고 있는 자산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을 제한적으로 허용(예: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내 등)함으로써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를 촉진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추진

3. 자산운용 규제 개선관련

(1)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양도 제한 완화

- (현행) 신용보증약관(공사와 금융기관간 체결)상 주신보의 보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약관19조)되어,
 -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할 경우 보증채권이 소멸되므로 대출채권의 유동화가 불가능
- (개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채권을 유동화 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의 개정을 추진
 - 다만, 유동화 목적으로 대출기관이 설립한 SPC에 매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를 허용
 - * 제한 없이 양도를 허용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권관리책임 회피 및 출연금납부의무 회피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

(2) 보험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확대

- (현행) 보험회사는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로 한정
- (개선)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제한을 폐지하여 자산유동화 관리 업무범위를 타 금융 자산으로 확대

(3) 신용협동조합의 투자가능 펀드 및 기초자산 대상 명확화

-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폐지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신탁법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아 자금운용에 제약
- (개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 가능한 펀드 및 기초자산의

범위를 명확화

(4) 신용협동조합의 투자가능 펀드 및 기초자산 범위 확대

- (현행) 중앙회 신용예탁금의 운용을 채권, 주식,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발행주식 등으로만 규정하여 다양한 기초자산 편입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제약
- (개선) 중앙회 신용예탁금 회계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증권, 단기금융, 부동산, 재간접 등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을 허용하여 편입가능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

(5) 해외 유가증권 예탁증서(DR)의 국내유가증권 인정

- (현행)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의 개념을 열거하고 있으나 해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DR)은 유가증권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 증권회사의 취급이 곤란
- (개선) 증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해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DR)도 증권 개념에 포함함

(6) 투자일임재산의 자사발행 유가증권 투자 허용

- (현행) 증권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당해 증권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어 고객의 자산운용 선택권과 고객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제한
- (개선)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자사발행 유가증권 투자를 허용

(7) 자산운용사 고유재산 운용제한 완화

- (현행)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 자산은 국공채, CD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수익성 제고가 곤란
 - * 주식·회사채·외화자산 등에 대한 투자 금지
- (개선)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되, 펀드 자산 운용관련 정보를 고유재산 운용에 활용하는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

(8) 국내펀드의 해외판매를 위한 제도정비(규제완화)

- (현행) 국내펀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판매회사를 통해서 판매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내펀드를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는 지적
- (개선) 국내펀드를 해외에서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배제(해당국 법 적용)

(9)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위험평가액 제한 완화

- (현행) 파생상품펀드는 장내외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 불필요하게 파생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하게 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개선) 파생상품펀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할 경우 위험지표*를 공시하도록 개선
 - * VaR(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파생거래의 최대손실예상금액), Stress Test(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펀드자산 손익구조 변동),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등

(10) 부동산펀드의 실물부동산 편입의무 폐지

- (현행) 부동산펀드의 개념상 실물부동산을 일부라도 반드시 편입해야 하므로 Project Financing을 위주로 운용하는 펀드는 PF자금 상환 후에도 실물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펀드상환이 지연되거나 펀드수익률이 저하
- (개선) 부동산펀드를 실물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개발 관련 법인에 대한 대출 등에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로 규정함으로써 실물부동산 편입의무를 폐지

(11) 투자회사의 담보제공 허용

- (현행) 은행 등과의 장외파생거래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요한데 투자신탁의 경우 담보제공에 제한이 없는 반면 투자회사는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음

- (개선) 파생상품 거래, 투자증권 차입 등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회사의 재산범위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 허용

(12) 상장형 펀드에 대한 공시의무 절차 간소화

- (현행) 수익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상장형 펀드도 자산운용보고서·수탁회사보고서를 우편으로 투자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펀드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
- (개선) 상장형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등은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간소화된 공시방법을 허용

(13) 펀드자산운용에 대한 Negative방식 규제 적용

- (현행) 자산운용 관련규제가 Positive방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펀드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제약이 되고 있음
- (개선) 간접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하고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을 폐지하는 등 Negative 방식의 규제 적용

(14)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기준 완화

- (현행) 상장법인 등이 최대주주 등과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일정 비율이상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보고를 거치도록 의무화
* 단일거래의 경우 1%, 거래총액의 경우 5%
- (개선) 금융기관의 경우 매출액(영업수익)이 작아 일반법인에 비해 보고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보고기준을 자산총액으로 단일화

4. 판매채널 등 규제개선 관련

(1) 보험대리점 사용인에 대한 신고수수료 근거 마련

- (현행)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은 등록수수료 규정이 있으나, 보험대리점 사용인*의 경우 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음

- * 수수료 : 보험설계사 6천원, 보험대리점 2만원, 중개사 5만원 등
- * 보험대리점 사용인 : 보험대리점 소속으로 모집업무를 영위하는 자 중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가진 자
 - 보험대리점 사용인의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시와 동일한 관리비용(전산인프라 구축 등)이 소요됨
- (개선)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보험대리점 사용인에 대해 수수료 부과 근거를 신설

(2) 감사보고서 본·지점 비치의무 면제

- (현행) 외부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가 전자공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외부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함
- (개선)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의 본·지점 비치의무를 면제

(3)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완화

- (현행)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예정회사에 대해 예외없이 상장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
- (개선) 신뢰성 있는 외국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된 국내회사가 국내거래소에 중복 상장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 * 증선위가 외국거래소의 신뢰도, 해외상장시 감사한 회계법인의 품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

(4) 저축은행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대출한도 확대

- (현행) 일정금액 이내의 복리후생을 위한 대출*외에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대출한도의 현실화 필요
 - * 저축은행 자기자본 15% 이내에서 총5천만원 한도
 - (①일반대출 2천만원, ②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매입 대출 3천만원, ③손해금보전대출 5천만원, ①+②+③은 5천만원)

- (개선)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대출합계는 5천만원을 유지)하되 직원에 대한 총대출은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5% 이내를 유지

(5) 수익자총회 의결대상 완화

- (현행) 신탁약관의 내용 중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수익자총회(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수탁회사의 변경이 수익자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합병·영업양도를 철회하거나 투자신탁의 해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투자자의 권익이 불안정해짐
- (개선) 합병·분할 등으로 수탁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주주총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

(6) 수탁회사의 감시의무 완화

- (현행) 수탁회사의 자산운용회사 감시대상에 자산운용회사의 전체 펀드와 관련한 규제 등 수탁회사가 감시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며, 자체적인 위험관리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감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선) 전체펀드 운용관련 규제는 수탁회사의 감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준법감시인을 통한 자율규제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는 수탁회사의 감시대상에서 제외

금융감독위원회

1. 진입규제 개선 관련

(1) 보험업 허가시 주요 출자자 관련 요건 완화

○ (현행)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요 출자자*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및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금액 제한 없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주요출자자 :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 보유자인 주주

○ (개선) 주요출자자가 금융관련 법령 및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소액(5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요건에서 배제하여 재산권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

(2) 신용카드업 허가시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제한 완화

○ (현행)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으로서 신용카드업 및 전산업무 유경험 임직원을 300명 이상 확보하고, 3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해야 함

○ (개선) 현행 「임직원 300명, 30개 이상의 점포」 기준 등을 카드사 경영정상화 추이를 보아가며 요건완화 검토

2. 업무영역규제 개선 관련

(1) 증권회사의 REPO 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 (현행) 증권회사의 Repo 거래* 대상 유가증권은 신용위험이 낮은 채권**으로 제한되어 있음

* 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환매조건부매매): 일정기간 후 일정가액으로 환매수(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수)하는 거래

** 국채, 지방채, 특별법상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사채, 상장·등록법인이 모집 매출한 사채, 금융기관이 보증한 사채

- (개선) Repo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간 Repo에 한하여 거래대상 유가증권을 채권 이외 CP 등으로 확대

(2) 동일영역 상품에 대한 생·손보간 상이한 상품운용기준 개선

- (현행) 제3보험 등 동일영역 상품에 대해 생·손보간 상이한 상품 운용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생·손보간 형평성 저해
- (개선) 보험업법 개정 결과에 맞춰 공동영역인 제3보험은 조기 개선 추진

(3)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관련 규정 개선

- (현행) 변액보험의 경우 최소한의 보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실적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최소한의 사망보험금이 보증되는 상품만 판매가 허용되고 있음
 -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이 없는 상품도 판매 가능
- (개선) 보험사가 최저사망보험금이 없는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자의 상품선택권을 확대

(4)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과 방식 개선

- (현행) 환매 또는 결산시 적립금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와 달리, 보험사의 변액보험은 일반보험과 영업보험료 기준으로 사업비를 초기에 부과
 - * 대다수 외국의 변액보험은 사업비 후취 방식을 택하고 있음
- (개선) 타금융권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후취 방식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사업비 부과방법 개선

(5) 보험계약 해지시 무해약환급금 제도 도입

- (현행) 표준해약환급금 제도를 통해 해약시 일정 수준 이상의 해약환급금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 미국, 일본 등에서는 보험 본연의 목적인 보장에 중점을 두어 낮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무해약환급금제도를 운용
- (개선) 보험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순수보장성보험 등에 대해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저축성보험과 종신보험은 중장기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

(6) 제3보험에 특화된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 도입

- (현행) 생손보사가 공통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제3보험은 생보 및 손보 상품과 달리 별도 표준약관, 표준사업방법서가 없어 보험사가 개별 약관을 사용
- (개선) 협회 및 보험회사 공동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제3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제정 추진

(7) 소액 보험금의 해외 지급 위탁 허용

- (현행) 보험회사의 업무 중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 업무가 보험업의 본질적 요소로서 위·수탁이 모두 금지되어 있음
- (개선) 여행자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등 해당 보험의 특성에 맞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해외사고 처리대행사에게 보험금 심사 및 지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검토

(8)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 PEF의 범위 확대

- (현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PEF 중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가능하나, 기타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불가
- (개선) 모든 PEF에 대해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

3. 자산운용규제 개선 관련

(1) 보험회사의 계정간 자금이체거래 규제 개선

- (현행) 보험회사의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는 보험료 수납, 보험금·배당금·환급금 지급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기자금 차입을 위한 콜거래는 금지
- (개선) 특별계정의 단기자금 부족시 일반계정으로부터의 콜차입 허용 및 계정간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방안 등을 추진

(2)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적용 기준 개선

- (현행) 보험회사는 동일법인 채권투자 제한(총자산의 100분의 7)으로 장기채이면서 투자매력도가 큰 주택저당증권 투자에 제한
- (개선)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고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을 자산운용비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 수단 확대

(3) 국내 판매 외국간접투자증권의 범위 확대

- (현행) 외국법령에 의해 외국에서 발행된 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현행 적격기준은 부동산, 상품 등에 투자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개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공모펀드에 한해 부동산, 상품 등에 투자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허용

(4)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상향 조정

- (현행) 신협이 동일인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와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자산 1%의 최고한도는 농·수협(5억원)과 달리 2억원으로 설정
- (개선) 신협 및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진척과정, 농·수협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총자산 기준 한도의 상향 조정을 검토

(5) 신용협동조합의 자산운용 범위 확대

- (현행) 신협이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회사채는 BBB-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회사채 등으로 제한하여 은행 후순위채 투자가 곤란
- (개선) 신협이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은행 후순위채를 포함

(6)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 탄력성 제고

- (현행) 신협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투자회사 주식 포함)의 투자한도를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40%*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 * 시행령(50%범위 내)의 위임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가 40%이내로 정함
- (개선)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40% 이상으로 확대

4. 판매규제 개선 관련

(1) 일반손해보험 상품 공시의 합리화

- (현행) 계약자 보호 차원의 상품공시 필요성이 낮은 일반 손해보험도 공시 의무를 부과
- (개선) 상품 공시 필요성이 적은 기업성보험 중 해상보험,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보험 등에 한하여 공시대상에서 제외

(2) 신판매채널관련 운영지침 마련

- (현행) 신판매채널의 확대 및 과장 광고로 인하여 고율의 수수료,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판매채널과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
- (개선) TM 등 신판매채널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추후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하여 제도화 추진

(3) 보험대리점 등록서류 간소화

- (현행) 보험모집 전문성 확보 및 불공정행위의 사전 차단 등을 위하여 보험대리점 등록시 정관,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개선) 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 신청시 정관은 제출 서류에서 제외

5. 규제체계 개선 관련

(1) 증권회사의 경쟁제한행위 예외 인정 규정 삭제

- (현행) 증권회사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기타 매매조건, 수수료 등을 정할 수 없으나, 투자자보호 및 원활한 매매 필요시 허용
- (개선) 경쟁제한행위 금지에 대한 단서 규정 삭제

(2) 일반투자자의 투자가능 외화증권 제한규제 폐지

- (현행) 일반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매매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외화증권*이 외국시장 상장증권, 외국 국공채 등으로 제한
 - * 외국시장 상장증권, 외국 국공채, 외국간접투자증권, 국내기업 또는 외국 기업이 공모한 투자적격이상 채권·CP 등
- (개선) 일반투자자의 투자가능 외화증권범위에 대한 제한 폐지

3.4.2.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손관설 전문위원(Tel. 2100-8795, mymusic@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금융분야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분야의 실물경제 지원능력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선진국에 비하여 한국 금융시장은 여전히 낙후된 상황이며, 금융산업의 발전 속도도 답보 상태에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국내 금융자산 증가율은 6.5%로 미국(9.5%), 영국(28.1%) 비하여 낮으며, 금융연관비율('05)도 6.6배로 미국(9.2배), 영국(12.0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 금융기관의 경쟁력 부족과 더불어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재무건전성, 사업운영, 금융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많은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도한 Risk 통제, 금융기관간 협업체제 제한, 칸막이식 판매 채널 제한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혁신적 영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금융의 글로벌화, 종합화, 대형화가 급진전되고 있어, 국내 금융산업의 종합화·대형화가 필수생존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금융사 Top 5 변화를 보면, 단종 금융사(State Farm, Prudential, Citibank 등)에서 네트워크와 시너지를 극대화한 금융그룹(AXA, Allianz, Citigroup 등)으로 강자지위가 변동하고 있다. 금융의 종합화·대형화 추세에 대응하려면 자본의 효율적 활용, 창의적 금융상품 개발 및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범용화·대형화되고 금융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PEF, 퇴직연금 등 신금융기법에 대해서도 제도활성화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신금융기법의 조기 정착 미흡시, 고도기술을 보유한 거대 외국자본에 의한 시장잠식이 우려된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국내 금융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는 업권별 자기자본비율, 자산건전성, 자산운용 등에 걸쳐 목표 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 자기자본비율규제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개별법에서 위험액 대비 일정 자기자본을 확보토록 강제하고 있으며, 일정기준 미달시 경영개선, 영업정지 등 처벌적 이행사항을 요구되고 있다.

금융사의 업무영역 및 취급상품은 개별 금융법에서 열거식으로 나열한 부분만 가능토록 한 칸막이식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크게 5개 개별법에서 별도 취급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사들이 금융혁신을 동반한 금융 신상품, 복합상품 개발시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인가심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날씨파생상품 취급, 증권-카드 복합카드 개발, 카드결재를 통한 펀드불입 등은 사전 인가심의가 필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금융상품 및 시장에 대해서도 기존 규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PEF는 일반 펀드규제체계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퇴직연금은 퇴직금제도와 연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근거해 운영함에 따라 새로운 영역의 안착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금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

- 기본방향**
- ◆ 복합상품, 공동마케팅 촉진을 통한 금융혁신 유인
 - ◆ 금융사의 사업구조 유연성 제고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 불필요한 인가·심사·공시 규제 합리화

(1)-1. 금융지주회사내 공동마케팅 허용

- 금융종합화 추세에 맞춰 금융지주회사내의 다양한 공동마케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는 사업자들이 금리·거래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
 - 특히,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들의 경제적 동일체 여부 및 공동마케팅의 위법성 판단 관련 심사기준이 모호
 - ⇒ 공동마케팅과 관련한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전략적 제휴에 대한 가이드라인(공동행위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지주회사가 100%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 등의 경제적 동일체 여부 판단과 관련된 심사기준도 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필요

(1)-2. 보험사의 업무위탁 범위 확대

-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는 금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규정 별표1은 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요소'들을 나열식으로 규정
 - 그러나 위탁금지 대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본질적 요소' 중 일부는 성질상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존재
 - *예를 들어 보험사의 본질업무 중 하나인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기 보다 자회사 등을 통한 위탁수행이 효율적
 - ⇒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에 대해 업무위탁이 가능토록 명확하게 해석(비조치의견서 등 활용) 조치(금융감독위원회)

(1)-3. 전업 재보험사 사업인가시 손해사정업무 요건 폐지

○ 현재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사업인가 규제를 전업 재보험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

*보험업법 제185조에서 재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손해보험사에 손해사정사 확보의무 부과

- 전업 재보험사의 경우 원수보험사의 손해사정결과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동 조항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

⇒ 전업 재보험사의 경우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사정사 확보 의무가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유권해석 실시(재정경제부)

(1)-4. 금융사의 경영공시방법 효율화

○ 금융사의 경영공시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투명경영에 필요한 제도이나, 제도 운영에 있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

-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인터넷공시 등으로 충분히 활용가능하나, 보험 및 비은행권의 경우 본·지점 등에 공시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훼손되지 않도록 강제 규정

⇒ 금융권의 통일경영공시의 전달방법을 인터넷 또는 지점 비치 중 금융기관이 자율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금융감독위원회)

- 개별 업역별 통일경영공시기준에서 공시자료 제공방식을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공시후 지점에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1)-5. 지주회사내 손자회사 편입시 편입승인 완화

○ 금융지주회사가 단순 지분이동으로 손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도 획일적인 자회사 승인요건을 적용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편입승인 필요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에서 사전 편입승인을 요구

- 시장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시 지분이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손자회사, 자회사의 지위가 변동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그룹 내 증권부문을 강화하기 위하여 손자회사인 증권회사를 자회사 지위로 변동시키고자 할 때 '사전승인' 필요

⇒ 사업구조 개편 목적의 지분이동으로 발생하는 손자회사의 자회사 편입승인을

‘편입신고’로 개선(재정경제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의1에 예외조항 신설

(1)-6.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Gift카드 허용

- 금융사의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은 서비스 질 개선, 글로벌 금융사에 대한 상품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장려될 사안
 - 이에 금융사의 상품개발 규제는 최소한의 위험관리 및 업역 구분 하에서 자유화시켜 나가야 할 사항
- 신용카드사의 혁신적인 신상품인 ‘해외용 Gift카드’가 취급제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해외용 Gift카드는 50만원 한도내 해외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해외용 선불카드
 - *현행 외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여진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의 외국환 취급업무를 “대외지급 수단의 매매”로 한정
 - ⇒ 역차별 해소, 혁신적 금융상품개발 촉진 등의 차원에서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Gift카드’ 발행을 허용(재정경제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바목 여전사의 외국환 취급업무에 “대외지급 수단 발행 및 매매”로 개정

(2) 재무건전성 규제의 합리화 및 선진화

- 기본방향**
-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재무건전성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해 금융의 효율적 발전 유인
 - ◆ 금융사의 차입기준 완화를 통한 경영기반 건실화

(2)-1.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규제 현실화

-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비율 계산에 있어서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에 적용되는 간접투자재산 위험액을 포함하도록 규제
 - *간접투자자산운용감독규정 제26조에서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규제】

- 산식 : 순자기자본/총위험액
 - 순자기자본 : 순자산액 + 후순위차입금 - 차감액의 합계(비상장비등록 주식 등)
 -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 거래상대방위험액, 신용집중위험액, 기초위험액, 간접투자
재산 위험액(수탁고에 따라 0.06%~0.2%까지 비율로 반영)
- *시장위험액 등 : 증권업감독규정상 위험산정방식 준용
- *기초위험액 : 자산운용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의 일정비율

- 자산운용사의 간접투자재산은 투자자로부터 위탁운용한 결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재산으로 운용사의 자기자본 규모와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
- 특히, 간접투자재산은 수탁사(은행 등)에 보관관리 됨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호되는 투자상품

【FY05년 기준 자산운용사 ROE와 자기자본비율간 상관관계】

- 46개 자산운용사의 ROE와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분석한 결과, -0.12로 ROE가 높은 경우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 예를 들어 A사의 ROE가 -8.0%이나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은 1,376%로 나타나는 모순 발생

⇒ 과도한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현실화(금융감독위원회)

- 간접투자자산운용감독규정 제26조를 개정해 장부기펀드·시가펀드 간 차등을 없애고 대형펀드의 위험가중치는 하향조정 등을 포함해 현실화

(2)-2.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상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산정기준이 은행 등 타금융권과 대비하여 상이한 규제 존치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타금융권에서 인정하는 보완자본인 재평가적립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채무 등이 자기자본으로 불인정됨(저축은행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주요 금융권의 자기자본 인정항목 비교 >

	은행 (은행업감독규정 별표1)	보험 (보험업감독규정 1-4조)	상호저축은행
기본자본	자본금+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자본금+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 ± 결산상 오류금액
보완자본	재평가적립금,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대손충당금, 후순위채무 등	대손충당금	-
공제항목	영업권,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 등	영업권 등	-

⇒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정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은 건전성비율 산정 방식 및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등을 은행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재정경제부)

(2)-3. 우체국금융의 업무용 부동산 매입 허용

○ 우체국 금융은 예금자금 운용방법에서 열거주의 규제체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자금운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출, 부동산 투자 등에 제약 존재

【우체국금융의 자금운용 규제(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 (예금자금의 운용)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예금자금을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5. 선물거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종 금융상품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6.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 우체국 금융의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일정 한도를 두고 허용(재정경제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업무용 부동산 매입' 추가

(3)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기본방향 ◆ 금융시간 불명확한 규제체제 균형화
 ◆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금융 회계제도 개선

(3)-1. 금융시별 불명확한 특수관계인 규제 명확화

- 개별법상에 특수관계인 범위가 상이해 금융권역간 형평성 논란 야기
 - 특히, 보험사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타법과 형평성없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과도한 규제행위 유인
 - 보험업법의 특수관계인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만 준용하고 있으나, 현실성을 감안한 예외조항인 동 영 제3항 및 제4항은 준용하지 않음

< 개별법상의 특수관계인 정의 비교 >

보험업법상	증권거래법상	은행법상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10조의3 제2항의 특수관계인	- 개인의 경우 배우자, 6촌이내 부계혈족 등 - 법인의 경우,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등 - 본인 등이 실질지배하는 단체, 회사 등	-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동일인관련자 - 공동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자
	- 단, 보유주식 1,000주 미만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음		- 단, 계열보리한 경우 제외

- ⇒ 개별 금융업법상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타법과 연계해 정비(재정경제부)
- 개별 금융업법상 특수관계인 범위를 형평성 있게 조정

(3)-2. 신용카드 회원가입시 인지세 현실화

- 신용카드시장의 경영상황, 타 금융권 대비 높은 인지세 등을 고려할 때 회원가입시 인지세 현실화 필요
 - '02 인지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3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후 지속

*각종 인지세 비교 : 신용카드 대리점계약 300원, 예적금, 보험증권 등 100원, 보증보험증권 200원 등

- ⇒ 타금융권과의 형평성, 신용카드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신용카드 발급 관련 인지세를 하향 조정(재정경제부)
- 향후 인지세법 개정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02년 정도의 수준으로 반영

(3)-3. 여전사의 매입가능 채권 제한규정 완화

○ 여전사는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 및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 매입업무만을 수행 가능(여전업법 시행령 제16조의1)

*여전업법 시행령 제16조의1에서 매입가능채권을 동종 업계로 제한

- 신용위험의 산정, 관리 등은 여전사 업무의 근간이므로 금융산업 전반의 신용리스크 축소와 여전사의 채권관리 경쟁력 활용 차원에서 매입채권 범위 확대 필요

⇒ 여전법상 여전사의 매입채권 가능범위를 동종업계에서 타 금융권(상호저축은행, 신협)의 매출채권으로 확대(재정경제부)

*여전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상호저축은행 및 신협의 채권 인수 허용

(3)-4. 보험사 특별계정의 회계제도 개선

○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상품이 투자한 유가증권은 회계처리상 단기매매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으로만 분류하도록 규정

- 단기매매로 분류할 경우 평가손익이 반영되나 시가평가 위험으로 장기채권 투자가 곤란하고, 만기보유증권 분류는 시가평가 위험은 없으나 매매가 금지되고 평가손익이 인식되지 않음

*만약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투자판단하에 매도시 추가 제약(기보유 만기보유증권 매도, 신규 만기보유증권 분류 금지)의 별칙이 존재

- 반면, 매도가능증권 분류는 시가평가 및 평가손익 자본조정 반영과 함께 매매에 제약이 없어 유가증권의 효율적인 처리방법임

	정의	시가평가 유무	손익처리	특별계정 분류기준	일반계정 분류기준
단기매매증권	단기간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유	- 이자수익 - 평가/매매 손익	○	○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유	- 이자수익 - 평가손익 자본 조정에 반영	x	○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권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무	- 이자수익 - 매매/평가 손익 미반영	○	○

⇒ 보험사 특별계정상품 중 원리금보장형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에 대해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치(금융감독위원회)

(3)-5. 보험사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시 자산 편출입 허용

○ 퇴직보험 가입기업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대규모 기자산 매각과 신규 매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내 자산간 편출입 금지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등에서 계약자보호, 회계처리 투명화 등을 위해 특별
계정내 자산간 편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 이에 따라 대규모 단일거래에 따른 자본시장의 요동 가능성, 연금운용사의 자산운용
효율성 저해 등의 문제점 우려

*퇴직연금 전환이 매년 12월에 집중되면서 자본시장의 수급 불안정으로 필요량을
매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저가매각과 비용발생으로 수익률 급락 가능성

⇒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회계처리·감독의 문제* 및 타법령과의 형평성

**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재정경제부)

*현재는 특별계정간 자산편출입을 전면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산편출입 회계
처리에 대한 규정 불비

** 신탁업법령상 퇴직신탁의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도 계정간 자산편출입 불허

(3)-6. 감사인의 심리담당이사에 대한 조치제도 폐지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는 경우 당해 위반
행위를 한 공인회계사는 물론,

- 대표이사, 담당이사, 당해 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 심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대상자에서 업계 자율 자체심리기능을 수행하는 심리담당이사를 삭제(금융감독위원회)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4조제3항제2호 심리담당이사 처벌규정 삭제

(3)-7. 회계 감리자료 제출요구의 문서화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 수행시 감사인, 회사 등 관계자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 경미한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음
 - ⇒ 경미한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금융감독위원회)
 -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8조제1항 개정

(4) 신금융기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PEF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및 자본시장 육성
 - ◆ 퇴직연금시장의 조기 정착을 통한 국민복지 경쟁력 제고
 - ◆ 신용파생상품의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 유인

(4)-1. PEF의 Off-Shore SPC 허용

- 현행 간투법령은 국내에서 설립한 PEF(Private Equity Fund)가 일반적인 Paper Company인 투자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31조의6에 SPC 설립을 허용(상법상 주식회사·유한회사, Paper Company, 출자자는 PEF만으로 구성될 것 등)하고 있으나,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 미비
 - ⇒ 외국계 PEF와의 공정경쟁,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PEF의 Off-Shore

SPC 허용(재정경제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31조의6에 Off-Shore SPC 신설

(4)-2. 펀드의 외국증권사 발행 ELW·ELS 등의 투자 허용

○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따른 증권”(ELW, ELS, DLS)에 대한 투자는 가능

* ELW(Equity Linked Warrant) :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 ELS(Equity Linked Securities) :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 이자율, 환율, 신용위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 그러나 ELW·ELS·DLS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장외파생상품거래 인가를 받은 국내증권사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한정됨에 따라 외국 증권사가 발행한 ELW·ELS·DLS에 투자할 수 없음

⇒ 펀드의 투자대상 다양화 차원에서 외국증권사가 발행한 ELW·ELS·DLS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재정경제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개정

(4)-3. 날씨파생상품의 손보사 취급 허용

○ 날씨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s)은 농수산업, 유통업 등에서 날씨관련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활성화 필요성이 있으나, 손보사의 업무제한 규정으로 취급 곤란

*날씨파생상품은 매년 기상이변의 빈도와 심도에 따라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파생상품으로 해외시장규모는 46억달러에 달함

- 손보사의 겸영/부수업무 규정(보험업법 제16조)에 날씨파생상품 취급이 제외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 '98년 날씨파생상품을 보험사의 부수업무에 포함

< 날씨보험과 날씨파생상품 비교 >

	날씨보험	날씨파생상품(미, 일)
대상위험	날씨로 인한 손해	손해여부와 상관없음
보상형태	신손보상	지주변동에 의한 정액보상
보상기준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	행사가격에 도달
손해사정	필요	불필요
전가시장	재보험시장	자본시장
판매기관	손해보험사	손보사, 일반기업, 금융기관 등

⇒ 파생상품 취급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및 소비자보호 장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재정경제부)

- 현재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회사를 규율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법제정 추이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 마련

(4)-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일반조합원의 유한책임 여부 명확화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영상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책임부담에 대한 명문조항이 미비하여 단순출자자에게 무한 손실을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문제점 발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 해석되어 조합의 업무에 전혀 간여하지 않고 있는 일반조합원에게 발생손실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여
 - 여타 PEF 등 신금융 관련 투자기구의 경우 업무집행사원과 일반투자자를 구분하고 무한책임소재도 명확화하고 있음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일반조합원에 대한 유한책임을 법령에 명확화(재정경제부)

- 여전업법 제44조 제4항 등으로 일반조합원과 업무집행사원의 책임범위 규정 신설

(4)-5. 생보상품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망보험금과 납입보험료 관계 개선

- 저금리로 인한 보험료 상승, 고령화 급진전 등으로 고령층의 보험가입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나, 효율적 상품설계가 제한

- 보험감독규정 제7-60조의 보험상품설계 기준에서 납입보험료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제
- 이에 따라 연령층이 높은 계층은 납입보험료 총액과 사망보험금을 비교하면 사망보험금이 적어 가입연령에 따라 납입기간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
 - * 납입기간 : 일정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장기간 납입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단기납 보험상품 보다 연간 납입보험료가 저렴함
- ⇒ 일부 보험종목에 대해 불완전 판매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설명 의무 강화 등)를 마련한 후 예외규정 신설(금융감독위원회)

(4)-6. 퇴직연금 도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미흡과 연금제도 미흡 등으로 가입율이 저조한 실정
 - * '06년말 기준 도입현황 : 사업장수 16,291개(도입율 3.5%), 근로자수 21만명(도입율 3.2%) 수준
-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연금계리기준 미정립, 중소기업 도입절차 복잡 등의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 필요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급여비용 및 수익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적정 부담금을 산출·적립하는 연금계리방식이 필요
 - 또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신고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히 번거로움
 - *외국(미국, 홍콩)의 경우 표준적인 형태의 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장의 제도 도입절차를 간소화
 - 현재 근로자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 하나의 제도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선택권에 일정 한계
 - *미국의 경우 DB/DC 혼합형, 하이브리드형(cash balance plan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 한편,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의 보완적 개념으로 은퇴 후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되는 성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체계를 개편해 활성화할 필요
 -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유인을 위해 근로자 추가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세계

혜택 확대 필요

- *추가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정급여형 가입자는 없으며,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경우 연간 3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까지 소득공제
 - *미국의 경우, 확정기여형에 최고 15,000달러까지 소득공제 실시
 - 연금세제 미비로 장기근속·고직급 퇴직자의 경우 연금보다 퇴직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
 -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 근속년수 20년이상 이면 연금소득세가 퇴직일시금 소득세보다 과다 부과(첨부 6, 7 참조)
 -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수입액 기준에 대해서만 일정금액에 따라 70만에서 20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제공하나, 국내의 경우 모든 연금의 수령합계를 기준으로 연간 350만원~900만원까지 소득공제
 - 현행 퇴직급여추계액을 한도로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을 해주고 있으나, 연금계리 방식에 따른 DB 부담금에 대해서는 추계액 한도를 넘더라도 손비로 인정
 - *미국, 일본 등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청산기준) 뿐 아니라 연금계리방식에 의한 계속기준도 인정하여 손비인정한도를 확대
- ⇒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연금계리기준 및 연금계리사 자격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노동부)
- ⇒ 추가 제도개선을 비롯한 퇴직연금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 종합적 활성화방안을 별도 과제로 검토

(4)-7. 보험사의 신용스왑거래 제한 완화

- 보험사는 은행권의 신용리스크 헤지 차원의 신용스왑거래의 상대기관으로 참여 수요가 많으나, 관련 규제로 참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 *신금융상품인 신용스왑거래가 지급보증과 유사하게 유권해석되어 취급이 금지(현재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이 불가)
-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신용보호 매입(신용리스크 헤지) 수요에 대응한 거래(신용보호 매도, 신용리스크 인수)가 발생하지 않아 시장조성 및 발전을 저해
- *외국의 경우 신용보호 매입의 50%가 은행이고 신용보호 매도의 30%가 보험사임
- 특히, 은행권의 신자기자본비율 규제(Basel II) 도입에 앞서 신용위험 헤지 차원의 신용스왑거래 수요가 큼

⇒ 신용파생상품 시장현황 및 취급허용시 영향 등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재정경제부)

(4)-8. 증권회사의 파생상품영업 상대방 규제 현실화

- 장외파생상품업무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음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 계약에 의한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8 제1항 각호에서 열거되어 있는 자로 한정됨
 - 열거된 상대방중 외국인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외국 금융기관과 외국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자로 한정
- ⇒ 외국의 펀드를 상대로 계약방식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재정경제부)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8 제1항에 외국 펀드도 거래 상대방으로 포함

(4)-9. 금융권내 파생상품영업 규제차이 합리화

- 금융권내 파생상품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은행과 증권사간 규제차이가 있어 해외 금융 기관에 의한 규제쇼핑 문제 발생

< 은행과 증권의 파생상품영업 규제차이 >

구 분	은 행	증 권
업무성격	부수업무(인가불필요)*	겸영업무(인가필요)
영위요건	단순 신고	인가요건** 충족
업무규제	없음(적기시정조치기준이 되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만 충족)	거래상대방 규제등 업무규제***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범위에관한지침 Ⅱ.16에 열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에서 (1)자기매매업·위탁매매업·인수업을 모두 영위 하는 종합 증권회사, (2)주요 출자자 요건, (3)영업용순자본비율이 300%이상, (4)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2007년 3월28일까지만 유효)(5) 전문인력 확보, (6)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종합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3에서 거래상대방 규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총위험액 규제(자기자본의 30%), 신용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위험액 규제(자기 자본의 5%), 위험고지서면 제공, 매거래시 임원승인, 영업용순자본비율 300%이상 유지 (적기시정조치대상 영업용순자본비율은 150%이상이나 장외파생상품업무 영위 시 300%이상 유지필요)를 부과

- ⇒ 현행 은행업무 부수업무 규정에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 규제체제를 적용 받도록 조치(재정경제부)
- “은행업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2.16에 파생상품 취급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3을 따르도록 규정 개정

(4)-10. 국민연금 기금운영에서의 대안투자 제한 완화

○ 국민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안투자를 발굴하여야 하나, 파생상품 투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3호에서 장내의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투기적 목적의 거래는 제외됨에 따라 상품(Commodity) 투자 및 헤지펀드 투자가 제한
- 해외 연기금의 경우 동종 상품에 대한 투자가 이미 대안투자의 주 수단으로 정착 되고 있는 상황

*해외 연기금의 대안투자(Alternative Investment) 투자비중 현황

- 미국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05.12) : 203조원 중 19.7조원
- 캐나다 케벡주연금('06.3) : 151조원 중 10.2조원
- 네덜란드 공공부분근로자연금('05.12) : 229조원 중 45조원

⇒ 대안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금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파생상품 투자제한을 완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3호의 투기적 목적 투자제한 폐지

3.4.3. 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손관설 전문위원(Tel. 2100-8795, mymusic@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함께 규제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과거 실물경제 지원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 및 금융영업 환경 개선, 글로벌화의 진전 등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상승(90년 5.2% → 03년 7.5%)하였고, 국내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비중도 상승추세(90년 6.1% → 03년 7.0%)에 있다.

그동안 미진하였던 자본시장관련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어 자본시장 규제개혁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 부진, 자본시장내 각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규제 등 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금융회사 영업규제 개선 및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체제 돌입으로 금융상품 및 영업부문의 혁신적인 규제개선 수요가 증대되었고, 금융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내국인의 해외투자 수요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수용여력 확대 차원에서 서민금융기관의 건실화·활성화가 필요하다. 금융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및 사전적 영업·상품 규제 완화와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범위확대를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금융사회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투자에 대한 사전적 인허가 절차를 통하여 투자가능 부문과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다. 외국환관리규정, 개별 금융업법 및 감독 규정에서 해외 지사, 사무소 등의 설치시 사전 신고수리 및 사전 협의하도록 규제하고

금융회사별 외국환업무 및 해외투자도 외국환은행을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및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장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가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여도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인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허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기관의업무위탁에대한규정 등에서 증권·신용카드사의 제휴카드 불허용, 금융회사의 자발적 업무위탁 불가, 카드의 적립식 펀드불입액 결제 불허 등을 들수 있겠다.

금융소외계층 및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실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택법 등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증권 및 퇴직연금 등의 판매 금지,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취급기관에서 서민금융기관 배제, 공무원연금 급여수령기관 등 정책자금 취급에서도 서민금융기관이 배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은 업무영역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타 금융기관에 비해 영업력이 취약하고 서민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금융회사의 영업규제 개선

- 기본방향**
- ◆ 해외 자회사 설립 및 영업 등 규제 개선으로 해외진출 활성화
 - ◆ 금융회사간 불균형한 영업 및 업무 규제 개선

(1)-1. 금융기관의 해외 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해외지점뿐만 아니라 단순 업무연락 등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9-26조에서 업무활동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토록하고 있음
 - 은행의 국외사무소는 국외지점·해외현지법인 신설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과 사전협의하도록 규제

*해외 사무소를 설치할 때 필요한 신고수리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사전협의는 접수후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음

⇒ 금융기관의 해외사무소 설치에 대해 신고·수리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외사무소 신설에 대해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재정경제부)

*은행업법 제13조, 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26조 개정

(1)-2.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인가 등 처리기간 단축

○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가 및 신고의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

-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투자기회를 실기하는 등의 규제비용 발생
- 특히, 해외 투자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사업시작 시점을 정하고 있는 해외 진출의 경우 인가 및 신고 처리 기간 지연으로 상당한 애로 발생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과정을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심의 처리기간을 단축(재정경제부)

(1)-3. 보험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자회사 규제 완화

○ 보험회사의 해외 현지투자법인이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투자에 대한 투자자문 및 일임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제

- 보험회사의 해외 현지투자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 영위 가능
(보험업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3호)

*해외 현지투자법인이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자문 및 일임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간투법상의 역외 투자자문 및 일임업 등록과 함께 보험업법 시행령상 금융감독 위원회로부터의 승인을 요구

⇒ 자회사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재정경제부)

*예 : 해외 투자법인의 국내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문 및 일임업 허용 등

(1)-4. 보험회사의 동종 모회사간 설계사 겸직금지 완화

- 보험회사의 설계사는 한 회사만을 위해 모집행위를 할 수 있으며 대리점의 모집사용인 지위를 겸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A보험사가 동종 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B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 B는 A보험사 설계사를 모집사용인으로 활용 불가
 - *보험업법 제85조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다른 회사의 보험모집을 위탁받을 수 없도록 규제

- 보험회사는 전문화된 다양한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나, 보험회사의 동종 모회사간 설계사 겸직금지 때문에 현실적으로 곤란
 -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모회사의 판매조직을 활용하지 못해 신규 판매조직을 별도 구축하는데 따른 비용상승
 - ⇒ 동종 모회사(100% 자회사)간에 한해 보험설계사가 대리점형태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재정경제부)
 - *보험업법 제85조 개정

(1)-5. 리스차량 과태료 처분 절차 개선

- 리스차량 이용자가 교통위반시 과태료가 실제 이용자에게 청구되지 않고 리스업자에게 청구되고 이에 대한 책임도 리스업자가 지고 있음
 - 반면, 리스와 사업본질이 동일한 렌트차량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예외적용을 통해 렌트카 이용자에게 직접 과태료 징구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렌트업자의 경우 렌트이용자가 교통위반을 할 경우, 직접 렌트이용자에게 부과 가능

【현행 렌트차량과 리스차량의 과태료 처리 절차】

- 렌 터 카 : 관할관청이 렌트사에 소비자 주소파악 요청→렌트사는 계약서첨부, 관청에 소비자 주소통보→관청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청구 → 이용자 직접 납부
- 리스차량 : 관청에서 리스사에 직접 과태료 부과→리스사가 대납한 후 소비자에게 청구→소비자가 리스사에 납부

⇒ 리스차량도 렌트차량과 동일하게 계약서와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리스차량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과태료 미납시 법인 리스차량에 대해 리스사에 가압류하지 않도록 전국 경찰서에 내부지침 하달(경찰청)

(1)-6. 손해사정회사의 상호표기 단순화

- 손해사정업자는 상호에 ‘영위종목’과 ‘손해사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제
 - 특히, 현재 손해사정사를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으로 구분하고 각 종별로 손해사정사가 취급 가능한 모든 보험종목(영위종목)을 열거하도록 규제

구 분		보험종목(영위종목)
제1종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신용손해보험, 도난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제2종		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제3종	대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
	대물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
제4종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상호에 영위종목을 포함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바, 영위종목 표기 의무 규정 삭제(금융감독위원회)

(1)-7.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범위 확대

- '05년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외부위탁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일부 규정운영이 경직되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확대가 제한적임

<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 규정 개정 >

	2000년 제정	2005년 개정
위탁방식	Positive 방식 (원칙금지, 예외허용)	Negative 방식 (원칙허용, 예외금지)
후선·지원업무	건별로 행정지도	원칙적으로 허용
개인에 대한 위탁	불분명	위탁대상으로 명시
보고방법	통상 사후보고	새로운 유형만 사전보고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체계	-	‘업무위수탁운영기준’운영

*현재 선진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가능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며 미 연방은행 분석결과 세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비용지출은 150억달러(95년)에서 3,000억달러(01년)로 급증

- ⇒ ① IT 등의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가능여부 사례제시(금융감독위원회)
 - 후선지원업무를 포함한 업무위탁 가능/불가능 범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 제시
- ⇒ ②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무의 외부위탁에 대한 실무상 혼란 방지
 - 업무위탁 가능/불가능 범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 제시
- ⇒ ③ 금융지주회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전향적 검토
 - 업무위탁 가능/불가능 범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 제시

(1)-8. 금융지주회사내 전산자회사의 외부용역 처리 허용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인 금융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제공 등을 위하여 전산자회사를 둘 수 있음
 - 그러나 전산자회사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동일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인 금융회사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실무해석상 불명확
 - 현행 법규상 전산자회사의 용역제공대상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해석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
 - ⇒ 금융지주회사 소속 전산자회사가 타 그룹 소속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재정경제부)
 - 금융지주회사 소속 전산자회사가 타 그룹사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가능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시 유권해석 조치

(1)-9. 보험상품 고객 안내자료 발행부담 완화

- 현재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보험가입시 상품안내장, 가입설계서, 보험증권, 약관 이외에 상품설명서를 발행하여 계약자의 자필서명 후 보관하도록 규제
 - 상품설명서는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도입(07년 4월)한 제도
 - 그러나 기존 가입설계서, 상품안내장 등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상품설명서 관련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발생

*보험감독규정상 4장 내외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작성지침에 따른 경우 회사 보관용까지 포함하여 20여장에 이룸

⇒ 보험소비자 피해방지, 고객안내 자료의 중복성 해소, 규제비용 최소화 등을 종합 검토해 고객안내 자료를 합리적으로 개선(금융감독위원회)

(1)-10. 금융지주회사내 증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범위 확대

-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매매를 위탁한 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위탁자가 위탁한 유가증권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누설할 수 없으나(증권거래법 제59조)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인 증권회사는 위탁유가증권의 총액에 관한 정보를 소속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목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

⇒ 자본시장통합법 하위규정 마련시 금융지주회사의 그룹내 고객 분석을 보다 정교히 하고 이를 통해 영업활성화가 가능토록 증권사 고객의 정보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 추진(재정경제부)

(1)-11. 제3보험 신출방법서 작성기준 개선

-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거의 동일하게 영위하는 제3보험의 상품설계, 요율산출 등에 대한 규제가 생·손보사간 불균형
 - *제3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외에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을 제3보험으로 인정하고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모두가 겸영 가능(보험업법 제2조 제4항)
 - 손보사는 제3보험의 경우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요율을 차별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생보사는 불가(보험업감독규정 제7-78조)

⇒ 현 시장구조 및 질서 등을 종합검토해 제3보험 분야에 대해 보험료 및 위험률 산출 기준을 생·손보 동일하게 운영하는 방안 마련 및 추진(금융감독위원회)

(1)-12. 정상여신 채권양도 관련 규정 개선

- 현재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반도록 하고 있음

- 양도자산이 근저당권 담보채권인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금액을 확정하여 채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발송 다음날 당해 채권이 확정
- 부실여신은 확정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해도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없어 자산유동화가 용이

⇒ 자산유동화 관련 절차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검토(재정경제부)

(1)-13. 보험회사의 보고의무 기한 명확화

-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상 특정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정책 및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
- 법 및 감독규정상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음

< 보험 관련 법, 감독규정상 ‘지체없이 보고 사항’ 예 >

- * 보험업법 제93조 (신고사항) : ①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보험업감독규정 제2-5조(서류의 보완 등) 제2항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인은 그 조건을 이행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상 ‘지체없이’ 또는 ‘즉시’ 등의 문구를 사안별로 필요성을 구분하여 예측 가능한 구체적 기한으로 명시(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2)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 기본방향
 - ◆ 금융회사의 신상품 개발에 대한 사전적 규제 완화
 - ◆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처리 규제 개선

(2)-1.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금액 한도 상향 조정

- 신용카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
- *선불카드는 정해진 액수만큼 카드로 소비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기명식 혹은 무기명식으로 구분(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7조의 2)

< 선불카드 이용금액 및 이용자 수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월
이용금액(억원)	926	955	1,418	2,128	2,798	1,766
이용회원수(천명)	158	145	148	161	148	118

⇒ 신용카드 사업자가 발행하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발행금액한도 제한을 상향 조정(재정경제부)

(2)-2. 금융회사의 자동이체 고객동의방식 개선

- 보험사, 카드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자동이체를 신규 또는 변경 신청할 경우 서면동의 또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제
- '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상 출금(소비자 측면에서 자금이체)시 서면동의나 전자서명이 있어야 가능
- *과거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불가
- 이에 따라 보험사 등 금융기관 소비자가 자동이체를 신규 혹은 변경 신청시 불편하게 소비자로부터 서면동의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 발생
- *카드결제, 보험료이체 등 자동이체 계좌의 신규 및 변경은 수시로 상당수 발생하며 해당사유 마다 서면동의나 전자서명을 해야하는 상황

⇒ 금융소비자 보호, 결제의 안정성, 규제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 '08년 상반기까지 서면동의(또는 전자서명)외의 추가적인 동의 방식 마련(재정경제부)

(2)-3. 증권·신용카드사의 제휴카드 허용

- 체크카드의 경우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제휴를 통해 CMA체크카드 발급이 가능
- 한편,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증권사 CMA 계좌를 통한 대금결제, 증권사와 카드사간

- 업무제휴를 통한 포인트 공유 서비스 제공 등의 마케팅 활동은 가능하나,
 -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은 감독당국의 권고로 어려운 상황
 *금감원의 불가 이유 : 제휴카드를 이용한 투자자금의 투기화, 카드사간 과당경쟁 등의 우려

*해외에서는 Merrillyn Lynch Credit Card, JP Morgan Credit Card 등 증권·신용카드사의 제휴카드 도입

⇒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산건전성 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모집질서에 대한 제도개선 후 증권·신용카드사의 제휴카드 허용(금융감독위원회)

(2)-4. 금융상품 등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대상 명확화

- 신용카드 결제 대상은 물품, 용역, 선불카드, 상품권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국민들의 보편적인 저축 수단인 적립식 펀드의 매월 불입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음
 - 신용카드 결제대상은 여신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나열식으로 규제하고 있음(여신금융업법 제2조 제3항, 시행규칙 제2조)

⇒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여전법상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결제대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정비 방안 마련(재정경제부)

* '08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 마련

(2)-5. 신간·도시지역 주민을 위한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 우체국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외국통화 및 여행자 수표 매입, 매입한 범위내에서 외국통화의 매각, 우편환(전신환 포함)을 통한 송금 등만 허용되어 있음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 이에 따라, 은행이 없는 비도시지역 주민의 해외여행시 외화환전 등에 불편 야기

⇒ 거주자에 대한 여행자수표 매도를 허용하고, 외화매각 한도도 폐지(재정경제부)

-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우체국의 외국환업무에 거주자에 대한 여행자수표 매도를 포함하고, 외화매각 제한 삭제

(2)-6. 부동산 담보대출시 포괄근담보 설정 관행 개선

- 부동산 담보대출시 금융회사는 근저당설정 계약서에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로 설정하는 관행이 존재
 - 채무범위는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소비자와의 사전협의를 형식적이며 금융회사는 포괄근담보 선호
 - * '포괄근담보'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현재 및 장래에 거래하는 모든 금융거래, 신용카드, 어음대출, 보증채무 등을 담보
- ⇒ 금융소비자가 포괄근담보 등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택할 수 있는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조치(금융감독위원회)
 - 은행대출 상담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지도 촉구

(3)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 개선

기본방향 ◆ 자산운용 · 건전성 규제개선으로 영업력 강화
◆ 선물환 및 파생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3)-1. 증권회사의 외환 머니마켓 참여 허용

- 증권회사의 업무 취급범위에 외국환 대차거래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화 머니마켓에 참여할 수 없음(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 *증권회사의 Money Market 참여 불허는 외국환거래법의 기본원칙인 포괄주의(Negative System)에 위배됨
 - 외화 머니마켓에서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면 외환거래 결제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과도한 외환 거래비용이 발생함
 - 매입한 외화 및 입금이 확인된 금액 한도 내 매각만이 가능하여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능
- ⇒ 향후 자통법체제에서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범위 등을 종합검토해 증권사의 외환 머니마켓 참여 관련 제도 개선(재정경제부)

(3)-2. 증권회사의 헤지목적 선물환 거래범위 확대

- 증권회사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권거래와 관련한 선물환 거래는 허용되나, 거주자간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한 선물환 거래는 허용되는 **않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화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또는 환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한 선물환 거래는 허용하고 있음

⇒ 거래주체에 관계없이 증권회사에 외화증권매매와 관련한 환위험 해지를 위한 선물환 거래 허용(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2항 제1호 나목 개정

(3)-3.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기자본 규제 현실화

- 증권회사의 경우 자기자본규제비율을 100분의 300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증권사의 NCR 100%는 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와 유사한 개념임
 - 따라서 NCR 300%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24%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임
 - 증권사의 자기자본규제가 개별 증권사의 영업형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증권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

*Goldman Sachs에 한국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적용 시 53.2%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수준 / 국내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평균 696% (한국증권연구원, '06.12)

⇒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하위규정 마련시 증권사의 영업용순자기자본비율 규제체제에 대해 다양한 영업형태 및 위험, 건전성 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재정경제부)

(3)-4.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요건 완화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는 포함되지 않아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시 많은 제약이 따름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시 사모투자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최근 3년간 누적기준으로 당기순이익 시현을 요구하고 있어 사모투자의 해외 진출에 많은 제약이 있음

- ⇒ 외국환거래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사모투자를 금융기관으로 구분(재정경제부)
- 또는 외국환 거래규정에서 신설 사모투자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없도록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요건'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

(3)-5.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대상 범위 확대

- 증권사는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인 법인만을 대상으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함
- 따라서 일반 중소기업 내지 중견기업과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차단되어 있음
- 증권사의 경우 기업의 환율변동 위험이나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헤지상품 등을 발행할 때 주요 고객이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인 경우가 많음
- ⇒ 자본시장통합법 하위규정 마련시 증권회사가 중소기업, 해외법인 등과 헤지목적의 장외파생 상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 추진(재정경제부)

(3)-6. 금융회사의 신용파생금융거래시 신고의무 폐지

-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신용파생금융거래는 신용사건 발생시 대규모 손실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리스크 문제는 외환거래 규제가 아닌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모든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신고의무 폐지(재정경제부)
-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제1항 제2호 개정

(3)-7. 민영의료보험의 지급여력기준 개선

-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생·손보간에 동일하게 취급하나 지급여력기준비율 산정시에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동일한 의료실손 상품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단순월지급여력 기준금액은 생보가 손보 대비 약 1.4배 과다

- 생보 : 책임준비금의 4%+위험준비금의 0.3%
- 손보 : 책임준비금의 4%+Max (1년간 보유보험료 × 17.8%, 3년 평균 보험금 × 25.2%)

*외국사례 : 독일, 스페인, 미국 등 선진국의 제3보험 지급여력기준은 생·손보 동일 방식 적용

⇒ 민영의료보험의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후 추진
(금융감독위원회)

(3)-8. 자회사 특정금전신탁에서의 지주회사 주식취득 허용

○ 현재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손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발행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구성 등 신탁자산·간접투자자산 운용에 장애가 발생

⇒ 위탁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취득을 허용(재정경제부)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5항 개정 혹은 유권해석 조치

(4) 서민 금융기관 활성화

기본방향 ◆ 영업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자금 취급어용
◆ 서민금융기관의 건설화를 위한 규제 개선

(4)-1. 서민금융기관에 정부 정책자금 취급 허용

○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연금 및 정책자금 지원창구에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주 영업기반인 서민금융기관이 배제되어 영업상 애로

- 현재 정부의 각종 연금 및 정책자금의 취급은 은행, 농·수협으로 제한

*연금 및 정책자금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농어민 지원, 축산발전기금, 실업급여 등

*농협의 경우 정책자금이 총대출의 31%, 지자체공금이 예수금의 36% 점유

- 특히,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은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갖고 있어 정책자금 지원채널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음

*농어촌 소재 새마을금고('06.4) : 630개 금고, 회원수 6,013천명

*농어촌 소재 신협('06.11) : 259개 조합, 회원수 9,800천명

⇒ 관련 부처는 관련 법규 등을 개정하여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포함(행정자치부, 농림부,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 행자부 :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28조 별지서식 중 급여 수령제외기관에서 서민 금융기관 삭제
- 농림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 축산법시행령 제20조 등에 취급 기관으로 서민금융기관 포함
- 국방부 :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중 청구서 작성방법에서 급여수령가능 금융기관 삭제(예 : 별지 제4호서식)
-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14조의 시중은행 범위에 서민금융기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노동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5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개정해 기금지급, 보험급여 수령, 용자업무 취급기관에 서민금융기관 포함

(4)-2. 저축은행의 취급업무 확대

○ 저축은행은 취급업무가 단순하여 수익의 대부분을 예대마진에 의존함에 따라 대출 부진 또는 연체 증가시 수익창출이 어려우며 건전성 악화 가능성 상존

< 서민금융기관 예대출 현황('06.12말, %) >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95.8	67.5	50.9	67.1	65.1	56.0

⇒ 수익증권 판매, 외국환 업무 중 거주자에 대한 여행자수표 및 외국통화 매각 허용(재정경제부)

- 수익증권 판매 : 자통법 하위규정 제정시 검토후 반영
- 거주자에 대한 여행자수표 및 외국통화 매각 허용 :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상호 저축은행 취급업무 확대(여행자수표 매도 허용, 외국통화 매각 한도 폐지)

(4)-3. 저축은행의 차입기관 확대

- 저축은행의 차입은 사채발행과 함께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중앙회로 제한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이 자회사인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로부터의 차입이 제한됨

⇒ 저축은행의 차입기관에 금융지주회사를 추가(금융감독위원회)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개정

(4)-4.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예치·취급기관 허용

-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은 취급기관에서 제외됨
 - 관리비 등의 예치기관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개정하여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
 - *신협·새마을금고 모두 예금자 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함(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9조의8,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예치·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포함
(건설교통부)

(4)-5. 공제사업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 산입

- 보험회사 및 농·수협 공제는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는 연금저축취급 허용, 보험차익 과세 등 보험회사 및 농·수협공제와 동일한 보험사업자로 인정되고 있으나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세법체계의 불균형과 조세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 새마을금고 연합회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 산입토록

개선(재정경제부)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 개정

(4)-6.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확대

○ 주택구입자금대출 등 저축은행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대출한도가 시중은행 등에 비해 적어 금융기관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 최근 수년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대출금액 현실화 필요

*저축은행 직원대출한도 : 일반자금대출(2천만원이내), 주택구입자금(3천만원이내), 사고금대출(5천만원이내) ⇒ 총대출금액한도는 5천만원이고 자기자본의 15%이내

*시중은행의 직원대출한도 : 일반자금대출(2천만원이내), 주택자금대출(5천만원이내), 사고금정리대출 (6천만원이내) ⇒ 자기자본 한도 적용 없음

⇒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시중은행 수준을 감안하여 확대(재정경제부)

- 총대출금액한도를 폐지하되 자기자본의 15%이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 개정

3.5 교육·문화 및 관광

3.5.1. 교육분야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정오채 사무관(Tel. 2100-8824, joc@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우리사회는 지식기반사회로 급속도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의 폭증,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 학력위주사회의 쇠퇴, 고비용 저효율 사회부분의 구조조정, 평생고용 관행의 붕괴 등 사회구조적 속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화, 우수인재 육성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창의적이고 현장 적응력이 높은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기관의 자율과 책무성 강화, 분권화, 개방화, 선별 지원을 통한 기회 형평성 보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전문적 능력 및 전이 가능한 능력과 지식정보의 습득과 활용, 다전공 학습 및 복합적 학문학습, 일터학습 등의 평생학습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다.

일찌기 UNESCO, OECD, EU, G8 등은 평생학습정책 가이드라인을 개발·적용하고 있으며,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영국, 핀란드, 싱가포르, 독일 등도 21세기를 지식사회, 평생학습의 세기로 규정하고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평생학습사회로 가기 위한 기반들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책무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이다.

국제화, 개방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한 교육기회 제한과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을 개혁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교육관련 규제는 '07.1월말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한 등록규제는 총 151건의 규제가 있다.

대학관련 기본법으로는 대학의 설립인가, 교육과정 및 운영, 수업연한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이 있으며, 이외에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이 있다.

< 고등교육 관련 규제 법률 현황 >

대학유형	근거 법령
국공립대학	고등교육법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초·중등 교육 관련하여 우리나라(12학년제)와 학제가 다른 중국·동남아 지역 등의 우수 외국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받지 못해 한국유학 기회를 포기하거나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제로 인한 경쟁 제한 등 국제화, 개방경제 시대에 부적절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 활성화, 직장인의 고등교육 기회 및 우수 외국대학과의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 등으로 대학 자율성과 특성화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형편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각종 자격기준 및 학위기준 완화가 시급하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초·중등 분야 규제개선

- 기본방향**
- ◆ 외국인의 대입자격기준 개선
 - ◆ 도서벽지 기관 지정 및 해제업무 개선
 - ◆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상한제 완화

(1)-1. 외국인의 대입자격기준 개선

○ 현행 규정에 의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며,
 -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또는 탈북주민의 경우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

- 그러나, 국가간 이동이 증대하고 대학의 국제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에서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대학입학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 우리나라에 주로 유학하는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 12학년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외국학생들의 한국유학 유치를 저해
 ※ 10학년제 : 필리핀, 11학년제 :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부지역
 ⇒ 해당국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대학입학자격 부여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1)-2. 도서벽지 기관 지정 및 해제 업무 개선

- 학교 통·폐합, 신설 등에 따른 신속한 도서·벽지 교육기관 지정·해제가 요구되고 있으나
 - 교육인적자원부령 개정에 따른 시·도 전수조사 및 입법기간 소요로 인해 도서·벽지 기관 지정·해제 조치의 지연이 불가피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 도서·벽지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교원수당 등은 시·도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승진가점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부여하고 있으므로
 - 위 업무의 시·도교육청 이양은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도의 실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부합됨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권한인 도서벽지 교육(행정)기관의 지정 및 해제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도록 관계법령 개정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개정

(1)-3.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상한제 완화

-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다양한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보육료 자율화가 필요하나, 현재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의해 시·도지사가 보육료를 제한
 - 사립시설에도 시설운영비 등 일정부분 정부 보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은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바탕으로 형성
 - 정부지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보육료에 수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음
 - 보육료가 낮은데도 민간시설의 이용이 낮은 것은 소비자의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역으로 소비자가 가격대비 서비스가 낮다고 판단
 - ※ 자료 : 보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방향(한국재정학회 2006.9)
 -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영·유아 보육시설은 현재 보육시설의 85%를 민간 보육 시설이 차지하고 있음
 -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정부가 부모와 아동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육시설이 질적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보육시장의 민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시장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
 - 아동 개개인의 재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 유아기본 보조금과 연계하여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관계법령 개정(보육료 지원정책과 연계)

(2) 대학교육분야 규제 개선

- 기본방향**
- ◆ 학교기업 관련 규제 합리화
 - ◆ 전공심화과정 등록기준 개선 등 학사행정 규제 완화
 - ◆ 학교법인 정관 변경요건 완화등 사학관련 규제 개선

(2)-1. 학교기업 설치 부지 제한 개선

-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에 활용,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촉진 등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나,
 - 상법상의 기업과 달리 비영리·교육적 측면이 강조되어 설치장소 및 운영업종 제한 등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
 - ※ 중국의 칭화대 기업집단 : '08베이징올림픽 전산망 개발, 세계 최대의 댐인 썬샤댐 설계 참여 등 중국의 기술을 선도(신산학협력, '04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 현행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교사시설 및 교지 안으로 제한되어 있음
- 공장입지가 교지내로 국한되어 생산지와 소비자간의 거리가 멀고 이로 인하여 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판매가 어려움
 - ※ 원재료의 구입과 동시에 가공을 해야 하는 우유 등과 같은 제품을 교지 안에서 생산하여 유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 한방재료가공업의 경우, 원재료인 한약재의 확보를 위하여 외국(중국)의 부지 및 시설을 활용코자 하였으나 투자 불가능
- 학교기업 소재지를 교사 또는 교지내 뿐만 아니라 교지 밖의 시설과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산업체에 학교가 투자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실습학생을 파견하여 현장실습교육 기능 활성화
- ⇒ 학교기업 소재지를 교사 또는 교지 내 뿐만 아니라 교지 밖의 시설과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2. 학교기업 운영금지 업종의 완화

- 표준산업분류 총 1,121개 업종중 학교기업 금지업종은 102개이며 특히, 소매업종은 대부분이 금지 업종임
 - 학교자체의 고유브랜드와 관련된 업종만 일부 인정

○ 학교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소매업종 대부분이 금지되어 있어 학교의 기술을 영업 활동으로 연결시키는데 제약으로 작용

※ 표준산업분류상 '의료용 기구 소매업', '전자 상거래업' 및 '기타 통신판매업' 등 67개 소매업종이 금지되고 있음

⇒ 67개 소매업종중 교육적인 측면이나 사회통념상 수행이 곤란한 사업(백화점, 슈퍼마켓, 담배소매업, 방문판매업 등) 15종을 제외한 52개 업종에 대한 학교기업 허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3. 특수대학원(비학위 과정) 교육장소 제한 완화

○ 현재 학교의 경우 정온한 교육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일정한 도시계획 지역에는 설치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 반면, 특수대학원(비학위과정)의 경우는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인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 이들을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교육장 제공 필요하나 도심 인근지역으로 이전이 불가

※ 대학원 대학(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의 경우 학교 설치와 관련한 입지요건 규정시 예외 인정

⇒ 최고경영자과정, 특별연구과정 등 단기교육과정(6개월)의 교육장을 도심 인근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및 제89조 개정, 특수대학원(비학위 과정) 교육장소 설치 기준 마련(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임차시설 허용에 따른 지침(교육인적자원부 지침, '05.12.28) 적용)

(2)-4. 전공심화과정 등록기준 완화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 교육을 위해서 설치하는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과

관련하여,

- 현재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인정 후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음

○ 전문대학 재학 중에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개선

- ⇒ 전공심화과정의 등록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전문대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개정

(2)-5. 전공심화과정 등록기준 완화

○ 행정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교육지원 조직과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에도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 간소화 필요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후 보고
- 정관 변경시 인가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도록 개선

⇒ 경미한 정관 변경은 학교법인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고, 사후 보고제로 전환하도록 법령 개정

☞ 사립학교법 제45조 개정

(2)-6. 건축적립금 제도 개선

○ 현행 회계기준 상 대학의 주요시설, 설비 등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관련 규정 미비로 건축적립금이 실질적으로 감가상각 충당적립금 성격을 갖게 되어 자산이 과대 평가

-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립대학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한 원가배분이 필요
- 고정자산의 교체시기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중장기 예산 편성 및 경영기간별 실적평가가 가능토록 건축적립금 제도 개선

⇒ 대학의 주요 시설·설비 등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이 계상될 수 있도록 건축적립금 제도 개선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2)-7.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개선

-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공동명의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수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
 -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 5개대학(강남대, 성균관대, 서울산업대, 군장대학, 창신대학)
- 외국대학 분교의 유치보다는 우수한 외국대학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것이 소요기간 및 비용뿐만 아니라 국내대학의 변화 촉발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므로 개선 필요
 -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동명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개선
- ⇒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공동명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업장소 국내제한 조항 개선
- ☞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5-1호) 개정

(3) 평생교육분야 규제 개선

- 기본방향**
- ◆ 산업체 위탁교육시 근무경력기준 완화
 - ◆ 국가기술자격(기사 및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개선
 - ◆ 평생교육 관련 기능 통합 개선

(3)-1. 산업체 위탁교육시 근무경력기준 완화

- 산업체 근로자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대의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무경력 및 학급편성 기준 등이 엄격하여 산업체 근로자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가 미흡한 실정
 - ※ 성인(35세 이상) 고등교육 재학률(01, OECD) :

*한국(2.9%), 영국(22.2%), 미국(16.4%)

※ 성인(25-64세) 계속교육 참여율('02, OECD) :

*한국(17.2%), 영국(45.5%), 미국(51.0%)

- 산업체 근로자의 대학교육 및 학위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
 - ⇒ 전문대의 산업체 위탁교육시 산업체 근무경력 기준을 입학원서 작성일 기준으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완화하고, 학급편성 기준은 대학자율로 운영토록 개선
 - 수업의 질관리를 위해 최대인원(40명)규정은 유지
 -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인적자원부 예규 제286호) 개정

(3)-2. 국가기술자격(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 응시자격 개선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직업교육 중심이 아닌 4년제 대학의 학력중심에 두고 있어 응시자격과 교육내용이 불일치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의2)

- 기사 :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 관련학과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2년 실무종사자
- 산업기사 : 대학졸업(예정)자,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6월~1년 실무종사자
-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는 대학 졸업예정자로 봄

-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취득이 약 120학점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6학점을 인정 받은 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 결여

※ '06 전문대학 입학정원 : 247,604명, 3년제 학과 : 45,075명(18.2%)체 위탁교육시 근무경력기준 완화

- ⇒ 전문대 졸업자 등 다양한 학력 및 경력 소유자가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 1의2 개정

(3)-3. 시간제 등록생 학위취득기준 완화

-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 주 5일 근무 확산 등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성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및 학습 접근성 제고 등 평생 교육체제 구축 필요
 - 또한, 대학은 정규과정 개방, 학점교류 확대, 기업과 대학의 협력 등 성인학습자 유치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
- 반면, 현재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학점 취득범위를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모집인원이 대학의 정원에 포함되어 있어
 - 적은 경비와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을 원하는 시간제 등록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약하고 있음
 - ⇒ 시간제 등록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위취득 범위를 매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3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별도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모집기준 완화
 - ⇒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학위취득범위를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3로 확대하고, 모집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개정

(3)-4. 평생교육 관련 기능 통합 개선

- 현재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기능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분산 되어 있어 학습자에게 알맞은 적절한 교육방법 등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혼선 초래
 - ※ 한국교육개발원 :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독학학위검정원
- 학습자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시간 등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토록 개선방안 마련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기능, 담당기관 통합
 - 평생교육통합시스템(가칭)을 개발·구축하여 상담 및 증명서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 분산된 평생교육 관련 기능 통합을 위한 법령 개정, 평생교육통합시스템 개발·구축 등 개선방안 마련

(3)-5. 대학 평생교육원 전공단위 평가인정 기준 완화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신청시 연간 1개 전공(학사과정 또는 전문학사과정)에 한하여 인정
-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전공과목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전공단위 인정을 위한 학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 타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수업을 받는 불편 초래

⇒ 대학의 평생교육원 전공단위 평가인정 신청 기준을 연간 2~3개 전공분야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 전공단위평가인정 계획(교육인적자원부 지침) 개정 및 보완

3.5.2.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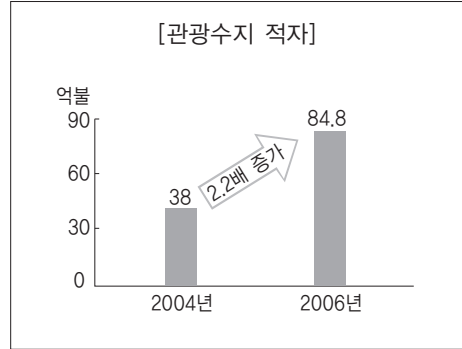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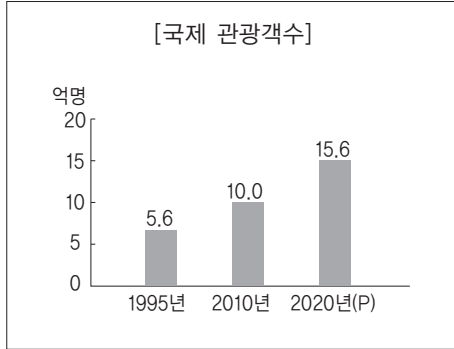
집필자 : 최국일 사무관(Tel. 2100-8807, galaxy038@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관광레저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여 매출규모가 68조원에 이르며 고용 규모도 208만명('04년 기준, 문화관광부)에 달하고 있으며, 주 5일근무제의 정착, 고령화 추세, 웰빙 추구 등 앞으로의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관광·레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5일 근무제로 자택휴식 위주의 여가형태가 관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여가형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내 관광레저산업 여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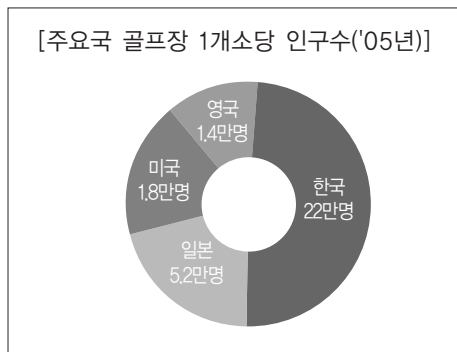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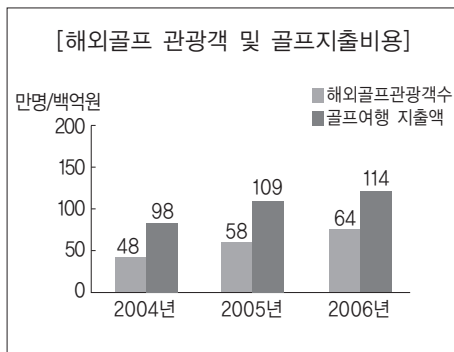
※ '06년 외래객의 국내입국자수는 6,155천명인데 반해 내국인의 출국자수는 11,610천명



특히 국내 골프산업 규모는 '05년 현재 年 3.7조원 수준으로 전체 레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년 9.2%에서 '05년 12.3%로 늘어나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음에도 높은 골프장 이용료, 골프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공급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골프장 이용객들의 해외 골프여행 증가로 나타났고, 이는 관광수지 적자의 주요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 4개국별 골프장 이용요금 현황 >

	한 국	미 국	영 국	중 국·태 국
골프장 이용료	200~250\$	50~60\$	70\$	60~70\$



또한, 최근 5년간 골프장 증가율(연 9%)이 이용객 증가율(연 9.3%)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골프장에 대한 수요초과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골프 여행 증가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폭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외의 국내여행객 유치를 증대시키고 자국민 관광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이 필수적이며, 한류와 연계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관광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관광레저 기반구축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나. 규제현황과 문제점

관광·레저산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등에서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개별 법률에서 관광·레저산업의 입지 및 시설설치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관광레저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주목하여 그간 제조업에 편중된 지원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광레저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레저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06년 12월에 「관광 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광·레저산업의 육성 및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가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광·레저시설은 그 특성상 광범위한 토지이용이 필수적이거나 관광·레저시설 설치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용될 수 있는 토지면적 규모를 과도하게 한정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산지·수자원 보호 등과 관련된 일부 입지제한 규제의 경우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의 목적에 따라 법령내용 및 적용범위가 다르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법령상의 규정보다 과도한 제한을 하거나, 객관적·과학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규제하여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장기화시키고 관광레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일반적인 관광·레저시설의 설치제한 완화

- 기본방향**
- ◆ 관광레저시설 설치부담 완화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기준, 하천·호소 등 입지제한기준 정비

(1)-1.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시 보전산지 기준 정비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의 50%이상이 보전산지인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다만, 스키장·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가능

- 그러나 최근('07.5) 산림청에서 산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역별 산지비율 등에 따라 사업계획지가 최대 75%까지 보전산지를 포함하고 있어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정

- 산지면적비율이 전국평균이상이고, 관할 시·군·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50%를 초과시 다음 기준에 따라 50%를 초과하여 보전산지 추가편입 가능
 -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50%초과~55%초과인 지역 : 5% 추가
 -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70% 초과인 지역 : 25% 추가(75%까지 가능)

- 관광·휴양개발지구 지정기준을 산지전용허가기준과 일치토록 정비하여 사업자의 혼선 방지 및 관광휴양지 개발 활성화
 - ⇒ 지역별 산지비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보전산지를 포함하고 있어도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정

(1)-2. 한계농지 활용 확대

- 한계농지 및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시 보다 용이하게 택지·관광·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
 -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 면제 및 농지 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처리

< 농경지의 유형별 분포현황(01.12) >

전체 국토면적	농경지	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한계농지	일반농지
995만ha	188만 ha	117만ha	72만ha(100%)	21만ha(29%)	51만ha(71%)

○ 그러나, 한계농지* 지정규모를 집단화된 농지 중 2만^m 미만으로, 한계농지정비 지구도 농림수산업 활용이외에는 10만^m 미만으로 과도하게 한정하여 다양한 개발이 곤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요건

- 한계농지(경사율 15%이상 또는 집단화된 2만^m미만의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한 면적이 10만^m이하의 지역
-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리적·자연적 요건이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 가능한 지역

☞ 세가지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만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가능

⇒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면적을 확대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농지의 다목적 활용 및 효율성 제고(예 : 10만^m미만→30만^m 미만)

⇒ 중장기적으로 한계농지 지정요건 완화방안도 농지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검토

(1)-3. 초지전용 규제완화

○ 조성된 초지(목장용지)는 시장·군수의 전용허가를 받아 전용할 수 있으나 대상 시설을 법률에 한정

-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중소기업창업시설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다만, 초지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전용은 시장·군수에게 신고로 가능

< 초지현황 >

(단위 : 천ha, %)

	전국	제주	강원	충남	경기	기타
'05	43,58(100)	18,43(42,3)	7,10(16,3)	3,85(8,8)	3,0(6,9)	11,2(25,7)
'06	42,11(100)	17,60(41,8)	6,86(16,3)	3,78(9,0)	2,85(6,8)	11,02(26,2)

※ 초지의 전용가능 용도

-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 용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위한 용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경제자유구 역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관련 용도
- 기타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초지를 관광시설로의 전용은 가능하나 기능면에서 관광진흥효과가 큰 스포츠체육 시설로의 전용은 예외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실제 일선 인·허가에서도 전용이 곤란한 실정

- 경영난 등으로 인한 사용되지 않은 폐목장용지 등은 저렴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골프장 등 체육시설로의 활용이 용이

⇒ 폐목장용지 등 초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의 경우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용이 가능토록 지자체에 공문시달

(1)-4. 하천·호소 등의 입지제한기준 정비

○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하천·호소·저수지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기준으로 개발 행위를 제한

○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에는 국가하천 등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은 중점검토토록 되어 있으나,

- 토지적성평가상 500m이내 지역은 보전 1등급으로 판정토록 되어 있어 토지활용을 사실상 제한

○ 이에 따라 하천·저수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이 어려워 지는 등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 토지적성평가기 하천 등으로부터의 보전 1등급 판정기준을 사전환경성 중점검토 기준(300m)수준으로 정비

(2) 골프장 설치제한 완화

- 기본방향**
- ◆ 환경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 도모
 - ◆ 골프장 설치기준 합리화, 부대시설 설치의무 완화

(2)-1. 산지전용시 법면(절개면의 수직높이) 기준 정비

- 골프장 건설시 산림보호·재해예방을 위해 절개면의 수직높이(법면)를 제한
- 법면 제한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및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30m 이하)이 있으나,
 - ※ 산지전용허가 기준
 - 절개면 수직높이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계단식 산지전용(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 너비가 각각 15미터 이상시)의 경우 예외규정 적용
 -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 경사면 높이 30m 이하, 5m이하의 소단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
 - 사전환경성 검토시 명확한 규정 없이 15~20m로 제한적으로 운용
 - ※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준
 - 명시된 기준 없음(일반적으로 15m-20m 적용)
-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 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에 따른 30m 이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협의토록 관련 지침 시달

(2)-2. 산지의 원형보전 의무 기준 정비

- 산지관리법 등에서 골프장 건설시 산림 및 수림지를 40%이상 확보토록 하는 이외에 골프장 사업계획시 산림의 20%를 원형 보전하도록 의무화하여 중복규제
 - 또한, 골프장당 일정기준 이상의 면적에 골프장 조성시 산림의 원형보전 의무를 가중(25%이상)
 - ※ 산지전용허가 세부검토기준
 -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이상을 원형으로 존치
 -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 : 20% 미만시 입지부적절
- 기준면적(예 : 18홀 기준 108만 m^2) 10%이상 초과시 : 25% 미만시 입지부적절

○ 골프장 부지면적과 코스길이 제한이 폐지('06.2) 되었으나, 기준 면적 초과시 원형보전의무 가중으로 다양한 골프장 건설에 장애

*가중하지 않아도 면적이 증가하면 비율적으로 원형보전 산림은 증가되나, 이를 가중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또한 환경성 검토, 산지전용 협의 과정에서 각각 원형보전 요구가 추가되어 법정 원형보전 비율보다 과다하게 원형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 이에 따라 골프장 조성시 원형보전지 과다 확보로 인해 부지확보 및 건설비용 부담 가중

⇒ 골프장 부지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기준 초과시 부과되는 가중된 원형보전비율(25%)을 20%로 완화하도록 규정 정비

⇒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산지전용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 원형보전지가 20%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지침 시달

(2)-3.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골프장 이격거리 합리화

○ 명확한 근거 없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골프장 사업부지간의 이격거리를 20(광역상수원)~10km(일반상수원)기준으로 제한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 이내, 특별대책지역 내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

-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 취수량 · 취수비율 ·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를 가감
- 지정현황 : 전국 353개소, 1,276 km^2

○ 골프장은 별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고 있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적음

*골프장 오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성 고형물질)- 10mg/l 이하

*상수원보호구역 배출허용기준 :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성 고형물질)- 40mg/l 이하

- 골프장 배출수는 조정지·저류시설 등 오염방지 시설로 침전시켜 재사용하고 연 2회 실태조사에서 농약검출 사례 없음

○ '05년 환경부의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사용량이 지속 감소하고 유출수에서도 '94년 이후 농약 미검출

⇒ 골프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관련용역을 '08년에 착수하여,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골프장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대한 과학적 기준 마련

(2)-4. 부대시설 설치의무 완화

○ 골프장 건설시 관련 샤워실 등 부대시설 및 카트 등 일부 운영시설 설치를 의무화

※ 체육시설 설치의무시설

- 필수편의시설 : 주차장,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급수시설
- 필수관리시설 :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 골프장 필수시설

-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20m 이상의 간격, 필요시 안전망 설치
- 티그라운드·웨어웨이·그린·라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
- 골프용구 운반기구(카트) 비치 및 운행

○ 이러한 시설 의무화는 클럽하우스 고급화 등으로 건설·운영비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러한 비용증가는 높은 골프장 이용료로 귀결

- 특히, 클럽하우스 설치의무는 해제('05.2)되었으나 골프용구 운반기구(카트) 등 골프장 필수시설 설치의무 규정의 존치로 골프장 부대시설의 고급화 경향은 여전히 존재

⇒ 필요시 자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필수 부대시설 설치의무 완화

(3) 숙박 등 레저 관련산업 활성화

- 기본방향**
- ◆ 관광·레저시설 운영 효율화
 - ◆ 숙박시설 설치제한 합리화, 스포츠·레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3)-1.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제한 합리화

-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받아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골프장내에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병행설치하는 숙박시설의 입지를 골프장 단독설치 입지기준*과 동일하게 제한
 -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20km,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10km이내가 아닐 것
-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기준보다 2배의 이격거리로 제한하여 골프관광객의 숙박에 애로
 - ※ 골프장 내에 숙박업소 설치 가능 요건
 -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40km,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20km,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30km·하류방향 1km 이내가 아닐 것
 - 수질기준 1등급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 지역이 아닐 것
-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관광차원의 골프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제한 완화 필요
 - ⇒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숙박시설 입지기준을 골프장 단독설치 입지기준(현행 20~10km이격)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

(3)-2. 숙박시설 설치 허용 골프장 규모 완화

- 현재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은 18홀 이상의 골프장에 한정하여 허용

- 도시근교 등에 9홀 이상의 골프장에도 숙박을 요하는 가족단위의 수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 ⇒ 9홀 이상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골프장 면적에 대해서도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3)-3. 호텔셔틀버스의 버스전용차선 이용 확대

- 고속도로외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호텔셔틀버스는 대형버스(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로 한정

- 36인승이상 대형승합차, 36인승미만 여객사업용승합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지정운행 통학·통근용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승합자동차(기간한정) 등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외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셔틀버스는 통상 중형급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주문·제작하여 사용중
 - 승차 쾌적성을 고려 좌석수를 통상버스보다 적게 설치(대형 36인승 이상 ⇒ 28~29인승이상, 중형 16~36인승 미만 ⇒ 12인승 이상)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곤란
 - 특히, 서울시내 등 수도권의 경우 잦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외국인 방문객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어 관광산업 활성화 저해
 - ⇒ 버스전용차로의 허용용량에 대한 서울시 용역결과('07.6월말) 검토 후 경찰청 주관으로 서울시가 참여하여 '07.9월까지 호텔셔틀버스 등의 버스전용차선 허용 방안을 검토·마련

(3)-4. 무도학원 및 무도장 입지제한 기준완화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행위 및 시설 설치를 제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과 상대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상대정화구역 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부시설 설치가 가능

- 국제표준무도는 대학교의 교양수업으로도 편성되어 있고 젊은층의 동호회 활동 등으로 저변이 확산되고 있으나,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주변에까지 설치를 제한
 - 당구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등은 초중고 주변에는 설치가 제한되나 대학교 주변에는 설치가 가능
- *헌법재판소('97.3)는 당구장의 경우 초중고에 대한 설치제한은 합리적이거나, 대학교 주변 설치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

⇒ '07년 하반기 실태조사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후에 '07.10월까지 무도학원·무도장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교)의 학교정화구역 내에 설치하는 방안 마련

(3)-5. 레저여행(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액 조정

- 여행사가 해외여행 기획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

○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여행시간 기획상품 취급 규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5억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여행사 등 중소여행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 지방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과다하여 기획여행 실시가 어려워 대형여행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

⇒ 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3.5.3. 환경오염배출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김종환 전문위원(Tel. 2100-8757, outland1@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환경오염 규제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등에 따라 늘어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들을 도입하여 오염 저감에 기여하여 왔으나, 에너지 및 자원집약적인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 등의 기업에게는 규제준수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환경오염배출 규제가 통합오염관리체계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국내에도 오염총량관리, 오염물질 원격감시체제(예 : 수질 및 굴뚝TMS)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입지제한, 배출기준 강화, 자동측정기기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중복적인 규제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환경오염배출 규제 중 그간의 환경기술 발전, 친환경산업으로 구조변경, 국민생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지 못하여 기업활동 또는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하며,

원격감시체제(TMS) 등 새로운 규제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늘어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일정부분 경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규제의 합리화 및 지속적인 개선으로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규제제도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배출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시 된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환경관련 규제는 '06.12월말 기준으로 약 690여건이며, 이중 약 90%가 환경부소관 규제(620여건)이며, 배출규제 유형별로는 명령과 통제방식, 경제적 수단, 환경정보규제, 자율환경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 유형별 환경규제의 종류 >

배출규제 유형	규제의 종류
명령과 통제 방식	배출허용기준, 토지이용규제, 시설규제 등
경제적 유인제도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예치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환경정보규제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마크제도, 오염물질배출·이동등록제도
자율환경관리	자가측정제도,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환경오염 관련 규제 중 수질오염 분야의 규제가 가장 많아 12개 법률 330여건이 있으며, 수질오염배출과 관련한 규제는 수질오염시설 입지규제, 행위제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관리 관련 규제가 약 100여건으로 중심이 되고 있으며, 폐기물분야는 7개 법률에 약 120여개의 규제가 있으며, 산업 및 건설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제가 대부분이고, 대기오염 분야는 5개 법률에 약 110여개의 규제가 있으며, 배출허용 기준, 연료사용 관련 기준, 배출부과금 등을 들 수 있다.

개별법령에 의해 수질오염, 폐기물, 대기오염 배출 규제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합 관리가 미흡하여, 한 사업장내에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 등이 같이 있을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이 다르거나 배출부과금 권리·의무 승계규정이 상이하여 기업의 혼선 초래 하기도 하며, 새로운 규제제도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고려가 없어 기업의 불만 및 경쟁력 약화 초래하고 있다.

수질분야의 경우, 하수처리장 확충 및 수질 TMS 등 오염배출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인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 및 엄격한 수질기준 준수 등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폐기물분야의 경우, 규제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지정폐기물 관리 등에 있어서 기업 자율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오히려 적정관리와 처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기분야의 경우, 굴뚝원격감시체계 도입으로 과학적인 대기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한 데 비하여 사업장 지도·감독 등은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비슷한 유형의 검사 및 확인 등이 반복되고 있어 기업 운영 및 관리에 부담을 초래한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수질오염배출 분야

- 기본방향**
-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개선
 - ◆ 단독 정화조 방류수 수질 개선
 - ◆ 수질 TMS 부착 기준 및 관리 개선

(1)-1.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합리화(오염부하량 고려)

-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거의 사업비 회수를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금액은 배출하수량을 기준으로 산정
 - ※ 하수도법 제32조 및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훈령)

$$\text{○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text{m}^3\text{당 원인자 부담금(원/m}^3\text{)} \times \text{하수발생량(m}^3\text{/일)}$$

- 하수처리 비용은 하수 배출량만이 아니라 하수의 오염물질농도(오염부하량)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 산정방식은 불합리
 -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시에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고려하나,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실제 환경오염의 기여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형평성 제고(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오염물질 농도 (BOD) 고려할수 있도록 개선)

(1)-2. 실제 오수배출량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개선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오수배출량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
 -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환경부고시)
- 한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원단위는 오수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기 보다는 오수

처리시설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최대오염부하량을 기준으로 산정
 - 따라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실제 오수배출량보다도 많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실제 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 교회, 캠프장 등 간헐적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동일한 처리용량을 가진 다른 배출시설과 비교할 때 실제 오수배출량의 평균치는 현저하게 낮으므로 평균 오수 배출량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경감

※ 오수발생량을 예측·산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이 산정한 오수 발생량 조사·예측자료 검토 등

(1)-3. 하수도요금 부과 관련 감면기준 개선

○ 하수도요금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하수도법 제21조) 하고 있으며, 하수도요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하수배출량은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 수도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간주하여 산정

- 다만,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약 30%이상)에 한해서 신고 후 감량

※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제8조 및 제13조

○ 하수배출량이 용수사용량에 비해 적은 경우, 하수도요금 감면규정이 지자체마다 다름
 ※ 신고기간이 연 2회(서울, 대구, 대전), 연 1회(부산, 인천), 월 1회(울산, 구미)로 각각 다르고, 입증서류에 대한 규정도 미비

- 냉각탑, 공기조화기, 세정 집진기(Scrubber), 보일러 등의 이용시 다량의 물이 증발 또는 비산하지만 이와 관련된 요금감면 기준이 없음

※ 냉각수의 경우 시간당 순환수량의 약 3% 정도의 물이 증발

⇒ 지자체별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과 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감량결정 및 신고 방법 등이 서로 달라 통일된 기준이 필요

※ 수도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를 명확히 하고(예 :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등) 하수도요금 감량결정 및 신고방법 등의 통일된 기준 마련

(1)-4. 단독정화조 방류수질기준 적용배제 범위 확대

- 관련 법령에 따라 단독정화조는 일정수준 이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수질기준 적용 배제

지역	항목	구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100이하	100이하
	부유물질량(mg/l)		-	100이하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이하	200이하
	부유물질량(mg/l)		-	200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200이하
	부유물질량(mg/l)		-	200이하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 단독정화조 설치시 구조와 규격기준(설치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
 - 오수 발생량이 매우 적은 주택용 소규모 단독정화조일 경우 수질기준 적용을 배제하여 국민의 불편 제거 및 부담 완화
 ⇒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이 10인 이하일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배제

(1)-5. 하수처리구역내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시 수질기준 적용배제

- 하수처리구역내 단독정화조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 최초설치 후 준공검사시 또는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였으나 처리용량의 증대없이 처리효율을 개선시키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음
- 하수처리구역내의 단독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 하수처리구역내 단독정화조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예외 규정 폐지

(1)-6.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시 TMS 부착기준 개선

-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그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시설당 약 3.5억원 소요)하여야 함
 - '06년에는 183개 시범대상사업장, '09. 9월까지 1일 200m³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약 2,400여개가 해당

사업장 구분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능력	측정기기 부착기한
1단계 (’06년)	- 하수종말처리장 - 산단폐수종말처리장	- 10,000m ³ /일 이상 하수종말처리시설 -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2006년 시범사업 대상사업장	2006.8.31까지
2단계	- 1종 사업장 - 공동방지사설	- 10,000m ³ /일 미만 하수종말처리시설	2007.4.30까지
		- 4,000m ³ /일 이상	2007.8.31까지
		- 2,000m ³ /일 이상 4,000m ³ /일 미만	2007.9.30까지
3단계	- 2종 사업장 - 공동방지사설	- 700m ³ /일 이상 2,000m ³ /일 미만	2008.9.30까지
		- 3종 사업장 - 공동방지사설	- 200m ³ /일 이상 700m ³ /일 미만

- 다만, 최대 배출량이 1일 200m³ 미만인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 등은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됨

【TMS 부착면제 사업장(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 1일 200m³미만 배출사업장
- 폐수의 순환·재이용 등으로 1일 200m³미만 배출사업장
- 폐·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공동방지사설로 전량유입 사업장
- 방지사설 설치면제 사업장 등

- 현행 규정상 발생폐수 대부분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 공정 특성상 소량의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할 경우에도 TMS를 부착하여야 함
 - ※ ○○사의 경우 공정폐수의 대부분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최종처리하고, 일평균 20m³/일 (최대 배출량 100m³/일 미만)의 직접냉각수만을 자체 처리 후 공공수역으로 방류함에도 부착 대상에 해당 (환경부 민원, 2006.09.18)

⇒ 1일 배출량 200m³미만인 사업장은 TMS 부착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을 감안할 때, 법적용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고, 일부(200m³/일미만)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경우 TMS 부착 면제

(1)-7. 사업장내 개별 배출시설의 TMS 부착기준 개선

○ 현행 법령에 의하면 한 사업장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가 분리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고, 개별 폐수배출량이 많지 않더라도 합산한 량이 200m³이상인 경우 각각 별도의 TMS를 설치

○ 한 사업장 내에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각 시설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TMS의 설치 여부 역시 사업장 전체가 아닌 개별 배출시설의 조건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합리적

⇒ 한 사업장내에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개별 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이 200m³ 미만이 되는 경우 TMS부착 면제

(1)-8. 공업용수 전용 취수지역에 대한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 골프장 입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골프장 사업부지간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제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고시 제2005-17호)】

-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
-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
-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 이내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

○ 공업용수와 상수원수의 수질환경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골프장 입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기준으로 비차별적으로 제한하여 과도하게 개발행위 제약

※ 수질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구 분	BOD	SS(부유물질량)	총대장균군 수
상수원수 1급	1mg/ℓ 이하	25mg/ℓ 이하	50이하
상수원수 3급 (=공업용수 1급)	6mg/ℓ 이하	25mg/ℓ 이하	5,000이하
공업용수 3급	10mg/ℓ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

【사례】

- 전주시에 소재한 「전미상수원 보호구역」은 공업용수만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상수원 시설로서, 전미취수장에서 팔복정수장으로 공급된 원수는 침전처리를 거쳐 전주 1,2공단에 공업용수로 공급
- 문화관광부고시에 의해 상류지역 유탄거리 10km이내 체육시설(골프장) 입지 제한

⇒ 공업용수를 전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골프장간 이격거리 제한 폐지

(2) 폐기물 배출 분야

- 기본방향**
- ◆ 폐기물 처리시설 바닥포장기준 완화
 - ◆ 지정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제도 개선
 - ◆ 우수 재활용품 구매 대상기관 확대
 - ◆ 건설 폐기물 지역제한 철폐

(2)-1. 폐기물 처리시설의 바닥포장 기준 개선

○ 폐기물 처리시설의 바닥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하도록 의무화

○ 일본의 경우, 오수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저면을 불투수성의 재료로 피복하도록 규정

○ 임목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일부 폐기물 처리시설은 토양오염 유발 우려가 적음에도 획일적 법률 적용으로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과 자원의 낭비 초래

- 또한, 시설사용 종료 후 바닥재로 인한 폐기물이 발생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비용이 발생

- 임목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의 분쇄·파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 최소화 및 불필요한 비용발생 배재와 자원의 낭비해소
⇒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시설은 현장의 조건에 따라 시멘트·아스팔트 뿐만 아니라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

(2)-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변경확인 개선

- 환경부령이 정하는 량 이상의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처리 전에 적정처리를 위한 환경부장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함
 -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이와 같음
 - ※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계획서, 지정폐기물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인계서

- 지정폐기물 사전확인 기준이 엄격하여 소량 발생하는 폐기물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사전확인 및 변경을 득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위에 열거한 지정폐기물의 합계가 100킬로그램에 근접할 경우 이 중 어느 한 종류가 미량 발생해도 처리계획을 신고해야 함

⇒ 지정폐기물 발생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확인 기준을 완화(예 : 월 평균 합계 100kg → 130kg 또는 150kg 등)하도록 개선

(2)-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철폐 검토

- 현행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지역 영세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미만의 용역을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으로 정하여 타 지역업체 입찰참여 제한
 - ※ 국가계약법 (2.1억), 지방계약법 : 시도(3.3억), 시군구(5억)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으로 구분)의 경우, 특성상 일정거리(반경 50~80km)를 벗어날 경우 경제성이 없어 영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근거리의 폐기물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음
 -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인 경우, 행정구역과 사업지역이 불일치하여 행정구역이 다른 근거리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 발생
 - ※ 건설폐기물 관련 협회중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는 지역제한 철폐에 대해 반대하며, 한국순환골재협회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중간처리업 위주)는 대체로 찬성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부지 및 처리시설 등 약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구에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음
- ⇒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과 관련한 입찰시 중장기적으로 지역 제한 철폐를 포함하여 검토하되,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2)-4. 우수 재활용품 구매대상기관 확대

- 공공기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 상품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그러나,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가 타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보다 좁아 친환경상품의 사용 장려를 통한 환경보호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만 친환경법에는 포함되지 않음
 -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농협, 수협, 중소기업중앙회, 산립조합, 대한상의, 영업조합 등
- ⇒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범위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까지 확대

(3) 대기오염배출 및 기타 분야

- 기본방향**
- ◆ 배출가스 검사대행자 장비기준 개선
 - ◆ 굴뚝 TMS 설치 및 관리 개선
 - ◆ 방치된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개선
 - ◆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3)-1.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 장비기준 개선

- 현재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는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를 갖추도록 장비기준에 정해져 있음
 - 정밀검사 대행자 및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표27(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장비·기술능력)
 - 별표27의6(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 별표27의8(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는 일반적으로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보다 정밀한 편이며, 정비업소(정기검사·확인검사·정밀검사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 등에 보급이 많이 되어 있음
 -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확인검사 시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장비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임

<표 5-19> 여지반사식과 광투과식의 비교

항목	여지반사식	광투과식
측정방식	배출가스채취실린더를 통한 순간 측정	광센서 셀을 통한 연속적 측정
측정성분	흑연	흑연, 청연, 백연
측정오차	측정자 및 조작방법에 의한 오차 발생	정확도가 높음
사용국가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

⇒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확인검사 대행자 장비기준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도 포함하도록 개선

(3)-2. 굴뚝 TMS(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부착시설 특례인정기준 조정

○ 소각시설 운영시 소각대상 폐기물투입 이전 승온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산화탄소(CO) 항목에 한하여 초과인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소각시설의 특성상 일산화탄소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항목(먼지, 질소산화물(NO_x)등)도 초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대부분의 소각시설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SCR(선택적 환원촉매 장치)을 부착하기 때문에 승온기간이 길어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가 큼

- 승온시 청정연료(경유, LPG 등)를 사용하고 있어 오염유발 가능성이 적으므로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모든 측정항목이 폐기물투입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소각시설 측정항목: NO_x, 염화수소, 먼지, SO_x 등

⇒ 소각시설의 특성(승온과정)을 고려하여 초과인정 특례규정 인정항목을 모든 측정(전송)항목으로 확대

(3)-3. 굴뚝 TMS 부착 면제

○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굴뚝 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착을 면제함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

1.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
2.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 제외)
3.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4.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인 경우
5.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인 경우
6. 부착대상시설이 된날부터 6월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인 경우

○ 먼지만 배출하는 탈사시설은 공정특성상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동일 사업장에 동일 공정으로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아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다수 설치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 동일 공정인 경우, 대표측정기기를 통해 부착목적인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허용 기준의 준수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확인 가능

⇒ 탈사시설의 경우 부착대상이 되는 동종의 배출시설로서 그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배출구에 부착대상 수량의 20% 이상을 부착한 경우에 부착의무 면제 또는 부착대상시설규모 상향조정(배기가스량 시간당 30,000→40,000 표준입방미터 이상)

(3)-4. 적산전력계 부착방법 개선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 방지시설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도록 의무화

○ 하나의 방지시설은 Fan, 더스트 이송시설, 더스트 배출시설, 펌프 등 여러 개의 부대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시설들은 각각 사용전압 및 전력 인출지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 모든 전력을 적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시설 투자비가 과도하게 소요

○ 적산전력계의 부착목적은 방지시설의 적정가동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필수적 주요 부대시설에만 전력계를 설치해도 목적 달성이 가능함

⇒ 적산전력계 설치대상을 방지시설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부대시설로 한정

(3)-5. 방치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개선

○ 부도 등 사업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양도 및 양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규정 미흡

- 현행 법령의 “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는 방치된 배출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등 관할지자체의 관리인력 및 시간낭비 초래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예상치 못한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
- ※ 부산시의 경우 연간 수십개의 방치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발생

⇒ 방치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규정 등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및 규제영향분석 후 개선안 마련

(3)-6. 대기배출부과금 권리·의무 승계

-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배출 시설을 인수·운영할 경우 폐수배출부과금 납부 의무 승계규정이 없음
- ※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2 권리·의무의 승계 등
- 수질환경보전법에는 경매 등에 의해 인수한 자의 승계규정이 있음(수질환경보전법 제36조 권리·의무의 승계)

⇒ 수질배출부과금과의 형평성, 배출부과금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만을 양도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 부과금 승계의무 규정 필요

(3)-7.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일원화

-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이 관련법령 간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선과 불편 초래

【변경신고 대상】

-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 폐수배출시설, 기타오염원
- 사업장 명칭 : 대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5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 63조의 2,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9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 일원화(사업장 명칭 ⇒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3)-8.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방안 검토

- 최근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 환경관련 투자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반면, 환경설비투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환경·안전설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액은 약 118억원
 - ※ 에너지절약시설은 투자액의 10%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25조의2)
- ⇒ 기업의 환경투자 촉진 및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년 중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시 공제율을 현행 3%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4.1 국민편의 등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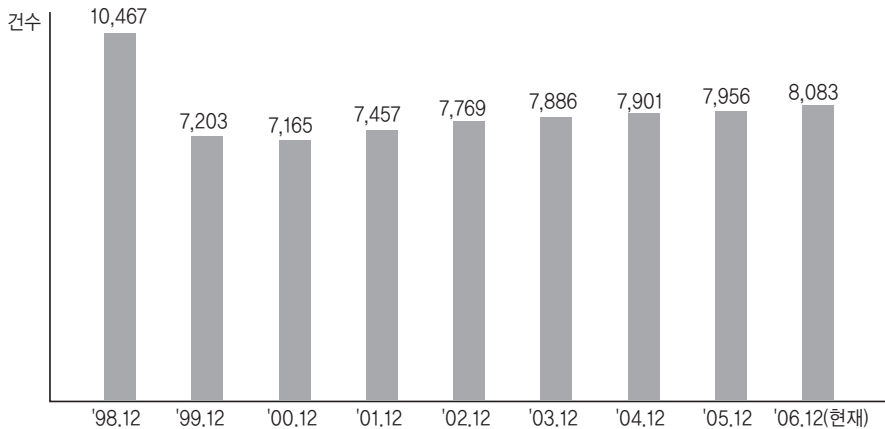
4.1.1. 각종 행정 인·허가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김대현 사무관(Tel. 2100-8823, doma212@opc.go.kr)

가. 추진배경

자유로운 경제활동 영위를 위한 규제개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편 국민건강·환경보호·공정경쟁 등을 위한 규제 강화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도 사회적 규제를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규제 등록 건수 (규제개혁위원회) >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등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국민·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 '05.11. 한국갤럽의 규제개혁 체감만족도 조사결과, 만족(37.9%), 보통(40.1%), 불만족(21.4%)로 조사됨

특히, “인·허가 반려 및 지연”에 대한 애로사항이 기업의 전체 애로사항 중 51.1%를 차지하는 등 인·허가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06. 7. 대한상공회의소)

이에 기업과 국민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인허가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여 자율과 창의에 의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1) 규제현황

시장에서 실제로 인식하는 ‘인·허가’는 실정법상 ‘인·허가’ 뿐만 아니라 승인, 등록, 신고 및 이와 관련된 기준준수·금지·보고 등 각종 작위·부작위 의무를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고 행정기관의 규제 운영과정에서도 ‘신고’, ‘등록’, ‘지정’ 등이 ‘인·허가’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개혁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인·허가’ 규제는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처분 등”과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작위·부작위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06년 12월 현재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처분 등”은 인가(186개), 허가(438개), 승인(297개), 지정(242개), 면허(61개) 등 총 1,252개 수준이며 이와 관련한 “각종 작위·부작위의무”는 기준준수(1,546개), 신고(589개), 등록(226개), 금지(673개), 보고(223개), 통지(67개), 제출(185개) 등 총 3,455개 수준이다.

(2) 문제점

기업 및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토대로 행정 인허가의 문제점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 및 영업활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인허가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을 과도하게 규정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주류제조를 원칙적으로 제한

둘째, 보다 완화된 규제수단으로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활동 방식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규제목적 달성에 부적합한 작위·부작위 의무

*일반적인 출입국절차로도 국외여행허가대상자의 무단출국방지라는 규제목적의 달성이 가능함에도 별도의 출국신고의무 부여

*국민건강상 위해방지 및 주종구분을 위하여 주종별로 원료사용량, 첨가물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내주류제품의 획일화 및 국제경쟁력 저하 초래

셋째, 규제집행 및 이행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경우

*도로굴착 관련 도로점용허가시 사전절차인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업계획 조정결과 통보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계획적인 사업수행 곤란

다. 주요 개선내용

(1) 보건·복지·환경 분야

(1)-1. 제과점영업의 1제조장 다점포 허용

○ 식품접객업(동일장소에서 제조 및 판매)에 해당하는 제과점 영업자가 인근지역에 판매장을 추가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기존 제과점에 대해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제조 후 유통과정을 거쳐 타장소 판매 가능) 신고를 하거나, 신규 판매장에 추가적으로 제과설비를 확보하여 제과점 영업을 해야 함

○ 그러나, 제과점이 운영되고 있는 주거지역 등에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내의 건축 제한으로 인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 신규 판매장에 별도의 제과설비를 갖추어 제과점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이는 추가적인 시설투자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

○ 유원시설 내에서는 2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의 공동사용을 허용* 하면서 도심지역에서는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관광진흥법」에 의한 동일 휴양업장 및 유원시설 내에서 2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9)

⇒ 일정거리 내에 2개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의 공동사용을 허용하고 별도의 제과설비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9] 개정(보건복지부)

(1)-2. 영업범위의 현실화 등 위탁급식영업 관련 규제 개선

■ 위탁급식영업 범위의 현실화

○ 현행 식품위생법은 회사, 학교 등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직원, 학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단체급식시설)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 제공

- 위탁계약에 의해 위탁급식영업자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대신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위탁급식영업자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시에 집단급식소 내에서만 음식류를 제공하도록 영업범위가 제한되고 있음

○ 그러나 “영리”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다양한 가격대의 메뉴 제공(카페테리아식 운영), 방문자에 대한 음식제공, 정해진 급식시간대 외의 음식제공 등이 영리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되며,

- 또한, 급식장소제한으로 인해 외부행사시 이동급식, 사무실로의 도시락 배달 등이 허용되지 않아 회사직원 등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불편 초래

○ 비영리성 및 급식장소제한은 일반음식점과의 업역 및 기능 배분이 규제목적이므로 이용자(특정다수인)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보다 적합한 규제수단임

- 따라서, 집단급식소 이용자인 직원, 학생 등의 복리후생 증진 차원에서 위탁급식 영업의 범위는 개선하되 이용자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의 계약을 통해 다음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영리금지 및 장소제한 완화

- 다양한 가격대의 메뉴제공(카페테리아식 운영), 정해진 급식시간대외의 음식제공, 도시락 제공 허용

※ 시행시 보완사항 : 일반음식점과의 미찰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 행정지도 등 불특정다수인의 상시이용을 방지할 방안 마련·추진

☞ 위탁급식영업을 시행하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보건복지부)

■ 중복적인 식품위생 교육의무 폐지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직접 받거나 지정된 식품위생책임자(종업원 중 식품위생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여야 함

○ 그러나, 집단급식소가 위탁급식영업자에 의해 운영되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자로부터 동일인이 식품위생책임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 식품·장소 등 위생관리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생교육을 한번은 위탁급식영업자가 지정한 식품위생책임자로서,
- 또 한번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지정한 식품위생책임자로서 중복 이수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 위탁급식영업이 시행되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책임자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나머지 교육을 면제하도록 개선(보건복지부)

☞ 위탁급식영업을 시행하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보건복지부)

(1)-3. 의약품동등성시험 실시여부 결정기준의 명확화

○ 제조회가를 받은 의약품의 제조방법 혹은 제조소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전·후 의약품간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이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의약품동등성시험 :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내시험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과 생체외시험인 비교용출·비교붕해시험 등

○ 현행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에는 제조방법 및 제조소 등의 변경수준에 따른 시험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의약품의 동등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시험실시여부가 결정되는 사례 발생

【관련사례】

제조과정 중 대량의 원료로부터 정해진 분량을 소분하는 원료칭량 공정을 위탁할 경우, 제조방법 변경으로 보면 시험실시 대상이 아니나 제조소의 변경으로 보면 시험실시 대상

- 시험실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에 불필요한 절차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의약품의 동등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조방법·제조소의 변경시 시험이 생략 되도록 시험실시여부 결정기준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청)
- (예시) 원료칭량 공정만 변경하는 경우(제조방법 변경) 또는 원료칭량 공정을 위탁 제조하거나 위탁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제조소 변경)에는 의약품동등성시험 실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

(1)-4. 의약품 관련 인허가사무 처리절차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민원서류의 동시 대량접수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법정처리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의약품제조허가 등 몇몇 민원사무의 경우, 업무과다 등의 불명확한 사유로 5회이상 연장되기도 하고 처리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여 제품발매일정 지연 등 계획적인 사업수행에 차질 발생
 - ※ 의약품제조허가 관련 처리지연의 문제는 다수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시정이 안되어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
- 의약품 관련 민원사무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하는 점은 인정되나 사업자에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장에 대한 결재권자를 상향 조정하고 연장절차를 투명화할 필요
⇒ 추가적인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 및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청)
- ☞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사무처리 지침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1)-5. 먹는물 수질기준의 합리적 조정

- 먹는물관리법은 수돗물, 먹는샘물(생수) 등 먹는물의 수질기준으로 대장균, 일반세균 및 일부 병원성균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대장균 및 병원성균은 질병을 직접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 미생물이므로 규제가 필요하나 일반세균의 경우,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먹는물의 수질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도 있으며,

*“일반세균의 경우, 질병발생을 및 인체유해성과의 상관관계가 없음”

(먹는물 일반 세균의 유무해성 여부에 대한 심포지엄, 미국국립과학재단·WHO주관)

**WHO,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 대장균만 규정하거나, 대장균과 병원성균을 규정 (단, 독일, 미국, 일본은 일반세균 규정)

- 또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지속적으로 기준치대로 제어하는 것도 불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세균 기준 위반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의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바, 먹는물 수질기준의 개선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신규 수질지표 미생물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진행 중
- 먹는물 수질관리에서 일반세균의 역할변화에 따른 기존 수질지표 미생물 적합성 검토

⇒ 국립환경과학원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07.12월까지 먹는물 수질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먹는물 수질기준 중 일반세균 기준의 삭제 필요성 유무 검토 및 정수기, 냉·온수기 등에 대한 별도의 위생관리방안 마련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환경부)

(1)-6. 건설 폐기물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

○ 토사·콘크리트·건설폐목재 등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나,

- 시공금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자는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하고 있는 실정

○ 이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에서 건설폐기물 관련 사항을 분리하였으나, 처리실적 보고절차를 일원화하지 못한데 기인

< 건설폐기물 관련 보고의무 >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보고의무	보고 대상	시공 규모	
		150억 미만	150억 이상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준수사항 보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시행령 제35조)	콘크리트, 건설폐목재	×	○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배출·처리 실적보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7조)	콘크리트, 폐목재, 페아스콘 등	○	○

○ 이중보고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관련 보고를 일원화할 필요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상 건설폐기물 관련 보고의무 삭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시행령 제35조 개정(환경부)

(1)-7. 산지전용 허가시 보전산지 등의 편입면적 규제 완화

○ 산지전용 허가시 보전산지,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의 편입면적 기준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에 대해 차등적용

※ 산지전용 허가기준 비교

구 분	회원제 골프장	대중 골프장
보전산지 편입면적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50이하	제한없음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 편입면적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20 미만으로서 20만제곱미터 미만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30 미만으로서 30만제곱미터 미만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06-61호)】

-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의 경우 보전산지의 면적이 사업계획 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스키장·집단묘지·대중골프장을 시설하기 위한 경우 적용하지 않음
 - *07.15일부터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75%까지 가능
- 골프장·관광시설·집단묘지·납골시설·산업단지·택지에 편입되는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은 이를 합한 면적이 사업계획부지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20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함.
 - 다만, 산업단지·택지·집단묘지·대중골프장의 경우 100분의 30 미만으로서 30만제곱미터 미만

- 골프장 회원 모집방식(초기 자금 조달방식)의 차이에 따라 보전산지의 면적제한,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의 편입면적비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적은데도 차별
 - ⇒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지역별 산지비율 등에 따라 사업계획부지내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75%이내) 할 수 있도록 개선(산지 비율이 50% 미만이면 50% 적용)
 - ⇒ 회원제 골프장의 불요존 국유림 및 공유림의 편입면적을 대중골프장 수준(100분의 30 미만이며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
- ☞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개정 (산림청, 환경부 협조)

(1)-8. 산지전용 허가시 표고제한 완화

-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의 경관 보전을 위해 표고·법면 등을 제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산림청 고시)】

- ① 표고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100분의 50미만에 위치
 - 다만, 스키장, 송·배전철탑, 통신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채광 등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인정
- ② 법면 : 절개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

- ① 골프장의 지형여건, 산지의 특성, 재해방지공법 발전 등 환경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표고기준(5부능선)을 획일적으로 규제
 - 경관, 재해방지, 환경보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 ⇒ 골프장의 경우 표고 100분의 50미만 기준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사업성격이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완화 될 수 있도록 개선
 -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산림청)
- ② 표고 측정시 기준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하는 등 혼선이 있고, 사업자의 사업 예측가능성 확보도 미흡
 -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산지의 경우 산지락 하단부 및 산정부 기준 확정이 곤란
 - ⇒ 산지표고 측정기준 등 측정방법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세밀하게 기준을 정비
 -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산림청)

(2) 경제·산업 분야

(2)-1. 외국환 거래규정상 상계신고제도 개선

-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에 외국환 상계 신고*를 하고, 상계차액에 대하여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 외국환 대금 지급을 신청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및 은행연합회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서식 제3-1호
 - *상계신고 목적 : 외국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외환유출 방지
- 이때, 상계신고가 빈번한 업체의 상호계산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국내 출자액 1천만불 이상) 상계신고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만 신고 (한국은행 신고의무 없음)
 - 이는 상계신고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하더라도 상계신고의 목적인 외국환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
 - *상호계산제도 : 상계신고가 빈번한 경우 상호계산 계정을 마련(신고)하여 상계실적을 월단위로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에 보고 (외국환거래규정 제5-5조)
- 그러나, 상호계산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국내기업에는 한국은행과 지정거래 은행에 이중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 상계신고 기관을 한국은행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전환하여 상계신고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할 필요

⇒ 상계신고 업무를 한국은행에서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으로 단계적으로 이관 (다만, 외국환 모니터링 지속 병행)

(예시) : 50만불이하(07년) → 100만불이하(09년) → 제한없음(11년)

※ 전면 시행시 외국환은행에게 상계사유 확인 등 추가적 업무 부담이 발생하므로 단계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 외국환 거래규정 제5-4 개정(재정경제부)

(2)-2.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 관련 규제의 완화

■ 주류별 제조시설기준의 완화

○ 주세법은 원활한 세원관리, 저질주류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제조업자만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주류별 일정시설 구비를 주류제조면허의 요건으로 규정

※ 주류별 시설기준 (주세법 제4조 ①)

- 제조용기기준

주 종	용 량
탁주 및 약주	밀술조 60ℓ 이상 발효조 6,000ℓ 이상 제성조 7,200ℓ 이상
청주	담금(발효)조 15kℓ이상 저장 및 검정조 45kℓ이상
맥주	담금조 40kℓ이상 후발효조(저장조) 6,000kℓ이상 기타 시설
과실주	담금(발효)조 42kℓ이상 저장 및 검정조 45kℓ이상
희석식 소주	주장저장조 100kℓ이상 희석조 및 검정조 260kℓ이상
증류식 소주	담금(발효)조 12kℓ이상 저장 및 검정조 50kℓ이상

- 시험시설기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액체크로마토그래피, 현미경, 향온향습기, 가스압측정기, 간이증류기, 스펙트로포토메타 등(주종별 차이 있음)

○ 소규모 제조맥주, 민속주, 농민주 등에 대해 완화된 제조시설기준을 두어 소규모 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는 경쟁력 있는 주류 제조기법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진입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

< 예외적으로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받는 주류 >

주종	제조시설
소규모 제조맥주	·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장 내에서 직접 제조·판매하는 맥주 · 제조용기 : 담금조 0.5~60kℓ 발효 및 저장조 5~25kℓ · 시험시설 등 : 간이증류기, 주정계, 유량계
민속주	· 주류부분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추천주류 · 국실 6㎡이상 담금실 10㎡이상 증류실 8㎡이상 · 시험시설 등 : 온도계, 주정계, 간이증류기
농민주	·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 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 민속주와 같이 제조장의 최소면적만 규정

- 제조시설기준 완화시 소규모제조업자의 난립에 따른 저질 주류의 제조·유통, 세원 관리 곤란, 국민건강상 위해발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나
 - 일정규모이상의 제조시설기준이 저질주류의 제조·유통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될 수 없으며,
 - 세원관리는 제조업자가 증가하더라도 도매업자를 통한 유통과정 통제, 납세병마개 사용의무 등 규제를 통해서 달성 가능
 - 아울러, 주류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발생의 문제는 판매시간 제한 등 주류소비 단계에 대한 규제가 보다 적합한 수단
- 소비자 선택에 의한 품질 제고, 창의적 제조기법 경쟁을 통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기준의 대폭 완화 필요

< 일본의 주류제조면허 제조시설기준 완화 사례 >

- 대량생산이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제조면허를 부여하였으나, 1994년 주세법 개정시 주류제조면허의 요건인 최저제조수량기준을 대폭 완화
- 주종별 연간 최저제조량 기준(면허요건) : 청주·합성청주·맥주 60kℓ, 소주갑류 60kℓ, 소주을류 10kℓ, 과실주·위스키 등 기타주류 6kℓ
- 특히, 맥주제조면허의 연간 최저제조량 기준을 2,000kℓ 에서 60kℓ로 대폭 축소함에 따라, 개성있는 지역맥주(이른바 ‘지비루’)의 제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삿포로 맥주축제’ 등 지역문화 콘텐츠 다양화에도 기여

- ⇒ - 제조용기의 경우 현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07.12월까지 주세법령 개정
- ※ 기준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용기에 한하고 용량수준을 최소화
 - 시험시설의 경우 가스크로마토그래피(성분분석), 스펙트로포토메타(색상분석) 삭제
- ☞ 주세법 시행령 [별표3] 개정(재정경제부)

■ 주류 제조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조시설 공통이용 허용

- 현행 주세법은 동일한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종별로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하나(주세법 제6조 ①)
 - 관할세무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않고 공통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동법 시행령 제5조②)

【주세법 관련조항】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동법 시행령 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②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러나 제조시설의 공통이용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인정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 가능
 - 실무적으로도 시험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공통이용을 인정하나, 제조용기의 경우 해당 주류의 용량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용도변경신청을 통해 공통이용을 인정
 - 따라서, 제조공정이 유사하여 제조용기의 공통이용이 적합한 경우에도 반드시 법정 제조용기 용량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어만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유발
- 또한 이미 별도의 주종별 제조시설을 갖추어 2종류 이상의 제조면허를 득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 제조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주종간 제조용기의 공통이용이 필요하나 이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비효율적 사업수행 초래

- 제조공정이 유사한 주종에 대해서는 제조용기 등 제조시설의 별도 설치 없이도 면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제조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타당하며,
 - 또한 이미 주종별로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어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자체 생산계획에 따라 주종간 제조시설의 공통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유휴시설을 최소화할 필요
- ⇒ - 제조공정이 유사한 주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조용기를 포함한 동일한 제조시설을 중복요구하지 않도록 공통이용 허용대상 명시

(예시) 제조공정이 유사하여 제조용기의 공통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용기 설치 없이도 면허 부여

- 이미 2종류 이상 주류의 제조면허를 가진 자가 제조시설의 주종간 공통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용도변경신고로써 이를 허용
 - *시행시 보완조치 : 제조용기의 공통이용 허용시 배관 등에 대한 위생관리방안 병행 추진(단, 품질관리시스템이 갖춰진 대규모 업체의 경우, 별도의 검사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업체에 따른 차등적용 필요)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개정(재정경제부)

■ 엄격한 주류규격 제한의 완화

- 주세법은 주종간 세율 차이*로 인한 주종 구분, 주류의 국민보건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종별로 원료사용량, 첨가물료 등을 엄격하게 제한

*주종별 세율(주세법 제22조 ①, ②)

구 분		주세	교육세	부가세	전체세율
발효주	○ 탁주	5	-	10,5	15,5%
	○ 약주	30	-	13,0	43,0%
	○ 청주 · 과실주	30	3,0	13,3	46,3%
	○ 맥주	100	30,0	23,0	153,0%
증류주류(리큐르, 위스키, 브랜디, 소주 및 기타주류*)		72	21,6	19,4	113,0%

주정 : 57천원/ℓ(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도마다 600원가산)

*기타주류 중 발효의 방법에 의해 만든 주류 중 주세법상 발효주류 규격외의 주류는 주세 30%, 교육세 3% 부가가치세 13.3%로 전체세율은 46.3%

- 약주의 경우, 원재료의 2%이상 누룩을 사용하도록 의무화(청주와 구분 목적), 당분 첨가 금지 등 제한
- 탁주의 경우에도 청주·맥주·소주·위스키 등의 주종에 첨가 가능한 당분의 첨가를 제한

【관련사례】

- 누룩에서 술 발효에 필요하고 풍미를 개선시킬 수 있는 미생물만 추출하여 약주를 제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사용규정으로 인해 국산 약주의 품질 저하
- 풍미의 다양성을 위해 당분의 첨가가 필요하나, 청주·맥주·소주·위스키 등의 타 주종에는 허용되는 당분 첨가를 금지

○ 이러한 엄격한 주류 규격제한은 기업의 창의성에 의한 다양한 주류 개발 및 품질 개선을 곤란하게 하며,

- 수입 해외주류에 대한 국내주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주류 규격 제한의 완화 필요

※ 와인·맥주 수입액 추이 : 73백만불('04) → 84백만불('05) → 96백만불('06.11월누계)

⇒ 위생관리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고 나머지 주류규격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

(예시)·약주 : 쌀100%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룩의무사용 폐지, 당분 첨가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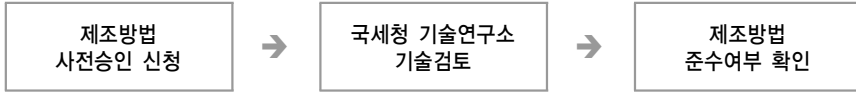
·탁주 : 당분 첨가 허용

☞ 주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개정(재정경제부)

■ 주류제조방법 변경·추가시 사전승인제도의 신고제로의 완화

○ 현행 주세법령 및 국세청 주세사무처리지침은 주종의 확정 및 국민건강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주류제조방법의 변경·추가시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

※ 제조방법 사전승인의 절차



○ 그러나 단순한 원료의 배합비율의 변경이나 알콜도수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므로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

※ 탁·약주의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도 단순한 원료의 배합비율의 변경이나 알콜도수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절차인 국세청 기술검토 절차 생략(주세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1항)

⇒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의 변경이나 알콜도수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고로써 제조방법의 변경 허용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1항 개정(국세청)

■ 소규모 제조맥주의 판매장소 제한 폐지

○ 외국인관광객의 흡수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반맥주 제조면허에 비해 완화된 시설기준 하에 맥주의 제조와 판매를 겸할 수 있도록 소규모 맥주제조자 면허 도입
- 그러나 영업장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하여 사업자의 영업방식을 과도하게 제한

*현재 운영중인 소규모 맥주제조장의 제조설비 평균가동률은 약 30%에 불과

○ 외부반출금지의 규제목적은 맥주의 품질 유지 및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한 것이나 상품의 품질 유지 문제는 소비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할 사항이 아니며

- 소규모 제조맥주는 전량 유량계를 거쳐 제조량이 관리되고 있는 바, 세원관리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외부반출의 금지는 과도한 규제

*변질된 맥주는 신맛이 나기는 하나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음

○ 다양한 국산 맥주의 시판을 통한 소비자 기호 충족 및 수입맥주 대체를 통한 외화 유출 방지를 위해 소규모 제조맥주의 외부반출 허용 필요

⇒ 단계적으로 소규모 제조맥주의 외부반출 허용

(07년)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에 한하여 외부반출 허용

(’08년) 동일한 사업자의 1제조장 다점포 운영 허용

*시행시 보완조치 : 유통에 따른 적절한 위생관리 방안 마련 추진

☞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개정(재정경제부)

■ 주류 상표명 표시문자 제한 완화

○ 수출용 주류를 제외하고는 상표명 등 주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한글, 한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 이외의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주세사무처리 규정 제49조① 제1호)

- 영문 등 외래어 상표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로 병기하여야 하고 이 때 한글상표명의 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규제

*주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 : 주류의 종류, 상표명, 제조장 명칭 및 위치, 규격, 용량, 용기주입년월일, 원료용 주류의 명칭 및 함량, 첨가물료의 명칭 및 함량

<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상표명 표시방법 >

제52조 ②제1항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의 종류 표시는 640㎖미만 병에는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 640㎖이상의 병에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표명을 표시하는 문자는 주(主)상표에 표시된 다른 문자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필수적 기재사항표시의 크기는 7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필수적 기재사항인 상표명은 주류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되어야 함
 (640㎖미만 병에는 12pt 이상, 640㎖이상의 병에는 14pt 이상)

○ 표시문자의 제한 및 크기 등 상표명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며, 규제할 실익이 적은 사항으로 개선할 필요

- 다만, 상표명에 대한 규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소비자가 국산 주류를 수입주류와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명의 한글 병기의무는 유지하되, 글자 크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

⇒ 외래어 상표명 사용시 한글 상표명의 병기를 원칙으로 하되, 병기하는 한글 상표명의 크기는 상표명 외의 주상표 필수 기재사항과 동일한 크기(7pt이상)로 표시하도록 규제 완화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2조 제2항 개정(국세청)

(2)-3. 골프장 사업부지 확보부담 완화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시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요건과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요건상 대상 토지의 소유·사용권 확보규모가 상이하여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처리

○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편입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대상토지의 100%를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 의제처리되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요건이 엄격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대상 토지의 소유·사용권을 100% 확보한 경우에만 의제처리 협의에 응해 실제 사업 지연 초래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착공시까지 대상토지의 소유·사용권을 100%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제처리 협의에 응하는 경우가 있음

⇒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시에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처리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요건이 충족 되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화 (문화관광부)

☞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문화관광부)

(2)-4. 전기시설 사용전점검 신청자격 제한 규제완화

○ 신호등, 이동통신기지국, 네트워크 장비 등 전기설비가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는 전기시설의 사용전 점검을 받아야함

- 사용전 점검의 신청주체는 시설물 소유자·점유자이며,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전기공사사업자에게 대행 가능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 사용전 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전과 체결한 전기사용계약단위별로 사용전 점검 신청. 단,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를 시공한 공사업자가 대신 신청 가능

○ 신청대행을 전기공사업자에게만 허용함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점유자는 전기 공사업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사용전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없어 불편 초래

○ 전기공사업자의 신청행위는 단순 대행업무임을 감안할 때, 사용전점검 신청 대행 주체를 전기공사업자로 제한할 필요는 없음

⇒ 전기시설의 사용전점검 신청은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신청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개정(산업자원부)

(2)-5. 선박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절차 개선

○ 선박안전관리대행업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에 대하여 선주로부터 위탁 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

- 안전관리대행선박 등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등록시 제출서류에 갈음하는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변경등록 신청(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 17 제2항)

*정관, 사업계획서(관리대행선박 명세 등 포함), 안전관리적합증서, 안전관리대행 계약서

○ 그러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등록시 제출서류*'에 갈음하는 변경사유서를 확대해석 하여 선박관리계약서(공증)외에도 선주위임장, 안전관리적합증서, 선박국적증서, 운항선박명세서 등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

- 이에 따라 업체에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초래되며 선박운항을 위한 후속 절차인 "선박안전관리증서 심사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 국제선박보안증서 심사" 등이 연쇄적으로 지연

○ '변경등록시 제출서류에 갈음하는 변경사유서'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선박안전관리대행업의 관리대행선박 변경시에는 지방해양수산청간 행정정보공동 활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생략하고 선박관리계약서만 제출

☞ 선박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에 관한 지침 시행(해양수산부)

(3) 건설·노동 등 기타 분야

(3)-1. 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재정비 실시계획 변경승인제도 개선

- 지방산업단지 개발·재정비를 위한 실시계획 수립·변경시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 시·도지사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
- 그러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는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승인은 반드시 받도록 규정

【경미한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4항)】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 변경,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및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

- 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도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관련 제출 자료준비 등 과도한 절차비용 발생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첨부 서류 : 총14종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등 14종

-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신고로써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 ⇒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시에는 승인절차 없이 신고로써 변경가능하도록 개선

(예시) 변경신고사항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 변경,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및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변경, 사업면적의 10%범위 내에서의 면적의 감소, 개발계획상 주요유치업종 범위내에서 세부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의 변경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2(경미한 사항의 신고) 신설, 제17조, 제18조 및 제38조의3 제2항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3조의2 등 관련조항 개정 (건설교통부)

(3)-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 처리기간 단축

○ 도로·항만 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

*도로·철도·항만·교량·건축물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요건 >

구 분	내 용
자본금	- 1억원 이상
기술인력	-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술사등 2인이상 -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등 3인이상 - 토목·건축분야 석사이상등 3인이상
장비	- 공통 : 비디오카메라 등 12종 -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별 장비

○ 그러나, 등록시 검토사항이 전문인력 및 진단장비의 확보 등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단순 확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매우 장기인 30일로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단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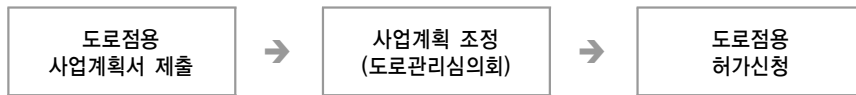
⇒ 등록업무 처리기간의 단축(30일→15일)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건설교통부)

(3)-3. 도로굴착허가 절차의 개선

○ 현행 도로법은 도로의 잦은 굴착을 방지하고자 도로굴착을 포함하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일련의 사전 절차를 규정

-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등의 시설을 신·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 교통소통·면지발생방지·안전사고방지·도로시설유지·주요지하매설물안전 등에 관한 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4월·7월·10월에 도로관리청에 제출
- 도로관리청은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 기간·장소·공사·각종 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자에 통보하고
- 사업자는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 신청



-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결과의 통보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도로점용허가 및 사업시행이 연쇄적으로 지연되어 사업기간의 연장 등 불필요한 부담 초래
- 사업자에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계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
 - ⇒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기한(30일) 명시
 -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 제4항 개정(건설교통부)

(3)-4. 컴퓨터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및 의자에 대한 산업보건기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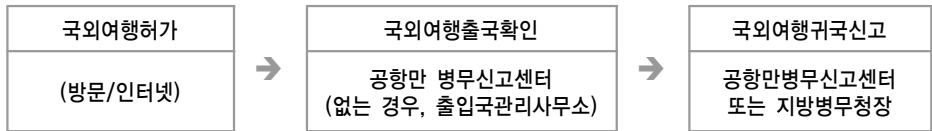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의 보건상 조치사항으로 컴퓨터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및 의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도록 규정
 - 그러나 높낮이 조절 기능이 있는 책상이 갖춰진 경우는 정부부처를 포함한 일반 기업에서도 거의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입하기도 어려운 실정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만으로도 근로자의 건강상 장애 예방이라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 규제의 현실화 차원에서 개선 필요
 - ⇒ “책상 및 의자”에 대한 기준을 “책상 또는 의자”로 변경하여 둘 중 하나에 대해서만 높낮이 기능을 갖추도록 개선

※ 다만, 어느 하나의 높낮이 조절만으로 작업자 체형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발판 등 보조기구 사용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7조 개정(노동부)

(3)-5. 국외여행허가자의 출국신고의무 폐지

○ 병역법은 국외여행 허가대상자는 일반국민의 국외여행절차 외에 추가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및 출국확인, 귀국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그러나 병무청과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간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일반적인 출입국절차로도 국외여행허가대상 병역의무자의 무단 출국방지라는 규제목적의 달성이 가능

○ 병무청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간 시스템을 연계시켜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병역의무자도 일반국민과 동일한 국외여행절차를 거치면 출·입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병무청·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간 관리대상자 통제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출국확인 절차 생략

*다만 병무청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양기관간 협의, 데이터 연계,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07년중 시스템을 구축하여 '08년부터 시행

☞ 병역법 제7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8조 제1항 개정(국방부, 병무청)

(3)-6.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설치허가 절차의 명확화

○ 저장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방검정 공사의 기초·지반·탱크본체에 대한 기술검토 절차 필요

- 그러나, 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시 설계도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보완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수차례의 비공식 사전협의과정을 거치게 되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법정처리기간(30일)규정이 형식화
- 기술검토 신청에 대한 보완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원사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비용을 최소화할 필요
 - ⇒ 민원인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상담 및 협의를 허용하고, 보완요구는 한번에 일괄요구토록 보완요구횟수를 1회로 제한하며, 사전상담을 통해 보완된 기술검토 신청에 대해서는 재보완요구를 금지하도록 개선
 - ☞ 기술검토업무에 관한 지침 제정(소방방재청)

(3)-7. 제주지역 골프장 임야면적 기준 완화

- 특별시·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면적(사업계획 승인포함)은 총임야 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광역단체별 임야 면적, 자연환경적 특성, 지역개발 전략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제주의 경우 골프장 추가건설에 한계
 - 제주지역의 경우 총면적중 임야면적비율이 전국평균(66%)에 못 미치는 49%에 불과하나,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골프장 추가 건설수요는 많은 실정

< 제주도 골프장 개발현황 >

(단위 : 천㎡)

골프장 가능면적 (임야5%)	조성 및 예정면적					잔여 면적	비고
	계	운영중	사업승인	절차이행	예정자지정		
45,203 (개수)	44,385 (38)	24,182 (19)	13,711 (13)	3,558 (3)	2,933 (3)	819	

- ⇒ 관광산업 발전과 특별자치도라는 제주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 면적이 총임야면적의 5%이내 제한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별도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가능토록 권한이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9조 개정
(국무조정실, 제주도, 문화관광부협조)

(3)-8. 제주지역 골프장용 지하원수대금 경감

○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에 대한 지하원수대금 부과기준을 저율의 “영업용”에서 고율의 “골프장 및 온천업용”으로 변경

- 원수대금 : 업종별 기본요금 + 누진율 적용 초과요금
 - 사용량에 원수공급원가의 일정 %(누진율 적용)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
- ※ 예시 : 월간 50,000m³ 지하원수 사용시 요율 및 단가 대비
 - 「골프장 및 온천업종」 : 누진요율(900%) / 단가(1,917원/m³)
 - 「영업용」 : 누진요율(500%) / 단가(1,065원/m³)

○ 지하원수 대금이 급격히 증가하여('01년 대비 '05년도 2배 이상 상승) 제주지역의 골프장에 경영압박 발생

【관련사례】 제주 ○○골프장

년도	월간 최고 사용량 (금액)	연간 사용량 (금액)
2001	82,900m ³ (51,510천원)	514,860m ³ (265,728천원)
2005	71,620m ³ (108,609천원)	477,280m ³ (510,833천원)

*월간 최고사용량 대비 13.8% 감소 / 금액은 110.8% 증가
연간 사용량 대비 7.3% 감소 / 금액은 92.2% 증가

- 골프장을 일반영업용과 분리하여 온천업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 골프장에 사용되는 지하원수대금 부과기준을 “골프장 및 온천업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05년 4월이전 기준으로 환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시행조례」 제57조 별표12 개정(제주도)

4.1.2. 국민생활·민원 관련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이창원 사무관(Tel. 2100-8805, @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그동안 정부는 각종 규제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각종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개별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옥외광고, 교통 관련 제도, 유사행정 관련 규제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7개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으며, 민원개선을 위해서도 G4C 인터넷 민원서비스(행정자치부), 종합민원 상담센터(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결과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이 정비되어가고 민원처리의 신속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편의를 위한 각종 자료의 제출, 불필요한 절차이행 등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자영업 등을 영위시 장애가 되는 과도한 입지제한, 각종 신고의 요구 등 아직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 규제개혁 성과만족도('05.11 한국갤럽) : 보통(40.1%), 만족(37.9%), 불만족(21.4%)

따라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은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은 분야별로 복잡다기하며,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율은 「주민등록법」으로 주민의 거주실태 파악, 주민인적사항의 통합관리, 범법자 등의 색출을 통한 사회안정 질서유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 관리·말소, 전입신고, 국외이주,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이 현대사회의 복잡·다양한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업무는 그 신청과 발급을 거주지 행정관청으로 제한, 거주지와 활동지가 다른 민원인의 불편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사무에 관한 기본 법률로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등 다수의 법령에서 각종 등록, 신고 등 개별사항에 관한 민원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적인 신고요구,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 등으로 그 실익은 크지 않으면서, 국민 및 자영업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또한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영업 등의 경우, 그 영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서 영업질서의 확보와 진흥을 위해 인허가 관련사항, 종사자 자격관리, 교육 등을 정하고 있으나,

각종 자영업 등에 과도한 입지 규제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민원수요가 발생되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일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등록제도 합리화

- 기본방향**
-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 주민등록 직권말소 절차 강화 및 기초수급생활자 재등록 과태료 경감

(1)-1.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능

- 현행 법령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지역을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읍·면·동으로

위임)으로 제한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 전입신고 :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읍면동에 위임)에게 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재발급 :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 위임)에게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발급을 요청

- 단독세대나 맞벌이 부부로 거주지와 경제적 활동지(직장)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관공서 업무 시간내에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이 사실상 곤란
⇒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은 철저한 본인 확인 하에 전국 어느 읍·면·동 사무소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행정자치부)

(1)-2. 주민등록 말소절차 강화를 통한 주민보호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인 또는 세대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 주민등록은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법률관계(선거·조세·교육·소송 등)의 기본이 되는 공법상 주소로 주민등록 말소는 개인과 세대의 사회활동을 크게 제한하나,
 - 정기조사와 제3자민원에 의한 수시 사실조사에 따라, 사망·국외 이주 등 자연적인 말소를 제외하고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매년 25만명 내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있는 실정

【주소 불일치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추이】

▶ 271천명('02)→ 310천명('03년)→298천명, ('04년)→233천명('05년)→206천명('06.11)

- 특히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많아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자활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말소자는 공적주소가 없어 각종 혜택(의료 보험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아동의 취학, 취직도 어려운 실정
⇒ 주민등록 말소는 일제정리기간에만 엄격한 조사하에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말소제도를 재검토하여 무분별한 말소 방지(행정자치부)

(1)-3. 경제적취약계층 등 주민등록 재등록시 과태료 경감

- 주민등록 재등록을 위해서는, 과거 말소절차시 최고 및 공고기간 중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납부 필요
- 그러나,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는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민등록 재등록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 이내 1만원, 1월 이내 3만원, 6월 미만 7만원, 6월 이상 10만원
 - ⇒ 기존의 감면제도 외에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로 과태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행정자치부)

(2) 주민편의를 위한 인·허가, 증명절차 등 간소화

- 기본방향**
- ◆ 옥외광고를 표시기간 연장신고 개선
 - ◆ 수출신고시 정정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2)-1.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개선

- 해외여행 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특히 일부국가의 경우 황열(흑토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
 - 현재 13개 검역소 및 15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증명서는 검역소에서만 발급
 - *입국시 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6일정도 격리될 수 있음
- 검역소가 아닌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통상 여행 10~14일전)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필증명서를 발부받아, 다시 국립 검역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 또한 검역소에서는 근무시간에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여, 주로 여행이 있는 주말·휴일에는 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실정

*WHO나 외국에서는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직접 발부가능

⇒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에서도 접종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직접 발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보건복지부)

(2)-2.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고 개선

- 간판(가로형·세로형·돌출형 등), 현수막,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표시기간(허가 또는 신고)은 최대 3년이내이며,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15일이전까지 연장허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옥상간판, 건물 4층이상 등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한 표시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의무화
-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 종료시까지 부착하고 있는 자영업 등의 표시 간판을 3년마다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불합리
 - ⇒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대상·검사기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표시기간 완화(행정자치부)

(2)-3. 수출신고시 정정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 수출신고시 수출자나 제조자를 전부정정하는 경우 정정전의 수출자나 제조자가 발급하는 변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
 - *전부변경시 환급신청권리자(수출자나 제조자)가 변동되므로 정정전 환급권리자에게 변동 내용을 통보하여 부정 환급 등을 사전에 방지

【수출신고 정정시 표준 증빙제출서류(변경동의서 및 변경전 인감증명서 공통)】

- ▶ 수출자/위탁자 내역 전부 변경시 : L/C 또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출대행계약서 또는 최초수입신고필증
- ▶ 제조자 내역 전부 변경시 : Local L/C 또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출대행계약서

- 그러나 통상 수출자나 제조자의 정정신청은 신고자의 업무착오 사안으로 서류제출 의무자인 정정 수출자나 제조자가 서류제출을 기피하여 신고자 등이 대신 제출하고 있어 법적 실효성 미흡

- 또한, 다른 표준증빙서류(Local L/C등)로 수출자 등의 확인이 가능 함에도 과도한 서류제출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비용을 초래

* '05년도 수출자, 제조자 정정신청건수 : 약 24,000건(관세청 자료)

⇒ 신고자의 오기나 착오 등으로 오류가 명백한 경우로서 다른 표준 증빙서류로 정정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변경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관세청)

(2)-4. 위험물 운송자교육 개선

- 안전관리자, 위험물 운송자 등 위험물 관련업무 종사자는 신규 종사전과 취업 후 2~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04년 9월부터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 교육을 분리하여 시행

【위험물 안전교육대상자】

-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강습교육 24시간, 신규종사 후 2년마다 실무교육 8시간
- ▶ 위험물운송자 : 강습교육 16시간, 신규종사 후 3년마다 실무교육 8시간
- ▶ 탱크시험자(위험물저장탱크 생산업체) : 신규종사 후 2년마다 실무교육 8시간

- 운송자교육은 횟수가 적고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송자의 신규채용 어려움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 ⇒ ①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이수자가 운송자 교육 이수시 중복되지 않은 교과과정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소방방재청)
- ② 운송자 교육이수 확대방안 마련(소방방재청)

(2)-5. 제2종 보통면허의 제1종 보통면허로의 전환제한 완화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1종 보통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10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경우 기능·법령·점검·도로 주행 시험은 면제받고 적성검사만 실시 후 부여
- 그러나, 1종 보통과 2종 보통면허에 따른 기능·주행능력 요구 정도의 차이에 비해 10년간 무사고 등의 요건은 과도하게 엄격

- 또한, 단순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방법에 따라 면제 대상여부가 결정되는 등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신고 기피요인 중의 하나로도 작용

*단순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에 있어 경찰 미신고후 당사자간 처리로 종결시 면제대상자에 포함되나 경찰 신고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에는 면제대상자에서 제외

- ⇒ ① 무사고·운전면허취소경력 요건을 완화(경찰청)
② 무사고 요건의 경우에도 면제대상 범위를 완화(경찰청)

(3) 자영업 등 영업 관련 제도 개선

기본방향 ◆ 안경업 등 영업관련 신고제한 완화
◆ PC방 등 건축물 면적제한 및 음식점 설치제한 완화

(3)-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시 금연구역 지정규정 명확화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영업장 내부중 1/2이상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 영업장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고,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함
 - 그러나, 식품접객업 인허가 기준이 식품위생법상에는 금연·흡연 구역 설치에 따른 시설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흡연구역 설치에 따른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금연구역 지정 실태조사시 위반사실을 통보받게 됨에 따라, 이에 따라 시설 재배치 등을 하고 있어 사업자의 이중 비용 부담
-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른 금연·흡연구역 지정관련 시설기준을 명시 (보건복지부)

(3)-2. 안경업소 및 치과 기공소 등록·인정 및 변경 신고제 개선

- 안경업소나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 또는 인정을 받아야 함
 - 등록·인정 신청사항에 근무하는 모든 안경사 또는 치과기공사 인적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 종사하는 치과기공사·안경사가 바뀔 경우에도 매년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엄격히 제재
 - *종사하는 안경사 변경 미신고시 : 30만원의 과태료
 - **종사하는 치과기공사 변경 미신고시 : 시정명령후 6월이내의 업무정지 및 인정취소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경우, 이직률이 높아 종사자의 변경이 빈번하여, 종사자 변경시마다 실제 이를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 적정 자격자 근무여부 확인은 업소의 신고 없이 행정관서의 일상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달성 가능
 ⇒ 종사하는 안경사 및 치과기공사의 변경사항은 정기적 신고로 개선(보건복지부)

(3)-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의 건축물 면적제한 완화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및 게임제공업소는 바닥면적 150㎡미만인 것에 한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주거지역에 설치가 가능

【2종근린생활시설】

- 생활관련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300제곱미터 이상의 것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등으로 150제곱미터 미만
 - ※ 150㎡ 이상의 게임제공업소 등은 판매시설로 분류되어 준주거지역등에 건축이 가능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게임 제공업이 일반게임 제공업과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분리

*PC방도 자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분류하여 요건을 강화

- 전체연령의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단순히 PC만을 제공하는 PC방의 경우 지나친 입지제한으로 과도한 규제
-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등은 주거지역 설치를 위한 면적제한이 없으나 청소년게임업소 등은 이보다 규제가 강함
- ⇒ 청소년게임 제공업과 PC방의 건축물 면적기준 완화(건설교통부)

(3)-4. 부동산중개업자의 재개설 등록시 실무교육 이수 완화

-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규개설등록하거나 폐업신고이후 1년을 경과하여 재개설등록을 하려는 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이수가 필요
 - 실무교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지정한 기관에서 직업윤리의식 함양과 부동산중개업 경영실무 위주로 32~44시간 범위내에서 실시
 - *위탁교육기관 :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협회,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 등
- 실무경험이 있는 재개설등록 중개업자에게 이수한 실무교육을 중복 이수하게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의 실효성도 미흡한 실정
- ⇒ 폐업 신고후 일정기간 내(1년초과~3년이내)에 부동산중개업 재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 교육시간을 대폭 축소(건설교통부)

(3)-5. 택시운수종사자 신규채용 교육제도 개선

- 택시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로 새로이 채용되어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0시간 이상의 운수종사자 교육의 先 이수를 요구
- 그러나 교육내용이 택시운전자격취득시험과 중복되어 교육의 실효성이 적은 실정
 - 채용이후에도 매년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신규채용 교육기간과 과목을 단축하여 업체의 인력수급난 개선 필요
 - *보수교육 : 12개시도는 운수교육원에 위탁하여 매년 실시(4~6시간)하고 있으나 재정사정이 열악한 4개 시도는 업체자율로 신규 및 보수교육 실시중
- ⇒ 택시 운전자 신규채용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무교육시간 단축 (건설교통부)

(3)-6. 수상레저기구 사고관련 처벌 완화

○ 동력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요트 등)를 이용하여 영업중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수상사고 발생시 행정처분 내용

- 조종자 : 1차(6개월 조종면허 정지), 2차(조종면허 취소)
- 사업자 : 1차(영업정지 1월), 2차(영업정지 2월), 3차(등록취소)

○ 조종자의 과실로 인한 1차 사고 발생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영업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사고 동력기구 1대만 영업정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등록한 모든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영업정지함으로서 과도한 규제

⇒ 수상레저 사고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해양경찰청)

(3)-7. 일반 음식점 설치범위 확대(골프장)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골프장에는 일반음식점은 설치하지 못하고 휴게음식점만 가능하도록 제한

○ 2003년 이전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골프장내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했으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일반음식점 설치 불가

*현재 골프장내 음식점은 2003년 이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되는 골프장내에는 현행 법령상 입지가 불가능한 실정

⇒ 골프장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일반음식점 추가(건설교통부)

(3)-8.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골프장의 가구·획지기준 마련

○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해 조성하는 경우 관리 계획 변경시 전체 부지면적의 5%를 초과하는 변경 외에는 도시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 가능하나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해 조성하는 경우 일부 지자체는 골프코스, 건축 시설지, 공공시설지, 녹지를 획지로 구획하여 시설 개·보수 및 변경에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운용

○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골프장 시설의 경우 건축물을 획지로 구분시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도 실시계획 수준의 절차(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심의 등)이행이 요구되어 과도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

*100㎡인 화장실의 경우 30㎡이상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절차 이행 필요

⇒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조성된 골프장의 경우 획지구분 없이 토지 이용계획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지자체에 시달(건설교통부)

4.13. 식품·위생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김동만 사무관(Tel. 2100-8824, brotherkdm@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국민소득이 증대하고, 소비자들이 웰빙(well-being)을 추구함으로써 식품소비성향이 ‘삶의 질’ 위주로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다. 반면에 다양한 식품군의 생산·판매·유통을 위한 제반 제도 정비가 미흡하여 영업의 제약과 식품위생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식품위생 규제도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각종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소비자의 식품안전요구에 대응하여 국내 식품의 품질표시, 원산지 표시 및 친환경 표시 등의 각종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식품 표시 및 광고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엄격하며 법령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다원화로 규제기관이 많아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중복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검사체계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입식품 등의 검사체제도 분산되어 있어 WTO 및 FTA 체제 출범이후 급증하고 있는 수입식품 검사업무에 신속성, 객관성,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다.

국제 교역시장의 인위적 장벽이 없어지면서 식품안전은 우리의 당면과제가 되었으며, 원료단계에서 섭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식품 정책의 수립, 집행의 법적 근간인 식품위생 규제정책의 합리화가 필수적이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식품위생분야는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간이 마련되었고, 다른 일반 규제와 같이 과거에는 식품의 생산, 육성 및 진흥에 중점을 두어 규제정책이 없다가 1980년대 이후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 증대와 수준제고 등을 위하여 식품규제 행정이 등장하였다.

식품위생분야의 규제는 경제적 규제가 아닌 사회적 규제에 포함되며, 경제수준이 향상 되고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정도가 강화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식품위생분야는 일방적 규제완화보다는 적당한 규제강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식품과 관련된 법률은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8개 부처 10여개 법률이 있다.

소관법률	소관부처	대상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양곡관리법	농림부	축산물 및 가공식품
먹는물 관리법	환경부	먹는물
주세법	국세청	주류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해양수산부	어유(간유) 등 및 수입수산물 검사
염관리법	산업자원부	소금
학교급식법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제반식품 및 식품영업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식품안전 관리제도 정비가 미흡하다. 영양사 자격제도 등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들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미흡하여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수입축산물 검역이 민간의 관리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검역업무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로 불합리한 식품위생 및 안전관련 제도들로 인하여 식품가공산업 및 소비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품질표시, 영양표시, 유기농표시, 유용성 표시 등 표시제도가 다원화되고 불합리하여 식품가공산업이 위축되고 신뢰성이 저하된다. 또한 식품의 가공, 검사, 품질 분야에 자가품질검사 제도, 냉동·냉장온도 측정기준 등 비현실적 규제가 상존하여 식품가공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세째로 식품관련 영업 및 유통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식품관련 영업 및 유통형태가 다양화 함에 따라 식자재전문공급업, 자사브랜드 유통판매업 등의 신규 영업형태의 신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업허가 취소 및 폐업신고 절차가 복잡하여 신규 영업자 및 건물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식품표시기준 합리화

- 기본방향**
- ◆ 소고기 음식업 원산지표시제 확대
 - ◆ 식품 등의 영양표시기준 합리화
 - ◆ 유용성 표시기준 합리화

(1)-1. 소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생산자들의 공정한 가격수취를 도모하기 위해 '07.1.1일부터 소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 적용대상은 300㎡이상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으로, 판매하는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토록 함
 - *적용대상 음식점 수 : 4,300여 개소(전체 음식점의 0.7%)

- 위반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단속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자체
- 적용대상 음식점이 전체 음식점(58만여 개소)의 0.7% 수준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단속 및 홍보부족 등으로 제도이행이 미흡
 - 또한, 음식점 이전단계의 식육유통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고 있어 단속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저하
- ⇒ ① 원산지 표시 적용대상 음식점의 단계적 확대
 - * (현재) 영업장면적 300㎡이상 → (개선) 100㎡ 이상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의3 1항 개정 공포('07.12.21. 보건복지부)
- ② 소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한 MOU 체결
 -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수산물품질관리원간 공조체계 구축

(1)-2. 식품 등의 영양표시기준 관련 행정처벌 완화

- 현행 식품위생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용오차를 위반할 경우 제조정지 등의 엄격한 행정처벌을 하고 있음

* 영양표시 허용오차 기준

영양소	허용범위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120%미만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80%이상

* 허용오차 범위를 위반한 때의 행정처벌 (시행규칙 별표15)

위반횟수	1차	2차	3차
처벌내용	시정명령	제조정지 15일	제조정지 1월

- 식품 원료는 품종, 재배시기, 재배자, 그리고 원산지에 따라 영양성분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이를 이용한 식품 제조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고려할 때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벌은 과도함

*우유 등에 표시하는 영양성분중 비타민 B12의 경우, 100밀리리터에 0.3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그램) 정도의 극미량이 함유되어 있어 분석자의 분석오류에 의해 허용

오차를 벗어날 가능성이 큼

- ⇒ ① 식품 영양성분표시기준 허용오차 초과시 행정처벌 완화
 - 영양성분의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과태료로 완화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별표 2 개정 공포('07.12.13. 보건복지부)

(1)-3. 축산가공품의 '유용성' 표시기준 완화

- 축산가공품(우유, 발효유등)에 대한 기능성 표시 및 광고를 위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하여 현재 기업과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들 사이에 유권해석이 달라 혼란 야기
 - 축산가공품(우유, 발효유등)에 대한 기능성 표시·광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일본, 미국, 중국, EU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유제품의 기능성표시를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성 표시를 너무 엄격하게 규제

【한국과 일본의 유제품 기능성 표시 사례 비교】

- (한국) 유제품의 표시·광고에 있어 장기(위, 간, 신장 등등),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뼈 등에 대하여 “개선, 증진,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를 하지 못함. 따라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 표현을 사용
- (일본) 특정보건용식품제도에 의해 장기(위, 간, 신장 등등),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뼈 등에 대하여 “개선, 증진,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 가능

- ⇒ ①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위표시·과대광고 예외 규정 중 축산가공품에 대한 일반적인 유용성표현(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영양보급) 및 특정성분에 의한 유용성 표현 허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시안 마련 추진(~'10.12.31. 농림부)

(2) 식품관련 영업규제 개선

- 기본방향**
- ◆ 농·임·수산물 영업신고 대상 구체화
 - ◆ 식품 영업 및 유통형태 다양화
 - ◆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절차 개선
 -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준수사항 개선

(2)-1.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절차 합리화

①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절차 일원화

○ 식품 및 공중위생업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부서에 영업허가(신고)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 한 후, 재차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함

○ 두 개의 행정기관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민원인의 폐업신고를 위한 불편이 더욱 가중되며 이런 이유로 폐업신고율이 저하되는 문제점 양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소방서에 신고하면 관할 시군에 신고한 것으로 의제처리

⇒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그 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위생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위생 공무원이 직권 폐업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 식품위생법 제27조 제6항 개정 추진 중('07.11.20. 국회상임위 상정, 보건복지부)

② 무단폐업 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기준 개선

○ 건물주와 영업자간 계약이 종료한 상태에서 영업자의 행방불명 등 실질적으로 장기간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 허가 또는 신고관청의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신규 영업신고나 영업승계 가능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예)】

- 재계약 없이 타지로 이사 또는 이민을 간 경우
-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경우
- 금전관계 등의 이유로 고의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그러나, 행정력 부족으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의 사실 확인이 늦어져 무단휴업이 지속되어도 건물주 및 새로운 영업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 불이익 발생

-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처분 완료시까지 최소한 45일 이상 소요 (청문통지서 발송, 공시송달 등의 기간 소요)
- 특히, 영세업소는 자진폐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심화

⇒ 건물주의 직권 폐업 신고 규정 완화

- 임대차계약 종료 후 3개월 이상 무단 폐업시 건물주가 폐업신고 가능하도록 규정 완화

⇒ 무단폐업이 확인된 경우 즉시 영업허가 취소 가능토록 개선

☞ 식품위생법 제27조 제6항 개정 추진 중('07.11.20. 국회상임위 상정, 보건복지부)

(2)-2. 식품 영업신고 제도 개선

① 농·임·수산물의 영업신고 대상 구체화

○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관련 영업신고 예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 모호하여 관할 관청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
- 특히 '가열의 목적', '위해발생우려',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 등의 문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려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영업신고 예외대상)】

5.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수산물가공업에서 제조된 자숙문어를 점포에서 tray 포장 판매 시 소분업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

*수산물가공업에서 절단되어 입고된 연어를 접에서 tray에 포장·판매하는 경우, ‘해당 생선 한 마리가 아닌 일부만을 포장하면 ‘식품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소분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영업신고 대상이 되는 식품유형 명확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식품공전 제3장 1) 개정 시안 마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② ‘단순가공식품’ 및 ‘가공식품’의 정의 구체화

○ 현행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상의 ‘가공식품’과 ‘단순가공식품’의 정의가 모호하여 영업상의 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

- 가공식품은 제조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해야 하나 단순가공식품은 신고 불필요

○ 미가공수산물로 수입되는 북어포(세절)의 경우 할인점에서 별크판매가 가능한데 반해,

- 국내산의 경우는 식품제조가공업 대상 및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여 영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사례 발생

*유사사례 : 절단 연어, 복음땅콩, 샐러드용 포장야채, 무말랭이 등

⇒ 식품공전 중 ‘단순가공식품’ 및 ‘가공식품’의 정의 구체화

☞ 식품공전 제3장 1) 개정 시안 마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③ 식자재 물류창고에 대한 영업허가 기준 합리화

○ 급식업체들이 운영하는 식자재 물류창고는 대부분 식품운반업 신고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으나,

- 지도점검시, 담당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보전업(식품냉동, 냉장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판매업),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의 영업신고를 추가하도록 요구

*식자재 물류창고와 관련된 법률 :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영업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의 폐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영업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업체에 불이익 발생

⇒ 식자재 보관·공급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재료전문 공급업’을 신설하여 혼선 예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개정(제5호 나목 (7) 신설) 공포('07.12.13, 보건복지부)

(2)-3. 건강기능식품 허위 및 과대광고 기준 완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모든 경우에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을 예외로 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판매되는 일반식품은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여 판매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일부 허용되나,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영업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형평성에 위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자준수사항)】

-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2조 (허위표시등의 범위와 적용)】

-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 건강기능식품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의 제공 허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 추진(국회 심의 중, 보건복지부)

(2)-4. 식품관련 영업형태의 다양화

① 자사브랜드 축산물가공품의 유통·판매업 신설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영업의 종류에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형태가 없어,

- 각 유통업체에서 자사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이 영업신고 없이 유통·판매 되고 있어 식품안전 관리 소홀 (사례 : 우유, 햄, 김, 포장육 등)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식육유통전문판매업' 신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개정 추진('07.12.24. 법제처 심사 요청, 농림부)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군 확대

○ 현행 식품공전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인 '콩국물, 전류, 등에 대한 식품유형이 없으며, 규격기준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영업신고 불가능

- 그럼에도 실제 할인점 및 백화점 등에서는 상기의 식품들이 즉석식품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즉석제조·판매식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대두

*관할 위생과에서는 동식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 하지 않고 있어 법률과 실제간 괴리 발생

⇒ 즉석판매·제조식품 유형에 '콩국물, 전류 등을 신설하여 확대

☞ 식품의 기준 및 규정 개정('07.9.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07-63호)

③ 태음·용융소금의 식품유형 구체화

○ 현재 천일염은 식품의 제조가공 중 전처리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식품의 제조가공시 직접 사용할 수 없게 규정

○ 규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태음소금"의 제조법과 유사한 불량소금이 시중에 제조·판매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

*태음·용융소금 : 원료 소금을 태음·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 단, 원료 소금을 세척, 분쇄, 압축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 일부 업자들이 호수 및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한 비식용(공업용) 천일염을 단순 세척 또는 그을리기만 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태음·용융소금을 식품업체(젓갈, 장류, 김치제조)에 납품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공업용 수입 천일염 → 세척 → 탈수 → 태움 → 분쇄 → 포장
- ⇒ 천일염의 식염 인정
- ☞ 식품공전 중 “천일염” 기준·규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
- 염관리법 개정 공포('07.12.27. 산업자원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6호('08.1.16.))

④ 냉동·냉장온도 측정기준 개선

-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하여 냉장·냉동 보관에 대한 온도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 온도측정 장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측정절차, 방법 및 사용하는 온도계에 따라 온도 편차가 심하여 위생 감시자와 영업자 사이에 논란 야기
 - *대부분의 경우, 위생 감시 공무원이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냉장고 또는 냉동고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진열된 식품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 혼선 초래
- ⇒ 냉동·냉장 보관온도 기준 명확화
 - 냉동·냉장 보관기준 구체화
 - 온도측정 기기의 종류 및 측정방법 구체적 명시
 - ☞ 식품공전 개정 시안 마련 중 (~'08.3.31. 식품의약품안전청)

(2)-5. 농수산물 보존·유통기준 개선

- 식품공전에서는 식품일반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미가공 농수산물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음
- 냉동으로 입고되는 어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해동을 해야 하나 식품공전 상 ‘보존 및 유통기준’에 의해 해동 판매가 불가능한 실정임
 - 실질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과에 따라 다른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있어 영업에 불편과 혼란 야기
 - *수입 바나나의 외 박스에 표시된 보관기준(냉장)은 배로 이동 시, 후숙과정의 일부로 적용되어야 하나, 매장에 입고된 이후까지 위해 발생이나 제품 품질의 변화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에 표시된 보관조건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즉석 튀김식품이나 두부류는 보통 실온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나 식품공전 상 이들 제품에 대하여 냉장 유통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위법을 하고 있는 실정
- ⇒ 냉동 및 냉장 유통을 하여야 하는 식품 중 “열대과일류는 제외”하는 예외규정 신설
- ☞ 식품공전 제3장 7 개정 시안 마련 중(식품의약품안전청)

(2)-6. ‘농민주(포도주 포함) 제조·판매 활성화

- 우리나라는 법령상 소규모(가정 등) 주류제조 면허는 불허하고 있으며, 농민 등이 생산할 경우(전통주) 예외적으로 허용
 - *전통주는 농민주와 민속주(시·도 지정문화재, 전통식품명인)로 구분
- ‘93년부터 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들에 대하여 국세청이 ‘주류제조면허’ 부여
 - 시설기준(과실주) : 국실 6㎡이상, 담금실 20㎡이상, 저장용기 등
- 포도주의 경우, 주류용으로 특화된 품종개발이 필수적이거나 이 분야 기반기술 수준이 초보단계
 - *포도주용 포도의 적정 당도는 21~23brix이나 국내산은 13~15brix
- 소규모 농가나 마을은 자본, 자가생산능력 부족 등으로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기가 어려우며,
 - 주류제조 면허 처리기간이 ‘전산조회완료시’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면허처리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큼
 - *농림부장관 농민주 추천 처리기간 : 30일
- 주세법 및 국세청 주세사무처리지침은 주종의 확정 및 국민건강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 주류제조방법 변경·추가 시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 및 알콜도수 변경은 별도의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므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제품은 반드시 도매상을 거쳐야 하며, 우체국 통신판매가 일부 허용되고 있으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음

*단, 농민주 제조장에서 소매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판매 가능, 통신판매는 1회 20명, 설·추석 명절시 1회 50명으로 제한

⇒ ① 주류제조방법 변경시 단순한 원료 배합 비율 변경이나 알콜도수 변경은 신고제로 전환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1항 개정 (국세청)

(3) 식품위생 관리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식품자기품질검사 제도 개선
 - ◆ 영양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

(3)-1. 식품 자기품질검사 제도 개선

① 제재엽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 제재엽은 매월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나, 실제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자가 품질검사에 불합격 사례가 거의 없음

- 동일한 원료, 동일한 공정을 통해 제조된 동일 제품이어도 상표에 따라 품목이 구분되어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검사비용 과다 소요

*1회 검사비용 : 품목당 약 18만원, 1개 회사당 품목이 2~3개 정도

○ 제재엽에 비해 변질 가능성이 큰 어육제품, 두부류, 묵유, 식용 유지류, 인삼 (6개월에 1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사규정 엄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8 [자가품질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다류, 건과류, 견류, 맥아엿, 김치·절임식품, 건포류, 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천연향신료),떡류 및 메주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만을 가공하는 경우 : 6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 규격

(나) (가) 외의 식품 : 1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다른 식품과 형평성에 맞게 완화

- 식품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 조정
- 동일 원료 및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은 상품명에 상관없이 1회 품질검사만 실시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8 개정 추진 중 (보건복지부)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실시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지 등은 별도 자가품질검사 실시

○ 건강원, 기름집 등과 같은 즉석제조판매·가공업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비만 받고 식품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오염가능성이 매우 작음

- 진열·판매·유통과정이 없는 건강원, 기름집 등은 오염 가능성이 작음에도 유사한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적용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빵, 순대, 두부, 묵, 도시락, 음료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으로서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

⇒ 진열·판매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임가공비만 받고 즉석제조·판매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면제

☞ 지침 시달 ('07.7.31. 시·도·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지침 시달. 보건복지부)

(3)-2. 영양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

①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합리화

○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영양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영양전문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시험관리대상에서 보건의료인으로 분류

○ 일부 대학에서 유사학과 졸업예정자에게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으로 복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여 변칙적으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사례 발생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학과 및 전공】

-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
-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또한, 복수전공제 도입으로 35학점 이수만으로도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여 영양사의 전문능력 확보 미흡

【외국의 영양사의 전공 학점】

- 미국 : 식품영양학과(전공)의 영양사양성프로그램에서 60~80학점, 현장실습 필수
- 일본 : 6개 영역 50학점(영양사), 11개 영역 82학점(관리영양사), 현장실습 필수

⇒ 영양사 응시 자격기준 중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 실습기간 신설

☞ 영양사에 관한 규칙 2조 및 별표1 개정 추진 ('08.1. 현재 법제처 심사중, 보건복지부)

② 외국 영양사 면허 및 외국학교 졸업자 인정기준 개선

○ 외국 영양사 면허소지자에게 별도의 기준 없이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미국·호주 등 외국의 경우, 외국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였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실습 시간·일정 수준이상의 자국어 구사능력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심사

○ 국내 타 보건의료인의 경우, 외국학교를 졸업하고 면허를 받은 자는 교과 및 학위 취득과정 등을 검토한 후 국내 해당 직종 양성과정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만 응시자격부여

○ 최근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보다 보건의료수준이 낮은 국가의 면허소지자 및 양성학교 졸업자 유입

⇒ 외국 영양사 면허 및 외국학교 졸업자 인정 기준 개선

- 외국 영양사 면허소지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 중 교과 및 학위취득 과정이 국내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응시자격 부여

☞ 국민영양기본법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 시안 마련 중 (보건복지부)

4.1.4. 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정오채 사무관(Tel. 2100-8824, joc@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보건의료분야는 공공성으로 인해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인식 되고 있고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도 낮은 수준이며 국민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가격과 행위에 대한 전반적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분야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GDP 대비 비중(5.6%, 2004년기준)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미국 15.3%, 독일 10.9%, 일본 8.0%)하다

인구의 고령화 및 소득증가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국민경제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 수요 및 소득증대에 따른 개인별 첨단 고급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구구조 및 변동추이 전망 >

(단위 : 만명)

구분	1980	2005	2020	2030	2050
총인구	3,812	4,728	4,996	4,933	4,235
생산가능인구	2,372	3,369	3,584	3,189	2,276
노인인구	146	437	782	1,190	1,579
유소년인구	1,295	899	630	554	380

자료 :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참고자료

의료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IT, NT 등과의 융합으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전략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의료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의료분야에 대해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보건의약분야는 보건의료 제공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 규율하고, 의료체계 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등에 산재하고 있으며 국가의 공공보건 의료행정은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서,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료관련 규제는 총 678건으로 인·허가, 면허 등 진입관련 규제, 명령 등 단속규제, 신고의무 등 의무부과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구분	규제내용	건수
진입관련	인가, 허가, 면허,승인	147(21.7%)
단속규제	명령, 지도, 행정질서벌	71(10.5%)
의무부과	신고, 보고, 등록 등	94(13.8%)
기준설정	기준설정	105(15.5%)
금지	금지	32(4.7%)
기타	기타	229(33.8%)
계		678(100%)

의료서비스에 대한 양적인 성장정책으로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의 선택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규제중심의 일률적인 의료수가 체제로 보편적 의료수준의 양적 확대는 이루었지만 고급화·다양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

의료공급체계 또한 고령화, 저출산 등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기관 설립, 변경, 운영에 대한 경직적인 기준 적용으로 자율성 및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급여제한, 노인 복지시설 등에 한의사 채용제한 등 규제가 잔존한다.

또한 민간부문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공공의료인프라 공급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며, 국내 의료산업(제약, 의료기기)의 수준도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대형기업의 부재, 전반적 기술수준 미흡 등으로 국제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는 의료기기의 업그레이드 제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절차 복잡 등으로 관련 산업의 원활한 활동에 애로가 발생하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기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수준을 제고하여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의약 및 의료기기 등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의료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

- 기본방향**
- ◆ 원격의료 허용
 - ◆ 응급의료 절차 개선
 - ◆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및 한약 제형의 개선

(1)-1. 원격의료 허용

-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원격지에서의 진료는 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함
 - 응급환자 진료, 가정간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의료법 33조)
 -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부과(의료법 제90조)
-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원격지 의료인 사이의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음(의료법 제34조 제1항). 그러나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원격의료는 불가
-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으로 환자와 의사가 직접 통신망을

이용하여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불법행위화 함으로써 의료법이 첨단기술을 반영하지 못함

⇒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행위를 허용

☞ 의료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1)-2. 응급의료 절차 개선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음(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9조)

- 그러나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동행한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인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 시행 가능(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의료인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응급상황에서는 적절한 의료행위를 응급환자에게 수행할 수 없게 됨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응급상황에서 동의를 필요한 의료인 수 제한 규정(2인이상)을 1인이상으로 완화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개정

(1)-3. 한방물리요법의 보험 급여화

○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님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

- 운동요법, 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한약첨약 및 한방생약제제(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는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되어 있음

○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적용 환자의 약 70%는 중풍 등의 마비질환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통증질환 환자로 대부분 한방물리요법을 시술받고 있으나 건강 보험에서 비급여되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지급되고 일부분만 본인이 부담
 - ※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공무상(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환자진료상 보편·타당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급여로 적용하고 있음
-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차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이라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배치
 - ⇒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개선방안 마련
 - ☞ 한방물리요법의 범위 명확화, 보험급여시 비용효과 분석 등 관련 연구용역 선행 후 개선방안 마련

(1)-4. 한약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 폐지

-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과 상한금액이 책정되어 있음(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3조, 기준처방별가격표)
 - 1일 복용량은 원료한약을 탕전하여 추출한 액체상태 한약을 부형제를 넣어 만든 고체상태의 총 무게를 기준으로 정함(부형제도 불필요하게 보험급여 대상이 됨)
 - ※ 예 : 가미소요산 1일 복용량 35g, 상한금액 1,865원
- 제제별 복용량과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감이 필요한 한의사의 처방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제약회사 입장에서 품질개선(부형제 감소를 통한 무게 감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등 재약의 보험기준이 정해져 있어 개선 유인 없음
 - 소량화 등 제형개선시 용량미달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불가로 기업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에 품질개선 노력 불필요
 - ※ 예를들어 가미소요산의 1일 복용량이 35g으로 정해져 있고 동 기준에 적합해야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형제를 낮추는 품질개선을 통해 무게를 감소시킬 경우 보험등재가 되지 않아 비급여약재가 되어 환자들의 수요가 줄어듦
 - ⇒ 혼합엑스산제의 1일복용량을 폐지
 - ☞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1)-5. 한약 혼합엑스신제 제형의 다양화 허용

- 혼합제제는 고제, 환제로 제형화하여 투여할 경우에만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음(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제형에 대한 규제로 인해 환자의 복용·휴대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한방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 ⇒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정제 등 모든 제형에 대해 구분없이 보험적용하여 제형의 개선 유도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2) 의료기관 관련 규제 개선

- 기본방향**
- ◆ 동물약국의 면적기준 폐지
 - ◆ 노인복지시설 전담·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
 - ◆ 대도시 보건소에 한의사 최소배치 기준 개정

(2)-1. 동물약국의 면적기준 폐지

-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약국은 독약·극약의 저장시설, 냉암시설 등의 시설 기준과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함(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제10조)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약국의 면적기준(15제곱미터)이 폐지되었으나 동물약국의 면적기준은 유지(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 시설기준령)
 - 동물약국의 시설기준은 약국 시설기준령에 근거하여 마련
 - 약국 최소면적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약국에서 동물약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약국시설 기준령에 따른 최소면적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함
 - ※ 약국의 최소면적기준은 당초 의약품의 보관,유통,판매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약국개설자의 필요에 의한 자율적 사항이라는 취지로 폐지되었음

- ⇒ 동물약품의 면적기준(10제곱미터) 폐지
- ☞ 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제10조 개정

(2)-2.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완화

-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벌금, 징역 등 형벌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약사법 제76조, 제79조, 약사법 제9장,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
- 경고에 그치는 경미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도 벌금 등 형벌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임
 - 경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약국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전문약과 일반약의 구분진열, 조제된 약제의 표시의무 위반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 경미한 위반사항(경고)에 대한 벌칙 현황 >

제목	내용	형벌
변경등록 위반 (약사법 제20조 제2항)	-약국소재지 이전 -약국의 명칭 변경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조제한 약제 기재사항 미표기 (약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조제한 약제에 환자의 성명 등 미기재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미기재	2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 위반 의약품 판매 및 진열 (약사법 제61조 제1항)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명칭, 용법, 개수 등에 대한 부적절한 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전남지역 K약국은 처방전 기재사항을 미기재 했다는 이유로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고 약식기소되어 벌금 30만원을 납부하였음

⇒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만으로도 행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형사벌 면제(행정처분이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벌칙 규정 삭제)

☞ 약사법 제93조, 제95조, 제96조 등 개정

(2)-3. 입원실없는 정신보건시설의 방염시설 설치의무 폐지

- 방염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특정소방물대상에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 방염시설은 유기분자물질 처리를 통해 화재발생시 잘 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등 화재발생의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의무화 하고 있음

○ 그러나 입원실 있는 정신과 의원과 없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방염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함

- 입원시설이 없는 정신과의원의 경우 주로 상담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가 장시간 체류하지 않아 여타의 의료시설과 화재취약성에는 큰 차이가 없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방염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외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방염시설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정신과의원 767곳중 83.3%인 639곳의 의원은 입원실이 없이 외래진료만 이루어지고 있음(2006.6 현재)

※ 방염기준에 맞추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200만원 이상 소요

⇒ 입원실이 없는 정신보건시설의 경우에는 방염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개정

(2)-4. 노인복지시설 전담·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

○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자가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시설에서는 전담의사를 두거나 없는 경우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를 두어야 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노인들의 경우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가 많아 한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지만 전담의사, 촉탁의사에 대해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어 적절한 한방진료를 받기 어려움

-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한방의료의 치료효과가 우수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경우 한방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

○ 건강관리 책임자로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의사, 촉탁의사에는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어 법적 일관성, 형평성에 문제

※ 촉탁의사는 매주 2회 이상, 1회당 2시간 이상 시설 방문진료함

- ⇒ 촉탁의사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개선방안 마련(내년 상반기중)
-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등

(2)-5. 대도시 보건소에 한의사 최소배치 기준 마련

- 보건소에는 지역보건의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자격,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전문인력)을 두어야 함(지역보건법 제12조)
-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라 최소 배치기준을 법정화(지역 보건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 전문인력(의사) 최소 배치기준 >

구분	특별시의 구	광역시외의 구 인구50만명 이상의 시의 구 인구30만명 이상의 시	인구30만명 미만의 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의사	3	3	2	2	1	6
치과의사	1	1	1	1	1	1
한의사	-	-	-	1	1	1

- 대도시 보건소에 한의사의 최소배치가 배제되어 있어 공공 의료기관을 통한 한방의료 서비스가 제약
 - 도시지역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
 - ※ 2006년 기준 한의사에 대한 수요가 400명정도(지자체 대상 보건복지부 조사)로 한의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
 -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공중보건한의사 배출 및 한방공공보건사업이 추진되지 않던 시기에 제정된 것임
 - ※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 편입 될 수 있는 규정은 93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제 공중보건한의사 배출은 98년 처음 이루어졌으며, 지역보건법상 최소배치기준은 공중보건한의사배출 이전인 97년 제정되었음
 - ※ 공중보건한의사 배출현황 : 98년 10명, 2002년 272명, 2007년 317명 등 98~2007년 현재까지 총 1,954명이 배출되었으며,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배출되어 6년 평균 304명 정도가 배출됨

- ※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확대, 공중보건한의사 도시지역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2006~2010)종합계획」을 확정(2005.12.22)하여 추진중
- ⇒ 한의사에 대한 최소 배치기준 마련
- ☞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 개정

(3) 의료산업 분야 규제 개선

- 기본방향**
- ◆ 제조(수입) 품목허가 절차 간소화
 - ◆ 의료기기의 업그레이드 허용

(3)-1. 의료기기 유효기간 표시

- 의료기기의 사용자에게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의료기기 용기에 제조번호와 제조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의료기기법 제19조)
- 그러나 의료기기가 시술현장 등에서 급박하게 사용되는 제품임을 고려할 때 제조년월일 표기 방법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제품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을 외부용기에 직접 기재토록 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
 -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기한을 계산하게 하는 것보다 사용기한을 직접 표기함으로써 인지를 용이하고 빠르게 하기 위한 것임
- ⇒ 용기 등의 기재사항으로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을 명기토록 개정
- ☞ 의료기기법 제19조 개정

(3)-2. 제조(수입)품목허가 절차 간소화

-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문서, 시험검사 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한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18조)

○ 시험검사 성적서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실제 기술문서 심사 시 이미 검토되는 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심사받고 있음

※ 기술문서 심사자료(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7조)는 사용목적에 관한자료,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자료,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자료,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자료,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전자파장해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
⇒ 제조품목 허가, 수입품목 허가 신청시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8조 개정

(3)-3. 의료기기의 업그레이드 허용

○ 사용중인 의료기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없음 (의료기기법 제24조)

- 특히, 사용중인 의료기기 중 사후관리가 철저히 시행되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진단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의 경우에도 변조 수리(성능, 구조, 정격, 외관, 치수 등)가 원천적으로 금지

※ 진단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용에관한규칙에 의해 다른 의료기기보다 더욱 강화된 사후관리를 받고 있음

- 또한, 제조사가 동일 품목을 일부 개선하여 품목허가를 추가로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용자나 수리 업자는 사용중인 해당 품목을 개선할 수 없음

○ 사용중인 기기의 일부 개선이 허용되지 않아 사용중인 기기 전체를 교체해야 함에 따라 비용 부담이 크고 교체에 따른 시간소요로 개선된 의료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곤란

※ 의료기기 해체 이전, 신규설치 및 시험검사기간 등 최소 1주일 이상이 소요되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최소 7~8천만원에서 수억원대임

○ 개선된 부품의 교체 또는 추가보다 품목전체를 교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하는 현실에서 자원과 외화의 낭비를 초래

- ※ 아주대병원 등 8개 대학병원의 국산의료기 사용비율 약 10%
- ⇒ 사용중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등에 대해 추가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에 의한 업그레이드(변조수리) 허용
- ☞ 의료기기법 제24조 규정 개정

(3)-4. 수입업자에 대한 수리업신고 면제 허용

- 의료기기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리업신고를 해야함. 다만,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의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없이 수리 가능(의료기기법 제15조 제1항)
-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경우에도 제조사와 동일하게 자사제품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수리활동을 수행해야하나 별도의 신고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의료기기법에서는 제조업 관련사항을 수입업에 대해 준용토록 하고 있어 제조와 수입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수리업 신고에 대해서는 제조업만 면제를 허용
 - ※ 의료기기법 제14조 제5항 참조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A/S, 고객불만사항처리, 시정조치 등을 통해 허가나 신고된 자사제품에 대한 품질을 관리해야 함(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5)
- ⇒ 수입업자가 자사제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없이 수리할 수 있도록 함
-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1항 개정

(3)-5. 품목별 면허세 정기본 면제

- 면허를 교부받기 전에 납부하는 권리보호적 내지는 수수료적 성격의 면허세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납부토록 하고 있음(지방세법 제161조 및 시행령 124조)
 -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검사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의해 면허를 받는자에게 부과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
-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매장문화재 발굴, 농지전용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허교부 당시 1회만 과세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 수입업에 대한 허가(신고) 뿐만 아니라 개별품목에 대한 허가(신고)도 받기 때문에 해당업과 개별품목에 대해 매년 면허세를 동시에 납부해야 함
 - 이는 개별품목에 대한 허가(신고) 없이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부담 발생
 - ※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의 경우 업소마다 많을 경우 1000여개 이상 품목에 대한 면허세가 매년 품목별로 부과되고 있음
 - ⇒ 품목별 면허세의 경우 면허 발급시 1회 부과하고 매년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는 폐지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개정

4.1.5. 외국인 지위·차별 및 생활·기업·근로환경 개선방안

집필자 : 이창원 사무관(Tel. 2100-8805, klcw@opc.go.kr)

가. 추진배경(정책환경)

'07.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수가 주민등록 인구의 2%에 해당하는 100만명을 돌파하여 이제 우리나라도 다인종·다문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다.

< 체류 외국인 추이 >

(단위 : 명)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8
체류외국인	49,507	269,641	491,324	747,467	910,149	1,000,254
인구대비(%)	0.11	0.60	1.07	1.55	1.88	2.04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하여 '07. 7월 외국인정책 기본법인「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04. 3월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고 '06. 7월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외국인 기업경영·생활환경 규제개선과제”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처우개선 및 편리한 기업·생활환경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욕구증대 등으로 재한 외국인의 국내 생활·경영 환경 만족도는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생활·경영환경 만족도(2007. 7. KOTRA)】

- 생활환경 만족도('07) : 만족(26.5%), 보통(46.2%), 불만(27.3%)
- 경영환경 만족도('07) : 만족(24.1%), 보통(50.6%), 불만(25.3%)

외국인 생활환경은 비자·의료·출입국서비스 등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교통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경영환경 부문은 물류환경 만족도는 높으나, 노무·세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세계화·국제화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하고 일하기 좋은 국내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처우개선·사회적응 등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있으며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출·입국, 외국인등록·체류관리 등 외국인 생활환경 분야는 「출입국관리법」을 기본으로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시증발급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 등록을 통해 외국인의 거주지 이동 파악 등을 관리하고 「국적법」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급여혜택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지침에서 외국인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교육·복지혜택 등은 「초중등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있다

이외함께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으며 공장부지의 장기·저리 임대,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한국진출과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지원센터(Invest KOREA)를 운영중에 있다.

현행 우리나라 법령상 용어사용, 복잡한 출입국 절차 및 체류외국인 활동제한 등 외국인의 지위가 내국인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각종 제도가 국민에 한정되지 않고 거주 외국인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명·제도의 명칭이 외국인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교수 등 전문직에 대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체류기간 제한, 기업인 및 수학여행단에 비자발급 신청시 과도한 서류 요구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불편 초래 하는 등 교육·의료 부문에 있어서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혜택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지역건강보험 임의가입, 보험료 3개월 선납 등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이며 UN아동권리협약에 의거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엄격한 서류제출 요구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전화번호 안내 등이 국민 이용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외국인 이용에 불편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사업장 변경허용 요건 적용 등으로 부적절한 근로환경과 대우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필요성에 비해 출입국 등에 있어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편의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 주요 개선내용

(1) 외국인의 지위·차별 개선 및 출입국 절차개선

- 기본방향** ◆ 배타적·차별적인 법령상·제도상 용어 정비
 ◆ 복잡한 출입국 절차 개선 및 체류 외국인활동제한 완화

(1)-1. 배타적·차별적인 법령상·제도상 용어 정비

- 연금, 건강보험 등은 그 제도의 대상이 우리나라 국민에 한정되지 않고, 거주 외국인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거주 외국인도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과 같은 권리·의무 관계를 갖고 있으나,
 - 관련 법령명, 제도의 명칭 등이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 현실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국제화시대에 있어 이러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외국에 우리나라가 폐쇄적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 외국인에도 미치는 각종 제도 등의 법령·제도명 등에 대한 법적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로드맵을 만들어 정비(법제처)

(1)-2.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임을 표기

- 등록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우리나라에서 신용 확인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업무 등시 외국인 등록증만으로 본인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실정임
- 현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의 가족임을 표시하여 결혼이민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에 외국인등록증상 체류자격 약호(F-2)에 “국민의 배우자” 표기(법무부)

(1)-3. 외국인 장애인 차별 시정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고궁·박물관 이용요금 감면, 장애수당 지급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실정

【장애인 복지혜택(보건복지부 15개, 기타중앙행정기관 12개 등 총 60개)】

-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차량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고궁, 박물관, 미술관,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기타 장애인등록증 제시로 수혜 가능한 복지시책 다수

-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큰 재정적 부담없이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장애인 혜택 시행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1)-4. 교수 등 전문직 체류자격(비자) 상한기간 개선

-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체류자격별 Visa 유효기간은 최소 90일부터 최대 5년을 상한으로 두고 있음
- 교수·전문직업 등은 장기계약으로 2년이상 체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비자 기간을 2년만 허용함으로써, 2년경과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
- ⇒ 교수 등 전문직종에 대해서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재검토하여 연장하는 방안 마련(법무부)

(1)-5. 외국인 기술자 등 고용시 사증(비자) 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 전문직업 등 일부 사증발급 시에는 고용계약서 등외에 주무부처의 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함
- 또한, 취재, 연구 등 일부사증의 경우 최초 사증발급시에는 고용추천서가 필요없이 고용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되나,
 - 체류자격변경·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시에는 주무부처 長의 고용추천서를 첨부해야하는 불편을 초래

- ⇒ ① 대학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법무부)
 ② 사기업의 경우 “대기업 관리자 수준”의 직능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법무부)
 ③ 직종별 고용추천서 발급대상 및 발급기관을 명확히 하는 방안 마련(법무부)

(1)-6. 전국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나 외국인 민원업무 처리

- 법무부는 외국인 출입국심사·등록·체류업무 관리를 위해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8개 출장소를 운영
 - 외국인이 관련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며, 거주지와 직장 근무지가 떨어져 있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 변경 등 각종 업무처리에 불편 초래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06)】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	경북	충남	기타	계
175,047	23,381	39,466	199,538	35,915	29,709	26,441	101,722	631,219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 현황】

출입국관리사무소(16)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김해,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청주, 여수, 의정부, 광주, 마산, 전주, 춘천
출장소(18)	도심공항, 김포, 세종로, 울산, 감천, 오산, 평택, 포항, 대산, 광양, 목포, 통영, 사천, 거제, 군산, 동해, 속초, 고성터미널

-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외에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어느 출입국관리 사무소나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법무부)

(1)-7.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 외국인유학생(체류자격 : D-2)은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등에 1학기 이상 수학했을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제취업 가능하나,
 - 어학연수생(체류자격 : C-3 또는 D-4)의 경우 연수기간에 관계없이 시간제 취업 불가

-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의 경우 학자금이나 숙박비 등 생활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르바이트 허용이 필요
- ⇒ 외국인 어학연수생(체류자격 : D-4)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예 : 6월) 수학했을 경우 시간제취업 허용(법무부)

(1)-8. 중국인 단기상용비자 발급 절차 개선

-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중국과의 경제교류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중국 상공인 등을 초청시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실정
- 중국기업인 초청시 비자발급 대상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이외에 초청인인 국내기업인의 사업자 등록증·납세사실증명 등을 초청시마다 제출해야 함

【중국인 입국자 현황】

단위 : 명(증가율 %)

'03	'04	'05	'06
344,473	472,639(37)	585,569(24)	780,239(33)

*2006년도 외국인 입국자 5,321,593명중 중국인이 15%로 2위를 차지

【중국인 단기상용 비자신청 구비서류】

- VISA발급대상자(신청인) : 이력서·재직증명서·영업집조 사본
- 초청인 : 초청장, 사업자등록증·세금납부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구매계약서 등 상용목적 입증자료

- 중국과의 경제교류 증대를 위해 국내상장법인과 같이 신용이 일정수준 보장되는 경우에는 Visa발급서류 간소화 필요
- ⇒ ① 단기상용비자 신청시 국내 초청인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유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면제(법무부)
- ② 같은 회사가 여러번에 걸쳐 초청하는 경우(피초청인이 다른 경우) 변동사항이 없는 한 한번 제출한 서류(세금납부증명원)의 중복제출 생략(법무부)

(1)-9.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비자입국 절차 개선

- 중국 청소년 수학 여행단의 국내유치를 위해 불법 체류 가능성이 적은 청소년 단체 수학여행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나, 주중한국영사관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여 체감되는 개선효과가 미미

- 특히 전국단위 복수학교가 참가하는 청소년단체의 경우 참가학교별 영사관 확인 절차를 위해 학교별 교장 날인·인솔교사 인터뷰·출발예정일 2주전까지 여권 제출 등 절차가 까다로워 무비자 입국의 실질적인 효과가 적음

【중국 단체관광 및 수학여행단 비자 절차】

- 일반적인 단체관광 :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사실 확인서, 중국측 확인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청소년 수학여행단 :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나 영사관 확인 필요

【중국 수학여행단 무사증(영사 확인) 입국 한·일 비교】

한 국	일 본
- 출국 2주전 인솔교사·여행사직원 직접방문	- 출국 2주전 지정 여권대리 여행사가 신청
- 영사확인서(학교명·연락처·여행기간·출국일·항공편·여행장소·숙박장소·양국여행사명·학교장 공문)	- 학교장 공문
- 학생 및 인솔교사 여권	- 학생 및 인솔교사 명단(영문이름·성별·생년월일·여권번호·재학증명서)
- 학교별 인솔교사 인터뷰	- 수학여행 일정표

⇒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영사관 확인절차를 간소화(법무부)

(2) 외국인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

- 기본방향**
- ◆ 외국인 지역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방법 개선
 - ◆ 미등록 외국아동 교육기관 입학제도 개선

(2)-1. 정주 외국인의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절차 간소화

- 외국인은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공공기관, 외국인 지원기관, 국제행사 등 외국인들이 봉사 및 자문차원에서 참여가 필요한 업무가 증대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매번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에서의 자원봉사나 일회성 행사참여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법무부)

(2)-2.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 직장에 다니지 않는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은 임의가입제이며, 가입 시 소득과약(국세청 신고소득)이 가능한 외국인은 보수월액에 직장가입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은 전년도 말 전체 지역보험가입자 세대당 평균 납부액('07년 월 53,900원)을 부과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계
전 체	29,037	18,631	47,668
외국인	216	63	279

- 지역건강보험 가입대상 외국인의 경우 높은 보험료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 발생하고
 - 또한 일반적으로 일반연수, 재외동포, 가사도우미 등의 외국인은 자국민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으나
 - 보험료 산정시 국민을 포함한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 ① 외국인의 보건을 위해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보건복지부)
- ② 지역가입자 중 소득과약이 어려운 외국인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을 마련(보건복지부)

(2)-3. 외국인의 건강보험(지역) 보험료 납부방법 개선

- 외국인의 경우 지역건강보험 가입시 보험료 3개월분을 선납하여야 하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 되는 보험료는 최초의 고지서에 합산하여 일괄과과
 - 이에 반해 내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 선납이 적용되지 않고

매월 납부가 가능하며, 체납 보험료도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으로 소급보험료 일시납부 및 보험료 3개월분 선납은 과도한 부담이자 외국인 차별적 요소로 작용
⇒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를 매월납으로 완화(보건복지부)

(2)-4. 미등록 외국인아동 초·중·고등학교 입학 허용

-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해당학교의 장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입학이 가능
 - 다만,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그러나, 미등록 아동의 경우 이러한 서류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의 입학 거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UN아동권리협약(1991.11.20 비준)에 근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은 체류안정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취학연령대(7~18세) 외국인 아동 취학현황】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취학	계
7,800	755	391	63	8,278	17,287

⇒ 취학연령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는 거주사실 확인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허용하도록 법적근거 마련(교육인적자원부)

(2)-5. 기업도시내 외국교육기관의 취득부동산 비과세

- 학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비과세
 - 그러나, 기업도시내에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인 외국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외국 교육기관간 형평성문제 발생
 - *기업도시내 현행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범위 : 전문대학 이상

⇒ 기업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등)를 비과세(행정자치부)

(2)-6. 철도 승차권 영어 병기

- 철도승차권의 출발 및 도착역은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으나, 열차정보(KTX · 새마을 등) 및 좌석정보(열차번호 · 호차번호 · 좌석번호 등)는 한글로 표시
- 철도 승차권의 주요내용이 한글로 표기되어 외국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 철도 승차권 정보의 영문 병기 방안 마련(건설교통부)

(2)-7. 지하철 돌발상황 영어 안내방송 실시

- 열차사고로 인한 운행장애 · 지연 등 돌발상황 발생시 한국어로 안내방송 실시
*현재 지하철중 서울메트로에서 운행하는 1~4호선은 영어 안내방송 실시중('07.7)
- 돌발상황 발생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불안해 하는 상황을 초래
⇒ 사고, 화재 등 돌발사고(위기상황) 발생시 영어 안내방송 실시 확대시행(서울도시 철도공사 및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마련(건설교통부)

(2)-8. 전화번호안내(114)의 외국어 서비스 지질 향상

- 출입국 외국인 및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따라 공항 · 철도역 · 관공서 등에 대한 전화번호 문의도 증가

【외국인 출입국 현황】					(단위 : 명)
비 고	2002	2003	2004	2005	2006
외국인 입국	4,392,725	3,849,950	4,929,517	5,179,848	5,321,593
체류 외국인	629,006	678,687	750,873	747,467	910,149

- 현재 외국인이 114로 전화번호 문의할 경우 한국어로 전화를 받아 외국인 전담 안내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안내가 가능하나, 인력 사정으로 인하여

미흡한 실정

⇒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안내 전문요원 양성 및 교육실시로 외국어 안내요원 자질 향상 방안 마련(정보통신부)

(2)-9. 지하철 주요환승역의 안내 외국어 확대

- 지하철내 안내방송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하고 있으며, 철도의 경우에는 한국어/영어/일어/중국어로 안내하고 있음
- 지하철의 경우 정거장이 많아 철도와 같이 4개국어로 안내하기는 어려우나,
 - 서울역/김포공항역 등 주요 교통요충역의 경우에는 외국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해 안내외국어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역간 운행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하철 주요교통 요충역(서울역·김포공항 등)의 경우 일본어 및 중국어 안내방송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 마련(건설교통부)

(2)-10. 시내버스 안 및 버스정류장의 버스노선도·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영문표기

- 시내버스 및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노선도는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버스정보안내 시스템(BIS)의 경우에도 한글로만 안내하고 있으나
- 주요 건물, 관광명소 등 버스노선·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영문이 표기되지 않아 외국인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
 - ⇒ ① 시내버스 안 및 정류장에 버스노선도(안내판)의 영문표기(건설교통부, 각 지자체)
 - ②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에 영어안내 실시(한국어/영어 번갈아 안내) 하도록 지침시달(건설교통부, 각 지자체)

(2)-11. 차량용 네비게이션 영문 서비스 확대 시행

- 차량용 네비게이션이 운전자의 필수품이 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외국인의 네비게이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국내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의 경우 네비게이션의 효용도는 내국인보다 큼
- 그러나 현재 네비게이션은 일부기업(엠엔소프트, S&T대우)에서만 외국인을 위한

영문지도를 제작하여 서비스 중으로,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국내에서 직접 운전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영문서비스가 제공되는 네비게이션의 공급확대가 필요
 - ⇒ ① 영문서비스가 가능한 네비게이션용 지도S/W 제작 확대토록 권고(건설교통부)
 - ② 렌터카업체도 일정비율은 영문서비스 네비게이션을 설치토록 권고(건설교통부)

(3) 외국인 기업·근로환경 개선

- 기본방향**
- ◆ 외국인투자가 출입국심사 편의 제공
 - ◆ 외국인근로자 취업요건 개선

(3)-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투자금액 적용요건 개선

- 부지매입 등에 따른 초기투자 비용을 줄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임대전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고 있으며 임대면적 한도가 외국인투자금액과 연계되어 있음
 - *임대면적 한도 :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 범위내 - 그러나, 부지가격 적용시점(기업의 입주시점)에 따라 토지가격의 차이로 인해 입주 기업간 형평성 문제 발생
 - *부지가격 적용시점 : 단지조성 단계에서는 조성원가를,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공시지가와 조성원가 중 높은가격을 적용
-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적용기준의 개선이 필요
 -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면적 한도 적용을 위한 토지가격 적용 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후 당해 지역에 100% 입주할 때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적용(산업자원부)

(3)-2. 외국인투자기(해외 모기업 임직원)들의 출입국심사 편의제공

-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들의 출입국심사 편의제공을 위해 전용심사대(Premier Lane)를 운영 중이나
 - 전용심사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D-7/8/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APEC카드 소지자, 투자시찰단 등만이 이용 가능
- 그러나,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업무차 방한하는 해외 거주 외국인투자자(해외 모기업의 임직원)들은 “기업투자(D-8)” 비자가 아닌 단기상용(C-2)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출입국시 전용심사대 이용이 불가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외모기업 임직원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
 - ⇒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임직원들의 전용심사대 이용방안 마련(법무부)
 - *(예) KOTRA해외무역관,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통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임을 확인하는 카드발급 등을 통하여 전용심사대 이용

(3)-3.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허용 요건 개선

-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이 가능
 -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일정한 사유발생 시에만 원래의 계약과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 가능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시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 외국인근로자는 부적절한 대우와 조치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당노동 등으로부터 보호가 곤란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노동부)

(3)-4. 외국인근로자 취업일선시 건강보험 가입 확인

-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함
 -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율은 59.9%로 낮아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발생
 ⇒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알선時 기준에
 채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노동부)

4.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

집필자 : 윤병일 서기관(2100-8797, yoonbi@opc.go.kr)

4.1 후속조치 이행관리 개요

가. 추진배경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규제를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소관부처로 하여금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하여 왔다. 그러나 확정된 전략과제의 후속조치가 상당부분 지연되어 개선효과가 일선 현장에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불신요인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규제개혁 전략과제의 후속조치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2005. 12.6 국무총리 지시로「규제개혁 전략과제 이행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시달 하였고, 각 부처에서는 동 지침에 의하여 전략과제 후속조치가 이행 관리되고 있다.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과제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정기적으로 관계부처 이행점검 국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연사유를 확인하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견조정 등 통하여 과제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

나. 이행관리 개요 (이행관리지침 및 유형별 이행관리)

규제개혁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것에 못지않게 확정된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중요하였다. 왜냐하면 후속조치가 지연되면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규제개혁기획단 출범('04.9.) 당시에는 없었던 후속조치 이행전담반을 2005년 말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행점검 전담반은 규제개혁기획단 내의 과제담당자(PM)와 역할분담 및 전략과제 후속조치 이행을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2005.12. 6 국무총리 지시로 「규제개혁 전략과제 이행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였고, 각 부처에서는 동 지침에 따라 전략과제 후속조치가 이행 관리되고 있다. 동지침은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이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후 각 부처에서 이행해야 할 세부추진계획 수립, 규제정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 주기적 전략과제 이행관리 및 점검, 이행지연에 대한 조치 등 후속조치가 이행 완료될 때까지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지침(「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이행관리 지침」(국무총리지시제2005 - 11호, '05.12.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규제정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입력

(가)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 개선방안 확정후 10일 이내에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대통령령은 원칙적으로 관계장관회의 확정 후 2개월 이내 국무회의 심의 완료를 목표로, 부처 자체추진이 가능한 시행규칙·고시 등은 1개월 이내 개정 완료 추진
- 이 지침 시행당시 이미 기한을 넘긴 과제들은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추진시한 재설정

(나) 「규제정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

- 각 부처는 수립된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10일 이내에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

(다) 추진중 협조지연 등으로 인한 추진계획 변경요청

- 확정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부처협의 곤란·사회적 합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0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 변경을 요청

- ① 추진계획 변경 요청(부처→ 국무조정실)
- ② 국무조정실 검토후 추진계획 변경여부 회신
- ③ 추진계획 변경 등 조치

※ 중요사항인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국무조정실 주관) 변경여부 결정

○ 추진기한 등 변경내용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

(2) 전략과제 이행관리 및 점검

(가) 철저한 이행관리

- 세부추진계획에 명시된 기한내에 조치를 완료
- 세부과제별로 담당부서 및 책임자(국장급·과장급)를 지정·운영하고, 규제총괄부서는 자체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매월 점검 실시
- 개선방안은 관계장관회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법령 재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시행
 - 법제처는 규제개혁 내용이 반영된 법령 제·개정안중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과 사전협의 실시

(나) 추진상황의 점검

- 각 부처는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유발생후 5일 이내에 입력하고, 규제총괄부서를 통해 상시 관리
- 국무조정실은 매월 추진상황을 확인점검

(다) 추진 지연과제에 대한 조치

- 지연과제 발생시 각 부처는 10일 이내에 지연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
- 국무조정실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시한을 다시 정함

- 이행시한이 조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을 특별관리

(3) 이행지연 관련책임자에 대한 조치

(가) 이행지연 과제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국무조정실에서 지연과제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조사결과 부처이기주의, 업무소홀,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

(나) 조치내용의 인사기록카드 등재

- 인사상 불이익 조치내용 등을 인사기록카드(성과관리카드)에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
 - ※ 중앙인사위원회는 관련지침에 상기사항을 반영하여 부처에 통보

다. 유형별 이행관리 내용

「규제개혁 전략과제 이행관리지침」과 아울러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규제개혁 전략과제 후속조치 이행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행점검 전담반('06.8. 이후에는 이행관리팀으로 변경)은 매월 초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당초 각 부처에서 수립한 세부추진계획상의 추진기한이 지난 과제를 파악하고, 추진기한이 지난 지연과제에 대한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시한을 재설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이행점검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통해 이행시한을 재설정하고 있다.

< 규제개혁 이행점검 국정회의 개최현황 >

회 차	회의일	대상부처
제 1차	'05.11.25	교육인적자원부 / 건설교통부
제 2차	'05.12.07	농림부 / 산업자원부 / 중소기업청
제 3차	'05.12.14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 해양수산부 / 산림청
제 4차	'05.12.20	보건복지부 / 환경부
제 5차	'06. 1.17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산업자원부/경찰청
제 6차	'06. 1.26	건설교통부 / 환경부 / 보건복지부
제 7차	'06. 2. 7	산업자원부 / 환경부 / 공정거래위원회
제 8차	'06. 2.16	문화관광부 / 해양수산부
제 9차	'06. 2.24	소방방재청 / 중소기업청
제10차	'06. 3. 6	교육인적자원부 / 정보통신부
제11차	'06. 3.22	농림부 / 보건복지부
제12차	'06. 4. 5	공정거래위원회 / 관세청
제13차	'06. 4. 6	재정경제부 / 법무부 / 농림부 / 건설교통부
제14차	'06. 4.13	환경부 / 행정자치부
제15차	'06. 4.14	해양수산부 / 경찰청
제16차	'06. 4.21	건설교통부
제17차	'06. 5. 1	식품의약품안전청 / 방송위원회
제18차	'06. 6. 2	교육인적자원부 / 문화관광부
제19차	'06. 6. 9	정보통신부 / 농림부
제20차	'06. 6.21	보건복지부 / 환경부
제21차	'06. 6.27	행정자치부 / 해양수산부
제22차	'06. 7.10	경찰청 / 건설교통부
제23차	'06. 7.19	재정경제부 / 산업자원부
제24차	'06. 7.20	공정거래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5차	'06. 7.27	노동부 / 기획예산처(서면)
제26차	'06. 9.29	정보통신부 /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배석)
제27차	'06.11.22	건설교통부
제28차	'06.11.24	보건복지부
제29차	'06.11.30	환경부 / 경찰청 / 교육인적자원부
제30차	'07. 3.28	법무부 / 산업자원부

회 차	회의일	대상부처
제31차	'07. 5. 2	행정자치부 / 방송위원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제32차	'07. 5.11	재정경제부 / 교육인적자원부
제33차	'07. 5.16	재정경제부(금융)
제34차	'07. 9.20	경찰청 / 방송위원회 / 보건복지부
제35차	'07. 9.21	건설교통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제36차	'07.12.06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문화관광부/행정자치부/경찰청/재정경제부
제37차	'07.12.07	건설교통부 / 농림부 / 보건복지부

또한, 각 부처에서 규제개혁 전략과제 후속조치를 완료한 과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완료요청을 하고 있다. 완료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과제를 완료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완료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규제개혁 기획단의 과제담당자(PM)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완료확인서를 최종 확인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팀장에 보고한 후 완료확인서의 내용이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완료과제로 처리하여 종료하게 된다. 이런 처리과정은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됨에 따라 규제개혁 상황을 국민이나 현장 수요자에게 신속히 전달되고 있다. 아울러, 전략과제 후속조치를 추진과정에서 환경의 변화로 추진이 곤란한 경우,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제를 종결 내지는 완료조치하고 있다.

규제개혁 이행점검 관계부처 국장회의 과정에서 지연과제와 함께 정상추진 중인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과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정상추진 과제 중에는 추진과정에서 환경 및 사정의 변경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기과제로 추진하도록 장기과제로 전환을 인정해 주되, 이는 극히 일부 과제에 한정된 것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전략과제 후속조치 이행실적은 2006년부터 정부업무평가 관리대상업무 평가부문에 반영하고 있다. 규제개혁 후속조치 이행평가는 이행완료 건수가 많고 완료(이행)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 규제개혁 후속조치 세부 과제별 이행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차등 평가하고 있다. 즉, 후속조치 필요 세부이행 과제수 대비 조치완료 세부 이행과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점수를 받게 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규제개혁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상기와 같이 다양한 규제개혁 전략과제 후속조치 이행관리 강화와 함께 이행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률은 2005년말에 비해 매년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행점검 전담반이 출범한 2005년 12월말 세부과제 이행율(완료 세부과제수/총 세부과제수)은 51.7%였으나, 2006년 12월말에는 세부과제 이행율이 67.6%로 17%가량 대폭 증가하였고, 2007년 12월말에는 76.0%로 다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7년 12월말 기준 과제별, 부처별 이행현황은 다음 절에서 계속 설명하도록 한다.

< 연도별 후속조치 이행(완료)율 현황 >

연 도	'05	'06	'07
이행(완료율)	51.7%	67.6%	76.0%

4.2 과제별 · 부처별 후속조치 이행현황

가. 총 괄

2007. 12. 31 현재까지 규제개혁 개선방안이 확정된 66개 전략과제(유사행정 규제개선 제외)의 세부과제는 1,820건이며, 이중 장기과제 57건을 제외한 이행기한을 관리중인 과제는 1,763건이다. 이행기한을 관리중인 세부과제 1,763건 중 완료과제는 1,340건(76.01%)이고, 정상 추진중인 과제는 194건(11.00%)이며, 지연 및 기한 재설정과제는 각각 149건(8.45%)과 80건(4.54%)이다.

< 표 > 전략과제 세부과제 이행현황

세부과제 총 수	장기과제	기한관리 과 제	완료과제	미완료 과제		
				정상추진	지 연	기한 재설정
1,820	57	1,763 (100%)	1,340 (76.01%)	194 (11.00%)	149 (8.45%)	80 (4.54%)

※ 분석대상 : 전략과제 66건(전략과제 67건 중 유사행정 규제개선 방안 제외)

< 표 > 미완료과제에 대한 조치유형별 분석

구 분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훈령·기타	합 계
정상 추진	49	35	31	79	194
지 연	73	30	11	35	149
기한재설정	65	7	3	5	80
합 계	187	72	45	119	423

< 표 > 미완료과제에 대한 진행단계별 분석

구 분	국회 심의	국무·차관 회 의	법제처 및 규개위심사	입법 예고	부처 협의	시안마련 등 기타	합계
정상 추진	7	3	10	5	5	164	194
지 연	28	3	24	6	20	68	149
기한재설정	47	0	11	1	15	6	80
합 계	82	6	45	12	40	238	423

나. 전략과제별 이행현황

2007. 12. 31 현재 66개 전략과제 중 과제이행율(완료 전략과제수/총 전략과제수)은 18%(12/66)이나, 이중 80%이상 완료한 전략과제는 34개에 달하며, 이행율이 30%미만인 과제는 10개로 대부분 최근에 개선방안이 마련된 전략과제로서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진행중인 정상추진 과제 들이다.

< 표 > 전략과제별 이행현황

과제 확정월	전략과제명	세부 과제	장기 과제	기한관리 과제(A)	완료 (B)	정상 추진	지연	기 한 재설정	완료율 (B/A, %)
2004.08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38	0	38	38	0	0	0	100.00
2004.09	골프장 건설 규제개선	34	1	33	33	0	0	0	100.00
2004.12	대규모 유통점포 관련규제	36	0	36	32	0	0	4	88.89
2004.12	물류시설투자규제 개선	15	0	15	14	0	0	1	93.33
2004.12	재래시장 활성화	20	0	20	20	0	0	0	100.00
2004.12	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	75	3	72	58	0	2	12	80.56
2004.1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14	0	14	14	0	0	0	100.00
2004.12	대학행정 관련규제 개선	19	0	19	18	0	0	1	94.74
2005.02	항공운송규제 개선	21	1	20	20	0	0	0	100.00
2005.02	문화예술 창의성 방안	35	1	34	33	0	0	1	97.06
2005.02	민간 SOC 투자 활성화	2	0	2	2	0	0	0	100.00
2005.03	공동주택 관련 규제개선	30	0	30	28	0	2	0	93.33
2005.03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방안	14	2	12	12	0	0	0	100.00
2005.03	육상운송 규제개선	23	1	22	22	0	0	0	100.00
2005.03	해상운송 규제 개선	29	0	29	20	0	0	9	68.97
2005.03	직업훈련규제 개선	42	4	38	37	0	0	1	97.37
2005.05	교통관련 규제 개선	34	5	29	24	0	2	3	82.76
2005.05	전자상거래 관련규제 개선	46	0	46	40	0	2	4	86.96
2005.05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절차 간소화	4	1	3	2	0	0	1	66.67
2005.07	신제품.신기술 규제 개선	194	0	194	192	0	1	1	98.97
2005.07	관광.레저산업 규제 개선	37	0	37	23	0	6	8	62.16
2005.07	행정내부 규제 개선방안	53	3	50	50	0	0	0	100.00
2005.08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24	0	24	24	0	0	0	100.00
2005.08	공공정보등의 이용 활성화	41	3	38	23	0	3	12	60.53
2005.09	농수산물 유통 규제 개선	42	4	38	35	0	3	0	92.11

과 제 확정월	전 략 과 제 명	세부 과제	장기 과제	기한관리 과제(A)	완료 (B)	정상 추진	지연	기 한 재설정	완료율 (B/A, %)
2005.09	표시 및 광고규제 합리화	33	0	33	27	0	1	5	81.82
2005.11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25	0	25	20	0	3	2	80.00
2005.11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36	0	36	33	0	1	2	91.67
2005.12	4대영향평가제도 개선	12	0	12	4	1	2	5	33.33
2005.12	국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28	1	27	18	0	8	1	66.67
2005.12	소프트웨어 산업규제 개선	22	0	22	22	0	0	0	100.00
2006.01	수질보전지역 규제 개선	17	0	17	17	0	0	0	100.00
2006.01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개선방안	2	0	2	0	0	2	0	0.00
2006.03	금융 산업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	50	0	50	37	0	12	1	74.00
2006.03	옥외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	21	10	11	9	0	0	2	81.82
2006.03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 규제개선	45	0	45	37	0	6	2	82.22
2006.03	고등교육기관 규제개선	9	1	8	7	1	0	0	87.50
2006.03	조세 부과·징수제도 개선	26	4	22	19	2	1	0	86.36
2006.05	금융감독·예금보험제도 개선	23	0	23	18	0	5	0	78.26
2006.05	에너지·네트워크산업 규제개선	38	0	38	30	0	7	1	78.95
2006.05	초·중등교육 규제개선	10	0	10	5	0	5	0	50.00
2006.06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개선	24	0	24	12	0	12	0	50.00
2006.06	산업안전 보건규제 개선	29	0	29	24	3	2	0	82.76
2006.06	사업자교육 개선방안	65	0	65	50	4	11	0	76.92
2006.07	외국 기업경쟁생활환경 규제개선	13	0	13	11	1	1	0	84.62
2006.07	환경부문 인허가 등의 행정 관련 개선	9	0	9	9	0	0	0	100.00
2006.07	폐기물 처리·재활용 규제 개선	14	0	14	13	1	0	0	92.86
2006.11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	45	0	45	28	4	12	1	62.22
2006.12	항공운송규제개선방안(II)	15	0	15	12	1	2	0	80.00

과 제 확정월	전 략 과 제 명	세부 과제	장기 과제	기한관리 과제(A)	완료 (B)	정상 추진	지연	기 한 재설정	완료율 (B/A, %)
2006.12	공동주택 규제개선 방안(II)	10	0	10	4	3	3	0	40.00
2007.02	각종 행정 인·허가 규제개선 방안	26	1	25	15	9	1	0	60.00
2007.03	환경오염 배출 규제개선방안	20	1	19	9	9	1	0	47.37
2007.03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26	0	26	7	4	15	0	26.92
2007.05	국민생활·민원관련 규제 개선방안	16	0	16	4	6	6	0	25.00
2007.05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20	0	20	7	10	3	0	35.00
2007.05	교육분야 규제 개선방안	15	2	13	1	9	3	0	7.69
2007.06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8	1	7	3	4	0	0	42.86
2007.06	식품위생규제 합리화 방안	19	1	18	2	16	0	0	11.11
2007.06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11	1	10	6	4	0	0	60.00
2007.08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12	0	12	2	9	1	0	16.67
2007.08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방안(보완)	11	0	11	0	11	0	0	0.00
2007.08	물류·유통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9	0	9	3	6	0	0	33.33
2007.10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선 방안	15	0	15	0	15	0	0	0.00
2007.10	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34	0	34	1	33	0	0	2.94
2007.12	외국인 지위·차별개선 및 생활·기업·근로환경 개선방안	11	0	11	0	11	0	0	0.00
2007.12	소방안전 규제개선방안	24	5	19	0	17	2	0	0.00
	합 계	1,820	57	1,763	1,340	194	149	80	76.01

* 유사행정 규제개선방안 제외

다. 부처별 이행현황

2007. 12. 31 현재 전략과제를 추진중인 부처는 40개 기관이며, 과제 이행율(완료 부처수/총 부처수)은 37.5%(15/40)이나, 이중 80%이상 완료한 부처는 22개 기관이며, 이행율이 40%미만인 과제는 2개 기관으로 대부분 최근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각 부처에서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이행 중에 있다.

< 표 > 부처별 이행현황

부 처	세부 과제	장기 과제	기한관리 과제(A)	완료(B)	정상 추진	지 연	기 한 재설정	완료율 (B/A,%)
재정경제부	190	1	189	92	36	52	9	48.68
교육인적자원부	65	6	59	37	9	12	1	62.71
과학기술부	28	0	28	28	0	0	0	100.00
국무조정실	6	0	6	3	2	1	0	50.00
통일부	1	0	1	1	0	0	0	100.00
외교통상부	2	0	2	2	0	0	0	100.00
법무부	35	1	34	16	11	5	2	47.06
국방부	2	0	2	1	1	0	0	50.00
행정자치부	109	21	88	81	2	2	3	92.05
문화관광부	82	1	81	64	0	9	8	79.01
농림부	84	5	79	72	4	0	3	91.14
산업자원부	114	1	113	87	16	8	2	76.99
정보통신부	94	1	93	82	1	7	3	88.17
보건복지부	111	1	110	56	28	12	14	50.91
환경부	141	2	139	118	13	1	7	84.89
노동부	94	4	90	76	7	4	3	84.44
여성가족부	3	0	3	1	2	0	0	33.33
건설교통부	261	6	255	199	33	16	7	78.04
해양수산부	71	0	71	56	1	3	11	78.87
기획예산처	11	0	11	11	0	0	0	100.00
공정거래위원회	30	0	30	29	0	0	1	96.67

부 처	세부 과제	장기 과제	기한관리 과제(A)	완료(B)	정상 추진	지 연	기 한 재설정	완료율 (B/A,%)
금융감독위원회	70	0	70	55	9	6	0	78.57
중앙인사위원회	6	0	6	6	0	0	0	100.00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	0	2	0	0	2	0	0.00
법제처	3	0	3	3	0	0	0	100.00
국세청	20	0	20	18	2	0	0	90.00
관세청	8	0	8	8	0	0	0	100.00
조달청	2	0	2	2	0	0	0	100.00
기상청	1	0	1	1	0	0	0	100.00
병무청	4	1	3	3	0	0	0	100.00
경찰청	24	1	23	18	1	2	2	78.26
소방방재청	35	3	32	17	9	5	1	53.13
문화재청	3	0	3	2	1	0	0	66.67
산림청	14	0	14	14	0	0	0	100.00
중소기업청	48	0	48	48	0	0	0	100.00
특허청	2	1	1	1	0	0	0	100.00
식품의약품안전청	28	1	27	20	6	1	0	74.07
해양경찰청	5	0	5	5	0	0	0	100.00
방송위원회	10	0	10	6	0	1	3	60.00
철도청	1	0	1	1	0	0	0	100.00
합 계	1,820	57	1,763	1,340	194	149	80	76.01

제2절 부처별 개별 규제 정비

1. 개 요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2007년도 개별규제정비」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경제·사회적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를 발굴·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규제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는 폐지하고, 환경·안전 등 존치가 필요한 규제도 규제준수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중점 정비대상은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불합리하게 특정 산업·직종에의 진·출입을 제한하여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국민의 생명, 안전 등 사회적 규제 중 규제내용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규제, 규제 집행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여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행정적 규제 등이다.

개별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정비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06.12)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대상 739건을 발굴 하였다.

2. 개별규제정비 주요 내용

(1) 기업이나 국민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 (263건)

- ①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불합리하게 특정한 산업·직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 (진입규제, 118건)
 - ▶ 사립학교 및 공사기업 등의 채용시험시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 부상자·공로자의

가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완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1/4분기).

- ▶ 지방환경청(또는 유역환경청) 관할구역내로 한정하고 있는 환경관리대행기관(대기, 수질)의 영업구역 제한 폐지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4분기)
- ▶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시 최소 납입 자본금을 17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완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2/4분기)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업종을 '자회사 관련 업종' 등에서 '은행·증권·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으로 확대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3/4분기)

②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 조건, 방법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제한하는 규제 (거래규제, 85건)

-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교육·연구시설 입주 대상을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지원분야 법인”으로 확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1/4분기)
- ▶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발행금액 10%범위내 공탁명령제도 폐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등, 4/4분기)
- ▶ 도시개발 사업자가 토지 등 수용·사용시 동의 요건을 현행 토지소유자 2/3이상에서 1/2로 완화 (도시개발법 제21조, 2/4분기)

③ 불합리하게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기준을 규정하거나 가격 등을 제한하는 규제 (품질규제 86건, 가격규제 8건)

- ▶ “기상정보지원기관” 인력기준 중 기상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자에 대한 고졸이상 학력기준 삭제 (기상법 제31조, 4/4분기)
- ▶ 공인회계사회에서 회원인 공인회계사 등에게 실시하는 의무보수교육제도 폐지 (공인회계사법 제46조, 3/4분기)
- ▶ 사업종별 산재보험료를 최고한도 설정 및 당해연도 보험료를 변동범위를 설정, 급격한 보험료를 변동을 방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4/4분기)
- ▶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일간신문 공고의무 면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4/4분기)

(2) 환경오염, 국민의 생명, 안전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 중 내용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73건)

- ① 국민의 건강·안전, 형평성 등을 명목으로 획일적으로 일정행위 등을 원천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규제 (투입규제 161건)
 - ▶ 화재위험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설치의무를 화재 위험 유발지수를 고려하여 조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1/4분기)
 - ▶ 교차로·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화물 하역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 허용 (도로교통법 제32조, 4/4분기)
 - ▶ 불법 부착장치차량에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 속도측정기 부착차량을 제외 (도로교통법 제49조 4/4분기)
 - ▶ 총포영업 대상에 현행 총포 제조·판매업 이외 총포임대업을 추가하여 영화사 대여 등을 가능토록 개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등, 4/4분기)
 - ▶ 케이블 및 위성방송의 중간광고 횟수를 확대하고, 지상파 DMB 광고규제를 위성 DMB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4분기)
 - ▶ 건강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자국의 공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2/4분기)
- ②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치나 시장유인 기준 중 현실적인 준수가 곤란하거나, 바람직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왜곡하는 규제 (성과규제 7건, 시장유인 7건)
 - ▶ 선박안의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분뇨처리장치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 항해중이 아니라도 배출토록 개선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등, 4/4분기)
 -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영업개시전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종업원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거나 3월 이내에 이수하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4/4분기)
 - ▶ 먹는 샘물과 기타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을 일원화하고, 부과 대상을 현행 제품 사용량에서 취수량으로 변경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 4/4분기)
 - ▶ 국가(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재해방지사설,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설치 되는 시설 등에 대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확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2/4분기)

(3) 각종 조사·보고, 과태료 등 규제 집행을 위해 기업과 국민에게 과도하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부담을 주는 행정적 규제 (97건)

- ▶ 산재보험 요양신청시 제출해야하는 내용과 중복적인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재해원인, 내용 등 신고의무 폐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4/4분기)
- ▶ 정보이용시설 설치·운영자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 공고 의무, 운영실적 등 기록·관리의무 삭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3/4분기)
- ▶ 소형선박의 선적증서원부 기재 신청시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조증명서 제출의무 삭제 (선박법 시행규칙 제24조, 4/4분기)
- ▶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주장기간을 연장(30일→90일)하고 소유권 판정절차를 신설하여 소유자 보호를 강화 (문화재보호법 제48조, 3/4분기)
- ▶ 비밀디자인의 청구시기를 출원시만이 아니라 출원이후 디자인 등록시에도 가능 하도록 확대 (디자인보호법 제13조, 1/4분기)

(4) 기타 제도변경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 감축이나 국민 편의가 제고 되는 사항 (206건)

- ▶ 모부자복지시설 중 미혼모 시설의 보호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1/4분기)
- ▶ 예비군훈련 소집시 훈련일정 및 통지서 수령방법 등을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향군법 시행령 제13조, 1/4분기)
- ▶ 소멸시효가 경과한 우편대체 지급증서 및 우편환에 대한 최고 규정 신설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2/4분기)
- ▶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과 나라장터를 연계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삭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3조의1, 2/4분기)
- ▶ 국내생산품, Stock제품 등에 대한 원화입찰시 제출하는 “공급자 증명서” 제출의무 삭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29조 등, 2/4분기)

제3절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1. 추진개요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일선 지자체의 규제개혁이 아직 미흡하여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규제가 집행되는 현장에서의 지자체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하였다.

2. 규제집행 절차 및 행태 개선

(1) 지자체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구축

지자체 규제개혁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광역지자체 규제개혁 담당과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규제개혁 방향 등을 논의하는 추진체계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국무조정실에 각 지자체별 담당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건의사항 처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를 지원하였다.

또한,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합동심사제(부서합심제)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였다.

(2)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사항이 지자체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개선

중앙부처가 법령 제·개정 시에 규제변동 내역 및 지자체 조치사항을 문서로 정확하게 통보토록 하여 규제개혁 내용이 지방에 신속히 전달·집행되도록 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지자체 위임법령 제·개정 목록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전파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신속히 정비되도록 조치('07.4월)하였다.

(3)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대상 규제개혁교육 확대

'07년에는 지방 규제개혁 강화차원에서 지자체의 규제개혁 교육을 확대하여 55회에 걸쳐 총 4,51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경상남도를 시범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단체 규제심사 공무원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4) 지자체 등록규제 표준화 추진

지자체별로 상이한 등록규제를 표준화하기 위해 16개 시·도 등록규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광역자치단체 표준규제로 광역시 116건, 도 61건을 선정 시달하였으며 ('07.2월)

표준규제를 바탕으로 광역 시·도의 자체 등록규제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토록 추진한 결과 등록규제 수가 전년도 보다 25.7% 감소하였다.

※ 광역지자체 등록규제 감소 추이 : 4,519건('06.10월) → 3,357건('07년 12월)

또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상이한 등록규제를 표준화 하고자 서울 마포구, 경북 포항시, 전북 순창군 등 전국 16개 기초지자체를 시범 선정하여 표준 규제 모델을 개발하였다('07.9월)

(5) 불합리한 규제개혁 업무실태 및 집행관행 개선을 위한 지자체 이행실태 현지 점검

지자체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그 소속 기초지자체에 대해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다.

8개반 53명으로 점검한 결과 총 지적건수는 78건으로, 상반기에 47건(평균 2.9건), 하반기에 31건(평균 2.6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지자체 규제개혁 시책의 본격적인 추진과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으로 지자체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상반기 점검('07.6.25~7. 6) : 서울(중로구), 인천(남동구), 대전(서구), 대구(동구), 경기(부천시), 강원(양양시), 충북(충주시), 전북(전주시)
- 하반기 점검('07.11.1~11.14) : 부산(수영구), 광주(서구), 울산(동구), 충남(천안시), 전남(영암군), 경북(구미시), 경남(마산시), 제주

또한, 지자체에서 규제개혁과제 발굴, 기업애로 해소 추진, 규제개혁 교육 확대 등 자체적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많이 제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제심사 및 등록 누락, 자치법규 정비 지연, 폐지된 규제의 관행적 집행 등 예년의 지적사례가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광역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자체 건의과제 등 적극 처리

'07년도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법령 개정 등 총 143건의 규제개혁건의 과제를 수렴하여 58건을 개선(수용율 40.6%) 하였으며, 규제개혁 건의과제 토론을 위하여 '07.10.22 ~ 10.23 경주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합동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3. 추진 성과

'07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결과, 지자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상당히 제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자체에서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조체계가 일부 미흡함에 따라 지자체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 확대와 중앙부처-지자체간의 체계적인 협조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향후 추진 계획

【중점추진 방향】

- 지자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지자체 규제의 체계적 정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체감도 제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강화
- 중앙정부 차원의 자율적·지속적인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지원·협력 강화
⇒ 지자체 규제개혁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 구현

(1) 지자체 규제의 체계적 정비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등록규제를 일제 정비하고 부적절한 규제의 도입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자체 규제의 적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치법규상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또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규제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법령 제·개정 시 표준조례안 검토 시스템을 확립하고, 기초자치단체 등록규제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규제」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등록규제를 정비토록 하는 한편, 등록규제 정비가 완료되면 지자체별로 웹사이트에 On-line으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2)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지자체 규제개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담당 조직의 기능 및 업무능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업무 강화를 위하여 현재 자치법규 심사 위주로 운영 중인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토록 하고,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 전담자를 지정·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 규제개혁과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자체 규제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자체의 권역별 교육을 여타 지자체로 확산함으로써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개혁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무역량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3) 지자체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건축·토지이용·환경 등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하여 지자체의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규제개선 사항의 신속한 집행과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분기별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규제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전달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촉진하고,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 시 실질적 규제집행기관,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 필요 여부, 표준조례 작성 계획 등을 표시한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 통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4)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수요자의 입장에서 집행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추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집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상·하반기)으로 건의 받아 중앙부처의 정책에 반영 환류토록 하고, 정책성 규제, 덩어리규제 등은 규제정비 전담 부서와 협조하여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지역상공인과 규제분야 건의수렴 및 이해 확대를 위한 정기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차원의 규제해소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4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개선

1. 개 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핵심적인 규제 정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도 여전하여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높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국민·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수요자·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먼저, 2000년도부터 경제5단체로부터 주기적으로 건의과제를 수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왔으며, 2007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정부의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 개선과제 1,664건을 건의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핵심·덩어리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 현상공모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반국민·기업들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총 망라하여 전략과제 및 각 부처별 개별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경제단체 건의과제

집필자 : 오정우 사무관(Tel. 2100-2423, hope002@opc.go.kr)

(1) 건의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5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2000년부터 19차례에 걸쳐 1,239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접수하여 이 가운데 602건(48.6%)을 개선하였다.

2007년에는 5월과 11월에 총 146건의 과제를 접수하였고 이 중 59건(40.4%)을 개선하였다.

(2) '07. 5월 건의과제 처리 경위 및 결과

경제5단체는 세제·금융(27건), 대기업·공정거래(8건), 공장입지(15건), 노동·안전(18건), 주택·건설(19건), 유통·물류(20건), 환경(9건) 기타(6건) 등 8개 분야 122건을 건의하였고 조세, 규제강화건의 등 비규제 사항 52건을 제외한 총 70건의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이중 31건(44.3%)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건의과제	관계 부처	검토 결과
I. 세제·금융 부문		
○ 과도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개선	재정경제부	일부수용
○ 상장폐지법인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재정경제부	일부수용
II. 대기업·공정거래 부문		
○ 소규모 중소기업의 이사선임의무 경감	법무부	수용
○ 지주회사 강제전환의 문제점 해소	공정거래위원회	수용(일부)
○ 금융기관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규정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III. 공장입지 부문		
○ 과밀억제지역내 공장이전지에 대한 용도규제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이전 허용업종 확대	산업자원부	수용
○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 폐지	농림부	기수용
○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입지규제 개선	건설교통부 환경부	중장기검토
○ 공장설립 승인 변경허가 기준 명확화	산업자원부 농림부 산림청	기수용(일부)
○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절차 통합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기업용 건물 신증축시 기반시설부담금 감면	건설교통부	수용(일부)
○ 공장부지의 분할 및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일부)
○ 자연녹지지역 공장의 공장증설 허용	건설교통부	중장기검토
○ 관리지역 세분화의 조속 완료	건설교통부	기수용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그린벨트 해제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건의과제	관계부처	검토 결과
IV. 노동·안전 부문		
○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선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완화	노동부	중장기 검토
○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기준 개선	노동부	수용(일부)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감독기준 대상사업장 기준 개선	노동부	수용곤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의 합리적 조정	노동부	수용곤란
○ 채용시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사단 단축기준 합리화	노동부	수용곤란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결과의 근로자대표 확인 제외	노동부	수용
○ 보호구 성능검정결과 시험성적서 발부	노동부	기실시
○ 보호구 책임관리 현실화	노동부	수용(일부)
○ 타워크레인 운전자격에 천정기중운전기능사 자격 포함	노동부	수용곤란
○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용가능 기간 확대	노동부	수용곤란
V. 주택·건설 부문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일부)
○ 하도급 신고절차 간소화	건설교통부	수용(일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향조정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적정반영 또는 보증보험으로 전환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수용(일부)
○ 하도급법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조정	재정경제부	수용
○ 대형공사 공동도급 참여 최소지분을 축소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 대규모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 완화	문화재청	중장기검토
○ 사업진행중 예측치 못한 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문화재청	수용(일부)
○ 건설업 산재·고용보험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	노동부	중장기검토
○ 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건설교통부	중장기검토
○ 소규모공사(1억원미만)설계변경 적용범위 확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수용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실효성 제고	행정자치부	수용
○ 관급공사 발주시 예산확보 및 설계변경비용 반영	재정경제부	수용(일부)
○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공개 방침 철회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재검토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민간택지비 평가방법 개선	건설교통부	기수용

건의과제	관계부처	검토 결과
VI. 유통·물류 부문		
○ 물류산업의 산업기능요원 선발대상 포함	병무청 중소기업청	수용곤란
○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통관취급법인 허용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 단순의약품(O.T.C) 분류체계 개편 및 유통업체 판매허용	보건복지부	수용(일부)
○ 담배소매인 지정제도의 폐지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 유통·물류업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상 확대	노동부	중장기 검토
○ 관리대상화물의 관우회 운영창고이용 의무화 해소	관세청	수용곤란
○ 항만하역 작업시 정시간외 물품취급통보 의무화 폐지	재정경제부 관세청	수용
○ 환적화물중 위험화물의 터미널 장치 허용	해양수산부	수용곤란
○ 공항물류단지의 차량통제 규정 개선	산업자원부	기수용
○ 차량연장에 따른 자동차 임시검사제도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확보제도 폐지 또는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일부)
○ 해외도입 선박부분(속)품 선용품 인정범위 확대	재정경제부 관세청	수용곤란
○ 물류시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율 인하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시설 제한적 허용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VII. 환경 부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적용 확대	환경부	수용(일부)
○ 특수가연물(합성수지 제품) 저장 및 취급기준 완화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규제 완화	환경부	기수용(일부)
○ 프탈레이트 가소제 규제 완화	환경부	중장기검토
○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판단기준 완화	환경부	수용 곤란
○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요구하는 배출허용기준 등 조정	환경부	수용(일부)
○ 대기관리권역에서 화성, 파주, 양주, 동두천, 이천시 제외	환경부	수용곤란
VIII. 기타 부문		
○ 조달 매입기준 완화	재정경제부 조달청	수용곤란
○ 안경렌즈 통합제도 시행 재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용(일부)
○ 입찰관련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징구 금지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적 계약제로 전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3) '07. 11월 건의과제 처리 경위 및 결과

공장입지·토지부문(12건), 금융·세제(23건), 노동·안전(20건), 주택·건설(26건), 환경(7건), 기타(12건) 등 6개 분야 100건을 건의하였고, 이중 비규제사항 22건을 제외한 76건을 검토하여 총 28건(36.8%)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건의과제	관계부처	검토결과
I. 공장입지·토지 부문		
○ 수도권 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	건설교통부	증장기검토
○ 공장건축 관련 용도지역 건폐율 상향조정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연접(連接) 개발제한 완화 및 기준 명확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산업표준화법상 공장심사 시 업체규모별 심사기준 차등화	산업자원부	수용
○ 농공단지 입지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의 획일 적용완화	농림부	기수용
○ 농촌지역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보완	건설교통부	증장기검토
○ 비농업인에 대한 농지소유규제 완화	농림부	증장기검토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소득관련시설의 규모제한 완화	농림부	일부수용
○ 농촌개발사업 추진시 도시계획시설 설치 원활화	농림부	기수용
○ 농촌개발사업의 부지확보 간소화	농림부	일부수용
○ 한계농지정비 개선	농림부	일부수용
○ 준 산업단지 제도의 개선·보완	건설교통부	증장기검토
II. 금융·세제 부문		
○ 합병 또는 주식교환 시 주식매각제한 완화	금융감독위원회	수용곤란
○ 대기업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PEF) 참여 허용	재정경제부	증장기검토
○ 금융기관 해외 현지법인의 외국법인(자회사) 투자 규제완화	재정경제부	일부수용
○ 비 은행권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전환허용	재정경제부	증장기검토
○ 유가증권 개념의 포괄화 및 유가증권 범위 확대	재정경제부	수용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효율 인하	재정경제부	일부수용
○ 교통세 환급 신고시 증명서류 제출절차 전산화	재정경제부	수용
○ 증권집단소송법·소비자단체소송법상 남소유발조항 정비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III. 노동·안전 부문		
○ 비정규직 활용 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노동부	증장기검토

건의과제	관계부처	검토결과
○ 서비스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확대	노동부	중장기검토
○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감독대상 선정	노동부	수용곤란
○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 개선	노동부	중장기검토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노동부	기수용
○ 유해인자 누락에 대한 사업주 처벌조항 삭제	노동부	수용곤란
○ 계단의 폭 기준 개선	노동부	기수용
○ 승강기 자체점검 주기 합리화	산업자원부	일부수용
○ 안전밸브 압력시험주기의 합리적 개선	노동부	수용곤란
○ 전기용품 정기검사 주기 개선	산업자원부	일부수용
○ 저장탱크 재검사 주기 개선	산업자원부	수용곤란
○ 공장의 화재보험 의무가입제도 개선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적용대상의 합리화	노동부	기수용
○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제도 개선	노동부	중장기검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기능 삭제	노동부	수용곤란
○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 제외대상자의 명시	노동부	중장기검토
○ 특수건강진단 주기연장제도의 도입	노동부	수용곤란
○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	노동부	중장기검토
○ 해양환경관리법 상 선박 범위에서 건조종인 선박 제외	해양수산부	일부수용
IV. 주택·건설 부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의제범위 확대	건설교통부	중장기검토
○ 재건축 결의요건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주택법상 하자분쟁조정기구 설립 건의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사업주체의 중도금납부 통지 시 건축공정 확인서 통지의무 폐지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건축법상 연결통로 기준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
○ 도시개발구역 제한 수용여부에 대한 통보기간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도시개발사업상의 단독주택용지 조성 계획기준 세분화	건설교통부	수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 역모기지원 대상주택 및 이용자격 완화	재정경제부	일부수용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계약대상자 자격 완화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 주택건설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제외	환경부	일부수용

건의과제	관계부처	검토결과
○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 공시제 유예기간 연장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택지대금 기간이자 및 적용기간 현실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택지비 가산비용 현실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건축비 가산비용 현실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주택사업관련 부담금 합리화	기획예산처	중장기검토
○ 주민제안제도 도입 허용 등 정비계획 수립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재건축 후보양제 철회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요건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재건축부담금 부과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원 자격범위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V. 환경 부문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환경부	일부수용
○ 프로필렌 글리콜의 지정폐기물 제외	환경부	수용곤란
○ 공제조합의 우월적 지위남용 개선 및 재활용사업인가 제도개선	환경부	중장기검토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	환경부	기수용
○ 건조중인 선박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관련조항 명확화	해양수산부	수용곤란
○ 배출오염물질 미발생의 경우 배출시설에서 제외	환경부	기수용
○ 시험사용용 화학물질 수입 시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 면제	환경부	수용곤란
VI. 기타 부문		
○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및 관련 법·제도 정비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 KS 표시인증 정기심사 관련 규제개선	산업자원부	수용곤란
○ 해외전시용 고가품 수출입시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청	일부수용
○ 수출물품 등 재수출 조건 수입 후 재수출 절차 간소화	관세청	일부수용
○ 창업보육센터에서의 식품제조가공 영업허가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 건강기능식품 위탁생산 제조업소 선정시 제한규정 개선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3. 전경련 건의과제

집필자 : 손선미 서기관(Tel. bliss@opc.go.kr)

(1) 추진 경위

전경련은 2007년 10월 1,664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하였다. 이는 국무총리가 경제계 인사들에게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설명하고 규제개혁 방안 검토를 요청한('07.5) 데 따른 것이다.

전경련은 규제개혁추진단(단장: 한국경제연구원장) 및 자문단(각계 전문가)을 구성하고, 부문별 규제개혁연구작업반(5개반, 79명) 설치('07.6)하고 등록규제 5,101건('07.10 기준) 중 금융·창업·교육 등 38개 분야 총 1,664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발굴하였다.

건의과제 중에는 기업환경 개선·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현안과제 184건, 수도권·대기업 규제 등 정책성 규제 200건이 포함되어 있다.

(2) 개선방안 마련

국무조정실은 현안과제 검토결과 개선이 가능하다고 관련부처와 협의된 건의과제 75건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확정하였다.('07.12.5)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된다.(재정경제부)
 - 상호저축은행은 본점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에 따라 자본금 한도를 정하고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나,
 - 지리적 범위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현재의 11개권역에서 6개의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온천표시 사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행정자치부)
 - 온천이용업소표시(♨)는 온천법 제정(81) 이전부터 목욕탕·여관 등의 사용이 관행화되어 있으나, 온천법 제정 이후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만이 사용토록 규제하여 왔다.
 - ☞ 새로운 온천표시를 개발하여 목욕탕·여관 등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기업 등의 직장체육시설 설치 및 개방의무가 폐지된다.(문화관광부)
 - 현재 종업원 수 500인 이상의 직장은 반드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하나,
 - 최근 체육공원, 도시공원 등 공공 체육시설 등의 보급이 확대되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방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 직장내 체육시설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근로조건외 하나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선택(예: 주변 민간체육시설 이용 지원 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 이에 기업 등이 의무적으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개방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양곡가공업 중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제분업 및 제조업이 신고제로 완화된다.(농림부)
 - 식품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신고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제분업 등 일부 양곡가공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유지하는 것은 진입장벽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 양곡가공업 중 제분업 및 제조업도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도록 하였다.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정보통신부)
 - 현재는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2년마다 지정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했다.
 - ☞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지정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 건강보험·의료급여비를 매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입원환자는 주(週)마다 청구할 수 있었으나, 외래환자는 월(月)단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의료기관이 외래환자에 대하여도 입원환자와 같이 주단위로 건강보험·의료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보호구 착용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한다.(노동부)
 - ‘분진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공기정화설비 등의 청소, 개·보수작업’, ‘소음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고 이를 점검·보수하는 등을 사업주에게 의무화 하고 있었다.
 - ☞ 재해·위험 사업장 안전관리에 있어 보호구의 지급은 응당 사업주의 의무라 할 것이나, 보호구의 착용은 사업자의 의무보다는 근로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제고를 위해서 지급된 보호구에 대한 착용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토록 제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 1만㎡미만의 공장 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건설교통부)
 - 현재 계획관리지역내에서 1만㎡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 ☞ 공장설립을 위한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개선된다.(건설교통부)
 - 건축물 건축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상향 지정할 수 있으나
 - 이에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 10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원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 건축물 방화구역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건설교통부)
 - 연면적 1천㎡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1천㎡이내마다(스프링클러 설치시는 3천㎡)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 대형 물류센터가 규정에 따를 경우 많은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어 창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 물품의 제조·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물류설비의 작업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 설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이 면제된다.(건설교통부)
 - 그동안 30억원 미만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공사금액의 30%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공사계약일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의 비용이 증가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 공사 금액이 4천만원 미만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이내인 공사의 경우는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교통안전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분담금 징수관련 법령이 정비된다.(건설교통부)
 - 지난 '01.12월 교통안전공단법상 교통안전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분담금 징수 및 운용근거는 폐지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상에 분담금 납부의무자별 분담금액 및 비율 관련 규정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
 - ☞ 이에 건설교통부는 내년도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상의 관련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령정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4. 기업애로규제 해소

집필자 : 이정기 서기관 (Tel. 2100-2238, hansan@pmo.go.kr)

가. 개요

정부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과제의 선정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인터넷·전화신고·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관련 제안사항을 접수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기업애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규제개혁을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해도 소극적인 법 적용이나 행정편의 위주의 집행으로 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기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고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처에 이첩하지 않고 센터에서 직접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애로해소센터의 처리방식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자 2005년 3월에는 그간 각각 운영되어왔던 규제신고센터와 기업애로해소센터를 규제신고센터로 통합하여 일반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모두 처리토록 하되 조직과 민원처리방식은 기업애로해소센터의 것을 유지토록 하였다.

< 행정규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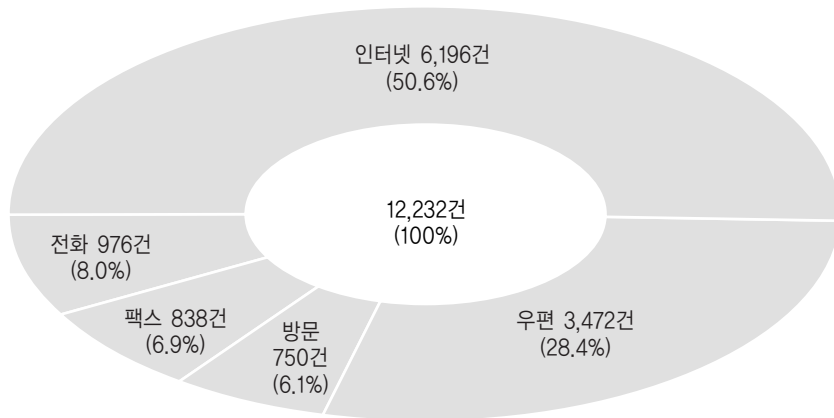
- 우 편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18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전 화 : 02-2100-2238
- F A X : 02-2100-2289, 인터넷 : <http://www.rrc.go.kr>

나. 규제신고 처리상황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신고센터, 기업애로해소센터 등 민원수렴 창구를 통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12,232건의 규제개혁제안을 접수하였다.

그중 인터넷접수가 6,196건(5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편(28.4%), 전화(8.0%), 팩스(6.9%), 방문접수(6.1%) 순이었으며, 특히 2007년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전체건수의 67%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국민제안 비율이 갈수록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접수방법별 규제개혁 제언현황 >



2007년도에 규제신고센터로 접수된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은 352건으로서 그중 338건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고 14건은 처리 중에 있다. 처리 완료된 338건 중 69.5%에 해당되는 235건은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규제개혁 의제로 채택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제도로써 일반화하기 어려운 103건은 정책참고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 규제신고 처리실적(2007) >

접수건수	완 료			추진중	해소율
	계	해 소	정책참고		
352	338	235	103	14	69.5%

규제개혁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신고자의 애로사항이 해소된 235건 중 58%에 해당되는 137건은 법령 또는 제도개선으로, 37%에 해당되는 87건은 집행기관의 규제집행에 대한 시정으로 이어졌으며 나머지 5%에 해당되는 11건은 단순 질의나 동일민원 성격의 건의 사항으로서 상담창구에서 즉결 처리하였다.

< 규제신고사항의 해소유형('07.1~12월) >

구 분	계	법·제도개선	집행개선	기타
건 수	235	137	87	11
비 율	100%	58%	37%	5%

규제신고사항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 환경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규제신고사항의 소관 부처별 분포('07.1~12월) >

구 분	합 계	건설교통부	환경부	재정경제부	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 타
건 수	352	99	34	17	9	7	186
비 율	100%	28%	10%	5%	3%	2%	52%

규제신고사항은 일반 민원과 달리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신고사항은 각 처리담당관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2007년도 신고건수의 85% 정도는 30일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규제신고사항의 처리기간 분석('07.1~12월) >

구 분	합계	7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상
건 수	352	72	227	53
비 율	100%	20%	65%	15%

주요 해소사례

■ 지방세(취득·등록세) 과세표준 적용 관련 제도개선 건의

○ 건의요지

- 일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가격(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과세표준을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

○ 해소방안

- 취득가격(실거래가)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과다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에서는 '07년부터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 반영 차등 감산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06.4~'07.4)」을 실시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동산가격공시법령을 '07년 중에 개정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가격공시가 시행되는 경우 '08년부터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의 검증체계에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07.10.30)

■ 대형첨단자동화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건의

○ 건의요지

- 공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대형 첨단 자동화 공장의 경우 과도한 기준 적용을 받고 있음. 주차수요가 낮은 첨단공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 건의(300㎡ 당 1대를 600㎡ 당 1대로 완화)

○ 해소방안

- 주차장설치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용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조례로 1/2범위내에서 완화 가능함(아산시 조례로 시설면적 525㎡ 당 1대까지 가능)
- 아산시에서도 대형첨단 공장의 경우 과도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산시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임 (2007년12월 개정)

■ 반도체생산공장내 직통계단 설치기준 완화

○ 건의요지

- 반도체공장은 자동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현행 직통계단 설치 기준은 불합리
- 반도체 생산라인은 첨단 자동소화 설비 및 화재에 강한 내화구조 불연재로 건축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희박
- 생산라인 특성상 자동화시설로 구축되어 근무인력이 매우 적음
- ⇒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보행거리 50m 이하에서 70m 이하로 완화

○ 해소방안

- 외국사례 직통계단 60m 설치기준은 미국 IBC 규정의 경우 높이 4층 이하 건축물, 중국의 경우 높이 24m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으로 건축물 높이, 옥외피난계단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 우리나라의 경우 50m 기준이나 높이 제한은 없음
- '07년말까지 관련 학회의 자문, 외국 사례 등 객관성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08년 상반기 건축법시행령 개정 추진
 - * 설치기준 보행거리 50m 이하를 60m 이하 수준으로 완화

■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요건 완화 건의

○ 건의요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한 대행자 등록요건이 과도하므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우선배려 및 방재특수전문교육제도 완화 건의

○ 해소방안

- 소방방재청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개발사업(개발규모 5,000㎡ 이하)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기준을 조정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07.12.21)하였으며, 방재분야 특수전문 교육제도는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동 교육의 성과 및 개선사항을 '07년 11월까지 검토한 후 교육기간, 교과목, 교육장소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및 심의를 거쳐 '07.12월말까지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2008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임

■ 국가유공자 응급진료 관련 개선 건의

○ 건의요지

- 응급진료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보훈처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만 진료비 혜택을 주고,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 본인이 전액을 부담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개선 건의

○ 해소방안

- 국비진료대상자(국가유공자 등)가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응급진료사실을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관할 보훈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기간이 초과됨으로써 혜택을 못 받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응급진료사실 통보기한 연장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07.7.27)

5.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aja2940@opc.go.kr)

가. 국민제안 공모개요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과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하기 위해 2004년 9.10~10.12, 2005년 4. 1~ 6.15, 2006년 1.16 ~ 2.28, 20간 3차에 걸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 결과 2004년 563건, 2005년 572건, 2006년 874건, 2007년 709건을 접수하여 각각 14건, 15건, 16건, 16건을 우수 제안과제로 선정하고 시상하였으며, 기획단의 전략과제 또는 부처의 개별 정비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의 참여자는 경제인, 전문가, 학생, 시민단체, 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 등 나이·직업·성별, 개인 및 단체, 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형식에 구애 없이 제안하는 것이었다. 참여방법은 규제개혁 기획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방문 및 팩스 접수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 2007년도 제4차 국민제안 공모

(1) 공모 현황

2007년 1.16 ~ 3.15까지 실시된 제4차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에서는 총 709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기본요건 검토 결과 정책제안이나 단순 민원성을 제외한 규제개혁과제는 199건이었다.

(2) 공모 심사내용

심사기준은 창의성, 완성도, 적정성(개선 필요성·시의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파급 효과, 시간·비용절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심사위원은 기획단의 민간전문위원 16인으로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개혁 과제 199건을 대상으로 136건을 선정하였으며, 1단계로 선정된 136건에 대해 부처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37건을 본 심사(위원 : 기획단내 과장급, 민간전문위원) 대상으로 상정 하였다.

본 심사에서는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한 경제계 2인, 규제전문가 2인, 규제개혁기획단 및 조정관실 국장 3인 등 8인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위원장: 규제개혁기획단장)에서 본 심사에 상정된 37건에 대해 개별위원별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최종 수상제안 16건을 선정하였다.

(3) 공모 심사결과

우수상 6개, 장려상 10개 등 총 16개 과제를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및 상금(우수상 각 1백만원, 장려상 각 5십만원)을 수여하였다. 우수제안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기획단 전략과제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 우수상(6)
 -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현대전화 불통지역 해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개선
 -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관을 주소지에서 전국으로 확대
 -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및 휴폐업자 처리 개선
 - 건축행위시 대지안의 법적 조경면적 확보의무 개선
 - 위생업소 폐업신고 절차 일원화
- 장려상(10)
 - 대장과 등기부 통합
 - 설계용역 등 생산체계 규제 개선
 - 해상사고와 육상 교통사고 처벌 불균형 해소
 - 어린이집 양육비 보조금 지급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변경
 - 복합운송주선업의 통관업 허용
 - 스팸규제 일원화 및 신고접수 등 처리체계 개선
 - 기능성 유제품에 '유용성' 표시 허용
 - 응급의료에 대한 의료인 동의 규정 개선
 -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기관 확대
 - 도로(고속도로, 국도 등) 제한속도 현실화

나. 2006년도 제3차 국민제안 공모

(1) 공모 현황

2006년 1.16 ~ 2.28까지 실시된 제3차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에서는 총 874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기본요건 검토 결과 정책제안이나 단순 민원성을 제외한 규제개혁과제는 462건이었다.

(2) 공모 심사내용

심사기준은 창의성, 완성도, 적정성(개선 필요성·시의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파급효과, 시간·비용절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심사위원은 기획단의 민간전문위원 16인으로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개혁 과제 462건을 대상으로 137건을

선정하였으며, 1단계로 선정된 137건에 대해 부처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39건을 본 심사(위원 : 기획단내 과장급, 민간전문위원) 대상으로 상정 하였다.

본 심사에서는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한 경제계 2인, 규제전문가 2인, 규제개혁기획단 및 조정관실 국장 3인 등 8인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위원장: 규제개혁기획단장)에서 본 심사에 상정된 39건에 대해 개별위원별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21건을 선정하고, 관련부처의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과제의 해결 가능성, 유사 제안사례 여부 등을 검증 후 최종 수상제안 16건을 결정하였다.

(3) 공모 심사결과

최우수상 1개, 우수상 5개, 장려상 10개 등 총 16개 과제를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및 상금(최우수상 3백만원, 우수상 각 1백만원, 장려상 각 5십만원)을 수여하였다. 제안과제 중 우수제안을 포함한 133건을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우수상(1)

- 실업계고교의 현장실습시스템 개선 및 산업체간 협력 기능인력 확보

○ 우수상(5)

- 민방위 교육통지서 등기우편, 이메일 등 전달방법 다양화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하반기 실시 및 졸업예정자 자격부여
- 해외규격 인증사업의 지원기준 개선(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행위시 관할 군부대의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중복민원 통합처리

○ 장려상(10)

-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시 전문처리업자의 이동식 임목파쇄기 이용 허용
-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황열)를 접종기관에서 일괄 발급토록 개선
-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탈퇴 약관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 방위산업체 (동원)자원 중복조사 관련 주관부서 지정으로 업체부담 경감
- 인피 교통사고 조사 처리과정의 절차 간소화
- 수출신고 정정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철강재 설치업과 강구조물 공사업간 재하도급 문제 개선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대상 중 간호사 제외
- 전국 어디서나(읍·면·동) 전입신고 가능토록 개선
-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지정기준 개선

다. 2005년도 제2차 국민제안 공모

(1) 공모 현황

2005년 4. 1 ~ 6. 15까지 실시된 제2차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에서는 총 57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제안자는 개인 503건, 기업·협회 6건, 자치단체 공무원 63건 이었으며, 내용별로는 기업투자환경 37건, 토지·건축 101건, 재정·금융 72건, 국민편의 223건 이었다.

(2) 공모 심사내용

심사기준은 아이디어의 참신성, 제안의 파급효과, 제안의 실현가능성, 내용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기획단의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된 1차 심사위에서 규제개혁과제 224개를 예비선정, 2차 심사위원회에서 100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본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다.

본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한 경제계 2인, 규제전문가 2인, 규제개혁 기획단 및 조정관실 국장 3인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100개 과제 중 우수제안 후보 38개 과제를 추천받은 후 관련부처와 국무조정실 각 심의관실에서 과제의 해결 가능성, 유사 제안사례 여부 등을 최종 검증 후 수상 과제를 결정하였다.

(3) 공모 심사결과

우수상 5개, 장려상 10개 등 총 15개 과제를 우수제안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 대한 상장 및 상금(우수상 각 1백만원, 장려상 각 5십만원)을 수여하였다. 제안과제 중 우수제안을 포함한 102건을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다.

○ 우수상(5)

- 컨테이너와 일반야적화물 병행 보세창고 허용
- 소방등 안전관련 유사계획서의 통합작성 활성화를 통한 관련절차 개선
- 공장설립 관련 규제지역, 사업, 단지, 절차별 안·허가제도의 모듈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선
-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공급받는 자가 표시되도록 개선

○ 장려상(10)

- 고용보험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 APT단지내 소형 열병합자가발전시스템 도입시 주택법 비적용
- 중복규제 하는 건축 관련 각종 위원회 통·폐합
-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폐지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상이한 기관에 하는 것에 따른 문제
- 식품관련업소 위생교육 실시기관 지정 등의 업무 지방이양
- 면허증 교부제도 개선(이·미용사, 조리사)
- 행정구역의 경계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개선방안
- 산재요율 분류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업종분화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완화

라. 2004년도 제1차 국민제안 공모

(1) 공모 현황

2004년 9.10~10.12간 실시된 제1차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에서는 총 563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정책제안이나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규제개혁과제는 263건이었다. 제안자는 개인 517건, 기업 2건, 단체·협회 18건, 자치단체 공무원 26건 이었으며, 내용별로는 기업투자환경 38건, 물류·유통 8건, 토지·건축 48건, 국민편의 94건 이었다.

(2) 공모 심사내용

심사기준은 다수부처 관련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시간·절차·비용 절감효과, 과제의 참신성, 제안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기획단의 민간위원 13인

으로 구성된 1차 심사위원회에서 규제개혁과제 263개중 88개 과제를 경제단체, 시민단체, 규제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수상작 14개 과제를 결정하였다.

(3) 공모 심사결과

우수상 3개, 장려상 11개 등 총 14개 과제를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및 상금(우수상 각 3백만원, 장려상 각 백만원)을 수여하였다.

○ 우수상(3)

- 법정의무보수교육훈련제도 개선
-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관련 규제
- 건축 준공시 전기 사용전 점검의 통합운영

○ 장려상(11)

- 자치단체 체육시설 건립후 사후 활용도 제고
- 관광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규제 개선
- 내국운송절차 간소화로 국내항간 물류 촉진
-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미검시 과태료 부과문제
- 액화석유가스(LPG) 지역판매제 폐지
-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공제 증빙서류 제한문제
- 보세공장제도를 자유공장제도로 전환
- 면허세 신고납부 방법 개선
- 정보통신공사 발주기관별 적격심사기준 통일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및 전입신고절차
- 수입자동차 인증 시험 절차 개선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제2절 재경금융 및 공정거래분야

제3절 산업자원분야

제4절 건설교통분야

제5절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

제6절 농림 및 해양수산부

제7절 환경분야(환경부)

제8절 교육 및 문화분야

제9절 노동분야

제10절 보건복지분야

제11절 통일·외교분야

제12절 일반행정분야

제1절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1분과, 경제2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회의를 거쳐 2007년도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1,259건(비중요 규제 포함)을 심사하여 이중 243건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각 부처는 철회 또는 개선 권고된 대상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법령에서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규제위의 권고를 이행하였다.

< '07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

부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2007년도 규제심사결과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재정경제부	19	54		5	49
기획예산처	1	1	1		
금융감독위원회	6	12			12
공정거래위원회	6	20	1	5	14
산업자원부	43	84	1	15	68
중소기업청	7	7			7
건설교통부	48	218	13	40	165
과학기술부	9	6			6
정보통신부	24	38		6	32
기상청	1	3			3
농림부	19	66		5	61
산림청	6	18		1	17
해양수산부	38	96		13	83
해양경찰청	1	2			2
환경부	57	133		21	112
교육인적자원부	19	64	3	13	48
문화관광부	13	29		8	21
문화재청	2	13		3	10

부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2007년도 규제심사결과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방송위원회	3	16	1	10	5
노동부	25	58	1	10	47
여성가족부	1	1		1	
국가청소년위원회	3	4	1		3
보건복지부	79	159	3	40	116
식품의약품안전청	41	41		7	34
통일부	4	6			6
외교통상부	3	7			7
국방부	1	2			2
병무청	1	1			1
국가보훈처	3	2			2
행정자치부	8	19		3	16
소방방재청	16	46		7	39
경찰청	1	2		2	
법무부	9	24		2	22
국무조정실	3	7		1	6
계	520	1,259	25	218	1,016

제2절 재경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 재정경제부

집필자 : 이진수 사무관(Tel. 2100-2428, ljs1024@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시행규칙,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신용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세무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선물거래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공인회계사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등 1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3건, 강화 30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5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54건 중 5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나머지 49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정경제부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23건임

<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20회 경제1분과 (2007. 3. 15)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3 *중요3,비중요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20회 경제1분과 (2007. 3. 15)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신용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제324회 경제1분과 (2007. 4. 19)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5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제324회 경제1분과 (2007. 4. 19)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4 내용심사 1 *중요2,비중요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7. 7. 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제332회 경제1분과 (2007. 7. 26)	원안의결 6 개선권고 2	신설 2 강화 6 *중요4, 비중요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33회 경제1분과 (2007. 8. 23)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1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제337회 경제1분과 (2007. 10. 18)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3 *중요2, 비중요3
세무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7. 11. 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	제339회 경제1분과 (2007. 11. 8)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중요2, 비중요2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7. 11. 2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7. 11. 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7. 12. 14)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7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제342회 경제1분과 (2007. 12. 20)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1, 비중요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12. 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49 개선권고 5	신설 23 강화 30 내용심사 1 *중요16, 비중요38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3)

■ 심사내용

- 출연제의 대출금 범위 정비 및 출연요율 조정(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4조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강화)

- 은행의 대차대조표상 대출채권 중 일반대출과 차이가 없는 계정은 원칙적으로 출연토록 하고, 일시적 경과 계정이거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출연제외 대출금에 포함
 - 사모사채, 팩토링채권, 매입어음, 외화대출금은 출연대상에 포함
- 출연요율 조정
 - 신·기보 출연요율 하향조정 : 0.36%(신보 0.225%, 기보 0.135%)
 - 농신보 출연요율 상향조정 : 0.38%의결 의무화(신설)
- ☞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출연대상 대출금의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사모사채와 외화대출금을 출연대상에 포함시켜 사모사채 및 외화대출금의 급증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출연요율을 인하하고 출연대상대출금의 일부를 제외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다만, 농·수협중앙회의 경우 출연요율이 인상되어 출연부담이 증가하였으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동의
- 출연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의무화(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5조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신설)
 - 은행은 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기금 이사장이 정하는 증빙서류와 출연계산서를 제출
- ☞ 은행이 출연 관련 증빙서류 및 출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출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규제에 따른 비용이나 금융기관의 부담정도가 크지 아니하여 원안동의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금융기관 출연기준 대출금 명확화 및 출연요율 조정(안 제3조 제2항 및 별표, 강화)
 - 출연기준대출금을 구체적으로 열거
 - 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구입대출금
 - 개인의 주택건축·구입·개량 대출금(소유권 이전 및 보전 등기일 3개월 이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금 포함)
 - 전세 등 임차대출금

-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중도금 대출금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출금
 - 주택신보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 그 밖에 주택취득, 임차, 개량을 위한 대출금
- 출연기준대출금 중 10년이상의 장기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에 대하여 법정 최고한도 범위 이내에서 출연요율(기준요율 0.26%)을 인상
- 장기고정금리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요율 적용
 - ※ 최소 0.085% ~ 최대 0.3%
- ☞ 금융기관 간에 주택자금대출 분류기준이 상이하여 출연금 차이 등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자금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기준대출금으로 열거된 대출은 성질상 주택자금대출로 보는데 물의가 없고 사업계약서, 매매계약서, 임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개정안 대로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출연요율을 인상한 것은 주신보의 높은 대위변제율과 타 신보 등에 비해 낮은 출연율을 고려하여 이를 현실화함과 동시에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출연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변동금리대출은 출연요율을 인상하여 변동금리 대출에 편중되어 있는 대출구조를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출연기준 대출금의 변화 및 큰 폭의 출연료율 인상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조정과 출연요율인상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하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2개월 이상의 경과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함

(3) 신용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안(신설 2, 강화 3)

■ 심사내용

- 조합 경영실적을 반영한 출자금 환급(법안 제17조, 제17조의2, 강화)
 - 출자금 환급시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조합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 탈퇴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공제후 환급
 - 조합원 탈퇴시 환급청구는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가능

-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예탁금·적금은 5년, 출자금은 2년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 시까지 환급정지

☞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출자금 환급 방식을 전액환급에서 조합의 결손금을 차감한 잔여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출자자가 조합탈퇴시 조합부실로 인한 손실액을 공제하여 출자자의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으나 조합 부실에 대해서 출자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농·수·산립조합은 결손발생시 결손을 만큼 출자금 인출을 제한하고 있음)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 신협 임원의 자격제한 요건 강화 및 겸직제한(법안 제28조, 제33조의2, 제84조의2, 강화)

- 재직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직원의 경우 5년간 임원선임을 배제
-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합 및 중앙회장에게 통보
 - 조합 및 중앙회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
-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조합 상근이사장의 겸직 금지

☞ 신협의 임·직원이 해임 또는 징계 조치가 있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하여 이를 회피한 후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근이사장이 타법인의 상무에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신협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비용은 크지 않으나 임원 선임에서의 편법방지 및 겸직제한을 통한 경영 건전성확보의 필요성이 크므로 원안동의

○ 신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법안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제74조 내지 제76조, 강화)

- 임원수를 회장 및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축소
- 회장을 비상임화하고 상근임원으로 기획이사를 신설하여 추가
-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는 임원을 전체 임원수의 1/3에서 과반수로 확대
- 중앙회장의 권한 중 상근이사 소관업무는 해당 이사에 위임하여 전담처리 하도록 함

- 이사회에 전문이사 등 5인이상으로 구성된 소이사회 설치
 - 감사위원회를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등 상근이사를 제외한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2/3이상은 전문이사로 구성
-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조직 구조를 변경하고 이사회 이사의 수를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신탁 중앙회에서도 이견이 없음
중앙회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비전문 경영인이나 중앙회 운영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인사 및 예산권 등)하고 있으나 내부견제 및 통제수단 미비(과거 4명의 중앙회장 중 3명이 위법·부당 자금운영, 횡령 등으로 면직 등 조치)
효율적 조직관리 및 책임경영을 위해서 중앙회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보 및 상호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동의
-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제도 도입(법안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7, 신설)
- 조합(중앙회)이 자금차입한도, 동일인대출한도 등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1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
-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위법 행위 조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원안동의
- ※ 은행, 증권, 보험, 여전, 금융지주회사 등은 이미 과징금제도 도입·운영하고 있음
 - ※ '05년 검사지적(금감원)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52건, 유가증권매입한도 초과 2건
- 조합 및 중앙회 매입가능 유가증권의 종류별 한도 설정(시행령안 제17조의2③, 제19조의7⑤, 신설)
- 현행 매입가능 유가증권 한도에 추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발행기관 등에 따라 개별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회사채도 개별한도 설정
- ☞ 조합 및 중앙회의 유가증권매입 한도내에서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매입한도를 정하여 조합 및 중앙회가 수익추구를 위해 집중·편중 투자함으로써 리스크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운용의 투자위험 감소로 인한 편익에 비해 고위험 자산 집중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4)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신설 1, 강화 4,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점포 이전시 사전 신고제 도입 (안 제10조의 2, 강화)

- 현행 점포 이전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他 특별시, 광역시, 도로 이전하는 경우 자본금 증자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

※ 같은 특별시, 광역시, 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사후 보고

- ☞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금융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방지대책’(06.12.22)중 저축은행 영업구역 광역화(11개→6개) 추진*에 따른 점포 집중방지를 위해 마련된 안으로 현행 사후 보고방식에 비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적은 반면 점포집중화 방지에 따른 지역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유지, 과당경쟁 방지 등의 편익이 크므로 원안동의

* 현재 11개 권역에서 6개 생활권(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호남, 충청, 강원경북)으로 확대

○ 주식취득 신고후 보유주식 변동시 신고의무 부과(안 제10조의 2, 강화)

- 저축은행 주식을 30% 초과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후 보유 주식수 변동시에는 신고로 승인에 같음하고 있으나 저축은행 주식 10%를 초과 취득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보유 주식수 변동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토록 함

- ☞ 저축은행 주식을 10% 초과취득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자가 주식의 추가 취득 등으로 보유주식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경영권 취득 또는 경영참여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 내역을 신고 받아 주주의 경영참여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려는 案으로 부적격자에 의한 경영참여 사전예방 및 저축은행 부실화 방지 등 건전경영 차원에서 편익이 큼

다만, 분과위 결과 10%를 초과취득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수 변동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 보고토록 권고

○ 당해 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목적의 대출 금지 등(안 제18조의 2, 강화)

- 현재 감독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이외에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을 금지하는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에 대해 사무실 및 차량제공 등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편의제공을 금지
- ☞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금고화 우려 등으로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법 제37조)하고 있으나 당해 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은 금지되지 않아, 출자자가 되기 전에 대출을 받음으로써 출자자대출 금지조항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은행 등 타금융업권의 경우 출자자 대출금지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관의 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의 형평성이 인정되고 당해 저축은행 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제한에 따른 저축은행의 자본충실화 및 대출의 건전성 제고 등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 동의
- 업무보고서 제출근거 신설(안 제22조의 4, 내용심사)
 - 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현재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월 저축은행의 업무보고서 제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비용부담은 거의 없는 반면 업무현황 상시감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 편익이 예상되므로 원안동의
-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35조의 2, 강화)
 - 임원의 결격사유를 해임·징계 면직된 자에서 주의·경고·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자까지로 확대하고 주의·경고·문책 등의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징계면직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의 경우 5년, 주의·경고·문책 등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임직원의 경우는 3년간 임원선임을 배제
 - 또한 재직중이었다면 주의·경고·문책 등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퇴직 임·직원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저축은행은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도록 함

☞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서는 비적격자의 임원 선임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가 해임·징계면직된 자까지만 포함하고 있어 비적격자의 포괄범위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임원의 결격사유 회피를 위해 징계를 받기 전 퇴임·퇴직하여 동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案임

건전경영 유도에 따른 예금자 보호 강화 등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고 기타 금융업권의 임원 자격요건에 대한 제한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 임원의 겸직금지(안 제37조의 4, 신설)

- 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을 15% 초과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임·직원이 되거나, 당해 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저축은행 상근임원이 타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함으로써 저축은행과 타 법인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업무충실도가 저해되어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저축은행 상근임원의 겸직 제한을 통해 타 법인과의 이해상충문제 발생방지 및 업무충실도 제고 등을 통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 등 편익이 기대되고, 기타 금융업권의 임원에 대한 겸직제한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의 자본금 규모(안 제20조의2, 신설)

-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함

☞ 의료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안은 외국인이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기관 난립 방지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임.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받는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50억원 이상이라는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신설 2, 강화 6)

■ 심사내용

○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정기보고 의무화(안 제24조 제6항, 신설)

- 현행은 시·도지사가 대부업자에 대하여 보고·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2조 제1항)하고 있으나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영업현황을 보고토록 함

☞ 대부업체의 경우 경영공시 등 정기적인 영업현황 등에 대한 보고경로가 없는 상황 이므로 대부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대부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감독당국의 선제적 대응 등 대부시장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의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원안 동의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안 제2조, 제3조, 강화)

- 현행 등록 신청시 기재사항에 영업소의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모든 출자자와 지분관계,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주영업소 등 항목을 추가
- 대부업 등록대상에 추심전문업체를 포함

☞ 등록신청시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현황 파악 및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해 전화번호, 여타 출자자 및 지분관계, 주영업소 등을 등록 신청시 기재사항에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인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案으로 대부시장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 등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동의

○ 허위 등록시 시·도지사의 등록 거부(안 제4조의2, 신설)

- 현행은 등록 신청인이 금치산자, 파산자 등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가 신청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기재 등의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 사전에 등록을 거부토록 하는 것은 일종의 허가제도의 성격을 내포하는 것으로 등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행법상 허위 등록시 등록취소(법 제13조 제2항)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허가제의 성격이 있는 등록거부 대신 등록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현행 절차를 개선토록 권고

○ 보증인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강화 등(안 제6조 제2항 및 제4항, 제6조의 2, 강화)

- 현행은 보증인에 대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 미비,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토록 하여 보증인 보호를 강화
- 채무자가 대부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하는 한편, 계약서 작성시 대출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 ☞ 보증인과의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보증 관련 중요사항 누락 등을 방지하는 등 보증인 보호의 편익이 기대되고 대부시장 이용자들이 대부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대부금액, 금리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파산신청 등을 위한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대출 관련 중요사항을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함에 따라 계약서 편법작성 및 불명확한 계약으로 인한 대부이용자의 피해 감소 등 편익이 예상되므로 원안동의

○ 과잉 대부의 금지요건 구체화(안 제7조, 강화)

- 현행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과잉 대부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조사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대출시 소득증빙 징구를 의무화, 소득증빙 징구 관련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다른 여신금융기관과는 달리 건전성 감독체계가 미흡한 대부업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변제능력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른 건전한 대출관행 형성 등의 편익이 예상되고 대부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정 규모 이상 대출 시에만 소득증빙을 징구하도록 보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 동의

○ 표시·광고시 이용자 혼동 방지등(안 제3조의2, 제9조 제3항 및 제4항, 법안 제9조의3, 강화)

- 상호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문구를 명시하여 이용자가 대부업자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표시·광고시 대부조건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광고의 방식·문안을 작성하도록 함
-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를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시 처분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대부업의 표시·광고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임을 명시하고 중요사항의 광고 방식·문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이용자가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으로써 대부 이용자들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의 오인, 이자율 등 대부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혼동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는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 되어 원안동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시·도의 규제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하여 위반시 처분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이중제재의 가능성 예방의 효과가 있음

○ 적용 최고이자율 수준의 인하 등(안 제8조, 제11조, 시행령안 제5조제3항, 시행령안 제9조, 강화)

- 적용 최고이자율을 현행(법 70%, 시행령 66%)→개정안(법 60%, 시행령 49%) 인하
- 무등록 업자에 대한 이자율 한도를 현행 대부업법상 한도가 아닌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적용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무등록 업자가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법40%, 시행령30%)과의 격차 해소 필요성, 이자율 상한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 등 편익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 최고이자율 및 검사권 규정의 일몰제 폐지(안 부칙 제2조, 강화)

- 법 제정('02.8) 당시 '08.12.31까지 일몰조항으로 규정되었던 최고이자율 및 시·도의 검사권 관련 조항의 일몰제를 폐지함으로써 동 규제를 계속 적용

☞ 관리감독상 필요한 시·도의 검사권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하되 최고이자율 제한은

향후 대부시장의 추이를 보아가며 지속여부를 결정토록 일몰제 연장(2013.12.31)을 개선권고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사유 추가

-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시행령안 제76조 제6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월(시행규칙안 제76조 별표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시행령안 제76조 제3의2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월(시행규칙안 제76조 별표2)

☞ 입찰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 방지등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재 자체 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목적이 더 크고 중앙과 지자체간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의 균형 유지*1와 제재 내용의 형평성을 고려*2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사회분과위 의결내용('07.7.19)

-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월이상 6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8)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신설 2, 강화 3)

■ 심사내용

○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도입(안 제24조의2, 신설)

- 신용카드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금지행위”)를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신용카드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
- 그러나 위법행위의 요건이 “건전한”, “거래질서 문란” 등으로 추상적이어서 위법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고, 구체적 요건이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됨으로써 규제의 불확실성 증가 및 이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자율경영이 위축될 우려

또한 시장점유율 확보가 경영전략의 우선순위에 있는 일부 후발 신용카드업자들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성격의 직접규제로서 신용카드사의 경영건전성 저해 방지라는 동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존의 대안 규제(예: 건전성비용 규제)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불가피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타금융업권 및 주요국의 유사입법례를 감안하더라도 동 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포괄적 금지규정을 개별 법령에 입법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권고

1. 신용카드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삭제하고 건전성 규제로 대체
2.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위법 행위를 명시화함으로써 법적 명료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약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사권 부여(안 제54조의 3, 신설)

-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개정할 경우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약관 제·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1. 약관내용중 금융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미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 금융감독위원회는 신고 또는 보고받은 약관 및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금융감독위원회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전 약관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금융 이용자의 권익 강화 등 약관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개별업권에서 별도로 약관을 규제하는 것이 법적 통일성을 약화시키는 점은 인정됨
그러나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상품을 취급(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등)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상 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이중규제 방지를 위해 보완장치로서 약관변경 명령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및 협의를 의무화한 점,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 타금융업권의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 할 때 규제도입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책임부담 강화(안 제16조·제17조, 강화)

- 제3자가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토록 명시하고 제3자가 회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부정하게 지득된 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결제 사례가 증가하는 등 피해 발생시 신용카드업자와 카드사용자간 책임부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분쟁소지를 예방하고 금융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금융거래 안정화 측면의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카드정보의 부정한 지득이 신용카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신용카드업계 및 감독당국 실무진과 의견 조율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50조의3 10호 내지 12호, 강화)

- 임원의 결격요건을 해임·징계면직 된 자에서 주의·경고·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자 및 조치 이전에 사임·사직한 자까지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서는 비적격자의 임원 선임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여신전문금융업 임원의 결격사유가 해임·징계면직된 자까지만 포함하고 있어 비적격자의 포괄범위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임원의 결격

사유 회피를 위해 징계를 받기 전 퇴임·퇴직하여 동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

건전경영 유도에 따른 금융이용자보호 강화 등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고 기타 금융업권의 임원 자격요건에 대한 제한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 되므로 원안동의

○ 카드사 임직원 등의 회원모집 관련 준수 의무 부과(안 제14조의 2, 강화)

- 현행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관련 준수 의무(다단계판매, 길거리 모집 금지 등)는 모집인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동 대상을 모집인 이외에 실제 모집을 할 수 있는 카드사 임직원, 회원모집 제휴업체 및 그 임직원 등으로 확대

☞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신용카드 모집질서의 문란 방지 차원에서 도입된 모집관련 준수 의무(여전법시행령 제6조의 8)의 적용대상을 실제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의 목표 대비 실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추가되는 피규제대상의 수가 적고 비용에 비해 금융이용자의 권익 강화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동의

(9) 세무사법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안 제19조의3,4, 신설)

- 외국의 세무전문가들 중에서 자격취득국에서 3년 이상의 경력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외국세무자문사로 승인

☞ 세무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세무전문가들이 국내에 진출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을 승인해 줌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동의

※ 전문성 담보를 위해 3년이상 업무경력 추가

○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등록 및 등록취소(안 제19조의5, 6, 9, 10, 신설)

-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국내에서 외국세법 등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취소

☞ 외국세무자문사의 합법적인 국내활동 보장을 위하여 등록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안 제19조의12, 신설)

- 외국세무사 등에게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게 하고, 성실한 국내근무 및 관세근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80일 이상 국내체류의무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의무 등을 부과

☞ 180일 이상 국내체류의무 부과는 성실한 국내근무와 과세근거 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하기 위한 것임

또한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자격취소 및 직무정지 등에 대한 신고와 개·폐업 등에 대한 신고의무, 국내 세무사와 업무의 공동수임 불가 등은 외국세무자문사의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원안동의

※ 국제조세조약에 따르면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체류국에서 과세권이 발생

○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광고 금지(안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5호, 신설)

-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원안동의

(1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심사내용

○ 수수료에 대한 공익적 통제장치 마련 (안 제24조의2, 신설)

- 현행 시장효율화위원회 대신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거래소수수료심의위원회(신설)」에서 수수료를 심의하고,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재정경제부 승인반도록 하며 거래소수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가 이해

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거래소 상장 이후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수수료 결정·변경시 재정경제부 승인에 대해서는 미·일 등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고제도가 있고, 우리의 경우 법적 독점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므로 공익성 확보를 위해 정부안에 동의하되, 다음을 부대 권고

1) 정부승인기준을 투명하게 규정하여 제시, 2) 상장 1년 후 거래소 활성화 상황 등을 규개위에 보고

○ 자율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안 제17조제8항, 강화)

- 현행 자율규제기관(“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율규제위원회(舊 “시장감시위원회”)의 인사·조직 및 예산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 상장심사기능 이전 등 자율규제위원회의 공익성 확대에 따른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자율규제위원회의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령에 인사·예산·조직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반원칙(guideline)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위임하는 조건으로 동의

○ 거래소 임직원의 거래소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증권선물위원회 앞 보고(안 제11조, 강화)

- 거래소 임직원이 거래소 유가증권을 거래한 경우 그 거래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 거래소 상장에 따라 스스로 상장기업이자 상장기업의 감시·규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자기감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공익적 장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 거래소 주식보유의 제한 등(안 제21조, 제23조, 강화)

- 현행 거래소 주식보유 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도 동일인으로 의제하여 동 한도를 적용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1인당

배정액을 연금여한도로 제한

- ※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보유금지(법 제21조)
- 유상감자를 재정경제부 승인사항에 포함

☞ 거래소의 공모계획을 고려할 때, 상장 후 우리사주조합의 10% 지분 보유가 예상되므로, 현행 거래소 주식보유제한(법제21조, 5%)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도 동 한도가 적용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한도를 연금여한도로 제한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15)의 취지 및 여타 우리사주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유상감자를 재정경제부 승인사항에 포함하는 案에 대해서는 투자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 유상감자를 통해 거래소 상장재원이 급격히 사외유출될 우려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11)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안(강화 2)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현물·선물 연계(역방향) 시세조종행위 금지(선물거래법시행령안 제7조제2호, 강화)
 - 현행은 선물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현물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물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선물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행위도 금지사항에 추가
- ☞ 파생상품거래의 다양화로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현물가격을 시세조종(순방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현행) 현물시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선물가격을 시세조종(역방향)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유형에 포함시키는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우에도 역방향 시세조종행위까지도 포함 하여 포괄적으로 규제(제176조제2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 선물업자의 선행매매 규제 범위 확대(선물거래법시행령안제12조제1호, 강화)
 - 현행은 선물업자 및 당해 임직원이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위탁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기계정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도 금지대상에 포함

- ☞ 선물업자가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취지상 위탁거래 뿐만 아니라 자기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권업의 경우에도 위탁 및 자기거래를 불문하고 업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고객주문정보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해외의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대상에 주식선물 등을 포함(증권거래법시행령안 제2조의3제2항, 강화)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1 및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2 규정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현행은 선물거래법상 주식관련 선물상품 중 주식옵션 등(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한해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상장예정인 주식선물 등(선물거래법제3조제1호 가목)을 동 규제대상에 포함
 - *1: 임·직원, 주요주주 등이 해당기업 주식선물을 매수한 후 6개월내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내 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법인에 반환
 - *2: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 ☞ 현재 상장을 준비중인 주식선물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

주식선물과 옵션의 경제적 효과는 당해 주식거래와 유사하므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규제를 주식선물에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미국, 일본 등 외국 입법례의 경우에도 주식선물 등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의제하여 규제하고 있는 점, 피규제자가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으로 한정되어 규제의 비용은 적은 반면 주식선물 상장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선물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의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동의

(12)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신설 7)

■ 심사내용

-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등록 및 취소 등(안 40조의3부터 40조의7, 신설)
 -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국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의무위반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거부)하도록 함
 - ☞ 일정한 능력과 요건을 갖춘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회계 서비스 업무를 제공토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동의
- 공인회계사의 고용금지 등(안 40조의9, 신설)
 -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는 국내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외국회계법인의 지분투자 및 공동수입 등을 제한
 - ☞ 한미 FTA협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며 외국공인회계사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원안동의
- 자격의 표시 등(안 40조의10, 신설)
 -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명의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
 - 업무수입 전 위임인에게 원자격국 및 업무범위를 명시
 - 회계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토록 함
 - ☞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원자격국을 표시하여 원자격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동의
- 국내회계법인 출자 제한(안 40조의11, 신설)
 - 외국공인회계사의 회계법인 투자시 자본금의 50%미만, 회계사 1인은 자본금의 10%미만으로 제한
 - ☞ 외국공인회계사에게 일정부분의 출자제한은 한미 FTA협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며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안동의
-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감독(안 40조의12, 신설)
 -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

토록 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

☞ 외국공인회계사에게 사무소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토록하여 업무영역 준수 및 회계의 적절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동의

○ 외국공인회계사 체류의무(안 제40조의13, 신설)

- 외국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각 1년당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함

☞ 180일 이상 국내체류의무 부과는 성실한 국내의무와 과세근거 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동의

*한미조세협약('79.10.20)에 따라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체류국에서 과세권이 발생

**외국법자문사법, 세무사법 상의 전문자격사도 동일하게 규정

○ 비밀누설금지 의무(안 40조의15, 신설)

- 외국공인회계사 및 그 사무직원에게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국내외에서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 부과

☞ 외국공인회계사 등에 의해 기업의 경영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원안동의

(13)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금융채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과(안 제5조의2, 강화)

- 현행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공모(모집·매출)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특수채")에 대해서는 동 제출의무를 면제(법 제7조), 은행법시행령(제19조 제5항)은 금융 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를 특수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동 신고의무 적용을 배제

- 개정안 : 금융채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

-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채권 공모(모집·매출)시 유가증권에 대한 발행시점의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한 발행 공시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중요
규제에 따른 비용/편익 측면에서는 유가신고서제출에 따른 분담금 납부 등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활성화에 따른 채권발행비용 절감, 채권 수요자(투자자) 입장에서 발행시점의 투자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투자자 편익 등이 기대되고 규제개혁장관회의(06.5)에서 기 논의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동의

○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적용대상 확대(안 제37조 제1항 제7호, 강화)

- 금융감독위원회 명령권 적용대상에 증권회사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증권거래법 제54조 제7호: 금융감독위원회는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案으로 규개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案이므로 원안동의

- * 증권회사 업무보고서의 작성주기 및 제출시한 단축(안 제2-67조 제4항)에 대한 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하여 근거법령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증권회사에 대한 명령)의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07.3.29)한 바 있음

(14)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사유 추가(안 제11조제4항 별표3, 강화)

-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조·밀수·도난담배를 판매한 경우
· 1차위반 : 3월, 2차위반 : 6월
-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 1차위반 : 1월, 2차위반 : 2월

- ☞ 동 규정은 담배의 불법유통을 막아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불편해소와 담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원안동의

2. 기획예산처

집필자 : 이진수 사무관(Tel. 2100-2428, ljs1024@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기본법시행령상 신설된 규제 1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회권고 하였음

<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제340회 경제1분과 (2007. 11. 22)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1
계	-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1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기본법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유찰제도 도입(시행령안 제7조10항 /신설)

- 사업자 모집공고 결과 단독제안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유찰 후 한차례에 걸쳐 재공고 의무화

☞ 재공고 의무화는 이미 제3자 공고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참여기회가 주어졌고, 재공고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이 우려되고 수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을 1~2개월의 재공고 기간 내에 사업성을 검토하여 응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최초 민간제안 사업자의 신뢰보호 등을 고려,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권고

3. 금융감독위원회

집필자 : 최재용 전문위원(Tel. 2100-2464, jyc22@opc.go.kr)

가. 2006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은행업감독규정, 증권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주택담보대출리스크관리관련감독규정 등 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10건 총 1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1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금융감독위원회의 2007년도 신설규제는 2건임

<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7. 3. 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7. 3. 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7. 4. 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7. 6. 1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은행업감독규정 외 4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7. 7. 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6. 9. 2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7. 12. 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7. 12. 13)	원안의결 3	강화2, 신설1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12	강화10, 신설2 *비중요 12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신탁의 투자대상 회사채 등급 제한 (안 제6조의2, 강화)

- 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의 평가등급을 현재의 “BBB-이상”에서 “BBB+이상”으로 강화

☞ 규제강화에 따른 비용은 연간 약 99억원(향후 20년 평균)으로 추산되나 신용위험 감소에 따른 신탁의 편익은 이보다 큰 연간 235억원(향후 20년 평균)으로 추정되는 한편 조합원의 출자금 손실 감소, 거래자 및 공공부문의 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감독업무 부담 경감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가계대출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안 제9조, 강화) 및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 상향 조정(안 제11조, 강화)

- 가계대출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연체기간 단축)

- 정상채권 : 3월 미만 연체채권→1월 미만 연체채권
- 요주의 채권 : 3~6월 미만 연체채권→1~3월 미만 연체채권
- 고정이하 채권 : 6월 이상 연체채권→ 3월 이상 연체채권

- 요주의채권으로 분류된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을 2%에서 8%로 상향 조정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 실질위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케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편익이 큰 반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따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동의

(3)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증권회사 업무보고서의 작성주기 및 제출시한 단축 등(안 제2-67조 제4항, 강화)
 - 현행 증권회사가 업무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을 월별로 작성하여 익월 말일 이내에 제출토록 함

	현 행
작성주기 :	분기별
제출시한 :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

→

개 정 안
월별
다음달 말일 이내

- ☞ 증권회사 업무보고서의 작성주기 및 제출시한 단축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는 크지 않는 반면 감독기관의 신속한 모니터링에 따른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이상 징후 포착 및 분석 후 감독정책 수립에의 반영 등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편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4)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관련규정(은행업감독규정 외 4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대책의 규정화
 - 현행 지도공문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관리방안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해당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반영
 -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 연장 제한 등
- ☞ 현행 금감원의 지도공문(행정지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대책을 각 금융업권별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하고자 하는 案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관리의 감독기준을 정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는 한편 금융감독 행정의 투명성 제고, 금융 기관의 경영 건전화 등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예상되므로 원안동의

(5)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제출대상 재보험의 범위 확대(안 제7-12조, 강화)

- 현재 보험회사는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에 한하여 감독당국에 그 내용을 신고하고 있으나 1년 이내 계약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사후)제출토록 함

* 재보험회사의 책임이 제한된 계약 등

☞ 보험회사의 재보험계약중 위험전가가 없거나 재보험회사의 손실가능성이 없는 계약은 재보험이 아닌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나(안 제7-13조) 다수의 보험사가 위험전가가 거의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도 1년 미만으로 보험기간을 설정하여 미신고하고 이를 재보험으로 회계 처리함에 따라 실제 리스크 감소 없이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하는 문제 발생

* 1년 미만의 재보험계약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위험전가여부를 판단(안 제7-13조 2항)

$$** \text{지급여력비율} = \left(\frac{\text{지급여력금액}}{\text{지급여력기준금액}} \right) \text{은}$$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는 보험리스크를 감소시켜 지급여력기준금액을 낮게 함으로써, 지급여력비율 상승요인으로 작용

보험회사의 재보험계약건수가 소수(年 1~5건)이므로 계약내용의 사후제출에 따른 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지급여력비율이 회사의 리스크 부담 정도를 정확히 반영토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 이용자로 하여금 회사의 재무상황을 적절히 판단토록 하는 등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동의

○ 재보험의 지급여력비율 반영 한도 설정(안 제7-2조 및 별표12, 강화)

- 현행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영되는 재보험 출재보험료(금)를 전액 반영하여 산출하는 방식에서 출재보험료(금)를 전체 수입보험료(금)의 50%한도 내에서 반영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전체 수입보험료의 50% 이상을 출재할 경우 50%만 인정

- ☞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반영되는 재보험 출재율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으나, 보험사의 평균적인 지급여력비율이 20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지급여력금액 추가적립에 따른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위험전가는 낮으면서 지급여력비율 상승 목적으로 출재되는 재보험에 의한 지급여력제도의 왜곡을 줄이고 재보험 거래비용을 줄이는 등의 편익과 EU 등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의 입법사례* 등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 *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EU국가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에 반영되는 재보험 출재율을 50%까지 인정
- ※ 지급여력비율에 반영되는 재보험 출재율을 보험회사의 재보험 위험전가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적용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6)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기업여신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을 업종별로 차등·상향조정(안 제29조, 강화)
 - 은행의 기업여신중 “정상”여신의 최저적립율을 0.15%p 상향 조정(0.7%→0.85%). 단, 예상손실률이 높은 건설·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0.2%p 상향 조정(0.7%→0.9%)
- ☞ 신BIS기준 도입에 따라 은행 기업여신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업종별 예상손실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

미래 예상손실 위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케 함으로써 내부유보 확충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시키는 등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의 편익이 기대되는 반면, 충당금 추가적립액은 내부유보자금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성격의 비용은 거의 없음

국제기준을 이용한 업종별 예상손실률을 반영하는 등 대손충당금적립제도의 유효성 제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강화 등 편익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7)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설1, 강화2)

■ 심사내용

○ 증권회사별 신용공여한도 설정(안 제5-2조의2, 신설)

- 증권회사의 전체 신용공여규모를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유지토록 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 신용공여한도 초과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12개월 적용을 유예

☞ 최근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급증 및 향후 신용공여 과다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案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규제법정주의에 부합

- * 증권회사의 과다한 신용공여는 주가변동성을 심화시키고 투자자의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대한 한도 및 담보비율 등을 정하도록 함(증권거래법 제49조)
- 신용공여의 한도를 자기자본 범위 내로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규제의 비용은 적은 반면 주가 급락 시 과다한 신용공여에 따른 금융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는 등의 편익이 기대

최근 주식시장 신용공여액의 급증 등 규제도입의 시의성이 인정되는 한편 규제시행의 유예기간 설정(12개월) 등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 신용거래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 설정(안 제5-4조, 제5-10조, 제5-11조, 제5-17조, 제5-20조, 강화)

-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신용거래보증금율 및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을 설정
 - 신용거래보증금율의 최저율 : 40%
 -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 : 대출금의 140%

☞ 신용거래보증금율 및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을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주식시장의 투기시장화 등 폐해를 방지하는 등의 편익이 기대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감독기구가 동 비율의 최저율을 정하는 등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국제 기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 주요국의 최저율 한도 설정(예)

- 미국(NASD, NYSE):
 - 신용거래보증금율 50% 이상
 - 담보유지비율 133.3% 이상
- 일본(동경거래소):
 - 신용거래보증금율 30%,

· 담보유지비율 125% 이상

-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반영되는 신용공여 위험액 산정방법 변경(안 별표11, 강화)
- 현행은 신용공여 위험액 산정시 대출금에서 담보가치를 전액 차감하고 있으나 담보가치의 일부(차감률 : 50%)만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

*신용공여 위험액 = (대출금-담보가치)×위험률

→ = [대출금-담보가치×(1-차감률)]×위험률

- ☞ 현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위험액 산출시 담보 유가증권의 신용에 관계 없이 전액 담보로 인정되어 신용공여액에서 차감되고 있으나 담보 유가증권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일정부분(50%)만 반영함으로써 위험액 산정방법을 합리화하려는 案으로, 현 은행의 담보가치 산정방식, 신BIS비율 개념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합리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4. 공정거래위원회

집필자 : 김명신 사무관(Tel. 2100-2466, kmsin630@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총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강화 11건 내용심사 4건 총 2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20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5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14건은 원안대로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16차 경제1분과 (2007. 1. 18)	개선권고 4, 원안의결 3 조건부원안의결 1	신설1, 강화7 * 중요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27차 경제1분과 (2007. 5. 31)	개선권고 1	신설 1 * 중요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1차)	제328차 경제1분과 (2007. 6. 14)	원안의결 4	신설3, 강화1 * 중요1, 비중요3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7. 8. 2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차)	제336차 경제1분과 (2007. 10. 4)	철회권고 1 원안의결 4	강화3, 내용심사2 * 중요1, 비중요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7. 10. 1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신설1, 강화 7)

■ 심사내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규정을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라고 개정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행위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강화)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열거된 사항에만 한정토록 하되, 거래상대방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상품·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부당지원행위의 수단 유형으로 상품·용역 거래를 포함 (강화)

☞ 기업의무 최소화를 위해 공시를 정기적(예: 분기별 또는 반기별)으로 행할 수 있도록 공시주기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동의

○ 당초 주식취득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합작회사 설립시 설립 참여회사 중 최다출자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강화)

☞ 기업결합의 신고요건을 변경한 동 안의 내용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 상호출제한기업집단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청, 시스템 구축, 자료공개 규정을 신설 (신설)

☞ 안 제4조의 5 제1항에 의거한 공개대상 자료 및 제3항에 의거한 요구 대상 자료를 각각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동 안에서는 대통령령 위임을 명문화 하도록 개선권고

○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기업결합 유형과 관계없이 기업결합 당사회사(취득회사, 피취득회사)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강화)

☞ 특수관계인을 통한 변칙적 기업결합 유인을 사전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며, 궁극적

으로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

○ 현장조사시 사업장 출입, 자료·물건 조사 등에 대한 피조사자의 수인의무,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카르텔·부당지원행위에 한해 법 위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기간 및 범위 내에서 봉인조치, 위원회 결정에 의한 자료·물건 제출명령 불응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 (강화)

☞ 안 제50조의4 이행강제금은 철회권고, 안 제50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한 봉인 조치는 그 대상을 카르텔 및 부당내부거래로 한정하며, 발동요건·절차·범위 등 관련 제반 사항을 대통령령에 명시토록 하고 대통령령 위임을 명문화 할 것을 개선권고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발동범위를 현행 부당지원행위 외에 상호출자 등의 탈법행위 확인까지 확대하고, 시한조항을 삭제(강화)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부당내부거래행위와 상호출자 탈법행위에 한해 3년의 기한으로 운용할 것을 개선권고

○ 부당 공동행위가 금번 법 개정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개정(05.4.1 시행)된 과징금 부과율(10%)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하도록 부칙 개정(강화)

☞ 현행 부칙 제8조는 과징금 상향조정에 대한 적용기간을 설정하고자 한 것으로 시행(2005. 4. 1)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였고, 장기간 지속된 부당행위에 대해 오히려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모순이 발생할 뿐 아니라, 기업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설 1)

■ 심사내용

○ 다단계 금전거래행위 유형 규정 (신설)

1. 재화 등의 회사 구입가가 판매원 등에 대한 판매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등 재화 등을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중가격과 달리 현저히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2.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3.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판매 계약실적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4. 그 밖에 재화 등의 거래가 재화 등을 판매 또는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화 등의 대금을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

☞ 규제대상은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을 통해 재화등의 실질적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등 금전거래 가장 수단으로 간주할 만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로 제한함이 타당

- 제2호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판매행위」 관련, 동법에서 제시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로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해당 경우를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 거래의 조건 규정(신설)
 - 거래상대방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회사 또는 그 상법상 자회사
 - 거래금액 : 분기거래예정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 총계 중 큰 금액의 10%이상
- ☞ 거래상대방의 범위를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회사 또는 그 상법상 자회사」로 규정한 것과 관련,
 - 현재 문제화되고 있는 「일부 주요 부당내부거래 사례」들을 규제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규제 필요성이 약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 비상장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 대상 을 다른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으로 변경(강화)
 - ☞ 소규모 다수계약 등의 파악을 위해 금액기준을 현행 단일계약액에서 연간합계액으로 변경하였으며, 동시에 공시주기가 연 1회로 줄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음.
 -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은 감사보고서상의 기재 권고사항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따르고 있어, 공시를 위한 기업의 추가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 가능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회사 관련 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신설)
 - 계열회사의 명칭·사업내용 등 기본현황, 주요주주 및 임원현황, 재무현황 등 일반현황, 이사회구성현황, 집중투표 등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법 등
 - ☞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원칙적 공개토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며, 정보공개에 대한 자료요구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동의
-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에 「상품·용역의 거래를 통한 지원」을 추가(신설)
 - ☞ 동법에서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명문화함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서, 이해관계자의 별도 이견이 없고, 현행규정상의 자금·자산·인력 부당지원행위의 내용을 준용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4)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내용심사)

- ☞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내부지침(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고시로 규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에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고 부과시에는 자진시정 여부, 과징금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3,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에 비용과 다른 경쟁시장의 가격과 비교하여 가격남용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강화)
 - ☞ 관계부처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현행규정으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규제가 가능한 점,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철회 권고
-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을 채무보증 금지대상 금융기관에 포함 (강화)
 - ☞ 일부 대기업의 상호저축은행을 통한 부실 계열사 채무보증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06.7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요건 (BIS자기자본 비율 8% 이상 등)을 갖춘 상호저축은행의 기업에 대한 여신한도가 폐지되어 대규모 여신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저축은행을 통한 채무보증을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
-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나 Paper Company를 이용한 주식파킹을 상호출자 탈법행위로 규정(강화)
 - ☞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및 상호출자금지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편익이 크고, 공정거래법 개정('07.7.3)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발동범위가 상호출자 탈법행위

조사까지 확대되었는바 탈법행위의 유형과 기준의 구체화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발동요건을 명확히 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 경매·입찰담합의 세부유형에 낙찰 또는 경락의 순서,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기타 입찰·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규정(내용심사)

☞ 대표적인 경매·입찰 담합행위 유형을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동 규정 신설에 따른 추가비용발생은 거의 없는 반면,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편익이 크고, 이해관계자의 별도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 현행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직전사업년도 3개년 평균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한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관련매출액으로 변경 (내용심사)

☞ 동조항은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이 많아 범위의 이득이 3개년 평균매출액을 한도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회하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한도 기준을 평균매출액→관련매출액으로 변경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07.7.19, 이하 방판법)에서 위임한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사실상 지배'의 내용을 구체화 (내용심사)

☞ 방판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회사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또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단계판매회사가 법 위반 후 타회사를 통해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편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

제3절 산업자원 분야

집필자 : 이경민 사무관(Tel. 2100-2429, lkm1@opc.go.kr)

1. 산업자원부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도시가스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건, 강화 26건, 내용심사 52건 등 총 8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84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15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6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안전기준고시 제정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제정안,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07. 1. 11)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 비중요 3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운영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07. 2. 8)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제318차 경제1분과 (2007. 2. 22)	(조건부) 원안의결 1	강화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7. 2. 22)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 비중요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3. 15)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320차 경제1분과 (2007. 3. 15)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1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제322차 경제1분과 (2007. 3. 29)	개선권고 3	강화 2 내용심사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324차 경제1분과 (2007. 4. 12)	원안의결 5 철회권고 1	강화 4 내용심사 2 * 비중요 4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24차 경제1분과 (2007. 4. 19)	원안의결 1	강화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26차 경제1분과 (2007. 5. 17)	원안의결 1	신설 1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326차 경제1분과 (2007. 5. 17)	원안의결 3	강화 1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26차 경제1분과 (2007. 5. 17)	개선권고 1	신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26차 경제1분과 (2007. 5. 17)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신설 2 강화 1 * 비중요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6. 28)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6. 28)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31차 경제1분과 (2007. 7. 5)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	예비심사 (2007. 7. 24)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제332차 경제1분과 (2007. 7. 26)	원안의결 3 개선권고 4	강화 7 * 비중요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8. 6)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7. 8. 6)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8. 6)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8. 6)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7. 8. 6)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 비중요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제333차 경제1분과 (2007. 8. 23)	원안의결 11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2 * 비중요 11
승강기검사기준고시 개정안	제333차 경제1분과 (2007. 8. 23)	원안의결 3	강화 3 * 비중요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9. 21)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7. 9. 2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7. 10. 18)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10. 24)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안 개정안	예비심사 (2007. 11. 8)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 비중요 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339차 경제1분과 (2007. 11. 8)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1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석유류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안	제339차 경제1분과 (2007. 11. 8)	개선권고 1	강화 1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성능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7. 11. 9)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12. 4)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07. 12. 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68 개선권고 15 철회권고 1	신설 6 강화 26 내용심사 52 * 비중요 62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안전기준고시 제정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제정안,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 제정안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안전·품질표시 대상 14개 품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 (내용심사)

-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표시 기준을 규정한 내용으로 업계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큰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자율안전확인 대상 47개 품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 (내용심사)

-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의 제품검사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업계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큰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안전·품질표시 대상 14개 품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 (내용심사)

-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표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업계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큰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2)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운영요령 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안전인증 대상 18개 품목에 대한 공장심사 기준을 업계 의견수렴('06.11.22~12.10),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07.2.2) 등을 거쳐 정함 (내용심사)
 - 자체검사 기준 : 원자재의 적합성, 생산 공정의 구조적 안전성, 출하전 제품검사 등 3개 분야의 자체검사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
 - 제조설비 기준 :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심사
 - 검사설비 기준 : 안전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심사
-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의 공장심사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업계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큰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3)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의 굴착공사시 굴착자가 공사전에 굴착공사 원콜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함(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에 의해 행하는 공사, 농지경작을 위해 행하는 깊이 450mm미만의 공사 등은 제외) (강화)
 - 굴착공사 원콜센터로부터 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굴착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조치 전에 굴착공사를 금지하며, 굴착공사 원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
- ☞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제도의 처리절차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동 제도의 준수율을 높이고 타공사로 인한 도시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제도 도입은 타당하나, 하위법령 개정시 도시가스사고 개연성이 낮은 소규모 굴착공사 등 적용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스배관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며 협의서 작성대상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하여 관련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한 자료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은 통보된 지정대상기술에 대해 중복성, 선정기준의 적합성·타당성 등에 대해 산업기술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내용심사)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의 구체적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큰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국가핵심기술 등 관련기술에 대한 적정등급 부여 및 별도 보관·관리,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보안관리규정 제정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나열(내용심사)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에서 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기술 보안을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각계약서, 매입자에 관한 사항, 기술의 용도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료제출하여야 함 (내용심사)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고 등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현지조사, 우편조사, 통계·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별도로 실시 가능 (내용심사)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실태조사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제도가 의원 입법으로 도입(07.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신고절차를 규정 (신설 1)
 - 사업자들의 지위승계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들의 지위승계신고서에는 허가필증·신고필증 또는 등록필증과 계약서 사본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서류만을 첨부·신고토록 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부적격자에게 사업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 원안의결
- 법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 사고의 통보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사에 해당사고에 대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가스시설손괴·가스누출사고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고”를 “사업자들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 구체화 (내용심사)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고의 통보 대상 및 통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수와 규제로 야기되는 비용이 크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피규제자는 고압가스 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고압가스 판매자, 운반자,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등으로 약 12,022개 업체로 피규제자수가 100만명 이하이며, 보고로 인하여 야기되는 비용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석유제품 등의 판매제한과 관련하여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 등을 보관 또는 공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기 위해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 설치하여 등록된 주유소는 비상표제품 판매에 대해 표시해야 하며,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자가 소유시설을 이용하여 건설기계로 소요되는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내 건설기계로 연료 공급 허용 (강화)
 - ☞ 석유제품 판매행위 제한이나 건설공사 사업장내 연료 공급 허용은 각각 부정유통 행위 방지와 원활한 연료공급을 위한 것으로 원안에 동의하나, 주유소에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시·군·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규제 및 위반처벌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위반행위 적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모순을 해소할 것을 개선권고
- 등록된 시설의 규모에 주유소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며, 공급자에 관한 사항은 매월 석유제품·공급자별 입하량 등에 대한 거래상황 보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변경등록대상에서 제외 (내용심사)
 - ☞ 주유소 등록요건인 시설의 구분설치기준 변동에 따라 적정한 등록관리와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경등록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바이오디젤연료유, 알코올 연료유, 유화연료유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용보급 확대의 필요가 인정되는 석유대체연료를 추가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내용심사)
 - ☞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개념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혼합사용석유제품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원안의결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에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내용심사)
 - ☞ 법 개정으로 신설된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 개정안 (강화 2,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 여부를 시험기관의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신고하도록 하며, 대상제품의 신고 및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시 경고표지 표시 의무화 (강화)
 - ☞ 대기전력저감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제조업체간 대기전력저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전력저감 목표를 부여하고 유도할 필요성은 인정하며,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 제품의 대기전력저감기준 적합여부의 신고의무와 대기전력저감 기준 미달시 경고표지 표시 의무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에너지 사용자가 해당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제3자에게 폐열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우선 협의하여야 함 (강화)
 -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 공급시 집단 에너지사업자와의 우선협의의무를 지우는 것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규정대상 법령에 대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2009. 6.30일까지로 존속기한이 한정된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 (내용심사)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수정·보완 없이 동 계획의 제출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존속기한의 삭제에는 동의하나, 민간기업에 대한 동 의무의 부과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 제출의무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것을 개선권고

(8)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4,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행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전기관리업무 대행자의 거부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에 300만원이하에서 200만원으로 명확화 (내용심사)

☞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법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과도하지 않은 제재로서 원안의결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의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및 콜라텍 시설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강화)

☞ 점검주기가 2년인 휴게·일반 음식점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부적합률(4.4%)이 동일 점검주기의 타업종(초·중등 교육시설: 0.4%)보다 높은 등 점검주기의 단축이 필요하며,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전기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통보의무가 있는 중대한 감전사고의 기준을 사망 3인 이상 또는 부상 5명이상에서 사망 2명이상 또는 부상 3명이상으로 하향 조정 (강화)

☞ 사고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전사고에 대한 원인·경위 등의 조사가 필요

하며, 통보 및 조사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시 이를 공고하도록 함 (강화)

☞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의 요건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적절하여 원안의결

○ 전기설비(설비의 용량, 수전전압) 및 소유자·점유자(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동시 신고하도록 함 (내용심사)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변동시 신고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기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 수준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가스터빈 발전소 및 복합화력발전소의 조속기 교체를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추가 (강화)

☞ 산업자원부 자체규제심사 위원회에서 철회 권고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에서 규제개혁 위원회에 재상정한 건으로 부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철회권고

○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분화된 전기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정함 (내용심사)

☞ 법 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전기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9)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에 공기청정기와 삼상유도전동기를 추가하여 현행 17개 품목에서 19개 품목으로 확대 (강화)

- ☞ 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품목을 확대(공기청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추가)하는 것은 생산자에게 제약을 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수차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완료하는 등 규제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법률에 특허신탁관리업을 도입하며,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 요건 및 절차, 특허신탁관리기관의 수수료율에 대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 산업자원부장관의 특허신탁 계속한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음 (신설)

- ☞ 제도의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특허의 집중관리를 통한 기술이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충분한 인력과 조직 및 전문성을 갖춘 일부 기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특허신탁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11)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겸업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핵심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는 최소금액요건을 “납입자본금 X 전체 투자자산 중 구조조정에 투자한 자산비율 또는 70억 중 큰 금액”의 20%로 함 (강화)

- ☞ 기존안의 경우, 전년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없는 경우, 의무 투자한도가 “0”이 되는 법령의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겸업사의 경우에도 최소한 순수사의 핵심업무 이행금액만큼은 핵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한도설정으로 적절하여 원안의결

- 전문회사의 임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에 ①임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와 ②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를 정함 (내용심사)

- ☞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구체적 종류를 정하는 내용이며, 법에서 예시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이외에 주의 요구,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양한 제재를 규정하여 위법행위에 경중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인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사채발행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음 (내용심사)

- ☞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경우는 자본잠식이 상당히 진전되어 해당 회사에 정상적인 투자활동이나 출자자를 보호할 여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전문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투자능력을 제고하고 파산 등으로부터 출자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회사에 대해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12)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승강기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고장을 승강기가 운행중인 상태에서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신설)
 -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고장인지시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발생장소, 고장 발생일시, 승강기에 갇힌 인원, 구출기관, 고장내용 및 응급조치를 관리원의 원장에게 통보토록 함
- ☞ 운행 중인 상태에서 이용자가 갇히는 경우 외에 승강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등의 고장유형을 보고대상인 중대한 고장에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1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자율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기관의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 이를 안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를 하도록 함 (신설)

☞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확인,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기관과 신고수리기관이 중복되는 문제는 산업자원부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피규제자의 이중적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개정안에서 신고수리권자를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수정토록 개선권고

○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대하여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성조사 실시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판매·대여·개선·수거를 권고하고 권고만으로 위해의 방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권고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신설)

☞ 소비자 안전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제조·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판매·대여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령'하고, '명령'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개정문안을 조정하도록 개선권고

○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을 LCD가 부착된 게임기구에까지 확대 (강화)

☞ 150여개의 게임기 제조업체가 규제대상으로 피규제자의 수가 많지 아니하며, 또한 게임기구의 주종이 브라운관형에서 LCD형으로 변화함에 따른 규제내용의 변경으로 원안의결

(1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첨단업종의 범위를 기존의 110개 업종을 96개 업종으로 재조정하고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변경된 내용을 '08.1.1부터 시행하도록 함 (내용심사)

☞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첨단업종을 재조정하여 미래선도 산업을 발굴·지원할 정책적

-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개선권고
- 첨단업종으로 추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여 관련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토록 함
- 금번 개정으로 첨단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 신뢰 보호를 위해, 공장의 신설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금지토록 하고, 공장의 증설은 공포후 1년 후부터 금지토록 개선권고함

(15)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산업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관련자료 제출, 보고 및 관계서류나 시설 등의 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방사성폐기물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에 인도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하고, 방사성폐기물발생자가 이 법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폐물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조치명령을 받게 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신설)

☞ 원자력법, 전기사업법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련 조항을 단일법 체계로 정비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동 규제의 대상인 폐기물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원전연구소, 원전연료주식회사,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병원 및 산업체 등 3,200여개 기관으로서 피규제자가 100만명 미만인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강화 7)

■ 심사내용

- 법률에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승강기 안전부품 및 포장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며, 안전인증 표시없는 승강기 안전부품 사용 금지 대상에 설치공사업자 추가하고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을 받은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이외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강화)

☞ 정기검사제도의 신속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검사의 주기는 3년 이내로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필요시에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도록 개선권고하며, 안전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인증표시의 임의변경, 제거의 금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안전부품이외에 포장에 경우 별도로 안전인증표시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승강기안전인증포장의 안전인증표시의 임의 변경·제거를 금지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월1회의 자체점검이외에 매일 또는 주간단위로 승강기 일상점검 실시하도록 하고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선임·교체시 지체없이 산업자원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 부과 (강화)

☞ 이미 월 1회이상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매일 또는 주간 단위의 승강기 일상점검을 추가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형식적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승강기관리주체의 일상 또는 주간점검 부분의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해당보수업체의 기술인력으로 시·도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인력(이하 미등록 기술인력)을 승강기 보수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자체점검 기록의 허위 작성, 미등록 기술인력의 승강기 보수 직접참여를 보수업체의 등록 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영업 정지 사유로 정함 (강화)

☞ “미등록기술인력에 대한 보수 직접참여 금지” 대신에 “법령에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력의 보수 직접참여를 금지” 하도록 하고, 보수의 “직접” 참여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법령에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운행정지사유에 정기검사의 최고를 받고도 정기검사에 불응한 경우 추가하며, 검사 불합격에 대한 검사불합격표지를 교부하여 이를 승강기 외부에 부착하도록 하고 검사불합격 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승강기에 부착된 검사불합격 표지를 임의로 제거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화)

☞ 총 3개의 검사기관 및 약 12만개의 승강기 관리주체가 대상으로서 피규제자가 100만명 미만이며, 피규제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인 “검사불합격

필증의 승강기 부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연 3회이상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를 특별관리 승강기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시·도지사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 (강화)

☞ 피규제자는 약 12만명의 승강기 관리주체로 100만명이하이며, 연간 3회 이상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추가 지정시 관리주체에 추가되는 비용은 약 9억원으로 추산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한국승강기안전원은 승강기 관리주체, 보수업자, 검사기관, 교육기관 등에게 승강기 종합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입력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정보를 필요시 공개할 수 있음 (강화)

* 종합전산망 관리 정보 : 운행관리자 현황, 중대한 사고 및 고장현황, 자체점검현황, 보수업 등록현황, 검사현황, 교육현황

☞ 승강기 관련 종합전산망에서 종합관리하는 정보 중, 운행관리자 현황, 중대한 사고 및 고장현황, 교육현황 이외의 정보를 삭제하고, 필요시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보수업자, 검사 및 자체점검 실시자,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승강기 교육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화)

☞ 피규제자는 약 7,000여명의 승강기 보수 및 안전인증 업무 종사자, 검사자와 자체 점검자로서 100만명이하이며, 총 추가 비용은 4억원으로 추산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의 대상 및 실시시기, 기준을 구체화 (내용심사)

- ☞ 피규제자수와 규제로 야기되는 비용이 크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피규제자는 SK가스(주)(평택기지, 인천물류센터, 제주물류센터, 군산물류센터), (주)E1(여수기지), S-Oil(주)(인천저유소)로 3개 업체이며, 예상되는 비용은 연간 1억 2천만원임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가스시설의 누출 또는 손괴사고”를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와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 구분하여 피규제대상을 구분하여 정함 (내용심사)

- ☞ 피규제자는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 저장능력 250kg을 초과하는 특정사용자 등으로 3만여 사업자이며, 보고로 인한 규제비용은 크지 아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18)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되는 매트리스에 팜목, 천연섬유, 합성섬유(견면) 등의 섬유 매트리스와 플라스틱제 스프링 등의 스프링 매트리스 추가하고, 마킹펜류의 제품마다 ‘질식방지’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하도록 하며, 찰흙의 중금속 기준치를 강화하고 어린이 중독 및 질식 방지를 위하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안전요건 추가하고 가조세 함유 찰흙에 경고문구 표시하도록 추가 (강화)

- ☞ 피규제자가 1백여개의 업체에 지나지 않고, 또한 연간 규제로 인한 비용이 1천만원 미만인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 도시가스제조사업소를 추가하고, 도시가스 제조사업소의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방법, 진단 기준을 정하며, 안전성평가의 대상을 도시가스제조 사업소로 구체화하고 도시가스 제조사업소의 안전성평가 시기 및 방법, 평가 기준을 정함 (내용심사)

☞ 피규제자는 한국가스공사(평택인수기지, 인천인수기지, 통영인수기지), 포스코(주)(광양인수기지)로 2개업체이며, 예상되는 비용은 연간 2억 2천만원으로 피규제자수와 규제로 야기되는 비용이 크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하는 사고를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가스용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 구체화 (내용심사)

☞ 피규제자는 한국가스공사(평택인수기지, 인천인수기지, 통영인수기지), 포스코(주)(광양인수기지)로 2개업체이며, 보고로 인한 규제비용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원안의결

○ 가스공급량 측정시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온압)보정 계수를 적용하고,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내용심사)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내용이며, 피규제자는 34개의 도시가스 사업자(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와 33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도시가스공급권역 조정이 필요한 기간 및 면적의 변동기준 설정 (내용심사)

- 사업허가 후 20년이 경과하고, 기존 공급권역의 15/100이상의 면적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정함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내용이며, 피규제자는 33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20)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탐사권존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간만료 3개월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토록 하며 탐사권 존속기간을 3개월 이하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내용심사)
 - ☞ 현재 탐사권자는 석유공사와 호주의 우드사이드사로 2개회사이며, 규제의 내용 또한 탐사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을 정하는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탐사권자가 경제성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경우 보고해야 할 사항과 해저조광권자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보고 종류 및 그 대상을 구체화 (내용심사)
 - ☞ 피규제대상인 탐사권자 및 해저조광권자가 석유공사와 호주의 우드사이드사로 2개 회사이며, 보고의무로 인한 비용도 크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기간을 정하고, 원상회복의 결과를 산업자원부령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내용심사)
 - ☞ 피규제대상인 해저조광권자가 석유공사와 호주의 우드사이드사로 2개회사이며, 법률에 신설된 조광권자의 원상회복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2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12)

■ 심사내용

-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에 대한 해당 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어린이놀이기구 중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대상을 규정 (내용심사)
 -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은 이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로 인하여 피규제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규정 (내용심사)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는 소수의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의 실시 및 정기검사 면제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내용심사)

☞ 어린이 놀이시설 제조설비 등의 정기검사는 이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로 인하여 피규제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기준(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함 (내용심사)

☞ 어린이 놀이시설 제조업자는 140여개의 업체이며, 자체검사 및 그 기록의 작성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통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고는 보기 힘들어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놀이기구의 안전검사와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세부항목별 수수료는 고시로 위임 (내용심사)

☞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장출고 전, 수입통관 전에 안전검사 표시를 하고, 수입한 놀이기구가 안전검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표시를 판매 전에 부착하여야 함 (내용심사)

☞ 어린이 놀이시설 제조업자·수입업자는 200여개의 업체이며, 생산공정의 일부에 안전검사의 표시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크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배치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된 안전검사 또는 안전 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 목록,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를 첨부하여 안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내용심사)
 - ☞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자는 통상 놀이시설의 제조업자·수입업자로서 200여업체이며, 이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은 연간 27억원으로 추산되어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미실시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용심사)
 - ☞ 2주에 한번마다 시설물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산업자원부 예상)되는 어린이 놀이시설 진단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이법의 적용을 받을(타법에 우선적용) 시설물의 현 규정내용을 참고해 볼 때 과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를 월 1회로 완화하도록 개선권고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 기간 및 주기를 규정하고 안전교육의무 위반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 (내용심사)
 - ☞ 안전교육대상자는 3만 여명으로, 총 비용은 6억원으로 추산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공제)으로 정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도록 함 (내용심사)
 - ☞ 놀이시설의 총수는 6만8천여개로 추산되며, 병원·백화점 및 일부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자발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법령에 의한 보험의 추가 가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57여억원으로 추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사망사고,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사고, 3인 이상의 어린이

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고를 중대한 사고로 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시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내용심사)

☞ 놀이시설의 총수는 6만 8천여개로 추산되며, 중대한 사고의 통보는 통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고는 보기 힘들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조업자·수입업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 및 제출 시기를 정함 (내용심사)

☞ 어린이 놀이시설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200여 사업자로, 관리주체는 3만4천여개로 추산되며, 자료의 제출은 통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고는 보기 힘들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22) 승강기검사기준고시 개정안 (강화 3)

■ 심사내용

○ 간힘 사고 발생시 조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승강기가 정지하지 않고 있지 않은 층에서 승강로의 출입문을 열수 있는 특수한 키의 규격을 통일화 (강화)

☞ 연간 약 2만여대의 승강기가 규제대상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비용도 13억여원으로, 비용부담이 크지 아니하며,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승강기 문은 45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했을 때 문의 이탈없이 견디어야 하며, 문의 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이드 슈에 대한 현장 설치상태 검사 실시 (강화)

☞ 연간 약 2만여대의 승강기가 규제대상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비용도 약 13억여원으로, 비용부담이 크지 아니하며,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97.1.1이전 건축허가 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틈새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97.1.1 이후 건축허가분의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련 안전기준(승강기 탑승공간 문턱으로부터 승강로 벽면까지의 수평거리가 125mm를 초과하는 경우, 보호면을 설치하여야 함)의 적용 (강화)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틈새 추락사고로 연평균 2명이 사망하고 있어, '97년 이전에 설치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보호판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감리업자는 감리원을 1개월이상의 입원·부상을 사유로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시킨 경우, 그 감리원을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능력 평가(PQ) 참여 및 다른 현장 배치 금지 (강화)

☞ 법 적용대상인 전기감리업체 수는 927개 업체이며, 감리원의 수는 10,795명으로 피규제대상의 수가 많지 아니하며, 우수 감리원을 사업수행능력평가시에만 참여시키는 입찰질서문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 설계업간 또는 감리업간 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변경신고를 하도록 제출서류를 정하고, 신고 이후 업체는 변경 전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영위기간 및 용역실적을 합산 (내용심사)

☞ 법 적용대상인 전기감리업체 수는 927개 업체이며, 감리원의 수는 10,795명으로 피규제대상의 수가 많지 아니하며, 업종변경이 기존에는 신규등록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가능하였으나, 해당조문 신설로 등록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해져 절차가 간소화 되어 원안의결

(2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관리기관에 대한 산업용지 등의 재양도의 근거를 규정하고 유관기관과 관리기관 모두 재양도시 이자율 산정을 생산자물가증가율(약 2.5%)에서 3년 만기 국고채유통 수익률에 가산금리(1%)를 합산한 이자율(약 6%)로 조정 (내용심사)

☞ 관리기관이 환수한 토지의 재양도 근거를 명백히 하는 내용이며, 또한 환수한 토지의 재양도가액을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의 실질비용부담에 맞게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25)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 기술자 인정등급을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제한하고, 특급전기공사 기술자를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 제한하며, 새롭게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거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성훈련을 받도록 함 (강화)

☞ 전체 전기공사기술자는 8만여명이며, 기술사의 체계적 양성과 활용을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학·경력기술자 인정기준 및 특급 기술자 인정 기준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2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현행 전자거래기본법 규정에 의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보험가입의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의 변경신고의무, 영업양도·합병·영업폐지 통지의무 등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내용심사)

☞ 피규제자는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 LG CNS 등 2개업체이며, 해당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조건·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구체적인 안전성

점검기준은 산업자원부고시에 정하도록 함 (내용심사)

☞ 피규제자는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 LG CNS 등 2개업체이며, 해당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27)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안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하는 자는 밀폐운송 등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관리·운영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내용심사)

☞ 관련 피규제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를 요청한 6개의 개발사,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개발 중인 32개의 국내대학 및 사료업체 등의 300여개 관련업체로서 총 400개 내로 파악되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 이동등에관한법령이 제정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 등을 동 고시에서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등급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고, 밀폐운송 등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관리·운영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내용심사)

☞ 법령의 위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위해성 평가기관 및 위해성 심사대행기관은 서류제출 등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함 (내용심사)

☞ 위해성 평가기관은 농림부는 6개소, 산업자원부에 1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은 법 시행이후 소수의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위해성 심사를 대행하는 기관은 국가기관으로 지정 예정으로서 소수의 피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이며, 또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법률에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의 요건 및 허가대상 열생산시설의 대상기준을 구체화 (강화)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열생산시설 신설·개설·증설에 대한 허가의 요건으로서 “열생산시설을 신설, 개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정당한 사유” 등은 그 표현이 모호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에 반하므로, 허가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절차, 부과내역의 제출 등에 관해서 “공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집단에너지 사업법 시행령으로 새로이 규정 (내용심사)

☞ 기존의 공급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한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공급대상지역 지정신청 방법, 산업자원부장관의 신청결과 통지기한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 (내용심사)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사업허가의 신청절차, 방법을 정한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29)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가격표시판의 최대크기를 제한하고 가격표시판 조명에 내온·전광 또는 점멸 및 가격정보 이외의 표시를 금지하는 등 주유소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및 표시내용에 대한 규제를 변경하고, 매출전표에 정상가격의 단가 및 수량 표시의무화하며, 가격표시판 설치·관리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기능 부여 (강화)

☞ 할인가격 표시시 정상가격과의 이격거리, 가격표시판의 최대 크기, 가격표시판 조명 방법까지 일률적으로 고시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어 관련내용 삭제를 권고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행시 매출전표에 정상 가격의 단가 및 수량 표시하도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동고시에 매출전표의 표시방법까지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삭제를 권고하며, 가격표시판 설치·관리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가격표시의무자는 (시·군·구청장과의) 협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표현은 고시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문구를 조정하도록 개선권고

(30)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성능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바이오디젤(BD100) 품질기준을 ‘수분’ 및 ‘고형불순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총 글리세린’을 ‘총 글리세롤’로 변경하고, ‘모노글리세라이드’, ‘디글리세라이드’, ‘트리글리세라이드’, ‘유리글리세롤’ 항목으로 세분화하며, 유화연료유의 수분기준을 ‘30.0 부피%이하’로 변경하고 유화연료유의 품질기준 항목에 ‘인화점(℃)’을 ‘60 이상’으로 신설 (내용심사)

☞ 바이오디젤 제조업체, 자동차사 및 제작사,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습식법에 의한 유화연료유의 저장안정성 평가방법을 구체화 (내용심사)

- ☞ 유화연료유 개발자에게 기존의 평가방법의 정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내용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31)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정안 (내용심사)

■ 심사내용

- 놀이시설 이용 안전수칙, 놀이터 설치 시 준수사항 등 일반적인 준수사항 등과 어린이 놀이기구별 설치시 안전요건을 정함 (내용심사)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2. 중소기업청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대중소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건, 강화 3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7건 중 7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2. 22)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3. 2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 비중요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7. 5. 30)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 비중요 2
대중소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7. 26)	원안의결 2	신설 2 *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7	신설 3 강화 3 내용심사 1 * 비중요 7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창투사가 차입 또는 자산매각 등을 통해 투자한 업체로부터 자금을 수수하는 거래 행위를 창투사의 행위제한에 추가(강화)

☞ 창투사가 투자업체와 거래를 통해 창투사에 자금이 유입되는 부당 행위를 방지하여 창투사에게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창투사의 공통적인 투자행위 제한 의무로 창투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으며, 피규제자가 104개 창업투자회사와 350개 투자조합으로 많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 업무집행조합원이 차입 또는 자산매각 등을 통해 투자한 업체로부터 자금을 수수하는 거래행위를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거래행위 제한에 추가 (강화)

☞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업체의 거래를 통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자금이 유입되는 부당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공통적인 거래제한 행위로서 경쟁제한적 행위가 아니며 피규제자가 104개 창업투자회사와 18개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많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대학·연구소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등록요건 및 행위 제한을 세부적으로 규정 (신설)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행위를 허용하면서 등록 및 지정 요건을 정하고 일부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신기술 창업활성화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 및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도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1)

○ 대차대조표상 '대출채권' 중 일반대출과 차이가 없는 계정은 원칙적으로 출연기준 대출금에 포함하고, 일시적 경과계정이거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출연금기준 대출금에서 제외 (내용심사)

☞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 및 재단연합회에 출연하여야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07.3.15 규개위 심사)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 각 금융기관에 출연과 관련하여 재단연합회 회장이 정하는 증빙서류와 출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강화)

☞ 금융기관에 출연관련 증빙서류 및 출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출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금융기관에 한정되고, 또한, 규제 당사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 물품 등의 수령 후 60일을 초과하여 어음대체제도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지연이자 및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함 (신설)

☞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연이자 및 할인료 지급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시행규칙에서 교육명령대상기업의 기준을 정함 (신설)

-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의 동일한 조사 또는 동일한 분쟁조정 사항에서 부과되는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 벌점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명령대상 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제4절 건설교통 분야

건설분야 집필자 : 강미나 전문위원(Tel. 2100-2465, mmkang@opc.go.kr)

이정기 서기관(Tel. 2100-2467, hansan@opc.go.kr)

교통분야 집필자 : 김명신 사무관(Tel. 2100-2466, @opc.go.kr)

1.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주택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 4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24건, 강화 87건, 내용심사 7건 등 총 21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건 중 13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40건은 개선권고하고, 16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건설교통부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116건임

< 건설교통분야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315차 경제분과 (2007. 1.11)	철회권고 1 개선권고 3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7 *중요 9, 비중요 1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제316차 경제분과 (2007. 1.11)	원안의결 3	신설 3 *중요 2, 비중요 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17차 경제분과 (2007. 2. 8)	철회권고 1 원안의결 2	강화 3 *중요 2, 비중요 1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안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안	제317차 경제분과 (2007. 2. 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17차 경제분과 (2007. 2. 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18차 경제분과 (2007. 2.2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3 *중요 1, 비중요 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19차 경제1분과 (2007. 3. 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20차 경제1분과 (2007. 3.15)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신설 2, 강화 1 *중요 3
부도공공건설임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제322차 경제1분과 (2007. 3.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22차 경제1분과 (2007. 3.2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324차 경제1분과 (2007. 4.19)	철회권고 2 개선권고 3 원안의결 3	신설 7, 강화 1 *중요 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24차 경제1분과 (2007. 4.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측량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25차 경제1분과 (2007. 5. 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3 *중요 1, 비중요 6
외국인토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25차 경제1분과 (2007. 5. 3)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325차 경제1분과 (2007. 5. 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326차 경제1분과 (2007. 5.17)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4 *중요 3, 비중요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27차 경제1분과 (2007. 5.31)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27차 경제1분과 (2007. 5.31)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 1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28차 경제1분과 (2007. 6.14)	원안의결 4	신설 4 *중요 3, 비중요 1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328차 경제1분과 (2007. 6.14)	철회권고 1 개선권고 3 원안의결 16	신설 16, 강화 4 *중요 12, 비중요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29차 경제1분과 (2007. 6.2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7	신설 1, 강화 8 *중요 4, 비중요 5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제329차 경제1분과 (2007. 6.2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331차 경제1분과 (2007. 7. 5)	개선권고 2 원안의결 9	신설 4, 강화 7 *중요 2, 비중요 9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31차 경제1분과 (2007. 7. 5)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31차 경제1분과 (2007. 7. 5)	개선권고 2 원안의결 5	신설 6, 강화 1 *중요 2, 비중요 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부동산개발법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334차 경제분과 (2007. 8.30)	개선권고 4 원안의결 8	신설 12 *중요 6, 비중요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335차 경제분과 (2007. 9.20)	개선권고 2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3 *중요 2, 비중요 4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35차 경제분과 (2007. 9.20)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강화 1 *중요 2, 비중요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336차 경제분과 (2007.10. 4)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37차 경제분과 (2007.10.18)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중요 1, 비중요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338차 경제분과 (2007.11. 1)	철회권고 4 개선권고 1 원안의결 8	신설 6, 강화 7 *중요 5, 비중요 8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28차 경제분과 (2007.11. 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40차 경제분과 (2007.11.22)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340차 경제분과 (2007.11.22)	개선권고 5 원안의결 4	신설 4, 강화 5 *중요 5, 비중요 4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 법률 제정안	제341차 경제분과 (2007. 12.10)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4 *중요 2, 비중요 2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42차 경제분과 (2007.12.20)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신설 1, 강화 2 *중요 2, 비중요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42차 경제분과 (2007.12.2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8.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9.1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도시철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9.2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11.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5	신설 5, 강화 1 *중요 1, 비중요 5
용산공원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7.11.15)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11.27)	원안의결 12	신설 6, 강화 6 *비중요 12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12. 5)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7.12.13)	원안의결 3	강화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12.20)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7.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12.30)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2.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7)

■ 심사내용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제출서류를 보완하여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을 첨부하도록 함(강화)
 - ☞ 리모델링사업에서도 조합설립단계에서 개략적인 설계개요와 총비용, 비용분담 등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도록 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의결
-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변경사항의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의 신고를 의무화(강화)
 - ☞ 자치단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보다 책임있게 수행하고 관련 분쟁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초구성뿐 아니라 변경내용도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공동주택의 주택관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탁관리의 경우와 같이 자치관리의 경우에도 주택관리사 등의 결원 발생시 15일 이내에 배치하도록 의무화(강화)

- ☞ 주택관리사의 결원 보충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5일 이내의 충원기간을 30일 이내로 개선권고
- 공동주택 관리현황(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등)을 관리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강화)
 - ☞ 시행령 56조의 관리비부과내역은 세대별 부과내역과 단지 전체에 부과된 금액을 세대별로 배분한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중 세대별 부과내역은 공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권고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부품 등의 내구연한에 따라 1~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기술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 추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강화)
 - ☞ 공동주택 하자과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유치원 시설의 용도변경을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제한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출산율 제고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함(강화)
 - ☞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지규모가 1천 세대에서 2천세대로 완화되고 단순신고로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2천세대 미만단지에서는 용도변경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해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육시설확충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유치원 용도변경시 보육시설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원안의결
- 주택관리사보의 선발방식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주택 관리사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을 조정(강화)
 - ☞ 시험과목의 조정은 원안의결하나 선발방식에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것은 철회권고
-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수선·파손 등 소음유발행위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시 공사기간,

방법, 예상소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받도록 함(강화)

☞ 발생예상소음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행위허가 신청시 동의서에 소음유발행위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공사기간과 공사방법을 기재(발생예상소음 정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보완하여 공용부위를 체계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자재와 공법 변화에 따라 수선공종,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등을 변경, 추가 또는 세분화 함(강화)

☞ 건설기술발달과 자재, 공법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유용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립기준을 보완하였으므로 원안의결

○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 입주현황을 통보하고 자치관리나 위탁관리방식에 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나, 단지 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아닌 각 동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음을 통지하도록 개정(강화)

☞ 입주현황 통지는 신규입주단지의 사업주체에 대한 의무사항으로서 연간 신규입주단지(의무관리)가 약 560개임을 고려할 때 과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2)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신설 3)

■ 심사내용

○ 제작자는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고, 자기인증한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점검 및 정비를 위한 기술지도나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신설)

☞ 자동차 판매가 연간 1백만대 이상으로 소비자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자 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지정정비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신설)
 - ☞ 규제 대상인 지정정비사업자가 '06.11현재 1,776개에 불과하고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그 사업장에서 본인,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재지정 받을 수 없도록 함 (신설)
 - ☞ 지정취소에 책임있는 지정정비사업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정비사업자의 재지정 제한 제도는 도입하되, 도입 효과와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동 제도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외부소음 저감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6층이상 부분은 외부소음에 대응한 실내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내소음기준(45db이하)”을 도입하고 도로변에서 50미터 이격하여 건설토록 한 규정은 삭제(강화)
 - ☞ 소음관련 기준을 전체층에 대해 적용토록 하거나(65dB 미만) 또는 6층 이상의 경우 실내소음이 45dB 이하일 것으로 정한 개정안에 원안의결
- 주택성능등급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규모를 “에너지성능등급”에 대하여는 1,000이상 주택에서 500세대이상 주택으로 강화하고 주택성능등급 표시분야에 “지능형 주택성능 등급”을 추가(강화)
 - ☞ 소비자들에게 지능형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성은 있으나 소음, 화재, 소방 등이 안전하고 정온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반면 지능형은 편리성을

위한 부가적 서비스로서 성능등급에 포함시킬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성능등급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한데 이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고 정부의 기준이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택성능등급 대상에 '지능형'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는 철회권고

○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도록 강화 (현재는 16층이상)(강화)

☞ 건축법(제57조제2항) 개정으로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이 31m초과로 변경된 사항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의 일관성 있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4)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안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안(신설 2)

■ 심사내용

○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의 유지 관리 여부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하며, 인증기준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심사자료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에 있어 인증취소 가능(신설)

☞ 인증 건축물은 홍보 및 분양가 상한제 예외 등의 혜택이 있음을 감안하여 유효기간(5년) 동안 인증기준을 충실히 유지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공동고시로 규정(신설)

☞ 인증제도는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인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급확대를 위해 건설물량이 많거나 파급효과가 높은 공동주택, 학교 건축물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5)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강화)

☞ 대형 자동차의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취지를 감안할 때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한 처분 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6)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부도 등”을 발생시킨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5년동안 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제한(신설)

☞ “부도 등”으로 간주하는 용자금 연체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한 것과 일정기간의 재등록 제한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부도는 사업자의 불가피한 경제적 사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고의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도 등의 발생사실이 없는 자」를 「부도 발생사실이 없는 자」로 수정하여 연체사업자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권고

○ 임대주택의 매각요건을 강화하여 임대 의무기간 전에 「경제적 사정」에 의해 매각허가 신청시 재무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강화)

☞ 임대주택 사업자수가 약 37천명이며, 서류제출에 따른 절차적 측면 외에 추가 비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법률에서 실질적인 관리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수하도록 지자체 장에게 부도임대주택 매입 허가권을 부여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 요건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신설)

☞ 「부도임대주택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전국 316개('06년 기준)로서 부도임대주택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임대주택은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근무·생업 등을 위하여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양도의 요건(근무·생업·질병치료 등)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거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토록 의무화(신설)

☞ 근무·질병치료로 타 시군구로 퇴거하고자하는 임차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증명서 제출시 행정적·절차적 비용 외에 추가비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부도 임대주택 등의 실태조사시 자료협조를 의무화 함 (신설)

☞ 「부도임대주택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전국 316개('06년 기준)이고, 열거된 자료들은 사업장의 기본현황 자료로서 제출에 따른 행정적·절차적 측면 외의 추가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법률에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설립신고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설립방법, 신고내용, 신고사유 등 설립신고내용을 규정(신설)

☞ 임차인 대표회의 설립 신고 시의 기재사항을 동법 위임을 받아 구체화한 사항으로, 절차적 측면 외의 규제 비용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2 이상의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사업자단체(협회·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을 마련(신설)

☞ 차고지 설치를 위한 기본목적(주차)을 갖추고 이용자의 안전요건과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차고지 설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나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일반인이 그 해당사항을 알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함(신설)

☞ 견본주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공급가격외에 정보제공 사유도 표시하도록 개선권고하고,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한 경우 발코니부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의 외벽이 내화구조·불연재료로 설치되거나, 도로·공원·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여 건설하는 경우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격하도록 완화(신설)

☞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경우 목조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5m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의결

○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제도 적용시한을 2012.4.18까지 연장(강화)

☞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안에서의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07년 9월부터 시행예정인 청약가점제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 규제 존속기한을 2010.4.18일까지로 하되 동 기한 이전에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개선권고

(9) 부도 공공건설임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 매입시 3년의 의무임대기간 부여(신설)

- ☞ 제3자 매입 시 임차인은 법원배당금만 받게 되어 임대보증금 전액이 보호되지 못하고 기존의 채권채무관계 소멸로 임차인의 주거보장도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동 법의 취지에 비추어 제3자보다는 매입사업시행자가 경락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10)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경매실·사무실·성능점검 검사 시설 이외에 성능·상태점검 책임자 및 점검원 등 성능점검자도 확보하도록 함(강화)

- ☞ '07.1월 현재 전국의 경매장은 4곳이며, 인력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개 경매장당 8천만원(책임자 1인, 점검원 1인 인건비)에 불과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폐차업자가 압축·파쇄하여야 할 자동차 장치에 현행 조향기어기구,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이외에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추가 (강화)

- ☞ 자동차를 폐차(해체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시설과 인력으로 차대번호의 압축·파쇄 등이 가능하여 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비용은 그리 크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신설 7, 강화 1)

■ 심사내용

○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는 최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강화)

- ☞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관리 및 궁극적으로는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로서 등급지정근거를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등록분야 또는 보유기술자격여부에 따라 업무범위 구분(신설)
 - ☞ 정밀안전진단은 등록분야별로, 안전점검은 보유기술자별로 실시 가능한 시설물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명확한 업무 구분과 전문화를 위해 바람직하므로 원안의결
-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일괄하도급 제한(신설)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의결
-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진단실시주기를 차등화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관이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의무적으로 지정(신설)
 - ☞ 발주자중심 시장상황에서 실시기관이 발주자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등급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법 제11조의 3)에 부실진단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공정성이 의심되는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를 추가 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의한 등급지정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개선권고
- 한국시설물안전관리공단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제출현황을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 보고해야 함(신설)
 -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은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므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현황을 보고할 필요는 없음. 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 시설안전공단에 대해 자료의 관리의무와 역할 등을 정하도록 개선권고
- 시설물안전관리협회설립시 50인 이상 발기인이 필요하며 정관작성과 총회의결 후

건설교통부장관 인가를 거쳐 설립완료(신설)

☞ 회원간의 교류와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공공성의 획득 및 정부위탁업무(안전진단전문기관 실적확인서 발급업무 등) 수행 등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법정단체로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철회권고

○ 시설물안전관리협회는 공적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부자문요구시 수락하여야 함(신설)

☞ 제도개선이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의 공적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철회권고

○ 시설물 붕괴, 파손 등 사고발생시 관리주체는 응급안전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국가에 통보해야 함(신설)

☞ 시설물 사고발생시 관할 시군구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고원인 규명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 그러나 붕괴는 물론 파손정도에 상관없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파손정도에 따라 보고의무를 달리하도록 개선권고

(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300세대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는 현행 1,000권 이상, 건물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준에 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에도 적합하도록 함(강화)

☞ 현재 문고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권수, 면적에 대한 규정만 있고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도서의 종류(소설류, 잡지류, 전집류 등)에 따른 가격차가 커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격기준을 제시해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13) 측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강화 3)

■ 심사내용

-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함(신설)
 - ☞ 측량업자의 폐업신고기한과 동일한 수준으로서 피규제자 수(19개 대행자) 및 별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측량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상시 근무자일 것,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측량법에 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도록 함(강화)
 - ☞ 제시된 결격사유는 대부분 고의가 전제되어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의 등록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였음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항공촬영업 등록기준에 특급기술자 1인 이상을 추가하고 촬영사 1인 이상은 삭제(강화)
 - ☞ 측량장비의 첨단화·정밀화 등 측량환경의 변화에 따라 항공촬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등록기준 중 단순 기능업무를 담당하는 촬영사 1인을 삭제하여 업체부담을 경감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5만원으로 규정(강화)
 - ☞ 측량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상한 200만원 내에서, 현행 측량법시행령 상에 규정된 타 과태료와의 형평을 고려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측량기능사 중 경력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측량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를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기술 경력증을 발급·갱신·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신설)

☞ 측량기술자 중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측량기능사’의 경력관리를 위한 조치로서, 측량기능사의 수(7,378명)와 경력관리 신고가 임의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측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판매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판매점포 1개소 이상을 소유·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지도판매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함(신설)

☞ 지도판매대행자의 지정요건을 「소유·임대 점포 1개소 이상 운영가능한 자」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판매 의사가 있는 자는 대부분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바,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었다는 점에서 원안의결

○ 측량업자 정보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측량용역실적명세서, 재무제표, 측량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측량장비보유현황표 등을 매년 2월15일(재무제표의 경우에는 4월15일) 까지 측량업정보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신설)

☞ 동 규제사항은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규정한 측량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05년도 규제심사 당시 행정편의적 규정이라는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음.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살려 신고사항은 「전년도 측량용역 실적」으로 한정하고 신고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도록 개선권고. 또한, 추후 측량업체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동법 제44조 제2항 및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

(14)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토록 하되, 첨부 곤란시 그 사본을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따로 제출토록 함(신설)

☞ 전자문서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시, 전자문서로 첨부가 불가능한 증명서류에 대해

제출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건수가 연간 약 5천건에 불과하며, 우편료 외에 별도의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토지취득신고 등을 외국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내보이고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신설)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건수가 연간 약 5천건에 불과하며, 별도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등의 서식에 계약일, 취득금액, 법정지목, 지분 등 기입사항을 추가함(강화)

☞ 토지취득에 관한 인터넷 신고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계획인 바, 동 시스템 상에서의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보험사업자등이 의무보험계약 종료일 30일전과 10일전에 각각 그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 (강화)

☞ 과태료 50만원은 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계약종료일 30일전에 그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금액(50만원)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보험사업자 등은 의무보험 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자료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강화)

- ☞ 보험사업자들은 의무보험 계약 및 해지 자료 등을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현재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 시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16)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3, 강화4)

■ 심사내용

- 소음대책이외에 공항개발사업자 및 공항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항공기 소음 감시를 위한 소음감시측정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강화)

- ☞ 항공기 소음감시 시스템 설치·운영 대상 공항은 모두 5개(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로, 1개 공항당 설치·관리비용은 약 5억원이며, 국제기준(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권고하는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항공기 기술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력장치에 동 장치의 배출물을 추가(강화)
 - * 비행성능, 각종장치의 설계 및 구조, 동력장치 등 8가지 사항을 규정

- ☞ 연 평균 감항증명은 240건 정도이며, 「항공기 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 고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제기준(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소음기준적합증명서가 발급된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규정(신설)

- ☞ 2008년 6월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안전종합 점검에 대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 건설교통부의 의견과 국익을 고려하여 차기 항공법 개정시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 항행안전시설 중 주장치의 교체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강화)

- ☞ 공항시설의 신속한 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경미한 공항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된 이후 큰 문제없이 제도가 운용되어 왔으며 이제 다시 허가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적절한 사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철회권고
- 공항시설 관리자가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금지행위 위반 통지서에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의 진술서 또는 의견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 (신설)
 - ☞ 항공법상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근거 서류를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신설)
 - ☞ 항공법 제1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제기준(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을 충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구체화하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항공안전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한 때로 함 (강화)
 - ☞ 개정안은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바, 고시 역시 항공안전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추가 또는 제외가 가능하여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과도한 위임으로 판단되므로 포괄적 규정은 삭제하고 필요시 시행규칙(별표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를 말한다) 성명을 사무소의 명칭에 표기하거나 사무소의 명칭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의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 이상 크기로 표기하도록 함(신설)

- ☞ 성명표기 의무의 목적이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크기로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옥외광고물 중 성명표기 규제대상은 가로형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현수막에 한하고 성명표기시 글자의 크기는 가로형의 경우 간판의 세로 크기의 15/100이상, 세로형의 경우 간판의 가로 크기의 15/100이상으로 하되 위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개선권고

(1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1)

■ 심사내용

-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행거리계 수리·교체 등의 작업을 하기 전에 변경가능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주행거리계를 변경한 때에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역을 기재하고 증명하는 자료를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와 함께 정비일로부터 1년간 보관(신설)
- ☞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자가 정비 업무를 행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와 기록·관리 및 보존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정비업자의 주행거리계 변경사유 입증자료 확인 및 보관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정비업자가 입증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의뢰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그 입증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동차관리법상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정비업자의 확인 및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철회권고

(1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의 실효성과 공익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토지 확보비율을 20%이상, 민간부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50%이상으로 민간의 사전 토지 확보비율을 정하고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주택건설 등 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 함(신설)

-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체를 공공·민간공동사업까지 확대할 경우 공익성과 실효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토지확보비율 및 참가자격요건을 주택법상 등록요건보다 강화된 시공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 원안의결
- 민간부문(주택건설등사업자)이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신설)
 -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공·민간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구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공공시행자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30% 이상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도록 함(신설)
 - ☞ 공동사업 시행후 공공의 택지확보비율을 최소 30%로 정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로서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원안의결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신설)
 -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항목을 61개로 확대하여 항목별 구성내역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중요정보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원안의결

(2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신설 16, 강화 4)

■ 심사내용

-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택지를

전매하는 주택건설업체는 1년의 영업정지를 처분(신설)

☞ 택지전매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원안의결

○ 조합주택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토지소유권의 80% 이상 확보해야하고, 조합원은 사업 계획서상 건설예정세대수의 5분의4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강화)

☞ 조합설립을 위한 대지소유권 확보기준 강화는 안전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80% 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선권고하고, 조합설립인가시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분의 4 이상은 현행 20인이상 기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과반수이상 구성으로 개선권고

○ 무주택자의 조합주택 조합원 가입조건을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내일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 1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도입하고, 소형주택 소유자의 가입조건을 공시가격 5천만원 미만의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 변경(강화)

☞ 조합주택의 조합원자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자로 하는 것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최소 1년이상인 가구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조합주택용 부지사용을 제한하여 등록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토지에 대해 조합주택 건설대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함(신설)

☞ 조합주택방식의 주택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건설회사가 보유한 택지중에서 분양가제한을 피하기 위해 조합주택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택지 실패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감정평가금액 + 가산비)의 120% 이내로 하고, 사업 주체가 실패입 가격을 택지비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택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신설)

- ☞ 통상 감정평가금액은 시세의 80~90% 수준이며 택지비가산비는 감정평가액에만 가산하는 것이므로 분양가상한제 취지를 고려할 때 택지 매입가격의 인정범위가 120% 수준이면 타당한 범위로 인정됨. 매입가격을 인정받기위해 감정평가절차 의무화는 필요한 과정이므로 원안의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제한하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규정(신설)
- ☞ 분양가격 공시지역 선정은 부동산시장안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 중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것에 원안의결
- 입주자 모집공고시 “분양가격 공시내용은 실제 사업비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이를 사유로 분양가격의 증감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문구 명시를 의무화 하여 분양가격 공시내용을 다툼 대상에서 제외함(신설)
- ☞ 분양가격 공시내용이 실제 사업비와 다를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경우에는 분양증감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고의나 과실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원안의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지료납부방식 및 지료 증액한도 산정방식을 규정함. 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매월 토지사용지분에 대한 지료를 납부하고, 지료의 증액은 당해 지역의 평균지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증액한도(5%)를 초과할 수 없음(신설)
- ☞ 지료납부의무는 법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나 분양자와 사업자간에 일시납 이외의 다양한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환매기간을 20년으로 설정(신설)
-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환매기간을 정하는 것은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원안의결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환매가격은 주택공급가격에 환매일까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평균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신설)
 - ☞ 환매기간이 20년이므로 환매기간동안 이자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시점의 정기예금이자율로 제한하는 것은 수분양자의 정상적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환매기간동안 이자율을 고려하도록 개선권고
-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과 채권입찰 상한액 조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택지전매제한 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수도권은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되 지방은 현행 유지(강화)
 - ☞ 분양가상한제 실시 및 채권입찰제 조정에 따라 수분양자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주상복합주택에 대한 관리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 함. 주상복합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동일건축물에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이 같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 외 시설 소유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방법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택 외 시설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함(신설)
 -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도 주택법에 의해 관리하도록 개정(2007.4.20)된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구체화하여 보장금액을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은 5천만원으로 함(신설)
 - ☞ 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구체화하고 보증변경방법을 정하는 것은 입주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원안의결
- 공동주택에서 개축, 재축, 대수선시 신고기준을 신설함.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용도변경 등은 행위허가 기준(입주자 동의 포함)에 의거하여 처리가 가능하나 후분양 주택에 대한 행위허가 기준이 미비하여 후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신고 기준을 마련(신설)

- ☞ 주택 후분양제 도입에 따라 행위허가 및 신고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
- 주택관리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현실화 함. 즉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일정한 경력을 갖춰 주택관리사 자격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에 주택관리사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경력요건을 의무관리대상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철회권고
- 주택법에서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매년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신설)
- ☞ 공제규정 및 운영실적공시는 공제사업을 위해 필수적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서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협회회원들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마이너스옵션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시 개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플러스옵션품목을 발코니 이외에 일정 공정후에 입주자의사를 조사하여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침」에 명문화(신설)
- ☞ 분양가상한제 시행필요성 등 현재의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동의 하되 발코니를 제외한 추가선택품목의 제한은 2년간 시행후 규제순응도 조사를 포함한 재검토결과를 규개위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 *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은 40% 공정에서 입주자의견을 조회하여 시공 가능하도록 분양가시행지침에 명문화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시 동별 순서를 제시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선택 입주자는 제시된 동별 순서에 따라

추첨을 통해 동·세대를 배정(신설)

☞ 선택품목 개별 설치자의 주택공급 순서를 정하는 것은 건설공정관리상 필요하며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이해관계에 특별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감정평가기관선정 및 기준을 규정. 시·군·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우수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택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되 이 중 1인은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갖춘 자여야 함(신설)

☞ 공공택지외의 감정평가를 우수감정평가업자로 제한하면서 그중 1인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업무에 관한 전국적 수행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경쟁원리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분양가상한제라는 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조건부원안의결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신설)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항목을 61개로 확대하여 항목별 구성내역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중요정보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원안의결

(2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8)

■ 심사내용

○ 2주택이상 소유자의 무주택기준요건을 강화 함. 즉 20㎡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을 1호만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자로 명확히 함. 또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자를 무주택으로 계속 보아 노부모부양자를 우대하되,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하여 실제 무주택자가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강화)

☞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보유는 60세이상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가구 중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 주택청약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서류보관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강화)
 - ☞ 재당첨제한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보관기관의 책임성확보와 철저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재당첨제한기간이 5년인 주택에 대하여도 10년 서류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인 주택에 한하여 10년으로 연장하고 기타 다른 주택은 현행대로 5년으로 하도록 개선권고
- 청약가점제의 주택공급방법을 개편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가점항목을 점수화하고 가점점수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를 도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1주택 소유자의 주거상황이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가점제·추첨제를 병행 실시하고 직계존속부양, 미혼자녀 부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신설)
 - ☞ 개정된 주택공급방법은 세대주연령, 무주택기간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주택공급 제도를 실수요자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예비입주자 선정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함. 예비입주자를 20% 이상 선정하도록 하고 미계약물량 및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개한 후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동·호수배정은 추첨방식으로 하도록 개선. 그리고 예비입주자가 최초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명단관리 함(강화)
 - ☞ 예비입주자의 선정비율을 20% 이내로 할 경우 의도적으로 적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을 20% 이상으로 하고 선정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 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입주자모집 업무는 사업주체가 직접 모집하거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인 은행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누락 등으로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입주자선정업무의 은행대행을 의무화(강화)
 - ☞ 현행 입주자모집업무는 사업주체가 직접하거나 은행이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대행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입주자선정과정 운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현행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특별공급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 없이 “무주택세대주”로만 되어 있어, 동일인이 특별공급을 받은 후 처분하고 다시 특별공급을 받는 등 수차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미비점이 있어 특별공급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강화)

☞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남게 되어 계속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공급받은 주택을 매도해도 특별공급을 재신청 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1회의 특별공급은 보장하되 2회 이상의 특별공급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전 지역에 걸쳐 주택소유여부의 전산검색대상을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소명기간을 단축(14일 이상 → 10일 이상)하고 사업주체의 관계증빙서류 보관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강화)

☞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주택소유여부의 전산검색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소유여부 소명기간단축은 적격자에게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고, 관련서류 보관기간 연장은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인 주택에 한해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기타 주택은 현행대로 5년 유지하도록 개선권고

○ 당첨자 명단관리를 강화 함.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은 과거 5년이내 당첨자 명단을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촉구하여야 하며,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당첨자명단을 전산 검색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함(강화)

☞ 부적격당첨자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은 청약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일반국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입주자모집을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약경쟁률이 높아 투기조장 및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본 주택의 개방시기를 당첨자 발표후에

개방하도록 권고(강화)

- ☞ 인터넷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인터넷청약과 방문청약이 병행 가능함을 법조문에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하고, 견본주택 개방 시기를 당첨자 발표 후에 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견본주택을 못 본 상태에서 청약을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제한을 가하는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권고하는 것보다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2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가능(신설)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2에서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의 등록 추이 등을 반영하여 수급계획을 마련토록 규정함에 따른 조치로서 관련단체가 건설기계협회, 자동차공업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는 등록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신설)
 - ☞ 대상기계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상 자동차로 규정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도 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부담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에 건설기계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사용료의 선금금이나 중도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신설)

- ☞ 건설기계관리법 위임범위 내에서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계약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 절차적인 측면외의 별도 비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 규칙 제정안 (신설 4, 강화 7)

■ 심사내용

-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포함하여 형식신고대상으로 하며 타워크레인의 검사기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신청 기간 및 유효기간, 타워크레인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타워크레인 대여업의 등록기준(주기장 : 100평방미터×(타워크레인대수)0.815 (신설)
 - ☞ 건설현장의 안전성 제고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타워크레인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등록기준은 소규모 업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여 진입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장면적을 「80㎡×(타워크레인대수)0.815」로 완화토록 개선권고. 또한 제도 시행 2년 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조건으로 함
- 폐기과정에서 회수되어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폐기업자는 재사용되는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 기능성 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건설기계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 또는 주행시간이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수출 및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제외)(신설)
 - ☞ 중고부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법령준수 및 중요사항 기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건설기계 폐기업자의 수가 213개(07. 6월 기준)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건설기계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말소등록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여 신규 등록 신청이나 폐기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나 폐기요청을 받은 폐기업자가 그 사실을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통보하도록 함(신설)

-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의무화한 수출이행여부 신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수출을 위해 건설기계를 등록말소하는 건수가 연간 6~7천건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검사소가 아닌 「기계 위치 장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를 현행 자체 중량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경우에서 자체중량이 40톤초과 또는 축중이 10톤초과한 경우로 개정(강화)
 - * 대상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 ☞ 검사장소의 예외는 도로안전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상의 도로운행 제한 차량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바, 도로운행 제한 차량이 「자체중량 40톤이상 또는 축중 10톤 이상」에서 「자체중량 40톤 초과 또는 축중 10톤 초과」로 개정('04.7)됨에 따른 조치임과 대상이 자체중량 40톤 또는 축중 10톤인 기계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건설기계 무상수리기간은 판매일로부터 12월 동안이며, 12월 이내라도 원동기 및 차동장치의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초과시 12월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강화)
 -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무상수리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한 조치로서 건설기계 제작자 등의 입장에서 수리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나, 주행거리가 많은 덤프트럭 등 현행 기준인 2만킬로미터를 단기간에 초과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를 감안하여 원안의결
- 경력관리자는 사업용건설기계조종사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신설)
 - ☞ 건설기계 운전경력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요건으로 인정되게 됨('04.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위임을 받아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관련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거, 경력관리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강화)
 - ☞ 동법 위임에 따라 새로 정기검사 대상이 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최대화함으로써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코자 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을 일반대여사업자는 33제곱미터이상, 자본금의 경우 일반대여사업자는 2억원이상으로 규정(강화)
 - ☞ 과도한 등록기준은 건설기계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그 기준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함이 바람직하므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33㎡ 이상) 및 자본금 기준을 삭제토록 개선권고
- 음주, 마약 복용상태의 조종, 인명피해 등에 대해 면허취소·정지 등의 제재수단 규정(강화)
 - ☞ 제재 대상자가 건설기계관리법상 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자로 한정되며,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수출이행여부 신고 누락,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누락,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규정(강화)
 - ☞ 건설기계관리법의 위임범위 내에서(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점등 및 조명장치 설치의무 강화, 지게차의 안전띠 설치 의무화, 기타 「최고속도 제한 장치 설치 의무화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신설)
 - ☞ 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조·규격 및 성능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소비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고 상당부분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 6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 6을 삭제하고, 별표 6 내용을 포함한 동 안전 기준 규칙 제정

(24)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의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요건과 사업범위, 주택사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의 요건 등을 규정(신설)
 - ☞ 건설업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격요건을 능력평가액 기준으로 3년간 공사 평균실적의 75%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상 등록업자는 전년도 영업실적만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특정연도에 실적이 나쁠 경우 시행자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연도별 경기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건설업과 같이 최근 3년간 영업실적의 평균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선권고
- 법률에서 민간사업시행자의 제안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구체적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를 규정하고, 조합설립 및 토지수용 요건에 대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을 일부 추가(신설)
 - ☞ 동의자수를 계산하는 산정방법에 있어서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사유지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며, 기타 관련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를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정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2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6, 강화 1)

■ 심사내용

-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은 3년마다 갱신(신설)
 - ☞ 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갱신등록기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3년에서 5년

으로 개선권고

○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에는 5인 이상, 분사무소에는 3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도록 함(신설)

☞ 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지사에서 수행하는 평가에 대한 심사기능을 위해 최소한의 평가사수를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주사무소의 평가사수를 5인 이상으로 해야 할 근거가 미약함. 따라서 주사무소는 3인, 분사무소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도록 하고 평가사 수급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은 2년으로 하도록 개선권고

○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기준을 규정(신설)

☞ 감정평가수요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02년부터 영어시험을 1차과목에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어휘 독해 등의 문법위주의 출제, 청취능력 측정 불가, 복수정답의 논란 등이 있으므로 공신력있는 시험으로 대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규정(신설)

☞ 현재는 별도의 등록 절차없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감정평가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감정평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신설)

☞ 휴폐업기간동안 불법 영업방지 등을 위해서 자격증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격증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업무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에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강화함에 따라 위임된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중전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으로 한 규정들을 2년으로 일괄 개정(강화)

☞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의 대상이 되는 건수가 1년에 20건 이하이인 점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정함(과징 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신설)

☞ 법에 새로 도입된 과징금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2)

■ 심사내용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과 등록요건을 정함. 대상은 법률에서 정한 개발규모의 하한으로 하고,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법 제4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 체결시 2인으로 완화),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규정(신설)

☞ 개발업등록대상 규모(2천㎡이상)는 비거주용 건축허가현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하고 자본금요건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며, 전문인력 요건은 3인을 2인으로 완화하도록 개선권고하며, 사무실 면적을 제한한 부분은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3년후 시장상황변화에 따라 재검토하도록 개선권고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을 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도모 함(신설)

☞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경력요건 중 변호사의 타 자격사의 경력은 5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호사의 타 자격사의 경력요건을 3년으로 하도록 개선권고

○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등록사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인지 여부,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함(신설)

☞ 표시·광고사항의 규제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포함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등록요건 적합여부의 확인, 표시·광고의 실태 조사, 사업실적 보고 내용의 실제 확인, 소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요건, 조사기간(10일)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신설)

☞ 실태조사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연장할 경우 기간제한이 없으므로 조정·연장할 경우 기간의 제한을 두도록 개선권고

○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내용·횟수 등에 따라 구분(신설)

☞ 영업정지처분 사유별 처분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관의 내용, 설립인가 심사 요건, 설립인가 취소 사유, 협회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신설)

☞ 협회와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 상근부회장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 추천제는 삭제하고 건설교통부의 협회에 대한 업무감독은 구체적 업무를 예시하여 특정하도록 개선권고

○ 부동산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기재 사항변경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신설)

☞ 등록증은 개발업자의 자격을 표시하는 증명서이므로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등록업체의 현황 파악,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며 변경신청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안의결

○ 부동산개발업 양도, 합병, 상속신고 절차를 규정하여 등록사업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이나 일부 권리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 개발업자의 부도·파산, 동법에 의한 등록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함(신설)

☞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합병, 상속신고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의 준수는 필수적 사항이고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보호, 등록 사업자 관리 등을 위해 사업실적,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보고에 관한 시기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함.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 보고(연 1회), 임원 및 전문인력의 변경시 보고(30일 이내)(신설)

☞ 사업실적, 자본금, 임원 및 전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이고 보고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 위반행위조사·검사 대상을 위반행위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전산자료·음성녹음 자료·화상자료 등에 한정(신설)

☞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검사할 수 있는 자료나 물건의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서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조사·검사 대상을 한정된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 공표를 명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신문, 영업소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함(신설)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공표의 내용 및 횟수 등을 명확히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위반행위 정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신설)

☞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행정력 소요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3)

■ 심사내용

- 산업단지내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경우 나머지 지원시설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별로 산업용지 비율을 50~70%로 정함(강화)
 - ☞ 산업단지유형별로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산업단지 개발취지에 부합하는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의 공공성을 비추어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70% 범위임. 농공단지의 경우 산업용지비율을 70%로 정하는 것이 일반산업단지의 50%에 비해 과다한 면이 있으므로 60%로 개선권고
- 민간사업시행자의 분양가 산정요건에 포함된 적정이윤의 개념을 명확화(변경)
 - ☞ 적정이윤율을 국가계약법상 공사에 적용되는 15%로 정하고 있으나 이윤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산업입지법상 조성원가인지 국가계약법상의 예정가격인지 명확하지 않음. 산업단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가계약법상의 이윤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 사업시행자 교체요건 중 완료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경과시까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30%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와 사업기간 내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로 정함(신설)
 - ☞ 사업시행자 교체요건을 정해진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개발사업시 토지조성뿐 아니라 건축물까지 사업시행범위에 확대하고 남는 수익을 기반시설비용에 충당토록 하여 산업용지가격을 인하하도록 의무화(신설)
 - ☞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건축사업을 추가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 아파트형 공장건축을 포함할 경우 영세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의 의무임대비율을 규정하여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공급하도록 함(신설)

☞ 아파트형 공장건축에 따른 의무임대비율적용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산업단지 시행자 참여요건인 실수요자는 산업시설 용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잔여 용지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0% 이상으로 명확히 함(변경)

☞ 실수요자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시 직접 사용비율 적용은 실수요자가 직접 사용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전체 산업단지 중 직접 사용할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실수요자 개발단지 : 47개(국가6, 지방 41)

(28)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부도 등의 범위에 모회사 부도외에 자회사인 임대사업자를 포함시켜서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부도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도 등”의 범위 확대(신설)

☞ 부도 등의 범위에 모회사 부도외에 자회사인 임대사업자의 순자산액이 부의 상태인 경우(전년도 회계연도 기준)에 한해 “부도 등”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개선권고

○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보증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을 현행 75:25에서 50:50로 변경(강화)

☞ 보증제도는 근본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경영불확실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으로 인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부담 비율을 50:50에서 현행과 같이 75:25로 유지하도록 철회권고

○ 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이나 고의적 잠적 등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확인한 후 5개월이 경과한 후 법적 절차를 거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신설)

☞ 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이나 고의 잠적 등으로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협의가 안 되어 부도임대주택 정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5개월의 기간은 부도임대사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발생사례가 빈번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2)

■ 심사내용

○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신설)

☞ 외출·외박 기록의 필수 기재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시행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등을 고려할 때 시행령안에서 열거한 기재사항 및 보존기한(3년) 등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 교통사고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신설)

☞ 과태료 금액은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정해진 금액이고, 진료비 청구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3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위장전입 방지와 지역간 형평성 해소를 위해 해당지역 거주기간제한을 '1년 이상'으로 함(강화)

☞ 현재 시장·군수 등이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위장전입 등으로 인해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08.1.1부터 “국가, 주공, 수도권내 지자체·지방공사”인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음(신설)

☞ 당초 공공부문은 '07년부터 점진적 후분양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1.11 부동산 대책으로 1년씩 순연됨에 따라 동 조항이 삭제('07.4.12)되었던 것을 재규정하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 주택과 같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가점제를 적용(100%)하여 입주자를 선정(신설)

☞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공급량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3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6, 강화 7)

■ 심사내용

○ 특급기술자의 경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대신 3년마다 90학점이상의 계속교육을 받도록 함(강화)

☞ 모든 특급건설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 대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설계·시공)에 참여하는 특급건설기술자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권고하고 아울러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장 기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향후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권고

- 건설 현장에 투입된 감리원은 현장 투입 2년 경과시마다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강화)
 - ☞ 현장에 배치된 모든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 대신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 공사(총공사비 100억이상 22개 공종)의 현장 배치 감리원에 한하여 현장배치 3년 경과시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권고
-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강화)
 - ☞ 현행 규정에서도 용역계약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통보시기 명시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종합, 토목, 건축 분야에 공통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는 장비를 일부 분야에만 비치하던 것을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는 각각의 분야에 모두 비치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전문기관 중 특수분야에 말뚝재하분야를 추가하며, 종합, 토목, 건축 분야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시험 가능한 특수분야를 등록(등록중에 가능분야 명시)한 후 시험 가능
 - ☞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품질검사전문기관 당 100만원 내외)하고 대상 기관이 97개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업무정지 처분 가중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성실 감리로 주요구조부의 붕괴 및 사망의 경우 업무정지 24월,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주청 재산상 피해발생의 경우 24월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 강화(강화)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피해를 발생 하게 한 때’ 발주청에 끼친 재산상 손실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4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로 판단됨.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피해를 발생 하게 한 때’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은 발주청에 끼친 재산상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할 것을 개선권고

○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등록취소하도록 함(신설)

☞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07. 5.25)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학력·경력자에 대해서는 수석감리사 및 감리사 자격 불인정(강화)

☞ 학력·경력 자격으로 감리원 등급을 이미 부여받은 자는 기존 감리원 등급을 계속 인정하며, 규제 강화에 따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건설기술자에 대한 학·경력 인정 제도는 2006년에 폐지

○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자에 대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추가(신설)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07.5.25)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법 제43조제1항제3호, 제2항제3의4호·제3의5호·제6의2호·제8호)됨에 따라 구체적 부과기준을 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구조계산서가 첨부된 시공상세도면을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발주청에 제출한 후 시공(강화)

☞ 시공상세도면을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철회권고

○ 건설교통부장관 등은 중대건설현장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고 관련 현장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신설)

☞ 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자료 제출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미미하고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업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수행자에 대해 업무정지(건설기술자) 및 부실벌점(용역업자) 부과(신설)

-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07.5.25)으로 건설기술자 및 용역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감리원 및 감리업체가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안전 등과 관련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또는 소홀히 할 경우 1~3점의 부실벌점을,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 소홀의 경우 2 또는 3점의 부실벌점을 부과(신설)
 - ☞ 발주청의 지시사항의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지시사항 미이행과 민원 발생 등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우므로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2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개선권고 하고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의 소홀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는 원안의결
- 감리회사가 등록기준 미달 후 50일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2월의 처분을 하는 등 감리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규정(신설)
 -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07.5.25)으로 감리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2)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1, 강화2)

■ 심사내용

- 신설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부설주차장의 굴곡부는 6m 이상의 내변 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확장 (강화)
 - ☞ 신설되는 주차장 굴곡부의 내변반경을 현행 5m에서 6m로 확대하는 경우 바닥면적 확대 (207.63㎡→245.31㎡)로 인해 약 18.1% (28,545천원, 주차장 1개 기준)의 비용이 증가하나, 차로 협소로 인한 접촉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편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 동의

○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확장형 주차구획(2.5m×5.1m)을 20%이상 확보하고, 기존주차장은 2009년까지 확보 (강화)

☞ 대형 및 RV차량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확장형 주차구획 확보 의무비율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신설되는 2층 이상의 건축물식 또는 공작물식 노외·부설주차장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신설)

☞ 신설되는 2층 이상 건축물식 또는 공작물식 주차장에서의 차량 추락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강도·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 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80%이하를 적용(강화)

☞ 건축제한 강화가 관리지역내 토지소유자 및 거주자의 건축행위 및 재산권행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와 아울러 관리지역 세분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 실시의 경우에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개선권고

(3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강화 5)

■ 심사내용

○ 수중공사업 등록시 표면공급식 장비 2세트 이상,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을 갖추도록 시설·장비 기준을 추가(강화)

- ☞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부담이 총 4억여원(한 업체 당 1,250만원 내외)정도이며, 피규제자가 33개 업체인 점과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1억이상 원도급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로부터 4천만원 이상 하도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 통보(강화)
- ☞ 새로이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하는 하도급 업체 수가 17,000여개이며, 통보 건수는 연간 84,000여건, 통보 비용(인건비)은 연간 약 18억여원이고 이해 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시 하도급자 선정방식 및 선정 기준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계약시 하도급 예정대상자·내역·물량, 하도급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재한 하도급계획서를 낙찰자 결정 통지후 2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발주자가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하도급계획 변경이 가능 하도록 함(신설)
- ☞ 하도급계획서를 공사 계약 체결시 제출하도록 하여 발주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감안할 때 하도급계획서를 계약시에 제출한다는 점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 개선권고(예 : 발주자가 하도급계획서 작성을 위해 부여하는 기간은 낙찰자 결정후부터 ‘계약시까지’의 기간임을 명시)
 - * 다만, 하도급계획서 작성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까지의 기간(현행 10일)을 연장(20일)하는 방안 추진(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 협의, 회계예규 개정)
-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의 범위를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받아 제작납품한 경우,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건설자재·부품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받아 제작납품한 경우로 함(신설)
- ☞ 동 제도를 적용하고 집행하는 현장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열거한 대상에 대해서만 동 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작납품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원도급자는 지급보증서 부분을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부분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령상 위배됨이 발견될 때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함, 보증기관은 부분을 회수하지 않고는 임의로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증서를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없음(신설)
 - ☞ 건설산업기본법 상 위임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체 요구 및 보증서 취소 또는 해제 금지 조항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모험놀이장, 야외극장, 공연장, 낚시시설·장례식장 및 화장장, 사방·호안·방화·방책·조경 시설 등,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사설 및 기구 등 추가(신설)
 - ☞ 대상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상 공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범위를 일정 기준(공사 면적 또는 공사금액)이상의 공사로 한정하거나 동 규제가 신설 규제임을 감안하여 대상 시설물을 축소하여 시행하도록 개선권고
-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건설업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자는 5년간 운영위원 선임 금지(강화)
 - ☞ 건설공제조합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의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를 5억원 이상 공공 공사(공기업 자회사 발주 공사도 포함) 및 민자사업, 200호 이상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로 확대(강화)
 - ☞ 가입대상 공사 현장이 전체의 10.8%(건수기준)수준에 머물고 있는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의결

○ 부실·부조리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 재해를 발생하게 하여 10명이상 사망한 때 영업정지 4월, 6명이상 9명이하 사망한 때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2명이상 5명이하 사망한 때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3,00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2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이상 사망한 때 영업정지 6월, 뇌물수수로 영업정지(4월~8월)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관청에서 감경 할 수 없도록 함 (강화)

☞ 산재사고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다수의 사망사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라고 판단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할 것을 개선권고

(35)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시·도지사는 「도시침수피해방지광역계획」에 따라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동 구역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우수침투저해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함(신설)

☞ 우수침투저해행위 허가 대상이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과 함께 우수침투저해행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도 건축허가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건축허가로 우수침투저해행위 허가를 의제처리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정안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우수침투저해행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조건 위반의 경우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완료 신고에 따른 검사와는 별도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허가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시·도지사는 우수침투저해행위의 허가,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공사완료 신고 대상이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과 함께 공사완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정안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확인규정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공사 중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제정시 감리자가 허가 조건대로 시공되는 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검토

○ 우수침투저해행위에 관한 공사 완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신설)

☞ 신고·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기본계획·광역계획·실시 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 하는 토지에 동의를 얻어 출입하고 일시 사용할 수 있음(신설)

☞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함으로서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토지의 출입시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36)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홈네트워크 유지비를 추가(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하고 그 세부내역을 규정 함(강화)

* 현행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 ☞ 관리비 항목 추가에 따라 입주자의 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공지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리비 항목 추가를 입주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예 : 6월 내지 12월) 할 것을 개선권고
- 홈네트워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대상 공사를 망공사·기기공사·단지공용 시스템 공사로 구분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함(강화)
- ☞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기 설정되어 있는 유사시설(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등)의 기간(2년)을 참작하여 설정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주택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신설)
- ☞ 설치기준이 IT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지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 부처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준 제정시 관계부처·전문가·사업주체 및 사용자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3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청약저축 가입 등의 경우 세대주로 인정하였으나 호주제폐지에 따라 세대주로 인정하지 않음(신설)
- ☞ 노부모나 장애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이러한 취지는 살릴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청약 가점제상에서 노부모나 장애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의 경우 가점을 받고, 공공 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대상이 되므로 부모부양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안의결

(38)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지역·직장주택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유주택자 개념에 당첨자의 지위뿐 아니라 이를 승계한 지위까지 포함(신설)
 - ☞ 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는 실질적으로 잠재적 주택소유자라 할 수 있으므로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합주택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경우를 조합주택가입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규제의 명료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동시에 동 제도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부동산 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사용 권리(임차권, 지상권 등)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신탁하도록 함(강화)
 - ☞ 그 동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임차권 등을 취득한 사례가 없었으나, 향후 부동산 사용에 대한 권리 취득시를 대비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 이내(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자본금 100억원이상을 확보한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신설)
 - ☞ 영업인가 후 6개월이내에 자본금 100억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인가를 취소(법 제42조제1항의2호)할 수 있는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핵심 요건이므로 최저자본금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40)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3)

■ 심사내용

○ 도시철도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추가하여 과징금 금액을 정함(신설)

☞ 추가된 위반행위 유형은 도시철도법 개정시(07.7) 반영된 내용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도 법률의 위임범위(2,000만원)내에서 타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안전기준 적용대상이 되는 도시철도시설 범위*를 설정함과 동시에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신청시 제출서류, 성능시험 항목 등을 규정(신설)

*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선로·역사·정보통신·유지보수 및 정보화 시설,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성능시험의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절차 등을 마련한 것으로, 성능시험 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다중이용시설인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라는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도시철도사업자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위임한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위반행위 유형과 처분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정함 (신설)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규제당국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41)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5, 강화 1)

■ 심사내용

○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2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 자산평가액 보고서(개인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제출(신설)
- ☞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에서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년의 신고 주기를 설정하고, 제출서류는 골재채취업 등록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로서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판단됨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때 등 9개 위반행위에 대해 2월~6월의 영업정지 기간 설정(신설)
- ☞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범위(6월)내에서 위반사유별 영업정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됨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 4월,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 3월,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월,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에 위반한 때 : 2월 등 골재채취 중지 처분 세부기준(신설)
- ☞ 골재채취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 중지 처분(6월)내에서 위반 사유별 골재채취 중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됨
- 골재 채취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에 골재채취능력의 평가 결과를 추가(강화)
- ☞ 골재채취법 제22조에서 시·군·구청장이 골재채취허가시 허가신청자의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골재채취능력 평가시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 허가증 사본 및 신고서,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증 및 제작증명서 등 자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무제표,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고 평가방법(골재채취능력 = 실적평가(60%)+시설·장비능력평가(40%) ±신인도

평가)을 규정(신설)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방법 등을 참조하여 정한 것으로서 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 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골재채취 실적이 없는 경우 평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골재채취 실적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개선권고

○ 골재채취구역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부터 3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보수 보증금은 복구공사비 총액의 3/100으로 하고, 동 보증금 예치기간은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함(신설)

☞ 골재채취법 제29조제6항에서 복구 등의 공사비 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5년의 범위안에서 미리 예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중 골재채취구역 복구공사와 성격이 유사한 매립공사의 보증율을 참조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용산공원에서의 나무를 훼손·고사시키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허가·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신설)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금지행위는 다중시설 내에서 당연히 준수되어야 할 내용으로 도시공원법 등의 유사 입법례를 준용한 것이며, 과태료 부과는 법에서 정한 범위(금지행위 위반 시 10만원 이하, 기타 행위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용산공원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공사시행계획서·원상회복계획서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점용허가 대상은 전주·전선·변전소·전기통신설비, 수도관·하수도관 등의 공공복리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하며 점용물은 공원의 경관과 공원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가기준을 정함(신설)
 - ☞ 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류, 허가대상 및 허가기준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용산공원이 국유 재산이며 다중이용 공공시설임을 감안할 때, 점용대상과 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시설의 설치 및 행위를 예방하고 허가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데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기업, 공기업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한 법인은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이 50/100미만인 법인으로 하고, 지정신청서,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 지역 위치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 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도록 함(신설)
 - ☞ 용산공원의 주변산재부지(유엔사, 수송단, 캠프 킴 부지)에서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 용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서류도 복합시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 복합시설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승인신청서, 복합시설조성계획,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문화재 보존계획,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승인신청서,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자금조달계획서, 사업시행지역 위치도 및 지적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서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신설)
 - ☞ 복합시설조성사업 사업이 도시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 용도로 조성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43)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6, 강화6)

■ 심사내용

- 교통안전규정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교통수단 운영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범위 규정 (강화)
 - ☞ 도로·철도·항공 및 해양 교통시설에서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에게 교통안전규정을 수립·시행케 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등은 사업의 면허 등을 받은 때로부터 6월이내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교통행정기관과 확인·평가를 하는 전문기관에 각각 1부씩 제출하고, 교통행정기관의 변경명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강화)
 - ☞ 동법이 위임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립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제출시기를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최초로 확인을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이 때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신설)
 - ☞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업체가 정한 안전관리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이 확인·평가하는 것으로 확인·평가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 교통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교통체계는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산업 및 교통관계 등으로 하고, 점검은 행정기관 단독 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거나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아 대상별로 연 1회 이상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 (신설)

- ☞ 동법이 위임한 교통안전점검의 구체적인 분야와 대상, 시기 등을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 각 개별법에 의해 교통수단을 일정대수 이상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는 매3년마다 (사업면허 또는 등록 등을 하거나 증차 등으로 교통안전진단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6월 이내)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강화)
 - ☞ 업체 규모에 비례하여 사람과 물자의 수송량이 커지게 되면 동일한 크기의 안전 결함이라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에는 대규모 인명 및 물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차량 보유대수를 기준(총대수 기준으로 전체 34.3% 점유)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일정기준 이상인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강화)
 - ☞ 동법에서 위임한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 행정기관이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명령을 발하는 경우 통보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진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요건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 (강화)
 - ☞ 교통안전진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이 실시될 분야와 대상시설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인력 및 진단측정장비 요건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실진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음 (신설)
 - ☞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감독기관의 평가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시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에게 교통안전진단 실시현황을 진단실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안전진단 실시현황을 교통 안전정보 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신설)

☞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진단 실시현황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교통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자료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토록 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된 자료·통계 또는 정보(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를 보관·관리 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을 5년간 보관·관리 하여야 하고, 요청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신설)

☞ 보험사 등이 개별적으로 조사·취득한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국가차원의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향후 교통사고 조사·보고 및 처리 실적 확인 등을 포함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가 5년 주기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평가 근거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도 교통사고 자료 보관기간을 5년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개별법에 따라 운행기록을 설치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는 운행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고, 운행기록의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운행기록의 제출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명할 수 있음 (신설)

☞ 일정기간 보관된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차량 운행행태 등을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의 기초데이터로 활용,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고, 일본 및 유럽연합의 경우 1년간 보관·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6개월의 보관기간은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교통안전법 제 65조 제3항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방법과 위반행위 중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 (강화)

☞ 지난 '05.4월 교통안전법 개정 당시 규제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상한액의 규모를 종전 300만원→500만원과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정법률이 정한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금액을 일부 상향조정하고 신설된 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유사사례의 타법령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44)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2)

■ 심사내용

○ 관계 행정기관(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지정 요건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내용심사)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 요건 미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 법령 위반 등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등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업무(이하 인증업무)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내용심사)

☞ 인증센터에 대한 지정취소요건을 구체화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된 종합물류기업 인증업무가 적법 타당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익이 큰 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4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1, 내용심사2)

■ 심사내용

○ 물류터미널내 가공·조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공·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는 물류 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1/4이하의 규모로만 설치 가능 (내용심사)

- ☞ 동조항은 동법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가공·조립시설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내용심사)
 - ☞ 동개정안은 동법 제24조가 위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의견 수렴 절차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물류단지 내의 전기시설·전기통신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의 설치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기시설 등의 설치시기를 물류단지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토록 변경(강화)
 - ☞ 동 개정안은 동법 38조가 위임한 전기시설 등의 설치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시설의 공급자와 수요자(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간 이견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 설치 완료시기를 물류단지 준공검사 신청일로 앞당김으로써 단지 내 건축물 입주자의 이용 편익을 제고하는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46)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3)

■ 심사내용

- 자동차의 가변축 조작 및 압력 조절장치의 설치 위치를 규정 (강화)
 - ☞ 가변축 조작장치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축조작으로 인한 과적회피를 차단함으로써 과적운행에 따른 도로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중형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에 추가 (강화)
 - ☞ 화물자동차의 경우 소형승용차에 비해 화재 발생시 대피가 용이하지 않고, 대량의

화물을 적재하고 있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량내 소화기 비치로 초기진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감소시키는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고정)장치 설치개수, 위치, 방법, 강도 등 규격화된 부착장치(이하 ISOFIX*)의 설치를 의무화(강화)

☞ ISOFIX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차 충돌 등 교통사고시 유아 및 어린이 상해·사망률이 감소하는 편익이 크고, EU, 미국·캐나다 등 선진 주요국에서 이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토지 취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도록 함(강화)

☞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외국인의 주거용지 취득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투기적 거래 행위 우려가 있으며 내국인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여 외국인의 토지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의 1/10이하 증가, 토지형질변경을 승인받은 부지안에서 건축연면적의 증가(4층이하)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또는 10,000㎡이상 토지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함(강화)

☞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면서 연면적 3,000㎡이상 건축 또는 10,000㎡이상 토지형질변경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인지, 아니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중복 문제 및 시·도 등 지자체의 법 집행상의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왔으므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만 연면적 3,000㎡이상 건축 또는 10,000㎡이상 토지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한 시설 중 도시공원안의 골프연습장 제외 명문화(강화)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실외체육시설 가운데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시공원안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법령상 모순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안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에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개발제한구역 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인정 요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구역 밖의 거주자로 된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요건을 명확하게 함(강화)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 인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지정 당시 거주자」 제도의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는 「지정 당시 거주자」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제5절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1. 과학기술부

집필자 : 고성균 사무관(Tel.2100-2455, ksgyun52@opc.go.kr)

516

가. 2007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기술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정안,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규정 개정안 등 9개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2건, 내용심사 3건 등 총 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중요규제 1, 비중요규제 5건)

○심사대상 6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과학기술부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 과학기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기술개발촉진법	제282차 경제2분과 (2007. 5. 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기술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283차 경제2분과 (2007. 5. 17)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중요1, 비중요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방사선 안전관리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	제291차 경제2분과 (2007. 7. 1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1
우주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 제정안	제310차 경제2분과 (2007. 12. 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특정 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규정 개정안	제310차 경제2분과 (2007. 12. 20)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6	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3 ※중요1, 비중요5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전략기술 수출의 승인 등 (강화)

- 전략기술 수출의 승인

〈 현 행 〉

- 전략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무형이전 미포함

〈 개 정 〉

- 수출유형에 모사전송, 인터넷 전송 등 무형이전 포함
- 전략기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과괴무기 등의 개발·제조 등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수출하려는 자는 전용할 의도를 알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함(상황승인)
- 국내거주 국민(법인)이 제3국간 전략기술의 이전·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함(중개승인)

- 전략기술의 수출입 제한

-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한 자는 3년 범위 내에서 수출입 제한

- 서류보관 의무

- 전략기술을 수출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5년간 보관

-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

- 수출승인을 받은 자 및 미승인 수출자 등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

〈 현 행 〉

- 특정연구개발기술료 징수 미보고, 각종 인증, 지원 등에 따른 보고의무 불이행, 조사·질문 등 불응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 정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기존 내용과 동일

- 전략기술 수출서류 보관 불이행, 전략기술 수출 승인을 얻은자의 의무위반 등 (기준은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은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추가)

☞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전략기술수출 통제에 대한 국제적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수출통제협약체 및 UN안보리 등에서 권고하는 전략기술수출통제제도를 법에 반영 한 것이며,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법령인 대외 무역법의 전략물자 수출·입 승인에 따른 관련규정을 인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 수나 규제비용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 기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기술사의 교육훈련 (내용심사)

- 교육훈련시간은 매 3년간 90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훈련은 수강교육과 무형식교육으로 구분하고, 수강교육 중 기본교육(기술사 소양)과 전문교육을 각각 12학점(연간 각 4학점) 이상받아야 함
 -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1년간 신체적 질병 등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간, 기술사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함
 - 기술사로 활동하지 않던 자가 다시 기술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리 45학점 (기본·전문 각각 12학점 포함)을 이수해야 함
- 교육훈련실적을 매 3년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함
-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
 - 교육대상자중 기술사가 절반이상 (최소10인이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전담강사 1인 이상 및 교육대상자 20인 이상을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
 - 교육훈련 대행기관은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후 14일 이내 실적을 보고해야 함

☞ 기술사 교육훈련 시간을 매 3년간 90학점으로 정함으로써 기술사 및 기술사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은 있으나, 동 규정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타 법령이나 국제기준,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으며, 무형식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또한, 보고사항은 본인의 실적을 확인하는 절차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교육훈련 대행기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운영을 배제하고 교육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 원안의결

○ 기술사의 신고 (내용심사)

- 기술사가 근무처 등을 신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기술사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기술사경력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 기술사 경력관리에 필요한 근무처, 경력, 학력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정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규제대상자는 약 3,600여명이고,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포장 검사 등 (내용심사)

- 화물구역
 - 구조부 등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 사용
 - 내부벽 등의 표면은 평탄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식성이 강한 재료 사용
 - 다음에서 정하는 방사선량 이하가 되도록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 ▶ 종사자 구역 : 사람의 피폭선량이 연간 5 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 일반인 구역 : 사람의 피폭선량이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 선박의 표면 : 시간당 2 mSv 이내
 - 화물구역 평균온도는 55℃이하 유지
- 방사선 관리실
 -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방사선 감시시스템 설치
 -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장구류를 갖출 것
 - 개인선량계, 경보기 : 승선인원수 이상
 - 방사성오염제거 장비와 보관설비

- 오염검사실
 -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 내부벽 등의 표면은 평탄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식성이 강한 재료 사용
 - 방사선측정기 및 인체의 오염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것
- 배기설비
 -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 주요구조부 및 배기관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할 것
 - 다른 용도의 것과 별도의 계통으로 할 것
- 배수설비
 - 액체폐기물 저장조에는 수집된 액체폐기물을 항구에 정박하여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
 -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할 것
 - 액체폐기물 저장조는 액체폐기물을 쉽게 채취하여 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다른 용도의 것과 별도의 계통으로 할 것
- 크레인
 - 화물중량의 1.25배의 하중에서 성능유지
 - 적재 및 하역시에 화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이 이중으로 보장되는 구조
- 표 시
 - 방사선관리구역은 방사능표지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명칭을 표시하고 “허가 없이 접근함을 금함”이라고 기재
 - 배기관 및 배수관은 내열페인트로 색상을 달리하여 표시

☞ 동 개정안은 향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해상운송이 활발해질 것을 대비하여 특수선박의 기술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기존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IAEA국제기준 등을 준용하여 정하는 것이며, 피규제자가 한국수력원자력(주) 1개소이며, 규제비용은 약1억원 정도로 추정되고(차폐강판보강, 안전장비, 감시장치 등 설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4)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체계 구축 (신설)

- 보안담당관 지정
 - 참여기관의 장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 보안담당관을 두도록 함
 - 보안담당관 임무 및 임면사항 규정
-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우주개발사업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성 조립·시험실 등 주요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관리함
 - 통제구역, 제한구역 표시 부착
- 위성정보·중요문서 등 보안관리
 - 참여기관의 장은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및 위성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위성정보 운영시스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참여기관의 장은 비공개정보의 유출시 지체없이 과학기술부장관 및 국정원장에게 관련사항 제출
 - 자체실정에 맞는 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지침 작성 비치
 - 보안담당관은 정보공개시 관련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외주용역 또는 외국인 업무종사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보안대책수립 및 개정
 - 참여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보안대책(보안관리규정)을 제정 시행
 - 제·개정사항을 14일 이내에 제출
 - 보안관리규정 제·개정시에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보안지도·점검 및 보안교육
 - 참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보에 대한 보안지도 및 점검 실시
 - 보안담당관은 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보안교육 실시

☞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에서 우주개발 관련 보안대책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 보안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우주개발 기술은 국가정보와 직결 되는 미래 전략기술로서 유출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 보이며, 피규제자는 10여개 우주개발사업 참여기관이 해당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 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5) 특정화학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특정화학물질의 계량관리검사 (강화)

-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소형시설에 대해 물자재고검사의 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2회로 강화

☞ 분기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소량(농축10%기준 500kg미만)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핵물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규제자 및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2. 정보통신부

집필자 : 이태근 사무관(Tel.2100-2454, tklee@opc.go.kr)

가. 2007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07년도에는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전기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24개 법령에 대해 총 38건의 규제를 심사하였다. (중요 10건, 비중요 28건)

○ 심사대상 38건 중 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를 3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7년도 정보통신부 신설 규제는 총 10건이다.

< 정보통신부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275차 경제2분과 (2007.2.15)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280차 경제2분과 (2007.4.12)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전자서명인증 업무지침(고시) 개정안	제282차 경제2분과 (2007.5.10)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83차 경제2분과 (2007.5.17)	원안의결 4	내용심사4 *비중요4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83차 경제2분과 (2007.5.17)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3차 경제2분과 (2007.5.17)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제285차 경제2분과 (2007.5.31)	개선권고 1	내용심사1 *중요1
위치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86차 경제2분과 (2007.6.7)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제291차 경제2분과 (2007.7.12)	원안의결 3	신설2 내용심사1 *비중요3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제292차 경제2분과 (2007.7.19) 제184차 본회의 (2007.7.26)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신설4 *중요 3 *비중요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제292차 경제2분과 (2007.7.19)	원안의결 1	신설1 *중요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92차 경제2분과 (2007.7.19)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95차 경제2분과 (2007.8.22)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1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금액 하한 고시 개정안	제296차 경제2분과 (2007.8.29)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우편법 개정안	제296차 경제2분과 (2007.8.29)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전파법 개정안	제297차 경제2분과 (2007.9.5)	원안의결 2	내용심사2 *비중요2
전파법 개정안	제299차 경제2분과 (2007.9.19)	개선권고 1	내용심사1 *중요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제300차 경제2분과 (2007.10.10)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고시 제정안	제300차 경제2분과 (2007.10.19)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1,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302차 경제2분과 (2007.10.24)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03차 경제2분과 (2007.10.31)	원안의결 3	내용심사3 *중요1 *비중요2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05차 경제2분과 (2007.11.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05차 경제2분과 (2007.11.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309차 경제2분과 (2007.12.12)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신설1 내용심사4 *중요3 *비중요2
계	-	원안의결32 개선권고 6	신설10 내용심사28 *중요10 *비중요28

나. 2007년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내용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 심사내용

- 부정복제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명칭·주소 및 연락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 내용,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시정권고 조치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조치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된 내용이 통보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

(2)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심사)

■ 심사내용

- 전기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시 금지행위 유형 및 세부기준을 마련함
 - 금지행위 유형은 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전기통신역무를 결합판매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는 행위, 동등결합 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공대가 등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현저히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게 하여 결합판매를 함으로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동등결합판매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 금지행위 판단 심사기준은 비용절감 효과,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동등결합판매 심사, 인가역무제공사업자의 설비 여유용량, 사업자의 필수요소와 관련된 투자 자본의 회수, 지적재산권 존재여부, 기존에 제공되는 역무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 되는지 여부 등임
-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 결합판매 금지유형 및 세부기준을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 편익 증대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금지행위 등의 기준을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서 요금할인 및 수요자의 다양한 상품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함

(3) 전자서명인증 업무지침 개정안 (내용심사)

■ 심사내용

- 공인인증서 발급 시에 가입자 등록정보를 전송하는 새로운 방식(중계서비스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을 고시를 정함
 - 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정보에 대해서는 전송받은 상태 그대로 전달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복호화하거나 보유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중계시스템 및 보호설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함
 - 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기관이 중계시스템 및 보호설비의 구축·변경 시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적절성을 확인받은 후 운영토록 하여야함
 - 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중계시스템 및 보호설비의 변경사실을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함
 - 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기관이 매년 1회 이상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여야함

☞ 새로운 형태의 공인인증서 가입자등록정보 전송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중계서비스 기관에 대해 가입자 등록정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서명법 및 동 지침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에 부과되고 있는 규제내용을 그대로 준용하여 설정 하였으며, 중계서비스기관도 공인인증기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중계서비스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방법(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을 정하도록 고지의무 및 책임을 부과함
 - ☞ 법률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취급을 위탁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위탁 시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을 정함(인터넷 사이트, 우편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
 - ☞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위탁 시의 동의 획득 방법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 수가 적고 비용도 미미하여 원안 의결함
-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일정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설치 운영 시 본인확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본인 확인 조치내용 및 의무자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물품·서류 등의 제출 요건을 정함
 - ☞ 법률에서 인터넷게시판 운영 시 제한적 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적용범위와 조치내용 등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범위와 자료제출 요건 등을 엄격히 한정하였고 규제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신청시 제출 서류, 심사방법,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부과기준을 마련함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단독 수행하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07.1.26)됨에 따라, 지정기준, 제출서류, 심사위원회의 운영, 현장실사 등 지정절차의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의 지정 자격기준과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부과기준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였고, 제출서류 및 심사절차도 기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 하던 절차를 감안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

(5) 전자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 심사내용

-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및 전자파강도의 보고시기와 방법을 정함
 -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을 정함
 - 전자파강도의 보고시기 및 방법을 정함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전자파 강도의 측정요청 시기 및 방법을 정함 (준공검사와 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의 경우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의 경우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 무선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측정방법, 시기 등을 규정하여 전자파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지역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였고, 공중선 전력 기준도 일반인의 안테나 접근 가능 거리, 안테나 이득(증폭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 하였으며, 보고대상 무선국 기준과 보고방법 등이 규제비용이 적고 피규제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정된 점을 감안 원안 의결함.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 심사내용

-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고자 하거나 기간통신 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하는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규정함.

-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
- 신청인 및 상대회사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인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 신청인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 및 사유, 효과분석
-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 주식취득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15%이상 취득할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제출서류를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양수·합병 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감안하여 설정하였으며 별도의 규제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점을 감안 원안 의결함

(7)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안 (내용심사)

■ 심사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과징금부과 상한액을 정함 :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평균 매출액의 1/100 또는 2/100을,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금지 행위 유형에 따라 10억원 또는 8억원을 부과 상한액으로 함
 - 기준금액을 산정함 :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위반전기통신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에 3% 이하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 시 6~8억, 중대한 위반 시 3~6억, 약한 위반 시 3억원 이하
 - 위반 기간의 산정 : 위반기간은 위반행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기간으로 함
 - 관련 매출액의 산정 : 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함
 - 필수적 가중을 정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가중토록 함
 - 추가적 가중·감경을 정함 :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고의·과실 여부,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토록 함

- ☞ 전기통신사업법('07.3.29 공포, 9.30 시행) 및 동법시행령('07.3.16 공포, 6.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징금 부과상한액이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권고하며, 추가적 가중·감경의 경우도 각 사유별로 적정히 설정되어 있으나, 위반행위 결과로 지속적 이득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시장점유율 등의 현저한 변화 등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삭제 할 것을 개선권고 함

(8) 위치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강화)

■ 심사내용

-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특수전화번호서비스에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122”를 추가함
- ☞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청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재난관리기본법 상 소방방재청과 더불어 해양경찰청이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급박한 해양사고 등의 위험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 위치정보사업자에 별도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함

(9)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강화 1, 신설 2)

■ 심사내용

- 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현행은 통신위원회가 재정사건에 대하여 물건의 제출요구 영치,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 수집, 조사 등이 필요하고, 피규제자가 적고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생협력지수를 산정·공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신설)

☞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06.9)”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실태조사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현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기 규정된 내용을 IT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기본법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

-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자는 그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신설)

☞ 정보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후 그 내용을 무단 변경할 때의 벌칙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함

(10)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신설 4)

■ 심사내용

-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함(신설)

☞ 시청자에게 고화질방송을 제공하고 디지털TV방송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제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별도 이견이 없었으며, 편성비율도 정부·방송사·학계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현재도 2010년까지 수도권의 HD방송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 방송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함

○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방송을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토록 함 (신설)

☞ 당초 2010년을 목표로 추진한 방송의 디지털전환 일정이 부진함에 따라 종료일을 법제화함으로써 전환을 촉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수한 화질, 데이터방송 등 새로운 서비스 구현 및 관련 산업에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각국에서도 디지털 전환 일정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 관련 업계 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함

○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 및 아날로그 방송 종료표시 의무를 규정함 (신설)

- 정보통신부 장관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및 아날로그 방송 수신을 위한 관련 전자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여야 함
- 텔레비전수상기 및 관련 전자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아날로그방송의 종료일과 디지털방송 수신기능 여부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함
- 방송위원장 또는 정보통신부 장관은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하여 TV수상기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디지털방송튜너를 TV에 내장토록 하고, 방송종료와 관련한 안내문을 부착토록 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디지털튜너가 내장되어 출시되는 30인치 이상 TV의 경우에는 '08년부터 의무화하고 연차적으로 시행시기를 정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 점, 업체등과 협의가 완료된 점, 디지털 전환을 위해 튜너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착 시기에는 원안동의하나, 현재 미터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화면크기 규격을 인치에서 미터법방식으로 표기하고, 튜너 내장의 최초시작시기를 '08.1.1에서 '08.7.1로 6개월 늦추도록 개선 권고 하며,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경우, 현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양 기관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피규제 대상인 기업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체를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거나, 행정조치 전에 양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두어 중복규제가 발생치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재량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개선권고 함

○ 사회적 충격 완화조치 및 자료·의견 제출 요청에 따른 의무를 규정함 (신설)

-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방송위원회는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및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 송수신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홍보, 시청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방송위원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방송 수신실태 및 디지털 전환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방송위원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디지털 방송과 관련된 사업자,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하여 정부의 홍보, 시청자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필요한 조치가 막연하여 규제의 명확성에 반하므로 “홍보·시청자 지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로 구체화할 것을 개선권고 하고,

조문제목상의 “사회적 충격”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로 적절치 않으므로 순화된 용어로 사용할 것을 개선권고하며,

디지털방송 수신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중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자”라는 표현은 규제대상이 포괄적이므로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자”로 구체화할 것을 개선권고 함

(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신설)

■ 심사내용

-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공사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다만, 공사업 영위기간이 공사업 등록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공사업 영위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공사업을 등록하고 저가로 공사 수주한 후 실제로는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전매하는 부적격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현행 공사업 등록기준을 감안할 때 영업유지를 위해 연평균 1억원 이상의 공사 실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연평균 5천만~6억원까지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1억원의 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1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강화)

■ 심사내용

- 선불통화사업을 하는 별정통신 사업자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전화카드, 통화상품권 등)시 등록요건으로 이용자보호를 위해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본금 1/5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으나, 발행량에 제한이 없어 매년 보증보험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피규제자 수가 176개 별정통신사업자로 적으며, 사업자당 보험료 증가폭도 연간 1백여만원에 불과하여 원안 의결함

(13)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신설)

■ 심사내용

- 정부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웹접근성 실태조사도 추가로 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준수 수준이 미흡한 경우 해당기관에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웹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미흡 시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로 인한 규제대상이 120여개 기관에 불과하고, 소요되는 규제 비용도 635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장애인·노인 등 1,23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안 의결함

(14) 우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신설)

■ 심사내용

○ 서장을 송달하고자 하는 서장송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서장송달업자로 신고한 자로부터 필요한 경우 서장 송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던 서장 송달에 대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시장을 일부 개방함에 따라, 우편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진입절차를 마련하고, 개방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지도와 자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장송달업자로 진출하려는 사업자가 약 200여명에 불과하고 규제로 인하여 발생 되는 비용이 약 19백만원인 반면, 우편시장 독점 완화로 인하여 민간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은 약 2,50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안 의결함

(15)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 (강화)

■ 심사내용

○ SW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금액을 상향 조정함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2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10억원 이상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대기업 그룹계열 IT서비스기업들이 독점하여 수행함에 따라 공공SW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금액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임.

정부차원에서 중소SW기업에게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중소SW기업의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국가 SW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원안 의결함

(16) 전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강화 2)

■ 심사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및 신고 요건 강화와 위반 시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강화)
 - 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무선국을 신규로 개설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화함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파사용료 부과 기준이 되는 이용계약 체결내용(가입자수)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300만원→1,000만원)함
 -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처분 근거를 마련함
- ☞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자원인 전파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결과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함
- 무선국 허가사항 제한명령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강화)
 - 신고대상 무선국에 대하여도 전파법령을 위반한 경우, 폐지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변경허가 및 신고대상 무선국에 대하여도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대상 무선국이 정기검사 등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함
 - 비상사태, 혼신방지방 필요한 경우 신고대상 무선국에 폐지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함
 - 행정처분 사유의 상향 입법에 따라 세부적 처분기준 위임 근거를 신설함
 - 신고없이 불법으로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신고범위 위반과 동일하게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무선국의 폐지 또는 운용휴지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부과 근거를 마련함
- ☞ 신고대상 무선국에 대하여도 허가대상 무선국과 동일하게 법령 위반 또는 공공

목적상 무선국 폐지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규 공백을 보완하며, 시행규칙에 규정된 행정처분을 법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임
 법 집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

(17) 전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강화)

■ 심사내용

○ 주파수 할당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주파수를 대가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없으므로 심사할당의 기준을 완화하여 심사할당과 대가할당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주파수 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파수 할당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사항에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
- 할당대가 미납,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 사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할당공고 내용위반, 할당조건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적 사유로 주파수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잔여이용기간의 할당대가를 반환하고,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경우에는 잔여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도록 함
- 주파수이용권을 양수·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공공자원인 주파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주파수 할당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할당공고 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부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할당공고 이전에 주파수할당에 대한 충분한 예측 및 준비가 가능토록 사업자의 자격범위에 대한 정책방향, 고려사항, 자격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도록 개선권고 함

(18)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강화)

■ 심사내용

- 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의 정보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 한미 FTA 합의에 따라 그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나 권리자가 침해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여 소송이나 형사고발을 남발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소송비용을 감소시키는 편익효과가 더욱 크다고 판단되며 규제대상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사업자 등 3만4천 명 정도에 불과하고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며, 의견수렴 결과 제기되는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

(19)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고시 제정안 (신설)

■ 심사내용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의 내용과 형식을 정함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 세부 구성 항목 및 표기 형식은 고시 별표로 정함
 - 전자적 표시의 적용방법은 웹사이트의 루트 디렉터리에 'W3C'라는 하위 디렉터리를 만들어 파일명이 p3p.xml인 '참조파일'을 작성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파일'과 함께 저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파일' 및 '참조파일'은 'UTF-8' 인코딩 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름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파일명은 영문 및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야 함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07.7.27 공포)이 시행되면서 법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을 정하는 사항으로 고시로 정한 전자적 표시방법은 국제인터넷 표준화 단체인 W3C의 P3P 국제표준규격을 반영하여 적절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20)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 심사내용

○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금액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

- ☞ 훈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없고, 행정재량권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견수렴 결과 제기되는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원안 의결함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3)

■ 심사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본인 확인 수단을 제공토록 함 (강화)

- 유형별 일일평균 방문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토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번호에 의한 회원가입 방법을 별도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가 노출되거나 명의가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i-PIN)를 도입하는 사항임
규제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규제비용은 1개 업체당 시스템 개발비용 약 2,000만원과 연간 운용비용 400만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주민번호 누출 예방에 의한 국민의 사회적 편익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의결함

다만, 제도도입 시 시스템 설치 및 변경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업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홍보를 통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행령에서 대상 업체 선정 시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대상 범위를 정하도록 부대 권고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위법성이 중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함 (강화)

-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하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법 제28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정액으로 부과함

☞ 이동통신 가입자 등의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되어 무단 이용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

- 과태료 부과사항을 단순 절차적 의무 위반행위와 이용자 권익 침해행위로 구분하고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강화)

- 개인정보 취급방침 미공개 등 절차적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이용자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 미조치 등 이용자 권익 침해행위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개인정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 위반행위와 중요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현실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이 미미하여 원안 의결함

(22)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심사내용**

- 전기 및 전철시설의 전력유도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잡음전압 기준치를 국제표준에 맞게 0.5mV 이하로 하향 규정함

☞ 국민의 통화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 유도에 의한 잡음전압 기준치를 기존 1mV에서 0.5mV로 강화하는 사항으로, 규제대상은 KT(1개업체)이며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차폐케이블 설치비 등 연간 약 25억~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동 규제는 국제표준(ITU)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규제비용에 비하여 통화품질 개선 및 데이터 전송능력 향상 등 국민의 편익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23)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 심사내용

-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도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신주파수대역을 지정하고, 방송공동수신 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증폭기, 분배기, 동축케이블 등 장비설치방법, 성능기준을 규정함
 - 위성방송 950~21250MHz, 디지털TV 752~806MHz, FM라디오 88~108MHz

☞ 아날로그 TV만 수신이 가능한 공동시청안테나설비에 디지털TV, 위성방송, FM 라디오까지 수신이 가능하도록 매체별 주파수대역을 지정하고, 설비기준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수신설비 설치 시 추가적 비용 84억원이 발생되나 공동수신 설비 설치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해 지는 등 시청자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의결함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신설 1, 강화 4)

■ 심사내용

-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등에 대한 지분을 제한함 (강화)
 - 공익성 심사 대상에 새로이 추가함
 - 기간통신사업자(주주 포함)가 임원 임면, 영업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계약 체결 시
 -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의제법인(주주 포함)이 외국인의제 면제 요청 시
 -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의제법인(주주 포함)이 해당 외국인의제법인의 경영권을 가진 자가 외국인 아니라는 확인 요청 시
 - 공익성심사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요청 절차를 추가함
 - 심사시 공익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통신비밀 취급자의 신원조회

- 통신비밀 및 개인정보관련 시설과 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와 기록관리
- 검찰 등 사법기관의 법집행 협조를 위한 조직의 운영
-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임원 임면, 영업양도·양수 등 중요경영사항에 대한 외국인과의 계약 체결 시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한 내용을 내외국인 차별해소를 위해 내국인과 계약체결 시에도 확대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그간 국가안전보장, 공익 등을 위해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영 등을 제한하고자 심사를 받게 했던 만큼, 내·외국인 차별해소라는 차원에서 내국인에게 까지 동일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사항을 철회하거나 삭제(공익성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함

또한, 공익성심사시 관계행정기관, 민간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관계행정기관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거나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의 관계행정기관 협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 판단되어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함

아울러, 이행명령 제도와 관련하여 이행명령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보통신부 장관이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공익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 새로이 부여하고 있는 이행명령은 “검찰 등 사법기관의 법집행 협조를 위한 조직의 운영”을 “관련 책임자 지정”으로 수정하고,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공익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며

동 명령 불이행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어 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식매각 등을 명할 때 이를 불이행할 경우의 제재 수준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처벌 부분을 삭제하거나 차별화하여 완화할 것을 개선권고 함

-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인가제의 인가대상을 확대하고, 주식취득 인가조건 불이행시 제재 사항을 규정함(강화)
 - 인가대상 확대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인가 조건 불이행시 제재 : 의결권 행사 정지 또는 해당 주식 매각 명령, 명령 불이행시 하루당 소유주식 매입가액 3/1,00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 주식취득인에 대한 인가조건 불이행시 의결권행사 정지 또는 주식매각명령은 조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판단되므로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활용토록 개선권고 함
- 전기통신역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강화)
 - ☞ 별정통신사업자에게만 부과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선불통화권을 발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규제로, 사업폐업 등에 따른 이용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규제비용이 연간 15억원에 불과하여 원안 의결함
-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사항을 규정함 (신설)
 -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의무화 및 통신위 인가를 규정함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협정체결 시 따라야 할 도매제공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산정 기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토록 함
 - 도매제공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함 (도매제공시 부당한 차별적인 조건 등 부과, 협정체결 거부, 협정 불이행 등)
- ☞ 도매요금 인가제를 3년 후 신고제로 전환토록 하였고, 이동전화역무·시내전화역무의 소매요금에 대한 인가규제도 동법 시행 후 3년 내에 신고로 전환토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인하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

다만 시장경쟁이 활성화 될 경우, 도매의무제공 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동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시장경쟁상황, 도매규제 도입의 효과, 제도의 지속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위에 보고토록 부대권고 함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통신위원회에 3월 이내의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등 영업정지권을 부여함(강화)
 - ☞ 반복적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를 위한 사항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권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함

3. 기상청

집필자 : 고성균 사무관(Tel. 2100-2455, ksgyun52@opc.go.kr)

가. 2007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7년도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 2, 비중요 1)
- 심사대상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상청의 2007년도 신설규제는 1건임

< 기상청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제283차 경제2분과 (2007. 5. 17)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중요2,비중요1
계	-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중요2,비중요1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신설1, 강화2)

■ 심사내용

- 기상사업의 등록 및 취소 (강화)
 - 기상사업 등록기준에 기상감정업 또는 기상예보업 수행시는 해당 면허자를 사업소마다 1인이상 확보토록 함
 - 기상사업 정지사유에 출처명시 시정요구를 1년에 3회 이상 받은때와 감정료의 한도를 넘어서 감정료를 받은 때를 추가함

☞ 기상사업을 세분화 하고 기상관련 면허취득자를 확보하도록 등록기준을 정한 것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상예보 및 기상감정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기상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수요충족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기상감정 및 예보업무는 산업 및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신뢰구축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지제도를 강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기상사업자의 보고 등 (강화)

- 기상감정업을 행하는 기상사업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감정료를 정하여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출처명시 의무 위반시 시정요구

☞ 감정료 종류별 요율을 기상사업자가 신고토록 하는 것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상정보 제공 출처를 명시토록 하고, 위반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의 체계적·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피규제자는 13개 기상사업자 이고 규제비용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기상감정사 및 기상예보사의 면허 및 취소 (신설)

- 기상감정은 기상감정사가, 예보는 기상예보사가 수행토록 함
- 기상감정사 및 기상예보사 면허발급 대상 기준 설정
 - 기상분야 기술사자격 취득자
 - 기상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2년이상 기상관련분야 종사자
 - 기상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 면허를 받은 자는 매 5년 경과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감정사 등이 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
- 기상감정사 등이 다음의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다만,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이수할 때 까지 업무정지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감정을 하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기상현상을 감정하는 행위
- 다음의 경우 면허취소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판명된 때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상감정, 기상예보업무를 행하게 한 때
 -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기상감정사 등이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 부터 15일내에 면허증 반납

☞ 기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국민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전문인력이 전담토록 하고, 전문적 능력을 가진 기상감정사 및 기상예보사 면허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기상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판단됨

또한, 기상감정 및 예보는 산업 및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분야로서 판단능력이 없거나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자를 결격자로 정하고,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인의결

제6절 농림 및 해양수산부

1. 농림부

집필자 : 고성균 사무관(Tel.2100-2455, ksgyun52@opc.go.kr)

가. 2007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사료관리법 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 도시와농어촌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정안, 인삼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종자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19개 법령에 대해 신설 9건, 강화 30건, 내용심사 27건, 총 6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중요규제 8, 비중요규제 58)

○심사대상 66건 중 5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고, 6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농림부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9건임

< 농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사료관리법 개정법률안	제273차 경제2분과 (2007. 1. 18)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3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	제275차 경제2분과 (2007. 2. 15)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5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276차 경제2분과 (2007. 2. 23)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279차 경제2분과 (2007. 3. 29)	원안의결 3	신설 1, 내용심사2 *비중요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82차 경제2분과 (2007. 5. 10)	원안의결 3	강화 2, 내용심사1 *비중요 3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개정안	제284차 경제2분과 (2007. 5. 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도시외농어촌의교류촉진에관한 법률 개정안	제285차 경제2분과 (2007. 5. 3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1, 비중요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제285차 경제2분과 (2007. 5. 31)	원안의결12	강화 7 내용심사 5 *비중요 1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98차경제2분과 (2007. 9. 12)	원안의결 2	강화1, 내용심사1 *비중요 2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98차경제2분과 (2007. 9. 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동물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299차경제2분과 (2007. 9. 19)	원안의결 6 개선권고 2	내용심사 8 *중요4, 비중요4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00차경제2분과 (2007. 10. 10)	개선권고 2	신설 2 *중요 2
인삼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04차경제2분과 (2007. 11. 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양곡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05차경제2분과 (2007. 11. 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	제305차경제2분과 (2007. 11. 14)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종자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06차경제2분과 (2007. 11. 2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1, 비중요1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06차경제2분과 (2007. 11. 21)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07차경제2분과 (2007. 11. 28)	원안의결 5	강화 2 내용심사 3 *비중요 5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10차경제2분과 (2007. 12. 20)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계		원안의결 61건 개선권고 5건	신설 9건 강화 30건 내용심사 27건 *중요8, 비중요58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사료관리법 개정법률안 (강화3)

■ 심사내용

○ 사료제조업 등록 및 등록시설변경 신고 (강화)

- 현행은 사료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시설 변경시 신고하도록 규정 하던것을 제조업등록 및 시설변경신고 외에 휴업·폐업·재개업 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함

☞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 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하는 것은 면허세 부과에 따른 민원 해소차원에서 바람직하며, 타 법률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또한, 피규제자 수가 사료제조업체 973개소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없으며, 규제에 따른 이견 제기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강화)

-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고시로 운용하고 있는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 사료공장 지정요건과 절차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농림부장관은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제조업체를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사료공장으로 지정
 -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함
 -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지정명령 사유 규정
-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지 못한 업체의 동 명칭 사용금지 규정

☞ 현행 고시로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를 농림부령으로 상향 입법화함으로써 규제 투명화에 부합하는 사항이며, 규제대상이 94개소에 불과하고 규제비용이 추가되지 않으며, 규제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강화)

- 현행 농림부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규정
 - 사료검정기관에서 확보하여야 할 시설 규정
 -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사유 규정
 1.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현행 농림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상향 입법하는 내용으로 규제투명화에 부합하며, 규제에 따른 이견 제기가 없고 피규제자도 사료검정기관 6개소에 불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 (신설2, 강화3)

■ 심사내용

○ 식물 검역대상물품 안전관리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와 보관하는 자는 병해충 전파 방지를 위해 밀폐형 컨테이너에 넣는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 또는 보관하여야 함
- 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송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이나 국내에 일시 체류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도 병해충이 존재하고, 또 전파될 수 있으므로 병해충 전파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규제대상이 약 1,000여명(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관하거나 수송하는 자)에 불과하고 규제에 따른 이의 제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수입식물 검사장소 지정대상 확대 (강화)

- 수입식물검사는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실시하고 검사장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현행 관세법에 의한 지정장치장은 검사장소로 인정하고 있으나 지정장치장도 수입 식물검사장소 지정을 받도록 함
- ☞ 현행 지정장치장은 수입식물 검사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아왔으나 검사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여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지정장치장도 검사장소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지정장치장 36개소에 불과하며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규제에 따른 이의 제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검역처분대상 확대 (강화)
 -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되는 수입 금지품에 대하여 수입 후 관리방법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반송 등 조치를 명함
 - ※ 현행 폐기 반송 등 조치를 명하는 경우
 -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 등
 - 수입항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 수입금지품 등
 - 격리재배 명령을 위반한 종자에 대해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 또는 이와 동등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 ☞ 시험연구용 등으로 수입되는 수입금지품에 대한 관리방법 위반 시 병해충이 전파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 등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여 무단 유출하는 경우에도 병해충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폐기 등 조치가 필요하며, 규제에 따른 이견 제기가 없고 규제대상도 약 440명에 불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수출입식물 열처리업에 대한 영업신고 및 영업정지 처분 (신설)
 - 열을 이용하여 수출입식물에 붙어있는 해충을 구제하는 업(수출입식물 열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시설·장비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립식물 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 열처리업자에게 신고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함
 - 수출입식물 열처리업을 신고한 자에게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의

-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1년이상 열처리 실적이 없을 때
- 농림부령이 정하는 열처리기준 및 마크표지를 위반한 때
-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보완명령을 위반한 때
- 보완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의 세부기준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목재포장재 소독과 관련된 국제기준 제정(2002년)에 따라 수출하는 목재포장재는 열처리를 하고 열처리 표시를 한 후 수출하여야 하므로 열처리업에 대한 영업신고 요건과 위반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규제대상이 열처리업체 310개소에 불과하고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없으며 규제에 따른 이견 제기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강화)

- 식물검역관의 검사를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국내검역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소독·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식물검역관의 검사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역을 거부·방해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검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 제기가 없고 규제비용도 추가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3)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내용심사3)

■ 심사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내용심사)

-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자재의 종류와 사용조건을 국제기준에 일치시킴
- 오줌, 천연인광석,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염화나트륨, 인산알루미늄칼슘, 밀납(프로폴리스)의 사용조건과 명칭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 일부 유기농산물 생산자재의 사용조건이 국제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국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체계에 대한 국제적 위상약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저하의 우려가 있어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을 국제기준에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약 7,000명(유기농산물 재배농가)에 불과하며 규제에 따른 추가비용의 발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인증기관의 지정 (내용심사)

- 인증기관 재지정 기준과 절차 마련
 - 재지정 요건 및 심사기준과 절차는 신규지정과 동일
 -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만료 90일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
- 지위승계 신고 및 보고·점검 등의 세부절차와 범위를 규정
 - 지위승계 후 30일 이내 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인증 받은 자는 인증기관에 각각 신고
 -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인증기관, 매분기), 인증품 출하실적 등 관련자료(인증 받은 자, 인증기관 요구시) 보고
 - 비치자료 : 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심사자료, 사후관리 문서(인증기관), 영농자재사용에 관한자료, 인증품의생산 및 판매에 관한자료(인증받은 자)
- 지위승계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보고·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경고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위반정도 및 횟수별 부과기준 설정

☞ 개정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인증기관 재지정 절차, 지위승계 신고 및 보고·점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규제에 따른 이의 제기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친환경농산물의 표시인증 및 기준 (내용심사)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개정법률 체계에 맞게 규정
 - 친환경농산물의 분류에서 제외된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기준 삭제
 - 무항생제 축산물과 재포장과정 인증기준 신설
- 인증기준 위반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최고 9개월까지 친환경농산물표시 사용정지 또는 최고 1개월간 판매 정지하는 행정처분 기준 설정

☞ 법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에 따른 추가비용이 없고 규제

대상도 친환경농산물재배자에 국한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다만, 시행규칙 별표7의2 행정처분 내용 중 개별기준 다항의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는 수정하도록 부대권고

(4)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신설1, 내용심사2)

■ 심사내용

○ 가축 개량기관의 지정 (신설)

- 농림부장관이 가축 개량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 육종·유전 분야의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가축개량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 관련기관·단체 중에서 축종을 정하여 지정토록 함
- 가축 육종·유전분야 석사학위 및 축산관련학과 졸업후 3년이상 근무경력, 축산 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중 1인 이상
- 사무실 확보 (30평방미터 이상)
- 전산장비(보조기억장치 200기가바이트 이상 등)

☞ 법에서 위임한 지정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피규제 대상의 수와 규제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그동안은 개량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없이 축산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함 (현재 17개기관·단체 지정)

○ 가축 등록기관의 지정 (내용심사)

〈 현 행 〉

- 농림부장관은 축산관련 기관·단체 중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 능력, 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음

〈 개 정 〉

- 농림부장관이 등록기관을 지정할 경우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함
- 가축 육종·유전분야 석사학위 및 축산관련학과 졸업 후 3년이상 근무경력, 축산기사이상 자격 취득자중 1인 이상
- 전산프로그램 전담인력 1인 이상
- 체형측정기, 간이체중기, 개체식별용 장치 및 인식기 등

- 전산실 확보(30평방미터 이상)
- 전산장비(보조기억장치 1테라바이트 이상 등)

☞ 법에서 위임한 지정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피규제 대상의 수와 규제비용 측면에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규제자수 : 19개 축산관련 기관·단체)

※ 그동안 등록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함
(현재 3개기관·단체 지정·운영)

○ 가축 검정기관의 지정 (내용심사)

〈 현 행 〉

- 농림부장관은 가축 능력의 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축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을 실시하게 함

〈 개 정 〉

- 농림부장관이 검정기관을 지정할 경우 검정대상 가축을 정하여 검정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춘 축산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토록 함
 - 가축 육종·유전분야 석사학위 및 축산관련학과 졸업후 3년이상 근무경력 또는 축산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중 1인 이상
 - 전산프로그램 전담인력 1인 이상
 - 가축의 경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 성적을 기록·분석·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구 비치

☞ 법에서 위임한 지정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피규제 대상의 수와 규제비용 측면에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그동안 검정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함
(현재 14개 기관·단체 지정·운영)

(5) 농산물관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강화2, 내용심사)

■ 심사내용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강화)

- 「식품위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생산·수입을

승인한 농산물(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를 포함)을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으로 확대함

※ '07. 3월현재 추가 표시대상 품목(3종) : 면화, 사탕무, 유채

※ 현행은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대상품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대상품목(4종) : 콩, 옥수수, 감자, 콩나물

☞ 그동안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에 한하여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 여부를 표시하던 것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안전성평가결과 국내유통이 가능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한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피규제자수(수입업자 123개업체 등) 및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지리적표시의 등록(강화)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처리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별지5호서식 개정)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특성상 현지조사를 통하여 품질의 우수성과 지리적 연관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산물 재배 전 기간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처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피규제자 수는 현재 심사중인 15개 단체(업체)이며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지리적표시 등록현황('02년~'07.1)

· 농축산물 : 보성녹차 등 27건

· 임 산 물 : 양양송이 등 11건

○ 농산물원산지표시 (내용심사)

-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은 혼합비율 순으로 3개 까지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토록 함

☞ 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의해 부정유통과 단속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피규제자 수가 약 386천 개소이며(가공판매자 등), 추가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6)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 심사내용

○ 경마장 설치 허가 기준(강화)

- 경마장 설치허가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추가
 - 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를 갖추는 것

〈 현행기준 〉

- 마방 등 마사시설 및 말의 치료시설과 그 관련시설·설비
- 조교사 및 기수와 말을 관리하는 자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설비

☞ 그동안 경마장에서 법적근거 없이 구급차를 운용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응급차량 구입·교체 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규제 대상자는 경마장 3개소('07. 5월)이고, 규제비용은 구급차 구입·운영비(1대당 약 7,250만원)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7) 도시와농어촌의 교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신설2)

■ 심사내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등 (신설)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은 마을 협의회(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

1. 사업목적, 마을협의회 대표자,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이 포함된 규약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

- 지정받은 사업자는 지정받은 표식을 해당 마을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농민주의 제조·판매 면허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류(“농민주”)를 제조·판매하려면 「주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를 받아야 함

- 안전·위생기준 준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안전,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동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을 받아야 함

- 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 다음 각호의 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6월이내 사업정지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3.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때
 6.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도농교류 확인서 발급

- 마을의 리·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또는 관광농원 사업자는 교류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농어촌봉사·체험활동 사업장에 농어촌봉사·체험 활동 사실 확인을 거쳐 교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사업자의 지도·감독

-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및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도농교류 촉진활동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제12조에 의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 ☞ 전국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채 관리·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향상과 농어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행정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선명령 요건이 불명확하여 피규제자의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바, 하위법령(부령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것을 개선권고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현황('06. 12)

· 총 386개소 : 녹색농촌체험마을190, 전통테마마을 97, 어촌체험마을 76, 아름마을23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및 취소 (신설)

- 도농교류 지원기구의 지정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 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도농교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음

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업무
5. 그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등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도농교류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농교류 지원기구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 시정명령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도농교류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도농자매결연,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도농교류활성화를 통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피규제자는 약 7개 단체('06년말)이며, 추가되는 규제 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7, 내용심사 5)

■ 심사내용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

- 도매시장법인 등 지정절차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지정 신청서류 추가(재무제표, 5년간 사업계획서, 거래 규모, 순자산액 비율 등)

- 도매시장법인 경영사업 제한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영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경영사업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이상인 경우
 2. 단기부채비율(단기부채/부채총액×100)이 90%이상인 경우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100%이하인 경우
 4.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
 5. 당해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단, 수출 제외)
- 도매시장법인이 영 제17조의6 규정에 의한 경영사업 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1개월, 2차 위반시 6개월, 3차 위반시 1년의 기간동안 경영사업의 매수를 제한 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보증금 납부

-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정 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보증금을 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함.
-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일평균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으로 함
 - ※ 현행 : 일평균거래금액의 20%
-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이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증금이 미달한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 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음.
- 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납부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시장도매인”으로 본다.

※ 현행 : 일평균거래금액의 20%로 하되, 하한 5천만원 설정
(일반적으로 6천만원 징수)

-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 승인

-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합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 신청 이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상법 제523조 및 동법 제524조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경력증명서
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 보증금 확보 입증서류

-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을 준용,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자거래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 사항
3.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5. 법제82조·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법 제86조 내지 제90조에 따른 벌칙의 사실 및 그 이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07.1.3공포, '07.7.4시행)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지정절차 및 행위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 대상은 도매법인 123개소와 시장도매인 52개소가 해당되며, 규제비용은 전자거래시스템 설치비용 등 총 38억여원이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경매사 임면 및 자격시험 관리 (강화)

- 경매사 자격시험관리

-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행하며,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인을 얻어야 함
- 시험은 제1차 선택형필기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하며,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 다만, 신속한 인력충원 필요시 변경할 수 있음.
-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 경매사 임면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그동안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사규로 정하여 운영해 오던 경매사자격시험 관리요령을 상위법령에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수는 500~600여명이며 (평균 응시자),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강화)

-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

〈 현 행 〉

- 당해 도매시장 동일업종에 속하는 유통종사자들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5/1,000~300/1,000해당액을 정하고, 부과한도액 내에서 부과

〈 개 정 〉

- 연간 거래실적을 구간별로 구분하고 구간별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 유통명령위반자의 과태료 상한액 인상 (300만원이하→800만원)
- 경매사 임면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50만원)

☞ 유통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법에서 상향조정 (500만원이하→1000만원이하)함에 따라 증액한 것이며, 경매사 임면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도 법에서 신설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규제대상은 도매시장법인 123개소, 시장도매인 52개소, 중도매인 8,835명이며, 규제비용은 '06년 가락시장 과징금 부과사례 등을 감안시 총1억원 이내로 추산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수탁거부 금지 등 (강화)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 사유에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 규격 출하 위반을 추가함

☞ '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청과물 쓰레기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행정지도를 통해 규격 출하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에 반영한 것이며, 피규제대상은 도매시장 출하자 9,976명이고, 규제비용은 38억여원(무, 배추 거래량 기준)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유통명령 발령기준 (강화)

- 생산자 단체 등이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요청서(안)를 지역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문서를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함

☞ 유통명령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 발령 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의견조회 토록 한 것은 적절하며, 규제대상은 감귤조합·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5,000여명이고, 규제비용은 제주시 감귤사례 적용시 158백만원 정도 소요되며, 이해관계인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중도매업의 허가, 인수·합병(강화)

- 중도매업의 허가 신청서류
 - 신청당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당해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로 강화
- 중도매인의 보증금
 - 중도매인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허가기간 개시일 7일전까지 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함
 - ※ 현행 : 청과부류는 정액 1,000만원, 알타리무 1,500만원
- 법인인 중도매인 인수·합병
 -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은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절차(규칙제18조의4)를 준용함

☞ 중도매업자의 건실성을 확보하고 출하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가 600명 정도이고('05년 기준 상장예외 중도매인),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22백만원에 불과하며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매매참가인의 신고(내용심사)

- 매매참가인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2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도매 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서식의 내용은 매매참가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기재하는 것이며, 피규제자 수가 642명('05년 기준)이고, 규제비용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출하자 신고(내용심사)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를 제외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6호서식의 출하자신고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법에서 위임한 신고서식을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수가 도매시장 출하자 9,976명('05 기준)이며,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안전성 검사기준 및 방법(내용심사)

- 간이속성검사결과 농약 및 유해물질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농수산물의 유통을 중지할 수 있음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출하자에 대하여는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시 1개월간, 2회 적발시 3개월간, 3회 적발시 6개월간 도매시장으로의 출하를 제한 할 수 있음
- 유통중지 절차·방법, 유통중지된 농수산물의 관리방법, 손실보상 및 제4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처리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별도로 정함

- ☞ 법에서 위임한 안전성검사 방법 및 부적합품목에 대한 조치기준 등을 정하는 것으로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며, 피규제자 수는 도매시장출하자 9,976명('05기준)이고, 규제비용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표준정산서 (내용심사)

- 표준정산서 내용중 거래방법(매수, 위탁, 중개)을 거래형태(매수, 위탁, 중개) 및 매매방법(경매, 입찰, 정가, 수의매매)으로 변경
- ☞ 표준정산서 내용 중 매매방법을 추가한 것은 도매시장의 거래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규제대상은 도매시장법인 등 1,400여명 이고, 규제비용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조정(강화)

- 시설사용료 징수대상에 중도매인 사무실은 1000분의 10 이내, 기타시설은 1000분의 50 이내 추가

☞ 중도매인 사무실은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어 10/1,000으로 조정, 기타시설은 현재 시설별로 1,000분의 60에서 1,000분의 100을 초과하고 있어 1,000분의 50으로 명확히 정한 것이며, 피규제자 수가 415명(사무실임대자)이고, 추가 규제비용은 약 4억여원으로 추정되며,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미미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 실시(내용심사)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1. 중앙평가결과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중앙평가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결과 당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점수의 2/3 수준 이하인 경우
- 시·도지사는 도매시장 공판장이 중앙평가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음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출하자 보호를 위하여 평가를 거쳐 부실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규제 대상은 도매시장법인(123개) 및 시장도매인(52명)이며,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9)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내용심사1)

■ 심사내용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제한 (내용심사)

- 수입금지대상 병해충 및 대상지역과 대상식물 추가
 - 금지병해충으로 판명된 병해충 9종을 주요 관심금지 병해충에 추가
(*Anastrepha distincta*, *Anastrepha pseudoparallela*, *Anastrepha striata*, *Bactrocera cucumis*, *Bactrocera fraunfeldi*, *Bactrocera kraussi*, *Bactrocera murrayi*, *Bactrocera opiliae*, *Grapholita prunivorana*).
 - 금지병해충의 기주식물로 확인된 금지식물 및 지역 추가
(참나무역병 관련 2개속 : *Kalmia* spp, *Pieris* spp)
(뿌리썩이선충 관련 6개속 : *Philodendron*속, *Maranta*속, *Stromanthe*속,

Ctenonthe속, Persea속, Strelitzia속, 금지지역 : 팔라우, 괌, 미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 ☞ 현재 농림부 고시(제2006-51호, '06.9.29)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병해충(9종)을 규칙에 반영하는 것이며, 식물방역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소장이 긴급 수입제한조치 식물과 지역을 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수 및 규제비용이 중요규제수준에 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검사장소의 지정 및 취소(강화)

- 수입식물 검사장소 관리기준 강화

- 화물관리번호별로 띄워서 장치
- 화물관리번호별로 수입일, 수입선명, 목록번호, 품명, 수량 등이 기재된 표찰 부착
- 목재류 외의 식물도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천막 등으로 덮어 안전하게 보관 하도록 함

- ☞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규제자수 및 규제비용이 중요 규제수준에 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 심사내용

○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변경 및 취소(신설)

-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시 다음의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 하는 경우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 하는 경우 전량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함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을 필하고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사육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농장일것

-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하여는 년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함
 - 지정조건 및 지정기준 미이행시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 지정신청 및 주요내용 변경 신청서류 및 서식을 정함

☞ 법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것으로, 퇴·액비의 자원화 조건 등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려는 이 법의 입법취지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건으로 판단되며, 지정기준은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인용한 것이고, 피규제자는 연간 150여개 농장으로 추정되며, 규제 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1)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8)

■ 심사내용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심사)

- 등록대상동물을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로 정함
 - 등록대상동물을 10마리이상 사육하는 경우 동물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등록·변경등록과 관련한 기준을 정함
 - 등록대상 : 가정에서 사육하는 3월령 이상의 개
 - 등록기간 : 3월령이 된 날 또는 취득후 30일 이내
 - 수수료 : 시·도 조례로 정함
 - 그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동물등록(신규·변경) 및 분실·폐사신고서식을 정함

☞ 동물보호법('07. 1. 26공포, '08. 1. 27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등록 기준 등을 정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하면서 개, 고양이 등을 키우다가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사례 역시 급증(45천두('04) → 69천두('06))하고 있어 유기된 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쓰레기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유기된 동물 발견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등록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동물소유자 관리의무 (내용심사)

-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동물 등록번호(등록한 경우)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함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착용하여야 함(7세미만 어린이는 성인동반, 맹견은 성인만 잡도록 함)
- 도사견 등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함 (다만, 3월령 이하인 경우 입마개는 아니할 수 있음)
-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사육관리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함
 - 일반원칙, 사육환경, 건강관리, 훈련 등

☞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공공장소 등에서의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식표부착, 목줄·입마개 착용 등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동물 학대행위 등 금지 (내용심사)

-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구체화
 - 살아있는 동물을 그 동물의 습성과 생태환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법령의 근거없이 열·전기·물 등의 물리적 방법 또는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사람의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가 현저하게 크지않으며, 적절한 대체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에 따라 죽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한 인도적 처리방법에 따르지 않고 죽이는 행위

☞ 법에서 위임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및 상해 행위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규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규제대상은 불특정 다수 국민이며,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미미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내용심사)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동물실험시설 기관을 정함
 1.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

- 행정기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6.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
 7. 「약사법」 제31조제5항, 「화장품법」 제4조에 의한 비임상시험의 성적서 발급시험기관
 8.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 등의 시험성적서 발급 연구기관
 10.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11.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12.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13. 「상법」상 회사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14. 그 밖에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실험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실험시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민간단체 규정
 - 동물보호를 설립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 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동물보호 민간단체, 학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주관하는 동물보호·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 동물실험윤리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 동물실험시설의장은 하나 이상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단독설치가 부적합한 경우 다른 위원회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설치운영
 -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위원회 설치·폐지 및 운영실적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무분별한 동물실험의 억제 및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모든 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위원회를 위탁 및 공동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규제대상 및 규제비용은 중요규제에 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내용심사)

-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 신청
 1. 사업자 등록증
 2. 시설·인력 내역 및 시설배치도
 3. 건축물관리대장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필증(장묘업)
- 동물판매업·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 동물판매업 영업장 면적은 19.8㎡이상, 사육농가의 실내영업장은 26.4㎡이상, 실외영업장은 39.6㎡이상
 - 납골시설은 100개이상 납골함 비치
 - 100마리이상 관리 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자 외에 종업원 1인이상 고용
 - 화장장에는 소각시설 전문인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동물판매업·장묘업의 준수사항
 - 2월령 미만 동물 판매금지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미만 어린이에게 판매금지
 - 판매시 동물이력 등이 표기된 계약서(판매증명서)를 교부하고 2년이상 보관
 - 동물화장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 관련규정 준수
 - 동물사체 화장시 소각증명서를 교부하고 사본을 2년이상 보관
 - 소각작업 상황을 촬영, 1년이상 보관 등
- 동물판매업자·장묘업자 교육
 - 신규교육 : 6시간(등록관청이 지정한 날 이내)
 - 보수교육 : 매년 4시간

- 종업원 : 교육받은 영업자가 전달교육 후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존
- 휴업·재개업·폐업 또는 변경신고

☞ 법에서 위임한 동물판매업 및 장묘업의 등록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 위해 방지와 동물사체의 인도적·위생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등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다만, 시설 및 인력기준에서 영업장 면적, 납골함 수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특별히 규제할 실익이 없는 경쟁 제한적 규제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하며, 100마리 이상을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종업원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종업원 고용여부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영업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하고, “소각시설에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1인이상” 규정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폐기물 관리법상 소각시설의 기술관리인기준 등을 준용하여 기술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 함

또한, 판매계약서(판매증명서) 및 소각증명서 사본을 일정기간 이상 보관토록 하는 것은 특별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년 이상 보관의무는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하며, 피교육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수 교육은 2년마다 8시간 받도록 개선권고 함

○ 동물보호감시관 등 직무 거부금지 (내용심사)

- 동물보호 명예감시관 위촉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 농림부장관이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1. 제6조제2항의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당해 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2.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동물보호 명예감시관 해촉사유
 1. 명예감시관을 추천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
 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명예감시관의 직무범위

1.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동물보호 감시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법에서 위임한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기준과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자격기준과 기본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위촉토록 한 것은 제도의 원만한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동물보호를 위한 전문지식을 갖고 감시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를 단지 민간단체를 탈퇴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촉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함

○ 동물소유자, 동물판매업자·동물장묘업자 등에 대한 지도·명령 등(내용심사)

- 법령위반 동물소유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사항을 규정함
 - 시설개선 등 즉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토록 함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중지
 2.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및 이행
 3.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방지 대책의 강구 및 이행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5. 동물에 대한 굶주림의 방지 해소 등 위해 요인의 제거
- 등록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함

☞ 법에서 위임한 시정명령 및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규제대상이 불특정 국민이고,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없으며,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심사)

-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7조제4항에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	법제26조제1항제1호	50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장	법제26조제1항제2호	50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제26조제1항제3호	30
4. 법 제19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법제26조제1항제4호	50
5.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법제26조제1항제5호	30
6.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26조제1항제6호	50
7.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26조제1항제7호	30
8.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법제26조제2항제1호	20
9.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법제26조제2항제2호	10

※ 비교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범위내에서 위반행위별로 정한 것으로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규제대상이 불특정 국민이며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2)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안 (신설 2)

■ 심사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취소 등 (신설)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 농업경영 체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품목, 경영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농지정보, 재배농작물, 축산정보 등)

- 경영규모 등 중요사항 변동이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
- 미등록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업생산성 향상 또는 농업소득 안정에 관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 등록의 취소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2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제한
-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체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정보의 보호

- 등록수집된 자료는 농업경영체 육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목적이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 등록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됨

- 관련정보 조사 협조

- 농업인등은 등록 및 등록취소 업무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조사 행위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최근 FTA체결 등으로 인한 개방확대와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의무등록이 아닌 자율등록제로 추진하고, 선진 외국에서도 유사한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원안의결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시 등록대상 범위 등을 최대한 단순화 할 것을 부대권고 함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나, 가축전염병예방법(300만원), 통계법(100만원), 지적법(50만원) 등의 유사입법 사례와 피규제자가 농업인임을 감안할 때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100만원 이하(변경신고는 50만원)로 낮출 것을 개선권고 함

○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제한 (신설)

- 농업법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농업법인이 아닌 자가 농업법인의 명칭 등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유사명칭 사용금지 는 유사명칭의 포괄성으로 인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규제이나,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인으로 최근 이를 사칭한 불법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의하되, 유사명칭이 자의적·포괄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법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로 개선권고

(13) 인삼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강화2)

■ 심사내용

○ 인삼류 제조업의 신고 등 (강화)

- 원산지표시방법 및 행정처분기준
 - 인삼류 원산지 표시방법과 판정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하고
 -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기준에 원산지 표시위반을 추가함
- 인삼류의 제조기준 강화
 - 인삼류 일반검사 기준인 비소, 중금속,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유통시킬 수 없도록 제조기준 추가

- ☞ 법에서 인삼류 원산지 표시 의무규정을 등에 따라 표시방법 및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500여개 인삼류 제조등록업체이며,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원안의결

○ 인삼류의 검사 및 관리 (강화)

- 자체검사업체 기록서 보존

-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검사 후 다음 각호의 검사관련 기록서를 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삼종별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해야 함

1. 원료인삼구입대장
2. 제조관리대장
3. 검사관리대장
4. 검사필증수불대장
5. 농약잔류검사대장
6. 미생물검사대장

- 인삼류 검사원 교육

- 인삼류 검사원에 대한 교육은 인삼류검사기법·안전성확보 및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 교육시간은 연간 6시간 이상으로 함.
-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재편찬, 실험실습 등 교육경비를 받을 수 있음

-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 기준 등 강화

- 별점 환산지수 5점이상 10점미만인 경우 자체검사 정지(현행은 시정명령)
- 재검사 명령기준 강화
- 검사수수료 인상(농약잔류검사 4만원이하 → 6만원이하)

-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시행령 별표2)

- 자체검사업체의 검사기록서 보존의무 등 신설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 추가

☞ 법에서 위임한 검사기록서 보존 및 검사원 교육시간 등을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500여개 인삼류 제조 등록업체이며,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4)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 심사내용

○ 양곡가공업자 행정처분기준 추가(내용심사)

-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원산지표시 의무,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의무, 허위표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함

· 행정처분기준 내용

구 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의무 위반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허위표시 등 금지 의무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 ☞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원산지표시, 유전자변형표시, 허위표시금지 규정은 국민의 건강에 중요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농산물을 대량으로 가공·유통하는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도 동 의무규정을 준수토록 한 것이며,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현행 양곡관리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규제자는 1,350여개사(양곡가공업체)이며, 추가되는 규제 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5)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강화4)

■ 심사내용

○ 우수농산물 인증관리제도 개선(강화)

- 우수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려는 자에 대해 생산자 지정을 하고, 생산자 지정을 받은 자가 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을 우수농산물 인증표시
 - ※ 현행은 생산자 지정 없이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인증
- 우수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 인증기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지정 신청
 -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추진 시 지정취소, 지정 취소 된 후 2년 이내 재지정 불가

- 우수농산물 생산자 지정제도 신설
 - 우수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려는 자는 우수농산물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 지정취소후 1년 미경과자 및 우수농산물 인증표시·사후관리 관련 벌금이상형 확정 후 1년 미경과자는 신청 불가
 -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2년이내 해당품목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년생 농산물 등은 농림부령으로 별도규정)
 - 계속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2년마다 기간 만료전에 재지정 신청토록 함
 - ※ 현행 우수농산물 유효기간은 1년임
 -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우수농산물 관리기준 미준수시 지정 취소

-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정
 - 관리시설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마다 기간 만료전에 재지정 신청토록 함
 -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후 1년 미경과자 재지정 불가

- 인증기관 등 지위승계
 - 우수농산물 인증기관, 생산자, 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망, 권리·의무의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지정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보고 및 점검 등
 - 농림부장관은 필요시 우수농산물 인증기관, 관리시설 운영자, 생산자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보고·점검·조사시 인증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기피해서는 아니됨
 - 조사, 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우수농산물 인증제도를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8,000여명이며(농가 및 인증기관, 관리시설),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

분류, 원안의결

○농산물이력 추적관리제도(강화)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 및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자 명확화
 - 등록대상 : 생산·단순가공·포장(재포장 포함)하는 자
 - 관리기준(입고·출고, 관리내용 기록보관 등) 준수 의무자
 - : 생산·단순가공·포장·저장·판매하는 자
 - ※ 현행대상 : 생산·유통·판매하는 자
-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후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3년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등록
- 농림부장관은 필요시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 안전문제 발생 등 필요시 추적을 통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를 위한 제도로 피규제자는 15,700여명이며(생산자, 유통판매자),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 농산물안전성 검사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 ※ 현행은 검사기관 지정제도가 없음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6월이내 업무정지사유 규정
 -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취소)
 -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 그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하는 경우(취소)
- 지정취소 후 1년이내 재지정 불가

☞ 검사기관을 활성화시키고 검사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식생활의 안전에 기여코자 하는 제도로 피규제자는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이며(87개정도 추정), 규제 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농산물 검사기관 지정 등 (강화)

- 농산물 검사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추가)
 - ※ 현행 취소 및 정지사유
 -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검사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 ☞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산물 검사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 피규제자는 3개 지정검사기관(농협, 곡물협회, 양곡가공협회)에 불과하며,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6)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1, 강화1)

■ 심사내용

○ 품종보호작물에 대한 자가채종 제한(신설)

< 현 행 >

- ① 법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채종하는 때에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포장에 심을 수 있는 최대 종자량으로 한다

< 추 가 >

- ②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 의한 농민의 자가 채종을 제한할 수 있음

- ☞ 현행법령상 품종보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가채종 범위를 당해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포장에 심을 수 있는 최대종자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한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범위에 대해서는 자가채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품종육성자의 권리보호와 국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품종보호출원 및 품종목록등재, 생산·수입판매신고시 유전자변형(GMO)품종의 환경위해성 평가서 확인제도 신설 (강화)
 - 유전자변형(GMO)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출원 및 국가품종목록등재 신청시, 생산·수입 판매 신고시에 각각 '환경위해성 평가확인서'를 첨부토록 함
- ☞ 유전자변형 농산물 종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하여 일반국민들의 안전과 농산물에 대한 신뢰향상을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는 품종보호 출원자 등 3,000여명이며,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7)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3)

■ 심사내용

- 농업유전자원의 분양승인, 취소 (내용심사)
 - 농업유전자원 분양승인
 -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책임기관의 장(농업유전자원 연구소장 또는 산림종자관리원장)에게 제출
 - 분양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를 완료한 때에는 활용결과 보고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분양승인 취소
 - 부정한방법이나 승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함
 - 취소된 자는 분양받은 유전자원을 2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법에서 위임한 농업유전자원 분양승인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하고, 불법으로 승인 받은 자 등에 대한 취소절차 및 과태료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농업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품종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등(700여명)이며,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국외 반출 승인·신고 및 취소 (내용심사)

- 국외 반출 승인·신고

-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승인 신청서를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또는 산림종자 관리원장에게 제출
- 반출승인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수집된 도입종,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 국내육성종, 외국과 협약에 의해 반출되는 유전자원(재래종·야생종제외)을 반출시에는 반출14일 전까지 신고

- 국외 반출승인 취소

- 부정한 방법이나 승인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함
- 취소된 자는 반출승인이 취소된 유전자원을 2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

- 반출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반출한자에 대해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법에서 위임한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취소 절차 및 무단 반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농업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품종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등(700여명)이며,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취소, 지도·감독 (내용심사)

-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첨부서류)를 농업유전자원연구소장 또는 산림종자 관리원장에게 제출

1. 농업유전자원 보유 현황
2. 농업유전자원 관리인력 현황
3. 농업유전자원 보존시설 및 보존포 현황
4. 농업유전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서

- 책임기관의 장은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시정명령 불이행시 지정 취소
- 자진취소 희망자는 취소요청서 제출.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서 반납

-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도·감독
 -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보존·관리 등의 수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 및 기준 등과 관리기관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피규제자가 대학연구소 등 30여 개소에 불과하며,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8)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강화2, 내용심사3)

■ 심사내용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내용심사)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변경
 -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별표16]의 기준을 갖추어 신청
 - 기관명, 대표자 등 변경시 및 휴지·폐지·재개시 신청
 - 가축병성감정실시 실적제출 및 통보
 - 월별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및 전산망 입력
 - ☞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가축병성 감정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등 운영규정을 투명화 차원에서 농림부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각 수의과대학 등 17개소에 불과하고, 규제비용이 없으며,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검역시행장 지정 등 (강화)
 - 검역시행장 지정
 - 검역시행장 지정대상 : 수입동물(야생조수류, 초생추, 실험용동물)
수입축산물(육류가공장, 보관창고, 원피가공장 등)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 등
 -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별표17]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청

-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 자격 등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심신장애, 전염병환자, 65세이상, 다른직 겸직자는 결격
 -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교육·임무 및 업무수행결과 보고사항 규정
 - 검역시행장 관리인 준수사항 규정

- 검역시행장 관리
 - 검역시행장 지정기간 : 동물 3월이내(당회분에 한함), 축산물 2년이내
(다만, 도축장, 가공장, 식용축산물 보관장은 제외)
 - 검역시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검역물 규정
 - 검역시행장 지도·감독사항 규정

- 검역시행장 시정명령 등
 - 시정명령 및 취소기준 설정
 - 일정기간 정지 : 가축전염병 발생이 만연되어 검역업무 지장초래시 해소시 까지,
검역물을 고의로 검역창고에 입고시키지 않아 검역업무 지장
초래시는 3개월간
 - 지정취소 : 지정받은 자가 6개월이상 계속하여 지정검역물을 취급하지 아니한 때
(현행 정지1월)

- ☞ 현행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를 부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신설·강화내용은
없음, 피규제자가 217개소(현행 검역시행장)이며,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원안의결

○ 소독설비 및 실시 등 (내용심사)

- 소독설비 및 실시 대상에 계란집하장 추가
 - 시행규칙[별표1](소독설비의 설치기준)
 - 자. 축산법에 의한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 (1) 계란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
분무 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 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 4호 라목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 운영자

☞ 법에서 소독설비 설치 대상으로 계란집하장을 추가함에 따라 설치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조정한 것으로 피규제대상이 60여개소에 불과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소각 또는 매몰 기준 (강화)

- 소각 또는 매몰기준에 사체 등의 운반기준 추가
 - 1) 운송차량은 사체 등의 찢물 등이 흘러내리지 않고 노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함
 - 2) 사체운반차량은 운송전 세척, 소독 조치
 - 3) 운송차량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 담당공무원 탑승 운송

☞ 동물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가 중요규제 수준에 미치지 않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임차비 등),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피규제자 : 약216천호(가축사육농가 : 소199천호, 돼지11천호, 닭6천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내용심사)

- 여행자 휴대품(지정검역물)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단서규정 신설
 -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체류기간을 감안하여 의견진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현행은 10일이상 의견진술 기회부여
- 법제36조1항 단서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 단기 체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단서규정 신설은 과태료 부과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가 29천여명에 불과하고, 규제비용이 없으며,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9)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강화4)

■ 심사내용

○ 영업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강화)

- 포장유통 대상 확대
 - 포장유통 대상을 닭, 오리 1일 도축수 8만수이상 도축장에서 5만수 이상 도축장으로 확대
-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실시결과를 1년간 보관토록 함 (현행: 매월 1시간이상 위생교육 실시)
 - 식육판매 표지판에 식육 부위등급용도 및 그램당 가격을 표시토록 하던 것을 도축장명을 추가하여 표시토록 함
 - 축산물 가공업, 포장처리업자가 TV 등의 광고시 제품명 또는 업소명을 표시토록 하던 것을 제품명과 업소명을 함께 표시토록 함
 - 축산물 판매업자가 TV등에 축산물 광고시 제품명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함께 표시토록 함 (현행은 제품명만 표시)

☞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대상자 확대는 '06. 8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07년 : 8만수, '08년 : 5만수, '09년 전면 시행)
 피규제자수 및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수준에 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 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가축의 도살·처리기준(강화)

- 도체에 사용할 소독제와 오리 등의 도축시 잔모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처리제는 식품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함
- 위반시 행정처분기준 추가
 - 1회 위반 영업정지 15일, 2회 위반 1월, 3회 위반 2월
 - ※ 현행 : 가금의 털은 도체를 식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거하되, 도체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국민보건 향상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피규제자는 166개 도축장이 해당되며,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수입축산물 신고 (강화)

-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대상 추가
 -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로 부터 1년이내에 수입하는 모든 축산물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함
 - ※ 현행 :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 된 사실이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정밀검사 실시
- ☞ 수입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 및 수입판매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서 피규제자는 축산물 수입 판매업자(약2,500명)중 극히 일부가 해당되며,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도축업 등의 영업시설 기준 (강화)

-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신설 및 시설기준 설정
 -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을 신설하고, 그 시설기준을 정함
 - 시설기준(별표10)
 - (5) 축산물유통전문 판매업
 -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나)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 ☞ 축산물가공품 유통형태 다양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그 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는 대형마트 등 유통전문업체(약17개소 추정)이며, 추가 규제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제시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 산림청

집필자 : 고성균 사무관(Tel.2100-2455, ksgyun52@opc.go.kr)

가. 2007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6개 법령에 대해 신설 7건, 강화 5건, 내용심사 6건 등 총 1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중요규제 2, 비중요규제 16)

○심사대상 18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고, 1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산림청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7건임

< 산림청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정안	제274차 경제2분과 (2007. 2. 1)	원안의결 6	신설 6 *중요1, 비중요5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제275차 경제2분과 (2007. 2. 1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1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	제281차 경제2분과 (2007.4.26)	원안의결 2	신설 1 내용심사 1 *비중요2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82차 경제2분과 (2007.5.10)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	강화 4 내용심사 1 *중요1, 비중요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제287차 경제2분과 (2007.6.14)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 비중요 2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08차 경제2분과 (2007.12. 5)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계		원안의결 17건 개선권고 1건	신설 7건 강화 5건 내용심사 6건 *중요2, 비중요16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부실조합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신설)
 - 산림청장은 부실조합 및 임원에 대하여 부실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고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해임,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사업정지, 계약이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계약이전의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관리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신문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자료의 보관·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부과
- ☞ 적기 시정조치는 부실산림조합에 대해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조합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금자 및 조합원을 보호하는 제도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는 부실조합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과 임원에 대해 강제하는 것으로 적기시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체결 및 불이행시 징계요구 (신설)
 - 부실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당해조합이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부실조합의 임직원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약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당해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직원의 해임·직무정지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 자금지원을 받은 조합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은 부실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자금지원을 받고도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규제대상은 산림조합 143개소에 불과하며 규제비용이 추가되지 않고, 규제에 따른 이의 제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요구 등 (신설)

-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부실조합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당해 조합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규제에 따른 이견 제기가 없고 규제비용도 추가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예금 등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 (신설)

-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 등에 대한 보험료를 상호금융예금자보호 기금에 납부하여야 함
- 보험료의 납부방법·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험사고시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규제에 따른 이견 제기가 없고 규제비용도 연간 약25억원에 불과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보험사고 통지의무 등 (신설)

-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과태료 2천만원 이하)과 임직원 (2백만원 이하)에게 과태료 부과

☞ 보험사고를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합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험사고로 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규제에 따른 이견 제기가 없고 규제 비용도 추가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 (신설)

- 관리기관은 조합에 대하여 당해 조합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당해조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은 조합이 보험가입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해조합을 대리하여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조합 임직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당해조합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며, 규제에 따른 이견 제기가 없고 규제대상이 143개 조합에 불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내용심사)

-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인 지역의 해당 읍·면·동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생산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범위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의 읍·면·동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생산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규제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이견 제기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1, 내용심사1)

■ 심사내용

○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내용심사)

〈 현 행 〉

-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 수목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적합시 승인

〈 개 정 〉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 시설기준과 함께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지 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기준을 정하여, 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

※ 검토기준

-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전시·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 등
-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여부, 차량 등의 진출·입로 확보여부 등
- 전문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등

- ☞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 사업의 구체성·타당성 및 부지확보·입지 여건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명확히 하여 사업지연 및 부실 등의 행정낭비를 방지·개선하려는 것으로, 규제대상이나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의제기가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신설)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인증하기 위한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에 대한 인증기준 설정
 - 교육시간 : 총 1,440시간 (이론 480시간, 실습 960시간)
 - 교육과목 : 식물학, 생태학, 토양학, 재배학, 식물보호학, 육종학, 조경학 등
 - 시 설 등 : 강의실 등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강사확보, 평가수단 등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 ☞ 개정법률(07. 1. 3 공포)에 따라 신설된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규제대상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목원에 국한되고(2개소 예상)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규제비용(851백만원) 규모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4)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강화4, 내용심사1)

■ 심사내용

○ 공익용 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 공익용산지 내 설치허용 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삭제

〈 현 행 〉

- 공익용 산지 내 설치허용시설 규정
 - 국가,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시설 (농림부령으로 정함)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시설
 -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산지 중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는 전용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임업용 산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공익용 산지에서도 설치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업체('05년 기준 4,431명)등이고, 규제비용 증가요인이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산지전용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 (강화)

-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시 표고조사서 제출
 -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시 산림공학기술자 등이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 제출을 표고 및 평균경사도 제출로 개정
- 용도변경 승인
 - 농림어업용 주택·부대시설로 전용 한 자가 비농림 어업인에게 5년 이내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지전용 등 허가시 표고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허가부서와 민원인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표고조사서를 제출토록 하므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규제대상은 연간 24,484여명(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자 21,000명, 용도변경 승인 신청자 3,484명)이며,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없고(기존의 평균경사도조사서를 활용하여 표고분석 가능), 이해관계자 이견제시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분할납부 (강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및 복구비 예치에 따른 지급보증서중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삭제

〈 현 행 〉

- 규칙제19조(대체산림조성비의 분할납부)

④ 이행보증금은 다음의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

1.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유가증권
3. 보증보험증권
4.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5. 금융기관, 체신관서, 산림조합 등이 발행한 정기에금증서(납부의무자와 세입 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 공동명의)
6.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 복구비 분할예치기간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되는 금액은 당해년도 분할예치금에 포함하여 예치하여야 하나,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분할 예치 할 수 없음

☞ 정기에금증서는 인출하여 즉시 납부가 가능하므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일시 납부가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한 분할납부의 이행보증서로서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복구비의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 3년이상 및 전용면적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인정(영제46조2항)함을 감안할 때, 그 이행보증서로서 정기에금은 오히려 적절할 수 있음

또한, 복구비의 납부방법에도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규칙제40조3항) 현행 유지토록 개선권고 함.

한편,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는 경우 추가로 예치토록 하는 차액을 분할 예치금에 포함하고 있으나, 매년 재산정한 차액을 다시 분할하여 납부토록 할 경우 지나치게 복잡하여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분에 대한 분할예치 제한은 과다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안동의

○ 토석채취허가 (내용심사)

-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도록 조치 의무 부여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으로 판정된 지역은 재해방지시설 설치 조건으로 허가
-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낙석방지시설 설치, 보호공법, 방진망 설치, 저소음·진동 발파공법 채택 등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함

〈 현 행 〉

- 토석의 굴취·채취 허가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근지역으로 보지아니 함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봄)

※ 인근지역

-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그동안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우려 여부를 인근지역 주민 동의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나,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한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조건을 부여하거나, 보호조치 내용을 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피규제대상은 710여명(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이며,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강화)

-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
 - 허가기간이 3년이상 이거나, 경관보호가 필요한 경우,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산림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시 대집행 조치
- 복구설계서의 승인 및 작성기준
 - 중간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지전용기간 만료이후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던 것을 만료 전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함
 - 복구설계서 제출시 복구지역 주변 산림조사서를 제출토록 하여 생태적 복구가

가능토록 함

- 복구공사 기간변경은 최초 복구기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대상을 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로 한정

☞ 산림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적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간복구를 통해 훼손된 산지를 조기에 복구하는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규제대상은 약 21,000명(산지전용 및 토석 채취 허가자)이고, 규제비용은 산림 조사서 추가작성에 따른 84백만원 정도이며,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내용심사)

■ 심사내용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취소 (내용심사)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사유 추가
- 산림사업법인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과 등록자격을 갖춘 건전한 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 취소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피규제대상이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360개소이며, 규제 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산림기술자 자격제도 (강화)

〈 현 행 〉

-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 추 가 〉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서 대역을 받거나, 대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금지 사항 추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추가

- ☞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법인 설립시 대여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며, 규제대상은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자 7,144명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부실조합 원인조사 및 적기 시정조치 (내용심사)

- 부실조합 원인조사

- 관리기관(산림조합중앙회)은 부실책임이 있는 조합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부실조합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적기 시정조치

- 부실조합의 기준을 정하고, 부실정도에 따른 구체적 조치사항 규정

구 분	대상기준	조치사항
① 경영개선 권고	· 순자본비율 2%미만 · 경영상태결과 4등급 · 경영상태결과 3등급이상이나, 자본 적정성·자산건전성이 4등급이하 · 금융사고, 부실채권발행 등으로 위 기준이 명백한 경우	· 인력·조직개선, 경비절감, 지사무소 신설제한 · 신규사업, 출자제한, 자기자본의 증대 · 이익배당의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 예금금리 수준 제한, 주의·경고, 감봉 등
② 경영개선 요구	· 순자본비율 -3%미만 · 경영상태결과 5등급 · 금융사고, 부실채권발행 등으로 위 기준이 명백한 경우 · 경영개선 권고를 받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	· 임원의 직무정지, 인력·조직 축소 · 지사무소 폐쇄, 통합, 위험자산 보유제한 · 임원 교체요구, 사업의 일부정지 · 합병요구, 사업의 전부·일부 양도 · 위에 준하는 조치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③ 경영개선 명령	· 순자본비율 -15%미만 ·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차입금의 상환정지 상태 · 외부자금지원 또는 차입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금융사고 등으로 위기준 해당이 명백한 경우 · 경영개선 요구를 받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	· 임원의 직무정지, 인력·조직 축소 · 지사무소 폐쇄, 통합, 위험자산 보유제한 · 임원 교체요구, 사업의 일부정지 · 합병요구, 사업의 전부·일부 양도 · 위에 준하는 조치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 ☞ 법에서 위임한 부실조합에 대한 조사 방법 및 단계별 적기 시정조치의 구체적 수단 등을 정하는 것으로 부실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및 조기 경영정상화 유도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규제대상은 144개 산림조합이며,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없고, 규제에 따른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 제기가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보험료 납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심사)
 - 조합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를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납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 신용사업보험료 : 매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times 1/4 \times 5/1000$ 이내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비율
 - 경영상태 평가결과 기준미달 조합으로 평가받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 받은 조합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2년이내) 가입하여야 함
- ☞ 법에서 위임한 보험료의 요율, 납부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농협 및 수협 구조개선법률 시행령을 인용한 것이며, 피규제자수 및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수준에 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3. 해양수산부

집필자 여기동사무관(02-2100-2456, okygd@opc.go.kr)

가. 2007년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2007년도에는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 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등 38개 법령에 대해 신설 6건, 강화 25건, 내용심사 65건 등 총 9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6건 중 1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8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해양수산부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6건임.

<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 제정안	제273차 경제2분과위 (2007. 1.18)	개선권고1 원안의결1	신설2 *비중요1
②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2007. 2.26)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③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2007. 2.26)	원안의결2	신설1 강화1 *비중요2
④ 선박직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2007. 2.26)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3. 8)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⑥ 선박설비기준(고시)개정안	예비심사 (2007. 3. 8)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⑦ 선박소방설비기준(고시)개정안	예비심사 (2007. 3. 8)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⑧ 선박구획기준(고시)개정안	예비심사 (2007. 3. 8)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⑨ 선박방화구조기준(고시)개정안	예비심사 (2007. 3. 8)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⑩ 고속선획기준(고시)개정안	예비심사 (2007. 3. 8)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⑪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78차 경제2분과위 (2007. 3.15)	원안의결1 개선권고1	내용심사2 *비중요1
⑫ 여객선운항관리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3.15)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⑬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278차 경제2분과위 (2007. 3.15)	개선권고1 원안의결6	내용심사7 *비중요6
⑭ 국제선박등록법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3.29)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⑮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5.10)	원안의결6	내용심사6 *비중요6
⑯ 수산물 원산지표시업무 처리요령(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7. 5.10)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⑰ 어장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85차 경제2분과위 (2007. 5.31)	개선권고2 원안의결2	강화2 내용심사2 *비중요1
⑱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 6.28)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⑲ 선박방화구조기준(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7. 6.28)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⑳ 선박안전법시행령및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제290차 경제2분과위 (2007. 7. 5)	원안의결6 개선권고1	내용심사7 *비중요6
㉑ 수산자원보호령 전부 개정안	예비심사 (2007. 9. 5)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㉒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요령 (고시)개정안	예비심사 (2007. 9. 5)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㉓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7.10.10)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10.10)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㉕ 선박복원성 기준(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7.10.24)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㉖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안	예비심사 (2007.10.24)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㉗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7.11.14)	원안의결5	강화1 내용심사4 *비중요5
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06차 경제2분과위 (2007.11.21)	원안의결7 개선권고3	강화1 내용심사9 *비중요6
㉙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안	제307차 경제2분과위 (2007.11.28)	원안의결4 개선권고2	신설 2 강화 4 *비중요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7.11.28)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㉕ 연안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7.11.28)	원안의결2	신설1 강화1 *비중요2
㉖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11.28)	원안의결6	내용심사6 *비중요6
㉗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08차 경제2분과위 (2007.12. 5)	원안의결8 개선권고2	내용심사10 *비중요7
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보안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08차 경제2분과위 (2007.12. 5)	원안의결3	강화1 내용심사2 *비중요2
㉙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12. 5)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㉚ 선체보호도장 잠정기준(고시)제정안	예비심사 (2007.12. 5)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㉛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7.12. 5)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7.12.26)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계		원안의결83 개선권고13	신설6 강화25 내용심사65 * 중요17 비중요79

나. 2007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 제정안 (신설 2)

■ 심사내용

-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정하고, 재해보험의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보험 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신설)

- ☞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정하고, 재해보험의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밖에 보험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규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고, 재해보험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구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사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손해평가인으로 하여금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손해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안 됨 (신설)
- ☞ 수산물양식재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절차를 정한 사항으로 보험업법을 적용 받는 민간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적정하게 손해평가를 하도록 하였기에 원안동의

(2)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어선원보험의 기본요율을 평균 6.0%인상하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에는 정책적 인하($\Delta 5\% \sim \Delta 10\%$) (강화)
- ☞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객관적으로 산출되었고, 어업재해보상심의회(공무원, 전문가, 어선주·어선원 등 이해당사자로 구성)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으로서, 보험재정 수지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본요율을 6% 인상하되, 10톤 미만의 가계 생계형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5~10% 인하하는 혜택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기에 원안의결

(3)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강화 1, 신설 1)

■ 심사내용

○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에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기존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증서 사본과 더불어 신규로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송환보험 가입증서 사본을 추가 (강화)

☞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임금채권 보장보험과 송환보험 가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증서 사본을 선박에 비치토록 하였기에 원안의결

(4) 선박직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해기사 단기양성 교육과정 이수자의 5급 및 6급 면허에 대한 한정면허(상선 또는 어선) 신설하였으며, 5톤이상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가 희망할 경우 소형 선박조종사 한정면허를 부여하고, 해기사면허 갱신시 유효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5년으로 강화(강화)

☞ 5톤이상의 대형 수상레저기구 증대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를 취득토록 하였으며 해기사 면허 갱신 유효기간 강화는(최대 6년에서 5년)는 국제기준을 반영하였기에 원안동의

(5)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가두리낙시터는 안전시설과 장비기준을 마련하고 소각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선 및 가두리 낙시터 이용객은 해양환경보전 의무를 지켜야하며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강화)

☞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두리 양식장에서의 낙시를 허용하면서 이용객들의 안전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규정을 강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6) 선박설비기준(고시) 개정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국제항해 선박의 통행시설(갑판하 통로, 상설보행로, 난간 등)과 예인 및 계류시설 기준 등을 규정 (내용심사)

☞ 선박과 인명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규정으로 국제해사기구의 의결사항을 수용하였기에 원안동의

(7) 선박소방설비기준(고시) 개정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증기공급용 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를 선박 소방시설의 소화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채취장치가 요구되지 않는 화물을 운송할 경우 연기 집적기를 보호토록 조치하는 등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규정 (내용심사)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에 대비하여 국제협약을 수용한 것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에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8) 선박구획기준(고시) 개정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고정식 가압수 분무장치가 설치된 격벽 갑판하에 있어서의 배수 및 드레인 시설 요건을 정함 (내용심사)

☞ 선박안전을 위하여 화재 진압시 가압수 분무장치에서 사용된 물이 적절히 배출될 수 있도록 배수요건을 규정하였기에 원안동의

(9) 선박방화구조(고시)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선박 방화구조 기준 (격벽 또는 갑판이 교차되는 곳 및 말단부의 처리방법)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재량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점용선 화물용 원탱크의 화물유관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내용심사)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에 대비하여 누락된 국제협약을 수용한 것으로 기존 규제를 구체화하였기에 원안동의

(10) 고속선 기준(고시)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가스 방출밸브 및 공기관은 유류나 증기의 방출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시 공기저장장치의 공기가 당해 구역 용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산가스량을 추가(40%이상) 비치하여야 하는 등 고속선 시설기준을 규정 (내용심사)

☞ 고속선 안전을 위한 규정으로 국제협약사항을 수용하였기에 원안의결

(11)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고객만족도 평가결과가 부진한 항로의 사업자에 대해서 운항시간 조정시 후순위 배정, 증선·대체를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시 후순위 배정,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시 입찰 참가자격 배제 등 불이익조치 등을 규정 (내용심사)

☞ 선사의 서비스 경쟁력강화와 여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 평가가 낮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운항시간 조정시 후순위 배정’, ‘증선·대체를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 경합시 후순위 배정에 관한 조치는 차기평가 시까지 1년 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시 입찰참가자격 배제는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시 감점 부여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해상운송의 질서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자료에 대하여 구체화 (내용심사)

☞ 해운업체가 제출할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행정규제 투명화 차원에서 적절하기에 원안의결

(12) 여객선 운항관리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연1회 확인하고, 해양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등에는 수시 확인할 수 있음 (내용심사)

☞ 기존 여객선안전관리지침(고시)으로 규정된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사항을 상위법령에 구체화 하였기에 원안의결

(1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7)

■ 심사내용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할 경우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인공증식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신청시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하는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사항을 규정함 (내용심사)

☞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채취 허가를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를 규정한 것은 타법과 유사한 수준이며 또한 허가를 받아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하거나 보관하는 자에 대한 신고의무는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호차원에서 적절하기에 원안의결

-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을 수입·반입할 경우 제출서류인 물품매도확약서, 사용계획서 등을 규정 (내용심사)
 - ☞ 상위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제출 요구 서류내용이 타법과 유사한 수준이기에 원안의결
-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규정 (내용심사)
 - ☞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기에 원안의결
-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수출·수입할 경우 사용계획서,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내용심사)
 - ☞ 해양생태계 훼손방지와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서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수출·입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의결
- 공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출입·취사·아영행위의 제한을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하였을 경우 관보에 고시(내용심사)
 - ☞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관리하도록 재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행위제한에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지침으로 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하게 되므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분할납부 횟수 등을 정함 (내용심사)
 - ☞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양부문만 이관하였기에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에 따른 통지사항,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부여,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고려 등 행정사항을 규정 (내용심사)

☞ 과태료 징수에 관한 규정내용이 타 법과 유사한 적정한 수준이기에 원안의결

(14)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국제선박의 등록시 선박명세서 사본 및 국제선박 단체협약적용 확인서 사본 등 추가제출 서류를 규정(내용심사)

☞ 선박소유자가 외항운송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운항선박명세서(국제항행여부 확인) 제출함으로써 국제선박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ILO(국제노동기구), ITF(국제운수노동자연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선박단체협약적용 확인서를 제출토록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기에 원안의결

(1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6)

■ 심사내용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준공조서 등을 제출해야 함 (내용심사)

☞ 타법과 유사한 수준의 제출서류를 규정하였기에 원안의결

○ 지정·고시된 항만재개발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경우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득해야 함(내용심사)

☞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안에서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구체화 한 것으로 타법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원안의결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 (내용심사)

☞ 부적절한 사업시행자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부실시공, 중도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도시개발법 등 타법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기에 원안의결

○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경우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함 (내용심사)

☞ 허가증을 휴대토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적법성 확보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도시개발법 등 타법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기에 원안의결

○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지정 또는 취소)을 할 수 있음 (내용심사)

☞ 법 제26조1항2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타법에서정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기에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에 따른 통지사항,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부여,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고려 등 행정사항을 규정 (내용심사)

☞ 과태료 징수에 관한 규정내용이 타 법과 유사한 적정한 수준이기에 원안의결

(16) 수산물 원산지표시업무 처리요령(고시)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재첩국, 추어탕 등 레토르트 식품을 추가(강화)

☞ 현재 대부분의 레토르트 식품제조업체에서는 포장지에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으며, 식품안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레토르트 식품을

추가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의결

(17) 어장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존·개선하기 위하여 어장면적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내용심사)

1. 어장환경조사 결과 어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어장
2. 어장환경기준중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기준이하인 어장
3.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의 오염물질이 과다하여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역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10조에 따라 어장환경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존·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어장면적 및 어장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다만 3호의 경우 어장의 오염물질 과다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집행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어장청소 대상어업을 기존 정치망어업 등 6개 면허어업에서 마을어업을 추가하고 이동성구획어업은 제외하였으며, 어장청소는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날 부터 3월 이내에 우선 청소를 실시토록 청소 횟수를 추가함 또한 어장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친환경 어장부표를 사용토록 규정 (강화)

☞ 중장기적으로는 어장청소로 어업생산성이 증대되기에 어장청소 대상어업에 마을어업을 추가토록 한 것은 적정하며, 어장청소의 시기를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우선 청소를 실시토록 하는 것은 양식어장 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할 경우 적정하고 고밀도 친환경 부자의 사용은 중장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적절하기에 원안의결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을 규정 (강화)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시설(사무실, 전용면적 20㎡)과 자본금(2억원 이상)은 타법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임.

다만 사무실 설비규정은 정보화시대에는 완화하는 추세임에 따라 삭제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등은 신설되었기에 별표 등록기준 중 3호(시설·장비)와 4호(자본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개선 권고

○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규정 (내용심사)

- ☞ 과태료 징수액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책정되었으며 징수절차도 타 법과 유사한 적절한 수준이기에 원안의결

(18)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행정처분(1년이내의 면허정지와 업무정지)을 구체화(내용심사)

- ☞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한 사항으로 유사법규인 농림부의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용하였기에 원안의결

(19) 선박방화구조기준(고시)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방화구조 기준 적용이 면제된 호수, 하천 및 항내만을 운항하거나 항행시간이 1시간 미만인 여객선 및 화물훼리(유·도선) 신규건조시 방화구조 기준을 적용하고 해상 여객운송면허를 득한 해운법상 여객선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체, 구조격벽, 갑판 등의 구조는 가연성 재질(FRP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난연성 재질(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로 건조토록 규정 (강화)

- ☞ 국내 여객선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의 방화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여객의 안전을 고려할 시 적절하기에 원안의결

(20) 선박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내용심사 7)

■ 심사내용

- 정부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대행 검사기관(선박검사, 두께측정, 컨테이너 검정, 위험물 검사 등 대행)이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와 대행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대행업무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 (내용심사)
 - ☞ 법에 규정된 대행기관의 취소·정지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구체화 한 것으로 정부 업무 대행기관의 책임있는 안전업무수행을 위하여 규정하였기에 원안의결
-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련단체에 배포할 수 있음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선박을 정함 (내용심사)

 - ☞ 선박안전설비 등의 결함으로 외국에서 출항정지된 선박의 명세를 공표하는 것은 선박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며, 최근 3년 이내 출항정지된 선박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해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기에 원안의결
- 법에서 정한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구체화
 1. 이동식 시추선
 2.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직원외 13인이상을 수용하는 해상 구조물
 3. 기름 또는 폐기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4.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해상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상구조물 (내용심사)
 - ☞ 법에서 규정한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하위법령인 규칙에 구체화 한 것으로 수상 식당, 수상공연장 등이 그동안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 수상구조물로 포함한 것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나 5호는 해양수산부장관이 1호내지 4호외에 해상구조물을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집행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선박소유자가 국제협약을 위반할 경우 항만국통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함 (내용심사)
 - ☞ 국내선박 중 국제항행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소유자가 국제협약을 위반할 경우 국제기준에 의해 외국선박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항만국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적절하기에 원안의결
- 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구체화 (내용심사)
 - ☞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과 다른 부적합 선박용 물건이 유통될 경우 확인을 위하여 안전과 직결된 품목을 위주로 보관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였기에 원안의결
- 예인선이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할때 예인 가능여부에 대한 검사사항을 구체화 (내용심사)
 - ☞ 예인선이 부선 등을 예인하는 경우 그 예인가능 능력을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방법을 구체화 하였기에 원안의결

(21) 수산자원보호령 전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기존 정수가 설정된 14개 어업종 13개어업(문어단지 제외)에 대해 현재의 수산자원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수를 축소 (4,132건→ 2,732건, 33.9% 축소) (강화)
 - ☞ '03년 허가정수 조정이후 어획량감소,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상태 평가(어획 노력량이 자원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음), 감사원 감사 지적(어업허가정수 축소 필요) 등을 고려할 경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허가정수의 축소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원안의결

(22)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요령(고시)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에 관상용 유전자변형 어류(형광 지브라피쉬 등)를 추가 (강화)

☞ 관상용 유전자변형 어류의 유전자 변형표시를 통하여 자연생태계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유전자변형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에 원안의결

(23)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으로 어장관리선을 추가하고 어선표지판에 표시하고 있는 지역별 약호를 삭제하고 전국단위 표지판(어선등록번호 부여)으로 변경 (강화)

☞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지도선(경비정)의 불필요한 임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어장관리선의 표지판 부착의무는 적절하며, 전국단위 표지판 교체는 지역이전시 어선표지판을 새로 부착함(연간 3,000척)에 따른 어업인 불편과 비용부담을 덜어주며 교체시기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을 고려할 경우 적절하기에 원안의결

(24)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기존 정수가 설정된 12개 어업중 11개어업(문어단지 제외)에 대해 현재의 수산자원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수를 축소 (67,855건→ 54,961, 19% 축소) (강화)

☞ '03년 허가정수 조정이후 어획량감소,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상태 평가(어획

노력량이 자원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음), 감사원 감사 지적(어업허가정수 축소 필요), 연안어업 감척실적 및 계획등을 고려할 경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허가 정수의 축소는 필요하기에 원안의결

(25) 선박복원성 기준(고시)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여객선의 복원성기준, 12미터이상 24미터미만 화물선 및 어선의 복원성 기준, 부유식 해상구조물(시추선 등) 복원성 기준 신설 (강화)

☞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복원성기준(IS Code)’과 ‘이동선 시추선의 건조 및 장비에 관한 기준(MODU Code)’을 수용하였으며,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배의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의 소형어선 및 화물선의 복원성 기준 연구”(06. 6~12)를 반영하였기에 원안의결

(26)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종 등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 (내용심사)

☞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채택된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성능 기준(98.5.12)” 및 “선박장거리위치추적을 위한 성능기준과 기능적요건(06.5.19)”을 수용하였기에 원안의결

(27)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강화1, 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분뇨오염방지 설치 어선 범위를 확대(최대 탑재인원 20인이상 어선 → 최대 승선인원 16인이상)하며, 선박안에서 발생한 플라스틱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폐기물의 처리

요건 등을 안내하는 플래카드와 폐기물관리계획서를 비치토록 하며, 오염물질저장 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수거·처리토록 하여야 할 선박 오염물질(기름, 유해액체 물질 등의 화물산류물 등)을 규정

☞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4(선박으로부터의 분뇨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적용 대상선박 등을 국내법에 수용하였으며,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류의 해양배출 금지는 해양환경보전에 필요하기에 원안의결

○ 선박소유자는 X류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유해액체물질을 양하한 후 예비세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함 (내용심사)

☞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을 국내법에 수용하였기에 원안의결

○ 선박에 사용하는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 사항으로 유기주석화합물이 포함된 방오도료(시스템)는 사용을 금지하며 유기주석 화합물이 포함된 방오시스템은 완전제거 또는 밀봉도장을 하여야 함 (강화)

☞ 선박의 유해방오시스템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AFC협약) (Internationa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2001) 부속서1, 부속서 4를 국내법에 수용하였기에 원안의결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해양오염방지 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정지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구체화 한 것으로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기에 원안의결

○ 업무대행에 대한 대행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기준을 정함 (내용심사)

☞ 검사 대행기관의 취소·정지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대행검사 기관의 공신력 제고와 책임감있는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며, 타법(교통 안전법, 일본 선박안전법 등)과 유사수준이기에 원안의결

(28)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9)

■ 심사내용

- 지자체장은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오염방지시설의 개선조치 등을 명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함 (강화)
 - ☞ 마산만 등 오염이 심한 해역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상위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개선조치명령은 「4대강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법과 유사한 수준이기에 원안의결
-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 능력 인증 기준을 규정 (강화)
 - ☞ 정도관리는 해양환경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필요하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타법의 정도관리 기관 및 정도 관리검증서의 취소기준 등과 유사하기에 원안의결
-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검사기관이 해양경찰서에서 민간 전문검사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폐기물 위탁자는 민간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성적서를 해양경찰 서장에 제출토록 규정 (내용심사)
 - ☞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 위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민간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해양경찰서에 제출토록 함에 따라 원안의결
- 해역관리청이 폐기물 수거·처리후 오염원인자에 청구하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 (내용심사)
 - ☞ 해역관리청이 선박에서 배출된 화물로 해양사고와 수산자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우선 선처리하고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된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을 구체화하였기에 원안의결

○ 해양시설을 신고할 경우에는 해양시설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 해양오염 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하며, 현행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 저장시설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서도 해양시설오염비상 계획서를 비치토록 규정 (내용심사)

☞ 해양시설 소유자의 해양시설 신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도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토록 추가 한 것은 국제협력(OPRC-HNC 제3조, 오염비상계획 및 보고)을 수용한 것이기에 원안의결

○ 방제분담금 부과율 인상 (징수금액 108억원 → 137억원) (강화)

☞ 그동안 분담금 설정(97년)이후 물가상승률 미반영에 따른 장비수리 및 교체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9억원을 인상한 것은 유조선 해난사고 예방에 필요하기에 원안의결

○ “폐기물 해양배출업”, “해양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 해양수거업”, “퇴적오염 물질 수거업” 등이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사망·합병 등으로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폐기물 배출 해역지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승계함. 이 경우 폐기물배출해역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승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함 (내용심사)

☞ 폐기물 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 수거업의 등록기준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기에 적정함. 다만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단서 규정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승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포괄승계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준설토 해양투기, 바다 골재채취 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간이 및 일반해역 이용협의 대상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평가대행자의 등록, 해역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해역 이용영향평가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 (내용심사)

☞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해양환경부문을 이관 또는 준용한 것으로 상기 법령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이기에 적정함. 다만, 영 68조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요령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구체화 할 것을 개선권고 함

○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해양환경관리업자 등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규정 (내용심사)

☞ 법에 위임된 출입검사 및 보고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 한 것으로 출입검사 및 보고규제는 적정함. 다만,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보고자료 중 규칙 111조 1항 9호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사항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 등”과 선박 또는 해양시설·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의 확인·점검·검사항목 중 규칙 111조 2항1호 사목 “이 법에서 정하는 오염물질 기록부와 의무이행을 위한 시설 내 비치 서류” 규칙 111조 2항4호 사목 “이 법에서 정하는 오염물질기록부와 의무이행을 위한 시설 내 비치서류 등”, 규칙 111조 2항5호 라목 “이 법에서 정하는 오염물질기록부와 의무이행을 위한 시설 내 비치 서류 등”은 포괄적 규정으로 보고 및 검사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절차와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및 징수절차를 규정 (내용심사)

☞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범위내에서 위반행위별로 정한 것으로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원안의결

(29)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안 (신설 2, 강화 4)

■ 심사내용

○ 어업인 또는 어업인단체는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함 (신설)

☞ 수산자원관리는 정부의 강요보다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

하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기에 원안의결

○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연안어업, 근해어업·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어업활동·어획실적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해선주 및 어업인 단체와 사전협의 후 수산물유통시장·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에 출입하여 어획물을 조사하거나 대상어선을 지정하여 당해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종류, 어획량 등을 조사할 수 있음 (강화)

☞ 수산자원의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통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법과 일본 수산자원보호법에서도 유사수준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기에 원안의결

○ 휴어기가 설정된 구역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으며, 행정관청은 휴어기의 설정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음 (강화)

☞ 휴어기 설정은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며 휴어기의 설정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해서는 활용방안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기에 원안의결

○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할당받은 어종 이외의 관리 어종을 어획할 수 없으며, 부수어획량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을 어획한 것으로 간주함 (강화)

☞ 부수어획량 관리는 꽃게 등 관리어종의 초과어획 방지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부수어획량의 제한에 따라 소득감소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자원량 유지로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원안의결

○ 수산종묘를 부화·방류하고자 하는 자는 방류를 실시할 수면, 부화·방류하고자 하는 수산종묘, 방류를 실시할 일시·장소 및 마리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강화)

☞ 종교적인 의식의 하나로 물고기 등을 방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산종묘

방류시 예외없이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고 실효적인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규제로 판단됨, 한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불량종묘와 외래종의 방류 등으로 하천과 연안의 수중 생태계가 교란되고 소중한 생물자원이 파괴되고 있어 무분별한 방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도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수산종묘를 방류할 때에만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권고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부의 어선감척, 휴어기의 설정·운용, 수산자원의 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수익을 얻은 자에게는 이익 금액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신설)

☞ 수산자원의 조성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늘어난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않고, 부과금 부과시 어업인 등의 반발로 법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을 수 없어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30)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공표명령의 대상을 규정하고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공표문을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함 (내용심사)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게 함으로써 원산지표시 위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의결

(31) 연안관리법 개정안 (신설1, 강화 1)

■ 심사내용

○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이로 인한 지반의 침식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의 자연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안완충대를 설정하고 연안완충구역에서는 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토석·모래 또는 자갈 채취 행위 등을 제한함(신설)

- ☞ 우리나라 해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연안침식이 진행되고 있기에 필요한 규정으로 여겨지며, 자연환경보전법 등 타법에서도 유사수준의 규제가 있고, 외국에서도 해안보전제도를 실시하여 해안선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재해에 대한 자연적 대비를 도모하고 있기에 원안의결
-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연안정비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인가 또는 준공확인을 받도록 함 (강화)
- ☞ 연안정비 기본계획, 연안정비 실시계획에 부합하게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평가·검사함으로써 연안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기에 원안의결

(3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6)

■ 심사내용

- 해외 합작 원양어업을 신고하거나 폐지할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 (내용심사)
 - ☞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신고시 제출서류는 타법(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과 유사한 수준이기에 원안의결
-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척수 등을 고려하여 원양어업허가정수를 업종별·해역별로 정하고 허가정수 범위내에서 허가를 함 (내용심사)
 - ☞ 국제기구 FAO(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자원남획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제규범의 준수와 이행의무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아국 원양어선의 원활한 조업활동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여겨짐에 따라 원안의결
- 국제수산기구에서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에 대하여 항만국 검색을 시행함 (내용심사)
 - ☞ 우리나라가 해외수역에서 원양어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산기구가 결의한 내용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기에 원안의결

○ 어선위치 추적장치가 갖추어야할 성능 등을 규정 (내용심사)

☞ 국제수산기구에서는 공해어업에 참여하는 자국 어선으로 하여금 국제적 자원·관리를 위하여 어선위치 추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현행규정(‘국제수산기구의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에서도 선박위치 추적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에 원안의결

○ 원양어업관련 수산물 운반·유통·가공·해외양식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원양어업 관련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 원양산업협회, 수협 등에서는 기술적·경제적 다당성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내용심사)

☞ 원양어업관련사업은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정부지원 대상사업이므로 원양어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의결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절차와 위반행위별 과징금과 과태료 금액 및 징수 절차를 규정 (내용심사)

☞ 과징금과 과태료는 상위법령 범위내에서 정하였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의결

(3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10)

■ 심사내용

○ 해양심층수 개발제한 조치사항으로 취수해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취수해역 지정을 억제하며,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면허처분을 금지하도록 함 (내용심사)

☞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규제내용이 타법과 유사수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됨. 다만 해양심층수 개발제한에 따른 조치사항 중 취수해역의 지정을 취소토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기에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면허조건으로 1일 취수량 제한, 취수량 계측장비 설치 및 취수량 보고,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 원상회복 등을 정할 수 있음. 또한 면허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기간 변경신청서에 취수해역 수질 검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내용심사)
 - ☞ 해양심층수개발업은 공공재를 이용한 사업으로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일정부분 면허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조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내용심사)
 - ☞ 해양심층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수, 화장품, 식료품 첨가제 등으로 사용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면허 조건 준수여부, 취수·급수·배수·저장시설 등의 기준 적합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실시계획의 인가와 준공확인은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배수시설·저장시설 및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등을 규정 (내용심사)
 - ☞ 해양심층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일정수준 이상의 수질기준과 시설기준이 필요하며 타법에서도 유사수준의 기준을 두고 있기에 원안의결
-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사업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심층수 개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규정 (내용심사)
 - ☞ 해양심층수개발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개시신고, 자료제출,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타법에서도 유사수준의 기준을 두고 있기에 원안의결
-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허가·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및 절차,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의 신고사항,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교육의무 사항,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를 위한 제조업자의 자가검사 기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의 기준·규격, 먹는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 제한 등을 규정 (내용심사)

☞ 먹는해양심층수의 시설기준, 제조업허가, 수입 및 휴업신고, 품질관리 및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광고제한 등을 규정한 것으로 먹는물 관리법에서도 유사수준의 기준을 두고 있기에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다만 영 제25조 제3항 “지자체장이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토록 한 것은” 상위입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해양심층수 관련업자로 하여금 해양환경의 오염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함 (내용심사)

☞ 해양환경보전 조치는 해양심층수 관련업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해양환경 훼손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이기에 원안의결

○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공공재인 심층수를 사용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층수 사용료(취수량에 톤당 평균가격을 곱한 금액의 1천분의 10)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매분기별 해양심층수 취수량을 보고하여야 함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정하고 부과율은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부과율은 해양심층수 평균판매가격의 1천분의 46,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부과율은 해양심층수 평균공급가격의 1천분의 75로 정함
제조업자 등은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함 (내용심사)

☞ 해양심층수 개발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사용료는 공공재를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지하수의 경우 이용부담금이 1톤당 70원인 점을 감안할 경우 해양심층수의 경우 20원 수준으로 요율을 책정한 것은 적절하며, 해양심층수 관련산업의 발전과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한 부담금은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

에서 정하였으며, 먹는물관리법과 유사수준(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만분의 675)이기에 원안의결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를 취수한 자에 대하여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금 및 사용료의 2배를 과징금으로 추징하며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및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내용심사)

☞ 상위법률에서 규정된 과징금 및 행정처분과 과태료에 대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등 타법과 유사한 수준이기에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절차와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및 징수절차를 규정 (내용심사)

☞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범위내에서 위반행위별로 정한 것으로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원안의결

(3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강화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국제항해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비의 설치나 정비 등에 대하여 시정·보완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제보안관련 증서나 관련 서류, 보안관련 장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시 출항정지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음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승선이나 보안업무경력 및 교육 등) 등을 규정하고 국제항해여객선 탑승객에 대한 승선전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최초 및 중간, 임시보안심사 등 보안심사종류별 수수료 금액을 정함 (내용심사)

☞ 국제협약 규정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보안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동 규정 미이행시 아국선박의 외국항에서의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어 출항정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원안의결

- 항만의 불법 무기류 등의 반입 등 보안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항만 시설 출입시 출입절차 등을 규정하고 항만시설보안로 징수대상을 선박, 여객 및 화물별로 정하고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갖추어야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설치 및 배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항만시설소유자의 징수요율을 승인하고자 할 때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승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강화)

☞ 항만보안에 관한 IMO(국제해사기구)의 ISPS Code(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을 국내법에 수용하였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하주협의회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였기에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절차와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및 징수절차를 규정 (내용심사)

☞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범위내에서 위반행위별로 정한 것으로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원안의결

(35)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1)

■ 심사내용

- 영업보증금 예치규모를 1억원이상에서 관리선원의 수에 따라 최소 1억원이상에서 3억원으로 변경함 (강화)

☞ 영업보증금 예치규모의 변경(관리선원의 수에 따라 1억~3억)규정은 현재 1억원의 보증보험으로는 선원관리업체의 부도시 체불임금이 발생함에 따라 노사합의로 조정하였기에 원안의결

(36) 선척보호도장 잠정기준(고시) 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선박 표면처리와 도장공정에 대한 검사는 선박소유자, 조선소 및 도료제조사간에

합의되어야 하고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는 등 선박도장시스템의 설계와 표면처리 등에 관한 보호도장 시스템의 기본요건 등을 규정(강화)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체보호도장 기준을 국내기준에 수용하였기에 원안의결

(37)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 심사내용

○ 시·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판장 지정을 취소 요청하거나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판장 지정을 받은 때, 1년이상 계속하여 위판 실적이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위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강화)

☞ 산지위판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과 산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의결

(38)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강화)

☞ 불법어업 방지을 통한 다수의 어업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기예 원안의결

4. 해양경찰청

집필자 여기동사무관(02-2100-2456, okygd@opc.go.kr)

가. 2007년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2007년도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개 법령에 대해 내용심사 2건의 규제를 심사 (비중요 2건)
- 심사대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해양경찰청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없음

< 해양경찰청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77차 경제2분과위 (2007. 3. 8)	원안의결 2	내용심사2 *비중요1
계		원안의결 2	내용심사2 *비중요1

나. 2007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격사유 대상자의 경우 수상레저면허 응시원서 제출시 정상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토록 하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시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함 (내용심사)

☞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로교통법에서도 유사조항이 있으며 약물복용에 따른 행정처분도 수상레저활동자

들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 병무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해군·공군참모총장, 육군 군사령관 또는 국군의무사령관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매 반기 1회 이상 조종면허 결격사유자(정신질환자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통보하여야 함 (내용심사)

☞ 조종면허 결격사유자 판단을 위해 병무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정신질환자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는 기관장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통보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로교통법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제7절 환경분야(환경부)

집필자 : 박은추사무관(Tel. 2100-2451, parkec@opc.go.kr)

1.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최적 방지시설 종류 및 기준 고시 제정안,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고시 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악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금강·낙동강·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고시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 지정고시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보건법 제정안,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 등 57개 법령·고시 등에 신설 46, 강화 55건, 내용심사 32건 등 총 13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 38건, 비중요 95건)

○심사대상 133건 중 21건은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11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74차 경제2분과 (2007.2.1)	원안의결 1	신설1 *중요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2.16)	원안의결1	내용심사 *비중요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3.8)	원안의결4	강화4 *비중요 4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78차 경제2분과 (2007.3.15)	개선권고1	강화1 *중요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78차 경제2분과 (2007.3.15)	개선권고1	강화1 *중요 1
최적 방지시설 종류 및 기준 고시 제정안	제278차 경제2분과 (2007.3.15)	원안의결1	신설1 *중요 1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07.3.15)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 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고시 개정	예비심사 (2007.4.12)	원안의결1	내용심사 *비중요 1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4.12)	원안의결1	내용심사 *비중요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281차 경제2분과 (2007.4.26)	원안의결3 개선권고1	신설4 *중요1,비중요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5.10)	원안의결2	신설1, 강화1 *비중요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규칙 제정안	제283차 경제2분과 (2007.5.17)	원안의결7	신설3,내용심사4 *중요1,비중요6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07.5.17)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 1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5.17)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 1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5.22)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 1
약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85차 경제2분과 (2007.5.31)	원안의결2 개선권고1	강화2,내용심사1 *중요2, 비중요1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제286차 경제2분과 (2007.6.7)	원안의결5	신설1, 강화3, 내용심사1 *중요1, 비중요4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제286차 경제2분과 (2007.6.7)	원안의결4	신설1, 강화1, 내용심사2 *중요1,비중요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6.7.)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6.7.)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 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6.7.)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 1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규칙 고시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6.21.)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289차 경제2분과 (2007.6.28)	원안의결1 개선권고1	강화2 *중요1, 비중요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제289차 경제2분과 (2007.6.28)	원안의결1 개선권고2	강화3 *중요2, 비중요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91차 경제2분과 (2007.7.12)	원안의결3 개선권고1	신설4 *중요 1, 비중요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91차 경제2분과 (2007.7.12.)	원안의결5	강화3,내용심사2 *중요1,비중요4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7.12)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 1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2007.7.26)	원안의결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6.8.13)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폐기물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안	예비심사 (2007.8.22.)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96차 경제2분과 (2007.8.29.)	개선권고1	강화1 *중요 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제296차 경제2분과 (2007.8.29)	원안의결4 개선권고1	신설2, 강화3 *중요2, 비중요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96차 경제2분과 (2007.8.29)	원안의결1 개선권고1	강화1,내용심사1 *중요1, 비중요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96차 경제2분과 (2007.8.29)	원안의결1	내용심사1 *중요1
환경보건법 제정안	제297차 경제2분과 (2007.9.5)	개선권고5	신설5 *중요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9.12)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 1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 고시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9.19)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9.19)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00차 경제2분과 (2007.10.10)	원안의결7 개선권고2	신설9 *중요3, 비중요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300차 경제2분과 (2007.10.10)	개선권고1 원안의결6	신설4, 강화1 내용심사2 *중요2, 비중요5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10.10)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10.10)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 1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10.17.)	원안의결4	신설2, 강화2 *비중요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303차 경제2분과 (2007.10.31)	원안의결2	강화2 *중요1, 비중요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303차 경제2분과 (2007.10.31)	원안의결1	강화1 *중요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303차 경제2분과 (2007.10.31)	원안의결1	강화1 *중요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제303차 경제2분과 (2007.10.31)	개선권고1 원안의결5	신설1, 내용심사5 *중요2, 비중요4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10.31)	원안의결3	신설3 *비중요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11.7)	원안의결2	강화2 *비중요2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305차 경제2분과 (2007.11.14)	개선권고1	강화1 *중요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제305차 경제2분과 (2007.11.14)	원안의결9	신설2, 강화7 *중요1, 비중요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305차 경제2분과 (2007.11.14)	원안의결1	강화1 *중요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11.14)	원안의결2	내용심사2 *비중요 2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11.14)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11.21)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7.11.21)	원안의결2	강화1, 내용심사1 *비중요 2
계		원안의결112 개선권고21	신설46, 강화55, 내용심사32 *중요38, 비중요95

2. 2007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설1)

■ 심사내용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명령대상 차량의 범위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로서, 제작시 제67조 별표 20 나목 5)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로 규정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부착 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는 등 규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 다만, 환경부에서 공해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부대 권고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기준

-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함
-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기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백화점 등에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며, 금번 새로이 추가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농협유통 양재유통센터 등 12개소) 등 관련 유통업체와 협의완료 되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안 (강화 4)

■ 심사내용

○ 유해성 심사결과 고시 방법 개선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 후 즉시 고시하여야 함

☞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사고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시험기관 지정 취소 등

- 유해성심사 항목에 대한 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제14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여 시험의 신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각 기준 미달 정도가 크지 않으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후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유해성심사 항목에 대한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시험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시험을 한 경우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강화

- 취급제한물질 수입시 연간 100kg이하 수입허가 면제 조항을 삭제함
- 취급 금지물질의 국내 수입 또는 반입 금지.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소량(연간100kg)수입하는 경우도 취급제한물질의 성격상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취급금지물질을 시험·연구

등의 목적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허가 강화

- 취급금지물질을 영업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금지.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취급금지물질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금지하되, 시험·연구 등의 목적인 경우 한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총량관리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가동

- 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 방법, 배출량 산정방법 등을 정함(별표 2의2)

☞ 그간 산업계, 협회 등과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측정기기를 통한 배출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확정·통보하는 배출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개선권고.

- 또한, 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 장기저리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부대개선권고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 할당계수 등 산정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절차

-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장 등과 협의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음
 - 측정기기 부착시설의 배출량 산정
 - 연료유량계 설치에 따른 배출량 산정시 연료별 배출계수와 설계효율을 알 수 없는 방지시설의 효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에 의한 연료별 배출계수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지시설의 효율을 적용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별표 2)
 - 연료별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할당계수 단위량
 - 총량할당계수는 공통시설, 공정연료시설, 비연소시설 등 배출시설별로 설정
 - 할당계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배출시설의 배출허용총량 산정은 향후 5년간 오염물질 예상 배출량, 연도별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은 산업계,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마련한 것이고, 측정기기 부착시설의 배출량 산정은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시행중인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과태료의 이의신청기간,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간 등을 고려, 이의신청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이의신청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즉시 수도권대기환경청, 관련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검토기구(예: 배출허용총량 조정기구)에서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배출허용총량을 조정 하도록 개선권고

(6)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함(별표 1)

- ☞ 전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7)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고시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측정기기 미부착 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 배출량 = 배출계수 ×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 단위량

$$\times \left(1 - \frac{\text{방지시설 효율}}{100} \right)$$

- 배출계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를 적용
-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의 생산일지 및 작업일지 등 배출량 산정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입법예고시 별다른 의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8)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고시 일부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설정

- 수질분야 중 총유기탄소,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량 및 실내공기질 분야의 시료채취 장치와 자동 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신설 : 최초 2년, 그 후 1년마다 정도 검사

- ☞ 측정기의 정확도, 안전성, 신뢰빈도, 기존의 주기(최초 2년, 그후 1년에 한번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규제대상이 한정적이며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업계에서의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9)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방법 개정

- 대기분야 중 총탄화수소 자동측정기기의 분석방법 보완
- 수질분야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의 주시험방법과 비교실험을 통한 상대 정확도 및 표준용액 조제방법 도입
- 실내공기질 분야 중 시료채취장치 및 자동 측정기기의 미세먼지, 석면, 부유세균, 포름알데히드, 라돈 검사기준 세분화 및 보완
- 토양분야 성능시험방법 중 지상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의 성능시험방법 신설

☞ 미국 환경청 시험방법과 연구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규제대상이 한정적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업계에서 의견제시가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1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4)

■ 심사내용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등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종목 등을 정함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방법 및 검정시행
 - 검정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시험 과목(별표 2)
-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교부
-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 교육기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및 기타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 검정기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 교육과정(별표 9), 교육기간 : 5일
 - 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함

- 환경측정분석사의 교육 및 검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함.
 - 환경측정분석사 행정처분기준(별표 10)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 도입된 환경측정분석사의 응시자격, 검정방법,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규정과 측정대행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등 유사사례를 준용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경우, 정밀측정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대기측정검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기관은 교육기관인 동시에 검정기관에 해당되므로 검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2007.12월말 까지 보고토록 부대 개선권고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경우, 인정 및 지정기준이 모호하며, 법 제22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기준이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을 고시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개선권고
 - 동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적(선택적)인 사항이므로 교육시간, 교육과정 등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 여건, 응시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교육과정, 교육기간 등 교육과 관련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규정은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설정토록 하고, 차기 경제2분과위에 이에 대한 방안을 보고토록 개선권고
 - 수수료 교부 및 발급대장 등재는 임의적 교육 성격으로 볼 때 규제목적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형식승인대상 측정기기 추가 및 사후 관리
-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추가
 - 자동차 분야 중 원동기 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에 메탄 추가
 - 사후관리 대상에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수입신고의 적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
- ☞ 규제비용이 연간 23백만원정도 미미하며, 산업기술시험원 및 관련업체와 협의된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측정기기 정도검사 절차 및 사후관리

- 정도검사 방법 규정

- 정도검사의 방법은 별표 2와 같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

☞ 규제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대행자 등의 지정·등록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 등

-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자의 지정 및 등록기준에 학력기준을 삭제하고, 검사대행자가 검사결과를 기록·보존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 검사대행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 등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 금지

☞ 검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업계와 협의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1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징수

-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말함
- 환경부장관은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음
-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자체 규제심사에서 개선권고된 내용과 타 부처의 기술료 금액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감면이나 기타 세부사항은 기존의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699호)의 내용을 상위법령화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한정되어 있고, 규제비용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정도관리 대상 측정분석기관 확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을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추가

☞ 현재 대기·수질 오염도검사기관 등은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은 누락되어 있어, 형평성 및 측정분석능력 제고를 위한 것이며, 피규제자는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고,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신설3, 내용심사4)

■ 심사내용

○ 관리대상 가축종류의 범위확대

- 축사면적 60㎡이상의 개사육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처리하여야 함

☞ 미규제축종인 “개”는 분뇨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집단적인 대량사육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규제필요성이 인정되고, 축사면적 60㎡이상을 관리대상으로 정한 것은 분뇨발생량 및 오염정도가 비슷한 돼지의 사례를 준용하여 설정하였고 입법예고 및 개사육농가 방문협의시 별도 이견제시가 없던 점, 60㎡이상인 경우 대개 사육두수가 80마리 이상으로 전문적으로 개사육을 하는 가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

○ 처리시설 설치 면제 대상의 축소

- 가축분뇨를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였으나 동 조항을 삭제함

☞ 지금까지 가축분뇨를 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던 축산농가는 해양배출업자의 위탁이 금지되더라도 축산폐수 재활용신고자 또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가 가능하고, 2011년까지는 현행 방식대로 처리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과태료 부과

- 허가대상 축산농가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는 경우 배출 물질, 배출농도, 배출기간 등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산정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

☞ 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과태료부과 금액은 기존 신고대상 축산농가에 부과하던 금액을 감안하여 설정한 점,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별도의 규제비용이 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변경신고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을 추가함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배출 시설 및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을 포함)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 등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작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액비살포 기준 상향 조정

- 기존 액비살포 기준(환경부고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일부 조항 정비

☞ 액비살포에 따른 2차오염과 악취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규제대상은 액비화 시설을 설치한 농가 3,347호로서 규제비용도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설정
-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신고대상 처리시설과 기타지역의 허가대상 처리 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총질소 및 총인 기준 추가

☞ 새로이 설정된 총질소 및 총인의 기준은 기 설정되어 있는 특정지역 허가대상기준, 공공처리시설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자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시설설치자(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설정
 - 가축분뇨법 제18조에 시설설치자(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함
- ☞ 피규제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10,624호이며, 행정처분조항 신설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규제에 의한 추가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13)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친환경상품 판매매장 규모 산정방법
 - 친환경상품 판매매장 규모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진열대를 설치하는 경우 각 단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 기존 환경부 내부지침으로 운영중이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 설치·운영지침」의 내용을 금번 고시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으로, 피규제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373개소로,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련업계와 협의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14)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설정
 - 자연공원법 개정(2007.1.3일 공포)에 따라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대상시설 규정함(대상시설 : 도로, 철도, 삭도, 궤도, 전기통신 설비, 에너지 공급설비, 댐, 저수지, 수중보(水中洑), 하구언(河口堰))
- ☞ 법률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적용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대부분 규제대상기관이 공공기관인 점, 타 법 사례를 감안하여 대상시설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15)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부식억제제의 규격 강화

- 부식억제제(방청제)의 함량규격의 표시량, 오차허용범위를 $\pm 2\%$ 에서 $\pm 1\%$ 로 강화

☞ 수처리제인 부식억제제의 함량기준을 강화하여 제품소비자의 사용량 축소, 제품 생산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대상인 부식억제제 제조업체가 16개사로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련업체와 협의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16) 약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약취배출허용기준 설정

- '08년, '1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약취물질(10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공업지역, 기타지역) 및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공업지역) 설정

☞ 기준(안)은 약취관련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기존 약취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방법과 동일한 기준(2.3도 ~ 3.0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관계기관 및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약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약취배출시설의 약취저감계획 또는 약취방지시설 변경,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경우에는 약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후단규정에 따라 변경신고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입법예고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약취검사기관의 행정처분 요건 강화

- 약취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을 한 경우 또는 기술인력이 측정대행업, 방지사설업 등의 기술인력과 중복되는 경우 등 법제19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

☞ 기존의 약취 검사기관 중 측정대행업 등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약취검사 기관이나 측정대행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경과 규정을 두도록 개선권고

(17)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신설 1, 강화3,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을 추가 설정
 -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지역

☞ 해양환경보전의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예고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배수설비 전문시공자의 자격요건

-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정함
 - 하수도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일반건설업자(조경공사업자 제외) 또는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 현재 지자체의 조례로 운영되는 것을 법령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에 한하여 배수설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일반건설업자(조경공사업자 제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배수설비 시공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시공자의 자격요건을 모든 영업자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관련영업의 필요 인력 등 비교·검토시 개정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기존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요건 변경

- 하수처리구역 밖에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요건을 현행의 건축연면적, 용도 등에서 오수발생량이 증가(오수발생량이 2m³/일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변경

☞ 건축연면적, 건축물의 용도 및 지역 기준 등으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을 오수발생량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사항으로 오수발생량에 비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지정의무 확대

- 하수처리구역 밖에 설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 규모를 강화함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처리시설(하나의 건물에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
 - 처리대상 인원이 1천인 이상인 정화조(하나의 건물에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인 이상인 것을 포함)

☞ 피규제자는 7,150여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고, 규제비용은 연간 3억원 정도이나 이에 따른 편익은 약 15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기술관리인의 자격요건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해당업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하여 기술관리인 임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있고, 입법예고시 이해당사자로부터 특별한 의견 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 교육

- 하수·분뇨 관련영업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신규교육 시기를 '신규 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1회'에서 '신규 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1회 이상'으로 변경

☞ 교육 횟수 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시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18) 하수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하천 및 산간계곡 등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시설, 연수원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일일 처리용량 50m³이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수준으로 강화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상수원 관리를 위해 다량으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으며, 기존업체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등을 감안,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 서류

- 하수도법에서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하수는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유입제외 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정함

☞ 유입제외 허가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 판단되며,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입법 예고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신고 및 구비서류

-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하수 배출시 설치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설치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면제 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함

☞ 면제신고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되고,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자가측정 의무 대상자를 확대
 - 1일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인 이상 2천인 미만인 정화조 시설
 -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실시
- ☞ 동 규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연계되는 사항으로 규제 비용이 미미하고 입법예고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1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추가

-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유수의 사용자에게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유수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 물 사용기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공수역 으로부터 물을 취수·사용하면서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일부 하천유수의 사용자를 부과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대로 의결

(2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추가

-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유수의 사용자에게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유수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 물 사용기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공수역

으로부터 물을 취수·사용하면서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일부 하천유수의 사용자를 부과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대로 의결

(2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추가

-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유수의 사용자에게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유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물 사용자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물을 취수·사용하면서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일부 하천유수의 사용자를 부과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대로 의결

(22)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강화1)

■ 심사내용

○ 동일수계인 서낙동강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지역기준을 일원화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나지역」을 「가지역」으로 강화

☞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 사이를 흐르는 서낙동강 동일수계에 배출허용기준 차등적용에 따른 지역갈등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나지역 → 가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인 부산광역시와 강서구에서 적극 동의하고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으며, 피규제대상인 부산강서지역 폐수배출시설 수질검사결과,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이미 만족하고 있어 추가로 예상되는 규제비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대로 의결

(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주유시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대상에 추가된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시기 및 세부 설치 기준을 정함

☞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고, 규제비용에 비해 환경·경제적 편익이 크며, 유증기 회수로 인해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부정책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설치기준(안)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설치시기 연장 및 영세 주유소에 대한 설치 면제 등의 요구가 있으므로,

- 규모가 작은 연간처리량 2,000m³미만 주유소에 대하여는 설치시기에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고, 소규모 영세 주유소(300m³미만)는 적용을 면제하되,
- 적용면제된 주유소의 처리량이 연간 300m³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 면제된 주유소의 연간처리량이 300m³ 이상에 도달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부터 2년 이내에 시설을 설치토록하고, 다만, 2010년말까지의 연간처리량이 300m³~500m³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시기를 2013.1.1까지로 하는 규정을 둘 것을 개선 권고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사업장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요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2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자동차 소유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관리의무

- 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적합한 연료의 사용
 - 제26조제1항의 인증내용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및 유지관리
 - 기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자동차 소유자에게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는 바,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적합한 연료의 사용’ 규정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이미 위반시의 조치사항(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반시 적용되는 조치 규정(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서는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 ‘제26조제1항의 인증내용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및 유지관리’ 규정은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고, ‘기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주로 기술적인 사항을 담는 고시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기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되, 그 내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저감장치 등의 인증취소 의무화 및 제조사 등에 과태료 부과

-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
 -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에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저감 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자동차의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우 제외)
 - 수시검사 결과 인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 저감장치부착사업이 국가예산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함이 있는 장치 제조·판매·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결합확인검사 또는 수시검사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상 제품의 결합율이 2%에 이르는 점, 취소시 기 운행중인 자동차의 저감장치에 대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인증 취소 규정은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되, 차기 법률 개정시 환경부에서 기 부착운행 중인 저감장치의 결합을 시정할 수 있는 별도조치(리콜) 근거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개선권고

○ 허위자료 제출, 조사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제조·공급 또는 판매자, 총량관리 사업자 등이 허위자료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

☞ 제출·보고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현장 조사업무에 대한 공권력 확보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자가 해당될 것이나, 실제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료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2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설 4)

■ 심사내용

○ 양산과정의 저감장치 성능에 대한 수시검사

- 수시검사 대상
 - 법 제26조의4 제4항의 성능점검 및 확인 결과 당해 장치 등의 성능이 제32조의 저감효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출고된 장치 등의 구조 및 사용부품 등이 인증당시와 차이가 있는 등 대량 생산된 장치 등이 인증시와 다르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검사대상은 동일 장치별로 3대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검사방법은 제35조제2항의 인증시험방법을 적용
- 부적합 판정기준
 - 시험결과가 제32조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 당해 장치의 구조 및 성능이 인증 또는 변경인증 당시와 다른 경우
- 부적합 판정된 당해 장치와 동일한 부품 및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장치 전체의 불합격 처리기준
 - 부적합 장치의 대수가 3대 중 1대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장치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제32조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 검사방법은 인증시험방법을 적용하고, 검사대상은 성능점검시 저감효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피규제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제조·공급·판매하는 자(15개소)로 소수이고, 규제비용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결함확인 검사

- 결함확인 검사대상
 - 부착 또는 개조한지 1년이 경과한 자동차
 - 인증 시험결과와 제32조 저감효율간 차이가 저감효율의 1/10이내인 장치
 - 법 제26조의2 제1항의 수시검사결과, 법 제26조의4 제4항의 성능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함확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 결함확인 검사는 동일년도에 동일한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차량 5대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검사방법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
- 기타 검사의 세부절차·기준 및 수수료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부적합 판정기준
 - 저감효율에 부적합한 대수가 5대중 1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이 법정 저감효율의 80% 미만인 장치
 - 배출가스 측정결과 동일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법정저감효율에 적합하지 아니한 엔진
 - 배출가스 측정결과 항목별 평균가스 배출량이 법정 저감효율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항목과 동일한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이상의 자동차가 법정 저감효율을 초과한 엔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자발적 결함시정 또는 재검사 신청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결함을 시정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재검사는 동일한 장치 등을 부착한 차량 5대를 추가 선정하여 실시하고 재검사 비용은 장치제작자가 부담

☞ 검사방법은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을 적용하고, 검사대상도 결함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차량에 부착한 저감장치 반납

- 부착된 장치 등의 반납 시 입증자료를 정함
 - 경찰청의 사고사실확인원
 -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 기타 서울특별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료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미준수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측정기기와 관련한 부적정 운영을 하거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제출서류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점검 및 결과 제출

-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 사항을 규정함
 - 장치별·인증번호별 부착 자동차의 장치부착 전 주행온도 분포 조사결과
 - 저감장치의 자가진단장치에 수록되어 있는 부착 후 일주일간의 배압·주행온도 분포
 - 출력·연비 변화 및 매연배출량 등 저감장치 등의 성능에 관한 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제조·공급·판매자는 해당분기에 저감장치 등 부착차량에 대한 성능점검 결과를 다음분기 15일까지 제출

☞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성능점검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작사에게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성능을 점검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실제 집행에도 어려움이 클 것이므로,

- 검사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소유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소유 자동차” 등 차고지를 통해 성능점검 대상차량과의 접촉이 용이하여 점검이 가능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 성능점검 사항 중 제3호 “출력·연비 변화 및 매연배출량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의 성능에 관한 사항”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합접수 및 조사 내역”으로 조정할 것을 개선권고
- 아울러 성능점검 결과 제출기한이 ‘다음분기 15일까지’로 되어있으나, 분기말에 장치 등을 부착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기간이 일주일 이상 필요하고, 그 이후 성능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점검결과 제출 기한을 “다음분기 30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개선권고

(2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3, 내용심사2)

■ 심사내용

○ 폐석면(지정폐기물)의 분류대상 확대

- 석면을 1%이상(건조고형물의 무게비 기준) 함유한 제품·설비(뿔칠 포함) 등의 해체·제거시 발생하는 것

☞ 석면의 함유량 기준(1%)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여 설정하였고,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

○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석면(뿔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고,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보관 및 소각

☞ 폐석면의 보관·처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적재함 양측에 가로 1미터 세로 50 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바탕에 적색 문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 폐석면은 기습 등의 조치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흘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

☞ 흘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
-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
-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뽀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시 사용된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
-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강화

- 매립시설 중 일부구역을 정하여 폐석면을 매립할 때에는 타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제방 등 적절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함

☞ 매립 종료후 개발 등을 위한 매립시설 발굴시 폐석면이 타폐기물과 혼합되어 있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27)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원수의 수질 검사 기준

-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원수 수질검사 기준을 강화
 -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호소수 등의 원수 측정항목 중 '대장균군'을 '총대장균군' 및 '분원성 대장균군'으로 세분화
 - 지하수의 원수 측정항목에 '불소' 추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수질환경기준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고, 시설당 규제 비용이 연간 21,450원 정도로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28)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관리물질 종류 확대

-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종류를 배출시설 관리대상과 배출시설외 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정
 - 배출시설의 관리대상 : 기존 37종 물질
 - 배출시설 외 관리대상 :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로서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 하는 물질은 제외

☞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고,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에 여유를 두고 있으며(시행일 : '09. 7. 1), 분석 비용(826만원→227만원)이나 분석소요 시간(102시간 → 71시간) 측면에서 피규제자에게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29)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숙련도 시험결과 부적합판정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함
 - 현장평가 결과 부적합판정 기관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 만료 인정 사유 및 만료시 조치사항을 정함
 - 검증기관의 사후관리는 숙련도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고,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시험 실시

☞ 피규제자가 일반 산업체의 환경관련 오염도 검사를 대행하는 자임을 감안할 때,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규제비용도 미미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30) 폐기물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내용심사1)

■ 심사내용

- 폐기물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통합 운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기관 등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여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폐기물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 신청자에 대한 평가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인정절차
 - 폐기물측정분석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신청자)가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심의, 인정 및 변경, 처리기한, 재신청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
- 인정 신청자에 대한 평가방법 및 기준
 - 인정 신청자에 대한 시료채취 능력, 분석능력, 운영관리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는 절차를 규정
- 사후관리

- 폐기물측정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측정분석 능력의 지속성 확인 및 성적서의 적정 발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료보관, 내부정도관리,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료검증, 현지점검에 대한 규정

○ 보칙

- 행정처리에 필요한 정도관리 제도와의 연계, 측정분석 업무상의 준수사항, 인정 신청서 반려, 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대한 규정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7항 및 제24조의2제4항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장에 위임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및 다이옥신 측정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다이옥신 측정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으며, 피규제대상인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이미 환경부 예규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어 추가로 예상되는 규제비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3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신설

- 오염물질에 물벼룩에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 추가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설정
-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 폐수종말처리시설, 1종 사업장 : 2011
 - 2·3종 사업장 : 2012
 - 4·5종 사업장 : 2013

- ☞ 법 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교적 규모가 큰 1·2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적용하고, 3~5종 사업장은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개선권고함. 또한 청정지역내 1·2종 사업장은 TU 1을 적용하되 3~5종 사업장은 TU 2를 적용하고 5년 이후 TU 1 적용토록 개선권고함

(32)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신설2, 강화3)

■ 심사내용

○ 샘물개발허가 취소 근거 마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후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을 한 경우 샘물개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 타 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변경

-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제품 사용량'에서 '취수량'으로 변경하고, 먹는샘물과 기타 샘물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부과기준 조정
- 샘물개발 허가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관리하고, 계측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그간 규제개혁 차관회의, 감사원,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에 해당되고, 취수량 절감을 통해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동일한 지하수자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형평성을 높이게 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표시기준이 없는 제품의 판매 금지

-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의 제조·수입·진열·운반 등을 금지

☞ 타 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입법예고시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부적정한 제품의 유통 억제와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편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대상 확대

- 관계공무원 등이 출입·검사 및 장부 수거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장의 범위에

- ‘샘물개발 허가자’와 ‘먹는물 검사기관’을 추가함
- 정수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수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부담으로 함
- ☞ 허가 취수량의 준수여부, 부정한 검사성적서 발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샘물 개발 허가자 및 먹는물 검사기관을 공무원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관계 공무원이 검사를 목적으로 수거한 정수기의 검사 비용을, 재원 부족을 이유로 검사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않은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개정안 제42조 제3항은 삭제하고, 필요시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 권고

○ 검사기관 지정 결격사유 신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신설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행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 타 법의 사례를 준용하고 있고, 규제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입법예고시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3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신청기준 강화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추가로 정함
 - 업무수행절차 및 방법,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계획 등 분석업무 수행계획서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분야에 한함)

- ☞ 환경부고시(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02.7.5) 로 운영되던 것을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하는 것이고, 규제비용도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 제조업자 행정처분 강화
 - 수질기준 초과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19개 수질기준 항목에서, 총대장균군, 아황산환원염기성포자형성균, 불소 등 3개 항목을 제외함
- ☞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불편 및 해당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상되며, 식품위생법에서도 식품에서 총대장균군 초과시 품목제조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개정안 제35조의2 본문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개선권고

(3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유독물 표시의무
 - 유독물의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유독물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을 물리적위험성 16개, 건강유해성 10개, 환경유해성 1개 등 27개 항목으로 정함
 - 유독물의 용기·포장의 표시규격을 변경하고, 이중용기와 단일용기의 표시규격을 구분하여 정함
 -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
- ☞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방법을 국제기준(GHS)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되,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기준이 불일치하는 부분과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법제처 법령 심사과정에서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이 조정토록 부대 권고

(35) 환경보건법 제정안 (신설 5)

■ 심사내용

○ 새로운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

- 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 및 새로운 물질의 개발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예측·평가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술의 적용이나 물질의 사용을 고시으로써 제한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위해성 저감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9조 제4항 본문내용의 “물질”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을 제외토록 개선권고

- “고시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는 고시에서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개발계획·사업의 건강영향 고려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 평가기법 및 지침개발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검토내용 및 저감대책과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평가 기법 등이 규정되지 않아,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한시적으로 시범시행(부칙에 유효기간 3년 명시)하되, 환경부에서 시한만료 3개월 이전에 그 결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속여부를 결정토록 규제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개선권고

- 아울러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 및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부령 제정시 평가기법 등을 구별하여 정하도록 부대 권고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관리

-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유해물질 노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을 고시으로써 제한하거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시설 또는 시설관리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처분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안 제21조제3항에 행정처분의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안 25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은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21조제3항의 본문내용을 “시설 또는 시설관리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 제21조제2항 본문내용 중 “유해물질 사용을 고시으로써 제한하거나”는 조항에는 고시에서 답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어린이 용도의 유해물질 관리

-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위협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종류별 유해영향 목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위협이 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유해물질을 제조·수입·판매·사용하는 자에게 판매·사용중지나 회수를 권고
- 판매·사용중지나 회수의 권고만으로 어린이 건강의 위해를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사용중지나 회수를 권고한 사실을 공표
- 권고 또는 권고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어린이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산업자원부 소관)’에서 위해성 등을 관리하고 있는 바, 부처간 관리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22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서 “사용”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다만, 이 경우 규제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된 유해물질이 어린이용품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 등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용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토록 부대 개선권고

○ 보고 및 검사

- 다음 각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 제22조 규정에 의한 관련 사업자

☞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는 필요한 보고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인 보고 목적 및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개선권고

(3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내용심사1)

■ 심사내용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절차 개선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절차개선
 - 납부기간을 현행 3월에서 1월로 단축
 -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3~12회에서 2~3회로 단축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반환사업 수행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의서 내용과 서식, 반환사업신청시 첨부할 서류를 정함
 -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정함

☞ 피규제자가 한정적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37)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 오산화비소를 취급제한물질에서 취급금지물질로 변경
- 폼알데하이드, 노닐페놀, 백석면, 납을 취급제한물질로 추가 지정

- ☞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성이 인정된 화학물질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고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38)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먹는물 수질기준

-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 및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을 신설 및 강화
 - '1,4-다이옥산' 및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기준을 신설
 - '납', 및 '비소', '망간'의 기준을 강화
 - '6가크롬'을 '크롬'으로 강화
 - '보론' 및 '아연'의 기준은 완화

- ☞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도출된 기준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외국의 기준과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규제비용도 미미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39)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9)

■ 심사내용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종류
 - 스톡홀름협약에서 지정한 12종의 물질 및 기타 스톡홀름협약에서 등재된 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 허용된 용도로만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하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
-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시 관리기준을 정함(시행규칙안 별표3)
-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할 때에는 매년 수입국별 해당물질을 최초로

- 수출하기 전에 수출승인을 받도록하고, 승인신청시 첨부서류를 정함
 - 수출승인의 변경승인 대상을 정함
 -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 승인한 수출 예정물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 사업장 소재지·명칭·대표자 변경
 - 변경승인 신청시 첨부서류를 정함
- ☞ 스톡홀름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규제에 의한 영향이 미미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 등에서도 의견 제시가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를 정함(시행규칙안 별표 1)
 - 제철·제강시설 등 8종의 시설을 대상
-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신고서식(별지제4호) 및 변경신고 서식(별지 제5호)을 정함
 -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을 정함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30일 이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변경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는 변경전
- 사고처리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 배출시설의 종류는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고,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기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므로, 시행규칙안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행규칙안 제8조 “배출시설 신고” 조항은 상위법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있으나, 해당 시설을 신고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규제에 판단되어, 시행규칙안 제8조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시행규칙안 별표 4)
- 개선명령 등의 이행절차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전에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 연장 신청
 - 개선계획서 제출시 포함할 서류 및 개선명령 이행보고 서식(별지 제9호 서식)
 - 개선명령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중지 명령
 - 사용중지 명령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배출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 사용중지 기간 내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보고
 - 과징금 부과
 - 과징금의 액수는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
 - 1일당 부과금액 : 500만원,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 0.5 ~ 2.0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
 - 배출사업자는 측정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년간 보존
 - 측정대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범위, 측정주기를 정함(시행규칙안 별표 6)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 명령
 - 배출사업자가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령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명령을 받은 기간내에 측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1월의 범위안에서 기간 연장
-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전문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산업별 정책협의회 및 관계기관·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고, 개선명령 이행절차, 사용중지 절차,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계수, 측정 등도 타 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1일당 부과금액이 타 법에 비해 다소 많으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위해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제시가 없었던 점, 규제비용에 비해 편익이 큰 점을 감안할 때 규제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를 정한 시행규칙안 제10조 제1호의 각목 중

‘라’목 및 ‘마’목은 배출부과금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배출부과금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현행 법령에서는 제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시행규칙안 제10조 제1호의 ‘라’목 및 ‘마’목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주변지역 영향조사

-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을 정함
 - 1일 최대 생산능력이 5,000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
 - 1일 최대 생산능력이 3,000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 1일 최대 생산능력이 12,000톤 이상 시멘트 소성로
 - 1일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 압연·압출 및 연신 제조시설
-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시행규칙 별표 7)
-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
 - 배출사업자가 주변지역 영향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령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명령을 받은 기간내에 영향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3월의 범위안에서 기간 연장

☞ 규제대상 시설은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및 관련업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고, 영향조사에 관한 기준 등도 타법의 유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규제비용도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적정처리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를 정함(시행령 별표2)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정함(시행규칙 별표2)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기준을 정함(시행규칙 별표8)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시행규칙 별표9)
-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정함

☞ 관계기관 및 관련업체와 협의한 사항이며, 현재도 폐기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처리방법의 부재로 인하여 적정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 하는 등 규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분류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 오염기기의 기준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1L당 50mg이상 포함하고 있는 기기·설비·제품

- 관리대상 기기의 종류 :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기타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 장비

- 관리대상 기기에 대한 신고

- 기기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 교체기록, 절연유량,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를 신고(신고서 서식 : 별지 제11호)

- 변압기 소유자가 오염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 오염실태조사 계획을 첨부하여 신고

- 절연유 교체, 관리대상 기기등의 폐기, 소유자의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 변압기 오염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관리대상 기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간실적 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오염기기 등의 안전관리

- 안전관리상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시행규칙 별표 11)

- 오염기기 소유자가 안전관리 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조치 기한을 정함(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시 : 15일 이내, 오염여부에 대한 식별장치 부착 : 30일 이내)

- 사용이 종료된 오염기기 등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 규정된 기한내에 적정하게 처리

☞ 2025년까지 PCBs 사용 장비 확인 및 제거키로 한 스톡홀름 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로써, 산업자원부의 전기설비시설기준에서도 PCBs를 함유한 절연유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점,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 보고 및 검사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타 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행정처분의 기준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함(시행규칙 별표 12)

☞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타 법의 기준과 유사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과태료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

☞ 과태료 부과에 대한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40)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신설4, 강화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4대강 이외 기타수계의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역 지정·고시,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등

-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역 지정·고시할 때 포함 사항
-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 측정결과 기록·보존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방법
- 조치명령 등

☞ 현재 4대강 수계법에 따라 4대강 수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도를 4대강 이외 지역에서도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06.10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시 4대강 이외 기타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제 도입에 대한 규제 심사가 기 이루어진 바가 있으며,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4대강 수계에서의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조치명령 등)를 준용하였으며, 총량제 실시 수계결정시 해당지자체와 협의토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

○ 측정기기의 부착대상·방법·시기 등

- 측정기기 부착대상 추가
 - 사업자 등은 측정기기 부착을 완료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부착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 적정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시 3개월 범위 내 개선명령
- ☞ 기존에 시행중인 제도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신설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료 분류, 원안대로 의결
-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 제출
- 측정기기와 관련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 등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의 내용 및 첨부서류 등
- ☞ 개정내용은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선명령 제도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신설한다는 점, 절차신설에 따른 추가 규제비용이 적다는 점, 동일한 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료 분류, 원안대로 의결
-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 검토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 반영
-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절차 신설에 따른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비점오염원의 신고·변경신고대상 확대 등
-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 사업 및 시설 추가 등
 -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대상 확대
 - 이행 또는 설치·개선명령의 기간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점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운영·관리기준 규정

- ☞ 신고대상 사업범위 추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명령 기간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촉박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설설치를 요하는 경우는 1년, 시설개선을 요하는 경우는 6개월”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권고함

○ 폐수처리업자의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 ☞ 저장시설 용량이 일부 확대(2일분→3일분)되는 등 일부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이는 수용 가능한 범위이고 그 시행을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최대 1년)을 두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강화(2개업체에 불과), 측정의무 부여 등 일부 준수사항이 강화된 내용은 규제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행정처분기준

- 오염총량제 및 측정기기 부착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

- ☞ 법령에서 신설된 오염총량제와 측정기기의 의무조항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거의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41)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확대(333종→528종)

- 기 고시된 333종 이외에 생물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아 국외반출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195종(어류 10, 곤충류 86, 식물 99)을 신규 지정

- ☞ 동 규제는 생물다양성협약(92.6)에서 생물자원의 국가권리 인정 후 고유 생물자원 확보여부가 국가경쟁력에 직결됨에 따라 21세기 생물자원 확보 경쟁시대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생물자원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 처리기한 연장

- 수입자가 제출한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확인신청서 처리기한을 “즉시”에서 “14”일로 연장함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 처리기한 연장에 따른 수입업자의 통관지연, 추가 비용 등 추가 규제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43)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설2, 강화2)

■ 심사내용

○ 수렵전문 단체 등을 통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

-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자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한 수렵전문단체로 제한

☞ 포획대행자 제한에 따른 규제대상자(개별수렵자)는 전체 수렵인(15천명)의 20% 정도인 약 3,000명이나, 별도 규제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

-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산림·도로·전·답 등에 주민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여 총기사고 방지
-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이 용이한 피복류를 착용
- 인가·축사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총기의 사용을 금지. 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경우에는 주민 등을 대피 시킨 후 총기사용

☞ 안전수칙 신설에 따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수렵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수렵동물포획시 수렵한 자가 즉시 수렵동물확인표지를 부착
 - 수렵동물포획시 수렵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가 부착하던 것을 수렵 당사자가 수렵하는 즉시 현장에서 부착하도록 함
- ☞ 수렵동물확인표지 부착제도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강습계획 및 강습실적 보고
 - 수렵강습 기관에서는 매년 수렵강습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분기 교육실적을 보고토록 함
- ☞ 강습계획제출로 인한 규제비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4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및 부착기준 조정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을 확대·조정(시행령 별표 2)
 - 부착시기는 6개월 이내,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는 1년 이내
- ☞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토론회, 설명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시행에 여유(시행일로부터 6월 ~ 1년)두는 등 규제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규제 비용에 비해 편익이 커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
 -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 ☞ 규제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4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환경친화형 도료의 '10년 VOC 함유기준 설정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용되는 도료에 대하여 '10년부터 적용되는 휘발성유기 화합물(VOC) 함유기준을 설정(별표 8)
- 관리대상 도료의 용도분류를 일부 조정

☞ 도료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시행에 충분한 기간('10년 적용)이 부여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관련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일반목재용 스테인 및 도로 표지용 도료의 VOC 함유기준에 대하여 일부 이견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도 유성 및 수성으로 분류하여 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있고, 당초안보다는 규제가 완화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4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09년이후 적용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별표 20)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별표 21)

☞ 관련업계와 합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현행의 획일적인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의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고, 규제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며, 적용 배제 및 유예 대상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4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신설1, 내용심사5)

■ 심사내용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및 공표, 에너지회수기준, 재활용정보제공 등
 - 적용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 자동차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설정
 - 에너지 회수기준 설정
 -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공표
 - 재활용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전기전자, 자동차 제조·수입자는 1월내에 재활용 정보를 제공
- ☞ 이 법 시행이전부터 출시되어 계속 출시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3년간의 유예기간('11.1.1부터 시행)을 두고 있으나 신규제품의 경우는 '08.1.1부터 바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업계의 준비·대응을 위한 기간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 시기를 08.1.1일에서 '08.7.1로 6개월 유예토록 개선권고함
-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판매업자의 재활용실적 통보, 재활용방법 및 기준 등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를 산정
 -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말 까지 환경부에 제출·승인
 - 재활용의무량 미달성시 재활용부과금 납부
 - 제조업자 등에 대한 출고량, 재활용실적 등 조사확인 근거 마련
 - 재활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규정
 - 제품판매업자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제조업자 등에 통보
- ☞ 동 규제는 '03년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시행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이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준하여 동일하게 규정되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용, 폐자동차 재활용방법 및 기준, 재활용결과 제출, 사업자 단체의 인가 등
 -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용 의무
 -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 기후생태계변화물질 종류
 - 자동차제조수입자, 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에게 재활용 결과 제출의무 부여
 - 사업자단체의 인가 절차 및 변경 인가 규정
- ☞ 자원가치가 높으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은 폐자동차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재활용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시설기준
 - 파쇄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및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정 시설을 갖추어 등록
 - 재활용업 변경등록
- ☞ 폐차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물질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법률제정시 관련전문업종을 신설기로 함에 따라 업종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시설기준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재활용실적 등 기록·보존 및 보고·검사
 - 폐전기·전자제품 또는 폐자동차의 회수·재활용 실적 등의 기록 보존
 - 보고 및 검사 대상 자료 규정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제조·수입자 등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차의 부적정 처리 방지,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과태료의 부과·징수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방법 등을 규정

- ☞ 법률에서 설정된 과태료 금액의 부과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별도 규제 비용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48)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신설 3)

■ 심사내용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범위 규정

- 한강본류 경계로부터 1km, 한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로 규정

- ☞ 하천 인접지역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입지하게 될 경우, 침출수 유출, 폐기물 하천 유입 등에 따른 하천 수질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제로, 제한 지역의 범위는 금강 등 3대강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규제 대상지역 이외에서는 자치단체 등의 매립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별도 소요비용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 세부사항 규정

- 계획의 세부내용(물질의 종류, 배출공정, 배출량, 저감계획 및 투자계획 등)
- 제출 절차(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 시·도지사)
- 수립주기(2년), 서식(별지 제3호의3) 및 세부수립기준(별표4)

- ☞ 동 규제는 한강수계법 제15조의2(07.8.3 개정)에서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미 금강 등 3대강법에 도입(02)·집행되고 있는 제도를 한강수계에 확대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관거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 검사 시기(설치일 기준 10년 이내)
- 관거검사 대상지역 및 검사방법(별표5)
- 미이행시 개선명령(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개선계획서 제출 등

- ☞ 동 규제는 이미 금강 등 3대강법에 도입('02) · 집행되고 있는 제도를 한강수계에 확대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원안대로 의결

(4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확대

-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규모를 현행의 '1,000m²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430m² 이상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 보육시설' 확대

- ☞ 보육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유사한 시설인 유치원 (만3세 부터 취학전 유아 교육기관)의 경우도 학교보건법의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관리 기준'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포름알데히드'의 기준 강화 : 120 $\mu\text{g}/\text{m}^3$ 이하→100 $\mu\text{g}/\text{m}^3$ 이하

- ☞ 국내·외의 기준과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규제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며, 관계기관 및 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50)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중유의 황 함유 사용지역 기준 강화

- 중유의 황 함유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지역을 '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황 함량 1.0% 중유 사용지역 중 안성시 등 101개 시·군을 0.5% 중유 사용지역으로 변경
 - 황 함량 1.0% 중유 사용지역 중 동두천시 등 3개 시·군에 대하여는 '09년부터는 0.5% 중유를, '12년부터는 0.3% 중유 사용지역으로 단계적으로 변경
 - 황 함량 0.5% 중유 사용지역 중 의정부시 등 38개 시·군을 0.3% 중유 사용지역

으로 변경

- ☞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한 것이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규제이행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할 경우에는 적용이 면제되며, 규제비용에 비해 편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1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3년간 적용 유예를 받은 서귀포시 남제주 화력발전소는 '13년까지 적용을 유예할 것을 개선권고

(5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신설 2, 강화 7)

■ 심사내용

○ 자동차 촉매제 관리제도 신설

- 촉매제의 정의 및 기준을 정함
 -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촉매제의 유통·판매·사용 금지
 - 촉매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받고 이에 적합함을 표시
 -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촉매제 검사기관을 지정
 - 검사방법, 절차 및 품질기준 적합 표시방법과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을 정함

- ☞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고, 규제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명문화

-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가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자동차 소유자의 과실 등에 의한 경우 제외)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 확인검사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피규제자가 한정되어있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가 동의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관리 합리화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결격사유를 마련함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
 -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부과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

☞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고, 규제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규제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 및 이를 검사하는 사업자 관리 강화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선명령 이행시까지 자동차 운행정지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확인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확인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정함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 확인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확인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부과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
- 확인검사 대행자가 제71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규제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타 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전산망을 이용한 원격폐쇄회로 설치·운영

- 정기정밀검사 업무 및 확인검사업무를 하는 사업자(정밀검사시행지역에 한함)는 검사업무의 적정여부 등을 위하여 전산망을 이용한 원격폐쇄회로카메라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원격폐쇄회로카메라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규정

☞ 배출가스 저감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적법한 검사업무 수행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검사원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고 규제비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 환경기술인력 교육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추가함
 - ‘제64조의 정기정밀검사’ 업무 종사자
 - ‘제68조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점검’ 업무 종사자
 - ‘제71조의 확인검사’ 업무 종사자
-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보고·검사 대상 추가

-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함
 - 제62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4조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사업자
 -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 제7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 연료나 첨가제 검사기관
 - 제75조의2에 따라 자동차촉매제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 및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

☞ 운전자 배출가스 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규제에 의한 영향도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 ☞ 피규제자가 한정되어 있고, 규제비용도 미미하며, 타 법 등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대기배출시설의 직권 허가취소 사유 추가
 - 직권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로 정함
 - 제2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철거한 때
 - ☞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해 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5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준수 의무 기간 연장
 - 일반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감량지침 준수 의무(07.12.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에서 일몰조항 삭제
 - ☞ 피규제 사업장은 1,270여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3.8%에 불과하나 폐기물배출량은 28백만톤으로 전체사업장 배출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5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내용심사2)

■ 심사내용

○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추가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발생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 의료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된 인체조직 등을 배출하는 조직은행을 추가함

☞ 의료폐기물(폐기대상 인체조직 등)이 발생하고 있는 조직은행(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을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2차 감염 우려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강화

- 의료폐기물 관리체계를 기존의 성상체계에서 위해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이 중 외부 유출 등을 엄격히 방지해야 하는 격리의료폐기물과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 관리를 일부 강화
- 보관기관은 기존 보관기관의 규모에 따라 10~15일로 하던 것을 폐기물 성상별로 7~30일로 차등화하되, 격리의료폐기물은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기존 보다 강화

☞ 전염병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감염우려 및 질병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 여타의 위해의료폐기물과는 달리 부패·변질의 우려가 크므로 그 보관 기준을 강화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54)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에 대한 소음기준 신설

-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9개업종)에 대한 생활소음기준 마련

☞ 동 규제는 '05.12, 환경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라

동일건물내 9개업종에 대한 소음진동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신규시설의 경우는 '08.7월, 기존시설은 '10.1월부터 차등적용하는 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피아노 교습소 등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07.6.20)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55)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를 조정함

- 연료계수 : 경유의 연료계수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
- 지역계수 : 자동차의 지역계수를 행정구역 단위에서 인구수 기준으로 조정
- 차령계수 : 차령계수를 4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효율적 개선방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였고, 전반적으로는 부담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되며, 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도 그 금액이 작아 규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강화1, 내용심사1)

■ 심사내용

○ 개인용컴퓨터 완충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의무 부과

-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에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를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

☞ 발포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의 완충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의무 부과는 필요한 규제로 생각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한 규제 비용이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고행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규정

- 종전에는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고행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규정 인증절차를 환경부령으로 규정

☞ 이미 고시에 따라 품질·등급 인증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규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제8절 교육 및 문화 분야

1. 교육인적자원부

집필자 : 전민용 사무관(Tel. 2100-2492, jmy59@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1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6건, 강화 6건, 내용심사 32건 등 총 6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64건 중 1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3건은 철회권고, 4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26건임

<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제316차 행정사회분과 (2007. 2. 15)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316차 행정사회분과 (2007. 2. 15)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2 강화 2 *중요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안	제317차 행정사회분과 (2007. 3. 8)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제321차 행정사회분과 (2007. 3. 29)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24차 행정사회분과 (2006. 4. 19)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국립대학법인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제325차 행정사회분과 (2007. 4. 26) 제181차 본회의 (2007. 5. 11)	개선권고 4 철회권고 1 원안의결 7	신설 12 *중요 6 비중요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329차 행정사회분과 (2007. 5. 31)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3 *중요 2 비중요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제329차 행정사회분과 (2007. 5. 31)	원안의결 18	신설 2 내용심사 15 강화 1 *비중요 1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330차 행정사회분과 (2007. 6. 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331차 행정사회분과 (2007. 6. 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344차 행정사회분과 (2007. 9. 6) 제186차 본회의 (2007. 9. 6)	원안의결 6 개선권고 2	내용심사 8 *중요 3 비중요 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57차 행정사회분과 (2007. 12. 13)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4 강화 1 내용심사 1 *중요 2 비중요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357차 행정사회분과 (2007. 12. 1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58차 행정사회분과 (2007. 12. 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59차 행정사회분과 (2007. 12. 27)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비중요 5
계	-	원안의결 48 개선권고 13 철회권고 3	신설 26 강화 6 내용심사 32 *중요 18 비중요 46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초중등교육법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을 규정(신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3항 제1호·제3호·제4호에 의한 학교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실업계 고등학교·예체능계 고등학교로서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5호(실업계 고등학교 및 예체능계 고등학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특례조항에 근거하여 자율학교의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장을 공모·임용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 교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법제21조 제1항의 교장 자격기준 보다 개방·완화(28년 ⇒ 3, 15년)하여 자격증 미소지자도 임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그 특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 학교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자율학교의 교장에 대한 자격을 완화·개방·공모하여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리더십에 의한 새로운 교직 풍토를 조성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 미국·영국·프랑스·일본·독일 등의 경우에서도 공모절차에 의거 교장을 임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 특성화학교, 예·체능·실업계고교 등의 자율학교는 전문적인 교육과정 위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관련기관·단체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예 : 조리과학교 - 조리사, 골프고-골프전문가, 애니메이션고-만화가·연출가, 미술고-미술가 등)를 최소기준으로 설정하여 경쟁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 일반 자율학교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운영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과 사립교원으로 최소자격기준을 설정한 사항으로
- 동 기준은 교육혁신위원회(대통령자문기구)의 교원정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합의·의결된 기준인 점을 감안하여 그 타당성은 인정함.

⇒ 다만, 안 제105조의2제1호중 “당해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당해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또는 단체”로 구체화할 것을 개선권고하며,

⇒ 또한, 안 제105조의2(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와 관련한 공모원칙 및 공모절차, 공모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에 대한 조문체계,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과의 상충 여부 등은 법제처와 협의하여 조문정리 할 것을 부대권고 함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신설)

-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제3조의2제1항 별표1 (12쪽 참조)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교습을 제한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제1항의 등록에 있어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의 숙박시설은 학원의 시설로 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수강생의 이용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사(이하 “생활지도사”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함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수강생의 안전, 환경,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 생활지도사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함

☞ 법적 관련규정 없이 1984년 이후 일부 입시학원의 관련 숙박시설이 학원 편의 시설로 등록(일명 “기숙학원” 15개소, 13쪽 참조)되고,

- 1990.8월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으로 신규등록을 금지하였으나 등록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1997.5 대법원, 15쪽 참조)에 따라, 타인명의로의 숙박 시설·식당 등을 활용하는 불법적인 기숙형 학원이 난립(23개소, 14쪽 참조)되고 있는 실정에서,
- 2006.9.22 국회 대안입법으로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제한적 등록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에 동 학원에 대한 등록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범위를 제한적 등록취지에 따라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보통교과계열로 국한하고
- 학원의 숙박시설은 학원시설로 함으로써 타인 등이 운영하는 외부의 시설을 활용하여 야기될 수 있는 안전 등의 문제를 예방토록 하였으며
- 숙박시설의 급식시설, 안전·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영양사·생활지도사의 배치 등에 대한 대강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범위를 정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안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학교 재학생에 대해 기숙학원의 교습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에서 위임한 학원의 등록범위에 관한 사항이 아닌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이를 제한할 그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철회 권고함.

⇒ 또한 안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은 법제6조제2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하며,

⇒ 안 제5조의2제4항 중 후단 “숙박시설은 수강생의 이용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내용은 애매모호하므로 구체화할 것을 개선 권고함.

※ 안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 중 “생활지도사”는 별도의 기준으로 창설하는 자격이 아니므로 “생활지도 담당인력(강사)” 등으로 지구 수정할 것을 부대 권고함.

○ 수강료 등의 반환 (강화)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음.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반환기준(17쪽 참조)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1개월(1개월 미만을 포함한다) 단위로 분할징수하여야 한다.〈신설〉

-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습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일괄 징수할 수 있다.〈신설〉

☞ 학습자·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료를 1개월 단위로 분할 징수하도록 하고

-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중단할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을 현행 월단위에서 교습 받은 시간에 따라 세분화(17쪽 참조)하여 수강료를 반환토록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 교습시간의 1/2경과 이전에는 현행보다 반환금액이 늘어나고(수강생 입장에서는 1~2일만 수강하여도 1개월 수강료를 반환받지 못하던 불이익 해소) 1/2경과 이후에는 현행보다 반환금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19쪽 참조) 학습자의 수강 중단 사례가 학습초기에 많은 점을 감안하여 수강생에게는 학습초기에 학습지속

여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되 1/2경과 이후에는 반환율을 줄여 학습자와 학원운영자간에 합리적인 배분과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학원운영자 등에서 학원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강료 반환기준 변경(안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반대하고 있으나 다수의 학습자·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1개월 단위의 수강료 징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안 제18조제6항)으로서 “교습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까지 수강료를 일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1개월 단위 징수원칙이 무의미해 질 우려가 있는 바, 현재까지의 교습과정별 수강료 징수단위 등 징수실태를 참작하여 운영상 부득이한 교습과정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개선권고 함

○ 직업기술분야 학원의 학교명칭 표시 가능 기준(신설)

- 기술계학원 육성차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일정기준(자본금 3억원 이상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해당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에 대해서는 “학교”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우수 기술계학원의 경쟁력 확보와 대외적 공신력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있고
- 노동부 소관 ‘인정직업훈련원의 ‘직업전문학교(20쪽 참조)’ 명칭사용, 일본의 전수 학교, 미국의 Private Career School 등 국내·외 유사사례가 있으며
-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결과 이견이 없고 피규제자수 및 규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임

○ 수강료 등의 게시 등(강화)

- 수강료 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 등을 표시(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함<개정 2006.9.22>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 등을 허위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됨<개정 2006.9.2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6.9.22, 의원입법<대안>) 되어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원·교습소의 학습자를 모집광고 시 수강료

표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2007.3.23 시행예정)

- 수강료 표시제의 실효성 확보 및 수강료 초과징수방지 차원에서 학습자 모집광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련기록을 유지토록 할 필요성이 있고
-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결과 이견이 없으며 피규제지수 (학원 73,187개, 교습소 38,846개) 및 규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의결

(3)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등(신설)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함
-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함
- 교육감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학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제1항의 경우에는 학교설립 인가 기준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함
-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정함
-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법 제24조 및 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180일 이상으로 정함
-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 교과별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함
- 대안학교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통합교과로 운영할 수 있음
 - 대안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도서를 교육감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함
 - 대안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 중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함
- ☞ 우리나라의 청소년 중 매년 4만명 정도의 학업중단학생이 발생하고, 잠재적 학업중단학생(학업중단 위기, 자발적 학교 부적응 등)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인원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일반학교 생활에 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부적응 학생들로서, 이들 청소년들의 교육기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있어서 일반학교에 비해 완화된 최소한의 기준만을 설정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학교를 보완하는 공교육에 대한국가의 책무측면에서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대안학교의 설립기준은 학교로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최소 기준으로서 대안학교의 질관리와 실험성의 조화를 위해 일반학교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 현행 자율학교 및 각종학교의 설립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지역별·학교별·교육과정 운영별 등의 여건에 따라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되 교사·체육장의 기준 면적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완화하여 인가 가능(동 규정 제12조)
 - 대안학교의 학력인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에 의한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3조를 준용하여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로 제한하고
 - 정규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생정원, 수업일수, 기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정규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춰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학력인정을 하되
- 학교 설립인가기준 범위안에서 학력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대안학교의 난립·파행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사전예방과 학교의 공신력 제고 등을 이유로 사인이 설립한 대안학교에 대해서 학력인정을 배제하는 것은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에서의 시설·교원현황·교육과정 등에 대한 종합 평가·심사를 거쳐 설립인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진입규제로 판단되므로 조건이 충족된 사인 설립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학력인정토록 개선권고하며,

⇒ 또한, 안 제7조제1항에는 초등학교학력인정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96조에 상응하는 초등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 기타 대안학교의 학기운영·학년제·수업일수·교육과정·교과용 도서 등 학교 운영규정은 대안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학교 등에 비해 완화된 사항으로 많은 자율성을 허용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4)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학점의 인정 등(내용심사)

- 군복무·휴학 중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선을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로 함
- 다만,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2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제88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학점 상한선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고등교육법 및 병역법이 의원입법 으로 개정('07.1.19)되어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라 하더라도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 취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동 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의거 군복무 중 e-learning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을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으로서
- 규제비용 등의 측면에서 중요규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적개발차원에서 국방부와 기협의를 사항이며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 분석·자체규제심사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5)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유치원의 급식시설·설비기준 등(강화)

- 조리실은 조리 및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작업과정에서 일반 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10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벽과 문을 이용하여 구획하는 것을 권장 하고
- 조리장의 조명은 효과적으로 실내를 점검·청소할 수 있고, 작업에 적합한 충분한 밝기이어야 함

☞ “조리실은 조리 및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100인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벽과 문을 이용하여 전처리실 및 식기구 세척실과 구획한다. 다만, 100인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구획이 적절치 않은 경우와 100인 이하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과정에서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로 수정

- ‘마’ 목의 조리장의 조명에 대한 기준(충분한 밝기)이 불명확 하므로 이를 ‘학교 급식법시행규칙상의 기준(‘220룩스’ 이상)으로 일치시킴

(6) 국립대학법인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신설 12)

■ 심사내용

○ 국립대학법인 정관기재사항(신설)

- 국립대학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사항
 12.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4.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국립대학법인의 정관기재사항 중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사항(6호), 기타 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14호)”은

- 기본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안이므로 정관 기재사항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신설)

- 국립대학법인이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사용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국립대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 학교명칭이 확정되므로 별도의 규제신설 없이도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회권고

○ 이사의 구성(신설)

-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1. 총·학장,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추천 1인
 3. 기획예산처장관추천 1인, 4. 관할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1인
 5. 총동창회 또는 대표 추천 1인, 6. 교육연구위원회의 장
 7. 재무경영협의회의 장, 8.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9. 기타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
- 제8호, 제9호의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이사회 구성과 관련, 세부사항까지 규제함은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와의 최소한의 업무연계를 위해 당연직 이사를

총장과 정부추천인사(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각 1인)로 한정하고,

- 당연직 이사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 과반수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개선권고

○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승인(신설)

- 국립대학이 대학운영을 위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를 발행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차입을 승인 받도록 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시는 일정한 기준요건을 정하도록 개선권고

○ 경영성과 목표설정시 사전협의(신설)

- 총·학장은 4년 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경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사업연도 개시전에 그 성과목표를 반영한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경영성과목표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지원 정책에 반영

- ☞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경영성과 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매년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토록 함은 국립대학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경영성과목표 설정, 대학운영계획 수립·공표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의무부과는 거버넌스와 대학개혁의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 기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국립대학법인의 해산(신설)

- 목적달성이 불가능으로 인한 법인 해산은 재적이사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 법인 해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사립학교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권고

○ 국립대학법인 신설 신청(신설)

-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전환신청
- 단, 공립대학의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신청 전에 당해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국립대학법인의 신설·전환시 설립업무를 처리하기위해 설치된 설립준비위원회의 경우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립대학의 법인 신설·전환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 민법상 보통 법인설립·변경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사항과 유사하므로 원안의결

○ 이사의 수 및 감사의 자격요건(신설)

- 이사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함.
- 감사는 2인으로 하되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 사립학교법상의 규제와 동일한 수준이므로 원안의결

○ 이사 및 감사 선임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전승인(신설)

- 이사 및 감사는 당해국립대학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이사 중 '산업계 또는 경제계인사', '기타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와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승인을 받도록 함

☞ 사립학교법상의 규제와 동일한 수준이므로 원안의결

○ 임원의 결격사유 등(신설)

- 국립대학법인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국립대학법인의 임원(단, 총·학장을 제외한다) 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 사립학교법, 한국과학기술원법상의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원안의결
- 무상양여 받은 재산의 처분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신설)
 - 국립대학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 양여 받은 국유재산 등의 처분 시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 규제대상이 소수로 한정되고, 규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의결
-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서 제출 및 예산결산내역 공시(신설)
 - 국립대학법인은 세입·세출예산안과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를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 ☞ 규제대상이 소수로 한정되고, 규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의결

(7)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3)

■ 심사내용

-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승인(신설)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 ☞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승인 받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일정한 기준요건을 정하도록 개선권고 하고,

- 향후 법 개정시 일정한 기준요건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할 것을 부대 권고

○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신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닌 자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통지

☞ 국립대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 학교명칭이 확정되므로 별도의 규제신설 없이도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회권고 하고,

- 향후 법개정시 동조항을 삭제할 것을 부대권고

○ 예·결산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제출(신설)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개시 5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제출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포함)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제출

1.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당해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정관기재사항(법 제5조)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사항

☞ 규제대상 및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수준에 못 미치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및 제41조(결산 부속서류)상에도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유사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원안의결

(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내용심사 14, 강화 1)

■ 심사내용

○ 학교현장 공표시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에 제출(내용심사)

-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현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고,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공관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사전 제출

☞ 규제대상인 해외 한국학교는 현재 26개교이고, 현장을 의무적으로 제정·공표토록 하는 사항이 아니며,

- 동일한 내용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원안의결

○ 학칙기재사항 및 그 변경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보고의무(내용심사)

- 학칙기재사항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과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의 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규제대상인 해외 한국학교는 현재 26개교이며, 기재사항 및 변경에 대한 보고 의무는 국내학교와 비교하여 규제 강화된 내용으로 볼 수 없어, 원안의결

○ 교과용 도서의 제한(내용심사)

-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함

- ☞ 규제대상인 해외 한국학교는 현재 26개교이며, 한국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는 국내의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므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학기 및 수업 등(신설)

-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하고, 현지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교의 학년도 및 학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 감축 가능
-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보고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190일 이상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 규제대상인 해외 한국학교는 26개교, 학생수 8000명 정도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규제 범위내로 원안의결

○ 한국학교의 폐지신청(내용심사)

- 학교의 운영승인이 취소되어 학교를 폐지한 때에는 학교법인은 운영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함

- ☞ 피규제자 수가 소수로 한정되고 규제비용도 중요규제수준에 미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6조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원안의결

○ 정관의 변경승인 신청 및 폐지시의 첨부서류(내용심사)

- 정관변경승인신청시 첨부서류
 1. 변경사항(신·구)을 기재한 서류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정관 변경이 학교를 폐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재산처리와 학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첨부

- ☞ 규제대상인 해외 한국학교는 현재 26개교 이내이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원안의결
- 이사선임 신청시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신설)
 - 이해관계인이 이사선임 신청시 그 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
- ☞ 규제대상 및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수준에 못 미치고, 사회통념상 당연한 의무로 원안의결
- 재산의 처분보고서 첨부서류 및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내용심사)
 - ☞ 규제대상인 해외 한국학교는 현재 26개교이내이고, 재산의 처분보고서 첨부서류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와 동일내용으로 원안의결
 -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어 원안의결
-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기준(내용심사)
 - 한국학교에는 교장 및 교감 각 1인, 교사는 초등학교는 학급당 1인,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각각 3학급 까지는 학급당 3인으로 하되 매학급 초과마다 1인 증원
 -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학생수 규모 및 현지실정에 따라 교감의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하거나, 교사의 경우에는 학교의 정관에 정하여 증원 또는 감축운영 가능
- ☞ 규제대상인 해외 한국학교는 현재 26개교이고, 동일한 내용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내지 35조에 규정되어 있어 원안의결
- 교원의 임면보고서 및 징계요구서의첨부서류(내용심사)
 - ☞ 규제대상인 해외 한국학교는 현재 26개교이고, 임면보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어 원안의결

- 징계요구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동일한 내용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어 원안의결

○ 설립승인 신청시의 첨부서류(내용심사)

- ☞ 규제대상인 해외 한국학교는 현재26개교이내이고, 동일한 내용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어 원안의결

○ 한국학교의 운영승인 신청서류 및 신청기한(강화)

-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시설 및 설비, 교사의 지적도, 교사의 배치도·평면도, 교원확보계획, 재원조달계획, 학생수급계획, 개교연월일, 병설유치원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학교소재지 국가의 학교의 설립승인 사항 또는 승인신청 진행사항의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개교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신청

- ☞ 유사한 내용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 해외학교의 경우 국내 학교 보다 교원확보계획과 학생수급계획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바,
-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는 기본이며 해외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규제적 성격 이라기보다는 한국학교의 질을 담보하려는 적극적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

○ 한국학교의 시설·설비기준(내용심사)

- 교사의 시설기준 : 학급당 1실로 하고 1실의 기준면적은 66㎡이상으로 하되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0%를 감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 규제대상인 해외 한국학교는 현재26개교이고,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제2항관련 교사의 기준면적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한국학교의 학생수 기준(내용심사)

- 학교의 전 학년의 총학생수는 60명 이상이어야 함. 이 경우 초등학교 과정은 60명 이상,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각각 30명이상으로 하되, 이미 설립·운영중인 학교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하는 당해 학년의 학생수가 10명이상이어야 함

☞ 규제대상인 해외 한국학교는 현재26개교이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에 고등학교의 인가 학생수 기준을 총학생정원 60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 강화되는 사항이라 볼 수 없어, 원안의결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내용심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은 40~50%, 교원위원은 30~40%, 지역위원은 10~30%로함
-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 및 공관장에게 서면보고 하고, 공관장은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규제대상인 해외 한국학교는 현재26개교이고, 동일한 내용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어 원안의결

○ 한국학교의 회계관리기준(내용심사)

-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함
 1. 법령 또는 학칙에 따라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 수수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 수입
 7.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함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2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 ☞ 규제대상인 해외 한국학교는 현재 26개교이고, 동일한 내용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및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어 원안의결

○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신설)

-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공관장에게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폐지하는 때에는 폐지신고서를 작성하여 공관장에게 제출
- ☞ 규제대상이 한글학교 등 2,080여개로 중요규제 수준에 못 미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한 제출서식 등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재외국민의 국내교육과정 입학자격(내용심사)

- 대학예비 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기타 교육과정의 입학자격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하도록 함
- ☞ 규제대상이 연간 100명수준이고, 동일한 내용이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 운영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원안의결

(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폐교재산의 대부료 감액한도의 하향조정(강화)

-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의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700까지 감액대부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령의 적용을 받으면 1천분의 500으로 감액한도가 하향되는 규제대상이, 전체 대부 폐교 850개의 7%정도인 61곳으로, 많은 수가 아니며,

- 기존에는 감액혜택을 받지 못하던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의 경우 각각 50%, 30%까지 감액 받을 수 있게 된 점
- 기존의 계약관계는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유지되고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적용된다는 점,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었음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 다만, 폐교재산 활용을 전제로 사업구상을 하는 복지기관 등이 현재 있을 수 있으므로 감액한도 70%를 하향 적용하는 시행시기를 6개월정도 유예하도록 부대 권고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과태료의 부과·징수(내용심사)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50만원
- 자료제출 거부, 학교안전사고를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횡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징수

☞ 규제준수 비용이나 피규제자 수가 미미하고, 이 법률과 유사한 “산업재해보험 보상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학교안전공제회 50만원이하, 산업재해보험보상법 100만원이하)

- 관계부처, 교육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없음을 고려 원안의결

(1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 8)

■ 심사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폐지·변경인가(내용심사)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시행령안 제2조제1항)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현황 및 확보계획
6.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 시설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7.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9. 개원예정일
10.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
11.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용계획
12.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대책
13.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14.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15.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설치인가시 제출서류 중 “제15호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서류가 모호하므로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삭제 필요하여 개선권고

-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시행령안 제3조제1항)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 법학전문대학원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시행령안 제4조제2항)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 폐지 및 변경인가 시 관련서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요구되는 개별서류도 필요성이 인정됨

○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내용심사)

-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150인 이하로 함

☞ 제157차 규제개혁위원회('05.8.19) 회의시 “개별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상한 제한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 현행 제도에서도 국·공립대학, 교원 및 의료인 양성관련 학과, 수도권정비계획 대상학교의 경우, 정부가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의결한 바 있으며,
-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이 제한되므로, 균형배분을 위해서는 개별학교의 입학정원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상한을 150명으로 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150명으로 결정한 바 있고,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일부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 및 관련단체에서 150명 상한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 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교원1인당 학생수(내용심사)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1인당 학생수를 12인으로 함

☞ 다양한 전문분야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실무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원이 필요하다는 점,

- 학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강의시간을 주당 9시간으로 하는데 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주당 6시간으로 함에 따라 교원 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 입법예고시 교원확보기준과 관련하여 큰 이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교육시설의 확보(내용심사)

- 법학전문대학원에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및 정보통신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안의결

※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도 학교규모에 따라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

시설, 부속시설 등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수학점 (내용심사)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90학점 이상으로 하고, 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관련 학부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15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피규제자수 등에 있어 중요규제 수준에 못 미치고,

- 90학점은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고 학칙으로 이보다 높게 정할 수 있는 점,
- 일정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수 학점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
-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 원안의결

○ 교육과정 (내용심사)

-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 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함
-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 규제개혁위원회(05.8.19)에서 법률안 심사시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을 원안동의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규정한 교과목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입학전형의 구분 및 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내용심사)

- 법학전문 대학원의 일반전형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
- 특별전형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 하는 전형으로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
-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생 선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공표하여야 함

☞ 규제개혁위원회(05.8.19)에서 법률안 심사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구분선발에 대해 원안동의 하였고, “입학전형에 학사과정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 반영을 의무화 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준비로 학사과정 교육이 황폐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부의 전공지식과 교양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바 있음을 감안하면 원안동의결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내용심사)

-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 입학한 해로부터 4년이 되는 해와 그로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의 경우는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시행령안 제17조제1항, 제2항)
 1. 대학이 신청하는 경우
 2. 대학이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그밖에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학전문대학원이 평가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시행령안 제17조제3항)
 1. 학칙, 2. 교원현황
 3.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의 현황
 4. 교육과정, 5. 학생의 강의평가, 6. 학생에 대한 평가기준 및 결과
 7.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8. 졸업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9.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졸업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0.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지급현황 등을 포함한다)
 11.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때로부터 2년마다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현지조사단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3일이상 실시하여야 함
- ☞ 평가위원회 평가(최초 4년, 이후 5년 주기)와 자체평가(2년 주기)의 주기에 대해서는 원안동의하나,

- 유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주기,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형평을 맞추는 문제 등을 본회의에서 논의할 필요
- 평가위원회가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 중 “제3호 그밖에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평가필요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토록 개선권고 함
- 아울러, 평가를 받기위하여 갖추어야할 서류중 “11.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신청시의 제출서류와 동일하므로, 인가신청시의 발전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위하여 “발전계획의 이행결과와 보완대책을 포함한 발전계획”으로 수정토록 개선권고 함
- 현지조사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현지조사기간이 변동 가능하므로, 3일이라는 기간규정을 삭제토록 개선권고 함

(12)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신설 4, 강화 1)

■ 심사내용

○ 교장 자격연수 강화(강화)

- 교장자격연수를 강화하고자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을 현행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에서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개정함

☞ 전국 10,000여개 초중등학교 교감과 310여개 유지원의 원감들 중 연간 연수 대상자는 1,700여명이고,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점,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일수와 시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는 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이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직무연수 학점제 이수 의무화(신설)

- 교원은 신규임용된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과정의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모든 교사는 입직 후 4년이 되는 해부터 3년을 주기로 직무연수 6학점(9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되 교수·학습지도, 학생생활 지도 분야를 최소 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 모든 교원들이 연간 30시간의 연수를 받을 경우 37만 명에 이르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점, 교원직무연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 원안의결
- * 현재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지명에 따라 15만 명, 지명외 개별적으로 10만 명 정도 연수 중

○ 교원연수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내용심사)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 ☞ 교원연수기관의 다양화, 양적 팽창(169개), 원격연수 활성화에 따른 연수내용의 질 관리를 위해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원안의결

○ 교원연수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인가 취소(신설)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연수원이 인가를 받은 후라도 관련법령 및 인가기준을 위반하여 연수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 연수원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불분명하고(관련법령 및 인가기준 위반), 불분명한 규정에 근거하여 취소가능 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며, 시행규칙에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의 규정형식에도 맞지 않으므로 상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안의 인가취소 내용은 철회권고 함

○ “원격연수지원센터” 지정(신설)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폐지 및 운영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 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서류

☞ 원격교육연수원 수가 증가하고('00년 17 → '07.9 65개소) 교원들이 원격교육연수를 선호(55%)하는 상황에서,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4호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서류”는 내용이 명확치 않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함

○ 일반연수원의 원격교육연수 실시를 위한 심사절차(신설)

- 원격교육연수원 이외의 연수기관에서 원격교육연수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격교육계획서 및 콘텐츠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100여개의 일반연수원도 원격교육연수를 실시할 경우, 교육연수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의 품질에 대한 검증절차를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규제대상이 중요규제 수준이 아니므로 원안의결

(1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교육정보의 공시의무 부과 등(내용심사)

- 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구체적 범위, 횟수 및 시기
-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구체적 범위, 횟수 및 시기
- 학교의 정보공시 방법 및 공시자료 별도 비치
- 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공개 절차
- 정보공시 내용에 대한 확인 점검
- 정보공시 책임자 지정

☞ 규제대상이 전국 10,000여개 초중등학교, 400여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이르나,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이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교육정보공개법 제5조에 규정된 15개 공개항목을 구체화 하고, 그 범위, 횟수 및

시기를 정한 것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됨

- 교육정보공개법 제6조에 규정된 13개 공개항목을 구체화 하고, 그 범위, 횟수 및 시기를 정한 것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웹사이트는 접근이 용이하고 계속이용이 가능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보공시의 방법으로 판단되며, 공시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의 요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 공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성·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연구자등의 자료 요청시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한 목적에 합당한지에 대해 연구계획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학교교육정보의 허위공시, 불성실 공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인·점검과 시정 명령이 필요하며,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를 받는 것은 정확한 공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조치로 판단됨
- 공시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담당자를 실명 공개함으로써, 학교에서 공시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다른 행정업무의 공시에 있어서도 담당자와 연락처를 알 수 있게 하는 사례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음

(14)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학생들의 학교기업 현장실습 강화(신설)

-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동 규제는 학교기업과 관련이 있는 학과(대학 54, 전문대 58, 전문계고 56개교)의 학생(4,600여명)이 그 대상으로 피규제자 수가 중요규제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 학생들의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점, 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학교에 재량을 준 점 등을 고려 원안의결

(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5)

■ 심사내용

- 기술 이외 현금 또는 현물출자가 가능한 경우(내용심사)
 - 법 제36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50%을 초과하여 기술만을 현물출자 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기술이외의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는 기술출자 지분을 초과할 수 없음
 - 민간 투자자는 기술지주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미만의 범위에서 출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금 또는 현물출자를 가능”토록 한 산축법 제36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문에서 정한 “기술만으로 100분의 50을 초과 출자”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법의 규정보다 완화된 내용을 정한 것이며,
 - 민간투자자에게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본금의 100분의 50미만의 범위에서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인 점,
 - 현재 산학협력단이 333개소로 중요규제 수준은 아닌 점,
 -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원안의결
- 기술지주회사의 추가적 설립요건(내용심사)
 -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추가 요건으로 상근 전문인력 1인 이상과 전용공간을 확보 하도록 함
- ☞ 상근 전문인력 1인 이상과 전용공간은 기술지주회사의 기능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판단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이 없었음을 고려 원안의결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규정(내용심사)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로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로서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유사입법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의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제11조)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입법예고시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 원안의결

○ 이익배당의 사용 제한(내용심사)

- 산학협력단이 이익배당을 대학의 시설 및 운영 지원에 사용할 경우 대학의 연구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 범위를 정함

1. 연구시설 및 기자재 구입·운영·유지·보수 업무
2. 연구개발 기획 업무
3. 연구개발의 성과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을 연구 시설 및 기자재 구입·운영·유지·보수와 연구개발 기획·성과·평가·보상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여 수익금이 연구개발에 재투자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대학측과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설립등기 제출(내용심사)

-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 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설립목적, 2. 출자비율, 3. 출자내역, 4. 임원의 이력서
5. 사업계획서(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설립인가를 받은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인가주체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개정안에 대한 대학측과 관계부처 등으로부터의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2. 문화관광부

집필자 : 서나운 사무관(Tel. 2100-2446, nayoon@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13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5건, 내용심사 24건 등 총 2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29건 중 8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2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문화관광부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0건임

< 문화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15차 행정사회분과 (2007.1.3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강화2, 내용심사1 *중요2,비중요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316차 행정사회분과 (2007.2.15)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321차 행정사회분과 (2007.3.29)	개선권고 2 원안의결 3	내용심사 5 *중요2,비중요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321차 행정사회분과 (2007.3.29)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1, 내용심사1 *중요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322차 행정사회분과 (2007.4.5) 제323차 행정사회분과 (2007.4.12, 재심의)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3 *중요2,비중요1
저작권법 시행령	제329차 행정사회분과 (2007.5.31)	원안의결 7	강화1, 내용심사6 *비중요 7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	제334차 행정사회분과 (2007.7.5, 서면)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47차 행정사회분과 (2007.10.2, 서면)	원안의결 4	강화1, 내용심사3 *비중요 4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세칙	제349차 행정사회분과 (2007.10.17, 서면)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21 개선권고 8	강화 5 내용심사 24 *중요 8, 비중요 21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가 발행·제작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는 자료를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자료, 가제식 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전자출판물중 CD-ROM, DVD 등 유형물로 고정된 자료,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석·박사 학위논문,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로 구체화하는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심사후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출판물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현실에 맞추어 기존의 납본대상 자료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외국의 납본관련 법령 현황과 비교할 때에도 국가 문헌자료의 망라적 수집을 위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구체화하는 한편, 일괄적으로 납본의무를 부과한 후, 경우에 따라서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게 되므로 납본 제외대상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자료의 경우는 처음부터 납본을 하지 않도록 구체화하거나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의 발행시 부여받아야 하는 국제표준자료번호 신청 첨부서류를 도서의 경우 연간 출판물예정목록,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연속간행물의 경우 간행물건본(표지, 목차, 판권지)으로 정함(내용심사)

☞ 기존 시행령의 첨부서류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첨부서류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사립공공도서관 및 사립전문도서관은 도서관을 폐쇄하거나 도서관설립자의 성명, 도서관의 명칭,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에 도서관설립등록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 사립 공공·전문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변경·폐쇄신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도서관법에는 변경신고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추후 법 개정을 통하여 변경신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를 정함(내용심사)
 - ☞ 사업 시행의 승인은 기존 법령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며, 전체도시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 인프라구축 사업인바, 추가 부담이 크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도 높아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는 준공확인신청서에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지적측량성과도,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정하고 있는바,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유사법령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준공확인필증을 받기 전에 사전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한 경우 1,000만원, 권한의 위임·위탁 사무에 대해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내용심사)
 - ☞ 법 제54조에서 정한 과태료부과 대상 행위에 대하여 위임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것으로, 유사한 도시개발법상의 과태료와 비슷하거나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5)

■ 심사내용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사행행위영업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복권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소싸움 및 이를 모사한 게임물로서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함(내용심사)
 - ☞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경마·경륜 등을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하고 그 밖의 게임물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복권, 소싸움 등을 사행성게임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추가된 게임물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마·경륜 등과 유사한 범주의 게임물로서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임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게임관련업자 등 피규제자가 예측가능한 수준의 규제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을 등급분류 예외대상으로 추가하고 그 대상, 기준 및 절차를 정함(내용심사)
 - ☞ 개정법률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적용 제외대상에 “시험용 게임물”이 추가된바,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운영되는 클로즈베타테스트 현황을 반영하여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으므로 관련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신청수수료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일반게임제공업소의 허가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한편, 발급된 허가증에 대하여 3년마다 갱신의무를 부여함(내용심사)
 - * 시설기준 : 밀폐 공간 설치금지, 투명 유리창, 실내조명 40룩스 이상, 청소년 이용불가게임물 제공영업장이라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 등
 - ☞ 일반게임제공업소의 시설기준은 기존의 게임제공업소의 시설기준에 유사하게 정하고 있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발급된 허가증을 3년마다 갱신토록 하는 것은 법률상의 변경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3년마다 허가증을 갱신하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며, 허가의 갱신을 요구하는 다른 입법례는 ‘총포·도검 소지허가(5년마다 갱신)’, ‘경비업법의 허가(5년마다 갱신)’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갱신을 요구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3년마다 갱신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법률의 근거도 부족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게임물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전체 영업면적에서 게임물의 설치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내용심사)

☞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신고시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동 시행령 개정안 별표2에 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는데, 하위법령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를 정하고 있음. 또한 게임물의 설치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의 게임제공면적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규제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부족함. 따라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반 게임장업허가를 받아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외 경우에는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로서 환전, 환전알선 및 재매입이 금지되는 게임머니의 종류를 게임물 이용시 베팅 내지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게임머니의 대체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또는 훼손 하거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으로 정함(내용심사)

☞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환전, 환전알선 및 재매입이 금지되는 게임머니의 범위를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환전, 재매입 등을 통해 사행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게임머니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범위 내에서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강화 1)

■ 심사내용

○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관람객에게 징수하도록 하고(단, 애니메이션·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의 경우에는 면제), 관람객에게 징수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미납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내용심사)

☞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부과금 징수액을 입장권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한 것은 '05년도 영화상영관 매출액 기준으로 입장권가액의 100분의3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년 약 269억원이 모금되어 규제존속기한인 7년 6개월 후에는 당초 영화발전기금 목표액 약 2천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73부터 '03년까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시설 입장료 등에 부과했던 문예진흥기금 징수액이 입장료의 2~6.5%였던 점을 감안할 때, 입장료의 100분의 3은(약 210원)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영화진흥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하여 극장요금에 부과금을 징수하는 사례는 외국의 경우에도 상당수 있으며, 프랑스 등의 부과금 비율과 비교할 때에도 부담비율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법률이 정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미납액에 따라 과태료를 정하는 것은 납부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청실내에 화장실, 욕조 등 비디오물 시청에 필요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실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관람할 수 없도록 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시청제공업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 차단막 등 차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함(강화)

☞ 비디오시청 제공을 위한 비디오물감상실의 시청실내에는 화장실, 욕조 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으며, 이는 오히려 퇴폐영업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주차장 시설을 이용한 시청제공업을 제한할 경우, 법령의 미비를

이용하여 칸막이 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차극장 시설을 설치하여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의 금전적인 손해가 예상되나, 자동차 사이 칸막이, 차단막 등을 설치할 경우 퇴폐적 영업이 조장될 소지가 있으며,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을 강화(투명유리창 등)해 온 점으로 미루어 업체의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음. 또한, 실내 또는 구획된 시설에 자동차를 집어넣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 등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되는데, 규제강화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보다 규제로 인하여 보호되는 건전한 성문화, 안전한 문화시설 유지 등의 공익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를 강화하되, 다만, 기존업자들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부칙에서 유예 기간을 둘 것을 개선권고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기준을 도박중독유병율과 사행산업 업종간 유사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사행산업 전체 업종의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을 도박중독유병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전년도 GDP의 일정비율 이하로 하도록 함(내용심사)

☞ 시행령안은 총량조정의 기준은 구체화하고 있지만 조정의 한도 및 범위, 구체적 산정방식, 조정·권고 절차 등을 법령에 정하지 않고 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위임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 산정방식·기준, 조정절차 등 방식 및 절차 관련 내용은 하위규정(위원회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총량조정의 범위 및 한도는 중요한 규제사항이므로 위원회 출범후 관련조사를 통하여 정하고 추후 시행령 개정시 반영토록 개선권고

○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중독예방·치유와 관련한 총 소요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은 사행산업 업종간의 형평성과 수익성,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따로 정하도록 함(내용심사)

☞ 사업자의 최대 부담범위, 부담액 산정방식·기준 등을 법령에 정하지 않고

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위임으로, 사업자 최대 부담범위(예: 매출액 또는 수입액 대비 일정비율 이하)는 중요한 규제사항이므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부담액 산정방식·기준 등 절차 및 방식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규정(위원회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선권고

- 위원회가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지도, 감독하는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를 허용되는 출입일수가 과다한 영업행위, 타인명의를 베틀(구매)행위, 베틀(구매) 한도액이 과다한 영업행위, 그 밖에 사행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행위로 함(내용심사)

☞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가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해 위원회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되며, 현재도 개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또는 개별법령에 의하여 출입일수 제한, 베틀(구매)한도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6) 저작권법 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 6, 강화 1)

■ 심사내용

-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권리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조치 등을 하지 않거나 해태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내용심사)

☞ 연간 1조원에 이르는 P2P,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저작물 유통을 차단하고 네티즌 또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의 필요성이 크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원안의결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작성·공개해야 하는 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내용심사)

- ☞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성명, 제작연도 등은 독일·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판단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업무계획의 사전보고 및 실적의 사후보고를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실적의 사후보고만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 집중관리를 위한 적정수준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절차와 관련하여 수거한 불법 복제물은 당사자의 이익제기가 없는 경우 3월이 경과하면 폐기하도록 하고, 온라인유통 불법 복제물의 삭제·중단명령 절차를 정함(내용심사)
 - ☞ 법 제133조에서 정한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삭제·중단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익제기, 결과통지 등 개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교육기관이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취해야 하는 복제방지조치로서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저작권 보호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보상금을 산정을 위한 장치의 설치를 규정함(내용심사)
 - ☞ 법 개정으로 학교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기관도 복제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로 하고, 인증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정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인증관계 업무규정에 위배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대상, 신청시 제출서류, 지정취소 요건 등 관련 절차 등을 타 제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다만, 입법 미비사항으로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없는바, 향후 법률 개정시 이를 보완할 것을 권고

○ 보상금 수령단체(저작권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을 위한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보상금 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 사용시 사용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법 개정으로 도서관·교육기관·방송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중, 분배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사용목적 및 계획을, 사용후 사용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저작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승인 신청 기각사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상당한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조회 후 1월경과, 일간신문 등에 공고후 10일경과) 외에 저작물이나 저작자의 저명도, 저작물의 공표시기 등을 고려한 주관적인 기준도 포함토록 함(강화)

☞ 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적인 요건만을 충족한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고 원안의결

(7)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1)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2)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경우, (3)P2P 기술을 기반으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이익을 보는 경우, (4)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정함(내용심사)

☞ 법 제10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법

전송 차단조치를 취해야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고시안의 4가지 경우는 현재 P2P, 웹하드 업체의 서비스 유형을 구체화한 것임. 연간 1조원에 이르는 P2P, 웹하드 등의 불법저작물 유통 차단을 통하여, 저작권자의 불법유통 저지비용(fake파일 유포, 영화파파라치 고용 등) 감소, 인터넷 트래픽 감소, 네티즌 중 선의의 피해자 보호 등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및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대상을 구체화하였으므로 원안의결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시 제출서류에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강화)

☞ 현행 법령상 의무화되어있는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이 허가신청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유원시설 이용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관광편의시설업 종류에 관광식도업이 추가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가 되도록 하고,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정함(내용심사)

☞ 「식도·궤도법」의 준공 및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모든 업체가 방송설비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어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의결

○ 여행사가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전년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2억원이상부터 7억원이상으로 차등화(내용심사)

☞ 현행 규칙에 따르면,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면 일률적으로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보험가입액을 매출액에 따라 차등화하여 규모가 작은 중소 여행사의 기획여행 진입장벽을 줄이는 한편, 대규모 여행사의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07년 6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규제 합리화 조치이므로 원안의결

○ 기타유원시설업자는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기록부를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내용심사)

☞ 현행 규칙 별표는 매일 1회 이상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유사법령에서 각종 검사관련 서류를 최소 2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보존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한 보관기간을 설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9)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세칙 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저작권법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특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전송 차단 의무 위반시 미차단율에 따라 부과금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관리 저작물 공개의무와 관련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금액, 불법복제물 복제·전송,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중단명령 미이행 관련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금액 등을 정함(내용심사)

☞ 법 제142조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정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토록 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다만, 규제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분의 세부기준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다음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로 상향입법 할 것을 개선권고

3. 문화재청

집필자 : 노혜원 사무관(Tel. 2100-2447, woniroh@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개의 법령에 대해 13건의 신설 규제를 심사(중요 6건)

○심사대상 13건 중 3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1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문화재청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7건임

<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14차 행정사회분과 (2007. 1,31)	원안의결8, 개선권고3	강화4, 신설7 *중요6,비중요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33차 행정사회분과 (2007. 6,28)	원안의결2	강화1, 내용심사1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10 개선권고 3	강화5, 신설7, 내용심사1 *중요6,비중요7

나. 2006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강화4, 신설7)

■ 심사내용

○ 수리·실측설계의 제한 (강화)

- 실측설계업자가 조경분야 실측설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함

- ☞ 동 조항은 수차례에 걸친 관계인 공청회 및 의견조회 등을 통해 업계간 합의에 의해 마련된 조항으로 조정분야 실측설계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업역구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원안의결
- 수리·감리기술자의 보수교육 (신설)
 - 수리·감리기술자는 기술·자질향상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교육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을 휴무로 하는 등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 문화재 원형보존 등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보수교육이 필요하고, 피규제자수(200명) 및 교육경비(2천만원)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판단
- 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강화)
 - 수리업 등 등록시 법인임원중 제1호~제6호* 해당자가 있는 법인은 등록불가
 - ☞ 문화재 수리의 적정성 및 유실방지 등을 위해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법인의 수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등 유사입법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만큼 원안의결
- 수리현장의 점검 등 (신설)
 - 문화재청장은 수리부실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1. 당해 수리의 발주자 또는 문화재 관할 시도지사, 2. 당해 수리를 시행하는 수리업자 등 및 그 업자를 등록한 시도지사, 3. 당해수리를 시행하고 있는 수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 수리부실 방지를 위해 문화재청장이 현장 점검 후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는 것은 필요하나, “필요시” 라는 요건은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이 적으므로 “필요시”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요건을 명확화 할 것을 개선 권고
- 수리업의 양도·합병 신고 (신설)
 - 수리업 양도·양도합병시 문광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리업 양수·합병자는 그 사실을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함
 - 수리업자는 영업정지처분기간중이거나 국제법상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기간중인 경우 등 수리업 양도 불가

- ☞ 수리업 양수·합병시 신고 및 공고의무 등을 신설하였으나 동 사항은 법률관계의 안정 및 분쟁의 사전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산업기본법」등 유사입법례에서도 인정되는 만큼 비중요 규제로 판단

○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후의 수리 (신설)

- 영업정지처분·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수리업자 등은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수리업자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해 도급계약 해지 가능

- ☞ 수리업자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발주자가 30일 이내에 도급계약 해지를 가능토록 한 것은 수리업자 등의 귀책사유에 따른 불측의 피해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동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등 유사입법례에서도 인정되는 만큼 비중요 규제로 판단

○ 수리기술자의 배치 (강화)

- 수리업자는 수리현장에 해당 수리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자 승낙을 얻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수리기술자를 배치
- 발주자는 배치된 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에게 당해 수리기술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 문화재 수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리 기술자의 현장배치 및 적정기술자로의 교체 요청은 필요하며 동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등 유사 법령에서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수리보고서의 작성 (강화)

- 수리업자에게서 수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에게, 시·도지정 문화재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문화재 보존 및 수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문화재 수리의 이력(문화재 보수 내역 및 보수범위를 기록한 것)관리가 중요하며 기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따르는 비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수리현장의 점검 등 (신설)

- 문화재청장은 수리부실 방지를 위해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필요시 1. 당해 수리의 발주자 또는 문화재 관할 시도지사, 2. 당해 수리를 시행하고 있는 수리업자 등 그 업자를 등록한 시도지사, 3. 당해수리를 시행하고 있는 수리기술자 또는 감리원 에게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수리부실 방지를 위해 문화재청장이 현장 점검 후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는 것은 필요하나, “필요시”라는 요건은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이 적으므로 “필요시”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요건을 명확화할 것을 개선권고

○ 감리 (신설)

- 발주자는 수리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수리업자·감리업자가 동일인인거나 다음해 당시 당해 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음

- 문화재 수리의 적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관련 기본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하는 감리규정 마련이 필요

☞ 문화재 수리시 수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 등의 관계일 경우 감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어렵고 「정보통신공사업법」등 에서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시정명령 등 (신설)

- 문화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수리업 자등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지시 가능

- 문화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리·감리기술자가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위반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시 가능

☞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위반”은 규제대상 범위가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거나 피규제자가 예측가능 하도록 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내용심사1)

■ 심사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강화)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행위에 국가지정문화재를 ‘매장·소각’ 하는 행위를 추가
-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천연기념물 동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추가

☞ 피규제자 수(동물치료소 266개소)나 허가대상 횡수(연평균 50건) 등의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현재의 허가대상 행위와 비교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사한 행위이며,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의 위임 범위 내로 보여 지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문화재매매업 허가 (내용심사)

- 문화재 매매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허가절차와 제출서류(자격요건 증명서류)를 규정
- 문화재매매등 현황실태를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검인을 받도록 함
- 매매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법 제82조제2항에 의거 강화됨에 따라 처분의 기준을 정함

☞ 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매매업 허가에 관한 절차와 현황실태 신고의 시기를 정하는 것 뿐이며, 매매업 행정처분 신설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위임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4. 방송위원회

집필자 : 서나운 사무관(Tel. 2100-2446, nayoon@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방송법 시행령,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등 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건, 강화 2건, 내용심사 11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16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10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방송위원회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3건임

< 방송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제328차 행정사회분과 (2007.5.25) 제329차 행정사회분과 (2007.5.31, 재심의)	개선권고 5 원안의결 2	강화2, 내용심사5 *중요6, 비중요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335차 행정사회분과 (2007.7.12)	개선권고 3	신설 3 *중요 3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제337차 행정사회분과 (2007.7.24, 서면)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개정안	제338차 행정사회분과 (2007.7.30, 서면)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제357차 행정사회분과 (2007.12.13) 제358차 행정사회분과 (2007.12.20, 재심의)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4 *중요 4
계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0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내용심사 11 *중요13, 비중요3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강화2, 내용심사 5)

■ 심사내용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라디오 및 데이터방송 각 채널사용사업별로 사업자수 6개를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으며, 위성방송사업자는 각 채널사용사업별로 전체 사업자수의 1/5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함(강화)

☞ 지상파방송사업자 계열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콘텐츠를 저렴하고 우선적으로 배급받는 지위에 있는 등 경쟁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타 방송사업자 보다 강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시장점유율,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규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6개 사업자 초과금지”를 정하는 것은 시장 점유율 및 사업자 수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가 부족하며, 규제기준을 비율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비율)이 아닌 사업자수로 규정함으로써 전체 사업자 수(또는 매출액)가 증가하는 경우 당초 의도와는 달리 규제수준이 과다해지는 문제 발생하며,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시장 확대에 따라 이런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회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 계열 방송채널사업자(총 16개)들이 매출액의 15%, 사업자수(206개)의 7%에 불과하여 시장에서 우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시장점유율 및 영향력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 방식 및 수준을 재설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제방식 측면에서는 “사업자수” 대신 “사업자수 비율” 형식으로 규제를 설정하고, 규제수준 측면에서는 현재 사업자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의 시장점유율, 향후 방송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모두 포함토록 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특수관계자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35/100으로 제한하도록 함(단, VOD채널, PPV채널, 홈쇼핑채널 등은 제외)(강화)

- ☞ 법 취지에 따라 각 방송사업자별로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도전문편성 채널을 포함할 필요는 있으나, 모든 보도전문편성 채널을 포함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시청자의 보도전문프로그램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규제를 정하도록 개선권고
- 법 제15조의2제4항에 의하여 변경승인이 요구되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방송위원회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변경승인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내용심사)
 - ☞ 다만, 방송위원회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변경승인을 받은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다시 정보통신부장관(유선방송사업 허가권자)에게 신고토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부처간의 업무협조를 통해 행정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간소화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방송위원회로부터 변경승인을 통보 받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반영하여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증을 발부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개선권고
-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승인·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함(내용심사)
 - ☞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을 전문편성 하고자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일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등록” 하는 것과 달리 심사를 통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상파방송사업자 등과 동일한 수준의 소유권제한(1인 지분제한 30%)을 받는 등 다른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바, 보도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강하게 규제하는 방송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제·종교·연예 등의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수적 편성에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의결
-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미를 (1)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에서 제작하여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 또는 실비로 방송하는 공익적 광고, (2)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편성하는 공익적 광고, (3) 기타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광고로 구체화(내용심사)

☞ 제작주체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등으로 정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광고 등으로 하는 것은 법의 운용을 위하여 규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수준이나 비용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무료 또는 실비로” 방송하여야만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부분을 법의 취지 및 법률상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역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위성방송사업자의 KBS·EBS 재송신, 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국가간 상호호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효기간 설정하고, 사업자는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방송위원회에 재송신을 신청하도록 함. 다만,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방송위원회로부터 재송신 받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송신 얻은 것으로 간주함(내용심사)

☞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무분별한 외국방송의 재송신을 규제하여 국내 방송 산업을 보호하고 저작권 문제 등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외국방송 재송신 계약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 3년이 과도하게 짧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역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위성방송사업자의 KBS·EBS 재송신의 경우까지 재송신의 승인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허가 등을 얻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는 단순 재송신에 대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효기간 규제의 필요성이 없는 피규제자를 대상에서 직접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추천 및 허가절차를 정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일 6시간 이상 방송 실시, 허가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60% 이상 편성할 것,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상 편성,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를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30% 이내로 할 것, 전체 수입중 방송광고수입 50% 초과금지 등을 정함(내용심사)

☞ 의무 방송시간은 방송의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현재 시범사업자들의 운영시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며, 허가받은 주된 방송 분야의 프로그램 편성비율도 다른 사업자의 규제수준(60~80%)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임. 또한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비율 제한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특성상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이 현재 50% 수준이므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방송광고수입 50% 제한과 관련하여, 현재 수신료, 시예산 또는 국고의 지원을 받는 KBS-1R, KBS-1TV, EBS-FM 등은 방송광고 또는 상업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외국의 경우에도 비영리 소출력 라디오제도의 경우 광고가 제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고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판매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한정판매” 표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으며, 편성 종료시간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고 시청자에게 약속한 편성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송 및 보도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도 특정 방송사업자명 또는 프로그램명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음(신설)

☞ 허위로 “한정판매”,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약속된 편성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임상실험결과를 방송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시청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의의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하는 홈쇼핑 방송 심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명확한 행위기준을 제공하므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한정판매”,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이나, 편성 종료시간, 인용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프로그램명 등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한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규제의 명확성이 결여되므로 이 부분을 삭제 또는 구체화할 것을 개선권고

○ 자동주문전화에 할인혜택을 과다하게 부여하여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할 수 없도록 함(신설)

☞ 자동주문전화 이용에 따른 혜택을 편법적인 가격할인 또는 인하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다하게 부여할 수 없다’고만 하여 기준이 모호하므로 가능한 최대한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예: 상품가격의 10%, 최대 3만원 초과금지)할 것을 개선권고

○ 의사 등이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자인 경우, 개발자의 신분을 밝힐 수 있으나, 개발자의 신분인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개발자가 방송에 직접 출연하거나 해당제품을 직접적으로 소개할 수 없도록 함(신설)

☞ 「건강기능식품법」은 원칙적으로 의사 등의 추천광고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제품의 개발자가 의사 등인 경우 이를 표시·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규정안 제49조 제4항에서 건강식품 개발자인 의사 등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직접 출연 또는 직접 소개를 금지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타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바, 이미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의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적은 반면, 이로 인해 의사등 제품개발자의 마케팅 수단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사등 개발자의 방송출연 및 제품 직접소개를 금지한 동조 제4항 단서부분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3)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공익채널의 선정기준을 당해채널의 신청분야의 적합성, 당해채널의 공정성·공익성·실행가능성, 당해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 공적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시청자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으로 하고, 공익채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내용심사)

☞ 개정된 방송법이 공익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시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지원적·수혜적 성격의 행정행위의 경우도 그 선정기준 및 절차는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인정됨. 피규제자가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약 200여개 사업자로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4)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변경승인 신청시 (1)주식 또는 지분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 (2)주식 취득 계획서 (3)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 (4)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 (5)대표이사나 임원의 1/2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 (6)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개인) (7)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 (8)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9)경영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내용심사)

☞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은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법 제15조의2 제2항에서 승인 심사기준으로서 ①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②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③시청자의 권익보호 ④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를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수가 약 400여개 방송 사업자로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으며,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나, 다만,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추후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권고

(4)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지상파텔레비전·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지상파텔레비전·라디오방송 사업자는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단,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내용심사)

☞ 개정된 방송법이 지상파방송사업자간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1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교차소유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분제한을 초과하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주주가 복수의 지상파사업을 소유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나, 그러나 시행령 안은 사업자간 상호교차소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단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5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교차소유가 아닌 단순한 지분의 소유까지 제한하여 기존사업자에게 매각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규제의 대상 및 목적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며 5% 소유제한시 일부 민영방송 주주는 소유지분의 매각의무가 발생하나, 비상장주이며 원매자가 없다는 점 등 처분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제기됨. 따라서 교차소유에 한하여 5% 소유제한 규정을 유지하고, 교차소유 외의 단순한 지분보유의 경우 제한수준을 완화하되, 현실적인 매각의 어려움, 순환소유 가능성, 방송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예: 7~10%)으로 완화할 것을 개선권고. 다만, 제한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매각지원 등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유예기간 만료('08.10.27) 3개월 전까지 지분소유 현황 및 매각실태를 조사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시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할 것을 권고

○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방송위원회가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방송법 제76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공정한 거래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된 별도의 준수사항 제정권을 방송위원회에 위임했다거나,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고 볼 수 없으며, '방송 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 직무로 규정하는 방송법 제27조제7호도 별도의 사업자 의무규정 제정권을 위임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방송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삭제하도록 철회권고

-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에게 금지되는 행위로 (1)중계방송권자로서 일반국민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가능한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중계방송권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재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특정국민행사 등에 대한 중계권 제공시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다른 행사의 중계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5)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뉴스보도 또는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6)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에게 가격·거래조건 등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정함(내용심사)

☞ 중계방송권자로 하여금 일반국민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 가능한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 현재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플랫폼 현황으로 볼 때, 일반국민의 90% 이상 시청 가능한 방송수단은 지상파TV 뿐이므로 동 조항에 따르면 중계방송권자는 반드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재판매 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중계권 협상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게 되고, 우월적 지위를 얻은 지상파사업자가 중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중계권료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 등 불공정행위를 할 우려가 많아져 심각하게 경쟁이 제한될 소지가 있음. 단지 지상파TV의 가시청률에 불과한 '90%'를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는 기준으로 보고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IPTV,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중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국제관심행사의 유형별로 보편적 시청 보장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면서도 경쟁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민관심행사의 종류에 따라 "보장 기준"을 차등화(예: 월드컵·올림픽의

경우 일반국민의 90%, 그 외의 경우 60~75% 내에서 방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 이상이 시청가능한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하여 정하도록 개선권고

또한 법 제76조의3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지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제4호 및 제6호는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중계권의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을 넘는 사항을 금지행위로 정한 것이며, 이러한 불공정행위시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불공정행위에 포함되어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등의 대상이 되므로 별도규정 제정시 이중 제재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규율이 가능한 제4호 및 제6호는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1개 채널을 2개 이상의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내용심사)

- ☞ 현행 방송법은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여, 한 채널이 두 개 이상의 PP를 편성하여 송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방송위원회는 정책적으로 채널의 정체성 유지, SO의 편성관련 부당행위 방지 등의 이유로 국내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듀얼 편성을 제한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음(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동 지침을 법령으로 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그러나 법에서 방송사업자가 승인 받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했으므로, 외국방송 재송신이 듀얼편성 되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정하는 것이 위임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특히, 외국방송 재송신채널이 SO의 전체 운용채널의 20% 이하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듀얼 편성을 허용할 경우, 재송신 쿼터의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제9절 노동 분야

1. 노동부

집필자 : 정덕채 사무관(02-2100-2443, jdc@opc.go.kr)

750

가. 2006년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2007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직업안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규칙 개정안, 석면함류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관한 기준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등 2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2건, 강화 15건, 내용심사 21건 등 총 58건에 대해 규제심사(중요 20건, 비중요 38건)
- 심사대상 58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철회권고, 10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고, 4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22건임

< 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74, 281차 경제2분과 (07.2.1, 4.26)	원안의결4	신설3, 강화1 *비중요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제274차 경제2분과 (2007.2.1)	원안의결1 개선권고1	강화2 *중요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274차 경제2분과 (2007.2.5)	원안의결1 개선권고1	신설2 *중요1, 비중요1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제276차 경제2분과 (2007.2.26)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76차 경제2분과 (2007.2.26)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을 개정안	제277차 경제2분과 (2007.3.8)	원안의결1	신설1 *중요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을 시행령 개정안	제277차 경제2분과 (2007.3.8)	원안의결2	내용심사2 *비중요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78차 경제2분과 (2007.3.15)	원안의결1	강화1 *중요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0차 경제2분과 (2007.4.12)	원안의결2	내용심사2 *비중요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제179차 본회의 (2007.3.29)	원안의결5 개선권고1	신설4 강화2 *중요1, 비중요5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제282차 경제2분과 (2007.5.10)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284차 경제2분과 (2007.5.22)	원안의결6	내용심사6 *비중요6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285차 경제2분과 (2007.5.31)	원안의결1	내용심사1 *중요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85차 경제2분과 (2007.5.31)	원안의결4	신설3 강화1 *중요1비중요3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85차 경제2분과 (2007.5.31)	원안의결2	신설2 *비중요2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제287차 경제2분과 (2007.6.14)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제284차 경제2분과 (2007.5.22)	개선권고5	신설5 *중요5
	제182차 본회의 (2007.6.7)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286차 경제2분과 (2007.6.22)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87차 경제2분과 (2007.6.28)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제183차 본회의 (2007.7.5)	원안의결1	강화1 *중요1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298차 경제2분과 (2007.9.12)	원안의결1	강화1 *중요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99차 경제2분과 (2007.9.27)	원안의결2 개선권고1	내용심사3 *중요2, 비중요1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제307차 경제2분과 (2007.11.28)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07회 경제2분과 (2007.11.28)	원안의결4 개선권고1 철회권고1	신설1 강화4 내용심사1 *중요3, 비중요3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09차 경제2분과 (2007.12.12)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09차 경제2분과 (2007.12.12)	원안의결2	내용심사2 *비중요2
계		원안의결47 개선권고10 철회권고1	신설22 강화15 내용심사21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신설)

- 현행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동부가 알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개별 건별로 고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2007.1.3일자 법률개정으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사업주가 일정규모별로 단체로 발급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을 현행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준용토록 하고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 및 근로개시 신고사항 등을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규정하는 절차적인 내용으로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은 기존 “고용허가서”의 요건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외국인 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의 10일 이내 제출사안도 현재 동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신설)

- 사용자가 동포를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고용한 후 근로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동포고용사실 신고의무 위반 등의 사유 발생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안으로서 60만원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 이고 현행 시행령상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원안의결

○ 근로계약 체결 대행기관 지정(강화)

-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단일화
- ☞ '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됨에 따라 송출비리 방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등 고용허가제의 기본적 취지를 고려하여 외국 근로자의 국내도입 창구(송출국가 관련 업무)는 현행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인 한국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연수추천단체는 국내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사용자의 업무대행·취업교육 등을 수행토록 업무를 분담하기로 동 단체와 협의한

사안으로서, 산업연수생제도 도입(93년) 이후 거의 매년 민간송출기관 및 해외 송출업체와 관련된 비리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대행 기관을 지정하는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신설)

- 외국인근로자를 취업 3년 만료후 재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30일전에 “취업기간 만료 자진출국자 재고용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여 입국할 경우 1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한 외국인근로자가 기간만료로 출국할시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의 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법 제18조의2)함에 따라 규정한 사안으로 재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입국하는 관계로 고용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재고용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불법체류 방지 등 고용관리를 위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적용범위 확대(강화)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로서 단가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아래의 공사에 대하여는 개별단가 계약공사 금액이 4천만 원미만이라 하더라도 개별단가공사계약금을 합친 총단가 계약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 적용공사 :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전기공사와 지하맨홀, 관로 및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설비공사로서 총 단가 계약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공사
- ※ 단가계약 : 공사단가의 변동없이 시공물량이나 수량에 따라 공사비가 사후 정산 되는 방식으로 소규모 공사가 반복 시행되는 전기설비 유지·보수, 정보통신 설비유지, 보수 및 상하수도 보수 유지공사 등에 적용되는 계약방식

☞ 현재 개별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전, 화재, 질식 및 추락 등의 위험이 큼에도 대부분 단위공사는 4천만원 미만으로 안전보건 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아 현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고압 및 특별 고압으로 이루어지는 전기공사와 지하맨홀, 관로 및 통신주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는 총단가계약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을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안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강화)

-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건설업을 행하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확인

☞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원이 절감 차원에서 사용을 기피하여 재해발생의 간접적인 요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는 사안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 규제의 타당성이 있으나, 매월 1회 이상의 확인 절차는 공사업체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6개월 미만 공사는 공사 완료시 1번 제출, 6개월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6개월에 1번씩 제출토록 개선권고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사용단계의 위험기계·설비에 대한 성능확인 검사(신설)

- 위험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확인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기계·설비 또는 취소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기계·설비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단,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검사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성능확인검사를 면제

* 위험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성능확인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설비 또는 인정이 취소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위험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체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던 사항을 성능확인검사로 일원화하는 사안으로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의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게 중복되어 검사를 일원화하는 취지에 타당성이 있으며 기존 정기검사와 달리 성능확인검사는 검사 대상의 사용 환경·생산연도 등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고 노후화된 검사대상은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단축하는 등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였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TF 구성·운영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노사협력을 통한 자율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경우 성능확인검사를 면제토록 하여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나, 다만 자율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항상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체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을 하도록 개선권고

○ 자율검사프로그램 관련 서류의 보존(신설)

- 위험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관련 서류를 2년간 기록·보존

*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안전인증대상품에서 제외된 위험기계 및 설비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사후에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보존토록하는 사안으로 자율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보존해야 할 서류가 명확하고 보존에 따른 별도의 인력·예산 등의 조치할 사항이 거의 없는 점과 과태료 부분도 현행 자체검사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4) 노동위원회법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회의장 퇴장명령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내용심사)

-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0조에 따른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의 퇴장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심판회의 등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퇴장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안으로 다수 당사자 사건 또는 대형분규 사건의 경우, 회의장내 위협적 분위기 조성, 노사 당사자간 폭언 및 말다툼이 빈번한 실정이고 퇴장명령을 받고도 퇴장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회의진행이 곤란하고 사건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바, 퇴장명령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및 회의질서 유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유지(내용심사)

- 유효기간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정함

※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법에 규정된 사항) :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시 2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합의에 의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미합의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 선임

☞ 교원노조법상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제6조제3항)의 효력이 '06.12.31에서 '09.12.31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시행령상의 교섭창구 단일화관련 규정(유효기간)을 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의결

※ 교원노조법 개정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영구히 존속토록 하기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06.11.2)를 받고 2006년까지 되어있는 단일화 존속규정을 삭제 하였으나, 국회에서 2009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심의되어 법 개정(2006.12.30)이 완료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 및 납부(신설)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하되 그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

☞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례규정으로 산재보험에 적용토록 하여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사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자영업자로서의 성격과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일부 직종에 대해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토록 절충한 사항이므로 그 동안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원안의결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등(내용심사)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법 제28조의6이 신설되면서 제28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체납과 관련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다음의 공개 제외사유를 규정

- 또한, 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원의 명칭을 포함), 연령,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

☞ 고용·산재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제외 사유를, 보험료의 납부의지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사안으로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와 명단 공개시 공개할 사항을 유사입법례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의 내용과 수준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제외사유 등(내용심사)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이 체납발생일이 1년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하여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법 제29조의2가 신설되면서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체납과 관련된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다음의 제공 제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자료 요구자는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을 기재한 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 고용·산재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료의 제공 제외사유를 규정하여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부득이하게 보험료를 체납했음에도 신용정보의 제공을 통해 은행권의 대출금지 등으로 과도한 사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안으로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와 자료 제출 내용을 유사입법례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4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8)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수험자 지참 금지 물품 지정(강화)

- 수험자가 시험기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사용하는 행위를 국가기술 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 기준에 추가하고, 지참금지 대상이 되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구체적으로 지정(수험자 유의사항)
- ☞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각종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사안으로 공무원임용시험, 대학수학

능력시험 등 타 시험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사유가 명확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05년 제2회 컴퓨터그래픽스응용기능사(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및 '05년 대학 수능시험에서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한 답안 전송 등 부정행위 발생

(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훈련기관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기준(내용심사)

- 훈련을 위탁 또는 인정을 받아 실시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또는 인정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최근 5년 동안 1회인 경우 3배 ②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최근 5년 동안 2회인 경우는 4배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인 경우는 5배

☞ 부정수급액이 소액(100만원 미만 : 대통령령에 규정)인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탁 또는 인정제한 처분대신 추가징수금을 상향조정하는 사안으로서 동법률 개정시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된 바, 법률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3~5배까지 추가징수 금액을 정하는 사안이므로 최근 5년간 부정행위의 누적횟수에 따라 추징금액을 차등화하여 훈련기관의 상습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면에서 규제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어가 신청시 제출서류(내용심사)

- 훈련법인이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잔여재산처분계획서, 해산신청 당시 정관, 이사회회의록 사본, 재산목록,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고자 해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의한 해산여부와 법인변경에 따른 제반사항 처리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서류 등을 규칙에서 정하는 사안으로 제출서류가 훈련법인 해산결의 과정에서 이미 작성되어있는 이사회회의록 등으로 추가 작성 부담이 없고, 훈련생과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는 법인변경에 따른 훈련과 고용 계속성 검토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10)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신설 4, 강화 2)

■ 심사내용

○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등(신설)

-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법률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하고,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함

* 위반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회를 확대하기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의결한 사안으로서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당연지정제도를 도입하되, 우선 1년간 시행(일몰제 적용)하되, 노동부에서 시행만료 6개월전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산재환자의 대형병원 집중을 방지하기위해 건강보험에 준하는 1~2차 진료절차를 본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개선권고

○ 의료기관의 지정제한 및 과징금 부과(신설)

-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이 거짓된 진단을 하거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이하“지정제한”)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지정제한이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산재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지정제한처분 대신 부당이득금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 ☞ 현행 공단 내부규정으로 이루지고 있는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한 사안으로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지정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당해 의료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규제의 사유가 인정되고, 지정제한 처분대신 과징금부과는 지정제한으로 인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이득금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은 유사입법례를 비교해 볼 때 규제의 정도가 적정하므로 원안의결

○ 진료계획의 제출(신설)

-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

*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5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상병경과, 치료방법, 치료예정기간 등을 명시한 주치의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진료계획 제출의무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시 유사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평가(신설)

- 업무상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우대 또는 지정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재해지정 의료기관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질 등을 평가하는 장치가 없어 주기적인 점검을 하지 못함에 따라 동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산재근로자의 의료·재활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동 개정안은 산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 평가로서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 장애등급 재판정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일시중지 사유추가(강화)

-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장애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를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사유로 추가하며, 장애등급 재판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보험급여 일시중지사유로 추가

☞ 장애상태가 시간 경과에 따라 회복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치유당시에 평가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계속 지급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장애상태가 변경 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장애재판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의 장해등급 상향 시도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제한 대상을 추가하는 사안으로서 이해관계자간 합의·의결된 내용으로 원안의결

○ 연금 수급권의 신고 의무 및 보험급여 일시 중지(강화)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는 수급권의 신고의무와 출국한 수급권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그 수급권과 관련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단에 신고
- 또한, 수급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요양중인 근로자가 공단의 전원요양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 보험급여 일시중지 사유를 추가

☞ 수급자격 확인이 어려운 외국거주 수급자 본인이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있음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부당하게 연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산재근로자가 상병상태에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전원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중지 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산업재해 보상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의결

(11)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강화)

- 일부 화학물질(86종)의 노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1-브로모프로판 등 9종(신설), 톨로엔 등 77종(변경)을 합리적으로 개정

☞ 현행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이 86년도에 제정된 이래 선진 외국과의 노출기준의 수준에 차이가 커 개정·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화학물질별 물리·화학적 특성, 노출시 인체의 유해성,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의 노출기준과 국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전문가 28명의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기준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안의결

※ '05년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연구사업” 용역

(12)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내용심사 6)

■ 심사내용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내용심사)

- 법에서 취약계층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일 경우는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08년까지는 30%) 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일 경우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취약계층 비중이 50%(’08년까지는 30%)이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혼합형인 경우는 비중이 각각 30%(’08년까지는 20%) 이상으로 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07.7 시행예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과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임. 사회적기업의 인증 판단기준을 정하는 사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한 30~50%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 비율을 ’08년말까지 완화하였고, 피규제자수가 400여개로 소수이며, 규제의 비용부담이 없는 점,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규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내용심사)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을 인증신청일 전 6월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이상일 것으로 규정

☞ 사회적기업은 기존 봉사단체와는 달리 일정한 정부의 혜택을 받으며 영업활동을 통해 일정수익을 창출하여 사회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현재 비영리 봉사단체가 근로자 1인당 77만원정도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생존을 위한 영업수입의 기준을 노무비의 100분의3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정관 및 보고서 등의 기재사항(내용심사)

- 사회적기업의 기부, 재원조달, 회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그밖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사업 보고서에 기재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관 및 보고서에 기재할 내용이 일반적인 타 정관이나 사업보고서를 준용한 사항으로 원안의결

○ 경영지원업무의 위탁(내용심사)

- 법에서 경영 등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 가능토록 함

☞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위탁 가능 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사안으로,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한 범위 설정이라 판단되며, 규제의 비용부담이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규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과태료 금액(내용심사)

-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환액의 범위(1,000만원 이하)내에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규정

☞ 위반행위 횟수, 정보, 동기 md에 따라 과태료를 정한 사안으로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규정하였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 인증(재인증) 신청(내용심사)

- 사회적기업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와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재인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전에 재인증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제출

☞ 인증(재인증)신청시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서류 목록의 작성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인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13)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내용심사1)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내용심사)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에 과태료 금액을 곱한 금액을 부과(30만원~500만원)

☞ '07. 7월 동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범위내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이나, 과태료 금액에 근로자수를 곱하여 부과하는 사안은 부과방식 및 총 부과 한도액 등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제처 법안심의회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본 사안은 그 동안 수많은 논의끝에 마련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시행하되,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시행 1년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1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3, 강화1)

■ 심사내용

○ 사용사업주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정보제공(신설)

- 법 제20조제2항의 위임범위에 따라 사용사업주의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을 정함

☞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의 비교대상자인 사용사업주가 사업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사안으로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점에서 규제의 타당성이 있으며 동 정보의 서면통보는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기준(신설)

- 법 제46조에 신설된 과태료에 대하여 동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법 위임 : 1억원 이하), 직접 고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법 위임 : 3천만원 이하),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법 위임 : 5백만원 이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제시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법 위임 : 3백만원 이하)

- ☞ 파견근로자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이나 과태료 금액에 근로자수를 곱하여 부과하는 사안은 부과방식 및 총 부과 한도액 등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제처와의 법안심의시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본 사안은 그 동안 수많은 논의끝에 마련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시행하되, 문제점 등 제반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시행 1년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 사업소 수의 감소시 변경신고(신설)

- 파견사업주가 사업소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변경신고
- ☞ 법령상 파견사업주의 사업소 수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허가 내지 신고하는 규정이 있으나, 사업소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피규제자수가 1천여명으로 소수이고, 규제 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근로자파견 보고서 제출(신설)

- 근로자파견사업 보고기간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로 단축(기존 20일까지)
- ☞ 파견사업 현황파악 등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보고 기일을 단축하는 사안으로, 피규제자수 및 규제비용 등을 감안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15)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구제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신설)

- 국제명령을 불이행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설정 및

부과·징수 결정

* 해고 500~2000만원, 휴직·정직 250~1,000만원, 전직·감봉 200~500만원, 기타 인사상 불이익 처분 100~500만원

- ☞ 근로기준법에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부과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규정하는 사안임으로 법에서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조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없애는 대신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따른 부과기준을 설정하는 하는 사안으로 노사정이 합의하였고('06.9.11), 타 법에서도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중이며, 해고시 사전통보기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기간이 30일임을 감안하여 이행기한 30일을 정하였고, 15일의 납부기한도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한 점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의결

○ 경미한 범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규정 마련

*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종류에 따라 20~500만원

- ☞ 근로자 명부 미작성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종전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던 것을 '07.1월 법 개정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16)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내용심사)

- 고령자 고용현황,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미제출시, 정년제도 운영현황, 정년 연장계획 미제출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사유가 명확해짐에 따라 규정하는 사안으로,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정하였고, 동 사안에 대해 현재도 보고사항 미이행을 근거로 동일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17)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신설 5)**■ 심사내용**

- 출산 후 10일 이내에 휴가 청구사항(신설)
 - 개인별 사정을 감안하여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출산휴가가 가능하도록 개선권고
- 배후자 출산휴가 불허시 과태료 부과(신설)
 - 시행초기의 기업입장을 고려하고, 본 제도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 1년 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할 것을 개선권고
-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불허용 경우(신설)
 - “해당 사업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중“현저한 지장의 경우”는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권고
- 육아휴직 불허용시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신설)
 - “충분히 협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바, 협의사항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권고
- 근로시간 단축 불허용시 서면통보 사항·허용시 서면합의 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신설)
 - 시행초기의 기업입장을 고려하고, 본 제도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1년 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할 것을 개선권고

(18)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의 금지(강화)
 - '08.1.1일부터 중량비 0.1% 초과하여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 다만,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은 제외)은 '09.1.1부터 금지
 - 또한,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화학공업 설비

용으로서 100℃이상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시까지 금지대상에서 제외

- ☞ 석면의 유해성을 감안하여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던 것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되, 일부 군사용품 및 대체품 미개발 품목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대체품 개발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동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의 노후시 일반국민의 석면 노출의 위험이 예상되고, 석면의 치명적 유해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전면 금지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19)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강화)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별도로 명시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불가
- * 1차위반(사업정지 1월), 2차위반(사업정지 2월), 3차위반(사업정지 3월)

- ☞ 현행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만으로는 구직자 보호가 불충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정보매체에 정보 제공시 사업신고번호 표시를 의무화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신고업체와 미신고업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매체를 통해 최저임금미달, 성매매 등 위법한 구인정보를 게재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20)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지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 연령차별금지 관련 불리한 처우 금지 등(강화)
 - 모집·채용, 임금·기타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금지 의무 부과
 -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시정명령 권한 부여
 -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
 - * 제출요구 불응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령차별금지관련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급속한 고령화 사회 도래로 향후 노동력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고령자 등의 고용률을 높이고자 모집·채용에서 퇴직·해고 등 고용의 순 단계에 걸쳐 고령자에 대한 고용차별 금지를 명시하여 고령자 등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제도는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영국 EEAR, 미국 ADEA, 호주 ADA)를 시행중에 있음.

동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및 이행상황 미제출시 각각 3천만원·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동 제도의 실효성 담보 및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며, 차별 관련 타법의 제재규정 및 외국의 유사규정을 감안할 때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고

또한,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연공위주의 노동시장 관행을 감안하고, 이해관계자인 경총 등 일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집·채용에 있어서는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하는 사안에는 동의하나, 2010년부터 적용토록 한 사안중 퇴직·해고 부분은, 시행 6개월 전 노동시장 및 사회적 제반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최종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21) 근로기준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근로시간의 제한(강화)

- 건설공사의 주당근로시간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은 그 전체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주 40시간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금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 건설현장의 경우는 사업체의 규모가 다른 여러 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을 통해 동일한 공사현장에 참여하는 특성이 있어 현행 상시근로자 산정방식으로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간 작업시간(근무시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노사간 갈등요인 등 부작용이 표출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사안으로 하도급 계약체결시 주 40시간 근무를 감안하여 인건비 및 공사기간을 계약에 반영하게 되므로 영세업체의 실질적 부담은 상쇄하고, 특히 규제내용이 '06년 포항건설 플랜트 노조 파업 이후 관계부처와 관련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내용심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면서 필수유지업무를 “업무의 정지·폐지시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

☞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노사단체가 참여한 필수유지업무T/F 논의를 통해 그 원칙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T/F회의('07.2~4월), 관계부처협의('07.6월), 입법예고('07.7월)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였고, 각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각 사업의 서비스 성격, 대체서비스 가능성, 대체인력 확보 가능성, 노조 조직률, 근무형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쟁의권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선에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시행령에서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실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은 노사간 협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파업참가자 수 산정방법(내용심사)

- 노조법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되면서 구체적 파업참가자 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파업참가자”를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자로서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그 수는 1일 단위로 산정

☞ 법률상 허용된 대체근로에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파업참가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큰 이견이 없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되, 파업참가자 수 산정에 있어 노조의 협조가 필요함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법제처의 심사를 받을 것을 부대권고

○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내용심사)

- 노동조합의 변경사항신고·해산신고, 단체협약 당사자의 단체협약 신고 미이행시 (100만원~300만원)
- 노동조합의 서류비치·자료제출, 사용자의 직장폐쇄 신고 미이행시 (100만원~300만원)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한도 내에서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노동부예규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수준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습적으로” “게을리한 경우”의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바꿀 것을 개선권고

(23)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총회 의결내용 보고(신설)

- 한국공인노무사회의는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 동 사안은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설립·가입이 법규로 강제(07.8.3)됨에 따라 한국노무사회에서 의결하는 내용이 공인노무사법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독하기 위하여 것으로 피규제자의 수가 1개소로 한정되고, 규제영향비용이 이미 의결된 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미미한 점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과 없고, 규제수준이 변호사회·법무사회·세무사회·관세사회 등과 동일한 수준에서 처벌 규정이 없이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1, 강화 4,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의무 안전인증 검사대상에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추가(강화)

-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인증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추가
- *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

- ☞ 고소지역 운반에 사용하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아파트 등 작업장소의 고층화로 인해 작업위험요인 및 중대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 수가 소수로 한정(745대)되고, 규제영향비용(1억1,500만원정도)이 미미하게 예상되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이해관계자가 사전협의하여 이견이 없고 규제 내용의 타당성과 명료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안의결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기한단축(강화)

- 사업주는 시료채취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작업환경측정실시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고, 노출기준이 초과된 공정은 작업공정개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
- ☞ 급성독성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기한을 단축하는 것으로 법무부, 산업자원부, 경총 등 6개 기관은 현실적으로 법집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이견을 제시하고 있고 작업 환경측정의 이행여부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부현장 확인결과 현실성 결여가 우려되므로 '작업환경측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시료채취를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연장한 것으로 하되, 작업환경측정기간이 연장된 사업장은 작업공정 등의 변화가 없는 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적용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

○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요건 강화(강화)

- 유해인자 취급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요건 기준을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인 이상으로 정함

☞ 지정측정기관의 인적자원의 전문성제고와 기능향상을 위해 인력기준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수가 작업환경측정기관 근무자 등 소수로 한정되고 있고, 규제영향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안의결

○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강화(강화)

-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검사항목을 개편하는 것으로 현행 검사항목은 유해인자와 관계없이 혈액, 간기능 및 요검사 항목 등으로 획일적·형식적으로 정하고 있어 177종의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애가 발생하는 11개 신체기관별 직업병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폐암유발 물질 근로자는 CT 검사를, 간독성 물질은 초음파검사를, 신경계 독성물질에 대한 신경계 검사를 추가하는 등 세부검사항목을 정함

☞ 현행 특수건강진단항목을 신체장기별 직업병진단체계로 개편하는 것은 신체장기의 이상유무 판별력을 높여 화학물질노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강검진 항목은 의학적 특수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초한 점과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산업자원부, 경총, 산업보건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고가의 검사항목에 대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규제비용편익분석결과 편익비용이 크게 나타나고 특히, 고가건강검진항목은 1차 검진결과 의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동조 제7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안의결

- 건강진단 검진 의사가 근로자에게 유해인자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화(신설)
 -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는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해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 ☞ 건강검진 의사가 근로자에게 유해인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건강검진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근거법률상 근거가 없어 규제법정주의를 벗어난 사항이므로 철회권고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개선(내용심사)
 - 노동부 장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요건 중 인력기준을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으로 정함
 -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실판정방지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 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 소수로 한정되고,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근로자 건강보호의 중요성에 비해 미약함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25)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고령자 고용현황 등 보고서식(내용심사)
 - 법 제13조제1항과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 고용현황과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그 제출서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현황과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 미제출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 본 사안은 고령자 고용과 정년제도 운영에 대한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보고서식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한정(2,084 개소)되며, 매년 정례적으로 기활용하고 있는 '고령자고용현황조사표'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규제내용의 명료성·객관성이 확보되고,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2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기준(내용심사)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 및 등받이울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이동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m이상인 경우 바닥에서 높이 2.5m부터 등받이울을 설치

☞ 불명확한 사다리통로 설치기준을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구분하여 구체화 하는 것으로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은 없고, 피규제자는 사다리 통로설치가 필요한 사업주로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간의 협의를 통해 설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규제내용이 국제수준에 비추어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항만하역 작업시 안전작업 조명기준(내용심사)

- 사업주는 선박에 화물을 싣고, 선박으로부터 물건을 내리거나 선박에서 화물을 이동 하는 작업시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

☞ 항만하역 작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분명한 조명기준을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으로 규제영향비용과 피규제자의 수가 미미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규제내용이 다른 법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명료성·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2. 여성가족부

집필자 : 노혜원 사무관(Tel. 2100-2447, woniroh@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7년도에는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총1건)
- 심사대상 1건은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여성가족부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없음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19차 행정사회분과 (2007. 3.22)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 1
계	-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 1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1)

■ 심사내용

○ 모자복지시설 설치신고(강화)

-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미혼모자·모부자·공동생활가정의 배치기준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기존 시설의 경우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사자 배치기준에 맞게 종사자를 확보토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1년 이내에 동 기준 충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강화된 종사자 배치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시설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법 제24조에 의거 시설폐쇄 등 제재규정이 있어 사업자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귀속될 수 우려

따라서 부칙의 1년 유예기간을 교부세 규모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5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개선권고

3. 국가청소년위원회

집필자 : 노혜원 사무관(Tel. 2100-2447, woniroh@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괄고시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3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1건, 내용심사 3건, 총4건의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4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하고,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없음

<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온라인상의 성인용 도박 모방 게임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포괄고시안	제322차 행정사회분과 (2007. 4,5)	철회권고1	내용심사 *중요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47차 행정사회분과 (2007. 10,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비중요1
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57차 행정사회분과 (2007. 12,13)	원안의결 2	강화1, 내용심사1 *비중요2
계	-	원안의결 3 철회권고 1	강화 1, 내용심사3 *중요1,비중요3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온라인상의 성인용 도박 모방 게임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포괄고시안 (내용심사)

■ 심사내용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생산 및 유통관리(내용심사)

- 온라인상의 고스톱, 맞고, 포카, 홀라 등 성인용 도박모방게임류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포괄 결정·고시하고자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가 부과되고 광고선전 등이 제한됨

☞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등급위)에서 등급분류와 청소년 유해성·사행성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위원회의 동 고시는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부담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동 고시는 현행법상 청소년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서 규제의 중복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철회권고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 심사내용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신상정보 관리 및 취업제한(내용심사)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은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주소지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은 동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바, 등록 및 열람 정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
-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관련,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의무 범위를 확대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여부 점검 및 확인을 위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고,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의 수와 연간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 규제라 판단

(3)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내용심사)

■ 심사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강화)

- 매월 1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안전점검표”를 신설

- (i)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ii) 토목부문, (iii) 건축부문 3개로 구분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관련,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함

☞ 월 1회 안전점검 실시의무만 규정되어 있던 것에서 세부조사표를 신설하여 구체적 조사기준을 제시하고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폐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수련시설”은 여타 시설보다 위험성이 크므로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위험에 비하여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연간비용이나 규제자수가 과다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및 사후절차 관리 (내용심사)

- 인증 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을 설정(4년)하고, 필요시 연장신청을 심사함
-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이행여부확인을 결정하며, 이행심사의 기준과 처리는 인증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시정요구에 대해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시정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미 이행자는 향후 이행심사의 면제대상에서 제외
- 인증위원회가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때 그 기준을 규정

☞ 법률에서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 인증활동의 이행여부 확인, 인증의 취소 등의 규정이 신설('07.7.27)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4년이 과다하다거나 행정처분 기준 등이 전반적으로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제10절 보건복지 분야

집필자 : 최태용 사무관(Tel. 2100-2450, choity@opc.go.kr)

1. 보건복지부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생식세포 관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 등 79개의 법령 등에 대해 신설 23건, 강화 88건, 내용심사 48건 등 총 15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159건 중 3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40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116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21건임

<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제정안	제316차 행정사회분과 (2007. 2.15)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 중요1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16차 행정사회분과 (2007. 2.15)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내용심사 1 * 중요1, 비중요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17차 행정사회분과 (2007. 3.8)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1, 내용심사 1 * 중요1, 비중요1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제317차 행정사회분과 (2007. 3.8)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 비중요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제정안	제318차 행정사회분과 (2007.3.16~19, 서면)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19차 행정사회분과 (2007. 3.22)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19차 행정사회분과 (2007. 3.2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1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20차 행정사회분과 (2007.3.23, 서면)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정안	제319차 행정사회분과 (2007. 3.22) 제321차 행정사회분과 (2007. 3.29)	원안의결 3	강화 1, 내용심사 2 * 중요1, 비중요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21차 행정사회분과 (2007. 3.29)	개선권고 1	신설 1 * 중요1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22차 행정사회분과 (2007. 4.5)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 중요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322차 행정사회분과 (2007. 4.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중요1
의료법 전부개정안	제323차 행정사회분과 (2007. 4.12) 제324차 행정사회분과 (2007. 4.19) 제180차 본회의 (2007. 4.19)	원안의결 15 개선권고 4	신설 3, 강화 16 * 중요12, 비중요7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24차 행정사회분과 (2007. 4.19)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1
유전자재조합실험시침 개정안	제324차 행정사회분과 (2007. 4.19)	원안의결 1	강화 1 * 중요1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	제326차 행정사회분과 (2007. 5.11)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신설 2 * 중요1, 비중요1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	제326차 행정사회분과 (2007. 5.11)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26차 행정사회분과 (2007. 5.11) 제327차 행정사회분과 (2007. 5.16)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 중요1, 비중요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327차 행정사회분과 (2007. 5.16)	원안의결 3 개선권고 4	신설 1 강화 6 * 중요5, 비중요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28차 행정사회분과 (2007. 5.25)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329차 행정사회분과 (2007. 5.3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내용심사 2 * 중요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28차 행정사회분과 (2007. 5.25) 제182차 본회의 (2007. 6.7)	원안의결 2 철회권고 1	강화 1 내용심사 2 * 중요2, 비중요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331차 행정사회분과 (2007. 6.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1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331차 행정사회분과 (2007. 6.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1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	제331차 행정사회분과 (2007. 6.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1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제331차 행정사회분과 (2007. 6. 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1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	제333차 행정사회분과 (2007. 6.28)	원안의결 1 개선권고 4	강화 5 * 중요4, 비중요1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33차 행정사회분과 (2007. 6.28)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2 * 중요2, 비중요2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 제정안	제333차 행정사회분과 (2007. 6.28)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중요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제331차 행정사회분과 (2007. 6.14) 제183 본회의 (2007. 7.5)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1
생식세포 관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32차 행정사회분과 (2007. 6.21) 제183 본회의 (2007. 7.5)	원안의결 2	신설 2 * 중요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35차 행정사회분과 (2007. 7.1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강화 3 * 중요2, 비중요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	제335차 행정사회분과 (2007. 7.12)	원안의결 1	강화 1 * 중요1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제335차 행정사회분과 (2007. 7.1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36차 행정사회분과 (2007. 7.19)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 중요2, 비중요2
검역법 전부개정안	제337차 행정사회분과 (2007. 7.26)	원안의결 3	강화 3 * 중요2, 비중요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제337차 행정사회분과 (2007. 7.26)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 중요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39차 행정사회분과 (2007.8.7~9,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34차 행정사회분과 (2007. 7.5) 제185 본회의 (2007. 8.16)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중요2
약국 및 의약품 등의제조업·수입자 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및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34차 행정사회분과 (2007. 7.5) 제185 본회의 (2007. 8.16)	개선권고 3	신설 1 강화 2 * 중요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40차 행정사회분과 (2007. 8.16)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정안	제341차 행정사회분과 (2007. 8.2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1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2차 행정사회분과 (2007. 8.30)	원안의결 4 개선권고 3	신설 1 강화 6 * 중요5, 비중요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342차 행정사회분과 (2007. 8.30) 제186 본회의 (2007. 9.6)	원안의결 6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신설 4 강화 5 * 중요5, 비중요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제344차 행정사회분과 (2007. 9.6)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강화 5 * 중요1, 비중요4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제344차 행정사회분과 (2007. 9.6)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제332차 행정사회분과 (2007. 6. 21) 제183차 본회의 (2007. 7. 5) 제345차 행정사회분과 (2007. 9. 13) 제187차 본회의 (2007. 9. 20)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 중요1, 비중요2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347차 행정사회분과 (2007.10.2~5, 서면)	원안의결 2	강화 2 * 비중요2
한약제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제347차 행정사회분과 (2007.10.2~5,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정안	제349차 행정사회분과 (2007.10.15~17, 서면)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1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50차 행정사회분과 (2007.10.18~24, 서면)	원안의결 2 개선권고 3	강화 1 내용심사 4 * 중요4,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51차 행정사회분과 (2007.10.30~11.2, 서면)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 중요1, 비중요1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제353차 행정사회분과 (2007.11.13~15)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 비중요5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 개정안	제353차 행정사회분과 (2007.11.13~15)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54차 행정사회분과 (2007. 11. 22)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3 * 중요2, 비중요1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54차 행정사회분과 (2007.11.20~22,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355차 행정사회분과 (2007. 11. 29)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 중요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55차 행정사회분과 (2007. 11. 29)	원안의결 1	강화 1 * 중요1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진단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355차 행정사회분과 (2007.11.27~29, 서면)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55차 행정사회분과 (2007.11.27~29,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56차 행정사회분과 (2007. 12.6)	원안의결 1	신설 1 * 중요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제356차 행정사회분과 (2007. 12.6)	원안의결 3	강화 3 * 중요3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56차 행정사회분과 (2007. 12.6)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1
영양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57차 행정사회분과 (2007.12.11~13,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제358차 행정사회분과 (2007.12.18~20,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제358차 행정사회분과 (2007.12.18~20, 서면)	원안의결 2	강화 2 * 비중요2
의약품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안	제359차 행정사회분과 (2007. 12.27)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1
계	총 159건	원안의결 116 개선권고 40 철회권고 3	신설 23 강화 88 내용심사 48 * 중요 82 * 비중요 77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혈액관리업무 준수사항을 세부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심사평가 실시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정하는 등 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혈액원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와 관련한 세부내용 규정(내용심사)

☞ 관련연구용역('05.12~'06.4)과 시범평가('06.9)를 거쳐 심사평가체계가 마련되어, 규제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제10조제3항은 “재심사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혈액원에 대하여 개선허가를 취소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혈액원에 대해 중복하여 개선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으로서 불필요 하므로 삭제를 개선권고. 또한, 평가, 재심사평가, 이의신청 등 법적조치 절차를 고시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향후 상위법령 개정시 반영할 것을 부대권고

(2)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군·구 보건소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신설)

☞ 지원되는 의료비가 국가재원으로 충당되는 점을 감안시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구절은 보건복지부의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상황에 대해 공부상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로 표현을 명확하게 할 것을 개선권고

○ 암조기검진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기관·시기·범위 및 절차를 정함(내용심사)

- ☞ 유사입법례인 의료법령상의 의료기관평가와 유사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제3자 가해신고서를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로 대체(내용심사)
 - ☞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의 양식이 규정되지 않고, 공단의 급여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체계상 불합리하므로 동양식을 동 시행규칙 별지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처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를 추가(강화)
 - ☞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소득 신고의무와의 법적 형평성 제고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4) 아동복지법 시행령(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이 보호아동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교통 안전, 약물오남용, 재난대비)기준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내용심사)
 - ☞ 아동복지법의 개정('06.9.27)으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인 아동복지시설장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연합회 정책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쳤고, 현재 실시중인 재난대비교육에 준하는 시간 및 방법을 준용한 점을 감안시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에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신설(강화)

- ☞ 시설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인 아동복지 시설장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연합회 정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점을 감안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인력개발원은 법 제12조에 의한 자금의 차입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차입자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은 인력개발원의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내용심사)
- ☞ 자산의 대부분이 국가의 자산으로 설립되고, 주요임무가 보건복지전문가 양성인 개발원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시,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법 2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내용심사)
- ☞ 법에서 위임한 범위(500만원)내에서 과태료를 정하는 사항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임으로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강화 1)

■ 심사내용

- 영업자가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간제한 없음)을 받도록 하던 것을,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거나 3월 이내에 사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강화)
- ☞ 교육의 취지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시 사후교육의 일정기간내 제한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광고사전심의회 의무화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광고사전심의 신청 수수료를 100,000원으로 정함(내용심사)

☞ 수수료 산출근거가 명확하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시 수수료(10만원)와 동일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8)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의료법 제46조 2항에서 금하고 있는 광고를 구체화하여 규정(내용심사)

☞ 의료광고의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예외적 금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수준으로 금지기준을 구체화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의료법에서 위임한 의료광고 심의대상 및 방법, 수수료, 업무의 위탁관련 사항을 규정(내용심사)

☞ 전반적으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및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9)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기준(강화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만40, 66세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만 40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제정. 1차,2차 검진을 통합하여 1차건강진단으로 실시하고, 1차건강진단 수검자를 대상으로 2차 건강진단 실시(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검진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가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40세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강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동 고시의 제정목적은 생애전환기의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사전예방적 차원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며, 근로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그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다만, 동 제도는 외국사례가 거의 없고, 제도도입으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불명확하므로 제도시행 후 3년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규개위에 보고하는 것을 부대권고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출장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건강진단 기관은 검진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건강진단 실시일 3일전까지 출장 건강진단계획서 제출(내용심사)

☞ 기존 건강검진실시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다시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고시 제정안은 만40세와 66세의 경우 기존의 건강진단실시기준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규제내용의 변화가 없는 사항임을 감안,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공단 등은 건강진단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진단의 담당 확인을 받았거나 건강진단 비용을 받은 때 등의 경우에 해당시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내용심사)

☞ 기존 건강검진실시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다시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고시제정안은 만40세와 66세의 경우 기존의 건강진단실시기준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규제내용의 변화가 없는 사항임을 감안, 원안의결(비중요규제)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신설 1)

■ 심사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신설)

☞ 처벌규정이 없고 유사사례가 있는 등 자료제공 및 협력의무의 취지는 인정되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가 무한정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를 명확히 구체화 할 것을 개선권고

(11) 약사법 시행규칙(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위해성 등급 판정, 회수 등 사실 공포 등 약사법('06.10.4 개정)에서 위임한 위해 의약품 등의 자진회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내용심사)

☞ 현행 권고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침(불용의약품등 회수폐기업무 처리지침)을 국외사례를 감안, 보완하여 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외사례와 비교시 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회수계획보고서 제조업허가증 사본 및 당해 품목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증 사본을 제출토록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불필요하게 제출케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12)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의료법('06.10.27 개정)에서 위임한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내용심사)

☞ 국내·외사례 등을 감안시 규정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및 평가기간, 직권결정 등의 내용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13) 의료법(신설 3, 강화 16)

■ 심사내용

○ 의료인의 의무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질병 및 진료방법 등의 설명의무 추가(강화)

☞ 환자의 알 권리 및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반시 행정적 제제는 발생하지 않고, 타법령에서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다만, 선언적 규정으로서 별칙도 부과되지 않으나, 설명의무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이 과도한 점을 고려하여 그간의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관련한 쟁송에 대한 법원 판례, 의료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침을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 또는 의무기록·진단서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를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강화)

☞ 환자의 정보관리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분명하므로 원안의결 (비중요규제)

○ 환자의 배우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의 동의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친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사본교부 등을 요청토록 하고,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이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의 내용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등의 송부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함. 의료인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시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의 사본등을 이송토록 함(강화)

☞ 의료과정에서 확보된 환자의 개인정보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열람자에 대해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다른 의료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과 응급환자 이송시 기록을 이송하는 것은 의사에게는 일부 부담을 유발될 수 있으나, 환자진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의료인의 의무기록 및 작성사항을 진료기록 등에서 의무기록으로 변경하고 보건

-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여 환자 진료 등에 관한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록하도록 함(강화)
- ☞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 ‘상세히 기록’이라는 현행규정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구체화된 사항은 환자진료에 필요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일정기간 의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던 의료인이 의료기관등에서 의료업무를 종사하고자 할 경우 정기 보수교육(연 8시간)외 별도의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보수교육 시간, 대상, 방법 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강화)
- ☞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중차대한 일을 수행하므로 일정기간 의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던 의료인의 보수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외의 의사 면허 관리제도를 감안시 과도한 규제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시설기준을 강화(유예기간 3년)(강화)
- ☞ 현재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병원협회 요구사항(5년) 일부 반영)으로 할 것을 개선권고
-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3년마다 평가 및 재지정을 규정하고, 지정·재지정 기준·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신설)
- ☞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가산 30%적용 등 혜택이 있으므로, 3년마다 평가 및 재지정 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특수기능병원(특화병원, 취약지거점병원)에 대해 3년마다 평가 및 재지정을 규정하고, 지정·재지정 기준·절차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신설)
- ☞ 특수기능병원 지정은 지원을 통해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정책적 추진 사항임을 감안시 3년마다 평가 및 재지정 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사단, 재단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는 가능),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및 부속의료기관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며, 부속의료기관 이용자를 직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을 명확히 함(강화)

☞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진입을 제한(개설 금지)하는 것은 강력한 규제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배치되므로 현행안을 유지토록 개선권고. 또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할 경우도 진입을 제한할 뿐 아니라 행정관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현행안을 유지토록 개선권고. 다만 부속의료기관 이용자를 직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속의료기관 설립목적 감안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의료기관이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를 시·도지사(병원급이상)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원급)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폐지하고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 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 제증명서 수수료를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내 게시 및 범위내 징수토록 함(강화)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의료보수등을 게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병상이 있거나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입원 및 응급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여 현행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두도록 한 당직의료인을 병상이 있는 의원까지 확대하며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 등은 부령에 위임(강화)

☞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되어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도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등은 당직의료인 배치가 필수적일 수 있으므로, 근거조항 신설은 원칙적으로 동의. 다만, 당직의료인을 두기 어려운 소규모 의원 등에 대해서는 당직의료인을 두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갖춰도 되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당직의료인 배치기준은 의료기관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개선권고

-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감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배치 근거규정을 의료법에 명시하며 인력기준 등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함(강화)
 -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에 명시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 규제)
-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자로 조문을 변경하고, 의료법인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공인 회계사,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등(강화)
 - ☞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던 것을 동 개정안에서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300병상으로 함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되 부령개정시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할 것을 부대권고. 의료법인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신뢰향상 및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의료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 총리, 민간위원 20인, 정부위원 10인) 결정사항('06.10.24)으로 정부의 정책적 추진사항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의결
- 현행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1년이상 휴업하여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간주하여 폐업신고토록 강화(강화)
 - ☞ 장기간 휴업시 폐업토록 하는 것은 법적안정성 및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 의료기관 단체의 설립허가,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은 의료인 단체의 설립허가,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강화)
 - ☞ 민법에 의해 법인은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의료기관단체(대한병원협회)에 대한 대해 설립허가·감독 등의 규정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의료법 개정('06.10.27, 시행 '07.4.28)으로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을 확대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미흡하여 목적사업인 의료사업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용 재산출연 규모를 의료업 재산 1/2 초과 금지 등 제한규정을 신설(신설)

☞ 부대사업이 목적사업인 의료사업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한정하는 의료법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현행 시·도지사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강화)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권한이 있으므로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도·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주체에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 시·도지사를 추가(강화)

☞ 현행 규정(제59조제1항)에 의해 지도·명령 권한이 부여된 시도지사에게 보고와 업무검사 권한이 있어야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의결

○ 일부 벌칙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상한선을 상향조정(강화)

☞ 벌칙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사항은 실제로 완화라고 보이므로 동의. 다만, 과태료를 상향조정된 사항은 규제강화사항으로 유사사례 등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나 보건복지부자료에는 강화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미흡하므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현행규정을 유지토록 개선권고

(14) 의료법 시행규칙(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의료법(06.10.27 개정)에서 위임한 환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및 부대사업의 신고절차를 규정(내용심사)
 - ☞ 환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의 범위는 최대화(병원협회 의견 수렴)하고 신고절차시 제출서류는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 규제)

(15)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강화 1)**■ 심사내용**

-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수준 및 현실을 반영하여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을 전면개정(강화)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무분별한 전파·방출은 생물재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위해 시급히 국제수준 및 현실을 반영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다만, 지침내용에 신고의무, 승인규정 등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조속히 법령으로 상향입법 할 것을 부대권고

(16) 국립중앙의료원법(신설 2)**■ 심사내용**

-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니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신설)
 - ☞ 별도의 규제신설이 없어도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회권고
-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됨(신설)

-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도용금지는 당연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17) 의약외품 범위지정(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담배사업법(재정경제부 소관)에 관리되고 있는 담배 대용품을 약사법(보건복지부)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전환 관리(강화)
- ☞ 담배대용품의 형태나 용도가 금연보조제와 사실상 동일하므로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인정(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되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강화 2)

■ 심사내용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 대상자를 장애인에서 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강화)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 이용상의 편의제공을 권장하는 규정으로 편의제공 의무 대상에 노인·임산부를 포함하는 것이 법령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주차장법령에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공동주택을 추가(강화)
- ☞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부처 자체심사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여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세대수기준을 20세대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는바, 부처 자체규제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반영하도록 개선권고

(19) 사회복지사업법(신설 1, 강화 6)

■ 심사내용

- 사회복지사를 전문사회복지사·1급·2급으로 개편(자격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신설(강화)
 - ☞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신설 및 3급 사회복지사의 자격 삭제는 사회변동에 따라 자격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동의함. 사회복지사 명칭은 상표법에 의한 업무 표장등록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국가자격이며, 실질적으로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유사명칭의 범위가 자의적·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명칭 사용금지로 개선권고
 - * 수정권고안)사회복지자 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는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사회복지법인이 허가받은 후 3주내에 등기하지 않거나, 등기후 3개월 이내에 재산출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강화)
 - ☞ 법인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불필요한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내 등기 및 재산출연을 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정기간내 등기 및 재산출연을 하지 않을 시 곧 바로 법인의 허가취소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일단, 시정 명령후 일정기간 경과(3월정도)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토록 개선권고
- 법인이 두어야 하는 이사수를 5인이상에서 7인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감사중 1인을 법률 또는 회계전문가로 선임토록 하는 등 법인의 임원제도 개선(강화)
 - ☞ 대부분 국가로부터 보조금 및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추진사항으로 국가의 지원이 훨씬 적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유사사례와 비교시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비중요규제)

○ 보조금을 받는 시설법인에 한해 이사 중 일부를 공익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법인이 지정하는 공익이사 추천권자가 2배수의 공익이사를 추천하면 법인이 선택하여 선임토록 하는 등 공익이사 추천제를 규정(신설)

☞ 사회복지법인이 국고보조금 및 국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시 일정부분 투명성, 개방성 확보 조치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회복지법인보다도 훨씬 국가의 지원이 적은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규제와 비교시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3년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이사가 불법행위 등으로 해임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규정 강화(강화)

☞ 불법행위 등으로 해임된 이사 후임에 임시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이사의 해임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사항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사회 소집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부의 내부간섭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 권고할 수 있다' 로 완화할 것을 개선권고

○ 불법행위 및 고의 허위보고 등을 방조하여 법인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임원 해임명령 사유로 추가하고, 해임명령을 하여도 법인이 의결 정족수 미달 등으로 해임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며, 이사가 해임명령을 위해 조사 또는 감사 중일 때 등에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법인에 60일의 범위내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60일 범위내 연장 가능)를 명할 수 있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규정 신설(강화)

☞ 불법행위 방조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임명령 중이거나 불법행위를 조사받고 있어 법인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이사의 직무를 정지해 법인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방조이사를 해임명령 하는 것은 '방조'의 범위규정이 어려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자'에 한정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임원간의 분쟁으로 법인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해당임원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것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운영위원회에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시설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현행 동법 시행규칙상(제2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법률로 상향입법 하며 5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시설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강화)

☞ 운영위원회에 후원금 및 예·결산 관련 보고, 운영위원수 최소인원 확대, 운영위원회에 시설종사자 대표 추가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며,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2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강화 1)

■ 심사내용

-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요양급여여부 등의 평가를 신청토록 규정 정비(강화)

☞ 안전성·유효성 인정이후 요양급여 신청은 당연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21)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지원센터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6개월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내용심사)

☞ 지정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의무 부과는 일반적으로 1년주기이고, 1년주기로도 충분히 행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고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할 것을 개선권고

○ 법에서 위임한 500만원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비중요규제)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30%)로 전환하고, 본인부담이 30일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50% 지원제도 폐지(강화)

☞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재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내용심사)

☞ 법령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비중요규제)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에 필요한 사항 및 요양기관현황통보서식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위임(내용심사)

☞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된 사항을 법령이 아닌 산하기관의 공고에 위임하는 것은 일반상식적으로 명백히 불합리하므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위임하는 것을 철회권고

(2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를 진료·조제한 후 지체없이 공단이 구축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상병명, 급여일수, 처방전교부기관기호, 처방전교부번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전송(내용심사)

☞ 현재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비용 청구시 명세서에 기재하는 정보를 공단에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의료급여승인 결정시까지 3~4개월이 소요되어 중복투약,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 등의 비용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의료급여제도의 적정관리를 하기 위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전송토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24) 약사법 시행령(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약사법 개정 (2007.1.3 공포)으로 법에서 위임한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절차 등 규정(내용심사)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전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 독촉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은 규제부담완화 차원에서도 적정하며, 행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법에 의한 상한액(5천만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도 과도한 규제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25) 의료기기법 시행령(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의료기기법 개정 (2007.1.3 공포)으로 법에서 위임한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절차 등 규정(내용심사)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전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 독촉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은 규제부담완화 차원에서도 적정하며, 행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법에 의한

상한액(5천만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도 과도한 규제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26) 화장품법 시행령(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화장품법 개정 (2007.1.3 공포)으로 법에서 위임한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절차 등 규정(내용심사)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전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 독촉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은 규제부담완화 차원에서도 적정하며, 행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법에 의한 상한액(5천만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도 과도한 규제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27) 전염병예방법(강화 5)

■ 심사내용

○ 감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 또는 그 시체를 검안한 경우 의사 등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 등 사망자가 있을 때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하는 학교장 등 기타 신고 의무자의 의무를 강화하며, 감염병 환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의료기관의 장, 의사 또는 한의사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하는 대상을 기존의 제1군전염병에서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강화)

☞ 감염병은 전국민의 보건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여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의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한 즉시 또는 24시간내 신고 의무를 수용하고,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으로 감염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신고 의무자를 선박의 장에서 운송수단의 장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운송수단의 장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아래와 같이 정의규정을 추가하여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 제2조(정의) ㉑“운송수단”이라 함은 항공기, 선박, 열차, 버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의무자를 모든 행위자로 확대하고,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및 허가받은 고위험병원체의 인수시 이동계획 신고를 의무화 하며, 고위험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 업무 수행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관리 규정 준수 의무 부여(강화)

☞ 고위험병원체(페스트 탄저 등 32종)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분리 및 이동 신고 의무자 확대, 국내 반입시 허가, 안전관리 규정 준수 의무 부여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학조사 협조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사람간 전파가 가능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감염병환자에 대해서는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치료토록 규정하는 등 감염병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범위 확대(강화)

☞ 강제처분의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시급성이 있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급성이 덜한 감염병등의 경우에는 즉시강제가 부적절하므로 즉시강제를 시급성이 있는 감염병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예방접종약의 수급 기반 확보를 위해 국가가 국내 생산된 예방접종약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및 필요한 사항 부령 위임,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외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 생물테러감염병 및 기타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는 비상사태시에 「약사법」상 허가 등의 조치없이 예방 및 치료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감염병관리시설로 강제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 시·도 지사의 강제

지정의 경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비의 정부부담에 대한 근거가 없는 바, 근거를 명시할 것을 개선권고

○ 휴업 또는 폐업신고 없이 소독업시설 등의 멸실 상태가 3월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조치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6월이상 신고없이 휴업한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소독업소에 대해서도 이에 형평을 맞춰 시설 등의 멸실 상태가 6월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해 폐쇄조치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개선권고

(28)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현재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영업의 종류에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업종에 포함하며, 이에 따른 식재료전문공급업의 시설기준·식재료전문공급영업자의 준수사항·식재료전문공급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신설)

☞ '06년도 집단급식사고 빈발로 인해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식재료전문공급업 업종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업종 신설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미미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종 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업종신설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등의 기준도 타 업종과의 형평 비교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으로 원안의결

○ 개정 식품위생법('06.9.27)에서 위임한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용도식품 및 과자류·면류 등으로 규정하고, 법에서 정한 1000만원이내에서 영양표시 기준위반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내용심사)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상향입법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완화 또는 삭제하고 과태료를 신설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영업자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개정 식품위생법(06.9.27)에서 위임한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받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내용심사)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식중독 발생과 관련한 각종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 영업자는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매회 1인분 분량을 현 섭씨 5도에서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등 집단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강화)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24시간 이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 한의사,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미 조치 및 보고 의무가 부여된 자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관계되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현행 규정에 24시간이내 보고를 명시하고, 의사·한의사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보관식 보관 온도를 영하 18도로 하는 것은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적절한 보관을 위한 사항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시설 설비부담 발생을 이유로 현행유지 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는바, 현행 공포후 3월후 시행은 촉박한 감이 있으므로 동 조항에 한 해 공포후 6월후 시행토록 개선권고

(29)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 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요양(의료)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대상 및 방법 등 규정(내용심사)

- ☞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상대적으로 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행정능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30) 국민건강증진법(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흡연 경고문구 표시를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 경고문구 및 흡연 경고그림 표시로 강화(부칙으로 유예기간 6개월 부여)하며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에서 규정(강화)
- ☞ 극도의 혐오감을 주는 그림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훼손할 소지가 있고, 규제 정도를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 개연성을 벗어나지 않고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경고그림의 도안 및 크기에 대한 여론수렴 등을 통한 하위법령의 충실한 정비 및 이해관계자의 준비를 위해 공포후 6월후 시행은 촉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할 것을 개선권고

(31) 생식세포 관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신설 2)

■ 심사내용

- 불임치료목적의 난자 채취 및 기증목적의 생식세포(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 채취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생식세포 기증·수증에 대한 비밀유지 및 관련정보의 보존, 열람자격 제한을 규정하며 생식세포 보관(5년)·채취·폐기 등 관리 기준 및 시술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식세포 채취, 보관, 폐기 등 관리 규정 신설(신설)
- ☞ 보조생식시술을 이용한 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체외수정시술 및 동결기술의 발달로 배아·생식세포의 보관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불법채취, 불법매매 등의

방지는 물론, 인간 존엄성과 모성의 보호, 건강한 아이 출생을 위해 생식세포 채취, 보관, 폐기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증 및 수증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관련,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각계에서 참여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또한,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된 기관이 관련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토록 정하는 것은 적절하며, 과징금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원안의결

- 생식세포 기증·수증자격 제한 및 배란유도에 의한 난자 기증의 채취기간·횟수의 제한, 생식세포 유상거래 및 유인·알선 금지, 기증자에 대한 실비 보상 규정 마련 등 생식세포 기증 및 수증 제한 및 절차 규정 마련(신설)

☞ 불법 기증, 수증을 방지하고 선의의 기증자와 불임부부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생식세포 기증자와 불임부부 또는 연구자를 연결하는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며 규정된 구체적 내용에 있어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3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강화 3)

■ 심사내용

-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 조직은행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강화)
 - ☞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변경허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므로,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내용만을 변경허가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 등 조문을 보완할 것을 개선권고
- 이식받은 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직을 기증한 자나 유족이 조직의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강화)
 -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식받은 자는 이식에 대한 기록열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바, 비슷한 수준에서

기증받은 자가 이식에 대한 기록을 열람토록 보완할 것을 개선권고

○ 과태료의 부과권자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추가(강화)

- ☞ 현행 법 제28조(권한의 위임)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 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2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입법적 미비 사항을 바로잡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33)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강화 1)

■ 심사내용

- 심평원에 신고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서식에 “1회 투약량”란을 신설하고 현재 처방전에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청구명세서 등에 기재의무가 없는 1회투약량 기재를 의무화함으로써 입원환자의 경우 또는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강화)
- ☞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이미 의무화하고 있으나, 약 처방시 비용효과적인 고함량 처방보다는 저함량 배수 위주의 처방으로 보험재정의 누수 및 소비자의 비용증가가 발생함에 따라 심평원 심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4)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의료광고의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의료법이 개정('07.4.11)됨에 따라 의료광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내용심사)
- ☞ 의료법에서 업무정지 및 1년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을 부령에 위임한 사항으로 업무정지 1월 및 자격정지 2월의 범위내에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노인성 질병 범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및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발급절차 등 장기요양인정신청, 등급판정 및 변경등에 관한 절차 규정 (내용심사)
 - ☞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사항으로 과도한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법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의제된 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장기요양요원 범위 등을 규정(내용심사)
 - ☞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장기요양요원 범위의 구체화, 시설 및 인력 기준, 장기요양기관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과도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폐쇄명령의 기준과 지정취소 또는 재폐쇄명령을 받은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는 기간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규정(내용심사)
 - ☞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지정 취소 규정은 노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등 타법령을 참조하여 적절한 수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관련 사항은 건축법 등 타법례와 동일하게 규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비중요규제)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내용심사)
- ☞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6) 검역법(강화 3)

■ 심사내용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을 검역조사대상 감염병에 추가하고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의 감시기간을 잠복기인 10일로 정함(강화)
 - ☞ 전파속도가 빠르고 인체에 치명적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시기간을 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명백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 검역조사사항에 운송수단의 위생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등 4개항에 도보등으로 입국하는 자를 추가하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외로 출발하는 자에 대하여 아래의 공중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역조차 강화(강화)
 - ☞ 규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일부 피규제자의 의무가 발생된다 해도 다수 국민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선박 등 소독업무를 대행하는 업소의 관리를 현재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소독업자로 하고 있는 사항을 검역소장에게 별도로 신고하는 자에게 소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소독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약제 및 인력을 갖추어 검역소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사항 변경시에도 신고토록 하는 등 선박소독업소의 신고·관리 시스템 도입(강화)

- ☞ 현행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선박등의 소독업자에 대한 규정을 검역법에 의한 소독의 특성을 감안(청산가스 등 유독물 취급 등)하여 검역소장에게 별도로 신고토록 하며 관련조항을 동 개정안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전염병예방법과 동일한 수준에서 규제를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7)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신설 3)

■ 심사내용

○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신설)

- ☞ 실질적인 개설을 위해 필요한 허가·등록 등 기본적인 사항을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준해 규정하고 있어 적절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인정에 대한 특례, 의약품 등의 수입,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 등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신설)

- ☞ 동 제정안의 내용이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의료법등과 관계에서 특례를 인정하여 의료법등의 규제 수준과 동일 또는 완화된 수준의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고, 해외투자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마련되어 외국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과도한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환자 진료기록의 제공(안 제19조)과 관련하여 외국의료기관은 환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국내 및 국외의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등 동의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환자 진료기록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할 것을 개선권고

○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시정명령, 외국의료기관 등의 개설허가 취소, 행정처분의 기준 등 규정(신설)

- ☞ 의료법의 규정과 다른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동 법률제정안의 특성을 감안시 특례에 따른 행정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행정처분이 대체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8)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강화 1)

■ 심사내용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07.5.25 공포, 8.26 시행)됨에 따라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행정처분기준 정비(강화)
 - ☞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동일한 행위를 금하고 있는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위반시와 동일한 수준에서 행정처분을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9)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법에서 위임한 바에 의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난자를 5가지의 경우로 제한 등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내용심사)
 - ☞ 법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계정부부처 및 과학계, 윤리계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것으로 보이며, 배아연구 관련 주요 국가별 입법 동향을 감안시, 연구의 제한 범위가 과도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난자 기증자의 서면 동의 규정도 기증자의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법의 위임에 의해 과학적입증이 불확실하여 금지·제한되는 유전자 검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내용심사)
 - ☞ 유전자 검사는 유전적 특성에 의한 차별, 개인유전정보 보호 등 생명윤리와 관계되며, 유전자 검사의 정확성 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나, 동 규제의 내용은 법의 위임에 의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적 검토 및 공청회를 거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 제시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40) 약국 및 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은 165㎡(50평)이상,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일부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한약만을 취급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을 40㎡(12평)이상으로 규정하고, 불량약품 또는 반품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창고에 불량약품 또는 반품의약품 보관실을 두도록 하며,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강화)

☞ 창고최소면적 설정은 강력한 진입규제로 안전과 관련한 시급한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고, 유통구조 합리화는 시장의 정화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경쟁 촉진정책을 통해 추진해야 하므로 창고 최소면적기준의 삭제를 개선권고

○ 의약품 물류업무 위탁이 가능한 수탁자 범위, 의약품 물류업무 위탁시 위탁자와 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 규정(신설)

☞ 수탁이 가능한 창고의 바닥 면적을 1,000㎡으로 하는 것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시설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사항이나 제2종 근린시설에 설치하는 1,000㎡이하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제2종 근린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800㎡정도로 완화할 것을 권고하며,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과 관련 일반적으로 위·수탁관계는 사적계약에 의한 성립하는 바, 사적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삭제를 개선권고(관련 행정처분 규정도 같이 삭제)

○ 적정 온·습도 유지시설 및 일정온도유지가 필요한 의약품의 보관을 위한 자동온도 기록장치 부착 냉동·냉장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로 하여금 적격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을 강화(강화)

- ☞ 한국의약품도매협회로 하여금 적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 국가업무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조항이므로 삭제를 개선권고

(4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체도, 소장을 장기의 범위에 추가함에 따라 이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규정(강화)
 - ☞ 체도 및 소장을 장기의 범위에 추가하며 이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시설 및 장비를 규정한 것으로 안전한 장기이식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 판단되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순위 중 뇌사자를 발굴한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이식 대상자를 3순위로 추가하고, 장기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 체도 및 소장에 대한 이식대상자 선정 개별기준규정 추가. 체도, 소장을 장기의 범위에 추가함에 따라 이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규정(내용심사)
 - ☞ 신장이식대상자 순위에 변동이 발생하나 장기이식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이식대기자에게 편익을 주려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체도 및 소장에 대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도 장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장기와 유사한 수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4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시 법의 위임에 의한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규정(내용심사)
 - ☞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타법령과 유사 또는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징수의 기초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43) 약사법시행규칙(신설 1, 강화 6)

■ 심사내용

○ 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시 의약품제조품질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강화)

☞ 모든 의약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품목별 사전 GMP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 밸리데이션 실시, 연간품질평가 실시 등 GMP 기준 강화

☞ 규제비용이 과도하나(초기 비용만 992억원으로 추정), 국내·외 GMP 제도 비교시,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내의 GMP기준 강화가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며, 동 기준강화의 내용이 제약협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의해 수립된 점을 감안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기준강화의 핵심인 밸리데이션 규정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위임했다고는 하나 어떤 경우에 어떤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하는 지에 대한 사항은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 제조관리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시간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신설)

☞ 강화된 GMP 기준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제조관리자 교육 의무화(최초 교육 및 보수 교육) 도입 자체에는 동의함. 다만, 제조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는 자는 제조관리를 할 수 없는 바, 시급한 상황에서 제조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육의 효과를 2년정도 인정토록 하고, 또한 보수교육을 최초교육과 같은 연 16시간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이므로 2년단위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개선권고

○ 의약품외품중 췌관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사항을 외부포장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토록 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타르,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 측정을 의무화하며, 타르 등 허용기준 위반 및 측정 의무 위반시 행정 처분을 신설(강화)

☞ 국민건강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의약품 용기·포장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표시항목 범위를 축소하고 의약품·의약외품 용기·포장에 소비자 및 의약품 취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등 표시기재사항 강화(강화)

☞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규제로, 규제에 의한 비용보다는 편익이 클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임상시험책임자 및 담당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관련 교육을 받도록 지도·권장하고, 이상약물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의무화(강화)

☞ 임상시험책임자 및 담당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지도·권장하는 사항은 정부의 의무화 방침과 부합하지 않고, 임의규정에 따른 법령의 투명성 및 자의적인 집행 가능성이 있어 삭제하되, 연구자의 윤리성 및 피험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향후 법제처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임상시험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규정을 협의하여 반영할 것을 개선권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감시원 직무범위에 임상시험 관련자를 추가하여 임상시험에 대하여도 약사감시와 의약품 등의 수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현행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에 의해 임상시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의한 약사감시토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과도한 규제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44)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법률(신설 4, 강화 5)

■ 심사내용

- 기관위원회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위원회의 등록·평가·인증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이를 필요한 사항은 부령에 위임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관위원회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강화)
 - ☞ 기관위원회의 관리·지원을 위해 근거규정을 두는 사항으로 기관위원회의 심의의 질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체세포핵이식행위의 정의에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금지 등 규정(강화)
 - ☞ 생명윤리와 관계되어 규제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미 관계정부부처 및 과학계, 윤리계 인사가 포함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점을 감안시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임신목적이라도 특정한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외에 정자를 선별하여 자궁에 주입시키는 행위도 추가적으로 금지,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중요 사항 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위반시 업무정지·과징금 및 과태료를 규정하는 등 배아생성·폐기 등에 대한 규제강화(강화)
 - ☞ 배아의 생성 및 폐기 등에 윤리성을 담보하고 동의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무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은 단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를 개선권고
- 단성생식배아를 생성·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 핵이식행위금지 및 단성생식배아의 생성·연구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준용 등 규정(신설)

- ☞ 단성생식배아도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와 같이 난자를 이용해 배아를 생성하는 연구로, 체세포복제배아와 같은 수준의 윤리적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어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명백하여 입법적 미비를 바로잡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줄기세포주를 수립·수입한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줄기세포주 등록, 줄기세포주 등록 규정을 위반하여 생성·보관 또는 제공된 줄기세포에 대한 폐기명령(안 제49조제1항) 및 등록 규정 위반시 업무정지처분 규정(신설)
 - ☞ 국제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한 규제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유전자 검사의 제한, 유전자연구에 대한 자체 심의, 유전자검사 및 검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등 규정(강화)
 - ☞ 전반적으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배아연구계획·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승인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아연구·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의 참여제한 및 줄기세포주의 이용제한 규정(신설)
 - ☞ 연구의 승인 취소 요건 규정은 승인에 따른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도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동법 위반자에 대한 연구제한 및 줄기세포주의 이용제한도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신고 대상기관(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폐쇄명령, 허가 등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1년) 대상 확대 등 규정(강화)
 - ☞ 전반적으로 과도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줄기세포주 등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줄기세포주 제공 현황 보고 의무위반 및 줄기세포주 연구 승인을 받은

자의 이용 계획서 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할 것을 개선권고

- 이법에 의해 규율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은행 또는 유전자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신설)

☞ 규제의 목적 및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명칭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철회권고

(4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 5)

■ 심사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방영 방송 프로그램 범위를 현행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강화)

☞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에서 화면해설방송(전체 프로그램의 4.7%)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며, 처벌규정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년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강화)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제이며, 이미 모든 학교에서 장애 이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우선 구매해야하는 장애인생산품 품목을 현행 17품목에서 19품목으로 확대(강화)

☞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처벌규정이 없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규제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보수교육 대상을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신규로

종사하는 자에서 종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국립재활원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으로 명확히 규정(강화)

☞ 의지·보조기기는 국가 자격으로 관리되는 바, 이미 일정자격을 갖춘 의지·보조기기에 대해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2년마다 8시간으로 교육시간을 조정할 것을 개선권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를 현행 5개유형에서 2개 유형(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재분류하고, 시설의 구조와 설비기준·직원배치기준·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을 강화

☞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이 강화되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개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46)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강화 1)

■ 심사내용

○ 신생아 중환자실의 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지급(강화)

☞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지불하는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일반상식적으로 당연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정책심의위원회(07.7.12, 9차)에서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47) 공중위생관리법(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공중위생영업에 “고시원업”을 추가하고, 신고·관리 등과 관련한 고시원업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신설)

☞ ‘고시원 화재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 법적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온 고시원에 대해 적정시설을 갖추고 관리될 수 있도록 “고시원업”을 신설하고 영업자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고시원과 상업지역에만 입지할 수 있는 숙박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고시원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고시원을 숙박시설과 차별화 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것과 관련 “공동으로 사용하는”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경우 사실상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고시원이 주거지역내에 난립하게 될 개연성이 높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전용에 대한 방지대책의 현실적인 어려움, 고시원 제도도입초기의 혼선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동의하되, 도입후 법 적용 실태와 피규제자 및 주거지역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행정환경변화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규정 시행 후 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부대권고.

- 고시원 영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시원 영업자가 손해배상보험가입시 총 366억원(보건복지부 안 : 1개 업소당 1천만)의 규제비용이 발생하며,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고시원 영업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의무를 중복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철회권고하되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의무화는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추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재입법 여부를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나,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사실을 관련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휴업 할 경우 또는 폐업신고사실 확인시 직권폐쇄를 명하는 것은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타 법과 유사한 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던 것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다만, 공중위생영업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강화)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유사 입법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48) 모자보건법(강화 2)

■ 심사내용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중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를 추가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사실을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 함. 또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송사실 보건소 보고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의 이견제시가 있으나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의 집단수용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에 종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사하게 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변경(강화)

☞ 산후조리업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후 운영하는 업이므로 관리상 책임을 산후조리업자에게 묻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49)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수입한약재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현행 159품목에서 96품목을 추가하여 255품목으로 확대(강화)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해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검정의무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50) 업무정지처분에 같은한 과징금 적용기준(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업무정지처분에 같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징금으로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방법을 정하며, 과징금 분할납부 사유, 분할납부, 신청 및 과징금규모에 따른 분할납부 횟수를 정함(내용심사)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행정의 투명성과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등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51)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 1, 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변경·강화(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을 전문요양시설 수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입소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개정 노인복지법의 위임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내용심사)

☞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노인요양과 관련된 지식, 태도 등에 대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과는 달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시 120~2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할 만큼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매년 8시간에서 2년마다 8시간으로 완화할 것을 개선권고

○ 노인복지법에서 위임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기준 및 신고절차등을 정함(내용심사)

☞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이 최대 240시간으로 늘어나고 교육내용이 구체화 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기관 시설·설비기준과 교수요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생 보호 및 교육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체적으로 그 정도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기관 신고시 첨부 서류중 과정별 수강료 및 수강료 책정기준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일종의 가격통제로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실종노인 관련 자료제출 등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부과 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하위법령 별표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가중하여 처분토록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이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의 최대치를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이를 가중 또는 감량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은 행정청에게 과도한 자의적 권한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사례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시 과태료 금액도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하고 과태료 금액도 유사사례에 준하도록 조정할 것을 개선권고

○ 노인복지법에서 위임한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등에 신고해야 하는 바, 신상카드의 양식을 정함(내용심사)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종아동에 대한 신상카드와 유사하게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5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 소득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만료일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토록 단서 조항 신설(강화)
 - ☞ 피부양자는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법 제5조)를 말하므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시기를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날보다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 다음날로 하는 것이 법적 취지에 비춰 명백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므로 원안의결
- 의료장비에 대한 통보시 해당 장비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검사(검사면제를 포함)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근거조항 신설(내용심사)
 - ☞ 현행 고시사항을 시행규칙에 상향입법하는 것으로 첨부서류 제출 의무부과는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53)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내용심사 5)

■ 심사내용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있는 비상임이사를 근로자에 포함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보험료의 4.5%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4.5%를 부담토록 함(내용심사)
 - ☞ 개념이 불명확한 ‘비상임이사 여부’로 보다는 ‘소득이 있는 지 여부’로 근로자임을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일반근로자(상임이사 포함)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소득이 있는 비상임이사를 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개정 국민연금법(07.7.23)의 위임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라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12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내용심사)

☞ 압류금지 금액을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 수준인 120만원까지로 정하는 사항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지역가입자와 사용자로서 각각 체납보험료가 있어 체납처분시 사용자로서 체납된 보험료에 우선 충당토록 함(내용심사)

☞ 체납처분시 사용자만의 기여금(지역보험료) 보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미 원천 공제된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 연금보험료에 우선 충당케 함으로써 다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그 체납사실을 송달하는 경우, 주소불명 등으로 2회 반송되면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내용심사)

☞ 주소불명이 명확함에도 무익한 재송달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현행 시행규칙에 근거한 ‘제3자가해신고서’와 내부 규정에 의한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 두 가지 서식을 제출받고 있는 것을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에 포함·통합하여 하나의 서식으로 시행규칙에 규정(내용심사)

☞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의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54)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강화 1)

■ 심사내용

○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의 주요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할 서류에 “진료과목별·환자종류별 입원(외래) 환자 명세서”를 추가함(강화)

☞ 의료기관회계기준자문위원회를 통해 현행 의료기관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초자료를 추가제출토록 하는 사항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55) 약사법 시행규칙(강화 3)

■ 심사내용

○ 의약품제조업자는 완제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공급일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강화)

☞ 의약품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인정되나, 모든 완제의약품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대체 의약품의 존재여부 등을 검토하여 약품의 부족사태까지 예상해서 보고토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대상을 적정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내용을 구체화·명확화 할 것을 개선권고

○ 완제의약품(마약,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포함)의 경우 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수입자는 수입실적을 분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함(강화)

☞ 의약품 유통정보를 시의성 있게 분석, 제공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업자가 완제의약품을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도매업자 등에게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을 월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함(강화)

- ☞ 비급여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월별보고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의약품 종합정보센터의 설립취지(의약품 생산(수입)·공급·구입내역 등 유통정보의 종합관리를 통한 의약품 유통투명화 및 각종 통계정보 제공 등)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56) 검역법 시행규칙(강화 1)

■ 심사내용

- 선박이 무전검역을 신청할 경우 검역소장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무전검역 신청시 통보사항 추가에 따라 승선검역 대상 선박의 범위 확대(강화)
- ☞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 발효('07.6.15)에 따라 IHR 개정안에서 제시한 서식에 맞도록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57)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생 정원 등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해 규정(내용심사)
- ☞ 관련 단체(대한간호협회 및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 개진을 통해 교육시간, 교과목,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대체적으로 내용상의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나, 정원변경시 지정신청시 서류를 또다시 제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변경사항만을 제출토록 개선권고. 아울러 동고시 제정은 '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제공을 앞두고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실적 시급성을 인정하여 고시의 제정에는 동의하나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고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차기 법률 개정시 반영할 것을 부대권고

(5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강화 1)**■ 심사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강화)
- ☞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 또는 외래진료를 통한 질환관리가 가능한 신체기능 저하군에 대해 본인부담율을 높여 의료행위의 합리화와 재정의 건정성을 유도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의결

(59)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진단의 범위에 관한 고시(내용심사 1)**■ 심사내용**

- 65세 미만 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과 관련되는 노인성 질병중 ‘진전’의 범위를 파킨슨병, 속별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에서 나타나는 진전으로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로 함(내용심사)
- ☞ 전문적인 의료영역으로 전문가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협회)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6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강화 1)**■ 심사내용**

-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총부담금액의 4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을 세분화하며, 최장 24개월로 분할납부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12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토록 함(강화)
- ☞ 분할납부기간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61)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신설 1)

■ 심사내용

○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한 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한하고,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설립 등 특정목적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하며, 의료채권을 발행한 법인은 법인의 회계와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신설)

☞ 의료산업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위원장 : 총리, '07.6.4)에서 도입이 결정된 사항으로 발행기관의 제한, 조달한 자금의 용도제한, 법인의 회계등의 내용에 과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강화 3)

■ 심사내용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07년도 4.77%에서 '08년도 5.08%(6.4% 인상)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07년도 139.9원에서 '08년도 148.9원(6.4% 인상)으로 변경(강화)

☞ '08년 건강보험 재정전망(보험료·수가·담배값 미인상 전제)에 의하면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인상율은 최저 7.1%이고, 수가가 1.94%인상시 보험료 인상률은 8.6%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고려, 6.4%로 결정한 사항으로 가입자(8인)·의약계(8인)·공익대표(8인)로 구성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특별소위원회 6회, 본위원회 3회 개최)서 의결('07.11.21)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식대 본인 부담률을 총 식대의 20% 부담에서 총 식대의 50% 부담으로,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 부담률을 면제에서 10%로 상향 조정(강화)

☞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의료기관 이용에

비용의식을 갖게 하여 불필요한 입원 수요를 차단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절감되는 재정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경감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강정책심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을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현금 25만원을 지급하는 장제비를 폐지(강화)

☞ 한정된 보험재정내에서 보험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적은 임의급여인 장제비를 폐비하려는 것으로서 건강정책보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63) 영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자체개발 청구프로그램사용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신청시 제출자료를 추가하며,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대표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자체 점검자료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시점에 경고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전산청구프로그램을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강화)

☞ 사전예방을 위한 점검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추진사업의 1단계 추진사항으로 관련 소프트웨어를 심평원이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으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병용·연령금기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처방을 방지하여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2단계(다른 진료과간)와 3단계(다른 요양기관간)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4조제1항제6호 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부칙으로 별도의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제적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고, 시행시기를 고시에서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우선은 동 고시에서 삭제하고 협의를 통해 실제 시행시기가 결정된 후에 동 고시에 반영할 것을 개선권고

(64) 영양사에 관한 규칙(강화 1)**■ 심사내용**

-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하여 영양학 또는 식품학 전공자 중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최소 18과목 52학점 및 의무 실습시간 이수 명시(강화)
- ☞ 영양사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확보를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65)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강화 1)**■ 심사내용**

- 병상수대 의사수의 비, 병상수대 간호인력수의 비에 따라 관리료를 가·감산하여 지급(강화)
- ☞ 법에 기준된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관리료를 차감함으로써 의료수준 보장을 유도하려는 사항으로 제공서비스 수준에 따라 관리료를 차등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가입자(8인)·의약계(8인)·공익대표(8인)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07.9.20)을 거친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66)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강화 2)**■ 심사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추가하고 검진기관의 장비요건 중 흉부방사선검사 및 위장조영촬영에 사용하고 있는 100mm 간접촬영장치를 '09.12.31까지만 사용토록 함(강화)
- ☞ 간접 촬영장치는 직접 촬영장치에 비해 정확성이 낮고, 방사선 피폭량이 많아 OECD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진료시에는 직접촬영장치만이 사용되고 있고 간접촬영장치는 단체건강검진 및 출장검진에서만 사용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명확하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별표2에서 정한 영유아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검진 담당 의사가 상근하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에서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을 신청토록 함(강화)

☞ 새로이 도입된 영유아 건강검진에 소아청소년과 이외의 보건·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영유아 검진을 하고자 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의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개요 등 5과목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시 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67) 의약품 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강화 1)

■ 심사내용

○ GS1(구 EAN/UCC) 체계에 따라 의약품표준코드를 도입하고 표준코드에 따라 바코드를 표기('08.6.30까지 기존바코드 사용 인정)토록 하고, 바코드 표시생략 대상인 15ml 또는 15g 이하인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도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09.7.1 시행)하며,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를 제외한 전문·지정의약품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번호, 유효기간 표시가 가능한 GS1-128(구 EAN/UCC) 코드 사용을 의무화('09.7.1 시행) 함. 또한 바코드 부여 절차와 관련, 제조업자등이 품목허가 후 30일 이내에 제품 정보정보보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운영하는 의약품 포털사이트에 등록하면 심평원이 10일이내에 당해 품목에 표준코드를 포털 등을 통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함(강화)

☞ 표준코드 도입 및 표기의무와 관련, 준비 및 기존 재고 소진 등에 물리적 시간(6월)이 부족하여 시행시기 유예를 1년('09.1.1 시행)으로 요청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6개월은 촉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시기 유예를 1년으로 할 것을 개선 권고

소형의약품 바코드 부착 규정과 관련, 제약업체 등에서 소형의약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바코드부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소형의약품의 경우에도 바코드 부착이 가능하고, 동 개정안의 경우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에 의해 현실적으로 바코드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 바코드 부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행정관청의 자의적 법집행 방지를 위해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매뉴얼로 작성하여 제약업계에 알려 주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 다만, 이해관계자의 규제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6개월 연장하여 '10.1.1로 할 것을 권고

GS1-128(구 EAN/UCC) 코드 사용 의무화와 관련, 현재 128코드를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없고, 128코드 부착시 생산속도가 떨어지고(200매/분→60매/분), 설비를 갖추는 데 많은 비용부담(바코드설비 설치 비용 최소 1억,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시설 확장 필요)이 요구되어 충분한 준비없이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제약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GS1-128 코드의 의무화는 지정의약품은 2012년, 전문의약품은 2013년부터 도입토록 시행시기를 연기하되 연구용역 또는 시범사업을 거쳐 GS1-128 코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외국의 실시사례 등을 검토하고, 2011년중 이를 규개위에 보고하여 동제도의 시행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

2. 식품의약품안전청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규정,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 41개의 고시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36건, 내용심사 3건 등 총 4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41건 중 7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 3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2건임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16차 행정사회분과 (2007. 2.15)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1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16차 행정사회분과 (2007. 2.15)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317차 행정사회분과 (2007. 3.8)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 제정안	제319차 행정사회분과 (2007. 3.22)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 중요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25차 행정사회분과 (2007. 4.26)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1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26차 행정사회분과 (2007. 5.11)	원안(조건부) 의결 1	강화 1 * 중요1
의약품 낱알식별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26차 행정사회분과 (2007. 5.11)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정안	제327차 행정사회분과 (2007. 5.16)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27차 행정사회분과 (2007. 5.16)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제329차 행정사회분과 (2007. 5.31)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생물학적 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29차 행정사회분과 (2007. 5.31)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개정안	제331차 행정사회분과 (2007. 6.14)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1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 개정안	제332차 행정사회분과 (2007. 6.21)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안	제335차 행정사회분과 (2007. 7.12)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35차 행정사회분과 (2007. 7.12)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	제337차 행정사회분과 (2007. 7.26)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개정안	제337차 행정사회분과 (2007. 7.26)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40차 행정사회분과 (2007. 8.16)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41차 행정사회분과 (2007. 8.23)	원안의결 1	강화 1 * 중요1
의약품 등 질량(용량) 편차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제341차 행정사회분과 (2007. 8.23)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41차 행정사회분과 (2007. 8.23)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 개정안	제345차 행정사회분과 (2007. 9.13)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1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제346차 행정사회분과 (2007.9.17~19, 서면)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48차 행정사회분과 (2007. 10.11)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제348차 행정사회분과 (2007. 10.11)	원안동의 1	강화 1 * 중요1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49차 행정사회분과 (2007.10.15~17,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	제349차 행정사회분과 (2007.10.15~17,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51차 행정사회분과 (2007.10.30~11.2,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	제351차 행정사회분과 (2007.10.30~11.2,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제355차 행정사회분과 (2007.11.27~29,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개정안	제356차 행정사회분과 (2007.12.5~7,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	제356차 행정사회분과 (2007.12.5~7,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	제356차 행정사회분과 (2007.12.5~7,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57차 행정사회분과 (2007. 12. 13)	원안의결 1	강화 1 * 중요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57차 행정사회분과 (2007.12.11~13,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57차 행정사회분과 (2007.12.11~13,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의약품등 벨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358차 행정사회분과 (2007.12.18~20, 서면)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1
대한약전 개정안	제358차 행정사회분과 (2007.12.18~20,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제358차 행정사회분과 (2007.12.18~20,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제358차 행정사회분과 (2007.12.18~20, 서면)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	제358차 행정사회분과 (2007.12.18~20, 서면)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1
계	총 41건	원안의결 34 개선권고 7 철회권고 0	신설 2 강화 36 내용심사 3 중요 11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강화 1)

■ 심사내용

○ 식품 제조·가공의 일반공통기준에 “식품제조시에는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발전을 저해하는 형태나 포장(담배, 화투, 카드, 복권, 화폐모양,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선정적이거나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형태, 도안, 문구 및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도안, 형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식품 중 유해물질로 기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6종에 2종을 추가하며 조미식품중 향신료가공품 규격에 곱팡이수 규격 추가(강화)

☞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발전을 저해하는 형태나 포장의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시급히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동 고시에 식품의 형태나 포장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보건상 필요한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도록 한 법상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동 고시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조속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반영토록 추진할 것을 개선권고하며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2)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강화 1)

■ 심사내용

○ 합성수지제중 에폭시(epoxy)의 용출규격(mg/l)에 에피클로로히드린 규격 추가(강화)

☞ 에피클로로히드린은 음료류 등의 캔 내면 코팅재로 주로 이용되는 에폭시 수지의 주요 원료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성(2A)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유럽 등도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확보를 위한 기준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수준도 일본(0.5mg/l 이하 : 용출규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필러형 금연보조제(의약외품)의 연소시 발생하는 타르 및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mg 이하가 되도록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외부포장에 경고문구를 추가하고,

위해성분측정 국제기준을 신설하며, 안전성·유효성문제성분 함유제제에 24개 성분 추가(강화)

☞ 인체위해성이 명확한 성분에 대한 제한은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4)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의료기기법에서 위임한 의료기기 사전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규정(내용심사)

☞ 고시안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범위)는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규제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법령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법령의 흠결사항을 보완하여 규제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고 시행일(4.5)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은 인정하고 추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령에 반영할 것을 부대권고. 고시안 제8조(시정지시 등)중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직접 신청인에게 시정지시하는 것은 위탁업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삭제를 개선권고. 고시안 제13조(지정 및 지도·감독 등)는 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이며 고시에서 규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기타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현 고시안 】

제13조(지정 및 지도·감독 등) ① 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공모절차에 따라 심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심의기관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전항에 의한 지도·감독결과 부적절한 심의 등 심의기관이 위탁단체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탁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수정 권고안 】

제13조(위탁기관의 선정) 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공모절차에 따라 심의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현 고시안중 제2항 및 제3항은 삭제)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강화 1)

■ 심사내용

○ 식품 중 유해물질로 기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8종에 3종을 추가하고, 식품 제조·가공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올리브유에서 벤조피렌 규격을 신설하며,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중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잔류허용기준에 벌꿀 기준 추가(강화)

☞ ‘기타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로 규정한 것과 관련,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테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화학적 합성물질로 규제내용을 최대한 구체화 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한 용어 반복사용 등 조문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개선권고

【 조문정리 】

㉞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테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잔류허용기준에 벌꿀 추가와 관련,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양봉용 동물용의약품이므로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타당하며, 그 수준도 호주, 일본, 캐나다와 동일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안의결하나, 현 기준설정안은 EU의 기준(0.025mg/kg)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동 고시 시행후 1년이내에 국민의 벌꿀섭취량 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 설정안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후 규개위에 보고할 것을 부대권고

(6)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제너릭 의약품 허가시 제출자료의 면제범위 중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시험자료를 제외하여 생동성시험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생동성을 인정하고 제약사가 비용을 공동 지불하여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는 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경우 품목수를 2개로 제한(강화)

- ☞ 현실적으로 생동성시험 제조사가 정부의 제네릭의약품 약가 책정정책을 이용하여 후발 제네릭의약품 제조사의 시장진입을 어렵게하는 등 공정거래를 훼손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고, 이해당사자 집단인 제약협회에서 이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은 동 고시 시행에 동의하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제출면제를 제외하고 공동생동의 품목수를 2개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규제로 일정기간 시행후 문제점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제의 지속여부를 재검토(규제일몰 3년 6월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7) 의약품 낱알식별 표시 등에 관한 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을 식별표시 대상에 포함(강화)

- ☞ 일부 원가상승을 우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으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오투약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8)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신설)

■ 심사내용

-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적용 범위,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기준 및 시험방법 등 규정(신설)

- ☞ 의료기기의 오작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 될 수 있으므로 규격 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9)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강화 1)

■ 심사내용

-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강화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질화에 따른 식품 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하며,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기준 신설 등 식품의 기준

규격 강화(강화)

☞ 국민건강 확보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10)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강화 1)

■ 심사내용

○ 타르색소중 ‘갈색 202호’ 기준 삭제하고, 총 76개품목의 타르색소에 대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시험법 신설(강화)

☞ 인체위해성이 명확한 성분에 대한 제한은 국민건강을 위해 당연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11) 생물학적 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제조소를 이전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자료제출범위로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을 규정. 구조결정 및 물리화학적 성질 및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와 안정성에 관한 자료의 경우 자료제출의 요건으로 시험자료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시험관련 책임자가 서명한 증명서류 제출을 규정. 아울러 가교임상자료 제출대상 확대,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입증 자료 확대 및 외국 의약품집 수재시 자료면제 규정을 삭제 (강화)

☞ 생물학적제제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12)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강화 1)

■ 심사내용

○ 신고필증 교부전 사전검토 및 조건부신고수리 제외를 규정하고, 새로운 국내외 위해정보에 의한 검사 또는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정밀검사 생략 대상식품에서 제외(강화)

☞ 신고필증 교부전 사전검토, 조건부신고수리 제외를 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고, 내용상으로도 고시보다는 상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철회토록 개선권고하나 현실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부의 협의하여 조속히 상위법령에 규정할 것을 부대권고

(13)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허가신청자료를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서식에 따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신약은 2009년 3월부터, 자료제출의약품(전문의약품)은 2010년 3월부터 의무적 시행(강화)

☞ 국내의약품 개발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외국 신약의 경우 국내허가신청 준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14)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중 인공유방(실리콘겔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추가지정(강화)

☞ 파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시판승인(수입업소 2개소)을 앞두고 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는 시항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15)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제출자료의 요건과 작성요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인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등에 관한규정」에 준하고,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주요사항을 발췌한 한글요약문 및 번역문 첨부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 번역문 첨부토록 하는 등 제출자료의 요건과 작성요령 명확화(강화)

☞ 현행 재평가규정상의 미미점을 보완하여 제출자료의 요건과 작성요령을 의약품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에서 명확히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1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강화 1)

■ 심사내용

○ 젓병(젓꼭지) 제조시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금지 규정 신설(강화)

☞ 위해성이 명백한 물질에 대한 금지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17)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당해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에 대해서 정밀 검사만 면제토록 하여 관능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를 의무화하되, 위해물질검사 시설을 갖춘 한약재제조업소는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해물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검사대상 한약재 품목을 녹용, 녹용절편 등 90품목을 추가하여 185품목으로 지정(강화)

☞ 현실적으로 안전성에서 부적합한 한약재가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제고를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18)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강화 1)**■ 심사내용**

○ 식용의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았으나 시중 유통중인 식품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재조합체도 평가대상으로 추가하고, 상업화 10년 경과 제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신청접수시 신청시기를 9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로 명시하는 등 규제 강화(강화)

☞ 자료제출 구체화와 관련 “상업화 현황에 대한 자료”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업의 기밀에 속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업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수정하고, “상업화 기간 중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증자료”는 일반적인 법원리상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업화 기간 중 제기된 안전성 입증과 관련한 자료”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19)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강화 1)**■ 심사내용**

○ 제조·가공기준으로 식품포장 내부에 사용되는 선도유지제에 대한 규정 추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중 데메틸홍데나필 규격 추가, 건조 어·패류 및 건조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잠정 기준 적용 원칙 신설 등 (강화)

☞ 전반적으로 입법적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민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위해가 명백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사형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20) 의약품 등 질량(용량) 편차기준 및 시험방법(강화 1)**■ 심사내용**

○ 1.5g 이상 환제의 질량편차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강화)

- ☞ 질량이 균일한 환제를 제조하는 것은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으로 판단되며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21)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단백동화스테로이드” 함유제제 중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외용제를 제외하고, 경구제 및 주사제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강화)

- ☞ 미국에서는 이미 통제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고, 의약품으로 오·남용될 경우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물질이므로 의사 처방전 의무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비중요규제)

(22)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강화 1)

■ 심사내용

- 생동성시험 면제대상 축소, 시험의뢰자 준수사항·시험기관 요건 및 시험기관장의 의무 강화 등 (강화)

- ☞ 시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요건 적합여부를 사전 검토 요청토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인 시험기관 지정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의무화 하는 것은 곤란하며, 다만, 사전적격여부 판정이 생동성 시험시마다 시험기관의 적합 여부를 검토받지 않아도 되는 편의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험기관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요건 적합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요청기관에 대해서만 적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도록 권고. 또한, 시험 의뢰자가 시험계획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시험 책임자로 하여금 다시 시험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도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판단되므로 현행규정을 유지할 것을 개선권고

(23)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통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유통기한 설정실험 수행 기관, 유통기한 설정실험 면제조건, 유통기한 설정실험 등 규정(내용심사)

☞ 이미 유통기한 설정이 의무화된 사항이므로 유통기한 설정을 실험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실험면제 요건을 규정하여 규제대상 및 규제비용을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24)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강화 1)

■ 심사내용

○ 기름치를 사용금지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 식품제조용수에 대한 제조·가공기준 신설, 컵모양 등의 젤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젤화제의 종류, 크기, 압착강도에 대한 기준 신설 등(강화)

☞ 기름치를 사용금지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관련, 기름치는 해산물 중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간(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며, 후유증이 없고, 짧은 기간 지속되나 심한 불쾌감이 있을 수 있음) 정도 이고, 법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철회권고. 식품제조용수에 대한 제조·가공기준 신설 관련, 식품제조용수에 대한 다양한 수처리 방법을 인정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규정의 취지는 인정되나 먹는물관리법은 수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적절하지 않으므로 문구를 조정할 것을 개선권고. 두부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및 대장균군 기준 신설 관련, 병원성 세균을 의미하지 않는 대장균군까지 음성 기준을 적용함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장균군 기준을 10이하/g으로 완화토록 개선권고

(25) 식품 등의 표시기준(강화 1)

■ 심사내용

- 원재료의 정의에 정제수 포함, 제조일자,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포함)의 활자크기 확대 및 주의사항 표시활자 크기 추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내용 확대 등 규정(강화)
- ☞ 동 고시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강화 하는 것으로 국민 대다수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1년 5개월의 유예기간을 보장하여 표시사항 변경 및 강화로 인한 규제비용을 최소화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26)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발기부전치료제인 ‘미로데나필’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강화)
- ☞ ‘미로데나필’ 함유제제의 시판을 앞두고 다른 발기부전치료제(구연산실데나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함유제제 등)와 동일하게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정력제로서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2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강화 1)

■ 심사내용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 PET) 재질의 용출규격 추가(테레프탈산(mg/L) : 7.5 이하, 이소프탈산(mg/L) : 5.0 이하)(강화)
- ☞ 동물실험에서 방광결석, 신장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28)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강화 1)

■ 심사내용

-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적색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사용금지, 향신료가공품(다대기)에 적색계통의 색소(16품목) 사용금지, 오존수 등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살균제 식품첨가물 인정확대 등(강화)

☞ 규제의 실익 및 소비자 보호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29)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강화 1)

■ 심사내용

-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의무자에 “건강 기능식품유통 전문판매업”을 추가(강화)

☞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법령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0)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강화 1)

■ 심사내용

- 최소 활자크기 상향조정,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 표시, 원재료명 표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추가 및 표시범위 확대 등 규정(강화)

☞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1) 원료의약품 신고지침(강화 1)

■ 심사내용

○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에 항생물질 품목 '노르플록사신' 등 14개 성분을 추가 지정하고,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중 동물에서 유래하는 원료의약품은 바이러스불활화 공정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하며, 원료수집 단계에서 수의사가 발행한 원료의 바이러스 미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함(강화)

☞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품목확대는미국, 유럽등 선진국과 같이 모든 원료의약품에 대해 관리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동물유래 원료의약품(말비장유래 철단백추출물 등)에 대해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 및 바이러스 미감염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사항은 동물유래 원료의약품(말비장유래 철단백추출물 등)이 신고대상 원료로 포함됨에 따라 인태반 유래 의약품의 경우와 같이 제조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2) 의료기기 기준규격(강화 1)

■ 심사내용

○ 비흡수성봉합사의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중 비착색렌즈 포장 방법을 명확화하며, 하드콘택트렌즈/소프트콘택트렌즈의 기준규격 개정(강화)

☞ 국제기준에 조화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준규격 품목을 신설하여 업체에 기준규격을 명확히 제시하므로써 기술문서 심사의 편의성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3)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54개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에 물요법장치, 의료용 산소발생기, 혈압계 3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강화)

☞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기 5회이상의 회의를 거쳤으며,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사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4)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강화 1)

■ 심사내용

- 식품 등의 원료구비요건에 벌꿀의 원료로 그레이아노톡신 불검출 기준 신설, 어류 등의 납 및 카드뮴 기준 강화, 땅콩 및 그 단순가공품, 과자류 중 땅콩 및 견과류 함유제품에 아플라톡신 B1 규격 신설 등 규정(강화)

☞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35)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강화 1)

■ 심사내용

- 합성수지제 중 페놀수지 및 멜라민수지, 요소수지 중 페놀 용출규격을 강화 및 신설하고 목재류중 나무젓가락에 이산화황, 치아벤다졸, 올쏘-페닐페놀, 비페닐, 이마자릴 용출규격 신설(강화)

☞ 일본과 동일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유해성이 명백한 물질이 잔류되어 식품으로 이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6)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강화 1)

■ 심사내용

- 살균소독제 126종중 과망간산칼륨 등 12종 삭제(강화)

☞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품목 및 사용되지 않는 품목을 삭제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7)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의약품등에 대한 밸리데이션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약사법시행규칙('07.12 시행 예정)에서 위임한 밸리데이션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내용심사)

☞ 의약품등의 밸리데이션 제도는 국제경쟁력강화 및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추진 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8) 대한약전(강화 1)

■ 심사내용

○ 제제총칙에 겔제, 관류제, 이식제, 점비제, 점이제, 흡입제 6개 제형 수재하고, 경피흡수제에 방출특성을 나타내는 시험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며, 현행 일반시험법 중 질량편차시험을 주성분의 양에 따라 질량편차시험 또는 함량균일성시험을 실시토록 함(강화)

☞ 제형의 추가는 제약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약품 제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대한약전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시험방법의 변경은 I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사항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39)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강화 1)

■ 심사내용

○ 광물생약 23품목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하고, 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 기준 강화(강화)

☞ 언론·소비자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민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명확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비중요규제)

(40)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기준이 30에서 1500ppm까지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식물성 생약 206품목에 대한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을 30ppm이하로 통일하고, 구절초 등 60품목에 대하여 잔류이산화황 30ppm이하 기준 추가(강화)

☞ 한약재가 식품으로 수입시 기타식품에 포함되어 잔류이산화황 30ppm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는 것을 감안하면, 생약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 또는 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자연함유량 조사결과 기존 기준설정 품목 및 추가되는 품목 모두 30ppm 이하가 검출되어 기준설정의 기준이 명확하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41)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신설 1)

■ 심사내용

○ 감초, 결명자 등 9개 생약에 대한 곰팡이 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신설)

☞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성이 확실한 '제1군 발암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일부 식품(곡류, 두류, 견과류 및 그 단순가공품(분쇄, 절단) 등)에서도 규제되고 있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명확하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제11절 통일·외교 분야

1. 통일부

집필자 : 정덕채 사무관(Tel. 2100-2443, jdc@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 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6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통일부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4건임

< 통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323차 행정사회분과 (2007. 4.1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제359차 행정사회분과 (2007.12.27)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 비중요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04차 행정사회분과 (2007. 4.17)	원안의결 2	신설 2 * 비중요 2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336차 행정사회분과 (2007. 7.19)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345회 행정사회분과 (2007. 9.12)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6	신설 4 내용심사 2 * 비중요 6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남북교역대상 물품의 반출·반입 승인(내용심사)

- 남북교역대상 물품 중 반출·반입 개별승인 물품(제한적 휴대금지품목)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2006)8(a)(i),(ii)에서 지정한 물품 및 통일부장관의 별도공고 물품 추가

☞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행을 위해 범정부 TF회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 반입물품으로서 승인을 요하는 품목 추가지정(내용심사)

- 현행 207개 품목을 187개 품목으로 개정하고 단호박(신선 또는 냉장)을 추가

☞ 식품방역법상 중국산 단호박은 수입금지 품목이나, 북한산으로 둔갑하여 무관세로 다량 반입되어 저가 유통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내 농가보호차원에서 단호박을 개별승인품목으로 지정하여 위장반입을 방지하는 규제사항이므로 원안의결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반출·반입 승인 취소(신설)

- 반출·반입 승인 이후라도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승인을 얻은 경우, 공고위반, 조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률상 남북교류와 관련한 반출·반입 승인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교역당사자가 승인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있고 승인 취소의 사유가 명백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 수송장비 운행 승인 취소(신설)

- 운행승인 이후라도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얻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의 승인 기준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수송당사자로 하여금 승인이후에도 승인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타당성이 있고, 승인취소 사유가 명백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3)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전략물자의 반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규정(신설)

- 전략물자로서 대북반출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서류, 승인기준, 절차 및 승인사항의 변경하고,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반출결과보고 의무 및 특구 등의 전략물자 관리·보고의무

☞ 대외무역법 등에서 전략물자의 “수출”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북반출”을 위한 절차상의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는 것으로 평화적 목적의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 마련과, 전략물자 사전판정체제 구축 등을 통해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확보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제의 목적이 명확하고 규제의 내용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자료제출 불응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신설)

-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고의로 행한 경우 300만원, 그 밖의 경우 100만원 과태료 부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자료제출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원안의회결

2. 외교통상부

집필자 : 정덕채 사무관(Tel. 2100-2443, jdc@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7년도에는 여권법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개정안,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3건의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외교통상부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5건임

< 외교통상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25차 행정사회분과 (2007. 4.26)	원안의회결 3	신설 1 내용심사 2 * 비중요 3
여권법 개정안	제326차 행정사회분과 (2007. 5.11)	원안의회결 2	신설 2 * 중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36차 행정사회분과 (2007. 7.19)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개정안	제339차 행정사회분과 (2007. 8.9)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7	신설 5 내용심사 2 * 중요 1, 비중요 6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내용심사 2)

○ 18세 미만자의 여권발급 신청 절차(신설)

- 18세 미만자가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그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토록 함

- ☞ 현재 여권실무편람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재량행위의 투명화차원에서 동 규칙에 마련하는 것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원안의결

○ 여권의 사용제한 등(내용심사)

-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을 명시

- ☞ 위험지역에 입국하는 우리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위난상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있고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여 원안의결

○ 병역법 개정관련 여권발급 절차 등(내용심사)

- 여권 신청시 병역관계 서류제출대상 남자의 연령조정 조정 및 5년 이내의 복수여권 발급대상자의 연령 조정(18세이상 35세 이하)과 관계서류 제출대상 규정

- ☞ 병역법 개정(06.3)에 맞춰 여권발급에 따른 대상자의 연령 조정사항 등을 정리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2) 여권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전자여권내 지문정보 수록 및 본인 신청 의무화(신설)

- 여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에 필요한 지문 그 밖의 사항을 제공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행하여야 하며, 타인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여권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여권소지인에 대한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위조·차명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발급 신청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전자여권내에 지문정보를 수록하는 사안으로 EU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전자여권도입을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지문인식을 위한 본인 방문신청은 대리신청 가능한 현행제도에 비해 다소 불편한 점이 예상되나, 얼굴정보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동 정보만으로는 여권소지인의 본인여부 확인의 완벽성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지문수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변조 방지를 위한 지문 제공을 위해 본인 방문이 필수적인 타당성이 인정됨

또한, 전자여권의 공신력 제고로 해외여행에서의 편리성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10년에 1번만 방문, 접수기관이 2008년 말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이상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므로 원안의결

○ 여권의 위·변조 금지 등(강화)

- 여권효력 상실 요건을 추가하여 발급된 여권이 위·변조된 때, 여권이 타인에게 양도·대여되어 행사된 때,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 ☞ 우리 여권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발급된 여권이 위·변조된 때 등 여권의 효력을 상실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등 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명확하나, 상당한 기간 내에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제의 내용을 투명화 할 것을 부대권고

(3)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재외국민 온라인등록방식 추가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신설)
 -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시 신원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산 등록(변경등록·이동)시 등록자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직접 관할 공관에 제출
- ☞ 기존에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변경등록·이동 신고의 경우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전산등록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이에 따른 위장등록을 방지코자, 온라인 등록시 여권사본을 우편·모사전송·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할 공관에 제출이 필요 하므로 원안의결

(4)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부과제외 대상 규정(신설)
 - 상위법에서 위임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의 부과제외 대상”을 구체화
- ☞ 국제선출국자를 대상으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1인당 1천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 기여금의 부과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부과제외대상 기준이 국내외 유사기준뿐만 아니라 현재 운용중인 외국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안의결

3. 국방부

집필자 : 전민용 사무관(Tel. 2100-2492, jmy59@opc.go.kr)

가. 2007 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신설2건의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국방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07. 7. 19)	원안의결 2	신설 2 * 비중요 2

나. 2007 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발견신고(신설)

-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자는 그 현장을 변경함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부대에 지체 없이 신고 함

☞ '00년부터 '07년 6월 말 현재 전사자 유해발굴 실적은 1,850여구로 발굴대상 13만여구 대비 1%수준으로 매우 저조하고, '00년 이래 현재까지 유해발견이 신고(제보)에 의한 것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발견신고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점,
- 관련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기간중 발견신고 관련 이견이 없었고,

- 규제비용이 없으며, 신고의무에 따른 제재조항도 없는 사항이어서 원안의결

○ 전사자 유해조사 및 발굴(신설)

- 국방부 장관은 전사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 조사·발굴할 수 있음.
-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민간인 소유(점유, 관리포함) 지역일 경우 국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사·발굴의 목적과 발굴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여야 함

- ☞ '00년부터 '07년 현재까지 년 평균 260여구의 유해 발굴 실적으로 보면, 발굴에 의해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 규모가 중요규제 수준에 미치지 않고,
- 이 중 민간인 소유 지역일 경우 유해의 보호·발굴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안 제12조)을 두고 있는 점,
 - '00년 이래 현재까지 조사·발굴활동시 재산피해, 민원발생이 거의 없는 점,
 - 대다수 국민이 유해발굴에 적극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4. 국가보훈처

집필자 : 전민용 사무관(Tel. 2100-2492, jmy59@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률에 관련된 내용심사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보훈처의 2006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7. 5. 1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 비중요 2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개정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지원의 정지(강화)

-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지원은 이를 행하지 아니함(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 처장은 5·18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예우는 이를 행하지 아니함(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지원정지의 기준을 현행 “금고1년이상”에서 “금고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과의 통일성과, 법적용대상자간 형평을 제고하기위한 것이고, 피규제자 수가 1,695명(2006.12.31현재)으로 중요규제판단기준에 못 미치므로 원안의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이며, 5.18법은 피규제자 수가 3,774명(2006.12.31현재)으로 역시 중요규제판단기준에 못 미치므로 원안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엽제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체계의 균형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피규제자 수가 76,804명(2006.12.31)으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 지원의 배제(신설)

-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 또는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또는 가족이 「형법」 제250조·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함(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에서 “국가유공자가 내란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이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법적용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어,
- 법적용의 통일성 측면,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와 일정수준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점에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피 규제자 수 (1,695명)도 많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규제자 수(76,804명)도 중요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5. 병무청

집필자 : 전민용 사무관(Tel. 2100-2492, jmy59@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7년도에는 병역관계법령 등 개정안에 대해 내용심사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병무청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없음

< 병무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병역관계법령 등 개정안	예비심사 (2007 7. 1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병역관계법령 등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병역법 위반 고용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내용심사)
 - 병무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음
- ☞ 병역법 제95조제1항에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로 규정하고 제2항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 한다”로 되어있어,

- 병역법시행령에서 그 세부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넘지 않고,
- 유사입법인 “고용정책기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사항인 점,
- 2005년 법 제95조 개정이후 고용주에 대한 과태료부과 실적이 없음을 고려할 때
피 규제자 수도 미미 하므로 원안의결

제12절 일반행정 분야

1. 행정자치부

집필자 : 이종협 사무관(Tel. 2100-2442, bird@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 행정사법 개정안 등 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건, 강화 12건, 내용심사 3건 등 총 1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6건, 비중요규제 13건)

○심사대상 중요규제 6건 중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3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4건임

< 행정자치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제319차 행정사회분과 (2007. 3. 22)	개선권고 1 비중요규제 1	내용심사 2 * 중요규제 1
온천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36차 행정사회분과 (2007. 7. 19)	비중요규제 2	강화 1 내용심사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36차 행정사회분과 (2007. 7. 19)	원안의결 2	강화 2 * 중요규제 2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제340차 행정사회분과 (2007. 8. 16)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비중요규제 1	강화 3 * 중요규제 2
지적법 개정안	제346차 행정사회분과 (2007. 9. 20)	비중요규제 1	강화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제351차 행정사회분과 (2007. 11. 2)	비중요규제 2	강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행정사법 개정안	제354차 행정사회분과 (2007. 11. 22)	개선권고 1 비중요규제 6	신설 4 * 중요규제1 강화 3
계	-	원안의결 3 개선권고 3 비중요규제 13	신설 4 강화 12 내용심사 3 * 중요규제 6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도로명자료의 이용 신청시 기재사항 및 해당기관의 자료제공여부 결정시 심사사항을 규정함(내용심사, 중요규제)

- 도로명자료의 이용 신청시 기재사항(안 제1항)

- ① 신청자의 인적사항
- ② 자료의 이용목적 및 요구내용
- ③ 자료의 관리방안

- 해당기관의 자료제공여부 결정시 심사사항(안 제2항)

- ①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 ②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신청사항의 처리 가능 여부
- ③ 이용목적외 사용방지 대책

* 해당기관

- 전국, 2개이상 시·도(행정자치부장관)
- 시·도, 2개 이상 시·군·구(시·도지사)
- 시·군·구(시·군·구청장)

☞ 자료의 이용신청시 “③ 자료의 관리방안(안 제1항)”을 기재토록하고, 이를 기초로 자료제공여부 결정시 “③ 이용목적외 사용방지 대책(안 제2항)”에 대해 심사하려는 것은

- 그 주된 이유가 “위치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기본도상의 지적경계선과 재산권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공부상의 지적경계선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 도로명기본도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과 현실적으로 사전심사를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안내·홍보 등 다른 대체 수단으로 그 목적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감안시 과도하므로 “안 제1항 제3호 및 안 제2항 제3호”를 삭제토록 개선권고

* 예시 : 대국민 홍보 및 자료제공시 “본 자료는 위치안내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본 자료상의 지적경계선은 지적공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적 경계선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적공부자료를 별도로 신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표시

- 건물번호판이 훼손·망실되었으나 재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건물 번호판을 재교부 받고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50만원이하)의 부과절차를 규정 (내용심사, 비중요규제)
 -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및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1항)
 -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제2항)
- ☞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절차만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피규제자가 실질적으로 규제위반자 소수로 한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규정한 타 입법례(측량법 등)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적정

(2) 온천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온천개발자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마련(내용심사,

비중요규제)

-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안 제1항)
 - 온천공의 부수되는 시설로서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 지표부 처리 등 그밖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9호)」를 준용
 - 시장·군수는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현행은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토록 규정(온천법 제13조 3항)

- 온천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이행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법령상의 산정기준을 준용해 왔음

☞ 동 사안은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지하수법령상의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을 준용해오던 것을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인 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현행과 실질적인 규제변동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에 해당

○ 온천발견신고시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토록 함(강화, 비중요규제)

☞ 동 사안은 온천공의 정확한 위치파악을 통해 소유권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 지적현황측량성과도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건당 18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 발견신고되는 온천공의 수가 연간 30여건으로 규제비용이 연간 총 540여만원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건축신고시에도 현행 건축법령상 소유권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지적측량현황성과도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당해 시·도내에 소재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기준을 상향 조정(강화, 중요규제)

- 일반공사 : 70억 이하→ 100억 이하
- 전문공사 : 6억 이하→ 10억 이하
- 5년간의 규제일몰제 적용

* 10개 혁신도시건설 관련 공사물량은 3조8천원 정도(2007-2012)로 예상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기준 상향조정 구간의 최근 5년간 평균수주액이 지자체발주 전체공사액의 4.9%이므로 지방업체 수주액은 총 1,873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지방업체 1개소당 5년간 평균 수주액증가는 일반건설업체는 총 1억4,800만원, 전문건설업체는 총 2,600만원 정도 수준임

< 건설업체의 증가 현황 >

구 분		'95년	'99년	'04년	'06년
일반 건설	업체수	2,958	4,508	12,988	12,914
	시도별 평균	184	282	812	807
전문 건설	업체수	18,933	29,704	37,664	42,576
	시도별 평균	1,183	1,856	2,354	2,661

☞ 동 사안은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175개 기관)에 따른 10개 혁신도시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균형발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제한 대상금액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건설에 한하여 5년간만 적용되는 점
- 경제정책조정회의('07.4.20)에서 관계부처(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가 합의하여 결정한 정책적 판단사항이고,

- 규제의 적용대상이 혁신도시건설사업 중 대형공사(100억원 이상)를 제외한 시공 기술이 보편화된 중소기업공사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지방중소건설업체가 공사의 품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점과,
- 최근 규제완화로 인한 건설업체 증가(시도평균 일반 807개, 전문 2,661개)로 지역 제한을 통해서도 경쟁체제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점,
- 규제강화에 따른 지방업체의 수주액 증가효과가 5년간 총 4.9%(1,873억원)으로 예상되어 국가전체의 공사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를 추가(강화, 중요규제)

- ①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시행령안 제92조 제4의2호)
 - 1월 이상 6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규칙안 제76조 별표2)
- ②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시행령안 제92조 제6호)
 - 1월 이상 6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규칙안 제76조 별표2)
- ③ 최저가 낙찰제에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시행령안 제92조 제10호)
 -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규칙안 제76조 별표2)
- ④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시행령안 제92조 제14호)
 - 1월 이상 6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규칙안 제76조 별표2)
- ⑤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시행령안 제92조제14조의2호)
 - 1월 이상 6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규칙안 제76조 별표2)
- ⑥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시행령안 제92조 제17호)
 - 1월 이상 6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규칙안 제76조 별표2)

- ☞ 입찰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 방지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추가되는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06.12.29 개정)」상의 추가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의 균형 유지를 위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 좌측의 추가 제재사유중「②」의 경우 중소기업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계약법령상의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에 추가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반영 하는 것으로 현재 재정경제부에서도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제재사유는 국가계약법령상에 이미 추가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지방계약법령상에 반영하는 것임

(4)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인가취소 요건을 추가(강화, 중요규제)

【 설립인가요건 추가사항 】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시에 연합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설립인가에 필요한 출자금, 설비기준 등을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 * 2010.1.1부터 적용
 2. 회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고의 사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 현행 설립인가 요건
 -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연합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설립인가취소요건 추가사항 】

- 금고의 출자금 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설립인가에 필요한 출자금액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안 제82조제6호) * 2010.1.1부터 적용

* 현행 설립인가 취소요건

- 거짓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동 사안은 새마을금고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실운영을 방지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실한 발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용자보호를 위해 규제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출자금,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설립인가요건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상태에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시에 “연합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 연합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지 않아 설립인가요건 이외의 의견까지 제시할 경우 사실상 연합회가 설립인가 여부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될 개연성이 크므로
-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를 “제7조의2에 규정된 설립인가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로 의견제시범위를 한정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설립인가요건에 “3.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을 추가하는 것은
- “출자능력”은 출자금의 설립인가 기준 충족여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고,
-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은 설립인가요건 보다는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행정목적은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잉여금의 개념을 명확히 함(강화, 중요규제)

- 현행 :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 개정 : 잉여금(처분전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

☞ 규제강화의 이유가 새마을금고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산 건전성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법정적립금의 기준 상향시 고객의 보호는 확대되는 반면, 출자자에 대한 이익 배당금은 축소되는 특성이 있는 바,

-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주민 스스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개발, 문화복지사업을 하는 협동조직인 점을 감안시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금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주 고객인 지역 영세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점,
- 새마을금고는 유사기관인 농협·수협·신협 등과 달리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 새마을금고의 최근 3년간 법정적립금이 평균 14.5%에 이르고, 기준상향으로 인해 부담이 추가되는 금고의 수가 전체의 40% (1,560개중 620개 금고가 15% 미만 적립)이며,
- 개별 금고당 평균 부담 증가액이 연간 1,300만원 수준으로 규제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법정적립금 기준의 상향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사항에 다음사항을 추가하고, 임원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함(강화, 비중요규제)

- 금품·향응 이외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제공 행위 금지
- 후보자의 신분, 경력, 학력, 인격 등에 관해 허위사실유포 금지
- 개인의 선전물을 제작·게시 또는 배포, 호별방문 금지
-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이나 그 가족,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대해 기부행위를 금지(다만, 직무상·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제외)

☞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규제내용에 있어 유사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5) 지적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지적편집도*의 간행·판매자에 대한 등록의무 중 판매자에 대한 등록의무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지적편집도를 간행하려는 자에게 간행 전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심사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 하고,

시·도지사의 심사를 받지 않고 지적편집도를 간행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강화, 비중요규제)

* 지적편집도란 지적(임야)도면을 기초로 건물·지형지물·도시계획 등 부가정보를 추가하여 작성하는 도면임(예 :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지번 및 경계가 표시된 도로교통지도” 등)

※ 현행규정은 등록된 업체만이 간행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

☞ 동 사안은 법제처의 법령모니터 결과 입법미비사항으로 지적(지적편집도를 부정확하게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판매 하였을 경우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 피규제자의 수가 지적편집도 간행등록업체 46개소로 한정되고, 규제영향 비용이 미미하며, 경쟁제한적인 성격이 없는 점,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사법령인 측량법에서도 지도간행 전에 심사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음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함(강화, 비중요규제)

※ 현행은 이행계획서의 제출없이 안전조치만 취하도록 함

※ 안전조치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동 사안은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계획 수립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규제대상이 재난위험시설 1,303개소(07년도 기준)로 한정되고,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사안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해 방지를 위한 대피명령 대상에 선박, 자동차 등을 추가함(강화, 비중요규제)

※ 현행은 대피명령 대상을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자로 한정

☞ 동 사안은 집중호우 등 재난에 의한 선박, 자동차 등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 규제대상이 침수 및 파손이 우려되는 지역 등으로 한정되고,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며,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사안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대피명령시 선주 등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없거나 집행 불응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집행상 문제는 없음

(7) 행정사법 개정안(신설 4, 강화 3)

■ 심사내용

○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다음사항을 추가(강화, 비중요규제)

- 미성년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기간 만료후 1년 미경과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후 2년 미경과자

* 현행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 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 파면된 후 2년 미경과자

☞ 동 사안은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수가 소수로 한정(06년말 현재 행정사 6,731명)되고, 규제영향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점,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 규제내용이 관세사·세무사 등 타 자격사 제도와 동일한 수준인 점 등을 감안 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행정사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요건을 마련 (강화, 비중요규제)
- 행정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9조제1항, 제3항)
 -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다만,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안 제9조제2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 (안 제10조)
 1.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등록신청 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등록취소 사유 중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 (안 제11조)
 1. 사망한 때
 2.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3. 폐업신고를 한 때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
 5.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신체, 정신상 장애 등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동 사안은 행정사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수가 소수로 한정('06년말 현재 행정사 6,731명)되고, '등록신청 전 교육이수 의무화'에 따라 규제영향비용이 수반되나 그 비용이 크지 않은 점,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 규제내용이 관세사·세무사 등 타 자격사 제도와 동일한 수준인 점 등을 감안 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1항, 제2항), 업무정지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항)(신설, 중요규제)

1. 행정사가 사무소의 이전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기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동 사안은 행정사 업무의 질서유지를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업무정지의 요건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제적용시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개선안 】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 또는 사무소 이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부를 비치·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행정사의 의무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강화, 비중요규제)

- 등록증을 타인 대여를 금지함 (안 제7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부를 비치·기재하여야 함 (안 제8항)

☞ 동 사안은 행정사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수가 소수로 한정('06년말 현재 행정사 6,731명)되고, 규제영향 비용이 미미한 점,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 규제내용이 관세사·세무사 등 타 자격사 제도와 동일한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등록관청은 행정사의 법령위반 여부 확인 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관련 사항 보고,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신설, 비중요규제)

☞ 동 사안은 행정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수가 소수로 한정('06년말 현재 행정사 6,731명)되고, 규제영향 비용이 미미한 점,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 규제내용이 공인중개사 제도와 동일한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에 대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신설, 비중요규제)

- ☞ 동 사안은 행정사협회의 책임성을 확보 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수가 협회에 국한되고,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한 점,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 규제내용이 관세사·세무사 등 타 자격사 제도와 동일한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행정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의 종류, 기간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신설, 비중요규제)

- ☞ 동 사안은 행정사의 등록 전 교육 이수율 의무화함에 따라 교육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수가 소수로 한정('06년말 현재 행정사 6,731명)되고, 규제영향 비용이 미미한 점,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 규제내용이 관세사·세무사 등 타 자격사 제도와 동일한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소방방재청

집필자 : 박은추사무관(Tel. 2100-2451, parkec@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국가화재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16개 법령 및 고시에 대하여 신설 25, 강화 20, 내용심사 1건을 규제심사(중요 8건, 비중요 38건)

○심사대상 46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39건, 개선권고 7건을 하였음

< 소방방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317차 행정사회분과 (2007.3.8)	원안의결4 개선권고2	신설6 *중요2, 비중요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317차 행정사회분과 (2007.3.8)	원안의결4 개선권고2	신설6 *중요2, 비중요4
국가화재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7.3.19)	원안의결8	강화8 *비중요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7.6.7)	원안의결2	강화2 *비중요2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07.7.5)	원안의결4	신설 4 *비중요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7.7.12)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소방용 기계·기구 검정 관련 5개고시 제·개정안	제342차 행정사회분과 (2007.8.30)	원안의결2 개선권고2	신설2, 강화2 *중요2, 비중요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7.10.18)	원안의결3	강화3 *비중요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55차 행정사회분과 (2007.11.29)	원안의결3	강화3 *중요1, 비중요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국가화재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7.12.27)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59차 행정사회분과 (2007.12.27)	개선권고1	강화1 *중요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7.12.27)	원안의결7	신설7 *비중요7
계		원안의결39 개선권고7	신설25, 강화20, 내용심사1 *중요8,비중요38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신설6)

■ 심사내용

○ 다중이용업의 안전시설 강화

- 고시원의 내부통로 및 창문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함

☞ 새로이 영업을 개시하는 고시원부터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한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대로 의결

○ 화재위험유발지수 기준 신설

-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별표 1의 D등급 이하인 경우를 말함.
 -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방법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 화재위험유발지수가 E등급의 경우, 화재발생시 대형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므로 즉각적인 조치로 당해 영업장의 사용정지(영업정지)와 함께 개선토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리모델링과 대수선과는 달리 화재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리모델링과 대수선의 경우에도 개선의 범위가 불확실하여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으며, 현재 D등급의

조치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종변경”은 삭제하고, “리모델링, 대수선 등”은 “D등급의 조치사항 포함”으로 변경토록 개선권고
- 아울러, D등급이하일 경우에만 개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B, C등급의 경우는 대책의 내용을 권고(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별표 2)
-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시설 및 장비명세서. 다만,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 사무소의 소재지,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령위반업소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종업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함
- 위반업소 공개시에는 위반업소명, 위반업소의 주소, 소방방재청장 등이 조치한 내용, 법령위반의 회수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소방방재청장 등은 법령위반업소를 다음 각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
 -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 소방방재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시·군·구청 소식지
- 소방방재청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치유(治癒)된 때에는 소방방재청장 등이 치유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함

☞ 법 제20조의 규정에는 제9조제2항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위반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는 만큼 시행령의 제명과 내용 중 “법령위반” 표현을 “시정조치”로 변경토록 개선권고

○ 과태료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3)

☞ 타 위반사항과 비교할 경우 유사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및 기준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함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별표 4)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 이행강제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부과절차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및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 부과금액(1천만원) 및 과태료(최고 200만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신설6)

■ 심사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 교육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

- 교육횟수 및 시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주로서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개시 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3월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정기교육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으로서 2년마다 1회
- 소방안전 교육과정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 기타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함
- ☞ 다중이용업의 특성상 잦은 이직, 휴·폐업, 신규영업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해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은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 아니라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됨
- 따라서 정기교육 대신에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다만 이 경우 위반사항이 없으면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교육대상에 종업원을 포함하도록 개선권고
- 또한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내용도 실습 위주로 진행토록 부대 권고
- 다중이용업(고시원) 영업장 내부통로 및 창문 설치 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 기준(별표 2)
 - 고시원 영업장의 복도·통로 설치 기준을 정함
 - 고시원 영업장의 창문 설치기준을 정함
- ☞ 규제대상은 새로이 영업을 개시하는 고시원으로 규제비용은 산정이 어려우나, 기회 관련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한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다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출입구 및 비상구가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상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단란주점 및 유희주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중 화면을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
- 피난 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회수를 정함
- 피난안내도는 정전시에도 볼 수 있도록 빛이 반사되는 야광의 구조로 하여야 함
- 피난안내문 또는 피난영상물은 한국어로 작성하되 다중이용업의 특성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피난영상물의 경우에는 외국어를 자막으로 처리 할 수 있음

☞ 이미 일부업소는 피난안내영상물 등을 제작 사용하고 있으며, 영상물 제작 등에 일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시 관련업계와도 협의가 되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정기점검 실시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정기점검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의 별지 제21호서식의 점검결과보고서를 사용
 -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 .. 당해 영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피난시설·경보설비·방화시설 및 그 밖의 안전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 제1호규정의 안전시설 정상작동 여부
-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 안전점검자 대상 : 다중이용업소
 - 안전점검자의 자격자
 - .. 당해 다중이용업주 또는 당해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자
 - .. 당해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관리업자
 -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작동여부를 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등
 - 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영업주에게 제출
 -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한 결과 안전시설 등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안전시설 등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현장 확인결과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주에게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위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 자체점검의 중복해소, 민원인의 편의도모 등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 1회 자체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하는 분기의 정기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토록 개선권고
- 아울러,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업자가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에 대한 규제심사(05.10.21)시 자체점검결과 제출의무를 삭제토록 개선권고한 사항과 배치되고, 점검을 스스로 하는 경우와 위탁하는 경우도 모두 자체점검이라는 동일한 규제이므로 관리업자의 소방관서 제출의무를 삭제토록 개선권고
- 또한, 정기점검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기점검이 충실히 되도록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통한 안전시설의 유지·관리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부대 권고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시 첨부서류
 -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화재위험평가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함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한 때
- 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 사항 및 첨부서류
 - 대표자 변경 :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개인의 경우)
 - 평가대행자의 명칭·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 :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개인의 경우)
 - 기술인력 변경 :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부, 기술인력연명부 1부
-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 발주자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존
- 업무의 휴지·폐지 또는 휴지후 영업재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행자업무 휴지·폐지·영업재개신고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

☞ 피규제대상은 화재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로 규제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시 의견 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별표 3)

☞ 피규제대상은 화재영향평가대행자로서 규제비용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3)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안(강화 8)

■ 심사내용

○ 소화기구 능력단위 강화

- 의료시설의 소화기구 설치 단위능력을 바닥면적 50m²당 1단위 이상으로 함
 - 기존 의료시설의 경우 고시 공고 후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설치

☞ 피규제자수는 의료시설 2,324개소('07.1월 현재)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소화배관 등에 분기배관 방식을 사용할 경우 검증제품 설치

- 소화배관 및 소화활동설비의 배관공법에서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 한국소방검정 공사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부터 그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설치

☞ 새로이 건축물을 시공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조기반응형헤드의 설치대상 확대

- 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함

☞ 신축 노유자시설(참고로, '06.1월현재 약 52,000개소)에 적용되는 것으로, 스프링클러헤드를 표준반응형에서 조기반응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입법예고시 의견 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산정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원산정식의 상수(k) 값을 건축물의 높이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

☞ 신축 래크식 창고에 적용되며,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입법예고시 의견 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 압력 현실화

- 저압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배관부속의 경우 2.0MPa의 압력에 견딜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

☞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물(전기, 통신실 등)에 적용되고 규제비용은 추정이 어려우며,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청정소화약제의 설계기준 등

- 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충전비·충전압력 및 최소사용설계압력을 수정(강화)하고, 소화약제의 배관두께 산출방식을 신규제정

☞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물(전기, 통신실 등)에 적용되며,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화장실에 감지기 설치

- 감지기 설치장소에 화장실(다만,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장소는 제외) 추가

☞ 신규로 건축하는 화장실에 적용되며, 규제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산후조리원 등에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 설치

- 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산후조리원, 접골원, 조산소의 경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를 설치하도록 함.

☞ 피규제대상은 신규 의원 등이며(참고로 '07.1월 현재 약 2만개소가 있음)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이 미미하고,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신설

■ 심사내용

○ 해일위험지구 지정, 직권조치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해일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함

- 해수면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태풍, 강풍 등으로 풍랑에 의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일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법 제25조의3제4항에 의한 해일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일위험 지구라 함은 다음과 같음
 -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 해일이 발생할 경우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 기타 해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 동 개정안의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하여 지구를 지정하게 되고 동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적인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점, 해일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 요건

- 대행자 등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등록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업무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업무
 -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업무
 -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자 등록 요건(별표 3).

☞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별도 이견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5)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의연금품 모집허가 신청서류

- 의연금품 모집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
 - 허가신청서
 - 모집계획서
 - 모집금 납입방법 및 전달 계획
 - 모집사무소의 소재지

- 해당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의연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 기타 의연금품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허가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되어있고, 피규제자는 1년에 3명 정도이며, 별도의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 사용계획서 제출 등

- 전국재해구호협회로 하여금 매년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제출을 의무화함

☞ 피규제자가 전국재해구호협회 1개소이고, 별도의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도 해당 협회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모집비용 충당비율 설정

- 의연금품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세부적으로 정함

☞ 피규제자는 의연금품 모집자로 1년에 3명 정도에 불과한 점, 별도의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의연금품 모집자 등의 의무사항 등

- 의연금품 모집 관련 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 모집자가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을 정함
 - 모집자에게 의연금품 출납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작성·보관을 의무화
 - 모집자 및 분배위원회가 모집과 배분내역 공개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14일이상 게시토록 함
- 모집자가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공개할 사항을 정함
- 분배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완료한 때 공개할 사항을 정함 .

☞ 피규제자는 의연금품 모집자(매년 3명 정도)와 배분위원회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6)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매매전표, 종묘구입(생산) 관련서류 제출

- 양식어업자가 제출하는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제출 시기를 명확화
 - 제출시기 :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로부터 5일 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월 1회)
 - 첨부서류 : 매매전표 및 종묘 구입(생산)관련 서류 등

☞ 규제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이해관계자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7)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소방용 기계·기구 점정관련 5개고시 제·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 등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기준을 정함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시설 기준을 정함
- 형식승인에 대한 변경승인 대상 및 형식승인 처리기간
 - 중요한 변경승인 대상
 - .. 전동기 또는 엔진, 동력전달장치, 필터, 냉각장치, 압력스위치, 제어기기, 언로더, 안전밸브, 배수장치, 우수분리기, 압력유지밸브 등의 구조·형상 또는 재료
 - .. 주된 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
 - 경미한 변경승인 대상
 - .. 카바, 볼트, 와셔의 재료 또는 형상
 - .. 모서리부의 위해방지 또는 강도 유지를 위한 적당한 보호조치
 - .. 압력계 등의 구조·형상 또는 재료

- 성능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부품
 - 처리기간 : 형식승인 120일, 변경승인 60일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사전제품검사대상으로 추가함
 - 사전제품검사 신청 최소수량 : 1개, 제품검사 수수료 : 53,600원
- 견품수량 기준 : 완성품 1대, 부분품 1조
- 형식승인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과 직접 경비 적용지수를 정함

- ☞ 공기호흡기 충전기의 공기질 기준 중 제6호 내지 제11호는 흡입용 공기질 기준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되, 공기호흡기 사용자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규칙개정안 별표5의 중요한 변경승인 대상 중 '주된 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 장치' 규정은 '주된 기능'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관련 업체에게 과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는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또는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완강기 지지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 등

-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기준에 완강기 지지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
- 완강기 지지대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시설 기준을 정함
- 형식승인에 대한 변경승인 대상 및 형식승인 처리기간
 - 중요한 변경승인 대상
 - 지지대의 재료
 - 본체의 형상 및 구조
 - 주된 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의 재료·형상 및 치수
 - 경미한 변경승인 대상
 - 볼트, 와셔 등의 재료 또는 형상
 - 성능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부품의 재료 또는 형상
 - 처리기간 : 형식승인 45일, 변경승인 30일
- 완강기 지지대를 사전제품검사대상으로 추가함
 - 사전제품검사 신청 최소수량 : 25개, 제품검사 수수료 : 405원
- 견품수량 기준 : 완성품 5대, 인장강도 시편 등 각 3개
- 형식승인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과 직접 경비 적용지수를 정함

- ☞ 규칙 개정안 별표5의 중요한 변경승인 대상 중 '주된 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 장치의 재료·형상 및 치수' 규정은 '주된 기능'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관련

업체에게 과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는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또는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기타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세부시험 시설기준

- 기술기준 개정으로 시험항목이 변경된 아래 품목에 대한 세부 시험시설 기준을 추가함
 - 수동식 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투척용), 소화약제(강화액), 발신기, 수신기·중계기, 경종, 금속제 사다리, 완강기, 소방호스, 결합 금속구·송수구, 기동용 압력스위치, 자동소화기기

☞ 기 시행중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험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규제비용도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기타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수수료

- 기술기준 개정으로 시험항목이 변경된 품목의 형식승인 수수료 산출위한 표준 공량과 직접경비 적용지수를 추가로 정함

☞ 유사 검정대상 품목의 기준을 준용하여 마련된 기준으로,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위험물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전 기술검토 대상 확대

-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 전에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추가함
- 기술검토 업무 수수료 산출을 위한 기준공량과 보정계수를 정함

☞ 대형 위험물 시설의 안전을 위해 관련업계에서 동의한 사항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50만ℓ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및 압반탱크 저장소 완공검사 위탁에 따른 수수료 인상
 - 50만ℓ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및 압반탱크 저장소 완공검사 업무가 소방서장에서 소방검정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완공검사 수수료를 상향하는 것으로 표준공량과 보정계수를 조정함

☞ 대형 위험물 시설의 안전을 위해 관련업계에서 동의한 사항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100만ℓ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 항목 추가 및 검사 수수료 인상
 - 정기검사 항목에 ‘소화설비의 작동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정기검사 수수료의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 신설 및 상향 조정

☞ 대형 위험물 시설의 안전을 위해 관련업계에서 동의한 사항이고, 점검주기가 10년에 달해 규제에 의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 심사내용

- 노유자·정신보건시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 신규로 설치되는 노유자 시설 및 정신보건 시설 중 아래 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
 - 창살이 설치된 시설(자동으로 열리는 시설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부터 600㎡ 미만인 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 제외)

☞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며,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과태료
 - 자체 점검을 위탁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사 참여없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어 규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행정처분 기준

- 방염업자가 방염성능기준에 미달되게 방염물품을 처리한 경우에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 법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고,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10) 국가화재안전기준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화재 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자동폐쇄장치'로 규정함
- 아파트의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 자동폐쇄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 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규제비용도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1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방재안전대책 수립대행자 등록 및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 특수전문교육 운영 및 위탁교육기관 지정
 - 위탁교육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운영

- 지정된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 위탁교육기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세부 교육운영기준을 준수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
 - 특수전문교육 이수자 중 인증시험 합격자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
 - 인증시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운영
-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
 -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에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함
- 방재안전대책 수립 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일부 변경 및 신설함

- ☞ 시행령안 제58조의2 제3항에서 위탁교육기관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해당 조항을 제하도록 개선권고
- 시행규칙안 제8조 제1항에 의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중 법인등기부 등본,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서류에 해당하므로, 동 조문 및 별지제5호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시행규칙안 제12조 별표2 '방재안전대책 수립 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은 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는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할 것을 개선권고

(1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7)

■ 심사내용

○ 행위 등의 제한

- 개선사업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정함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흙·모래·돌의 채취, 토지의 굴착 또는 분할

-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 개선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 당시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필요없는 행위에 관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의 신고 사항 및 신고 시기, 신고 서식을 정함

☞ 불필요한 투자를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사업시행자의 법인 설립시 출자비율 제한

- 사업시행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다른 법인과 금융기관의 출자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제한

☞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위해 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 개선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함
 - 개선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이 10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증감
 -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 개선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재해위험 개선사업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의한 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권고한 경우에 한한다)
 - 재해위험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승인여부 검토위해 필요한 수준이며, 타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경미한 사항은 시행령안 제10조 각호의 사항과 동일
- 시행계획 수립시 첨부서류
 -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
 - 지적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단계별 개선사업 추진계획서
 -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 등의 처분계획서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서류
 -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제51조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지역에 한한다)

☞ 시행계획 승인여부 검토위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며, 타 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준공검사

- 준공검사 신청시 첨부서류를 정함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 개선사업 완료 후 지구내 소유자별 면적 조서
 - 개선사업 완료 후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

-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신·구 지적대조표
-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의한 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시장·군수·구청장이 권고한 경우에 한함)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지역안전도 진단실시 및 안전도 등급 변화 추이(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함)
-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

☞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위해 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당해 개선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과 '보험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를 말함
- 토지상환 채권 발행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 시행자 명칭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 토지의 용도
 -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의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함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원부를 비치하여야 함
 -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 제21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 토지상환 채권발행에 관한 유사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선수금

-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개선지구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선 사업에 착수할 것
 -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선사업의 공사진척율이 10%이상 일 것
 -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받을 것
 -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다만, 나목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시행자가 공사 완료의 공고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선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선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 법의 선수금 관련 유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3. 경찰청

집필자 : 이종협 서기관(Tel. 2100-2442, bird@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개의 법령에 대해 내용심사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2건, 비중요규제 없음)

○심사대상 중요규제 2건 중 2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찰청의 2007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22차 행정사회분과 (2007. 4. 5)	개선권고 2	내용심사 2 * 중요규제 2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는 ‘장내기능시험 전’에 자동차운전 학원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3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도록 함 (내용심사, 중요규제)

* 현행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체계는 “①학과시험 ②장내기능시험 ③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②장내기능시험 전에 3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③도로주행시험 전에 10시간 이상의 도로주행연습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개정 2006.4.28 / 시행 2007.4.29>

☞ 도로교통법이 의원입법으로 개정(2006.4.28, 우제항 의원 발의)되어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 기능교육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 기능교육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기능습득에 소요되는 최소시간을 감안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장래기능교육의 목적이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습득토록 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시 이미 기초적인 운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도로주행교육을 통해 운전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면허취소 경력자에 대해 동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개선권고

○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수강료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인기관이 인정한 원가조사표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수강료 등 책정 신고서 제출)하도록 하고,

-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학원교육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 경찰청장은 수강료 조정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현행은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수강료 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하는 의무만 부과하고 있음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

- 제110조(수강료 등)

- ④ 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시행 2007.4.29>

☞ 도로교통법이 의원입법으로 개정(2006.4.28, 우제항 의원 발의)되어 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규제의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운전학원이 수강료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인기관이 인정한 원가 조사표 등 근거자료를 첨부” 하여 수강료 등 책정신고서를 제출토록하는 것은 상당한 규제비용(학원당 200만원 내외)이 수반 되는 사항인 바,
- 운전학원의 경우 수강생 수, 시설·장비, 임차료의 변동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원가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수강료를 소폭 인하하는 경우까지 원가조사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행정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 원가조사표 제출대상을 ‘수강료의 신고금액이 직전 신고금액 대비 일정비율(예 : 15%) 이상 인하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과 동 규제의 시행 이후 최초의 수강료 책정 신고시에 한하여 모든 운전학원에 대해 원가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부칙에 명시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상위근거법에서 규정된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규제기준이 불명확하여 법적안정성과 규제 집행시의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정부가 학원업계의 수강료 담합을 조장하는 현상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과도한 인하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예시> ‘과도한 인하 등’의 기준을 ‘수강료 신고서 제출한 원가미만으로 인하하는 경우’로 구체화

- 특히, 수강료 덩핑경쟁으로 인한 운전교육의 부실화 방지라는 행정목적은 “수강료의 과도한 인하에 대한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것에 대해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강료 등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사업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수강료를 일정금액 이상 받도록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관련규제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과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설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시 운전학원의 수강료에 대해 하한선을 규제하려는 것은 행정목적에 비해 규제수단이 과도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수강료 신고 및 조정에 관한 근거 조항(도로교통법 제110조제4항)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 운전학원의 법령상 의무교육시간 미준수 등에 따른 교육 부실화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및 위반에 대한 처분을 통해 행정목적은 달성하는 것이 적정

4. 법무부

집필자 : 정덕채 사무관(02-2100-2443, jdc@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2007년도에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9개 법령에 대해 심사(중요규제 5건, 비중요규제 19건)하여 2건은 개선권고, 22건은 원안의결을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14건임

<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26차 행정사회분과 (2007. 5.11)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법률구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28차 행정사회분과 (2007. 5.25)	원안의결2개선 권고1	강화1 내용심사2 *비중요3
변호사법시행령 개정안	제330차 행정사회분과 (2007.6.8)	원안의결5	신설4 강화1 *중요1,비중요4
해외이주법 개정안	제333차 행정사회분과 (2007.6.28)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
한국법학원육성법시행령 제정안	제343차 행정사회분과 (2007. 9. 4)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
국적법 및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제346차 행정사회분과 (2007. 9.20)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
정부법무공단법시행령 제정안	제348차 행정사회분과 (2007.10.10)	원안의결5	신설1 내용심사4 *비중요5
차별금지법 제정안	제 행정사회분과 (2007.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1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제359차 행정사회분과 (2007.12.27)	원안의결5 개선권고1	신설6 *중요4, 비중요2
9개 법령		원안의결22 개선권고2	신설14 강화3 내용심사7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외국인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내용심사)
 - 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및 등록신청시 제출해야할 외국인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국인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외국인체류자격 부여, 외국인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 및 등록증발급 등 첨부서류를 통 규칙의 별표에 직접 규정
 - ☞ 현재 외국인근무처 변경·추가허가 등의 신청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법무부 “외국인체류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규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행정청의 자의적 기준 배제 등 재량행위 투명화와 민원편의도모 차원에서 동 규칙에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2) 법률구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법률구조법인 등록여건 및 절차(강화)
 -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요건으로 사무소와 5억원 이상의 자산 소유, 종사자 수 및 자격요건 등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법무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무부령이 정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
 - ☞ '88년 이후 법무부 지침으로 운용되고 있던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요건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동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안으로 등록요건의 내용이 타 법무법인의 요건을 준용 내지 완화하는 내용이나, 등록 요건중 법률구조에 필요한 사무소와 “5억원이상”자산“소유”는 입차의 경우 등을 고려하고, 진입의 폭 확대를 위해 “3억원이상”자산“보유”로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법률구조법인의 변경 등록(내용심사)
 - 법인의 목적, 사무소, 임원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
 - ☞ 현행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의 등록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 법률구조법인의 해산 신고 및 등록 취소(내용심사)

- 법률구조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때, 목적외 활동을 한 때, 2년 이상 활동하지 아니 한 때

☞ 현행 법무부 예규로 운용되던 것을 행정규제 투명화 차원에서 일부 완화하여 동규칙에 상향 입법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3) 변호사법시행령 개정안(신설 4, 강화 1)

■ 심사내용

○ 변호사 수입장부 기재사항 추가(강화)

- 변호사 수입장부에 수입액, 수입사건의 취급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처리결과 등 기재사항을 추가

☞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수입장부 기재사항에 수입액이 추가로 규정되었고, 그 밖의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수입액을 포함한 일부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서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규정하였고, 타법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며, 변호사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되었으므로 원안의결

○ 변호사의 연수교육(신설)

-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을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이상으로 규정

☞ 개정된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이임된 범위내에서 규정하는 사안이고, 타법 및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규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입자료 제출 등(신설)

- 공직퇴임변호사는 매년 2회 수입자료 및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화사회에 제출하고

제출서류에는 위임인, 수입사무 요지 등 11개 항목을 기재하며, 지방변호사회는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1개월 이내에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

- ☞ 판·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전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전관 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 개정 변호사법에서 퇴임후 2년동안 수입한 사건에 대한 내역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제출기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정하는 사안으로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안이고, 피규제자수가 소수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한점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견이 없고 전관예우의 관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 특정변호사의 선정기준 등(신설)

-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2회 특정변호사를 선정하여 그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 특정변호사 선정기준을 산건유형을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6개월간 수입건수 이상, 분야별 평균수입검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로 정함

* 형사사건 30건이상, 형사외의 본안사건 60건이상, 형사외의 신청사건 120건 이상

- ☞ 개정변호사법에서 소위‘사건브로커’등을 고용한 불공정한 방법의 사건과다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을 수입한 변호사(특정변호사)의 성명 등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특정변호사의 선정기준과 자료제출의 절차 등을 위임함에 따라 정하는 사안으로 지역별 특성상 선정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우선 수입건수는 사건의 형태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형사·본안·신청사건으로 분류하고 그 기준은 통계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각 지역별 시장규모와 변호사 수, 사건 수 등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상기한 기준건수 외에 그 지역의 평균수입건수와 비교하여 일부변호사가 어느 정도 사건을 독식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분야별 평균수입건수의 2.5배 이상을 판단기준으로 추가하였기에 선정기준이 적절하므로 원안의결

○ 지방변호사회 임직원 등의 비밀준수 의무(신설)

- 지방변호사회 임직원 등은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수입액 보고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 ☞ 개정 변호사법에서 신설된 변호사수입액 보고제도 등과 관련하여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변호사 임직원이 동 사실을 누설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침해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누설 방지의 범위를 수입액 등 3건으로 구체화 하였고, 피규제자 수가 소수이고 규제비용이 불필요한 점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4) 해외이주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및 등록취소 요건 추가(강화)

- 기존 불명확하던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및 등록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
 - * 동업자의 금지행위
 - 국위손상 또는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주 상대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 손상 또는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기타 업무질서 문란행위→허위 또는 과장광고, 허위정보 또는 허위사실제공, 부당한 알선료·수수료 징수 등의 업무질서 문란 행위

- ☞ 기존에 불명확하던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금지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에 규정된 변경등록 및 신고의무 등의 위반시 제재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피규제자 수가 소수이고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5) 한국법학원육성법시행령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신설)

- 한국법학원과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 * 동일명칭 사용자 과태료 400만원, 유사명칭 사용자 과태료 200만원 부과

- ☞ ‘한국법학원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유사명칭사용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이규 규정하는 사안으로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타 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6) 국적법 및 국적법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귀화허가 등의 취소(신설)

- 법무부장관은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또는 국적 회복허가를 박았거나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법무부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가 특정한 소수로 한정되고, 국제기준에 비취 규제정도가 과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이스라엘, 대만 등에서도 귀화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7) 정부법무공단법시행령 제정안(신설 1, 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공단 이사장의 경영계획서 제출(신설)

- 공단 이사장은 임명 후 3월 이내에 경영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국가소송을 위임받아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규제사항이 공단의 이사장으로 제한되어 있고, 계획서 제출에 따른 규제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공단의 자금 차입 승인 신청시 기재사항(내용심사)

- 공단이 자금 차입을 신청시에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 상환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승인신청서에 기재

- ☞ 공단이 사업추진을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자금 차입에 따른 승인신청시 제출서류를 정하는 내용으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규제자가 동단에 한정되고 있으며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고, 다른 법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공단 내부규칙의 승인(내용심사)
 - 공단은 조직·정원·인사·보수, 재산·회계, 기타 법령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폐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 ☞ 공단의 조직 및 인사 등 내부 규정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기준(내용심사)
 -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의한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과태료 부과
 - *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
 - ☞ 법에서 과태료부과 상한액을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적인 절차 및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타입법례와 유사하므로 원안의결
- 공단의 운영비용 지원조건(내용심사)
 - 국가가 공단설립 첫 해의 운영비용중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국가소송 중 일부를 소송 수입료를 지급받지 않고 수행
 - ☞ 공단 수입료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공단설립 첫해의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단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상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영비용 지원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8) 차별금지법 제정안(신설)

■ 심사내용

○ 사용자의 정보공개 의무(신설)

-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

* 사용자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

- ☞ 고용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사용자에게 고용기준 등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으로 과계기관 및 소관부처간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9)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외국법자문사무소 설립인가·등록 및 운영기준(신설)

- 외국 로펌의 대표사무소인「외국법자문사무소」는 대표자인 외국법자문사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대한 변협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일정한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대표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내 3년 이상을 포함, 총 7년 이상의 법률사무 취급 직무경력 필요하며 외국법자문사무소의 구성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무소는 수입장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국내에 별도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 동 사안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아세안(ASEAN)과의 FTA 등 타결된 통상협상에서 약속한 국내 법률서비스업의 단계적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외국 로펌의 국내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내 법률서비스의 단계적 개방계획 중 제1단계 조치라는 점과 소비자 보호 측면,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다만, 규제내용에 있어 외국법자문 사무소의 설립인가 취소사유 중 “제32조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안 제19조제1항제2호)”는 규제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재량권의 투명화를 위해 법제처의 법제심사단계에서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등록 및 신고(신설)

- 외국법자문사(FLC)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 후 대한변협에 등록해야 하고, 수행자·금치산자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직무경력이 있어야 자격승인을 받을 수 있고, 자격승인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등 요구 가능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 또는 자격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협의 징계(업무정지명령 포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개시·일시 휴업 및 근무지 변경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 필요

-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아세안(ASEAN)과의 FTA 등 타결된 통상협상에서 약속한 국내 법률서비스업의 단계적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제도를 도입, 제한적 면허(limited licensing) 방식의 일정한 전문직 자격을 창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격기준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내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조치 중 1단계 조치라는 점과 소비자 보호 측면,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규제신설의 타당성 및 규제내용의 적정성이 인정 되므로 원안의결 하였으나,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거부·등록취소·징계권한을 '대한변협'에 부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간의 경쟁관계 등을 감안하여 법제처의 법제심사단계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할 것을 개선권고

○ 외국법자문사의 국내체류·비밀유지 및 감독순응 의무(신설)

- 외국법자문사는 연중 180일 이상 국내체류가 필요하고,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및 감독기관(법무부장관·대한변협)의 감독에 순응할 의무 부과

- ☞ 법률시장 개방 이후 외국법자문사의 충실한 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공성·투명성 확보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법자문사(FLC) 제도에 관하여 법률시장을 먼저 개방한 외국에서 채택한 국제적 기준을 도입한 점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공식적 이견이 없고, 비교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무자격자의 명칭 및 표시사용 제한(신설)

-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명칭 또는 표시도 사용불가

- ☞ 법률서비스 개방에 따라 도입될 외국법자문사(FLC)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정당한 전문직 자격을 가진 자의 활동을 보장하고, 무자격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무자격자가 전문직자격 표시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변호사 등과의 고용·동업 금지(신설)

-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의 고용·동업·제휴 관계 금지

-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아세안(ASEAN)과의 FTA 등 타결된 통상협상에서 약속한 국내 법률서비스업의 단계적 개방 의무 중 1단계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면서 변호사 등과의 동업·고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 법률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조치 중 제1단계 조치로서 향후 법률개정작업을 통한 완화가 예정되어 있고, 한미FTA 협정문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행사항이고, 기존 법규(변호사법 제34조 등)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법률시장 개방 초기의 혼란과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내 변호사업계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규제신설의 타당성 및 규제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변호사의 외국법자문사 겸직 제한(신설)

-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겸유하는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려면 변호사업을 휴·폐업해야 함. 즉, 외국법자문사무소(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에 ‘변호사’가 아니라 ‘외국법자문사’로서만 채용가능(국내로펌은 변호사로 채용가능)

-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아세안(ASEAN)과의 FTA 등 타결된 통상협상에서 약속한 국내 법률서비스업의 단계적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 금지 등 통상협상의 합의내용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변호사는 영리기업취업이 제한된다는 같은 취지의 규제(변호사법 제38조)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점과국내 법률서비스의 단계적 개방계획 중 제1단계 조치와 관련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규제신설의 타당성 및 규제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5. 국무조정실

집필자 : 이종협 서기관(Tel. 2100-2442, bird@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7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개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강화건, 내용심사 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1건, 비중요규제 6건)

○심사대상 중요규제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무조정실의 2007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323차 행정사회분과 (2007. 4. 12)	개선권고 1 비중요규제 4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3 * 중요규제 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제343차 행정사회분과 (2007. 9. 4)	비중요규제 1	신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347차 행정사회분과 (2007. 10. 4)	비중요규제 1	내용심사 1
계	-	개선권고 1 비중요규제 6	신설 2 강화 1 내용심사 4 * 중요규제 1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제주도내 경유자동차에 대해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동 자동차에 대하여 제주자치도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만 자동차번호판 부착 및 봉인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거나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을 말소 하도록 규제를 신설함(신설, 중요규제)

· 다만, LPG자동차의 사용이 관련법령에 의해 허용된 자(장애인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예는 제외

*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은 자동차등록사업소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등록자 등이 자동차등록사업소로부터 자동차번호판을 교부 받아 시행 가능

☞ 동 사안은 “제주의 청정자연환경 보전”이라는 행정목적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 및 그에 따른 문제점 방지를 위한 규제신설”을 통해 달성 하려는 것으로

① 동 규제의 목적이 자동차의 연료전환(경유→LPG)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자동차 등록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

- 자동차의 연료전환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등록번호판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행정관청 비치) 및 자동차등록증(차량소유자 비치)에 표기되는 점을 감안시 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규제내용을 “자동차의 사용연료 전환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등록신청시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도록 개선권고

② 특정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사안임을 감안시 악용사례의 방지를 위해 규제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규제내용에 있어 ‘도의 반출·운행금지 위반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것은

-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직권말소를 하더라도 부활(재등록)이 가능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강제 폐차처분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LPG의 연료사용 제한 위반시”의 규제수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규제수단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의 반출을 “LPG자동차의 사용이 관련법령에 의해 허용된 자(장애인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도외 반출·운행을 허용하도록 개선권고

(예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연료를 액화석유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발사업의 착수시한을 현행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강화, 비중요규제)

☞ 피규제자 수가 소수로 한정되고,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외국 의료기관이 도조례로 정한 개설 등에 관한 요건을 미충족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내용심사, 비중요규제)

☞ 요건 미충족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외국 의료인의 범위(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 간호사를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종별업무범위 준수 의무를 부과(내용심사, 비중요규제)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함

☞ 외국의료인에 대한 준법질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입법예고 및 공청회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제주도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허용행위범위(소개, 알선)에 ‘유인행위’를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유인행위 범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내용심사, 비중요규제)

☞ 의료기관에 대한 준법질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의료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유인행위의 범위에 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신설, 비중요규제)

1.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5.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특례적용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료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승인 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첨단의료복합 단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미래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의료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연구기관 등을 선정·입주시켜 중점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 피규제자 수가 입주를 희망하는 70개 의료연구개발기관으로 소수로 한정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규제수준이 유사입법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와 동일한 수준인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법(제256조의2 제2항)에서 위임된 “제주도내 연료전환(경유→LPG) 자동차의 도외 반출 허용기준”을 규정(내용심사, 비중요규제)

- LPG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 자동차매매업 등록자에게 매각 의뢰시
- 30일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법 제2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특례)

- ①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내 경유 자동차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 사안은 상위 근거법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시(‘07.4.12) “제주도내 연료전환 자동차의 도외 반출에 관한 세부 허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되,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없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피규제자의 수가 제주도내 5인승 이하 경유승용차 소유자 6,798명(‘07.5월말 현재)으로 한정되고, 규제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경쟁제한적인 성격이 없는 점,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6. 중앙인사위원회

집필자 : 이종협 서기관(Tel. 2100-2442, bird@opc.go.kr)

가.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중앙인사위원회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는 없음

제1절 규제맵 작성·활용

집필자 : 이경민 사무관(Tel. 2100-2429, lkml@opc.go.kr)

1. 추진배경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되어 있는 규제 전체를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일반 국민, 연구자, 정책 결정 및 집행자 등은 개개의 규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거나 여러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해당 규제의 체계 및 내용을 빠르고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06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복잡한 규제의 주요 규제내용 및 규제간의 상호관계를 한눈에 알기 쉽게 도식화한 규제안내지도, 즉 규제맵의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내용

'06년도에 '공장설립(개별입지)에 관한 규제맵',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규제맵'을 행정연구원과 함께 시범작성한 바 있다.

이에 이어 '07년도에는 내부 토의 및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다수의 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이해하기 복잡한 규제를 선정하여 규제맵의 작성을 추진 하였다.

'07년도에 추진한 규제맵은 자동차 구매·유지관리에 관한 규제맵, 축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규제맵, 관광숙박업 설립 절차에 관한 규제맵, 골프장 건설에 관한 규제맵, 중소기업금융업에 관한 규제맵, 온천 개발·이용에 관한 규제맵,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맵,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제맵, 주유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맵, 해상운송 사업에 관한 규제맵 등 10개이었다.

< 규제맵 주요내용 >

규제명	주요 내용
① 자동차 구매·관리	○ 자동차의 구입에서부터 운행, 폐차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제 정리
② 축산물 생산·유통	○ 축산물의 사육, 도축, 가공, 유통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인증·검사 제도 등을 단계별로 분석·체계화
③ 관광숙박업 설립	○ 관광숙박업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선정, 사업계획승인, 건축 및 등록까지 각 절차에 따른 규제사항을 정리
④ 골프장 건설	○ 골프장 건설 관련 규제를 도시관리계획 수립부터 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록까지의 절차에 따라 정리
⑤ 중소기업 금융업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서민금융업과 관련된 규제를 설립, 운영, 폐업까지의 단계별로 정리
⑥ 온천 개발·이용	○ 온천개발·이용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온천징후조사부터 온천 개발, 온천 운영단계까지 정리
⑦ 학원설립·운영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입지선정, 등록, 운영 등 진행 단계에 따라 정리
⑧ 폐기물 처리	○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 수집·운반·보관, 처리시 규제사항 정리
⑨ 주유소 설립·운영	○ 주유소 관련 규제사항을 사업계획 및 입지선정, 건축 및 사업등록, 사업운영 및 폐지 단계별로 정리
⑩ 해상 운송사업	○ 해상운송사업의 선박등록, 선박검사, 선원, 해상운송사업등록, 운항 시스템 구축, 운항관련 규제 사항을 정리

각 규제맵은 국무조정실 업무담당자와 관련 규제 소관부처 담당자, 사업자단체 관계자가 함께 작업하였다. 관련 규제의 조사, 규제의 분류, 규제간 상호관계 분석, 규제순서도 작성, 도식화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개별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와 함께 규제개혁 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에 공개되었다.

3. 향후 계획

규제맵을 통하여 일반 국민은 보다 쉽게 규제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같은 수요자 즉 일반국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제맵의 아이디어는 법제처의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규제의 내용이 복잡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맵을 추가로 작성하여 일반국민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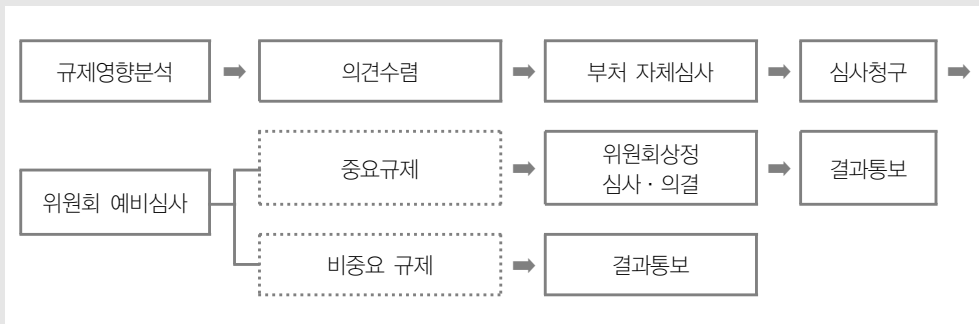
제2절 규제심사체계 개선

1. 규제심사제도 개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이러한 규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각 부처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입법예고기간동안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자체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통해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규개위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비중요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즉시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 또는 개선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처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신설·강화규제 심사절차(행정규제기본법) >



2.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2007년 4월에 개최된 규제개혁위원 세미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와 심도 있는 안전심사를 위해서는 비중있는 안전만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규제심사의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주요 현안 입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법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조속한 제도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입법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심사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3. 규제 심사체계 효율화 방안

(1) 규제심사의 신속성 제고

부처 심사안전 접수이후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중요규제 여부 판단을 위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중요규제 판단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비중있는 규제만 규제개혁 위원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부담을 줄이고 부처가 신속히 규제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요규제 판단기준 >

- ①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 ②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 ③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④ 국제기준에 비취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⑤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2) 비중요 규제의 심사 간소화

그간 비중요 규제 여부는 분과위를 개최하여 예비심사를 통해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규제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처의 규제심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비중요

규제여부를 사무국에서 판단하고 비중요 규제인 경우에는 분과위 서면심사를 통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서면예비심사 결과는 분과위원장에게 보고 후 즉시 부처에 통보하도록 하여 비중요 규제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3) 위원회 규제심사의 전문성 제고

경제·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규제의 내용도 더욱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규제심사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사무국에서는 상임 전문위원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금융, 건설, 환경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조직운영상 필요에 따라 상임 전문위원의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재 전문위원이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노동·정보통신 등 12개 분야의 17명의 규제심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규제심사 및 안전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제3절 행정조사제도 운영

934

1.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가. 추진배경

행정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법규 이행여부 확인, 일반적인 업무감독, 행정처분을 위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각종의 행정조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조사는 법령의 실효성 확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통계자료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개별법에 규정된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은 조사요건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행정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절차나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았다. 또한 유사·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부처가 중복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등 피조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조사가 기업에게 주는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04.12.3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에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조사절차 확립 등 행정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 성격의 「행정조사기본법(가칭)」 제정 방안이 포함되었다.

나. 추진 경과

(1) 행정조사기본법안 마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05.1~4월간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하였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TF」를 구성하여 법률안 초안을 마련·검토 하였다.

법률 제정안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마친 후, '05.8.2~8.22일간 입법예고를 거치고 법제처 심사를 통해 조문체계를 수정하고, 조사요건의 구체화·조문의미 명확화 등 수정작업을 거쳐 총 6장 29조 부칙 3조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하였다. 제정안은 당·정협의('06.3.9)와 차관회의('06.3.30), 국무회의('06.4.4) 심의 절차를 거쳐 '06.4.6 국회에 제출 하였다.

(2) 국회 심의 및 공포

국회에 제출된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은 국회 사정으로 4월, 6월 임시회 기간에는 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06년 정기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법률 제정안인 만큼 '06.11.24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06.11.28일과 '07.2.26일에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신학용)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07.2.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통과되어 법제사법 위원회로 회부되었다.

'07.3.2일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 2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로 회부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였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3.29일과 4.23일 두 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4.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27일 본회의에 상정·의결 되었다. 이로써 행정조사기본법은 '07.5.17 공포되고 '07.8.18부터 발효되게 되었다.

다. 주요 내용(6장 제29조, 부칙 2조로 구성)

- 행정조사의 개념정립(제2조)
 -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
- 법 적용범위 명확화(제3조)

※ 다음 사항은 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국방·징집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정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직무
-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의 감독·검사 및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마련(제4조)

- 행정조사 최소화 및 조사권 남용 금지
-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대상자 선정
- 공동조사 실시 및 중복조사 제한
- 비밀누설 및 조사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법령 등에 근거한 행정조사 실시(제5조)

-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

○ 행정조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사주기(제6조~제7조, 제16조)

- 행정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제출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
-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목적·대상 등이 포함된 개별 조사계획 수립

○ 공동조사 실시 및 중복조사 제한(제14조~제15조)

- “동일 행정기관 내의 서로 다른 부서 또는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사 실시
-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조사를 받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조사할 수 없음

○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권 행사의 제한 등(제9조~제11조, 제17조~제24조)

- 출석요구서 등 서면요구서의 사전발급, 조사의 연기·기피신청 등 조사방법과

절차에 관해 규정

- 사전 통지된 조사사유, 조사대상 및 범위내에서의 조사 허용, 조사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허용,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 자율신고제도의 도입 및 행정조사의 점검·평가 등(제25조~제29조)
 -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하고 이를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 국무조정실장은 각급 행정기관의 조사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등을 확인·점검

2.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 실시

가.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정

행정조사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와 6.5 ~ 6.2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제처 심사를 실시하였다. 시행령 제정과과정에서는 공동조사 실시 대상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으며, 차관회의(8.2)와 국무회의(8.7)를 거쳐 행정조사기본법과 함께 '07.8.18 시행하게 되었다.

나. 시행령 주요 내용

-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제출 대상 행정기관(제2조제1항)
 -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 정함
- 수시조사(제3조)
 -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조사 실시 분야(제9조)

- 건설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른 행정조사, 유해·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른 행정조사, 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행정조사와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합의한 분야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실시

○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제14조)

- 국무조정실장은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제출 대상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준수 여부, 공동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 통지

다. 부처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등에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마련·시달하여 행정조사기본법의 이행을 위한 법령 등 기반을 모두 마련하였다.

3. 향후 운영계획 등

'04년 12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행정조사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방침을 수립한 이후 약 2년반만에 법령 등이 완비되었다. 이로써 국민의 권익보장은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08년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운영하는 첫 해로서 제도 시행 초기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행정조사운영계획의 보완, 담당자 교육, 실태 점검 등을 통해 행정조사기본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제4절 행정부담 감축정책 도입 추진

집필자 : 노혜원 사무관(Tel. 2100-2447, woniroh@opc.go.kr)

1. 추진배경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세계화에 따른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자국의 기업환경여건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혁신과 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

최근 규제개혁의 국제적 경향 중 특기할 것은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¹⁾ 감축정책”으로서, OECD 각국에서 중요한 정치적 어젠다가 되고 있다. 행정부담 감축정책은 기존의 ‘절차간소화’ 등의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규제개혁총괄기관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규제품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범정부적(whole of government)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덜란드를 선두주자로 하여 영국, 독일 등 유럽 20여개 이상의 선진 국가들, 그리고 EU자체적으로도 행정부담을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행정부담을 25% 가량 감축하는 것을 국가 우선 프로젝트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른 바 SCM 네트워크를 결성해 효율적인 행정부담감축을 위한 논의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들 선도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은 통상 GDP의 2~4%가량을 차지한다. 한국도 같은 범위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은 연간 17조~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06년 기준 한국 명목 GDP 848조).

이러한 행정부담 감축의 국제적 동향과 OECD 규제개혁심사시의 권고,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요 하에서 행정부담 측정 및 감축을 ’06.10월부터 준비하였다. 물론 그동안 행정부담 감축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전자정부 구축, 행정

1) 행정부담은 보고, 허가신청, 신고, 조사협조, 서류비치 및 갱신 등 규제가 요구하는 정보의무(information obligation)를 준수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수행해야 하는 행정활동의 비용을 의미한다. 규제의 비용은 직접적 재무비용(financial cost), 준수비용(compliance cost), 장기적 구조비용(structural cost)로 구분되며, 규제준수비용은 다시 실질적 준수비용과 정보의무 준수비용으로 나누는 바, 행정부담은 실질적 준수비용은 제외하고 정보의무 준수비용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부처별로 진행되어 왔으나, 행정부담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계량적 목표설정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감축하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다.

2. 행정부담 측정 및 감축의 필요성

가. 현재까지 행정부담 감축 접근법

이제까지 한국의 행정부담 감축은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전자정부 구축, 기업환경 개선대책, 규제개혁기획단 덩어리규제 정비 등을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전자정부사업은 김대중 정부에서 전자민원(G4C), 기업지원단일창구(G4B) 전자조달 등 11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기반이 조성된 이래, 2003년 8월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부처간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고, 주민등록, 호적정보 등 42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민원 처리시 구비서류를 감축하였으며,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온라인화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또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6년 9월과 2007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한 이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63건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종합대책에는 세법 서식 간소화 등 각종 서류 간소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나. 측정을 통한 새로운 행정부담 감축 프로그램

OECD는 2007년 3월 발표한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KOREA」에서 한국이 그 간 전자정부 등을 통해 행정부담 감축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측정을 통한 행정부담 감축 프로그램 도입을 권고하였다. OECD가 권고한, 2008년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행정부담 감축 정책은 이제까지 이루어지던 행정부담 감축정책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첫 번째로 규제로부터 정보의무를 분류한 뒤 특정시점의 정보의무비용에 대하여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을 이용하여 측정한다는 점이다. 행정부담의 측정은

행정부담이 많은 부처·분야가 어디인지를 수치화 하여 보여준다. 따라서 행정부담 감축정책의 포커스가 객관적 수치에 의해 뒷받침 된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정부의 주관적 판단이나 기업의 선별적 요구에 따른 감축정책과 차이가 있다.

【 Standard Cost Model, SCM 】

대부분 국가의 행정부담 측정시스템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SCM을 기초로 하고 있다. SCM은 행정규제가 기업에 부과한 '정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이다. SCM은 행정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해야 하는 행위를 측정이 가능한 관리단위로 나누고 그 각각의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며, 비용은 샘플 기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구한다.

*단위 규제의 총 준수 비용 (Cost per administrative activity) = 해당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Time) × 담당자의 시간당 인건비, 외부 용역에 의할 경우 시간당 비용 (Price) × 기업 수(population)×이행 빈도 (Quantity)

이 모델은 행정준수비용을 상세한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점 외에, 각 분야의 부담을 일관되게 측정할 수 있고 정부가 부담 감축을 위한 수치적 목표를 정하고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데에 그 유용성이 있다.

2003년 이 모델을 이용하는 유럽 국가들끼리 비공식적 네트워크 (SCM Network)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등을 하고 있다 (현재 유럽국가 중심으로 22개국 가입).
<http://www.administrative-burdens.com>

두 번째로 감축의 목표(25%)를 설정하고, 부처별로 감축 계획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감축에 대한 계량화된 목표 설정은 각 부처에게 정확한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감축을 위한 강력한 유인과 동력을 제공한다. 또한, 행정부담이 큰 분야에 정부의 감축노력을 집중함으로써 공공분야 자원을 절약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매년 각 부처가 감축계획에 따라 행정부담을 감축하고, 총괄부처는 감축의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정책은 계획의 집행에 대한 평가가 '실행', '미실행', '실행중과 같이 정성적으로 나타나서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면 행정부담 감축정책은 매년 감축의 효과와 진척상황을 계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의 기반을 가능하게 한다.

다. 정책 전환의 필요성

규제의 품질제고, 규제순응비용 측면

과거 부처별로 이루어지던 행정부담 감축정책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하려는 감축정책은 규제의 목적과 편익은 그대로 둔 채 규제로 인한 정보의무 비용만을 감축시키는 것이므로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1990년대부터 인식하여 왔으며,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상황 하에서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기존 규제의 50% 축소 등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2003년 이후 참여정부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신설하여 규제개혁추진체계를 보강하였으며, 규제의 합리화, 효율화를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이나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은 단순히 규제의 개수보다는 현재 적용되는 규제의 준수비용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규제의 양적 감축 보다 질적 제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핵심당어리 규제개선, 규제영향분석기법 개선, 규제대안 매뉴얼을 비롯하여 최근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규제맵(Regulatory map) 작성까지 규제 품질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도입·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품질제고의 여지와 필요성이 남아있는바, 행정부담 감축 프로그램의 도입은 규제의 순응비용 감소를 통해 규제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행정간소화의 요구

행정부담 감축은 규제품질 제고, 규제 효율화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나 규제의 품질 제고 방안으로 규제 순응비용(compliance cost), 그 중에서도 정보의무비용인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에 대한 관심은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행정부담으로 인한 비용이 고정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어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상위직 보다는 하위직급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입지규제 완화 등 다른 실질적인 규제개혁 보다 이슈화 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렇다고 해도 행정부담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행정부담 감축정책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5년 11월 실시된 한국개발 조사결과이다(표1). 수요자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된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규제집행과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의제처리 및 서류 간소화’에 대한 개선요구가 30.8%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행정부담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표1> 규제집행관련 개선 시급분야 (05.11, 한국 갤럽 조사)

① 의제처리대상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	30.8%
② 복합민원 허가전담과 설치운영	29.7%
③ 부서합심제 의무화 및 운영 활성화	12.8%
④ 공장설립 등 민원대행기능 활성화	11.9%
⑤ 무응답 등 기타	7.7%

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회 후생 증대 측면

앞서 설명했듯이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표2>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08, 한국

	2008	2007 (재산정)	순위변화	2007 ('06.9월발표)
Ease of Doing Business (종합 평가)	30	26	-4	23
Starting a Business (창업)	110	101	-9	116
Dealing with Licenses (건축관련 인허가)	22	16	-6	28
Employing Workers (고용·해고)	131	130	-1	110
Registering Property (재산권 등록)	68	65	-3	67
Getting Credit (대출)	36	32	-4	21
Protecting Investors (투자자 보호)	64	62	-2	60
Paying Taxes (세금납부)	106	106	0	48
Trading Across Borders (국제교역)	13	30	+17	28
Enforcing Contracts (채권회수)	10	10	0	17
Closing a Business (퇴출)	11	10	-1	11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Index 2008」, <http://www.doingbusiness.org>

세계은행은 2007년 9월 발표한 2008 기업환경지수 (Doing Business 2008)를 통해 한국의 기업환경 수준을 전체 178개국 중 30위로 평가하였다(표2). 건축 관련 인허가, 국제교역, 채권회수, 퇴출 등의 부문은 상당히 우수하나 창업, 고용·해고, 재산권 등록, 투자자 보호, 세금납부 등의 부문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서류작업으로부터 기업들을 해방시켜 줌으로써(cutting red tape)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기업이 핵심적인 본연의 업무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선도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기업에 부과되는 행정부담은 통상 GDP의 2~4% 가량으로 추산된다(표3 참고). 우리나라도 같은 범위(2~4%)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행정부담 규모는 연간 17~3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2006년 기준 한국 명목 GDP 848조). 이를 25% 감축한다고 하면, 연간 약 4.2~8.5조의 행정부담 비용이 감축되는 셈이며, 그 효과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누적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다²⁾.

<표3> 2003년중 EU 주요 회원국의 행정부담 현황

(%, 억달러)

	GDP 비중	행정부담액		GDP 비중	행정부담액
독일	2.5~3.2	670~855	덴마크	1.9~2.4	30~ 38
영국	1.9~2.4	191~243	폴란드	3.4~4.4	78~100
프랑스	2.2~2.9	482~616	그리스	3.4~4.4	83~106
이탈리아	1.9~2.4	485~619	핀란드	1.9~2.4	18~ 23
스페인	2.2~2.9	267~341	아일랜드	1.9~2.4	25~ 32
네덜란드	2.9~3.7	133~170	포르투갈	1.9~2.4	47~ 60
벨기에	2.1~2.7	63~ 81	체코	2.9~3.7	21~ 27
오스트리아	2.4~3.0	88~112	헝가리	3.4~4.4	35~ 44

자료 :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청(CPB),

“Intra-EU differences in regulation-caused administrative burden in companies”, 2005

2) 네덜란드 경제분석청(CPB)의 분석에 의하면 행정부담의 25% 감축은 GDP의 1.5% 증가와 노동생산성의 1.7% 증가를 가져온다고 한다.

개혁의 지속성과 효과성 측면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해 체계화 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개혁의 유지를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 행정부담 ‘측정’은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도 행정부담 감축에 대한 문화의 변화(cultural change)를 가져옴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개혁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게 해 줄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규제개혁이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규제를 폐지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라면, 행정부담 감축은 규제의 편익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규제 비용 중 정보의무비용만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담 감축은 규제개혁의 일환이면서도 사회 전체적으로도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손실이 없어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인 이해관계집단과 관계부처의 협조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3. 행정부담 측정 및 감축 정책을 위한 준비

가. 개 관

앞서 설명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행정부담 감축정책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2006년 10월 수립하였다. 그리고 1년여 간을 행정부담 감축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고, ① 정부·경제단체·연구기관 합동으로 Task Force 구성 (2006.11) ② 기업의 행정부담 기초조사 (2006.10~12) ③ 행정부담 측정 매뉴얼 개발 (2007.4~7) ④ 기업의 행정부담 시범측정 (2007.7~12)을 진행해 왔다.

나. 행정부담 감축 T/F 구성

행정부담 감축은 기업과 관계부처의 협조와 지지가 필수적이고, 아직 행정부담 감축 정책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정부·경제계·연구기관 합동으로 Task Force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행정부담 감축 T/F」는 크게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단체, △행정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다. 2006년 10월 제1차 모임을 가진 이후 2007년 11월 현재까지 총 8차에 걸쳐 모임을 가지면서 행정부담 기초조사, 매뉴얼 개발, 행정부담 시범측정 등 각종 주요 정책결정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다. 기업의 행정부담 기초조사

2006년 10월~12월까지 중소기업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이루어진 동 연구는 국내 기업의 행정부담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이루어 졌다. 6개 업종(건설업, 금속업, 기계산업, 식품업, 화학업, 음식숙박업)에 걸친 19개 기업(대기업 9, 중소기업 10)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이 인식하는 정부의 행정부담(정보의무)에 대하여 기술하고, 연평균 투입인력, 시간, 소요비용을 기재 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대기업의 경우 기업당 연평균 5억6,384만원, 중소기업은 연평균 5,897만원의 행정부담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부가가치 대비로 환산하면 대기업은 0.24%, 중소기업은 1.75%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부담 감축이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선도국가들의 사례와 일치하였다. 분야별로는 조세, 산업, 노동, 환경, 금융감독 등의 행정부담 비용이 행정부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들은 행정부담의 개선을 위하여 유사보고 간 통합, 불필요한 조사의 폐지, 자료의 간소화, 보고횟수 축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동 연구는 기업의 행정부담에 대한 개괄적인 기초조사로서 의미를 가지며, 표본수 부족으로 인한 일반화의 어려움, 방법론적으로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의 엄밀한 적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라. 행정부담 측정 매뉴얼 개발 (2007년 4월~7월)

행정부담과 표준비용모형의 기본개념과 가정, 측정과정 등을 단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행정부담 측정의 기본 매뉴얼로 활용하고자 행정부담 측정 매뉴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동 매뉴얼은 국제표준비용모형(International SCM Manual)과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각국의 측정모형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다.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은 기업이 규제에 따른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격×수량]으로 표준화 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개별규제를 정보의무> 자료요구>행정활동으로 분류한 뒤 각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하고, 여기에 모집단 수와 빈도수를 곱하여 전체 행정부담비용을 계산하게 된다.

연구용역을 통해 측정의 대상과 측정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측정과정은 4개 국면(phase), 15단계(steps)로 되어 있는 기본 모형을 유지하되 일부 단계들을 통합하여 6단계로 설명하면서,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수행할 사항들과 측정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양식 등을 마련하였다. 동 매뉴얼은 향후 측정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표4> 행정부담 측정단계

측정 단계	주요 사항
1.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목록 작성 ▪ 정보의무, 자료요구, 행정활동 분석
2. 수량변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변수 (모집단, 빈도수) 확인 ▪ 대상기업그룹 확정 및 구분
3. 조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방법 (인터뷰, 전문가 평가) 결정 ▪ 인터뷰 계획 수립 및 대상기업 선정
4.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대상 인터뷰 실시 ▪ 전문가 평가 실시 및 사정(assessment)
5. 자료검증 및 행정부담비용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결과 검증 및 표준화 테스트 ▪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 구분
6. 결과정리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작성과 데이터의 DB화

마. 행정부담 시범측정 (2007년 7월~12월)

2007년 7월 부터 행정부담측정 매뉴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2개 법률의 행정부담을 시범측정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행정부담 시범 측정」은 노동부와 소방방재청 소관 대표적 법률의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을 측정함으로써 행정부담 매뉴얼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본격적인 측정에 앞서 측정의 모범사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측정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675억원, 위험물안전관리법은 135억원의 행정부담을 연간 기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두 법률 모두 상위 20%의 정보의무가 전체 행정부담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애로사항으로는 직접 자료제출로 인한 시간과 인력소모가 크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불필요한 정보의무 부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재,

법령과 요구사항의 중복, 용어의 어려움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기업에 대한 정보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구체적인 행정부담 감축방안으로는 정부의 인터넷 시스템 확대와 인터넷 포탈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 밖에 유사 정보의무의 통합, 쉬운 용어로 수정 및 보고 횟수 감축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바.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 국제세미나 개최 (2007년 11월)

2007년 11월 5일 “규제개혁의 새로운 방향-기업에 대한 행정부담 감축”이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행정연구원장, 규제개혁조정관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OECD, 네델란드, 영국의 행정부담 감축 담당자가 OECD 국가들의 행정부담 감축, 영국·네델란드의 행정부담 감축사례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OECD 담당자(Flemming Olsen)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과,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실행중이라고 하면서 행정부담 감축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으로 강한 정치적지지, 표준비용모형에 의한 측정, 계량적 목표설정, 강한 중앙조정기구, 독립적 감시기구, 예산주기와의 연계를 지적하였다. 행정부담 감축 수단으로는 정보의무의 제거, 순응을 쉽게 하기 위한 규제변경, 전산화를 이용한 보고부담의 경감 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관료들의 관성과 기득권의 이해, 이해관계자 포함,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행정부담 감축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최근에는 시민과 행정내부규제에 대해서도 행정부담을 감축하려는 것이 대외적인 동향임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 감축프로그램은 비용이 높고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행정 내부의 문화적 전환을 통해 보다 폭 넓은 규제개혁을 지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어서 규제개혁 2심의회는 한국의 행정부담 감축정책 도입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패널 토론시간에는 조세분야가 행정부담 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공무원의 행태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 정치적 지지 확보의 중요성, 기업들의 체감도 제고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네델란드의 Jeroen Nijland 재무부 국장이 네델란드 행정부담 감축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네델란드의 행정부담은 2002.12.31일 기준 GDP의 3.6%인 163억 유로로 측정되었으며, 이중 25%인 41억 유로를 2007년까지 감축하기로 하고 130여개의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네델란드의 성공요인은 표준비용모형이라는 방법론과 계량적 감축목표 설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조정기구 등 인프라의 세 가지라고 발표하였다.

영국 규제개혁 담당과장(Karen Hill)은 영국은 '05년 여름부터 규제의 수를 계산하고 행정부담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06년 12월 각 부처의 간소화 계획을 공표하였다고 하면서 총 행정비용은 311억 파운드이고, 여기서 규제가 없더라도 기업이 수행할 활동(Business as Usual Cost)을 제외한 행정부담은 198억 파운드로 GDP의 1.6% 수준임을 소개하였다. 영국은 표준비용모형(SCM)을 이용한 측정과 계량적 목표설정, 총괄조정기구, 독립적 자문위원회 등 네델란드 모형의 기본요소는 동일하게 채택하였으나 규제가 없더라도 기업이 수행할 활동들은 총 행정비용과 감축계획에서 제외하는 등 자국에 맞게 모형을 일부 개선하였다. 영국 담당자는 사전적 준비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명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초기단계부터 각 부처 고위층의 개입, 정치적지지 및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지지가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4. 행정부담 측정 및 도입 방안

가. 측정 대상 및 범위

최근 OECD의 일부 국가들은 행정부담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델란드는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 외에 정부 내부와 시민에 대한 행정부담까지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 정보의무 비용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체 순응비용을 측정·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 감축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후발 주자인 우리의 경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행정부담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고 감축을 추진한 뒤, 그 성과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특히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조세 분야이다. 조세

분야는 그 전문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기업의 행정부담 기초조사」 결과에서 기업들이 가장 행정부담이 많다고 응답한 분야로 나타났으며,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행정부담이 가장 많은 분야 중 하나이다. 2006년 9월 기업환경개선대책으로 세법상 규정된 각종 서식의 간소화 추진이 포함되어 「서식간소화 T/F」를 구성하는 등 간소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감축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부담 측정 및 감축 대상에 조세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합당하다 할 것이나 동 분야가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부담 감축정책의 취지가 규제의 목적, 편익은 훼손하지 않고 정보의무 비용만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행정부담 감축대상에 현재 규제심사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다면 적절하게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측정 및 감축대상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로 인하여 기업에 부과되는 행정부담으로 하며, 현행 등록규제 중 약 40%인 2,008개 규제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로써 행정부담을 부과하는 대부분의 규제, 등록규제의 약 40%를 재점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도입방식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방안으로 모든 규제의 정보의무 비용을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전면적 측정 방안과, 행정부담이 많은 분야들을 대상으로 동 분야에 대해서만 ‘선별적·단계적으로 행정부담 측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전문적 도입방안은 효과적이고 강력한 행정부담 감축, 범부처적인 문화적 전환을 이루어 내는데 적절하나, 행정부담 측정에 많은 재원이 배분(resource allocation)될 수 있고, 선별적 단계적 도입방안은 실제 행정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몇 개 분야에 초점을 두므로써 측정의 비용과 조차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나 감축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의 경우 인력과 예산소요,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2단계로 나누어 측정, 감축을 추진하되, 측정은 2009년 감축은 2012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 감축방안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존하는 규제의 행정부담에 대해 측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기준측정(baseline measurement)³⁾이라고 한다. 기준측정은 감축의 목표설정과 감축의 효과 측정의 기준이 되며, 3~5년 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 진다. 감축목표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부처별로 설정되며, 통상 향후 4~5년간 총 행정부담의 25%의 감축이 달성 하기에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선도국가들의 경험상 나타났다. 각 부처는 할당된 감축 목표에 따라 부처 자체적으로 간소화 계획(Simplification Plan)을 수립하게 되며, 행정 부담 총괄부처에서 각 부처의 간소화 계획을 심사하여 최종 간소화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간소화 계획 수립에 있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정보통신기반(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서류를 신청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자를 위한 웹 포털을 마련하는 방안
- ② 규제지침의 용어나 서식을 쉽게 하여 피 규제자의 규제 숙지 및 서류작성비용을 감축하는 방안
- ③ 공공기관간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를 통해 서류제출횟수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 ④ 위험분석 등을 통해 정보제공 횟수나 정보제공 대상(실적이 좋은 기업이나 영세 기업의 정보의무 제공 면제 등)을 감축하는 방안

간소화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각 부처는 간소화 계획을 집행하며, 총괄 부처는 각 부처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각 부처의 실적을 매년 심사하여 감축의 효과를 체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규제의 행정부담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에서 규제비용의 일환으로 정보의무비용을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담 기준측정의 변동상황을 체크하게 할 계획이다.

라. 행정부담 감축 추진 조직

행정부담 감축은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총괄

3) 이를 행정부담의 사후적 측정(ex-post measurement)라고도 하며,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규제의 규제영향평가 과정에서 해당 규제가 미치는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것을 행정부담의 사전적 측정(ex-ante measurement)라고 한다.

하는 조직이 필요하며, 그 중요성은 행정부담 감축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크다. OECD 국가들의 경우 행정부담 추진조직은 각국의 정치적 또는 행정체계에 따라 ①규제개혁기관 추진형(Regulatory Reform Agencies) ②행정간소화 전담기관 추진형(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agencies) ③ 외부 위원회 형 (External Committees) ④ 분화 특화형 (Single purpose entities)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사례는 다음 표와 같다.

<표5> 행정부담 감축 추진기관 유형

유 형	설 명	사 례
규제개혁기관 추진형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규제영향 평가 등을 관장하는 규제개혁 추진기관에서 담당	○영국 규제개선처(Better Regulation Executive), ○미국 예산국 (OMB) 산하에 규제개혁실 (Office of Information & Regulatory Affairs) ○호주 생산성 위원회 (Productivity Commission) 산하에 규제개혁실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행정간소화 전담기관 추진형	정부의 행정간소화 업무를 전담 하기 위한 별도기구 설치	○네델란드 재무부 산하 IPAL ○벨기에 독립기구로 행정간소화청 (Agency for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외부위원회형	영구 또는 임시 자문 심사위원회	○영국 규제개선위원회 (Better Regulation Commission) ○네델란드 행정부담 자문위 (ACTAL) ○프랑스 행정간소화 추진 위원회 (Conseil d'orientation de la simplification administrative) ○캐나다 행정부담 감축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Paperwork Burden Reduction)
분화특화형	행정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 과제 또는 중소기업 등 대상 분야를 특화한 추진기구 설치	○미국의 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호주의 산업관광자원부 소속 소기업지원실 (Office of Small Business) 등의 주요업무의 하나로 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 및 조정역할 수행

자료 : OECD, 「Cutting Red Tape National Strategies for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2006

추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국의 행정기관 체계, 행정부담 감축정책의 추진 범위 및 방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현재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의 총괄기구로서 규제영향평가,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규제개혁조정관실이 행정부담에 대한 총괄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독립적 자문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시 측정범위의 확대에 따라 적절히 조직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 론 : 행정부담 감축의 성공요인

행정부담 감축정책은 행정부담의 범주를 규제의 전체 순응 비용중 일부, 즉 기업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한 행정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규제의 비용·편익 중 비용에만 초점을 두며, 규제의 본질적인 완화나 폐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하였듯이 표준비용모형에 의한 행정부담 측정과 계량적 목표설정에 의한 감축은 지속적 개혁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의 품질제고와 기업환경개선을 가능하게 하며, 전 정부적인 추진과정에서 행정문화의 전환을 통해 개혁의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에서 행정부담 감축정책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영국 등 선도국가들의 경험과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념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정치권 및 기업, 각 부처의 지지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부담 측정·감축에서 전 부처와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강력한 지지 확보가 필수적 선결과제이다. 이는 한국의 과거 규제개혁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며, 정치권 지지 외에 개혁의 주체인 각 부처와 수요자인 기업의 지지를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

두 번째로 행정부담 감축정책은 규제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접근법이므로 전반적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규제개혁추진체계를 갖춘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체가 되어 문화적 전환을 통해 행정부담 감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핵심 규제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선도국가들의 경험상 상위 10~20%의 정보제공의무가 전체 행정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행정부담이 많은 조세, 노동, 환경 등 몇 가지 핵심 분야 규제의 측정과 감축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적 준비계획과 명확한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행정부담의 측정과 감축과정이 각 단계별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고 여러 추진주체가 얽혀 있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추진일정과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현실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5절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1. 점검 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규제개선 점검·평가)규정에 따라 2007년도에 상·하반기 2회(2007.6.25~7.6, 11.1~11.14)에 걸쳐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 등록규제 표준모델 보급에 따른 자체규제의 정비,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주요 인·허가 제도의 운영, 법령 미근거 규제의 운용, 불합리한 규제집행 관행 등을 중점으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와 그 소속 기초지자체 1개씩을 선정, 점검하였다.

2. 점검 및 평가 결과

(1) 연도별 지적사항 추세

'07년도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그 소속 기초지자체 1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8개반 53명이 점검한 결과, 평균 지적건수는 상반기에 2.9건, 하반기에 2.6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지자체 규제개혁 시책의 본격적인 추진과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 상반기(2007.6.25~7.6) : 서울(종로구), 인천(남동구), 대전(서구), 대구(동구), 경기(부천시), 강원(양양시), 충북(충주시), 전북(전주시)
- 하반기(2007.11.1~11.14) : 부산(수영구), 광주(서구), 울산(동구), 충남(천안시), 전남(영암군), 경북(구미시), 경남(마산시), 제주도

< 지자체 점검결과 평균 지적건수 >

연도	'00년	'01년	'03년	'05년	'06년	'07년(상)	'07년(하)
평균 지적건수 (점검인원)	5.2건 (25명)	4.7건 (35명)	3.8건 (15명)	4.5건 (16명)	3.6건 (46명)	2.9건 (28명)	2.6건 (25명)

(2) 규제개혁 추진의지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광역지자체 담당과장 회의 개최, 지자체 표준규제모델 보급, 지자체 규제개혁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 결과, 지자체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지자체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증대 되었고 자체적인 규제 정비 및 권역별 규제개혁 교육, 규제개선과제 발굴 정비 등을 통하여 지자체의 규제개혁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일선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직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업무 비중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지자체의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담 조직 및 인력의 확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주요 지적사항 검토

주요 지적사항은 예년과 비슷하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등록 누락, 폐지규제의 관행적 집행 및 법령 미근거 규제의 운용, 자치법규의 정비 지연 등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사례는 규제판단 여부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규제 업무에 대한 실무지식 부족, 규제법령 제·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 미흡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	자체규제심사 및 등록누락	법령미근거 규제운용	후속조치 지 연	불명확·불합리 규정	기 타	합 계
'07 상반기	22	6	11	5	3	47
'07 하반기	9	14	8	8	2	41
계	31	20	19	13	5	88

3. 향후 후속조치 계획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규제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규제개혁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정부합동평가를 통하여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의 적극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지자체 등록규제 표준모델개발 보급을 통한 규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6절 규제개혁 교육

집필자 : 이종협 서기관(T.2100-2442, bird@opc.go.kr)

1. 개 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국가경쟁력의 확보 차원에서 규제의 품질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고,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은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07년도에는 교육대상을 규제의 입안자 및 집행자에 초점을 두고 교육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였고, 교육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과 실무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으며, 규제개혁워크샵, 규제개혁전문과정 운영, 공무원교육원 교육과목 추가, 지자체의 권역별 합동교육 시범실시 등 총 76회에 걸쳐 5,563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2. 교육방식 다양화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 내 규제개혁과목 개설의 확대를 추진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등 12개 교육원에서 규제개혁과목을 총 37회 운영하였고, 기관별 규제개혁워크샵을 활성화하여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14회 실시하였으며, 규제개혁전문과정을 3회 운영하고, 규제개혁이행실태 점검시 교육을 병행하는 등 교육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규제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들에게도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실무활용도 제고

교육내용 및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앙부처의 경우 규제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내용을 해당 부처의 규제현황 및 특성 분석, 그 동안 규제심사에서 지적된 사례의 유형화 및 지적유형별 개선을 위한 착안사항, 규제개혁 우수사례, 규제의 품질 제고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동영상 자료를 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실무활용도를 크게 제고하였다.

지자체 규제개혁담당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한 권역별 합동교육방식은 시·도의 생활권역별로 권역 내의 일선 시·군·구 및 사업소를 포함하는 모든 규제 입안자뿐만 아니라 규제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교육 형태로 실시됨에 따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07년 10월부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실무활용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

4. 규제개혁 워크숍의 내실화 추구

(1) 중앙·지방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6.28~29)

6.28(목)~29(금)까지 2일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8명을 대상으로 1박2일의 일정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장소: 유성 리베라호텔)

지자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민원처리기간 50% 감축사례 등) 발표, 선진국의 규제 개혁 사례 소개 등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규제영향분석의 방법과 작성 사례, 행정규제 대안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특강을 통해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규제개혁 합동워크숍 개최(11.15~16)

11.15(목)~16(금)까지 2일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 및 경제단체, 규제개혁조정관실 및 규제개혁기획단 직원 등 120명을 대상으로 1박2일의 일정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장소: 무주리조트 티볼호텔)

규제개혁의 범정부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범 정부적 합동워크숍을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의 규제영향분석교육과 합동으로 개최하여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분임토의를 통해 규제의 품질제고방안을 모색하고, 규제영향 분석의 품질제고방안에 대한 특강,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제도 소개 등을 통해 실무역량의 강화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적 안목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7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집필자 : 노혜일 사무관(Tel. 2100-2447, woniroh@opc.go.kr)

서나운 사무관(Tel 2100-2446, nayoon@opc.go.kr)

1. 개 관

국제협력은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정책·수단에 대한 추진성과와 현황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대외적 신인도를 제고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규제 개혁 정책 사례와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국내에 적용방안을 모색함에 그 의의가 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중 OECD 규제개혁회의에 3회, APEC 경제 위원회에 2회 참석하여 행정부담, 위험분석, 정부내부규제 등 국제동향을 파악·전파 하였다. 특히, 회의에서 OECD 규제개혁심사 사례 발표(5월 OECD회의)와 APEC-OECD 체크리스트 적용결과 발표(6월 APEC 경제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 사례 및 경험에 대하여 타국에 적극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2004년부터 시작된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이 완료되어 「OECD 규제개혁보고서」(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KOREA)가 발간되었으며, 3.19일 OECD Odile Sallard 공공관리국장 등이 내한하여 언론사, 학계, 전문가, 공무원등이 모인 가운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모니터링을 통해 2000년 규제심사 이후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규제개혁의 정책방향 설정에 참고하였다.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의 협의채널도 확대되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외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까지 협의채널을 확대하여 각각 실무간담회를 1회씩 개최 하였으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는 고위급 간담회도 1회 개최하였다. 또한, 상시적으로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접수하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면제, 부산경제자유구역 입주대상 확대 건의 등을 수용하였다.

개발도상국 등과의 대외협력도 강화되었다. 베트남 총리실 행정개혁추진단이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 시스템과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행정부담 국제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네덜란드와 OECD 사무국 담당자에게도 우리나라 규제개혁 제도와 주요성과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2.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OECD 및 APEC 국제회의 참석

가. OECD 규제개혁 작업반 (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 and Management, '07.5.3~4, 프랑스 파리)

2007. 5.3~4 OECD 규제개혁작업반 회의와 아랍국가들과의 규제개혁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개혁작업반 회의에서는 규제품질지수, 위험과 규제, 이태리 규제품질 보고서, Red Tape Scoreboard 프로젝트 및 네덜란드 행정간소화 프로그램, 행정내부규제, 규제영향분석, 민관협력 등 기타 향후 작업계획이 논의되었다. (길흥근 규제개혁2심외관(수석대표), 장영현 국제협력과장, 서나운 사무관 참석).

(1) 이태리 규제심사(Multi-level Regulatory Review of Italy)

이태리의 경우 지방자치 확대·유럽통합 등으로 인한 다층적 규제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간 능력공유, 규제정책, 조정체계 등에 대한 Veneto, Campania, Calabria 지역의 정책 및 규제수단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태리는 규제개혁 및 행정간소화 위원회의 출범, 2012년까지의 행정부담 간소화·전자정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액션플랜을 비롯한 규제정책 추진상황을 설명하였으며, OECD는 규제정책의 역할 및 책임성의 정립, 다층적 수준의 규제품질 역량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다층적 수준의 규제영향분석 활용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2) 규제품질지수(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Quality)

OECD 사무국은 지난 '05~'06년 동안 설문에 대한 회원국의 답변을 기초로 작성된 규제정책, 규제제도 등 회원국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종합 분석 및 지표별 가중치 적용 결과를 공개하였다. 사무국은 규제정책·규제제도·규제과정·규제품질관리 도구 등 4개 분야의 총 20개 주제별로 각 질문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공개하여

회원국의 규제품질관리수준을 비교하는 한편, '98년과 '05년 조사결과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규제제도·규제영향분석·의견수렴 등의 면에서 회원국 모두가 상당한 진전을 보였음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규제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이태리·영국 등은 각국의 규제시스템 수준 자가진단,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규제지수의 유용성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지수의 업데이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금번 작업결과를 기초로 세계은행 거버넌스지수·기업환경지수 등과의 연계분석 등을 실시하기로 하고, 각국이 지적한 지수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08년 봄, 지수의 업데이트를 위한 질문서를 작성키로 하였다.

(3) Red Tape Scoreboard (RTS) 프로젝트

RTS는 '05.11~'07.3월간 11개 OECD 국가의 화물운송분야중 17개 특정분야 지수에 대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행정부담 감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금번 회의에서 그간의 작업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①부처간 자료 공유 및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②추가적인 자료요구의 최소화 ③면허 갱신 횟수의 감축 ④단일면허 시스템의 구축 ⑤불순응에 대한 관심 등이 행정간소화 방안에 참고가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이 작업의 유용성 및 각국의 적용가능성을 강조하였다.

(4) 네덜란드 행정간소화 프로그램

네덜란드는 '03~'07년간 기업과 시민들에 대한 행정부담을 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간소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OECD와 세계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왔는데, 금번 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네덜란드는 규칙과 규제의 간소화·행정절차의 단순화·ICT의 사용·정보와 서비스의 개선 등의 수단을 통하여 약 2천여개의 간소화 조치들을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약 39억 유로의 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네덜란드 프로그램은 “기업”과 “행정부담”에 초점을 두어 범위가 협소한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목표설정으로 프로그램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규제의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인적·경제적·정치적 자원을 규제의 품질중 작은 부분에만 집중시켰다는 점, 규제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의 비용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한국도 최근 행정부담 감축노력을 체계화하고 부담감축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코자 행정부담 측정프로그램 도입 예정이라고 밝히고, 네덜란드에 대하여 25%라는 감축목표의 설정 근거, 예산상의 인센티브 등 예산주기와의 연계여부, 행정부담감축의 일반적인 가이드 제공계획여부, 기업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는 국내외적 행정부담 감축의 비전, 부처의 감축 제안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예산상 인센티브는 없으며, 기업의 체감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은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이 정책추진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 소요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부담감축정책을 위한 가이드 제공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5) 위험과 규제

규제는 환경, 안전 등의 위험을 파악하여 이를 줄이는 수단으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위험분석 및 위험관리 도구의 활용이 필요한 바, '07~'08년 「위험과 규제」 작업을 통하여 관련용어 정의, 회원국의 위험과 규제에 대한 접근방법 현황 파악, 사례연구, 위험을 규제에 통합시키는 정책·수단·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회원국의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서 초안 및 용어사전을 회람하였는바, 질의서는 RIA에 위험분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 전체 현황에 관한 8개 질문, 최근 개혁과 모범사례에 관한 6개 질문 등 총 14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몇 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질문서를 완성하여 '08년 상반기에 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6) 아랍국가의 규제개혁 : OECD 규제개혁 심사 시사점 발표

한국 수석대표는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Country Review)의 경험을 아랍국가 및 회원국과 공유하고자, OECD 규제개혁 심사 및 모니터링의 시사점과 '00년 규제개혁 심사 이후 이루어진 변화에 초점을 두어 한국 규제개혁 심사의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참가 회원국 및 아랍국가 대표들은 한국이 짧은 기간에 인상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이뤄냈다는 반응과 함께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나. OECD 규제개혁 작업반 (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 and Management, '07.9.24~25, 프랑스 파리)

2007. 9.24~25 개최된 OECD 규제개혁작업반 회의는 Bureau Member(의장단) 선출, 정책간담회(policy roundtable), 규제영향분석, 정부내부규제, 규제지수, 위험과 규제

등을 주제로 논의를 하였다(길흥근 규제개혁2심의관(수석대표), 노혜원 사무관 참석).

(1) 정책 간담회 (Policy Roundtable)

지난 1년간의 규제개혁정책의 성과 등에 대하여 회원국간 의견을 교환하는 정책간담회가 있었다. 행정부담과 관련하여 프랑스, 덴마크 등 많은 나라들이 축정을 완료하고 25%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고 하면서 기업의 체감도를 제고하는 문제, 범위를 기업에서 시민과 정부로, 정보의무비용에서 전체 순응비용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네덜란드는 행정부담 감축과 관련, ①행정부담의 범위를 전체 순응비용으로 확대하고 ②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기업들과의 협의정책을 변화시켰으며 ③ 개혁의 정치경제적 동인을 얻고자 Actal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조직을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최근 이루어진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호주는 기업의 순응비용 전체에 대하여 계량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독일은 정부와 시민에 대한 행정부담 축정, 현존하는 규제뿐만 아니라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행정부담 축정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개혁에 대하여 기업들을 설득하고 기업들의 지지와 순응을 얻어내는 것의 어려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호주는 좋은 협의를 위한 원칙의 설정, 기업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웹사이트 구축 등 자국의 협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드후스 OECD 사무차장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예외규정들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예외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교육강화·지자체 규제 표준화 작업·지방정부 규제등록 등 지방정부규제 개혁, 행정조사기본법, 규제맵, OECD 모니터링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마련과 행정부담 시범축정을 최근 성과로 소개하고, 규제개혁 성과·체감도 등에 대한 최근의 서베이 결과와 유용성을 설명하였으며, 지방정부·기업체·외국 경제단체와의 협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개혁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자문기구에 대한 사무국의 향후 연구 작업에 대하여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2) 규제영향분석 : 방법론적 지침과 틀

사무국(Rex Deighton-Smith)에서는 규제영향분석(RIA)에 대한 주요 8개국(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의 지침을 분석한 결과, 지침 목적의 불분명함, 지나친 단순성과 형식적인 위험분석, 지침간 일관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방법론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이를 「RIA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회원국은 RIA 방법론 분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영과 관심을 표명하며, 순응 확보 측면에서 방법론적 精緻性의 중요함, RIA 지침보다는 실제 실행의 중요성, 각 국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3) 정부내부규제 (Regulation Inside Government)

사무국(Flemming Olsen)은 정부내부규제에 대한 개념적 틀, 개념적 틀에 의한 향후 사례분석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내부규제는 정부자체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government itself)를 의미하며, 규제자가 피규제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 통제권을 가지면서 자원의 투입, 과정 등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피규제자의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행동변화를 위해 설득이나 지시를 하는 것이다. 정부의 통제는 ①감시(oversight) ②경쟁(competition) ③임의성 (contrived randomness) ④ 상호관계(Mutuality)라는 4가지 기본적인 메카니즘이 있으며 정부내부규제는 규제의 목적, 규제자와 피규제자에 따라 ①정부 보조금 ② 서비스제공 ③유틸리티 ④인사와 조달 ⑤회계기준과 정부지출이라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안건에 대하여 정부내부규제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내부규제의 유형별 통제수단 보다는 정부내부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한 방법론적 틀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한국의 경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2005년 정부내부규제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했고, 동 권고안은 효율화와 전자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바, 한국의 사례가 정부내부규제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도 측정이나 영향분석 등과 같은 방법론의 적용을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정부내부규제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도 연구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규제품질지수(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Quality)

사무국(Stephane Jacobzone 외)은 「규제관리시스템 지수」, 「OECD 국가들의 규제관리시스템 : 최근 성과와 과제에 대한 규제지수」2가지 최종 보고서를 공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Working paper, Policy Brief를 발간예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2008년 작업으로 2005년 이후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행정부담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자료수집이 이루어 질 것임을 알렸다. 아울러 계량적 분석모델을 이용하여 규제지수와 경제성과간 상관분석, 동 지수와 PMR지수, WB의 Doing Business지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08.5월 회의시 발표예정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EC, 영국, 멕시코, 일본, 미국, 벨기에 등이 동 지수 데이터의 대표성과 데이터의 품질 문제, 각국 정부의 자기분석에 의존함으로써 객관성에 대한 의문, 국제적 비교의 가능성, 일관성, 가중치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08년 작업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5) 위험과 규제 (Risk and Regulation)

사무국(Greg Bounds)은 위험과 규제에 대하여 지난 5월 공통된 용어정립을 완료하고,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는 중임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2009년 위험을 규제정책에 통합하는 지침이 발간될 것이라고 연구의 진행단계를 설명하였다. 사무국은 이번 회의의 주제로서 현재까지 회원국이 응답한 설문지의 결과와 향후 추진될 사례분석의 4가지 옵션에 대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구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한 4가지 옵션은 ①회원국들 간 공통된 영역에서 위험관리 심사, ②위험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 ③규제정책의 발전에 있어 위험 관리 심사, ④개별적 위험관련 부처의 위험과 관련된 활동의 심사였다. 미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 EC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위험분석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옵션3을 채택할 것을 지지하였고, 덴마크, 네덜란드의 경우 옵션3을 채택하되 옵션4를 옵션3과 함께 통합해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분석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규제의 정의를 보다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덴마크는 위험분석이 무엇보다 행정집행, 조사, 순응, 행정간소화의 이슈와 연계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위험분석이 규제정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선도국가들의 관행, 수단을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선도국에서 규제와 위험을 통합할 때 기존의 위험분석 거버넌스를 규제 거버넌스와 어떻게 조화해 나갔는지를 분석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 위험분석의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우선 위험분석이 시급한 분야를 선정, 효과적인 위험분석과 관리방안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적인 접근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다. OECD 규제정책그룹회의 (Group on Regulatory Policy, '07.12.3~4, 파리)

2007.12.3~4 개최된 OECD 규제정책그룹회의(GRP)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성공적 규제개혁의 실행, 규제영향분석, 브라질·중국 규제심사라는 4가지 주제를 논의하였다. (장영현 국제협력과장(수석대표), 노혜원 사무관 참석)

(1)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성공적 규제개혁의 실행

개혁의 동력과 역량 확보 방안, 시민과 기업에게 다가서는 방안, 개혁의 순서와 범위라는 세 가지 세부주제 하에 각국 개혁 사례와 교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였다. 개혁의 여건과 정치적 지지 확보의 중요성, 개혁의 낙오자에 대한 보상, 개혁에 저항하는 타 부처로부터 신뢰확보 방안, 개혁의 편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정진승 위원이 “시민과 기업에게 다가서는 방안” 세션의 패널로 참석하여 부처의 규제안 입안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과정에서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참여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소개하고, 투명성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적, 정책적 노력들을 소개 (민관합동기관, 행정부담 감축, 전자정부등)하였다.

(2) 규제영향분석의 정책적 정합성 강화

무역·경쟁 등의 규제에 대한 영향평가를 어떻게 정합성 있게 규제영향평가에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최근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진전을 보인 국가들(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브라질, 영국, 한국)의 사례를 두고 논의하였다. 산업연구원의 김도훈 박사는 “규제영향분석의 정책적 정합성 강화” 세션의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이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무역과 경쟁정책을 통합시키고 있는 8가지 방안으로 규제영향분석, 공정위·외교부와 부처간 협의, 외국경제단체와의 협의, FTA 체결, 씽크탱크 등을 소개하였으며, 한국 수석대표는 경쟁툃킷 적용시 시간지연과 전문적 역량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하였다.

(3) 브라질 및 중국 규제심사

브라질 규제심사는 최종 심사로 에너지·통신·전력 등 각 규제기관에 대한 최종심사가 이루어졌고, OECD는 규제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규제기관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라는 정책권고를 제시하였다.

중국 규제심사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OECD 각국 사례를 분석하고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며 하였다. 2008.4월 작업반에서 경쟁과 무역에 대한 규제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3월에 세미나 개최), 2008. 9월 최종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4) 향후 작업

2008년 GRP에서는 △중국과 이태리 규제심사, △개혁의 정치경제적 측면 : 금번 논의를 바탕으로 심층 논의 △ 위험과 규제의 통합적 접근 (소비자 신뢰, 행정부담, 무역 등) 등이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2009-10 향후 작업의 옵션으로 고려중인 주제들로는 △ 성과지수 등 전반적 규제개혁 정책의 효과성 측정 △ 기후변화와 지속적 개발에 대한 효과적 규제적 접근 △ 경쟁·품질 규제·위험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 증진 수단 △ 규제·경쟁·무역정책을 지지하는 통합기구 설립의 정치적 도전과제 등이 제시되었다.

라. APEC 경제위원회 (2007.1.21~22, 호주 캔버라/ 6.28~29, 호주 케언즈)

2007.1.21~22, 6.28~29 호주에서 개최된 APEC 경제위원회 규제개혁라운드테이블에서는 APEC-OECD 규제개혁 통합체크리스트 적용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 구조개혁 이행 선언(LAISR) 프로그램의 향후 업무추진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6월 규제개혁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APEC-OECD 통합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결과를 발표하였다. (장영현 국제협력과장(수석대표), 서나운 사무관 참석)

(1) 한국의 규제개혁 통합 체크리스트 적용 결과

한국 수석대표는 통합 체크리스트의 '규제개혁 통합기준(Part A)'과 '규제정책(Part B)'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기획단, 규제신고센터 등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을 소개하고, 한국의 규제개혁 전략이 수요자 중심·덩어리 규제 중심·민관협력·질적 접근방식으로 전환하였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규제영향 분석을 통한 규제심사 과정을 소개하고 규제영향분석을 정책 입안과정의 일부로 통합시키기 위한 영향분석서 공개 의무화,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규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등록시스템, 최근 추진중인 규제맵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체크리스트 적용을 통하여 한국의 규제개혁은 정상궤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인적·기술적 자원의 보완, 무역 및 시장개방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공공협업과정의 정교화 등이 향후 보완해야 할 점으로 나타났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 수석대표는 체크리스트가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이슈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규제개혁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며, 특히 회원국간의 모범사례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강조하였다. 한편, 향후 체크리스트의 발전을 위하여, ①몇 가지 질문의 내용 중복 ②체크리스트의 활용도와 질문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 항목별로 모범사례의 필요성 ③규제개혁 정책의 발전단계(초기-중기-성숙기)별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를 제시하여 회원국들의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J.Konvitz OECD 과장은 한국이 체크리스트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안한 사항을 향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 호주의 규제개혁 통합체크리스트 적용 결과

HK Holdaway 호주대표는 최근 호주의 규제입안 과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호주의 체크리스트 적용 결과를 발표하였다. 호주대표는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주정부-지방 정부의 수준에서 모두 규제를 생산할 수 있어 규제의 중복, 불일치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제입안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호주 연방정부는 문제분석 단계에서 규제 및 비규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옵션들을 고려한 후, 규제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순응비용, 경쟁에 미치는 영향, 기타 환경 및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OBPR이 함께 적절한 규제분석 수준을 결정하며, 모든 신설규제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재검토 된다. 호주는 건전한 규제제도 및 규제과정 하에서 규제품질, 경쟁, 시장개방의 주요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특히 세 분야의 통합 및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각 부처가 형식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정책 결정의 과정안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교육 및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3) 구조개혁 이행선언(LAISR) 중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향후 추진계획

APEC 회원국내 좋은 규제의 원칙 적용 및 이행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집행 논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08년에는 좋은 규제입안과정의 원칙, 공공협의 메커니즘, 경쟁평가, 규제심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09년에는 비용편익 분석 및 위험분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후, '10년 APEC 회원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3.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완료 및 발표회 개최 ('07.3월)

가. 연혁 및 개관

OECD는 규제정책·제도·수단에 대해 OECD 규제품질 및 성과를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동 원칙에 의거 회원국에 대한 국별 규제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OECD의 규제개혁 심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0년도 이후 규제개혁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본,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규제개혁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4년 6.15일 OECD 규제개혁회의에서 한국의 모니터링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같은해 11.1일 APEC-OECD 태국회의에서 규제개혁조정관 명의의 모니터링 제안서를 OECD측에 전달한 이래, 2006년 중 OECD측 실시단 방한, 부문별 규제개혁작업반 회의, 규제정책 특별회의를 거쳐 2006.12월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2007.3월 OECD의 Odile Sallard 공공관리지역개발국장과 Josef Konvitz 규제정책과장 등이 내한하여 그 최종결과 보고서인 「OECD 규제개혁보고서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KOREA)」를 발표하였다.

나.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발표와 후속조치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는 2007. 3.19일 낮 12시부터 2시간 가량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OECD인사, 정부관계자, 관련 전문가, 내외신 기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OECD Josef Konvitz 규제정책과장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고, 남관표 규제개혁조정관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내외신 기자 및 참석자간 질의응답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1)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보고서 주요내용

OECD는 「OECD 규제개혁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최근 몇 년간 강력한 정치적 지지 하에 규제정책과 제도 개혁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개혁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과 제도, 수단을 완비시킨 것에 대하여 놀라운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진전사항으로 양적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질적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 및 절차가 간소화된 점과 공정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점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통신분야 규제완화로 통신서비스가 개선되고 가격이 인하된 점과 관세·조달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하였다.

다만, OECD는 한국의 규제개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선진국과 성장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재량 축소 등을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비우호적 정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세계화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등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OECD의 분야별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OECD 모니터링 권고사항 】

〈규제개혁〉

- ①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할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하는 명확한 정책을 채택
- ②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기획단 등 규제개혁 관련 기구간 연계 강화
- ③ 국회내 규제검토기구를 설치하여 의원입법의 규제품질 확보
- ④ 규제영향분석의 기법을 발전시키고 규제영향분석 교육을 강화
- ⑤ 행정재량 축소를 위해 공공 의견수렴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입법예고 기간(현행 20일) 연장
- ⑥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내용 공개
- ⑦ 행정부담 측정 프로그램 도입
- ⑧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규제완화 조치 확대적용

〈경쟁〉

- ⑨ 공정위의 정책우선순위를 시장의 효율성 확립으로 조정
- ⑩ 공정위의 강력한 조사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강제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⑪ 카르텔 행위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당연위법원칙’의 판례적 확립

〈시장개방〉

- ⑫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규정 폐지
- ⑬ 시장개방 가속화 및 일선 공무원의 훈령강화 등을 통해 외국투자기업·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지속적 추진
- ⑭ 입법예고 및 정책변경사항에 대한 영문제공 확대 등 시장개방적 관점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대
- ⑮ 한국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상호인증협정 확대
- ⑯ 서비스 및 농업분야의 규제개혁 및 시장개방 강화
- ⑰ 담합입찰 등 반경쟁 규제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집행 강화

〈통 신〉

- ⑱ 정통부 행정지도 감축 등 규제정책과정의 투명성·효율성 확립
- ⑲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제한 축소조치 등 경쟁 촉진적 규제개혁 추진
- ⑳ 통신위·공정위·정통부 등 유관기관간 정책협력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 및 통신 분야 공공협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 필요

〈고등교육〉

- ㉑ 고등교육의 질적 관리와 책임을 질 정책기관 설립 필요
- ㉒ 국공립대학 법인화
- ㉓ 수요자(기업)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확립 등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내부의 질적 관리 등 제도적 역량 강화
- ㉔ 사학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㉕ 대학졸업생 등 취업률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공개
- ㉖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외국학생 및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분야 규제철폐
- ㉗ 기업·산업·지방등과 관련된 규제영향분석에 대하여 전정부적 정책 협조 강화
- ㉘ 규제 및 관리에서 전략적 리더쉽과 관리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전환

(2) 정부의 입장 및 이행계획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OECD의 권고안들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목표 및 방향과 많은 부분 합치하며,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7.4월 규제개혁, 경쟁, 시장개방, 통신, 교육 분야별로 OECD가 제시한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이행계획을 마련하였다.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이 분야별로 작성한 동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OECD에서 강조하는 모범사례와 환경변화에 맞추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되, 행정부담 측정제도 도입 등 대내외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을 우선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만, 농업 및 중소기업의 보호와 관련된 사안, 국회 또는 부처 기능변화에 대한 사안 등은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의 현 사회적·경제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권고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의 시사점

2007.3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된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의 시사점과 향후과제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OECD 규제개혁 심사 당시 OECD는 한국이 규제수 감축이라는 총량적인 접근방식의 “규제완화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고 개별규제의 품질향상을 추진하는 “규제품질향상 단계”, 체계적·통합적 접근으로 규제개혁을 성과관리와 연계하는 “규제관리 단계”로 이행토록 권고하였다. 2006년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결과, OECD는 2000년 심사이후 한국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규제품질을 향상시키고, 규제개혁을 성과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질적 규제개혁으로의 전환, 사용자 중심의 규제개혁,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규제정비 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OECD는 한국이 규제완화 단계에서 벗어나 규제품질 향상 및 규제관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두 차례의 OECD 규제개혁 심사를 통해 한국은 규제품질 향상 및 규제관리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과정에서 OECD의 권고사항들은 이러한 이행에 필요한 지침과 방향을 적절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와 협의채널 확대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에 외국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5년 6월부터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과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 개혁 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하는 등 협의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는 건의과제 검토결과의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의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면제, 경제자유구역 입주대상 기업 확대 등의 건의과제를 검토·수용하였으며, 8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및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의 실무 간담회에 이어 10월에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5. 개도국 등과의 대외협력 강화

가. 베트남 총리실 규제개혁추진단과의 간담회

베트남 총리실 규제개혁 담당자들은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시스템,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6월 방문(6.20)시 베트남측은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개혁기획단의 법적근거·소속·구성·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였다. 12월 방문(12.11)시에는 응웬 수안 폭(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실장관과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간의 오찬간담회가 있었으며, 이 간담회에서 두 장관은 경제발전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규제 개혁, 대외적으로는 FTA를 통한 시장개방 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서로의 경험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대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양국의 노력의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나. 네덜란드, OECD 규제개혁 담당자와의 간담회

네덜란드 및 OECD의 규제개혁 전문가 (네덜란드 Ministry of Finance, Director, Jeroen Nijland, OECD GOV Policy Analyst, Flemming Olsen)가 '07.11.5일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 국제세미나 참석 방한 차 행정내부규제 개혁, 덩어리 규제개혁, 규제신고 센터, 규제개혁 모니터링에 대한 미팅을 희망함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11.2일) 각 주제별로 추진배경과 과정 및 성과를 소개하였으며, 네덜란드 및 OECD 규제 개혁 전문가는 우리나라 규제개혁 시스템과 성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07년 규제개혁 평가

제2절 외부전문가 평가

제3절 2008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제1절 2007년 규제개혁 평가

1. 2007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평가

2007년도에도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 주관으로 기업환경 개선효과가 크고 다수 부처가 관련된 핵심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에 따른 시간과 비용 감축을 통한 규제의 품질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으며 특히, 기업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복합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해 각종 인허가 규제개선, 외국인 지위·차별개선 등 17개 과제 295건의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소관 부처별 점검회의 및 온라인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 이행관리를 강화를 통하여 마련된 규제 개선방안이 일선현장에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2007년말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 복합덩어리 세부과제 1,822건 중 1,304건을 완료하였다.

각 부처에서도 소관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739건의 규제를 정비대상으로 발굴, 정비를 추진하였다.

또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통해 170건의 건의과제를 접수하고,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개별기업의 규제민원 총 352건을 접수, 235건을 해소하는 등 개별기업으로 애로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규제개혁추진단(단장: 한국경제연구원장) 및 자문단(각계 전문가)을 구성하고, 부문별 규제개혁연구작업반(5개반, 79명) 설치('07.6)하고 등록규제 5,101건('07.10 기준) 중 금융·창업·교육 등 38개 분야 총 1,664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다. 건의과제 중에는 기업환경 개선·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현안과제 184건, 수도권·대기업 규제 등 정책성 규제 200건이 포함되어 있다. 국무조정실은 현안과제 검토결과 개선이 가능하다고 관련부처와 협의된 건의과제 75건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확정하였으며,('07.12.5)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에게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쉽게 제공하기위해 개별 행위 별로 세분화된 규제등록 단위를 사업단위로 재분류하였으며(07.2), 공장설립, 공동주택건설 등과 같이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잡한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규제의 내용과 절차, 규제간 상호관계 등을 도식화한 규제맵을 작성·보급하였다.

자의적·중복적 행정조사 등 규제의 절차적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07.5)하였으며, 보고·신청·검사 등 규제로 인한 정보의무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2. 전략과제 추진성과 및 평가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aja2940@opc.go.kr)

2.1 추진 개요 및 평가

규제개혁기획단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국민불편 사항과 기업 환경을 개선키 위해 덩어리 규제를 정비키로 하고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4년간 창업 및 경영환경 등 7개 분야 68개 과제를 정비하였다.

〈 분야별 전략과제 추진실적(68개 과제) 〉	
창업·경영환경 (15개 과제)	①창업 및 공장설립 ②기업 행정조사 ③법인설립 개선 ④산업단지 ⑤부담금 ⑥표시광고 ⑦사업자 교육 ⑧산업단지내 중소기업 ⑨조세부과·징수 ⑩기업공개·시장제도 ⑪경제자유구역 규제 ⑫소상공인 ⑬창업·공장설립(보완) ⑭소방·안전 ⑮각종 인증·검사
물류·유통 (9개 과제)	①물류시설 투자 ②대형유통점 ③항공운송 ④해상운송 ⑤육상운송 ⑥농수산물 유통 ⑦재래시장 활성화 ⑧항공운송(보완) ⑨물류(보완)
건축·건설 (8개 과제)	①골프장 건설 ②민간SOC 투자 ③건설산업 ④공동주택 ⑤소규모 건축 ⑥공동주택(보완) ⑦건설산업 활성화 ⑧소규모 건축(보완)
정보통신 금융 등 (10개 과제)	①전자상거래 ②신기술·신제품 ③정보통신 ④소프트웨어 산업 ⑤금융산업 진입·영업 ⑥공공정보 이용활성화 ⑦에너지·네트워크 설비 ⑧금융감독·예금보험 제도 ⑨ 금융산업 ⑩ 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교육·관광 (7개 과제)	①관광·레저 규제 ②문화예술 창의성 ③대학행정 규제 ④초중등교육 규제 ⑤고등교육기관 설립 ⑥교육분야 규제 ⑦관광·레저(보완)

〈 분야별 전략과제 추진실적(68개 과제) 〉

고용·환경 (7개 과제)	①직업훈련제도 ②수질 보전지역 ③4대 영향평가 제도 ④산업안전·보건 ⑤환경분야 인허가 등 ⑥폐기물 처리·재활용 ⑦환경오염배출 규제
국민 편의 등 (12개 과제)	①지방자치단체 규제 ②행정내부 규제 ③유사행정 규제 ④교통관련 제도 ⑤국공유재산 관리제도 ⑥옥외광고 ⑦외국인 기업경영·생활환경 ⑧행정 인·허가 ⑨국민생활·민원 ⑩식품·위생 ⑪보건·의료 ⑫외국인 지위·차별

규제개혁기획단이 추진한 전략과제는 규제의 주요 분야가 모두 망라되어 있어 사실상 규제 전 분야에 걸쳐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규제정비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경제단체, 개별기업, 국민공모 등을 통해 규제의 수요자로부터 문제규제라고 제기된 각종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에는 규제개혁이 법령의 조문에 있는 개별규제별로 검토되어 앞뒤 규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었고, 그 규제를 개선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다른 규제가 여전히 불합리하게 남아있어 수요자가 규제개혁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었으나 전략 과제의 추진은 각 분야별, 주제별로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편적인 개별 규제 개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해당분야의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가능하였다. 예컨대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되는 모든 법령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한 절차는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절차를 단축하고, 기업에 불필요하게 부담시키던 비용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하여 공장설립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공장에 대한 입지 규제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공장설립이 실질적으로 용이해지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전략과제 추진 시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요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신뢰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규제개혁기획단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기업 등 피규제자의 요구와 민간의 전문성을 정책추진에 직접 반영할 수 있었다. 과제 추진 시 일선 기업의 건의 수렴, 문제가 되는 규제의 발굴 등을 피규제자인 기업 직원이 적극적으로 분담하였고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등이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깊이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수요자들이 문제제기한 규제를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기획단이 추진한 규제 개선방안 내용에 대한 기업 등 수요자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서도 다루었지만 규제개혁 전략과제에 대해 기업 등의

임직원,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경제단체 임직원 등 500명을 대상으로 개선방안 주요내용을 설명한 뒤 그 만족도를 묻은 결과이다.

【덩어리규제 개혁 체감도 조사결과('06. 5 한국갤럽)】

-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 74.1%
- ▶ 참여정부 규제개혁 성과 : 49.5%
- ▶ 덩어리 규제 개선 효과 : 76.8%
- ▶ 일선공무원 집행행태 : 34.0%

기업, 경제단체, 일반국민 등 수요자는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높고 개선방안의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덩어리 규제를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개혁에 큰 진전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되어 국민에게 공표됨으로써 기업 등의 경우 개선이 금방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의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어 관련 수요자가 항의성 문의를 하는 등 국민의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은 문제가 나타났다. 법령 등의 규정정비가 완료되어야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나, 입법과정에 입법예고, 부처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법정 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후속적인 실무협약이 필요한 사항, 연구용역의 진행, 해당법령의 다른 조항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추진을 유보한 사항 등의 이유로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등 개선된 규제개혁 방안이 규제집행 현장까지 전달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기획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이행점검 전담반을 설치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어 이행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 등은 전략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과제 이외에도 더 많은 영역에서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향후에도 추가적인 덩어리 규제의 개선추진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2.2 향후 규제개혁 추진 방향

2.2.1 대상과제의 확대

규제개혁기획단은 68개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면서 대부분의 규제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많은 성과가 있었고 수요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지만 제한된 인력과 시간 상 한계로 모든 생활·기업 분야를 다 포괄할 수 없어 일부 분야의 경우 개선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다른 분야와 묶여 한꺼번에 추진됨에 따라 규제 정비가 미흡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과제 추진 과정에서 관련된 분야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인적·시간적 제약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당초 분야에 대해서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야의 수요자의 경우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향유할 수 없어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요구해 오고 있다. 비록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은 마무리 되지만 향후에도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2.2.2 기 추진과제의 보완

또한 기획단이 이미 추진한 과제인 경우에도 과제 추진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상황의 변화, 정책의 변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해진 경우, 과제의 내용이 모든 건의사항을 포괄하지 못한 경우, 과제 추진 후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된 경우,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이행되지 못한 경우, 개선방안이 미흡하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 등이 있어 수요자가 다시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다. 이런 분야에서는 기존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 및 기존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평가 등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덩어리 규제의 개선은 과거 규제개혁 방식에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적절한 개선방식이다. 덩어리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기획단 또는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추진하여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향후에도 더욱 더 수요자가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발굴하고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업,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각종 협회, 일반국민 등 모든 수요자를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제안받아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것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제안통로를 열어놓고 상시적 과제발굴을 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래 과제는 기업 등 규제개혁 요구 분석결과 도출된 향후 추진 검토 규제개혁 분야이다.

【향후 추진 전략과제 목록(예시)】

- 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② 경제자유구역 등 전략개발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 ③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 ④ 산업안전 관련 규제 개선방안
- ⑤ 물류·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 ⑥ 금융 대형화·종합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 ⑦ 금융의 국제화·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 ⑧ 주택사업 관련 규제 개선방안
- ⑨ 수도권 입지규제 관련 규제 개선방안
- ⑩ 중소기업 창업 규제 개선방안
- ⑪ 보건·의약 관련 규제 개선방안
- ⑫ 교육행정 관련 규제 개선방안
- ⑬ 관광분야 규제 개선방안
- ⑭ 방송·통신 관련 규제 개선방안

2.3 추진방법의 개선

기획단은 당초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었고 민관합동 구성방식은 수요자의 의사를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업활동 애로요인 등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 현장 의견의 직접적 피드백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향후에도 민간 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는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이 기획단에 상시 근무하면서 직접 개선방안 및 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좋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 전공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단이 추진하는 모든 과제를 전문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추진 대상 과제가 정해지면 각 과제마다 해당 전문가를 3~4개월의 과제 추진기간 동안 기획단에 합류하여 과제 추진에 참여함으로써 폭넓게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획단의 과제 추진 방식이 기획단이 직접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는 기획단이 마련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개혁 추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부처가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의 과정에서 소극적이거나 개선방안 확정이후에 추진 상 곤란을 표시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에는 과제 추진의 총괄, 개선 필요과제의 발굴 등은 기획단에서 담당하되 분야별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은 부처가 주관하도록 하면 부처협의를 용이하고 결정된 개선방안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처 주관 추진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과제 중 업무 다수가 한개 부처 업무이거나 다른 부처와의 조정에 어려움이 크지 않은 경우는 해당 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기획단은 파급효과가 큰 과제, 다수부처의 조정이 어려운 과제 등에 집중한다면 전부처가 참여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규제정비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규제는 다수의 관련자가 있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공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규제로 인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 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관련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한 집단에는 규제완화 또는 개선이 다른 집단에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른 영향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이해관계는 과제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계집단이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한 집단이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좀더 세밀한 의견수렴 과정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의견수렴 과정의 강화와 개선방안의 역효과 등에 대해서 검토를 강화할 것이 필요하다.

2.4 향후 계획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기한은 종료되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덩어리 규제 정비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기획단이 확정된 개선방안과 향후 확정하게 될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현장에서 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부처 규제개혁 추진평가

가. 평가 개요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평가를 통해 부처의 자율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고 국민·기업 등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평가 대상기관 3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 수립 22개 기관(부·처단위) 및 정책 집행 15개 기관(청단위)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행정규제가 없거나 적은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가청렴위원회, 조달청 등의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평가는 각 부처가 자체 작성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평가하였으며 각 항목별 평가지표에 따라 계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계량평가가 어려운 사항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 기관별 업무특성상 특정 평가항목이 해당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항목의 점수를 결측치 처리하였다(총점에서 해당항목의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만점으로 하여 획득점수를 환산한 점수) 평가분야 및 배점은 표와 같다

< 규제개혁 평가분야 및 배점 >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 (15)	추진기반의 적절성(15)	○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적절성	10
		○ 규제개혁 추진역량	5
집행 (25)	시행의 적절성(25)	○ 신설·강화규제의 적절성	15
		○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	10
산출/ 결과 (60)	규제개혁 성과(40)	○ 기존규제 정비실적	35
		○ 규제개혁 우수성과 사례	5
	규제개혁 만족도(20)	○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20

나. 종합평가 결과

평가결과 규제개혁부문 평균점수는 63.5점으로 전년도 62.6점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적절성(76점) 및 기존규제 정비실적(65점)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양적측면에서는 추진노력 및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규제개혁 추진역량(52점), 고객 만족도(59점) 등이 다소 저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입안자 대상 교육실시 등 규제교육 내실화로 추진역량 및 핵심규제 발굴·개선 등 질적 수준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단계별 평가결과

(1) 계획 단계

(가) 추진기반의 적실성

① 개별규제정비계획의 적절성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적절성은 하위 지표로서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목표율과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충실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목표율은 74점으로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부처 등록규제 5,156건중 총1,147건(미등록 규제, 비규제 포함)을 정비목표로 설정하여 양적 측면에서 등록규제건수 대비 정비대상 규제건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대상 규제중에서 법률상 규제, 중요규제, 폐지규제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충실성은 79점으로 전년(83점)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질적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② 규제개혁 추진역량

규제개혁 추진역량은 52점으로 규제개혁추진체계, 의견수렴 절차 등은 부처의 특성에 따라 규제개혁의 틀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규제개혁관련 교육은 실적이 없는 기관도

7개가 되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입안자 대상 교육 등 내실화가 요구되며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현장교육등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외부전문기관 용역도 총8개 기관만 실시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관련 교육강화 및 규제영향분석 외부전문용역 활성화를 통해 규제타당성 검토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집행 단계

(가) 시행의 적절성

①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율에 대한 평가는 평균66.5점이며 평균 권고율은 19%로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1차적으로 점검하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가 좀더 내실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각 기관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율로 평가하는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은 58.6점으로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소관부처의 법령안 입안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보다 충실한 검토가 요구된다

규제강화율은 84.5점으로 규제강화정도(점수가 높을 수록 강화정도가 낮음)는 높지 않으나 규제증가율은 42.5점으로 규제 신설 건수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설·강화 규제는 주로 사회·복지·환경 등 사회적 규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심사자료의 충실성 및 적극성은 73.3점으로 규제심사 안건 및 심사자료 협조 등은 양호하나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율은 64.2%로 저조하게 나타나 충실한 이행이 요구된다.

②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한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은 60.5점으로

작년보다는 분석수준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은 주로 일반적인 서술적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계량적 기법을 이용한 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규제영향분석 작성능력 및 시간상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 전문교육 강화, 규제영향분석 전문기관 외부용역 활성화 등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규제개혁 산출/결과

(가) 기존규제 정비실적

① 개별규제 정비 이행실적

'07년도 부처별 개별규제 정비 이행실적은 89점으로 추가 발굴과제를 포함 총1,048건(당초 839, 추가 209)을 정비하였으며 각 대상기관의 개별규제 정비이행 정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② 전략과제 정비 이행실적

평가대상 19개 부·처·청의 전략과제 이행실적은 64.7점으로 이행율은 51%이며 전년 70%보다 하락하였다. 이는 그간 많은 전략과제가 발굴·개선됨에 따라 추가 발굴이 어려워져 과제 선정이 늦어진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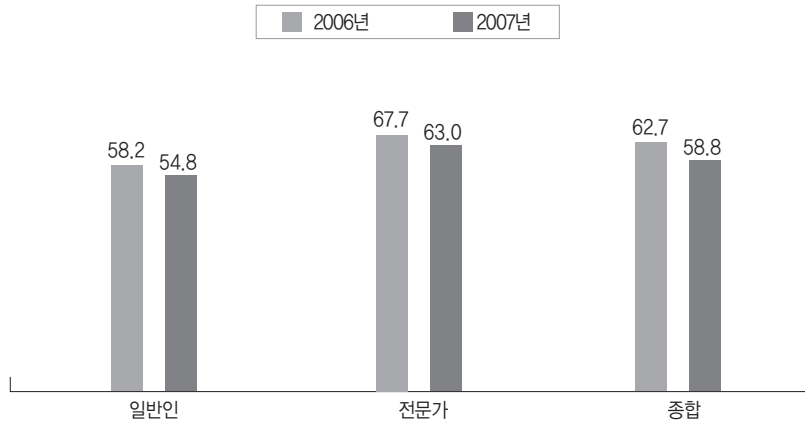
(나) 규제개혁 우수성과 사례

평가결과는 57점으로 생산고용 창출효과나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특별히 우수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처단위(61점)가 청단위(51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처단위의 규제개혁사례가 대체로 생산 또는 고용창출 효과나 수혜지수, 사회적 편익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규제개혁 만족도

규제개혁 종합만족도는 59점으로 '06년(62.7점)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 만족도는 63.0점, 일반인 만족도는 54.8점으로 '06년 대비 각각 4.7점, 3.4점 하락하였다. 항목별로는 '규제 활용의 만족도가 62.6점으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규제개선실적'에 대한 만족도는 56.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06년과 비교시 대부분의 항목에서 소폭 하락하였으나 행자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국방부 등은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일반인			전문가			종합		
	2006년	2007년	증감율	2006년	2007년	증감율	2006년	2007년	증감율
전 체	58.2	54.8	▼3.4	67.7	63.0	▼4.7	62.7	58.8	▼3.9
규제의 적절성	57.1	56.4	▼0.7	67.5	63.6	▼3.9	62.3	59.9	▼2.4
규제의견 수렴	55.8	54.1	▼1.7	66.7	60.0	▼6.7	60.9	56.9	▼4.0
규제개선 노력	59.3	55.8	▼3.5	70.1	66.3	▼3.8	64.6	60.9	▼3.7
규제개선 실적	58.9	52.8	▼6.1	66.6	60.0	▼6.6	62.8	56.3	▼6.5
규제 활용도	-	-	-	65.6	62.6	▼3.0	65.6	62.6	▼3.0

4. 향후 추진계획

근본적으로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중심으로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경제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게 될 것이며, 타당성이 낮은 평가항목은 제외하거나 새로운 지표로 대체하고 경제활성화, 핵심규제개혁 등 규제개혁 중점추진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추가·개발하고 규제개혁성과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과 관련한 공무원의 행태와 인식의 개선을 위하여 규제개혁 성과평가에 의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기관평가시 규제개혁 실적의 비중을 높이고,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하고, 규제개혁으로 예산 또는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이다.

제2절 외부전문가 평가

- 2007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과제
이혜영(광운대 행정학과)

1. 서론

전세계적으로 규제개혁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이해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규제개혁은 시장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설정함을 의미하며(Vogel, 1996), 사회적 측면에서 규제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 규제의 합리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부터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수행하였고, 참여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은 정부혁신 6대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전 국민의 정부에서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완화에 집중하였다면, 참여정부에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규제 품질의 향상에 초점을 두었으며 다양한 규제개혁 수단을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노력에 대해 OECD(2007)는 좋은 평가를 내린 반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내 학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2007년 규제개혁은 보다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한 선진적인 규제개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여 규제개혁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2007년의 규제개혁의 추진성과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규제개혁의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 규제개혁 수단과 절차, 규제개혁 산출 및 결과 측면에서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규제개혁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규제개혁의 원칙과 평가기준

규제개혁의 원칙과 평가기준으로는 좋은 규제기준(BRTF, 2005), APEC-OECD의 규제개혁 통합점검표, Brookings Institution의 규제개혁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좋은 규제기준은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포괄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좋은 규제기준은 영국의 '좋은규제개혁추진단(Better Regulation Task Force)'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꼭 필요하고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기준들이다. 여기에는 투명성, 책임성, 목표성, 일관성, 균형감이 포함된다.

APEC과 OECD는 각각 규제개혁에 대한 점검표를 개발하였는데, 2000년부터 공동 작업을 통해 규제개혁의 통합점검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통합점검표는 주기적인 보완작업을 통해 새롭게 변경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지표가 2005년에 발표된 규제개혁의 통합점검표(integrated checklist)이다. APEC-OECD의 통합점검표는 수평적 차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규제개혁지표 11개와 세부 영역인 규제정책지표 8개, 경쟁정책지표 12개, 시장개방정책지표 9개 이상 네 가지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APEC-OECD, 2005). 통합점검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APEC-OECD 통합점검표 : 규제개혁부문

항목	체크리스트의 내용
A1	규제, 경쟁, 시장개방 정책을 다 포함하는 규제개혁의 종합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A2	정치적 지도자와 고위관료층의 규제개혁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높은가 이러한 지지가 개혁의 실제에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기업, 소비자, 이익집단의 반응을 얻었는가
A3	효과적인 규제 집행을 확보하는 책임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A4	규제 대상이 되는 재화, 서비스, 기업, 국가에 대한 차별화가 있는지 만일 차별성이 있을 때는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인가
A5	규제개혁이 모든 차원의 정부들 간에 잘 조정되고 독려되고 있는가
A6	정책, 법, 규제, 관례, 절차와 의사결정 등이 투명하고 일관되며 정부내외 및 국내외 사용자에게 이해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한가
A7	규제개혁, 규제기관의 설립, 경쟁의 도입 등이 적절한 시기에 순서대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가
A8	규제관리시스템을 고려한 효과적인 부처간 규제개혁 관리 및 조정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
A9	규제의 질, 시장개방 등에 책임이 있는 각 규제기관들이 적기에 그들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적절한 인적 기술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A10	규제형성자와 규제자를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있는가
A11	규제와 관련된 고충처리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가

자료: APEC-OECD, 2005: 5-11의 재구성

한편, Brookings Institution에서 발간한 「연방정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아젠다(An Agenda for Federal Regulatory Reform)」이란 보고서는 최근 규제개혁의 절차와 정책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규제개혁의 원리를 제시하였다(Crandall et. al., 1997: 7-8; 김정해 외, 2007).

첫째, 규제개혁은 국민에게 부과된 규제들에 대하여 선출된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규제는 국민의 복지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규제 결정은 입법가 또는 대통령 또는 양자 모두의 전술적인 묵인에 의해 연방정부의 규제관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회는 규제효과에 대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둘째, 규제개혁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적 복지를 보호하는데 보다 많은 중점을 두어 공익을 향상시켜야만 한다. 규제기관들은 규제집행 여부의 결정적 요소인 규제의 경제적 비용편익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규제를 설계할 때 경제적인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수행된 규제개혁 평가를 위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평가를 위한 저자들의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기준들을 재구성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분석틀을 만들어 정부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조성한(2006)은 책임성, 투명성, 지속성, 공정한 절차, 정치적 지지, 전문성, 전자적 개혁, 포괄성, 참여성, 표적화, 균형성을 제시하였고, 사공영호 외(2000)는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효과성, 고객만족도, 권력 및 압력의 영향, 신설억제 정도 이상 네 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김태호(2000)는 제도적 성과, 행정적 성과, 경제적 성과를 구분하여 규제개혁 성과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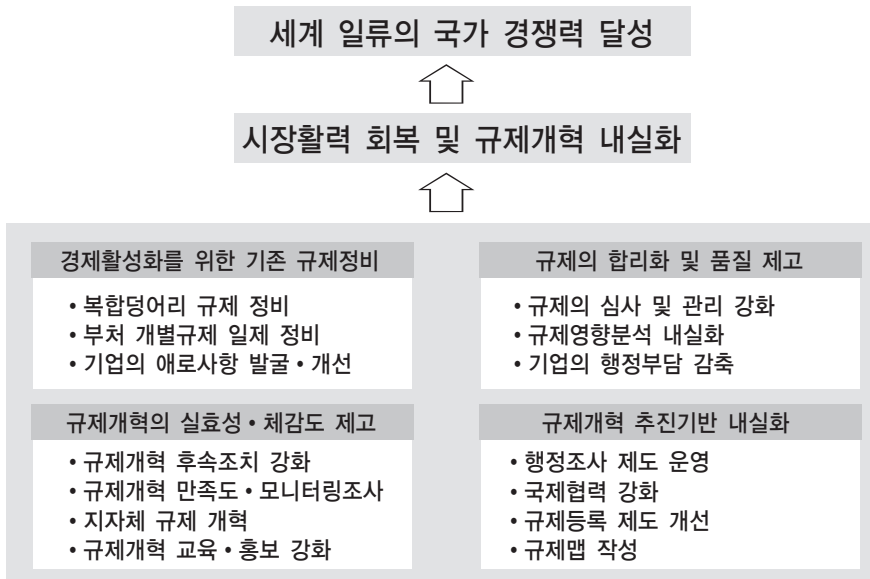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이러한 규제개혁의 원칙 및 평가기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규제개혁의 추진 목표 및 추진체계, 규제개혁 정책수단과 절차, 규제개혁의 산출 및 결과의 측면에서 규제개혁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정책평가에 있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논리모형을 활용하여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로 구분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OMB, 2003; 고영선 외, 2004; 김정해 외, 2007). 첫째, 투입평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추진에 투입된 예산, 인력, 기타 자원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에 있어서 정책목표과 추진체계 측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과정평가는 사업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의 수단과 절차 및 집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산출 및 평가는 규제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제의 양적 변화 및 규제품질 수준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2007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

가. 2007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과제

2007년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크게 시장 활력 회복과 규제개혁 내실화를 통해 세계 일류의 국가경쟁력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의 합리화 및 품질 제고, 규제개혁의 효과성 및 실효성 제고,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 등 크게 4가지 중점 목표를 상정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중점목표 하의 주요 세부 과제로서 복합덩어리 규제 정비, 부처 개별규제 일제 정비,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규제의 심사 및 관리 강화,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 규제개혁 후속 조치 강화, 규제개혁 만족도 모니터링 조사, 지자체 규제개혁, 행정조사 제도운영, 규제 등록제도 개선, 규제 맵 작성 등이 있다.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1> 이다(국무조정실, 2007a).

<그림 1> 2007 규제개혁 추진방향



나. 2007년도 규제개혁 주요 내용

위와 같은 추진방향을 토대로 한 주요 추진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국무조정실, 2007b). 첫째, 규제의 합리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심사를 강화하였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였으며, 규제의 내용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철회·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심사대상 1,035건 중 207건이 개선·철회된 것으로 나타났다.¹⁾

<표 2> 규제심사 결과 (2003~2007)

연 도	심사 규제수(건)	결 과	
		철회 및 개선권고	원안의결
2003	947	285(30.1)	662(69.9)
2004	1,054	307(29.1)	747(70.9)
2005	1,423	424(29.8)	999(70.2)
2006	1,076	245(22.8)	831(77.2)
2007. 1-11	1,035	207(20.0)	828(80.0)

자료: 김정해 외(2007) 및 국무조정실(2007b)에서 재작성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규제 수요자와 공동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하였다. 기업, 연구원 등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를 주축으로 규제개혁 기획단을 운영,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정비하였다. 과제발굴 단계부터 대책마련 단계까지 규제개혁의 전과정에 걸쳐 관계자 의견 청취,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반영하였는데, 2007년도에는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등 총 17개 전략과제(295개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현장중심의 규제민원 처리를 위하여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주기적으로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수렴,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7년중 경제5단체 건의 총 170건을 접수하여 31건을 개선하였으며, 100건은 검토 중에 있다. 2007년 10월에는 전경련에서 1,664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규제신고

1) 이러한 규제심사결과를 이전 국민의 정부와 비교해 보면 먼저, 참여정부의 규제심사 원안의결 비율이 71.9%로 국민의 정부 65.8%보다 상당히 높았다. 또한 개선 권고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철회비율은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 8.6%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3.48% 였다(김정해 외, 2007).

센터)에서 규제민원 접수 및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별기업의 애로규제를 적극 발굴·해소하였는데, 2007. 1~11월중 총 332건을 접수, 이 중 217건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건축, 보건, 국민생활 등 주요 분야 규제개혁 추진상황 등에 대해 전문가·수요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만족도를 조사, 그 결과를 규제개혁 개선과제 선정 및 규제개혁 평가시 적극 활용하였다. 2007년에는 만족도조사 1회, 모니터링 조사 총2회가 실시되었다.

넷째,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를 위하여 규제등록 제도를 개선하였는데, 국민에게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쉽게 제공하기위해 개별 행위 별로 세분화된 규제등록 단위를 사업단위로 재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 납부 등 4개의 개별규제는 석유판매업 등록(사업단위)이라는 1건의 주된 규제 하에 수수료 납부 등을 부수규제로 등록하였다.

또한 국민과 기업 등에게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규제분야에 대한 규제 맵 작성을 확대하여 규제개혁 수단을 합리화하였다. 규제 맵이란 공장설립, 공동주택건설 등과 같이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잡한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규제의 내용과 절차, 규제간 상호관계 등을 도식화한 것으로서 규제자의 입장에서는 규제 합리화를,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규제 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다수부처 관련 복합규제, 이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절차가 복잡한 규제분야 등을 우선 작성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7년 2월 공장설립, 공동주택건설 등 2개의 규제 맵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자동차 구매관리, 폐기물 처리 등 10개가 추가로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규제의 연관성, 발생 및 확산경로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규제정보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자의적·중복적 행정조사 등 규제의 절차적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행정조사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보고·신청·검사 등 규제로 인한 정보의무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행정부담 감축제도는 규제 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에 대한 계량적·체계적 측정 및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보고 등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행정부담 감소정책과 규제개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EU 등 선진 23개국이 동 정책을 도입·추진 중에 있으며, 각국은 행정부담액(GDP의 약2~4%)을 향후 4~5년간 25%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행정보고·조사 등 행정부담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4.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투입 :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 측면

먼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의 방향이 규제의 품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규제영향분석서의 활성화 및 행정부담 감축, 덩어리 규제 등 전략과제 위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 등에서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김정해 외, 2007). 또한, 규제 맵 작성 등 효과적인 규제개혁 수단을 시도하고 확대 추진한 점에 있어서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상호 연계 운영함으로써 집권화된 규제개혁기구를 통해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규제개혁기획단, 기업활동 관련 애로센터를 설치하여 전략적이면서 고객중심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사무국으로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이 위치하며 그와 연계된 각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추진단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심사기구가 존재한다. 규제개혁 추진 체계는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범정부적 규제 및 덩어리규제 등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었다는 점, 제도적으로 보다 안정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 등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ibid.).

그러나, 참여정부 전반적으로 볼 때, 정책적 규제(수도권 규제, 부동산 규제, 교육 규제 등)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국내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여 규제개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특성상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 산하 사무국으로서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의 경우 순환보직, 파견으로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과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 실무진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할당하는 자원이 적다는 점 등은 효과적으로 규제개혁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부처 수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전문성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평가된다(ibid.).

따라서 향후에는 정책적 규제에 있어서 규제개혁 목표와 방향을 일관되게 적용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자원 확보, 부처 수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과정 : 규제개혁 수단과 절차 측면

규제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OECD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수단을 제안하고 있다(OECD, 2006). 행정 간소화, 규제영향분석, 투명성과 의사소통, 규제대안, 순응 및 이행강제, 행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들이다. 우리의 경우, 규제개혁 정책수단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들로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합리적 발전, 규제 맵의 도입, 행정부담 축정을 통한 비용감축정책, 규제순응도 조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규제개혁 절차 측면에서는 규제심사절차의 개선,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 활성화, 규제개혁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1) 규제개혁 수단의 효율성 제고

2007 규제개혁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규제개혁 수단의 도입과 활용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규제 맵의 확대와 행정부담 감축 정책의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규제 맵은 규제집행의 책임자들에게 특정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경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필수적 정보를 제공하며, 피규제대상인 개인과 기업에는 특정 규제가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어 규제에 따른 순응 비용을 축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방민석, 2003). 또한, 작성된 규제맵을 규제위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하여 수요자에게 다양한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 맵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규제의 내용, 절차 등을 국민이나 기업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고 규제간 상호연관성, 단계별 경로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중복규제의 해소, 규제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규제개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또한, 정부는 행정기관의 기업에 대한 조사·보고 요구 등으로 유발되는 인력·시간 소요가 상당하여 기업 활동 장애 및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기업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정비용 감축정책을 도입, 규제개혁과 병행 추진하였다.²⁾ 그간 추진되었던 규제개혁도 규제준수에 따르는 시간·비용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는 있으나, 직접 비용을 측정·연계시키는 노력은 미흡하였으므로 행정비용 감소정책의

2)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이종한, 2006)에 따르면, 행정부담 축정을 위해 네델란드가 활용하고 있는 표준비용모형(SCM)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도로화물운송업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화물운송업체에서 정보제공 의무에 따른 행정부담은 3,082억원에 달하며 이는 2005년 기준으로 개별 업체당 204만원에 달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체 행정부담은 2005년 전체 GDP의 0.38%에 달하고 화물운송업의 부가가치액의 3.04%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입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감축시켜 주려는 것으로서, 규제의 적정성 위주가 아니라 규제비용 시각에서의 접근·검토, 조세분야 등 규제개혁에서 제외된 규제에 대한 접근, 규제는 아니지만 행정으로 인한 부담이 생기는 사항들에 대한 비용의 분석·감축 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규제개혁백서, 2007; 이종한, 2006).

한편, 규제형성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은 규제심사제도 및 규제영향분석제도라 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을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규제영향분석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³⁾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모델 보급·확대하여 금융·방재·식약·관세 등 주요 분야의 매뉴얼을 보급하였으며,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전문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였다(국무조정실, 2007a). 또한 현장 중심의 규제영향분석 교육 실시하고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사후적·실증적 점검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규제영향분석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의 부족문제,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의 미흡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이혜영 외, 2007),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표 3> 의원입법을 통하여 신설·변경된 규제유형

분 류	규제유형	건수(%)
행정기관의 권한 강화	보고·승인 등 사전통제 강화	113개(31.7%)
	과태료 부과 등 사후 처벌 강화	54개(15.1%)
기업 등의 경제 활동 제한	영업 및 거래행위 제한	51개(14.3%)
	인적·물적 기준 강화	25개(7.0%)
	금전적 의무 부과	4개(1.1%)
대국민 의무 부과	권리 제한	13개(3.6%)
	의무 강화	11개(3.1%)
기타	행정기관 통제 등	86개(24.1%)
계		357개(100%)

자료 : 감사원(2007)

3) 규제영향분석의 고려사항으로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경제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등이다.

(2) 규제개혁 절차의 합리화

OECD-APEC 규제개혁 통합점검표에서 강조되고 있는 상당부분은 규제개혁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즉, 규제개혁 절차 및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투명성, 참여 및 모니터링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역시 이러한 규제개혁 절차 및 과정의 합리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규제심사절차가 공식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재심사 절차가 구비되어 있다는 점, 민간위원들의 참여로 인해 규제대상이 부당한 규제에 항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대한상이나 전경련 등에 대한 적극적 의견수렴 노력,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점 등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있어서 절차상의 합리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2007규제개혁에서도 이러한 규제개혁의 절차를 합리화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나 모니터링을 위한 상시적 외부 통제 시스템이나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향후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규제의 사후 평가와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 절차가 사전적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점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김정해 외, 2007). 또한, 규제개혁을 통해 법령이 정비된 이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이 법 개정애 맞추어 신속하게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집행에 대한 사후평가가 체계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참여정부에서의 규제개혁 정책수단과 절차 개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은 특히 규제개혁을 위한 제반 인프라 및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정책수단 및 절차의 합리화

구분	수단과 절차	주요 내용
규제 개혁 정책 수단	규제영향 분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선 - 2005년 12월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 및 2006년 3월 동법 시행령 개정 결과,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평가요소를 시행령에서 삭제 및 평가항목 조정. - 2006년 5월 중요규제 20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운영실태 검토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하에 과거 8개 항목 20개 평가요소를 3개 항목 8개 평가요소로 통합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재구성. ▶ 규제영향분석절차의 개선 - 부처의 자체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중요규제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개선하여 부처 책임을 강화하였음. -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로부터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5일(법상 1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 규제(중요규제) 여부를 결정함. -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자체 규제심사 결과대로 시행함.
	규제지도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규제 및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 2개 분야에서 시범작성 실시 - 규제맵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국민이나 기업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규제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유용한 도구가 됨. - 개별입지에 의한 공장설립은 6단계 절차로 구분되며 공장설립 관련 규제는 총 328건이나 개별업종 관련 규제나 세제 관련 규제 등을 제외하면 주요 규제는 68건이며 입지 관련 규제가 30건(44.1%)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공동주택건설은 4단계 절차로 구분되고 공동주택건설 관련 규제는 총 284건으로 13개 부처, 50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택지개발에 관한 규제가 116건(40.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행정부담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담측정을 통한 행정비용감축 노력실시 및 시범측정 - 행정기관의 기업에 대한 조사·보고 요구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정비용 감축정책을 도입하기로 함. - 전면적인 행정비용 조사 및 비용감축정책을 본격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비용의 실태에 대해 기초조사(Pilot Study)를 실시함. 조사대상은 6개 업종(건설·금속·기계·식품·화학·음식숙박) 19개 업체(대기업9 중소기업 10)이었고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결과를 분석함.
	규제순응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활성화 - 규제개혁과정에서 규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활동·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준수도가 낮은 규제를 대상으로 피규제자·공무원·국민의 순응도를 조사하고 원인분석을 토대로 순응도 제고방안 마련. 각 부처별로 1-2개 규제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 조사를 실시. - 2002년 1월부터 신설 강화된 주요 규제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순응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규제의 내용에 따라 1-2년후 시행하게 되며 순응도 조사의 실익이 없는 규제는 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제외시킬 수 있음.

구분	수단과 절차	주요 내용
규제 개혁 절차	규제심사절차 및 계획수립 절차 등의 간소화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12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규제심사제도를 보다 간소화하여 규제개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 -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시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심사요청을 종전 기한 도래시 1년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단축함. -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 관련 법률 중 제외범위에 미포함된 법률을 법 적용 제외범위에 추가함. (국가정보원법, 통합방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규제정비계획 수립 절차 개선(제20조)을 하였는데, 매년도 규제정비지침 작성·통보하도록 함. 또한, 매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규제관련 제도 연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원기관을 조정함. -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표하도록 함.
	이해관계자 및 국민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자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05.12.29)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규제영향분석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함. - 규제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같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 확대(2001내—25인 이내 : 5명 중원). - 규제영향분석시 도입규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기관·단체 등의 명칭, 찬성·반대의견 및 반대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규제개혁모니터링 시스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실 및 각 부처에서 규제개혁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운영 - 규제개혁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계층별로 선발(약100명)하여 운영함. 우수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규제개혁 상시 온라인 정비시스템 운영하여 규제개혁 과제별로 접수에서 검토 및 처리, 후속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DB로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공개 관리함. 해당 부처는 과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입력,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함.
	규제신고센터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제안 접수 -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인터넷, 전화신고,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 관련 제안 사항을 접수받고 있음.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10,105건의 규제개혁제안을 접수하였음. - 2004년도에는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총 560여건의 제안과제를 접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10개 내외의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전략과제로 추진하기도 함.

구분	수단과 절차	주요 내용
규제 개혁 절차	기업애로해소 센터의 운영	<p>▶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기업애로해소 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4월부터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종래의 민원처리 방식과는 달리 관계 부처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원스톱 처리방식과 철저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방식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음. - 2004년에는 76%, 2005년도에는 77%의 고객만족도를 보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2005년까지 총 1,017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하였고 이 중 978건을 처리하였는데 처리 완료된 978건 중 596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61% 해소율을 보였음.

자료: 규제개혁백서 및 김정해 외(2007)를 참고로 하여 작성함

다. 산출 및 결과 측면

(1) 규제의 양적 변화

규제등록을 실시한 1998년 8월 10,717건이었던 규제는 1999년 말 7,127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에는 7,723건으로 조금 증가하였다. 참여정부 이후에 등록규제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등록규제 수는 2003년 7,837건, 2004년 7,846건, 2005년 8,017건 2006년에는 8,084건으로 규제수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현재는 규제등록체계를 주된 규제 아래 부수적 규제를 예측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5,054건으로 재정비되었다(김정해 외, 2007).

먼저 경제규제가 많은 부처들의 규제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의 규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고 철도청의 경우는 민영화되어 규제가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재경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기타 대표적 경제부처의 규제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는 김대중 정부 때에 비하여 약 2배 가까이 규제 수가 증가되었다. 둘째, 사회규제가 많은 부처들의 규제는 대부분이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여 준다. 그 중 노동부, 보건복지부 정도가 다른 부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수가 많은 정도이다. 오히려 경제규제를 지닌 부처보다 사회규제를 많이 지닌 부처들의 규제가 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정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들의 규제는 국무조정실을 제외하고는 감소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는 감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지로 분류한 이유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규제가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경제분야 규제는 완화하고 환경, 보건 안전 사회분야의 규제는 무조건적인 완화보다는 규제합리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규제 수의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분야에서 보다 경제분야의 규제 수가 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향후 규제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규제 및 사회적 규제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규제 품질의 제고와 파급효과

기존 규제의 품질제고에 대한 성과는 부처에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처별 기존규제정비 외에 덩어리 규제개혁 추진과 유사행정규제 개선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을 수행하였는데, 2004년 8월 27일부터 2007년 9월 현재 다음과 같이 60개의 전략과제와 1671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74%의 완료율을 보여주고 있다(김정해 외, 2007). 이러한 과제들은 크게 창업 및 경영환경, 물류·유통, 건축·건설, 정보·통신·방송·금융 등 신산업, 교육·문화 및 관광, 고용·환경, 국민편의 이상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이러한 규제개혁기획단의 덩어리규제에 대한 개혁 활동은 2005년 9월 OECD 구조개혁 심포지엄에서 ‘민관합동 추진방식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유사행정규제의 집중적인 정비작업을 위해 2005년 1월 ‘유사행정 규제정비지침을 마련하고 29개 중앙행정기관의 총 509개 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행정규제 재정비를 추진한 결과, 초 754개 규정상 유사행정규제 2,297건을 검토하여 이중 1,006건(44%)를 정비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비대상 1,006건 중 257건(26%)을 폐지, 749건(74%)을 개선한 바 있다(규제개혁백서, 2006).

이러한 규제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합 덩어리 규제에 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 의하면(이종한 외, 2006), 건축 및 건설 분야의 규제개혁이 민간부문에 가장 큰 비용절감을 가져와 4,58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었고, 다음으로는 물류 및 유통분야 3,452억원, 정보통신·방송·금융 신산업분야는 3,12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최근 복합덩어리 규제개혁의 효과분석 결과(행정연구원·공주대, 2007)에 의하면, 산업별로는 연평균 0.02~0.58%의 가격하락 및 0.016~0.567%의 생산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거시 경제적으로는 연간 0.35%의 실질 GDP 증가('06년 기준 2.9조원 증가), 연간 34,946명의 고용 증가, 연간 11,634.6억원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되었다(국무조정실, 2007b).

5. 결 론

지금까지 2007년 규제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 측면의 성과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은 규제개혁 수단을 효율화하고 그 절차를 합리화하여 규제개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2007년 규제개혁도 규제 맵 확대, 행정부담 측정, 규제등록제도의 개선 등 선진적 규제 개혁 수단을 도입하고 확대한 점,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내실화한 점이 큰 특징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는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덩어리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그러한 전략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경제적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또한 참여 정부 규제개혁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이고 운영적인 보완도 요구된다. 다양한 규제개혁 수단들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의 결과가 일선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국민에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규제 및 사회적 규제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개혁 접근과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정책적 규제 분야의 일관된 규제개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조성한. (2006).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 감사원. (200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제규제 개혁 추진실태」. 특정과제감사보고서.
- 고영선·윤희숙·이주호. (2004).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 김정해·이혜영. (2007).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 김태호. (2000). 규제개혁의 성과와 반응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방민석. (2003). 「규제지도 작성에 관한 연구: 공장설립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 사공영호 외. (2000).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김대중 정부 2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1): 43-60.

- 이종한. (2006).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 이종한 외. (2006).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원 용역보고서.
- 이혜영·김정해. (2007).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6(2)
- 국무조정실. (2007a). 「2007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 국무조정실. (2007b).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 국무조정실. (2006).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
- 규제개혁백서. 2002~2007
-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
- APEC-OECD. (2005). 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
- BRTF. (2005). Routes to Better Regulation.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 Crandall, R. W. C. DeMuth, R. W. Hahn, R. E. Litan, P. S. Nivola and P. R. Portney. (1997). An Agenda for Federal Regulatory Reform. D. 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nd the Brookings Institution.
- OECD. (2006). Background Document on Regulatory Reform in OECD Countries.
- OECD. (2007).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Korea: Progress in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 OECD.
- OMB. (2003). Performance Measurement Challenges and Strategies.
- Vogel, D. (1996). Freer Markets, More Rules: Regulatory Reform i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제3절 2008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1006

1.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특징

새 정부의 규제개혁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확연히 다르게 추진될 것이다.

첫째, 대통령이 국가경쟁력강화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점검하고,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등 규제개혁을 국정 최고의 아젠다로 관리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국민정서와 정치논리가 우선시되어 핵심 정책성 규제들이 성역화 되었던 경우가 없지 않았으나 새정부에서는 모든 규제가 국민과 기업의 편의의 관점에서 존치여부가 검토될 것이다.

둘째,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방향을 단순한 법령정비, 건수위주의 축소 등에 그치지 않고, 규제와 관련된 「조직·인력·예산·IT기술」등 기능상의 조치도 병행하여 규제와 관련된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 한다.

셋째, 규제를 받는 입장에 있는 피규제자가 각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 하며,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성과금 지급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2.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 분담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파급효과가 큰 중요 규제개혁정책 및 과제를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이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중점관리과제의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 개별부처 소관 규제개혁 추진과제의

관리와 규제개혁 성과 평가에 중점을 두게 된다.

각 부처 주관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며 이 중 중요한 과제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정책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정현안정책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활용하며 필요시 규제개혁추진단과 국무총리실이 지원한다.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존규제 정비

복합덩어리 규제 정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동력 확충·국민편의 증진 등을 위한 개선과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할 방침이다.

부처 개별규제 정비는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감축하고, 수요자의 불필요한 부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저비용, 고품질」의 규제체제를 확립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였다.

기대효과와 편익에 비해 순응비용 및 부작용이 큰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고,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거나, 내용이 중복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규제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며, 지식정보화, 전자정부화, 기술발전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국제 관례나 국제기구와의 협약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은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전경련 규제개혁 건의과제」(07.10월 건의)에 대한 검토·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5단체로부터 주기적으로 공동건의과제 수렴할 예정이다.

4. 불합리한 규제신설 방지 및 규제품질 제고

신설·강화 규제중 이견이 크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 활용을 유도하고,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모델 보급·확대할 방침이다.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행정보고·조사 등 행정부담(GDP의 2~4%로 추정)의

체계적 감축을 추진하여 규제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노동생산성 및 경제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법률별로 「행정부담 측정메뉴얼」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한 후, 행정부담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목표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한다.

5.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추진기반 내실화

2007년도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을 토대로, 행정조사제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OECD와 APEC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 국제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주한미상공회의소 및 주한유럽상공회의소로부터 상시적으로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수렴·처리하는 등 주한외국경제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설·강화규제가 등록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처가 미등록 규제를 발굴·추가등록토록 유도하며, 국민과 기업 등에게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규제분야에 대한 규제맵 작성을 2007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기고

새 정부의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규제의 통과비용 분석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새 정부의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근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놓여있다. 유가와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대외여건이 불안한 상황이며, 물가상승 및 경상수지 적자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다른 한편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무대로 통합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새 정부에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 경제계의 입장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의 현 상황과 규제개혁 필요성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3위, 수출은 3천억 달러를 돌파한 세계 11위로 선진국 못지않은 외형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4%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는 등 경제조로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각 기관의 현재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한국은행, KDI 등이 4% 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4% 초반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경제 기반이 잠식당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고비용 구조가 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도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우리 경제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하는 데 필요한 혁신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 하겠다.

1011

현재 국내 경제상황은 내부적으로 효율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발전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율주도형 성장전략 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러, 생산성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부문별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수준을 기준으로 2만 달러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소주도형이나 효율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 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외부적으로 세계경제의 통합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물론 우리 경제가 성장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내 경기부양 등 거시적인 정책 대응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같이 정부의 거시정책 조정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사회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은 낮은 국가들보다 소득수준, 경제 성장률, 실업률, 소득 불평등도, 정치적 자유도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08 세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157개국 중 41위로 지난해 36위보다 5계단 추락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는 경제자유도를 측정하는 주요항목인 금융시장, 정부의 시장개입, 각종 기업규제, 노동 유연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 기업환경 보고서(2008 Doing Business)'를 보면 한국의 기업환경은 세계 30위로 전년보다 7단계 하락했다. 이는 싱가포르(1위), 홍콩(4위), 일본(12위)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 훨씬 못 미치고 태국(15위)보다도 떨어지는 순위이다. 특히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창업과 고용환경 순위는 각각 110위와 131위로 국내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이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 친화적 방향의 정책과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제가 스위스 국제경영 개발원(IMD)이 조사한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자유화됐다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경제성장률이 매년 0.47%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규제개혁 추진 환경과 규제개혁 방향

새 정부 들어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최고 아젠다로 선정하여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실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추진조직을 체계화하였다.

경제계가 건의한 대로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했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규제개혁을 점검하기로 했다. 여기에서는 다수부처 관련 과제나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 심사, 규제정보 관리 및 개별부처 단위의 규제개혁, 규제개혁관련 제도 개편·운영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규제개혁에 대한 국정 책임자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은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볼 때 규제개혁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의지에 비해 성과는 상당부분 미흡했다. 규제개혁이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생각보다 쉽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추진방식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 전면적인 개혁방식이 아니라 치밀한 평가 없이 건수 위주의 단기적 목표달성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규제개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규제를 비롯하여 각종 공장입지, 금융, 주택·건설, 노동 등의 분야에서 현장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또한 금산분리 규제나 지주회사 규제, 각종 집단 소송제 등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한 규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글로벌화로 국가간 생산물과 요소,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국내규제가 외국보다 과도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오히려 역차별하는 부작용을 낳아 국제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기업 규제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중대형 수준인 우리 대기업에 대해 국내시각에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막고 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진입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진입규제를 영미국가 수준으로 낮추면 설비투자가 6.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과 금융·사업서비스업에 전체 규제부담의 46%가 집중되어 서비스업종의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개혁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발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부터 정부, 전국상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애로 현장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가 개선하기로 한 규제개혁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보도되었지만 법령이 개정되어 실제로 시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로 법안 한 개가 통과되는 데 소요된 시간이 14대 국회는 75.6일, 15대는 100.6일, 16대 186.9일, 17대는 242.5일로 계속 느려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외국자본이나 국내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최근 역대 국회별 법안 통과 소요시간 >

역대 국회	14대	15대	16대	17대
소요 시간	75.6일	100.6일	186.9일	242.5일

이처럼 후속조치가 느린 이유는 상정된 법안 자체가 일부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도 있지만, 법안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한참동안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 등 각종 정책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는 규제심사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못지않게 지자체의 규제개혁도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대한상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이 느끼는 지자체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73%가 성과가 거의 없다고 응답했으며,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으로 지자체(75%)를 꼽은 기업이 중앙정부(25%)를 꼽은 기업보다 많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규제개혁 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고, 규제개혁 이행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자체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동일 규제라도 대기업보다 비용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분석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보호시스템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1976년 중소기업청(SBA)내 중소기업 규제개혁 전담기관인 규제개혁실(Office of Advocacy)을 신설하고,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법률(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시행하여 2003년에 63억 달러의 규제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설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추가하고,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관련 부처가 수집하고 이를 국회나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제도상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보완하여 이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규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틀은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등록제도, 규제일몰제, 규제법률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시스템에 의해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입법취지를 구현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일몰제는 제도는 도입되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1년 4월부터 2006년 말까지 정부가 제출한 중요 규제 2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70% 내외가 규제 비용과 편익,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분석이 아예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상의회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1997년 이후 신설된 규제 2,549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48건(1.9%)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새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경제계 입장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해보았다. 세계은행의 연구결과를 보면 규제개혁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새정부 출범후 1년 남짓 이내에 규제개혁을 단행했다고 한다. 또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규제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간파하고 규제개혁을 국가의 거시적 운용전략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가 ‘개혁없이 성장없다’는 기본 이념으로 규제개혁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장기불황을 극복한 예가 대표적이다.

이런 점에 새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신속하고 강력하게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새정부는 그동안의 활동에서 보듯이 친기업적인 정부(Business-friendly Government)로서 앞으로 이에 걸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년 후 새정부가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규제개혁을 가장 잘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규제의 통과비용 분석

김종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I. 연구배경 및 목적

민간부문이 확대되고 시장기능이 활성화 될수록 정부규제가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규제의 역효과를 인식한 우리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국민의 정부는 규제의 수를 50% 이상 줄이는 등 규제의 양적 측면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고, 참여정부는 규제개선 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질 위주의 규제완화로 정책목표를 전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의 규제완화 체감도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연구는 규제완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규제완화에 따른 피규제자의 실질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에 의해 피규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완화정책을 평가할 경우 완화 혹은 감소된 등록규제의 수가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양적인 접근법으로는 규제완화로 인해 감소되는 피규제자의 부담이라는 규제완화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사업단계와 규제강도에 따라 분류하고, 피규제자가 어떠한 규제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각 유형별로 비교함으로써 규제수단에 따른 실질적인 규제부담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기업운영에 따른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국가별로 비교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는 기업활동을 크게 창업, 기업운영, 폐업 등 세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본보고서에서는 규제에 따른 부담이 비교적 제한적인 폐업 단계를 제외한 창업과 기업운영 활동과 관련된 규제들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의 기회비용과 금전적 비용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특히 규제통과를 위한 서류 등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과 준비서류 제출 후 해당 관청으로부터 규제통과를 통보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분해서 측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규제의 통과비용 측정모형 설정 및 비용측정

1. 규제의 통과비용 측정모형 설정

규제의 통과비용 측정을 위한 업종선택에 있어서 해당업종의 창업 비중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은 음식료품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등 2개 업종, 서비스산업은 골프장, 관광숙박업의 2개 업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업종의 협회의 도움으로 업종별로 20여개 내외의 대표 업체를 선정하였다.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의 통과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규제를 창업, 기업운영, 폐업 등 기업의 활동과정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세가지 기업활동 단계 가운데 규제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창업과 기업운영 활동에 대해 규제 통과비용 측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창업은 창업 유형에 따라 단계별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반면 기업 운영관련 규제는 각 업종에 공통된 환경, 시설안전, 소방 검사 등과 각 업종별 고유 활동에 초점을 맞춰 관련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창업 유형에 있어서 제조업 공장의 건설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와 산업단지내 건설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반면 골프장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설치에 의해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관광사업 계획 혹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승인 받거나, 관광단지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한다.

창업의 단계별 규제들은

- 1) 제조업공장의 경우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준비, 공장설립승인(혹은 입주계약, 사전 결정), 감리, 건축허가, 시공, 사용승인, 등록 등의 단계를 거치고,
- 2) 골프장의 경우 입지선정, 도시관리계획결정, 사업시행자지정, 사업승인준비, 도시 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감시, 시공, 등록 등의 단계를 거치고,
- 3)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입지선정(지구단위계획수립,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 사업계획 승인, 사전결정, 건축허가, 감리, 시공, 사용승인, 등록 등의 단계를 거친다.

한편 상기 단계별 규제들의 규제 강도에 따른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그 규제 유형에는 가장 규제강도가 높은 사전승인규제부터 투입기준규제, 산출기준규제 그리고 규제강도가 가장 낮은 정보규제 등이 있다. 사전승인규제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 투입기준규제에는 검사·금지, 산출기준규제에는 명령, 정보규제에는 신고의무·등록의무·제출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Ⅲ. 규제의 통과비용 측정결과

1. 규제의 통과비용 측정 방법

기업을 창업할 때의 규제 통과비용 측정을 위해 각 업종별로 창업유형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 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무선을 이용하여 설문 응답을 받았다. 기업운영의 경우, 업종별 공통 규제(환경규제, 시설안전규제, 소방규제 등)와 업종별 고유 규제의 통과비용 측정을 위해 각 업종별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 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무선을 이용하여 설문 응답을 받았다.

규제리스트 상의 규제통과 비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변수로는 해당 기업이 창업 및 운영 과정에서 정부규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한 시간의 기회비용과 금전적비용을 측정하였다. 특히 규제통과를 위한 서류 등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과 준비 서류 제출 후 해당 관청으로부터 규제통과를 통보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분하였다. 다만, 상당수의 기업은 규제통과를 위해 소요된 금전적 비용을 기업의 기밀사항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설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금전적 비용항목을 제외한 소요기간에 대한 설문에만 응하였다. 이 경우에는 당해연도 해당 업종에서의 임금율을 고려하여 규제통과 금전적비용을 추정하였음을 밝혀둔다.

2. 규제의 통과비용 측정 결과

가. 기업 창업 부문

음식료제조업의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준비 단계’를 통과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여기서 수도권공장신설등의제한 규제가 공장건설에 가장 많은 시간적 부담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도권공장신설 제한

규제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직접적으로 규제를 통과하는데 따른 비용이 아니라 규제통과를 위한 준비 작업에 소요된 시간이었다.¹⁾ 규제통과를 위한 금전적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준비 단계’에서 가장 높은 금전적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여기서는 환경, 재해, 교통영향성 검토 규제를 통과하는데 가장 많은 금전적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산업단지 내 음식료제조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동차부품제조업의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입지선정및사업승인준비 단계’의 규제를 통과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으며, 여기에는 수도권공장신설 제한 규제 및 환경, 재해, 교통영향성검토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규제통과 금전적비용의 경우도 규제통과 시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준비단계’에 가장 높은 금전적비용이 소요되었다. 산업단지 내 공장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단계에서의 규제를 통과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건설에 있어서는 사업승인준비 단계에서 규제통과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환경, 재해, 교통영향성검토 규제가 골프장 건설에 가장 많은 시간적 부담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숙박시설을 관광사업계획승인에 의해 건설하는 경우, 관광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건설 단계에서는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준비 단계에서 규제통과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규제통과 위한 금전적비용의 경우는 등록 단계와 사용승인 단계에서 가장 높은 금전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단계를 통과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제를 포함하는 사용승인 단계와 환경, 재해, 교통영향성 검토 규제를 포함하는 사업승인준비 단계에서 가장 많은 금전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관광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준비 단계에서 규제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전비용은 환경, 재해, 교통영향성검토 규제를 포함한 사업승인준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었다.

1)참고로, 규제통과를 위한 서류 준비 등 작업에 소요된 시간이 정부규제를 직접 통과하는 시간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은 음식료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서 그리고 모든 유형의 건설 단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기업 운영 부문

기업 운영 관련 규제는 첫째 환경규제, 시설안전규제, 소방규제 등과 같이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선정하고, 둘째로 해당 업종에서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제를 선정하여 이들 규제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및 금전적비용을 조사하였다.²⁾

IV. 규제의 통과비용 분석

1. 규제 유형별 규제통과비용 분석

가. 창업시 유형별 규제통과 비용의 산업별 비교(종합)

(1) 유형별 규제통과 시간

규제 유형별 규제통과 시간을 산업별·유형별로 정리한 <표 IV-1>에 따르면 동의 유형을 통과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동의 유형에는 문화재지표조사 규제, 환경, 재해, 교통영향성 검토 규제, 문화재보존조치 규제, 현상변경허가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의 유형 다음으로는 인가 유형, 지정 유형, 금지 유형, 허가 유형 순으로 규제통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에서 세 번째로 통과시간이 많이 걸리는 금지 유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규제강도가 가장 강한 사전승인 규제이다.

유형별 규제통과 시간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골프장을 창업할 때의 규제통과 평균시간이 1,211일로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숙박시설, 자동차부품공장, 음식료 공장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등 서비스산업 부문을 창업 하거나 건설할 때의 규제통과시간이 제조업 부문에서의 창업 때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기업 운영과 관련된 업종별 규제통과 시간 및 금전비용은 다음 장인 “IV. 규제의 통과비용 분석”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표 IV-1> 창업시 유형별 규제통과에 소요되는 시간 : 산업별

규제 유형		평균 소요 시간 (단위:일)								개별 유형 평균
		골프장 (8개업체)	관광숙박업 (11개업체)			자동차(부품) 제조업 (10개업체)		음식료제조업 (10개업체)		
			사업계획 승인 (5개)	2종지구 단위계획 (2개)	관광 단지 (4개)	500㎡ 이상 (4개)	산업 단지 (6개)	500㎡ 이상 (4개)	산업 단지 (6개)	
사전 승인 규제	허가	138 (1)	177 (3)	142 (2)	93 (2)	56 (1)	64 (2)	31 (1)	75 (2)	57
	인가	178 (1)								178
	승인		130 (2)	179 (2)	116 (3)	107 (2)	25 (2)	59 (2)	27 (2)	37
	지정	99 (1)		240 (1)						128
	동의	729 (3)	120 (2)	180 (1)	165 (1)	128 (1)		65 (2)		183
투입 기준 규제	검사	33 (1)								33
	금지					135 (1)		65 (1)		112
산출 기준 규제	명령	49 (1)	90 (1)							55
정보 규제	신고 의무	38 (1)	38 (1)	84 (1)	30 (1)	31 (1)	11 (1)	16 (1)	11 (1)	28
	등록 의무	66 (1)	98 (1)	75 (1)	33 (1)	31 (1)	11 (1)	24 (1)	10 (1)	42
	제출 의무	12 (1)								12
산업별 업체 평균		1,211 (11)	428 (10)	779 (8)	291 (8)	488 (7)	107 (6)	188 (8)	112 (6)	

주 : 산업의 업체평균은 각 업종의 기업들의 규제통과 시간의 평균으로, 각 유형의 합과는 다를 수 있음.

(2) 유형별 규제통과 금전적 비용

규제 유형별 규제통과 금전적비용을 살펴보면 동의 유형(문화재지표조사 규제, 환경, 재해, 교통영향성 검토 규제, 문화재보존조치 규제, 현상변경허가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과하는데 가장 많은 금전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결정 유형 다음으로는 지정 유형, 인가 유형, 명령 유형, 허가 유형 순으로 금전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에서 유형별 규제통과 금전적비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규제통과 시간과 마찬가지로 골프장을 창업할 때 규제통과 금전적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숙박시설, 자동차부품제조업, 음식료제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규제통과 금전비용의 경우도 규제통과 시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등 서비스산업 부문 창업시의 규제통과 금전적비용이 제조업 부문 창업때 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 창업시 유형별 규제통과에 소요되는 금전적비용 : 산업별

규제 유형		평균 소요 비용 (단위:만원)								개별 유형평균
		골프장 (8개업체)	관광숙박업 (11개업체)			자동차(부품) 제조업 (10개업체)		음식료제조업 (10개업체)		
			사업계획 승인 (5개)	2종지구 단위계획 (2개)	관광 단지 (4개)	500㎡ 이상 (4개)	산업 단지 (6개)	500㎡ 이상 (4개)	산업 단지 (6개)	
사전 승인 규제	허가	10,333 (1)	600 (3)	629 (2)	435 (2)	293 (1)	2,590 (2)	104 (1)	4,469 (2)	2,100
	인가	5,500 (1)								5,500
	승인		3,071 (2)	11,419(2)	594 (3)	2,510 (2)	69 (2)	658 (2)	423 (2)	874
	지정	15,750 (2)		2,400 (1)						13,080
	동의	58,250 (3)	2,140 (2)	6,000 (1)	18,500 (1)	2,333 (1)		2,400 (2)		13,306
투입 기준 규제	검사	96 (1)								96
	금지					550 (1)		339 (1)		480
산출 기준 규제	명령	3,500 (1)	419 (1)							3,060
정보 규제	신고 의무	329 (1)	141 (1)	349 (1)	105 (1)	1,075 (1)	32 (1)	42 (1)	234 (1)	267
	등록 의무	393 (1)	3,000 (1)	5,500 (1)	6,000 (1)	2,500 (1)	36 (1)	140 (1)	147 (1)	1,661
	제출 의무	69 (1)								69
산업별 업체 평균		83,053 (11)	7,058 (10)	23,158 (8)	16,104 (8)	9,261 (7)	2,719 (6)	2,813 (8)	4,899 (6)	

주 : 산업의 업체평균은 각 업종의 기업들의 규제통과 시간의 평균으로, 각 유형의 합과는 다를 수 있음.

나. 창업시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 규제통과 비용 분석

수도권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가 비수도권에서보다 더 많은 규제통과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규제통과부담의 차이는 사업 시행자지정 단계에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규제통과에서 많이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이같은 차이는 규제의 직접통과비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규제통과를 위한 제반 서류 등의 준비에 소요된 시간 및 비용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에서 500㎡ 이상의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가 비수도권에서보다 더 많은 규제통과 시간 및 금전적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준비 단계에서의 환경, 재해, 교통영향성 검토 규제와 공장설립승인 단계에서 기인하고 있다. 반면 공장면적 500㎡이상인 경우와는 달리,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가 비수도권에서 보다 규제통과 시간 및 금전적비용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수도권 공장신설 제한 등 입지선정과 관련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규제통과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기업 운영과 관련된 유형별 규제통과비용 분석

(1) 유형별 규제통과 비용 분석

설문대상 전제 업종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환경규제, 시설안전규제, 소방규제의 규제 유형은 기준설정이다. 여기서 기준설정은 규제 강도가 가장 낮은 정보규제 해당되는데, 기준설정 유형의 규제들 가운데 환경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업종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료품공장의 운영에만 관련된 규제들 가운데 품목개발신고 규제는 신고 유형, 시제품규격검사 규제는 검사 유형, 생산실적보고 규제는 보고 유형에 해당된다. 신고와 보고는 규제강도가 가장 낮은 정보규제에 포함되고, 검사는 두 번째로 규제강도가 강한 투입기준규제에 포함되는데, 규제의 유형에 따른 규제통과 비용과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의 운영에만 관련된 규제들 가운데 변경허가 규제는 승인 유형, 농약사용보고 규제는 보고 유형, 오수처리시설용량변경 규제는 신고 유형에 해당된다. 신고와 보고는 규제강도가 가장 낮은 정보규제에 포함되고, 승인은 규제강도가 가장 강한 사전승인규제에 포함된다. 사전승인 규제에 해당되는 변경허가를 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너무 강한 규제에 의해 골프장들이 변경허가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관광숙박업의 운영에만 관련된 규제는 승인에 해당되는 구조변경인데, 승인 규제는 규제강도가 가장 강한 사전승인규제에 포함된다.

(2) 유형별 규제통과 비용의 산업별 비교

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의 유형은 승인, 검사, 신고의무, 보고의무, 기준설정 등이 있다. 여기서 승인은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사전승인 규제로 분류되고, 검사는 두 번째로 규제 강도가 높은 투입기준 규제로 분류되고, 신고의무, 보고의무, 기준설정 등은 규제 강도가 가장 낮은 정보 규제로 분류된다. 운영규제는 창업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정보 규제로 분류되는 규제 유형이 많은 편이다.

유형별 규제통과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업별로 비교한 <표 IV-3>에 따르면, 신고의무 유형을 통과하는데 33일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 용량 변경에 업제 평균보다 긴 60일(골프장)이 소요되면서 신고유형의 평균을 높였기 때문이다. 규제 통과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별에 있어서도 기준설정 유형만을 갖고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산업별로도 크게 차이가 없음.

<표 IV-3> 기업 운영시 유형별 규제통과에 소요되는 시간 : 산업별

규제 유형		평균 소요 시간 (단위:일)				유형별 평균
		골프장 (5개업체)	관광숙박업 (5개업체)	자동차 부품제조업 (10개업체)	음식료 제조업 (10개업체)	
사전승인규제	승 인	-	19	-	-	19
투입기준규제	검 사	-	-	-	12	12
산출기준규제	기준설정	48	32	7	19	27
정보규제	신고의무	60	-	-	5	33
	보고의무	2	-	-	9	6
산업별 업체 평균		60	39	7	35	

주 : 산업의 업체평균은 각 업종의 기업들의 규제통과 시간의 평균으로, 각 유형의 합과는 다를 수 있음.

유형별 규제통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별로 비교한 <표 IV-4>에 따르면, 기준설정 유형을 통과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인 5천963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기준설정에 환경, 시설안전, 소방 검사 등 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업체는 이들 검사를 위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골프장은 기준설정 유형을 통과하는데 가장 높은 비용인 1억1,681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잔디예지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환경검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IV-4> 운영시 유형별 규제통과에 소요되는 금전적비용 : 산업별

규제 유형		평균 소요 비용 (단위:만원)				
		골프장 (5개업체)	관광숙박업 (5개업체)	자동차 부품제조업 (10개업체)	음식료 제조업 (10개업체)	유형별 평균
사전승인규제	승 인	-	95	-	-	95
투입기준규제	검 사	-	-	-	28	28
산출기준규제	기준설정	11,112	995	7,650	4,094	5,963
정보규제	신고의무	845	-	-	48	196
	보고의무	2,500	-	-	48	1,274
산업별 업체 평균		11,681	1,033	7,650	4,170	

주 : 산업의 업체평균은 각 업종의 기업들의 규제통과 시간의 평균으로, 각 유형의 합과는 다를 수 있음.

2.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 상의 비교

가. 개별입지 공장승인 평균소요시간-공장승인신청에서 공장승인까지

<표 IV-5> 연도별 공장승인 평균 소요시간 : 개별입지

연도	전체 표본	기업규모별			지역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2003	41.4	41.3	45.2	31.7	53.7	28.3
2004	29.6	28.7	56.3	3.5	33.7	25.5
2005	27.5	27.4	31.8	4.5	32.1	23.4
2006	20.0	19.9	17.9	93.7	22.5	18.6
2007	15.2	15.2	14.8	-	12.1	17.3

개별입지의 연도별 공장승인의 평균 소요시간을 분석한 <표 IV-5>에 따르면 전체 표본에 대한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승인 평균 소요시간은 200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다. 전체 표본의 추이와 마찬가지로 소기업이나 중기업 공장의 승인에 소요되는 평균 일수는 2003년 이후부터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2003~2005년까지는 소기업에 비하여 중기업의 공장승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중기업에 비하여 소기업의 공장승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승인신청 연도에 관계없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수도권에서 공장승인에 평균적으로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5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장승인 평균소요일수의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하여 2007년엔 수도권의 공장승인 평균소요일이 오히려 더 짧아졌다.

나. 계획입지 공장승인 평균소요시간-공장승인신청에서 공장승인까지

<표 IV-6> 연도별 공장승인 평균 소요시간: 계획입지

연도	전체 표본	기업규모별			지역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2003	5.9	6.0	3.9	5.0	5.3	6.7
2004	4.4	4.3	6.8	1.7	5.2	3.4
2005	4.8	4.9	4.0	0.0	5.7	4.3
2006	6.1	6.1	7.0	0.0	3.5	6.5
2007	6.9	6.2	19.1	0.0	13.1	6.5

계획입지의 연도별 공장승인의 평균 소요시간을 분석한 <표 IV-6>에 따르면, 전체 표본에 대한 계획입지 공장승인 평균 소요시간은 2003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6 이후 다시 증가였다. 한편 2007년의 경우 중기업 규모의 공장승인에 소요된 평균 일수가 전년의 7일보다 12.1일 증가한 19.1일을 기록. 그러나 이는 작은 표본수에서 기인한 selection bias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개별입지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공장승인에 평균적으로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계획입지의 경우엔 수도권과 비수권의 차이가 연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반면 2005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장승인 평균소요일수의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하여 2007년엔 수도권의 공장승인 평균소요일이 오히려 더 짧아졌다.

3. 법정처리기한 변화추이 분석에 의한 비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통과 시간을 과거 정부와 비교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정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7>에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정처리기한의 변화 상황이 정리되어 있는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법정처리기한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등록 단계에서의 공장등록 처리일이 7일에서 3일로 감소되었고, 공장설립승인 단계에서의 공장설립승인 처리일은 45일에서 30일을 감소한 후에 다시 20일로 감소되었다. 한편 입주계약 단계에서의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교부일은 10일에서 5일로 감소하였다.

<표 IV-7> 창업 단계별 법정처리기한 변화 및 신설

단계	단계별 절차	개정내용 (소요일)	개정일시	관계법령
입주계약단계	입주계약	입주계약확인서교부 : 10일→5일	2006.9.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사업계획 승인단계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 7일(신설)	2005.5.3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장설립 승인단계	공장설립 승인	공장설립승인 : 45일→30일	2003.7.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공장설립승인 : 30일→20일	2005.3.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록단계	공장등록	공장등록 : 7일→3일	2005.3.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4. 등록된 규제의 유형별·연도별 증감추이 분석

규제의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규제 강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IV-8>는 등록규제건수의 증감에 따른 유형별 규제의 구성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감소한 2,923건의 등록규제 가운데, 규제 수준이 가장 약한 정보규제가 48.5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규제 강도가 가장 강한 사전승인규제가 25.80%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참여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산출기준규제의 비율이 58.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강도가 가장 낮은 정보규제가 20.42%를 차지했다.

<표 IV-8> 유형별 규제의 증감

	국민의 정부 ('98.8-'03.2)		참여정부 ('03.3-'06.12)		전체 ('98.8-'06.12)	
	증감수	비율	증감수	비율	증감수	비율
사전승인규제	-754	25.80%	21	7.27%	-733	27.83%
투입기준규제	-280	9.58%	40	13.84%	-240	9.11%
산출기준규제	-470	16.08%	169	58.48%	-301	11.43%
정보 규제	-1,419	48.55%	59	20.42%	-1,360	51.63%
합계	-2,923	100%	289	100%	-2,634	100%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규제등록통계 DB(각연도)

유형별 규제의 비율 변화에 따른 규제 강도의 변화로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실질 규제부담 총량'과 '규제수준지수'라는 개념을 채용하여 규제개혁 성과를 파악해 보았다. '실질 규제부담 총량'과 '규제수준지수'는 규제의 신설과 폐지 뿐만 아니라 규제가 완화된 측면과 강화된 측면도 감안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정도를 보다 정확히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으로, 각 정부의 '실질 규제부담 총량'과 '규제수준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실질 규제부담 총량

$$= (\text{사전승인규제} \times \text{가중치}) + (\text{투입기준규제} \times \text{가중치}) + (\text{산출기준규제} \times \text{가중치}) + (\text{정부규제} \times \text{가중치})$$

- 규제수준지수

$$= (\text{사전승인규제 비율} \times \text{가중치}) + (\text{투입기준규제 비율} \times \text{가중치}) + (\text{산출기준규제 비율} \times \text{가중치}) + (\text{정부규제 비율} \times \text{가중치})$$

위와 같이 정의되는 '실질 규제부담 총량'의 유형별 규제의 강도를 고려한 등록규제 건수를 의미하고, '규제수준지수'는 유형별 규제의 비율에 따른 등록규제의 상대적 강도를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실질 규제부담 총량'과 '규제수준지수'에서 사용된 가중치를 사전적으로 가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통과비용에서 실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가중치를 추정하였다.

〈표 IV-9〉에는 각 유형별 규제통과 시간·비용 및 규제통과 시간의 비율에 따른 가중치가 정리되어 있다. 참고로 산업별, 동일 산업내에서도 기업 규모별로 규제통과 비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산업별, 기업 규모별 편차가 작은 규제통과 시간에 기초해 규제유형별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규제통과 시간에 따른 사전승인규제, 투입기준규제, 산출기준규제, 정보규제의 비율은 1.00: 0.78: 0.64: 0.38로 기존 연구들에서 사전적으로 가정한 비율인 1.00: 0.75: 0.50: 0.25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규제유형별 통과 시간·비용 및 가중치

규제유형		평균시간(일)		가중치	평균금액(만원)	
사전승인규제	허가	57	86	1.00	2,100	4,783
	인가	178			5,500	
	승인	37			874	
	지정	128			13,080	
	동의	183			13,306	
투입기준규제	검사	33	67	0.78	96	260
	금지	112			480	
산출기준규제	명령	55	55	0.64	3,060	3,060
정보규제	신고	28	33	0.38	267	881
	등록	42			1,661	
	제출	12			69	

* 규제통과 시간·비용에는 각종 서류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포함

* 금지는 수도권 공장설립 제한, 동의는 환경영향평가, 지정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인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을 포함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

규제유형별 통과시간 기준 가중치에 유형별 규제수를 적용하여 규제로 인한 실질부담 총량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는 규제수가 27.27% 줄어든 결과 실질부담 총량도 25.7% 감소하였으나, 건수 중심의 규제개혁이 완료된 2000년 이후에는 규제수는 9.4%, 실질부담총량은 9.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참여정부에서 등록규제 건수는 3.71% 증가했고, 규제증가로 인한 실질부담총량은 3.5% 증가하였다.

도출된 규제유형별 통과시간 기준 가중치에 유형별 규제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규제수준 지수를 산출한 〈표 IV-10〉의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는 등록규제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규제의 비율에 따른 규제 강도를 나타내는 규제수준지수가 0.674에서 0.672로, 0.3% 감소하는 등 규제의 강도가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등록규제건수가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수준지수는 0.659에서 0.674로,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제수준지수의 변화 추이는 참여정부에서 등록규제건수의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강도가 약한 규제유형이 주로 증가하여, 등록규제건수의 변화가 통제되었을 때 전반적 규제강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표 IV-10>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규제수준지수 변화 추이

구 분	국민의 정부(98. 8 ~ 03. 2)				참여정부(03. 3 ~ 06. 12)					
	98. 8		99. 12		03. 2		04. 12		06. 12	
	규제수	비중	규제수	비중	규제수	비중	규제수	비중	규제수	비중
사전승인	2,561	0.24	1,731	0.24	1,807	0.23	1,762	0.22	1,828	0.23
투입기준	1,378	0.13	986	0.14	1,098	0.14	1,121	0.14	1,138	0.14
산출기준	3,274	0.31	2,342	0.33	2,804	0.36	2,892	0.37	2,973	0.37
정보규제	3,504	0.33	2,068	0.29	2,085	0.27	2,071	0.26	2,144	0.27
합 계	10,717	1	7,127	1	7,794	1	7,846	1	8,083	1
규제수준지수	0.659		0.671		0.674		0.672		0.672	
규제수준지수 증감율	1.8%		0.4%		- 0.3%					
	2.3%									

5. 국가 간 규제통과 시간 및 비용의 비교

국가 간에는 규제 및 제도가 서로 다르고 또한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과하는 시간 및 비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유사한 업종일지라도 외국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업체가 외국에 투자하여 외국에 공장 등을 건설한 업체를 상대로 규제통과 비용을 검토하기로 하기로 하고, 규제통과비용 대상 업체로서 제조업 A社를 선정하였다. 제조업 A社는 참여정부 기간 동안 경기도 B시에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또한 폴란드의 C에도 동종 공장을 건설하였기 때문이다.

제조업 A社가 경기도 B市와 폴란드 C에 공장을 짓는데 있어서 제조업A Poland와 폴란드정부가 MOU를 체결하고 준공식을 갖는 데까지 약 20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는 제조업 A社의 경기도 B市 공장의 29개월보다 약 9개월이 덜 소요된 것이다. 반면 MOU를 체결하고 산업단지 기공식을 갖는 데까지 약 16개월이 소요되서, 제조업A의 경기도 B市 공장의 경우보다 약 3개월이 더 소요되었다.

경기도 B市와 폴란드의 공장운영과 관련된 환경·시설안전·소방규제들 가운데 서로 공통된 항목들을 비교해보면, 폴란드 공장에 비해서 경기도 B市 공장에서 더 높은 규제통과 시간 및 비용이 관찰되었다. 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경기도 B市 공장의 대기오염 측정, 수질오염 측정, 방사선 안전점검 등의 규제를 통과하는데 더 높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규제의 경우 경기도 B市와 폴란드 모두 해당 공장의 운영과 관련된 규제들 가운데 가장 높은 규제통과시간 및 비용을 기록하였다. 한편 해당 공장의 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의 상대적인 통과비용을 고려했을 경우, 폴란드의 소방규제 통과비용 및 시간이 경기도 B市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32

V. 결어 : 정책적 시사점

1. 단계별·유형별 규제

음식료 및 자동차부품제조업, 골프장, 관광숙박시설을 창업할 때의 기업활동 단계별 규제통과 시간 및 비용을 살펴보면 정부규제를 직접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보다는 정부규제를 통과하기 위하여 서류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제의 유형에 따른 규제통과 부담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음식료 및 자동차부품제조업, 골프장, 관광숙박시설을 창업할 때, 동의 유형을 통과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인 평균 328일이 소요되었다. 동의 유형에는 문화재지표조사 규제, 환경, 재해, 교통영향성검토 규제, 문화재보존조치 규제, 현상변경허가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의 유형 다음으로는 인가 유형, 지정 유형, 금지 유형, 허가 유형 순으로 규제통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금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는 모두가 사전승인 규제이다. 따라서 사전승인 규제가 기업의 창업 및 건설에 가장 많은 시간적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등 서비스산업 부문에서의 창업시의 규제통과 시간 및 금전적비용이 제조업 부문에서의 창업때 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규제통과의 금전적비용의 경우 결정 유형을 통과하는데 가장 많은 금전적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결정 유형은 도시관리계획결정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결정 유형은 골프장을 도시관리계획시설설치에 의해 건설할 때만 적용되는 규제 유형이다. 결정 유형 다음으로는 동의 유형, 지정 유형, 승인 유형, 인가 유형, 허가 유형 순으로 규제통과 금전적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골프장 건설에 규제통과 시간 및 금전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는 골프장 간에 규제통과 시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골프장 창업을 위한 인허가를 받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구조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을 창업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토지구입 가격 임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토지구입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금융비용이 높아지게 되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낼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구입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토지가격이 저렴한 산악지형이나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물색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격이 저렴한 토지, 즉 좋지 않은 토지를 물색하다 보니 환경, 임상 등 제반 인허가 규정에 저촉이 되는 것이며, 또한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역별 규제

기업의 창업과 관련된 규제통과 시간 및 금전비용의 경우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의 규제통과 시간 및 비용이 비수도권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골프장은 사업시행자지정 단계에서, 공장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은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준비 단계에서, 산업단지 내에 공장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건설할 경우는 시간 및 금전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규제가 배제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처럼 건축허가 단계에서 규제통과 시간 및 금전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 보다 규제통과에 더 적극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등록규제의 강도 변화 추이

유형별 규제의 비율 변화에 따른 규제 강도의 변화로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본연구에서는 i) 유형별 규제의 강도를 고려한 등록규제건수를 의미하는 ‘실질 규제부담 총량’, ii) 등록규제건수의 증감과 관계없이 유형별 규제의 상대적 비율에 따른 등록규제의 강도를 의미하는 ‘규제수준지수’를 산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실질 규제부담 총량’과 ‘규제수준지수’에서 사용된 가중치를 사전적으로 가정(사전승인규제, 투입기준규제, 산출기준규제, 정보규제의 비율을 1.00: 0.75: 0.50: 0.25)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통과비용에서 실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가중치를 추정하였다(유형별 규제의 가중치를 1.00: 0.78: 0.64: 0.38).

규제유형별 통과시간 기준 가중치에 유형별 규제수를 적용하여 규제에 의한 실질부담 총량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는 규제수가 27.27% 줄어든 결과 실질부담 총량도 25.7% 감소하였으나, 건수 중심의 규제개혁이 완료된 2000년 이후에는 규제수는 9.4%, 실질부담총량은 9.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참여정부에서 등록규제 건수는 3.71% 증가했고, 규제증가로 인한 실질부담총량은 3.5% 증가하였다.

도출된 규제유형별 통과시간 기준 가중치에 유형별 규제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규제수준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는 등록규제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규제의 비율에 따른 규제 강도를 나타내는 규제수준지수가 0.674에서 0.672로, 0.3% 감소하는 등 규제의 강도가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등록규제건수가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수준지수는 0.659에서 0.674로,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제수준지수의 변화 추이는 참여정부에서 등록규제건수의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강도가 약한 규제유형이 주로 증가하여, 등록규제건수의 변화가 통제되었을 때 전반적 규제강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1.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개요 및 대상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추진된 덩어리 규제의 개혁작업은 ‘전략과제’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획단이 조직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2006년도에 이미 한 번 실시되었다. 당시 분석대상 과제는 2004년 8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기획단이 추진한 40개 전략과제들 중에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7개 전략과제의 30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정작 규제개혁으로 인한 기업, 정부, 소비자 등 비용절감 효과가 시산된 과제는 76건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편으로 당시의 분석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분석대상을 전체 전략과제를 포괄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2007년말까지 추가적으로 추진된 과제들을 포함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석작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7년 하반기에 규제개혁기획단이 당시까지 추진한 전체 56개 전략과제, 1,641개 세부과제에 대한 규제개혁 효과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추진한 세부과제들 모두가 규제로 분류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분석 초기단계에서부터 결정해야 했다. 비규제로 분류된 과제수는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817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들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책이 대부분이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피규제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제로 등록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업민원 대행업무의 확대와 같은 조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내용에서는 피규제자들의 규제준수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규제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분석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로 분류되지 않는 과제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 당시까지 완료되지 않은 과제도 분석에서 제외하여, 실제 완료된 규제개혁 과제들만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결국 분석대상이 된 과제들은 규제이면서 완료된 567개 과제로 한정되었다. 이와 비교해 2006년도의 분석대상 선정에서는 기획단에서 추진한 과제들 중 과제를 담당한 책임자들이 비중이 있다고 판단한 세부과제들 중 계량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분석대상 선정 과정에 주관성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표 1> 산업별 분석대상 세부과제 수

국민계정 산업분류		세부과제수	
대분류	중분류		
농림수산업		5	
제조업	음식료담배	21	82
	섬유의복	0	
	목재나무종이인쇄	0	
	석유석탄화학고무	9	
	비금속광물	0	
	금속제품	1	
	운수장비	1	
	전기전자기기	0	
	기계, 정밀기기	6	
	가구 및 기타제조	1	
전기가스수도		12	
건 설	89	89	
운 송	71	71	
통 신	28	28	
서비스	도소매 음식숙박	98	353
	금융보험업	43	
	부동산, 사업서비스	113	
	공공, 교육, 국방, 보건	57	
	오락문화	42	
기 타		12	
일 반 국 민		19	
제조업전체		43	
총 합 계		671	

2.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기존의 규제개혁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은 주로 개별 규제개혁 과제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일반균형 연산모형(CGE) 등에 투입하여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방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비용편익 분석시 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 분석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부재, 개별 규제개혁 과제의 효과 집계시 중복계산이 발생하거나 복합적 효과를 간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GE모형 자체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 효과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에서는 규제지수(regulatory indicator)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규제개혁으로 인한 가격하락 효과를 추정하고 이러한 가격하락 효과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CGE모형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1) 규제유형에 따른 규제강도 구분

규제는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중의 하나가 규제의 강도에 따른 분류이다. 이종한·최무현(2004)에 따라 규제를 정부의 시장개입 수준을 고려해 사전승인규제, 투입규제, 산출규제, 정보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승인(prior approval) 규제는 피규제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제(각종 전문직종의 면허, 직업 또는 상업 행위에 대한 허가 등)인데, 규제기관의 개입정도가 매우 포괄적이며 강력하여 다른 어떤 규제유형보다 규제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투입기준(input standard) 규제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가 규제기관이 사전에 정해 놓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어떤 방법이나 재료를 사용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규제로 사전승인보다는 규제기관의 개입의 폭이나 강도가 제한적이지만 나머지 다른 규제유형보다는 강한 편이다. 산출기준(output standard) 규제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가 일정한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지만 이에 도달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투입기준보다는 개입의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규제(information regulation)는 공급자가 공급하는 자신의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강제적으로 공개하게 하거나 잘못된 또는 왜곡 과장된 정보를 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여타 규제유형에 비해 규제기관의 개입강도가 가장 낮은 규제유형으로 볼 수 있다. 사전승인(PA) 규제에는 각종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추천, 동의 등이 있고, 투입기준(IS) 규제에는 시험, 검사, 인정, 확인, 증명, 금지 등이 있으며, 산출기준(OS) 규제에는 결정, 명령, 지도, 단속, 고용의무, 기준설정 등, 정보규제(IR)에는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등이 있다. 이렇게 구분된 네 가지 규제유형을 규제강도별로 가중치를 주어 지수로 만들면 어떤 산업이나 규제분야에서 규제개혁으로 인한 규제수준의 변화를 규제지수의 변화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 그런데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규제강도에 따라 규제통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사전승인, 투입기준, 산출기준, 정보 규제 유형별로 대략 1 : 0.78 : 0.64 : 0.38 의 비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말하자면 사전승인 규제는 정보규제보다 약 3배의 준수비용이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비율을 각 유형의 가중치로 부여하여 규제지수를 작성할 수 있다.

2) 전략과제 규제개혁지수의 작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략과제이며 대부분의 개별 세부과제들은 규제완화 또는 합리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 과제들과 관련된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지수를 작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략과제의 각 개별 세부과제와 관련된 규제를 찾아내어야 한다. 등록규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정 법령의 이름 및 내용, 그리고 과제내용을 파악하여 관련 규제를 찾아내어 앞서 설명한 네 개의 규제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규제개혁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규제의 강도에 따른 가중치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이 해당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같은 유형의 규제가 한 건 완화된다고 해도 그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비중이 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완화의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제완화의 가중치를 개별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을 구분하고 해당 산업이 국민계정 경제활동별 분류상의 중분류 단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³⁾(개별과제가 제조업 중분류 단위보다 큰 한 단위 분류산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한 단위 분류산업에서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설정하였다. 국민계정 경제활동 중분류는 표준산업분류의 두 자리 분류에 해당하는데, 실제 분류과정에서는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개별과제를 두 자리 분류에서 5자리 분류까지 해당 산업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 따라 관련 산업을 정하고 이를 다시 국민계정상의 분류로 집계하였다. 그러나 세부과제가 이러한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과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제 분석대상이 된 세부과제수는 원래 567개이지만 여러 산업에 영향을 주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고려하면 모두 671개이고, 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들 중에서는 건설업의 과제수가 89개로 가장 많고, 제조업은 125개인 반면 서비스업은 353개인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도소매숙박 등의 과제가 많은 것으로

3) 제조업은 2005년 광공업통계의 출하액을, 도소매서비스업은 2005년 서비스업통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하였음

나타났다. 따라서 전략과제 규제개혁은 주로 서비스 산업과 건설, 운송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이미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더 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제조업분야 보다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분류된 개별 과제들은 관련 규제의 유형에 따라 부여된 가중치에 산업비중을 곱하여 개별 세부과제들의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였고, 이를 다시 산업별로 집계하여 산업별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였다. 산업별로 규제지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변수는 시간변수로, 세부과제가 완료된 시점(분기별)에 따라 특정 산업내에서 분기별로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의 흐름을 분기별로 살펴볼 수 있고, 규제 개혁의 시간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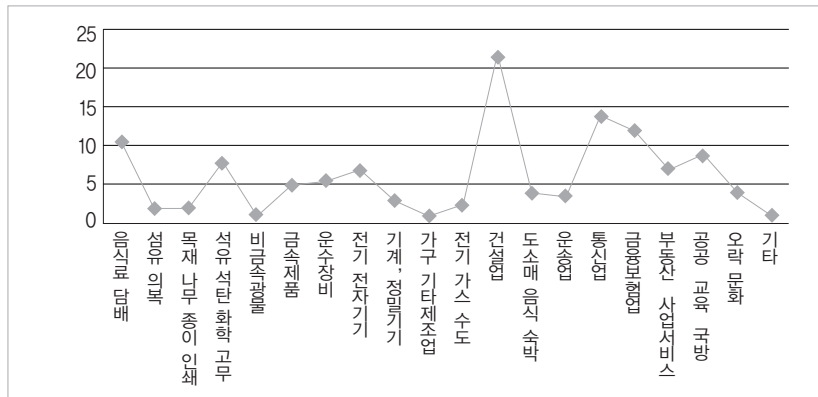
이렇게 작성된 규제개혁지수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세부과제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업이 22.0으로 규제개혁지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통신이 13.65, 금융보험이 11.82, 음식료담배가 11.27, 공공교육국방보건이 8.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기별로 보면 2005년도 2사분기부터 2006년도 4사분기까지 규제개혁지수가 높게 나타나 규제개혁 기획단은 2004년 8월에 설립되었으나 그 성과는 1년이 지난 시기부터 2006년말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2> 규제개혁지수의 산업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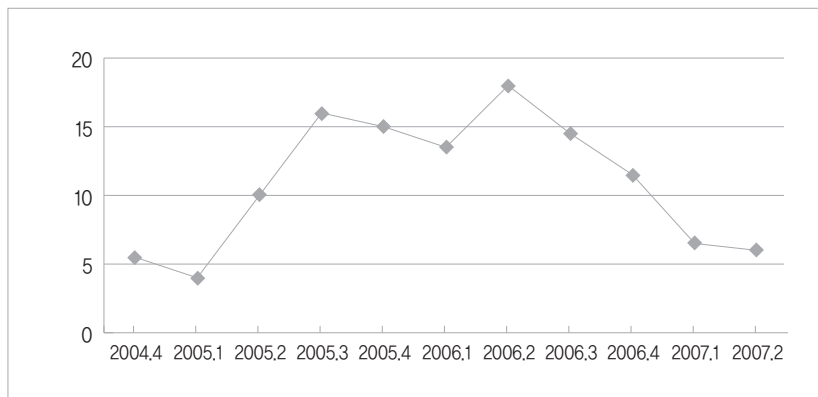
순 위	산업분류	산업별 규제개혁지수
1	건설업	22,00072563
2	통신업	13,65400733
3	금융보험업	11,82334692
4	음식료담배	11,27161734
5	공공, 교육, 국방, 보건	8,577326069
6	석유석탄화학고무	7,508095593
7	부동산, 사업서비스	6,9473577
8	전기전자기기	6,820522316
9	운수장비	5,189883838
10	금속제품	4,69061408
11	도소매 음식숙박	4,146707294

순 위	산업분류	산업별 규제개혁지수
12	오락문화	3,943970639
13	운송업	3,654057521
14	기계, 정밀기기	3,221840421
15	전기가스수도	2,469716
16	섬유의복	1,47106938
17	목재나무종이인쇄	1,214275803
18	비금속광물	0,879005629
19	가구 기타제조업	0,536099351
20	기타	0,42542041

<그림 1> 산업별 규제개혁지수



<그림 2> 분기별 규제개혁지수



3.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1) 규제개혁의 산업별 가격효과 추정결과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된 규제개혁지수를 이용하여 기획단의 전략과제 규제개혁이 각 산업별로 어느 정도 가격하락 효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략과제 규제완화가 해당산업의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기와 2기시차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과제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규제완화가 일어난 바로 다음 기에는 물가지수가 하락하기 보다는 약간 상승을 보이다가 2기시차 이후 음(-)의 효과가 나타났다. 규제개혁 과제의 완료로부터 약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해당 산업의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규제완화지표가 1변화했을 때 물가는 약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가격지수(자연대수값)를 0.008 증가시킨 후, 약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가격지수(자연대수값)를 0.01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egin{aligned}
 & \text{「규제완화 조정치(가격의 자연대수값 하락 분)} \\
 & = 0.0076004 \times 1\text{기시차 규제개혁지수} \\
 & \quad - 0.0110876 \times 2\text{기시차 규제개혁 지수}
 \end{aligned}$$

<표 3> 가격함수 추정결과

	추정모형 1	추정모형 2	추정모형 3	추정모형 4
1기시차 가격지수 (자연대수)	0.680*** (3,370)	0.569*** (3,520)	0.307 (1,450)	0.463* (1,710)
산업집적 (자연대수)	0.066 (0,410)	0.061 (0,450)	-0.065 (-0,410)	-0.081 (-0,310)
임금 (자연대수)	0.025 (0,440)	0.063 (0,860)	0.019 (0,230)	0.050 (0,770)
산업생산지수 (자연대수)	0.020 (0,260)	0.009 (0,110)	0.054 (0,510)	0.079 (0,520)
1기시차 규제개혁	0.002 (0,790)	0.008** (2,290)	0.003 (0,490)	-0.046 (-1,150)
2기시차 규제개혁	---	-0.011*** (-2,960)	-0.013** (-2,110)	-0.005 (-0,480)

	추정모형 1	추정모형 2	추정모형 3	추정모형 4
3기시차 규제개혁	---	---	0,002	-0,002
			(0,310)	(-0,470)
4기시차 규제개혁	---	---	---	-0,009
				(-0,730)
GDP 디플레이터 (자연대수)	-0.550***	-0.481**	-0.581**	-0.873***
	(-2,970)	(-2,360)	(-2,540)	(-5,360)
타임 트렌드	-0,001	0,000	0,000	-0,009
	(-0,530)	(0,180)	(-0,240)	(-1,200)
1분기 계절 더미	0,006	0,003	0,005	0,001
	(0,500)	(0,230)	(0,420)	(0,090)
2분기 계절 더미	0,014	0,009	0,009	-0,015
	(0,510)	(0,440)	(0,400)	(-0,740)
상수항	3,632***	3,870***	5,974***	6,707***
	(2,980)	(3,110)	(4,160)	(2,940)
관측수	200	180	160	140
AR(2) Test	0,84	0,91	0,69	0,05

주: 1) 괄호안은 t-값을 나타냄.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규제개혁기획단의 전략과제들이 주로 건설과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은데 아래의 표를 보면 제조업에도 상당한 물가하락 효과가 나타난 것은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개선”이나 “각종 부담금 개선”과 같은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과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물가하락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산업들은 건설업을 비롯한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으로 건설과 서비스 산업 중심임을 알 수 있다. 건설은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및 민간 SOC투자 활성화”와 같은 규모가 큰 과제가 중심이 되고 건설관련 부담금 감축 등 각종 건설수요에 영향을 주는 개혁과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 분야도 대표적인 규제개혁 대상이었는데, “자산운용사 고유계정 자본금 운용 규제완화”, “은행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완화”, “보험사 상품개발 절차간소화”, “주택자금 지원시 우선 저당권 설정권 차별해소”, “금융사 외화대출 한도 규제완화” 등 각종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4> 덩어리 규제완화로 인한 산업별 물가하락률(단위: %)

산업분류	규제완화 조정 물가하락률	
	총물가하락률	연간하락률
음식료품, 담배 제조	-0.861	-0.313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	-0.140	-0.051
목재, 종이 출판 및 인쇄	-0.108	-0.039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제조	-0.627	-0.228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	-0.083	-0.030
금속제품 제조	-0.406	-0.148
운수장비제조	-0.477	-0.173
전기전자기기	-0.708	-0.257
산업용 기계 + 정밀기기	-0.294	-0.107
가구 및 기타제조	-0.048	-0.017
전기, 가스, 수도사업	-0.613	-0.223
건설업	-1.585	-0.57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689	-0.251
운수창고업	-0.697	-0.253
통신업	-1.223	-0.445
금융보험업	-1.342	-0.48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935	-0.340
오락문화서비스	-0.880	-0.320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0.796	-0.289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	-0.424	-0.154
평 균	-0.6468	-0.235

전략과제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물가가 하락한 산업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가구 및 기타제조업’ 등인데 이들 산업에서는 직접적인 규제개혁 과제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산업연관 효과에 따른 물가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

규제개혁으로 인한 산업별 물가하락을 규제개혁 과제수행에 따른 직접적 효과(first round effect)라고 한다면, 이러한 물가하락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친 파급효과는 2차 효과(second round effect)로 볼 수 있다. 규제개혁의 2차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일반균형 연산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였는데, 이 모형을 이용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규제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균형점과 규제개혁이 완료된 이후에 형성된 새로운 균형점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행과정을 거쳐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는 기간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연구는 10~15년으로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10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에서는 일반 정태모형과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정태적 일반균형 연산모형과 자본축적 일반균형연산모형으로 분석한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백만달러, 명)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연간 실질 GDP 증가율	0,158	0,353
소비자 이익 평가금액 (2001년 기준)	697.8	1,259.7
고 용	12,516.9	34,946.5

전략과제 규제개혁으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은 연간 0.158~0.35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과제 규제개혁에 따라 기대되는 실질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우리나라 2005년 국내총생산에 적용하면 연간 12.5~27.9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⁴⁾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하락과 가계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은 연간 697.8~1,259.7백만 달러(2001년 기준)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었는데,⁵⁾ 이는 정태모형에서는 1.86%, 자본축적 모형에서는 3.35% 증가하는 것으로 연간 0.186~ 0.3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를 산업별로 살펴보기 위해 <표 6>에 제시된 결과는 규제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균형점과 규제개혁이 완료되어 새로운 균형점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4) 2005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7,913억 달러임(통계청)

5) 2001년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2001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해서 연간 산업별 효과가 아니라 10년간의 총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각 추정치는 산업의 부가가치가 아니라 중간재를 포함하는 실질생산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전략외제 규제 개혁으로 인한 산업별 실질 생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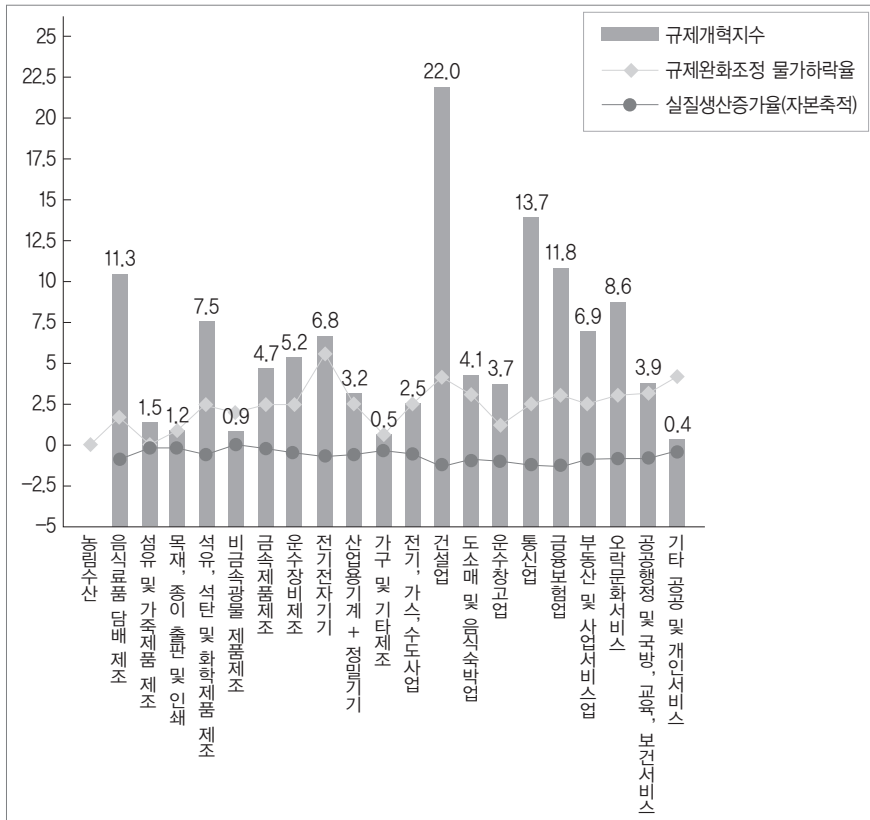
(단위: %)

산 업	정태모형 총효과	자본축적모형 총효과
농림수산 및 광물	-0.28	0.02
음식료품	0.95	1.94
섬유 및 의류	-2.41	0.16
목재, 종이, 출판	-0.7	1.45
석유화학	0.32	2.79
비금속광물	-0.41	1.67
금속/철강	-0.53	2.76
운송장비	0.51	2.67
전기/전자	2.13	5.67
기계	-0.75	2.87
기타 제조업	-2	0.56
전력/수도/가스	-0.16	2.15
건설	3.13	4.11
도소매/음식숙박	1.12	3.02
운송서비스	0.19	1.44
통신서비스	0.66	2.56
금융/보험	0.82	2.85
부동산/사업서비스	0.41	2.48
문화오락서비스	0.93	2.88
공공/교육/보건	1.53	2.91
기타 서비스	1.69	4.42

정태모형의 결과를 보면 일부 산업의 실질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축적을 통한 동태적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음식료품, 전기/전자, 건설 등의 실질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만 정태모형에서는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이 실질 생산이 크게 증가하는 산업으로 이동함으로써 노동이 감소하는 산업에서는 실질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이 축적되어 자본스톡의 증가를 허용하는 자본축적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규제개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산업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규제개혁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산업별 규제개혁의 파급효과 비교



규제개혁으로 인한 산업별 효과를 규제개혁지수와 비교해 살펴보면 규제개혁지수가 높은 산업이 물가하락율이 크게 나타나 직접적인 효과를 쉽게 식별할 수 있으나 산업별 실질생산은 규제개혁지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산업별 연관구조에 따라서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건설이나 음식료 담배, 통신 분야의 규제개혁지수가 크지만 이들 산업의 실질생산이 그에 비례해 증가한 것은 아니며 전기전자기기산업의 지수는 앞의 산업들에 비해 높지 않지만 실질생산 증가율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산업연관 구조를 고려한

규제개혁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표 7> 전략과제 규제 개혁으로 인한 산업별 고용의 변화

(단위: 명)

산 업	정태모형 총효과	자본축적모형 총효과
농림수산 및 광물	-423.1	30.1
음식료품	2,062.6	4,204.2
섬유 및 의류	-9,076.0	600.4
목재, 종이, 출판	-1,472.6	3,041.3
석유화학	1,196.7	10,387.8
비금속광물	-456.1	1,852.0
금속/철강	-1,726.6	8,946.4
운송장비	1,678.7	8,780.2
전기/전자	12,368.5	32,750.3
기계	-2,641.5	10,071.2
기타 제조업	-1,978.8	552.8
전력/수도/가스	-113.5	1,528.6
건설	48,707.6	63,859.0
도소매/음식숙박	21,830.8	58,758.6
운송서비스	1,242.1	9,379.8
통신서비스	1,006.6	3,897.2
금융/보험	4,817.6	16,665.5
부동산/사업서비스	3,958.4	23,849.8
문화오락서비스	1,466.1	4,531.2
공공/교육/보건	35,903.8	68,048.1
기타 서비스	6,817.3	17,730.8
합계	125,168.8	349,465.2

또한 전략과제 규제개혁으로 인하 고용창출효과는 연간 12,517~34,947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 결과를 보면, 공공/교육/보건 서비스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수입의 증가에 달려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공공/교육/보건 서비스는 비교역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아서 서비스 분야 고용계수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될수록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창출효과는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규제개혁으로 산업의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산업의 생산과 고용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004년 8월부터 시작된 규제개혁기획단의 전략과제 규제개혁은 양적인 규제개혁 단계에서 질적 규제개혁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합리화 정책이다. 전체 56개 전략과제의 1,641개 세부과제 중 완료된 43개 전략과제의 567개 세부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가장 높은 규제개혁지수를 얻은 산업은 건설업을 비롯해 통신산업, 금융보험업, 음식료담배 산업의 순이었으며, 규제개혁으로 인한 물가하락율이 큰 산업은 역시 건설업을 비롯해 금융보험업, 통신산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공동주택 관련규제 개선방안, 건설산업 규제합리화방안, 각종 부담금 개선방안,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방안 등의 전략과제를 추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심의, 인허가 등 절차개선, 사업계획 승인시 의제처리절차 간소화, 도로 등 시설 설치부담 완화, 주상복합아파트 상업면적비율 규제완화, 플러스 옵션규제 폐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저가심의제 개선, 민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각종 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 기반시설에 대한 중복부과 해소 등 많은 세부과제가 추진, 완료되었다. 금융보험업은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 등 굵직한 규제완화조치가 추진되어 불합리한 업무영역 규제, 진입규제, 자산운용규제 및 판매규제 등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졌고, 통신산업에서는 정보통신사업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으로 역무분류 및 허가제도를 정비하고,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절차 개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통신사업 허가등록시 조건부여 개선, 통신사업관련 중복규제개선 등의 세부과제가 추진 완료되었다.

분석대상 규제개혁과제들의 특징은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구조조정이나 민영화, 또는 공공설비산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적 규제개혁 과제들과는 달리 파급효과가 비교적 작은 특정산업에 한정된 과제들이나 각종 행정처리절차 간소화 등의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과제나 규제내용 합리화 등의 과제가 많은 편이어서 이슈가 되는 규제개혁 과제보다는 규제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합리화를 통해 전반적인 규제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감소시키는 규제개혁의 성격이 부각되었다. 세부과제의 산업분류 중 3단위 분류가 가장 많은 43.6%를 차지하였으며, 4단위와 5단위로 분류된 과제들도 각각 14.1%와 14.5%를 차지해 3단위 이하로 분류된 과제가 전체의 7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 완료로 분류된 규제개혁 과제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완료’과제만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볼 때 기획단의 규제개혁 작업이 기존 규제의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과제 중심의 규제합리화에 초점을 둔 규제개혁 과제들도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567개의 세부과제는 자본축적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10년동안 연간 0.353%의 실질 GDP 증가를 가져오며, 고용은 연간 34,946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총 고용증가율은 2000년 기준으로 1.65%에 달했다.

산업별 파급효과를 보면 산업연관효과가 큰 전기전자의 실질생산이 연간 0.567% 증가하고, 다음으로 건설산업이 0.411%, 도소매숙박업이 0.302%, 공공교육보건의 0.291%, 문화오락서비스업이 0.28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별 파급효과를 보면, 규제개혁지수가 높다고 반드시 해당 산업의 실질생산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규제개혁의 파급효과는 경제구조나 산업연관효과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개혁의 효과는 그 나라의 산업연관구조를 반영한 경제적 조정방식에 영향을 받고 이러한 조정방식은 생산성 증가분의 노동과 자본간 분배를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분배결과는 각 산업의 임금과 고용, 산출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규제개혁 정책 수립시에도 이러한 개별 과제 중심의 정책수립보다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규제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향후 규제개혁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자. 먼저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분석되어 위기시의 대규모 규제개혁 중심의 정책보다는 평상시의 규제합리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은 산업구조 합리화 차원에서 법규로 인위적으로 형성된 산업의 구조를 경쟁적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각종 전문직을 비롯한 업역규제 개혁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의 구조는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폐쇄적 칸막이식 구조에서 자유 경쟁적 구조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종 명분으로 씌워진 보호망을 걷어내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업역규제 철폐를 통해 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키고 규제개혁으로 인한 산출증가나 생산성 증가효과가 경쟁적 산업구조를 통해 보다 공평하게 더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를 비롯하여 유럽, 중국, 일본, 캐나다 등과의 FTA가 진행될 경우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협상 상대국보다 경쟁적 구조를 가져야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쟁적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그 생산성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는 서비스산업 부터 각종 진입규제에 해당하는 업역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구조의 정착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기업 활동 환경개선, 그리고 공정한 경쟁제도의 확립 등, 시장 개입보다는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 규제개혁의 중심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 사전적으로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규제개혁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업들의 부담감소나 소비자의 편익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록

제1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등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제1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등

가. 행정규제기본법

- 제 정 1997. 8.22 법률 제5368호
- 일부개정 1998. 2.28 법률 제5529호
- 일부개정 2005. 12.29 법률 제7797호
- 일부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行政規制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하여 불필요한 行政規制를 廢止하고 비효율적인 行政規制의 新設을 抑制함으로써 社會·經濟活動의 自律과 創意를 촉진하여 國民의 삶의 질을 높이고 國家競爭力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1.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 ·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 ·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 「통합방위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 「민방위기본법」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 · 소집 · 동원 · 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 · 세율 ·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제법정주의)

-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또는 조례 ·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 ·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규제의 원칙)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등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

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6월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④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3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제9조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요청)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등의 제출의견 요지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심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에 대한 규제 정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제11조 (예비심사)

-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

-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제3항·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 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 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개선권고)

- ①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 (의견제출)

-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 받은 경우
 3.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④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직정비 등)

-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 (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 (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9〉
-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제29조 (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 (별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별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제33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제34조 (규제개선 점검·평가)**

-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 (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 (행정지원 등)

국무총리실장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5.12.29, 2008.2.29>

제37조 (공무원의 책임 등)

-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5368호,1997.8.22>**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 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훈령·고시 등의 재검토)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이를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規定”으로 한다.
 - 제42조 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62조제3호 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 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 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관련 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④ 생략
- ⑤ 행정규제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⑥ 내지 〈34〉 省略 第6條 및 第7條 省略

부칙 <제7797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부터 <749> 까지 생략**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등)

-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06.3.31>

제4조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 ① 삭제 <2006.3.3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7조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첨부서류의 보완)

-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선권고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 (의견제출의 방법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4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6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제1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③ 삭제 <2006.3.31>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전문위원 등)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실지조사)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수당 등)

-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 (규제개선외 점검·평가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5681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령·조례·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 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는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436호,2006.3.31>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내지 <232>생략

<233>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4>내지 <241>생략

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 (2000.5.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의안의 제출)

-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구성)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경제1분과위원회
 - 2. 경제2분과위원회
 -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배치한다.

제6조(소관)

- ① 경제1분과위원회는 재정경제·건설교통·산업자원·공정거래·금융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경제2분과위원회는 정보통신·과학기술·해양수산·농림·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외교통상·통일·국방·법무·복지·교육·노동·문화관광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분과위원회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위원이 소관사항을 조정한다.

제7조(회의)

-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국장급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 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의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중요규제 여부의 결정
2.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3.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의결토록 위임한 사항

제9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0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이 수행한다.

제11조(규제개혁조정관실의 직무)

규제개혁조정관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심의안건 설명)

규제개혁조정관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제5장 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3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 ① 전문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 ②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조사요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14조(공정위에 조사·연구 의뢰)

-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1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① 위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하며, 용역비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0.5.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가. 규제개혁위원회

차 수	부처명	호수	상정안건	안건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162차 (’06.1.20)	국조실	634	· 2006년 규제개혁정비지침	의결	1			1
	국조실	635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				
	국조실	636	· 2005년 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보고				
	경제2 위원장	637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제163차 (’06.3.24)	행정사회 위원장	638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국조실	639	·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	보고				
	국조실	640	·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보고				
제164차 (’06.4.21)	경제2 위원장	64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일부 개정안	의결	1			1
	국조실	642	·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 구성안	의결	1			1
	국조실	643	· 규제심사체계 확립방안	보고				
제165차 (’06.4.21)	국조실	644	·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보고				
	행정사회 위원장	645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2		5
	국조실	646	· 규제심사체계 확립방안 후속조치	보고				
제166차 (’06.5.19)	행정사회 위원장	647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국조실	648	· 규제개혁 평가계획	보고				
	국조실	649	· 산업안전 · 보건규제 개선방안	보고				
	국조실	650	·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현황 분석	보고				

차 수	부처명	호수	상정안건	안건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167차 (‘06.6.23)	해수부	651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보 류			
	규개위	652	· 규제사무목록	의결	1			1
	규개위	653	·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방안	의결	1			1
제168차 (‘06.8.17)	규개위	654	·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 구성안	의결	1			1
	해수부	655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1
	해수부	656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정안	의결	1			1
	복지부	657	· 장사등에관한법을 일부개정안	의결	2		2	4
	규개위	658	· 2006년 개별규제정비계획	의결	1			1
	규개위	659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업무지침	의결	1			1
제169차 (‘06.8.17)	외교부	660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안	의결	1			1
	정통부	66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의결	3	1		4
	국조실	662	· 규제개혁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국조실	663	·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보고서	보고				
	재경부	66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보고				
제170차 (‘06.9.7)	국조실	665	·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 구성안	의결	1			1
	건교부	666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667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668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문광부	66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1
제171차 (‘06.9.28)	건교부	670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을 제정안	의결	1		1	2
	산자부	671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보고				
	국조실	672	· 「OECD 모니터링」규제개혁회의결과 보고	보고				
제172차 (‘06.10.19)	방재청	673	·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안	의결	1			1
	국조실	674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보고				

차 수	부처명	호수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173차 (’06.11.8)	건교부	67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재경부	676	· 사회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1
	식약청	677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보고				
	노동부	678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고				
제174차 (’06.11.23)	국조실	679	· 규제등록·분류제도 개편 추진현황 (규제맵 포함)	보고				
	건교부	680	·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1			1
	복지부	681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의결	4	2		6
제175차 (’06.12.6- 12.12)	교육부	682	·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서면심의)	의결	1			1
	재경부	68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면심의)	의결	1			1
제176차 (’06.12.21)	환경부	684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전부 개정법률안	의결	1	2	1	4
	환경부	68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1			1
	국조실	686	·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보고				
	국조실	687	· 2007년도 규제개혁 종합지침	의결	1			1
				총계	40	7	4	51

나. 경제1분과 위원회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15차 (*07.01.11)	건교부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건교부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의결	3			3
제316차 (*07.01.18)	공정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건교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심사보류			
제317차 (*07.02.08)	건교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2		1	3
	건교부	·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안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안	의결	2			2
	산자부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의결	1			1
제318차 (*07.02.22)	건교부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5	1		6
	산자부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	1			1
	산자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4
	산자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19차 (*07.03.08)	건교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금감위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금감위	·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	심사보류			
제320차 (*07.03.15)	국조실	·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보고				원안 접수
	건교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재경부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재경부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괄 개정안	의결	2			2
	산자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1		3
	산자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금감위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21차 (‘07.03.27)	산자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제322차 (‘07.03.29)	산자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의결		3		3
	금감위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건교부	· 부도공공건설임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1			1
제323차 (‘07.04.12)	산자부	·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5		1	6
	건교부 등 10개부처	· 2007년 개별규제 정비계획	의결				원안 의결
제324차 (‘07.04.19)	산자부	· 효율관리 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재경부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의결	5	1		6
	건교부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3	3	2	8
	건교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재경부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의결	5			5
제325차 (‘07.05.03)	산자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의결	심사보류			
	산자부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심사보류			
	건교부	· 측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6	1		7
	건교부	·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건교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제326차 (‘07.05.17)	산자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의결	1	2		3
	산자부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산자부	· 자원순환경제사회형성기본법 제정안	의결	심사보류			
	산자부	·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3
	산자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5	1	1	7
제327차 (‘07.05.31)	건교부	·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27차 (*07.05.31)	건교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공정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28차 (*07.06.14)	공정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4
	건교부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4
	건교부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15	3	1	19
제329차 (*07.06.21)	건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3
	건교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7	2		9
제330차 (*07.07.02)	건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건설기계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심사보류			
제331차 (*07.07.05)	건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9	2		11
	건교부	·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1			1
	건교부	·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건교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5	2		7
	산자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332차 (*07.07.26)	산자부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3	4		7
	재경부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결	6	2		8
	국조실	· 경제5단체 건의과제 조치계획	보고				
제333차 (*07.08.23)	산자부	· 승강기 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의결	3			3
	산자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1	1		12
	재경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334차 (*07.08.30)	건교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8	4		12
	건교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6	2		8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35차 (07.9.20)	건교부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1	3
	재경부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보고	2			2
제336차 (07.10.04)	건교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공정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심사보류			
제337차 (07.10.18)	공정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1	5
	건교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심사보류			
	건교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3			3
	재경부	·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	의결	4	1		5
제338차 (07.11.01)	건교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8	4	1	13
	건교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제339차 (07.11.08)	재경부	·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	의결	4			4
	산자부	· 집단에너지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1		3
제340차 (07.11.22)	예산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5		9
제341차 (07.12.10)	건교부	·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안	의결	2	2		4
제342차 (07.12.20)	건교부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2		3
	재경부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국조실	· 경제5단체 건의과제 조치계획	보고				원안 접수
			총계	205	59	11	275

다. 경제2분과 위원회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73차 (‘07.1.18) (서면)	농림부	· 사료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농림부)	의결	3			3
	환경부	·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안(환경부)	의결	3			3
	해수부	·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 제정안(해수부)	의결	1	1		2
제274차 (‘07.2.1)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1			1
	노동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2			2
	노동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의결	1	1		2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중 일부 개정안(재심사)	의결	1	1		2
	산림청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6			6
제275차 (‘07.2.15)	농림부	·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예비심사	의결	5			5
	정통부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1			1
	산림청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의결	1			1
제276차 (‘07.1.26) (서면)	농림부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3			3
	노동부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1			1
	노동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선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2			2
	해수부	· 선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277차 (‘07.3.8)	해수부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선박설비기준(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77차 (*07.3.8)	해수부	· 선박소방설비기준(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선박구획기준(고시)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선박방화구조기준(고시)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고속선기준(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경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재심의			
	노동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일부법을 개정법률안	의결	1			1
	노동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2			2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예비심사	의결	4			4
제278차 (*07.3.15)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재심사	의결	재심의			
	노동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 최적방지사설의 종류 및 기준(고시) 제정안	의결	1			1
	환경부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해수부	· 여객선운항관리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해양생태계의보전 및 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6	1		7
	국조실	· 환경오염배출 규제 개선방안	의결	보고안건			
제279차 (*07.3.29)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재심사	의결	본회의 상정			
	농림부	·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3			3
	해수부	· 국제선박등록법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80차 (*07.4.12)	정통부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관한 고시안(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고시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노동부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2			2
	과기부등 9개부처	· 2007년 개별규제 정비계획	의결	서면심의후 본회의 상정			
제281차 (*07.4.26)	환경부	· 정수기품질검사체계의 실태 및 개선방향	의결	보고안건			
	환경부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3	1		4
	노동부	· 외국인 근로자의고용 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2			2
	산림청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2			2
제282차 (*07.5.10)	과기부	· 기술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의			
	산림청	·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1		5
	과기부	· 기술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예비심사)	의결	1			1
	농림부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3			3
	해수부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예비심사)	의결	6			6
	해수부	· 수산물 원산지표시업무 처리요령(고시)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정통부	·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고시)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2			2
	환경부	·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의 교육 자율성 부여(보고안건)	의결	보고안건			
	노동부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제283차 (*07.5.17)	환경부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조정여부 검토결과 보고(보고안건)	의결	보고안건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83차 (07.5.17)	정통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4			4
	정통부	·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정통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7			7
	과기부	· 기술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재심의)	의결	2			2
	기상청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의결	3			3
제284차 (07.5.22)	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전부개정 법률안	의결	본회의상정			
	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예비심사)	의결	6			6
	농림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수처리제외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제285차 (07.5.31)	노동부	·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노동부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4			4
	노동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2			2
	농림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2			12
	농림부	·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1		2
	해수부	· 어장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3		4
	정통부	· 금지행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안	의결		1		1
	환경부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	2	1		3
제286차 (07.6.7)	과기부	· 기술사법관련 기술사제도 개선사항보고	보고				
	환경부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5			5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86차 (’07.6.7)	환경부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4
	환경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예비심사)	의결	1			1
	정통부	· 위치정보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예비심사)	의결	1			1
제287차 (’07.6.14) (서면)	노동부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2			2
제288차 (’07.6.21) (서면)	환경부	·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노동부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289차 (’07.6.28)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1	2		3
	노동부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의결	1			1
	노동부	· 직업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선박방화구조기준(고시)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제290차 (’07.7.5) (서면)	해수부	·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의결	6	1		7
제291차 (’07.7.12)	환경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1		4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5			5
	과기부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 안전관리등에 관한기술기준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정통부	·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3			3
	환경부	·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92차 (’07.7.19)	정통부 방송위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제정안	의결	본회의상정			
	정통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1			1
	정통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제293차 (’07.7.26) (서면)	환경부	·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제품 및 물질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294차 (’07.8.2) (서면)	환경부	·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295차 (’07.8.25)	환경부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재심의			
	정통부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폐기물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등에 관한규정(고시) 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제296차 (’07.8.29)	환경부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재심의)	의결		1		1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의결	4	1		5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1	1		2
	정통부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예비심사)	의결	1			1
	정통부	·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297차 (’07.9.5)	환경부	· 환경보전법 제정안	의결		5		5
	정통부	·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예비심사)	의결	2			2
	노동부	·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의결	재심의			
	해수부	· 수산자원보호령 전부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제298차 (’07.9.12)	농림부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농림부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2			2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98차 (*07.9.12)	환경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정수기 품질검사체계 개선방안(보고안건)	의결	보고안건			
	노동부	·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재심의)	의결	1			1
제299차 (*07.9.19)	농림부	· 동물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6	2		8
	노동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1		3
	환경부	·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고시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 규칙 개정 (예비심사)	의결	1			1
	정통부	·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		1		1
제300차 (*07.10.10)	농림부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2		2
	환경부	· 잔류성 및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7	2		9
	환경부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6	2		8
	정통부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예비심사)	의결	1			1
	정통부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정통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재심의			
	환경부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1			1
제301차 (*07.10.17) (서면)	환경부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302차 (*07.10.24) (서면)	정통부	·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선박복원성 기준(고시)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02차 (‘07.10.24) (서면)	해수부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규정(고시) 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정통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을 개정안(재심의)	의결	3			3
	환경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관한법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5	1		6
제303차 (‘07.10.31)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 한강수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3			3
제304차 (‘07.11.17) (서면)	농림부	· 인삼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예비심사)	의결	2			2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2			2
제305차 (‘07.11.14)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의결	9			9
	환경부	·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해수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재심의			
	농림부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4			4
	농림부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2			2
	환경부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정통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정통부	· 텔레비전 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의결	5			5	
제306차 (‘07.11.21)	농림부	· 종자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농림부	·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3			3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06차 (*07.11.21)	환경부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해수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재심의)	의결	7	3		10
제307차 (*07.11.28)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1	1	6
	해수부	·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안	의결	4	2		6
	농림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5			5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해수부	· 수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해수부	· 연안관리법 개정안	의결	2			2
	해수부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6			6
제308차 (*07.12.5)	정통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재심의			
	해수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8	2		10
	해수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3			3
	해수부	·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해수부	· 선체보호도장 잠정기준(고시) 제정안	의결	1			1
	산림청	·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제309차 (*07.12.12)	정통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재심의)	의결	3	2		5
	노동부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노동부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예비심사)	의결	2			2
제310차 (*07.12.20)	과기부	·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과기부	· 특정해물질의 계량관리에관한검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농림부	· 축산물가공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예비심사)	의결	4			4
	해수부	·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11차 (‘07.12.26) (서면)	해수부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관한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제312차 (‘07.1.9) (서면)	해수부	· 항로표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4			4
	해수부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노동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2			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제313차 (‘07.1.16) (서면)	해수부	· 무인도서의보전 및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의결	3	1		4
	농림부	· 동물용의약품품 등 취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2			2
	환경부	·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2			2
	해수부	· 내수면 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 제정안(예비심사)	의결	3			3
제314차 (‘07.1.23)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의			
	환경부	·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제315차 (‘07.1.30) (서면)	해수부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수출수산물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지정 고시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제316차 (‘07.2.20)	과기부	· 개인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규정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과기부	· 판독업무등록기준 및 검사에관한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정통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1			1
			총계	383	51	1	435

라. 행정사회분과 위원회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14차 (‘07.1.23) (서면)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8	3		11
제315차 (‘07.1.29) (서면)	문광부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의결	1	2		3
제316차 (‘07.2.15)	복지부	·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제 고시 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식약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가구 및 용기·포장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문화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의결	3			3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교육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교육부	·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안	의결	재심의			
제317차 (‘07.3.8) (서면)	방재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4	2		6
	방재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4	2		6
	교육부	·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 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2			2
	식약청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318차 (‘07.3.19) (서면)	복지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시행령 제정안	의결	2			2
제319차 (‘07.3.22)	방재청	· 국가화재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8			8
	복지부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제정안	의결	재심의			
	복지부	·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19차 (*07.3.22)	복지부	· 의로기기법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식약청	· 의로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 제정안	의결	1			1
	여성부	·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행자부	·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2
제320차 (*07.3.23) (서면)	복지부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예비심사	의결	2			2
제321차 (*07.3.29)	복지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제정안	의결	3			3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문광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문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2		5
제322차 (*07.4.5)	청소년위	·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괄고시 제정안	의결			1	1
	문광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의			
	복지부	·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신의료기술 평가규칙 개정안	의결	1			1
	경찰청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제323차 (*07.4.12)	통일부	· 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2			2
	문광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2		3
	국조실	·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4	1		5
	복지부	· 의료법 전부개정안	의결	재심의			
	교육부등17 부·청	· 2007년도 개별규제 정비계획	보고				
제324차 (*07.4.19)	복지부	·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의결	본회의 상정			
	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복지부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전부 개정안	의결	1			1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24차 (*07.4.19)	교육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325차 (*07.4.26)	교육부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외교부	·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3			3
	방재청	·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식약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1		1
제326차 (*07.5.11)	보훈처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2			2
	외교부	· 여권법 전부개정안	의결	1			1
	법무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복지부	·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	의결	1		1	2
	복지부	·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복지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재심의			
	식약청	·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의약품 낱알식별표시등에 관한 규정 예비심사	의결	1			1
	식약청	·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 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327차 (*07.5.16)	식약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복지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2
	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률 개정안	의결	3	4		7
	법무부	· 법률구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3			3
제328차 (*07.5.25)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방송위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의			
	방송위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5		6
제329차 (*07.5.31)	문광부	· 저작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7			7
	복지부	· 고령친화형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2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29차 (07.5.31)	식약청	·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식약청	·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교육부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1	1	1	3
	교육부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의결	18			18
제330차 (07.6.12) 서면	교육부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법무부	·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소방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제331차 (07.6.14)	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식약청	·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개정안	의결		1		1
제332차 (07.6.21)	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의결	2	1		3
	복지부	· 생식세포 관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식약청	·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333차 (07.6.28)	복지부	·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의결	1	4		5
	복지부	·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1		4
	복지부	·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시범사업에 관한 기준 제정안	의결	1			1
제334차 (07.7.5)	복지부	· 약품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복지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제335차 (07.7.12)	방송위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3		3
	복지부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2		3
	복지부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	의결	1			1
제336차 (07.7.19)	복지부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4(2)			4
	행자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37차 (*07.7.26)	복지부	· 검역법 개정안	의결	3			3
	복지부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2	1		3
	국조실	· 경제5단체 건의과제	보고				
	식약청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식약청	·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방송위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338차 (*07.7.30)	방송위	·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339차 (*07.8.9) 서면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법제처	· 행정심판법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2			2
	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340차 (*07.8.16)	식약청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행자부	·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의결	1	1		2
	복지부	·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2			2
제341차 (*07.8.23)	식약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식약청	· 의약품등 질량(용량)편차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제342차 (*07.8.30)	복지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본회의상정			
	복지부	·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3		7
	소방청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격개정안 및 소방용기계·기구검정 관련 5개 고시 제·개정안	의결	2	2		4
제343차 (*07.9.4)	법무부	· 한국법학원육성법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국조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1			1
제344차 (*07.9.6)	교육부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본회의상정			

차 수	부처별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44차 (07.9.6)	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의결	4	1		5
	복지부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일부 개정안	의결	1			1
제345차 (07.9.13)	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상정			
	식약청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 개정안	의결		1		1
	통일부	· 군사정전에관한 협정체결이후 남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제346차 (07.9.19)	교육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교육부	·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1
	교육부	·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1
	행자부	· 지적법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	의결	1			1
	법무부	· 국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47차 (07.10.5) 서면	문화부	·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개정안	의결	4			4
	청소년위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행자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결	2			2
	복지부	· 한약제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고시) 개정안	의결	1			1
제348차 (07.10.11)	식약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의결	1			1
	법무부	· 정부공단법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의결				
제349차 (07.10.17) 서면	복지부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	의결	1			1
	소방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세부기준 (고시)개정안	의결	3			3

차 수	부처별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49차 (‘07.10.17) 서면	문화부	·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개정안	의결	1			1
제350차 (‘07.10.23) 서면	복지부	·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3		5
제351차 (‘07.11.2) 서면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식약청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의결	1			1
	법무부	· 차별금지법 제정안	의결	1			1
	행자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	2			2
제352차 (‘07.11.9) 서면	행자부	· 행정사법 개정안	의결	6	1		7
제353차 (‘07.11.15) 서면	복지부	·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5			5
제354차 (11.22) 서면	복지부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1		3
	복지부	·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고시) 제정안	의결	재심의			
	행자부	· 행정사법 개정안	의결	6	1		7
	복지부	·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2
제355차 (11.29)	복지부	·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고시) 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1
	소방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복지부	·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복지부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1			1
	식약청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356차 (12.7)	복지부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버를 제정안	의결	1			1

차 수	부처별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56차 (12.7)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3
	복지부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원료의약품신고지침고시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의로기기기준규격 고시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 고시 개정안	의결	1			1
제357차 (07.12.13)	방송위	·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재심의			
	게임위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4		4
	식약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교육부	· 교원 등이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4	1	1	6
	복지부	· 영양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식약청	·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의결	1			1
	청소년위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교육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제358차 (07.12.20)	법무부	·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의결	재심의			
	방송위	·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재심사)	의결	1	2	1	4
	국조실	· 경제5단체 건의과제 조치계획	보고				
제359차 (07.12.27)	법무부	· 외국자문사법 제정안(재심사)	의결	5	1		6
	복지부	·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	의결		1		1
	방재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방재청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7			7
	교육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5			5
	통일부	·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총계	269	80	5	354